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

집합적으로 “양 당사국”이라 지칭되는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은

양국간 특별한 우호 및 협력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증진하기로 결의하며,

무역,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

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 및 생활 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의하며,

양국간 무역에 대한 왜곡을 회피하기로 결의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하고, 뇌물을 포함한 부패·인권침해와 관련된 부정을 예방 및 퇴치하기로 결의하며,

환경 보호 및 보전과 기본적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로 결의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반영된 대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제고하는 것에 대한 양국의 동의를 재확인하기로 결의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보고르 목표”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찾기 위해 즉시 서로 협의한다.
3.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정되고 양 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경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에 자동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서 각각의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 1.4 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반덤핑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농업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란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체결된 생물 다양성협약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페루에 대해서는, 국가정부, 그리고
-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적용대상투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령의 운영 및 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협정 제5조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日)이란 달력상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 기업,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 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해 그리고 류의 주해를 말한다.

호란 HS상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2.1조(공동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페루에 대해서는, 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 정치헌법 제52조 및 제53조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출생, 귀화 또는 선택에 의해 페루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페루 영주권자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상 수립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人)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 정치헌법 및 그 밖의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지역정부,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지역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소호란 HS에 따른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영역¹⁾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가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영역, 도서, 해양수역 및 그 위의상공,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 지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협정에 포함된 “영역” 정의 및 “영역”에 대한 언급은 오로지 이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대우

제 2.2 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3.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수리·재생·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¹⁾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5.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간 합의가 제 22.1조(공동위원회)와 자국의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그 합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가. 각각의 연도에 대해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또는 제 23장(분쟁해결)에 따라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1) 이 항은 HS의 제8703호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중고 차량은 부속서 2가에 언급된 조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러한 중고 차량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 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4 조 관세면제

1. 어느 당사국도, 관세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면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해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아니한다.

2. 어느 당사국도 기존의 관세면제의 지속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간을 연장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해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은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해 정해진 최초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시하면,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8. 어느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이나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입국항과 출국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해 그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국항을 통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차량 또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차량 혹은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9. 제8항의 목적상, **차량**이란 트럭, 트럭 트랙터, 트랙터, 트레일러 유니

트 또는 트레일러,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 또는 그 밖의 철도 장비를 말한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느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2. 어느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7 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그러한 광고물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중 어느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을 양해한다.

-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 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조제1

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규제 당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느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허가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그 통지는

-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²⁾

3. 어느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해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하고 유지한다.

2) 이 호는 공표된 후 20일 내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1 조

수출세

어느 당사국도, 관세·조세 또는 부과금이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해서 도입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2 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규율된다.

제 2.13 조

관세평가

1.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계승하는 모든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무역에 적용하는 관세평가규정을 규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계승하는 모든 협정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의 관세법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을 준수한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14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다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와 합치하게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더 높은 수입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다.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 또는

라.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3. 어느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제8장(무역구제)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또는

다. 농업협정 제5조에 따른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4.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은 그 조치의 적용에 대해 협의한다.

5. 제2.17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6. 부속서 2다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5 조

농업 수출 보조금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재도입하지 아니한다.³⁾

제 2.16 조

가격밴드제도

페루는 자국 가격밴드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부속서 2라에 열거된 상품에 대해 최고 법령 제115-2001-EF호 및 그 개정에 수립되어 있는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절

제도 규정

3) 대한민국은 수출보조를 받은 농산물이 페루로 수출되고 있지 않으며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 2.17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와 모든 임시작업반의 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와 페루의 통상관광부, 또는 그들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해 조정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또는 제5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및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위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HS의 향후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

1) 2007년 HS의 후속 개정과 부속서 2나, 또는

2) 부속서 2나와 국가상품분류체계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마.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조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 그리고

바. 특정 권한을 가진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1년에 최소 1회 회합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라도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농수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간 농수산물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작업반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절 정 의

제 2.1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농산물이란 농업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

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해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된 것, 또는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수출 보조금이란 농업협정 제1조마호 및 그 조항의 모든 개정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 나.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 다.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
- 라.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 마. 수입 물량 또는 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출 물량 또는 가격, 또는 외환 유입 금액과 연계하는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 바.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될 것
- 사.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 아.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해 대체될 것, 또는
- 자.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해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HS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 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대우와 수입 및 수출 제한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중고 의류 및 신발, 중고 차량 및 중고 자동차 엔진·부품 및 교체품, 중고 타이어, 방사능원을 이용하는 중고 상품·기계 및 장비의 수입에 관련된 페루의 조치⁴⁾와 그 조치의 지속, 즉각적 갱신 또는 개정. 다만, 그 조치의 지속, 즉각적 갱신 또는 개정은 이 협정과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

4) 페루의 조치는 법 제28514호(중고 의류 및 신발), 법령 제843호, 긴급 법령 제079-2000호와 긴급 법령 제050-2008호(중고 차량 및 중고 자동차 엔진·부품 및 교체품), 최고 법령 제003-97-SA호(중고 타이어) 및 법 제27757호(방사능원을 이용하는 중고 상품·기계 및 장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다.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EIF”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4”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1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5-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기준세율에서 유지되고, 이행 5년차 1월 1일에 완전히 철폐된다.

타.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17-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관세는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파.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17-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관세는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단계별 양허유형 “S-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

한 관세는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 2)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단계별 양허유형 “S-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 2)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고,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더. 단계별 양허유형 “X”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모든 개정에 규정되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해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 공식 통화 단위의 0.001자리까지 되도록,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라 함은 제25.2조 (발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대한민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의 주해 및 류의 주해에 의해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그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페루의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페루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페루의 HS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페루의 HS의 일반 주해, 부의 주해 및 류의 주해에 의해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그에 상응하는 페루의 HS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페루의 HS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부속서 2 나
대한민국의 양허표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0.0	EIF	
0101109000	기타	8.0	EIF	
0101901010	경주말	8.0	EIF	
0101901090	기타	8.0	EIF	
0101909000	기타	8.0	EIF	
0102101000	젖소	89.1	EIF	
0102102000	육우	89.1	EIF	
0102109000	기타	89.1	EIF	
0102901000	젖소	40.0	16	
0102902000	육우	40.0	16	
0102909000	기타	0.0	EIF	
0103100000	번식용의 것	18.0	EIF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0	10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0	10	
0104101000	번식용의 것	0.0	EIF	
0104109000	기타	8.0	3	
0104201000	유용산양	8.0	3	
0104209000	기타	8.0	EIF	
0105111000	번식용의 것	9.0	EIF	
0105119000	기타	9.0	EIF	
0105120000	칠면조	9.0	EIF	
0105191010	번식용의 것	0.0	EIF	
0105191090	기타	18.0	5	
0105199000	기타	9.0	EIF	
0105941000	번식용의 것	9.0	EIF	
0105949000	기타	9.0	EIF	
0105991010	번식용의 것	0.0	EIF	
0105991090	기타	18.0	5	
0105992000	칠면조	9.0	EIF	
0105999000	기타	9.0	EIF	
0106110000	영장류	8.0	EIF	
01061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0	3	
0106191000	개	8.0	3	
0106192010	번식용의 것	0.0	EIF	
0106192090	기타	8.0	3	
0106193000	사슴	8.0	EIF	
0106194000	곰	8.0	EIF	
0106195010	번식용의 것	0.0	EIF	
0106195090	기타	8.0	3	
0106196010	번식용의 것	0.0	EIF	
0106196090	기타	8.0	3	
0106199000	기타	8.0	3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106201000	뱀	8.0	EIF	
0106202000	자라	8.0	5	
0106203000	거북	8.0	EIF	
0106209000	기타	8.0	EIF	
0106310000	맹금류	8.0	5	
0106320000	앵무류(패로트류·파라키트류·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0	5	
0106390000	기타	8.0	EIF	
0106901000	양서류	8.0	EIF	
0106902010	꿀벌	8.0	EIF	
0106902090	기타	8.0	EIF	
0106903010	갯지렁이	8.0	EIF	
0106903020	실지렁이	8.0	EIF	
0106903090	기타	8.0	EIF	
0106909000	기타	8.0	EIF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0	E	
0201201000	갈비	40.0	E	
0201209000	기타	40.0	E	
0201300000	뼈 없는 것	40.0	E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	40.0	E	
0202201000	갈비	40.0	E	
0202209000	기타	40.0	E	
0202300000	뼈 없는 것	40.0	E	
02031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10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2.5	10	
0203191000	삼겹살	22.5	16	
0203199000	기타	22.5	16	
02032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5.0	16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0	10	
0203291000	삼겹살	25.0	16	
0203299000	기타	25.0	10	
0204100000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42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10	
02042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22.5	10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한 것에 한한다)	22.5	5	
02044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10	
02044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22.5	5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5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10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10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0	10	
0205002000	냉동한 것	27.0	10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0	16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206210000	혀	18.0	16	
0206220000	간(肝)	18.0	16	
0206291000	꼬리	18.0	16	
0206292000	족	18.0	16	
0206299000	기타	18.0	16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0	16	
0206410000	간	18.0	16	
0206491000	족	18.0	16	
0206499000	기타	18.0	16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0	16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8.0	10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119000	기타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20.0	10	
0207129000	기타	20.0	10	
0207131010	다리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131020	가슴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131030	날개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131090	기타	18.0	10	
0207132010	간	22.5	10	
0207132090	기타	27.0	10	
0207141010	다리	20.0	10	
0207141020	가슴	20.0	10	
0207141030	날개	20.0	10	
0207141090	기타	20.0	10	
0207142010	간	22.5	10	
0207142090	기타	27.0	10	
020724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0	5	
020725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0	5	
0207261000	절단육	18.0	5	
0207262010	간	22.5	5	
0207262090	기타	27.0	5	
0207271000	절단육	18.0	5	
0207272010	간	22.5	5	
0207272090	기타	27.0	5	
020732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0	10	
020733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340000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7351000	절단육	18.0	10	
0207352010	간	22.5	10	
0207352090	기타	27.0	10	
0207361000	절단육	18.0	10	부속서 2다 참조
0207362010	간	22.5	10	
0207362090	기타	27.0	10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1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20840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0	3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0	10	
0208901000	사슴의 것	27.0	1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0	3	
0208909090	기타	18.0	10	
0209001000	돼지 비계	3.0	EIF	
0209002000	가금의 비계	3.0	EIF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0	16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0	10	
0210190000	기타	25.0	10	
0210201000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7.0	E	
0210209000	기타	27.0	E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0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16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16	
021099103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1090	기타	22.5	16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22.5	10	
021099902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9090	기타	22.5	10	
0301101000	비단잉어	10.0	3	
0301102000	열대어	10.0	3	
0301109000	기타	10.0	3	
0301911000	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	10.0	7	
0301912000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0	7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한다)	0.0	EIF	
0301929000	기타	27% 또는 1,879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301930000	잉어	10.0	3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0	5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0	3	
0301992000	방어	10.0	EIF	
0301994010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0	EIF	
0301994090	기타	34% 또는 2,292원/kg , 양자중 고액(율)	5	
0301995000	붕장어	10.0	7	
0301996000	갯장어	10.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1997000	먹장어	10.0	3	
0301998000	넙치류	10.0	3	
0301999010	능성어	10.0	5	
0301999020	복어	10.0	EIF	
0301999030	틸라피아	10.0	3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0	3	
0301999051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0	EIF	
0301999059	기타	34.0	5	
0301999060	송어	10.0	3	
0301999070	미꾸라지	10.0	3	
0301999080	메기	10.0	EIF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0	3	
0301999092	붕어	10.0	3	
0301999093	연어	10.0	5	
0301999094	초어	10.0	EIF	
0301999095	민어	34.0	10	
0301999099	기타	10.0	5	
0302111000	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	20.0	10	
0302112000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0.0	10	
0302120000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벨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케타·양코링쿠스 차비차·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20.0	3	
0302190000	기타	20.0	3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20.0	7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20.0	5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	20.0	3	
0302290000	기타	20.0	5	
03023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20.0	5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0	7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투우	20.0	1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0.0	5	
03023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20.0	5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20.0	3	
0302390000	기타	20.0	3	
030240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20.0	3	
030250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20.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26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0	5	
03026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0	EIF	
03026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20.0	3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20.0	10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20.0	3	
0302660000	뱀장어(앵귌라종)	20.0	7	
03026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0	5	
030268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0	3	
0302691000	명태	20.0	7	
0302692000	방어	20.0	5	
0302693000	갈치	20.0	10	
0302694000	돔	20.0	7	
0302695000	붕장어	20.0	7	
0302696000	갯장어	20.0	5	
0302697000	전갱이	20.0	7	
0302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0	EIF	
0302699010	삼치	20.0	7	
0302699020	복어	20.0	5	
0302699030	병어	20.0	7	
0302699040	아귀	20.0	7	
0302699090	기타	20.0	5	
0302701000	간	20.0	3	
0302702000	어란	20.0	3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벨카)	10.0	5	
0303190000	기타	10.0	5	
0303210000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0	10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10.0	5	
0303290000	기타	10.0	5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0.0	10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10.0	5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0	5	
0303390000	기타	10.0	10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10.0	7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0	7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0.0	7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0.0	7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34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0	7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0	7	
0303490000	기타	10.0	3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10.0	5	
03035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0.0	7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0	7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0	5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0.0	10	
0303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래피누스)	10.0	EIF	
0303730000	검정대구(플라치우치 비렌스)	10.0	3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10.0	10	
0303750000	곰상어와 기타 상어	10.0	5	
0303760000	뱀장어(앵굴라종)	10.0	7	
0303770000	농어(디젠티라투스 라브락스·디젠티라투스 푼크타투스)	10.0	7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10.0	10	
0303791000	명태	30.0	E	
0303792000	은대구	10.0	5	
0303793000	갈치	10.0	10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0	10	
0303794090	기타	10.0	10	
0303795000	붕장어	10.0	7	
0303796000	조기	10.0	10	
0303797000	전갱이	10.0	10	
03037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31.0	10	
0303799010	삼치	10.0	10	
0303799020	복어	10.0	10	
0303799030	보리멸	10.0	5	
0303799040	홍살치	10.0	EIF	
0303799050	달고기	10.0	EIF	
0303799060	임연수어	10.0	5	
030379907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0	10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0	10	
0303799091	아귀	10.0	10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10.0	10	
0303799093	홍어	10.0	10	
0303799094	밀크피쉬	10.0	EIF	
0303799095	민어	53.0	E	
0303799096	가오리	10.0	5	
0303799097	까나리	10.0	10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을 제외한다)	10.0	5	
0303799099	기타	10.0	10	
0303801000	간	10.0	3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3802010	명란	10.0	7	
0303802090	기타	10.0	5	
0304111000	피레트	20.0	3	
0304112000	연육	20.0	3	
0304119000	기타	20.0	3	
0304121000	피레트	20.0	3	
0304122000	연육	20.0	3	
0304129000	기타	20.0	3	
0304191010	피레트	20.0	7	
0304191020	연육	20.0	7	
0304191090	기타	20.0	7	
0304192010	피레트	20.0	3	
0304192020	연육	20.0	3	
0304192090	기타	20.0	3	
0304193010	피레트	20.0	3	
0304193020	연육	20.0	3	
0304193090	기타	20.0	3	
0304199010	피레트	20.0	3	
0304199020	연육	20.0	3	
0304199090	기타	20.0	3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0	7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0	5	
0304291000	명태의 것	10.0	10	
0304292000	붕장어의 것	10.0	7	
0304293000	대구의 것	10.0	10	
0304294000	가자미의 것	10.0	10	
0304295000	참다랑어의 것	10.0	7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을 제외한다)의 것	10.0	5	
0304297000	틸라피아의 것	10.0	10	
0304298000	쥐치의 것	10.0	3	
0304299000	기타	10.0	3	
0304911000	냉동 연육	10.0	7	
0304919000	기타	10.0	7	
0304921000	냉동 연육	10.0	5	
0304929000	기타	10.0	5	
0304991010	냉동연육	10.0	5	
0304991090	기타	10.0	5	
0304999010	냉동연육	10.0	7	
0304999090	기타	10.0	7	
0305100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0	3	
0305201000	간	20.0	3	
0305202000	건조어란	20.0	3	
0305203000	훈제어란	20.0	3	
0305204010	명태의 것	20.0	7	
0305204020	조기의 것	20.0	3	
0305204030	청어의 것	2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5204090	기타	20.0	5	
0305301000	건조한 것	20.0	5	
030530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0	3	
03054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벨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차비차·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0	5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20.0	EIF	
0305491000	멸치	20.0	3	
0305492000	명태	20.0	5	
0305499000	기타	20.0	5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0	10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0	5	
0305592000	멸치	20.0	10	
0305593000	명태(북어)	20.0	7	
0305594000	조기(굴비)	20.0	10	
0305595000	북어	20.0	EIF	
0305596000	갯장어	20.0	3	
0305597000	까나리	20.0	3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0	EIF	
0305599000	기타	20.0	5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20.0	EIF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0	3	
0305631000	멸치젓	20.0	3	
0305639000	기타	20.0	5	
0305691000	연어	20.0	5	
0305692000	송어	20.0	10	
0305693000	갈치	20.0	5	
0305694000	정어리	20.0	3	
0305695000	고등어	20.0	10	
0305696000	조기	20.0	10	
0305697000	전갱이	20.0	1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0	EIF	
0305699000	기타	20.0	3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 수스종)	20.0	5	
03061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0	5	
0306131000	새우살	20.0	10	
0306139000	기타	20.0	10	
0306141000	게살	20.0	10	
0306142000	왕게	20.0	5	
0306143000	꽃게	14.0	10	
0306149000	기타	14.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6190000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0	7	
03062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20.0	3	
03062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0	5	
0306231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0	3	
0306232000	건조한 것	20.0	3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42% 또는 287원/kg, 양자중 고액(율)	5	
0306241010	꽃게	20.0	10	
0306241020	대게	20.0	10	
0306241090	기타	20.0	10	
0306242000	건조한 것	20.0	5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0	10	
0306291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0	7	
0306292000	건조한 것	20.0	7	
0306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0	7	
0307101011	종패용	0.0	EIF	
0307101019	기타	5.0	3	
0307101090	기타	20.0	3	
0307102000	냉동한 것	20.0	5	
0307103000	건조한 것	20.0	5	
0307104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0	3	
03072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0	7	
0307291000	냉동한 것	20.0	10	
0307292000	건조한 것	20.0	10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0	10	
03073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0	7	
0307391000	냉동한 것	20.0	5	
0307392000	건조한 것	20.0	5	
0307399000	기타	20.0	5	
0307411000	갑오징어	10.0	7	
0307412000	오징어	10.0	7	
0307491010	갑오징어	10.0	7	
0307491020	오징어	22.0	10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0	7	
0307493000	건조한 것	10.0	10	
0307511000	낙지	20.0	7	
0307512000	주꾸미	20.0	7	
0307519000	기타	20.0	7	
0307591010	문어	20.0	10	
0307591020	낙지	20.0	10	
0307591030	주꾸미	20.0	10	
0307591090	기타	20.0	7	
0307592000	건조한 것	20.0	10	
0307599000	기타	20.0	7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20.0	EIF	
0307911110	치패	20.0	3	
0307911190	기타	20.0	5	
0307911200	전복	20.0	10	
0307911300	소라	20.0	7	
0307911410	종패용	0.0	EIF	
0307911490	기타	20.0	3	
0307911510	종패용	0.0	EIF	
0307911590	기타	20.0	7	
0307911600	새조개	20.0	7	
0307911700	개아지살	20.0	7	
0307911800	바지락	20.0	7	
0307911910	재첩	20.0	3	
0307911990	기타	20.0	7	
0307919010	성게	20.0	5	
0307919020	해삼	20.0	3	
0307919031	종묘	0.0	EIF	
0307919039	기타	20.0	5	
0307919040	해파리	20.0	5	
0307919090	기타	20.0	5	
0307991110	새조개	20.0	10	
0307991120	개량조개	20.0	5	
0307991130	바지락	20.0	10	
0307991140	개아지살	20.0	10	
0307991150	피조개	20.0	10	
0307991160	소라	20.0	10	
0307991190	기타	20.0	7	
0307991910	해삼	20.0	3	
0307991920	우렁챙이	20.0	5	
0307991990	기타	20.0	10	
0307992110	개량조개	20.0	5	
0307992120	개아지살	20.0	10	
0307992130	바지락	20.0	10	
0307992190	기타	20.0	7	
0307992920	해삼	20.0	3	
0307992930	우렁챙이	20.0	5	
0307992990	기타	20.0	5	
0307993110	개량조개	20.0	7	
0307993120	바지락	20.0	10	
0307993130	소라	20.0	5	
0307993190	기타	20.0	5	
0307993910	성게	20.0	5	
0307993920	해삼	20.0	3	
0307993930	해파리	20.0	3	
0307993990	기타	20.0	5	
0401100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36.0	E	
0401200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	36.0	E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401301000	냉동크림	36.0	16	
0401309000	기타	36.0	16	
0402101010	탈지분유	176.0	E	
0402101090	기타	176.0	E	
0402109000	기타	176.0	E	
0402211000	전지분유	176.0	E	
0402219000	기타	176.0	E	
0402290000	기타	176.0	E	
0402911000	무당연유	89.0	10	부속서 2다 참조
0402919000	기타	89.0	10	부속서 2다 참조
0402991000	가당연유	89.0	E	
0402999000	기타	89.0	E	
0403101000	액상의 것	36.0	10	
0403102000	냉동한 것	36.0	10	
0403109000	기타	36.0	10	
0403901000	버터밀크	89.0	E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36.0	16	
0403903000	케피어	36.0	16	
0403909000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0	16	
0404101011	사료용	49.5	10	
0404101019	기타	49.5	10	
0404101091	사료용	49.5	E	
0404101099	기타	49.5	E	
0404102111	사료용	49.5	E	
0404102119	기타	49.5	E	
0404102121	사료용	49.5	10	
0404102129	기타	49.5	10	
0404102131	사료용	49.5	10	
0404102139	기타	49.5	10	
0404102191	사료용	49.5	16	
0404102199	기타	49.5	16	
0404102910	사료용	49.5	16	
0404102990	기타	49.5	16	
0404901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6.0	10	
0404902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36.0	10	
0405100000	버터	89.0	16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8.0	16	
0405900000	기타	89.0	16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36.0	E	
0406101020	크림 치즈	36.0	16	
0406101090	기타	36.0	16	
0406102000	커드	36.0	16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0	E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36.0	E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36.0	16	
0406901000	체더 치즈	36.0	10	부속서 2다 참조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406902000	가우더 치즈	36.0	10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36.0	10	
0406904000	에멘탈 치즈	36.0	10	
0406909000	기타	36.0	10	
0407001010	종란	27.0	10	
0407001090	기타	27.0	10	
0407009000	기타	27.0	10	
0408110000	건조한 것	27.0	12	
0408190000	기타	27.0	12	
0408910000	건조한 것	27.0	10	
0408991000	닭의 것	41.6	16	
0408999000	기타	27.0	10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원/kg , 양자중 고액(율)	16	부속서 2다 참조
0410001000	거북알	8.0	EIF	
0410002000	살랑갠 동우리	8.0	EIF	
0410003000	로열젤리	8.0	5	
0410009000	기타	8.0	EIF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3.0	EIF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3.0	EIF	
0502902000	염소털	3.0	EIF	
0502909000	기타	3.0	EIF	
0504001010	소의 것	27.0	10	
0504001090	기타	27.0	10	
0504002000	방광	27.0	10	
0504003000	위	27.0	10	
0505100000	숨털 및 충전재용 깃털	3.0	5	
0505901000	우모분	5.0	5	
0505909000	기타	5.0	5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3.0	EIF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0	EIF	
0506901020	소의 것	9.0	5	
0506901090	기타	3.0	EIF	
0506902000	골분	25.6	16	
0506909000	기타	3.0	EIF	
0507101000	상아	8.0	EIF	
0507102000	서각	8.0	EIF	
0507109000	기타	8.0	EIF	
0507901110	전지	20.0	16	
0507901190	기타	20.0	16	
0507901200	녹각	20.0	16	
0507902010	귀갑과 귀판	8.0	EIF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0	3	
0507902030	천산갑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0	EIF	
0507902090	기타	8.0	EIF	
0508001000	산호	8.0	EIF	
0508002010	진주패각	8.0	EIF	
0508002020	청패각(전복)	8.0	EIF	
0508002030	철패각과 지철패각	8.0	EIF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0	EIF	
0508002050	트로커스 패각	8.0	EIF	
0508002060	아고야 패각	8.0	EIF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리아스네보사, 앵브레마프리카타, 콰드루라 콰드루라종)	8.0	EIF	
0508002090	기타	8.0	EIF	
0508009000	기타	8.0	EIF	
0510001000	용연향	8.0	EIF	
0510002000	해리향	8.0	EIF	
0510003000	사향	8.0	EIF	
0510004000	우황	8.0	EIF	
0510005000	오령지	8.0	EIF	
0510009010	체장	8.0	EIF	
0510009020	담즙	8.0	EIF	
0510009030	합개	8.0	EIF	
0510009090	기타	8.0	EIF	
0511100000	소의 정액	0.0	EIF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8.0	EIF	
0511911090	기타	8.0	EIF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5.0	EIF	
0511919000	기타	8.0	5	
0511991000	동물의 피	8.0	EIF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0	EIF	
0511992090	기타	0.0	EIF	
0511993010	소의 것	18.0	EIF	
0511993020	돼지의 것	18.0	EIF	
0511993090	기타	0.0	EIF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0	10	
0511995011	정돈한 것	3.0	EIF	
0511995019	기타	3.0	EIF	
0511995020	마모의 웨이스트	3.0	EIF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0	EIF	
0511999010	잠종	18.0	1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0	5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8.0	EIF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8.0	EIF	
0511999090	기타	8.0	EIF	
0601101000	튤립의 것	8.0	5	
0601102000	백합의 것	4.0	3	
0601103000	다리아의 것	8.0	5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0	5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0	5	
0601107000	후리시아의 것	8.0	5	
0601108000	수선의 것	8.0	5	
0601109000	기타	8.0	5	
0601201000	튤립의 것	8.0	5	
0601202000	백합의 것	8.0	5	
0601203000	다리아의 것	8.0	5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0	5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0	5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0	5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0	5	
0601208000	후리시아의 것	8.0	5	
0601209010	수선의 것	8.0	5	
0601209090	기타	8.0	5	
0602101000	과수의 것	8.0	5	
0602109000	기타	8.0	10	
0602201000	사과나무	18.0	5	
0602202000	배나무	18.0	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0	5	
0602204000	포도나무	8.0	5	
0602205000	감나무	8.0	5	
0602206000	굴나무	18.0	5	
0602207010	밤나무	8.0	10	
0602207020	호도나무	8.0	10	
0602207030	잣나무	8.0	10	
0602209000	기타	8.0	5	
060230000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10	
0602400000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5	
0602901010	난초	8.0	5	
0602901020	카네이션	8.0	5	
0602901030	구즈마니아	8.0	5	
0602901040	안개초	8.0	5	
0602901050	국화	8.0	5	
0602901060	선인장류	8.0	5	
0602901090	기타	8.0	5	
0602902011	분재용	8.0	10	
0602902019	기타	8.0	10	
0602902020	낙엽송	8.0	10	
0602902030	삼나무	8.0	10	
0602902040	편백	8.0	10	
0602902050	리기테다	8.0	10	
0602902061	분재용	8.0	10	
0602902069	기타	8.0	10	
0602902071	분재용	8.0	10	
0602902079	기타	8.0	10	
0602902081	분재용	8.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602902089	기타	8.0	10	
0602902091	분재용	8.0	10	
0602902099	기타	8.0	10	
0602909010	목단	8.0	10	
0602909020	동백	8.0	10	
0602909030	뽕나무	18.0	5	
0602909040	버섯의 종균	8.0	5	
0602909090	기타	8.0	5	
0603110000	장미	25.0	10	
0603120000	카네이션	25.0	10	
0603131000	심비디움	25.0	10	
0603132000	팔레놉시스	25.0	10	
0603139000	기타	25.0	5	
0603140000	국화	25.0	10	
0603191000	튤립	25.0	5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0	5	
0603193000	백합	25.0	5	
0603194000	안개초	25.0	5	
0603199000	기타	25.0	10	
0603900000	기타	25.0	10	
0604100000	이끼와 지의	8.0	10	
0604911010	은행잎	8.0	10	
0604911090	기타	8.0	10	
0604919000	기타	8.0	5	
0604990000	기타	8.0	5	
0701100000	종자용	304.0	E	
0701900000	기타	304.0	E	
070200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5.0	7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03102000	쪽파	27.0	5	
0703201000	탈피한 것	360% 또는 1,80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03901000	리크	27.0	10	
0703909000	기타	27.0	10	
0704100000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27.0	10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0	10	
0704901000	양배추	27.0	5	
0704902000	배추	27.0	10	
0704909000	기타	27.0	10	
0705110000	결구상추	45.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705190000	기타	45.0	10	
0705210000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8.0	10	
0705290000	기타	8.0	5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706102000	순무	27.0	10	
0706901000	무	30.0	10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0	5	
0706903000	더덕	27.0	10	
0706904000	도라지	27.0	10	
0706909000	기타	27.0	5	
07070000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7.0	10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7.0	10	
070820000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7.0	5	
0708900000	기타 채두류	27.0	10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	27.0	3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0	10	
0709400000	셀러리(셀러리악을 제외한다)	27.0	10	
0709517000	양송이 버섯	30.0	10	
0709519000	기타	30.0	10	
0709591000	송이버섯	30.0	16	
0709592000	표고버섯	42% 또는 1,625원/kg , 양자중 고액(율)	16	
0709593000	영지버섯	30.0	1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0	10	
0709594090	기타	30.0	10	
0709595000	팽이버섯	30.0	10	
0709596000	송로	27.0	10	
0709599000	기타	30.0	10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270% 또는 6,21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09700000	시금치류	27.0	10	
0709901000	고사리	30.0	10	
0709902000	고비	27.0	10	
0709903000	호박	27.0	10	
0709909000	기타	27.0	10	
0710100000	감자	27.0	10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	27.0	7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71022000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7.0	5	
0710290000	기타	27.0	7	
0710300000	시금치류	27.0	10	
0710400000	스위트콘	30.0	7	
0710801000	양파	27.0	10	
0710802000	마늘	27.0	10	
0710803000	죽순	27.0	7	
0710804000	당근	27.0	10	
0710805000	고사리	30.0	10	
0710806000	송이버섯	27.0	16	
071080700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7.0	10	
0710809000	기타	27.0	5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0	10	
0711200000	올리브	27.0	EIF	
0711400000	오이류	30.0	10	
071151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30.0	5	
0711591000	송로	27.0	10	
0711599000	기타	30.0	5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11903000	죽순	27.0	10	
0711904000	당근	30.0	10	
0711905010	고사리	30.0	10	
0711905020	고비	27.0	10	
0711905091	고추류	270% 또는 6,21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11905099	기타	27.0	5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0	5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0	10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7123200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30% 또는 1,218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종)	30% 또는 1,218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712391010	송이버섯	30.0	16	
0712391020	표고버섯	42% 또는 1,625원/kg , 양자중 고액(율)	16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0	10	
0712391050	팽이버섯	30.0	10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712392000	송로	27.0	10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712902020	무	30.0	16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712902050	호박	30.0	10	
0712902060	양배추	30.0	10	
0712902070	토란줄기	30.0	5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0	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0	10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0	10	
0712902093	감자	27.0	10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원/kg , 양자중 고액(율)	10	
0712902095	더덕	30.0	10	
0712902099	기타	30.0	EIF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0	7	
0713101000	종자용	27.0	10	
0713102000	사료용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713109000	기타	27.0	1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	27.0	10	
0713311000	종자용	607.5	10	
0713319000	기타	607.5	10	부속서 2다 참조
0713321000	종자용	420.8	10	
0713329000	기타	420.8	10	부속서 2다 참조
0713331000	종자용	27.0	5	
0713339000	기타	27.0	10	
0713390000	기타	27.0	10	
0713400000	렌즈콩	27.0	10	
071350000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쿠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27.0	5	
0713900000	기타	27.0	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16	
0714102010	칩	887.4	16	
0714102020	펠리트	887.4	16	
0714102090	기타	887.4	16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16	
0714104000	냉동한 것	45.0	16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원/kg, 양자중 고액(율)	16	
0714202000	건조한 것	385.0	16	
0714203000	냉장한 것	385.0	16	
0714204000	냉동한 것	45.0	16	
0714209000	기타	385.0	16	
0714901010	냉동한 것	45.0	10	
0714901090	기타	18.0	10	
0714909010	냉동한 것	45.0	16	
0714909090	기타	385.0	16	
0801110000	말린 것	30.0	10	
0801190000	기타	30.0	10	
0801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30.0	10	
0801220000	탈각한 것	30.0	10	
0801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0	10	
0801320000	탈각한 것	8.0	10	
08021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0	5	
0802120000	탈각한 것	8.0	5	
0802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0	5	
0802220000	탈각한 것	8.0	5	
0802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45.0	E	
0802320000	탈각한 것	30.0	E	
0802401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19.4% 또는 1,47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802402000	탈각한 것	219.4% 또는 1,47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802500000	피스타치오	30.0	10	
0802600000	마카다미아 너트	30.0	10	
0802901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566.8% 또는 2,664원/kg , 양자중 고액(율)	16	
0802901020	탈각한 것	566.8% 또는 2,664원/kg , 양자중 고액(율)	16	
0802902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7.0% 또는 803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802902020	탈각한 것	27.0% 또는 803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802909000	기타	30.0	10	
08030000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30.0	5	
0804100000	대추야자	30.0	16	
0804200000	무화과	30.0	10	
0804300000	파인애플	30.0	10	
0804400000	애버카도우	30.0	3	
0804501000	과아버	30.0	16	
0804502000	망고	30.0	10	
0804503000	망고스틴	30.0	10	
0805100000	오렌지	50.0	S-B	
0805201000	감귤	144.0	E	
0805209000	기타	144.0	16	부속서 2다 참조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30.0	10	
0805501000	레몬(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눔)	30.0	5	
0805502010	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30.0	5	
0805502020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144.0	5	
0805900000	기타	144.0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0	S-A	
0806200000	건조한 것	21.0	10	
0807110000	수박	45.0	10	
0807190000	기타	45.0	10	
0807200000	포포우(파파야)	30.0	10	
0808100000	사과	45.0	E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808201000	배	45.0	E	
0808202000	마르멜로	45.0	10	
0809100000	살구	45.0	10	
0809200000	버찌	24.0	10	
0809300000	복숭아(빅터린을 포함한다)	45.0	10	
0809401000	자두	45.0	10	
0809402000	슬로우	45.0	10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0	10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	45.0	10	
0810400000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45.0	10	
0810500000	키위프루트	45.0	10	
0810600000	두리언	45.0	10	
0810901000	감	50.0	10	
0810902000	단감	45.0	10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810905000	매실	50.0	16	
0810909000	기타	45.0	10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0	5	
0811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 와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30.0	7	
0811901000	밤	30.0	10	
0811902000	대추	30.0	E	
0811903000	잣	30.0	E	
0811909000	기타	30.0	5	
0812100000	버찌	30.0	10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0	10	
0812909000	기타	30.0	10	
0813100000	살구	45.0	10	
0813200000	프룬	18.0	5	
0813300000	사과	45.0	10	
0813401000	감	50.0	E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813409000	기타	45.0	10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0	16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0	5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0	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2.0	EIF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8.0	5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0	5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3.0	EIF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8.0	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513.6	16	
0902200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13.6	16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40.0	10	
090240000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40.0	10	
0903000000	마태	25.0	10	
0904110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8.0	5	
09041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8.0	5	
0904201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70% 또는 6,21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90420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70% 또는 6,210원/kg , 양자중 고액(율)	E	
0905000000	바닐라	8.0	EIF	
0906110000	계피(신나모姆 제이나이쿰 블룸)	8.0	EIF	
0906191000	계피(신나모姆 제이나이쿰 블룸을 제외한다)	8.0	EIF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0	EIF	
0906201000	계피	8.0	EIF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0	EIF	
0907000000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8.0	5	
0908100000	육두구	8.0	5	
0908200000	메이스	8.0	EIF	
0908300000	소두구	8.0	EIF	
0909100000	아니스 또는 대화향의 씨	8.0	EIF	
0909200000	코리앤더의 씨	8.0	EIF	
0909300000	커민의 씨	8.0	EIF	
0909400000	캐러웨이의 씨	8.0	5	
090950000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8.0	5	
09101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중 고액(율)	16	
091010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중 고액(율)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091010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중 고액(율)	16	
0910200000	샤프란	8.0	EIF	
0910300000	심황(강황)	8.0	5	
0910910000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8.0	5	
0910991000	타임 및 월계수의 잎	8.0	EIF	
0910992000	카레	8.0	5	
0910999000	기타	8.0	EIF	
1001100000	듀럼종의 밀	3.0	EIF	
1001901000	메슬린	3.0	EIF	
1001909010	종자용	1.8	EIF	
1001909020	사료용	0.0	EIF	
1001909030	제분용	1.8	EIF	
1001909090	기타	1.8	EIF	
1002001000	종자용	108.7	10	
1002009000	기타	3.0	EIF	
1003001000	맥주맥	513.0	E	
100300901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중 고액(율)	E	
100300902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중 고액(율)	E	
1003009090	기타	299.7	16	
1004001000	종자용	554.8	10	
1004009000	기타	3.0	EIF	
1005100000	종자용	328.0	7	
1005901000	사료용	328.0	5	
1005902000	팝콘	630.0	16	
1005909000	기타	328.0		
	- 페루 자이언트 화이트 콘	328.0	10	
	- 페루 퍼플 콘	328.0	10	
	- 기타	328.0	16	
1006100000	벼	-	X	
1006201000	메현미	-	X	
1006202000	찰현미	-	X	
1006301000	멥쌀	-	X	
1006302000	찰쌀	-	X	
1006400000	쇄미	-	X	
1007001000	종자용	779.4	16	
1007009000	기타	3.0	EIF	
1008100000	메밀	256.1	16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008201010	종자용	18.0	10	
1008201090	기타	3.0	EIF	
1008209000	기타	3.0	EIF	
1008300000	카나리시드	3.0	EIF	
1008900000	기타 곡물	800.3	16	
1101001000	밀가루	4.2	3	
1101002000	메슬린 가루	5.0	EIF	
1102100000	호밀가루	5.0	EIF	
1102200000	옥수수가루	5.0	3	
1102901000	보리가루	260.0	16	
1102902000	쌀가루	-	X	
1102909000	기타	800.3	16	
1103110000	밀의 것	288.2	16	
1103130000	옥수수의 것	162.9	16	
1103191000	보리의 것	260.0	16	
1103192000	귀리의 것	554.8	16	
1103193000	쌀의 것	-	X	
1103199000	기타	800.3	16	
1103201000	밀의 것	288.2	16	
1103202000	쌀의 것	-	X	
1103203000	보리의 것	260.0	16	
1103209000	기타	800.3	16	
1104120000	귀리의 것	554.8	16	
1104191000	쌀의 것	-	X	
1104192000	보리의 것	233.0	16	
1104199000	기타	800.3	16	
1104220000	귀리의 것	554.8	16	
1104230000	옥수수의 것	167.0	16	
1104291000	울무의 것	800.3	16	
1104292000	보리의 것	126.0	16	
1104299000	기타	800.3	16	
1104301000	쌀의 것	5.0	E	
1104309000	기타	5.0	EIF	
1105100000	분·조분과 분말	304.0	16	
110520000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304.0	16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에 한한다)	8.0	5	
1106201000	참깨리의 것	8.0	5	
1106209000	기타	8.0	5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8.0	10	
1107100000	볶지 아니한 것	269.0	E	
1107201000	훈연한 것	269.0	E	
1107209000	기타	27.0	10	
1108110000	밀의 것	50.9	EIF	
1108121000	식품용	226.0	16	
1108129000	기타	226.0	16	
1108130000	감자의 것	455.0	16	
1108141000	식품용	455.0	16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108149000	기타	455.0	16	
1108191000	고구마의 껍	241.2	16	
1108199000	기타	800.3	16	
1108200000	이눌린	800.3	16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5	
120100101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16	
1201001020	사료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E	
120100901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E	
120100909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E	
120210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30.5	16	
120220000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5	16	
1203000000	코프라	3.0	EIF	
12040000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EIF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0	EIF	
1205109000	기타	10.0	5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0	EIF	
1205909000	기타	10.0	5	
120600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	5	
1207200000	면실	3.0	EIF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원/kg , 양자중 고액(율)	16	
1207500000	겨자씨	3.0	EIF	
1207910000	양귀비씨	3.0	EIF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원/kg, 양자중 고액(율)	16	
1207992000	시어넛(캐리트넛)	3.0	EIF	
1207993000	팜넛과 핵	3.0	EIF	
1207994000	피마자	3.0	EIF	
1207995000	잇꽃씨	3.0	EIF	
1207999000	기타	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208100000	대두의 것	3.0	EIF	
1208900000	기타	3.0	EIF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0	EIF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0.0	EIF	
1209220000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0.0	EIF	
1209230000	페스큐 종자	0.0	EIF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0	EIF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0.0	EIF	
1209291000	루핀종자	0.0	EIF	
1209292000	수단그래스 종자	0.0	EIF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 종자	0.0	EIF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 종자	0.0	EIF	
1209299000	기타	0.0	EIF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0	EIF	
1209911010	양파 종자	0.0	EIF	
1209911090	기타	0.0	EIF	
1209912000	무 종자	0.0	EIF	
1209919000	기타	0.0	EIF	
1209991010	참나무	0.0	EIF	
1209991090	기타	0.0	EIF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0	EIF	
1209993000	연초 종자	0.0	EIF	
1209994000	잔디 종자	0.0	EIF	
1209999000	기타	0.0	EIF	
1210100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을 제외한다)	30.0	10	
1210201000	호프	30.0	10	
1210202000	루폴린	30.0	10	
1211201100	수삼	222.8	E	
1211201210	본삼	222.8	E	
1211201290	기타	222.8	E	
1211201310	본삼	754.3	E	
1211201390	기타	754.3	E	
1211202110	분	18.0	E	
1211202120	타브렛 또는 캡슐	18.0	16	
1211202190	기타	18.0	16	
1211202210	분	754.3	E	
1211202220	타브렛 또는 캡슐	754.3	E	
1211202290	기타	754.3	E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754.3	E	
1211209200	종자	754.3	E	
1211209900	기타	754.3	E	
1211300000	코카잎	8.0	5	
1211400000	양귀비줄기	8.0	5	
1211901000	부자	8.0	5	
1211902000	황련	8.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211903000	원지	8.0	5	
1211904000	패모	8.0	5	
1211905000	두충	8.0	5	
1211906000	감초	8.0	EIF	
1211909010	사인	8.0	5	
1211909020	산조인	8.0	5	
1211909030	사군자	8.0	5	
1211909040	용안육	8.0	5	
1211909050	산사자	8.0	5	
1211909060	연자육	8.0	5	
1211909070	박하	8.0	3	
1211909080	초피	8.0	5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0	10	
1211909099	기타	8.0	3	
1212201010	마른것	20.0	3	
1212201020	냉장한 것	20.0	3	
1212201030	냉동한 것	10.0	3	
1212201090	기타	20.0	3	
1212202010	건조한 것	20.0	5	
1212202020	염장한 것	20.0	5	
1212202030	냉장한 것	20.0	5	
1212202040	냉동한 것	45.0	5	
1212202090	기타	20.0	3	
1212203010	건조한 것	20.0	5	
1212203020	냉장한 것	20.0	3	
1212203030	냉동한 것	45.0	5	
1212203090	기타	20.0	3	
1212204010	신선한 것	20.0	3	
1212204020	냉장한 것	20.0	3	
1212204030	냉동한 것	45.0	5	
1212204090	기타	20.0	3	
1212205010	염장한 것	20.0	5	
1212205020	냉장한 것	20.0	3	
1212205030	냉동한 것	45.0	5	
1212205090	기타	20.0	3	
1212206010	냉동한 것	45.0	10	
1212206090	기타	20.0	5	
1212207011	냉동한 것	45.0	7	
1212207019	기타	20.0	5	
1212207021	냉동한 것	45.0	5	
1212207029	기타	20.0	5	
1212207031	냉동한 것	45.0	3	
1212207039	기타	20.0	3	
1212208011	냉동한 것	45.0	3	
1212208019	기타	20.0	3	
1212208021	냉동한 것	45.0	3	
1212208029	기타	20.0	3	
1212208031	냉동한 것	45.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212208039	기타	20.0	3	
1212209011	냉동한 것	45.0	5	
1212209019	기타	20.0	5	
1212209091	냉동한 것	45.0	3	
1212209099	기타	20.0	5	
1212910000	사탕무	3.0	EIF	
1212991000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5	
1212992000	구약구의 뿌리	8.0	EIF	
1212993000	화분	8.0	5	
1212994000	사탕수수	3.0	EIF	
1212995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20.0	10	
1212996000	살구·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8.0	5	
1212999000	기타	8.0	EIF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5	
1214101000	사료용	1.0	EIF	
1214109000	기타	10.0	EIF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00.5	16	
1214909011	사료용	1.0	EIF	
1214909019	기타	18.0	EIF	
1214909090	기타	100.5	16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0	EIF	
1301901000	올레오레진	3.0	5	
1301902010	셀락	3.0	EIF	
1301902090	기타	3.0	EIF	
1301909000	기타	3.0	5	
1302110000	아편	8.0	5	
1302120000	감초의 것	8.0	EIF	
1302130000	호프의 것	30.0	10	
1302191110	인삼엑스	20.0	16	
1302191120	인삼엑스분	20.0	16	
1302191190	기타	20.0	16	
1302191210	홍삼엑스	754.3	E	
1302191220	홍삼엑스분	754.3	E	
1302191290	기타	754.3	E	
1302191900	기타	20.0	16	
1302192000	캐슈넛셀액	8.0	5	
1302193000	생칠	8.0	5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엑스	8.0	5	
1302199020	콜라엑스	8.0	EIF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 또는 바닐라 추출물	8.0	EIF	
1302199099	기타	8.0	3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8.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302311000	실한천	8.0	5	
1302312000	분한천	8.0	5	
1302319000	기타	8.0	5	
1302320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5	
1302390000	기타	8.0	3	
1401101000	맹종죽	8.0	5	
1401102000	청환죽	8.0	5	
1401109000	기타	8.0	5	
1401201000	쫄개거나 인발한 것	8.0	5	
1401209000	기타	8.0	5	
1401901000	최줄기껍질	8.0	5	
1401909000	기타	8.0	5	
1404200000	면린터	3.0	EIF	
1404901000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예 : 상아야자)	3.0	5	
1404902010	저피	3.0	5	
1404902020	삼아피	3.0	5	
1404902090	기타	3.0	5	
1404903010	떡갈잎	5.0	5	
1404903020	멍게잎	5.0	5	
1404903090	기타	5.0	5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케이폭·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충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5	
1404905000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EIF	
1404906010	오배자	3.0	5	
1404906020	아몬드 핵	3.0	5	
1404906090	기타	3.0	5	
1404909000	기타	3.0	5	
1501001010	산가가 1 이하인 것	3.0	EIF	
1501001090	기타	3.0	EIF	
1501002000	가금지	3.0	EIF	
1502001010	산가가 2 이하인 것	2.0	EIF	
1502001090	기타	2.0	EIF	
1502009000	기타	3.0	EIF	
1503002000	라드유	3.0	EIF	
1503009000	기타	3.0	EIF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3.0	3	
1504109000	기타	3.0	3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0	5	
1504301000	경유와 그 분획물	3.0	EIF	
1504309000	기타	3.0	3	
1505001000	조상의 올그리스	3.0	EIF	
1505009000	기타	3.0	EIF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3.0	EIF	
1506009000	기타	3.0	EIF	
1507101000	식품용	5.4	1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의 것	5.4	10	
1507109000	기타	5.4	10	
1507901010	식품용	5.4	10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의 것	5.4	10	
1507901090	기타	5.4	10	
1507909000	기타	8.0	10	
1508100000	조유	27.0	16	
1508901000	정제유	27.0	16	
1508909000	기타	27.0	16	
1509100000	버어진	8.0	5	
1509900000	기타	8.0	5	
151000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8.0	5	
1511100000	조유	3.0	EIF	
1511901000	팜올레인	2.0	EIF	
1511902000	팜스테아린	2.0	EIF	
1511909000	기타	2.0	EIF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10.0	5	
1512112000	잇꽃유	8.0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0.0	5	
1512191020	잇꽃유	8.0	EIF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10.0	5	
1512199020	잇꽃유	8.0	5	
1512210000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	5	
1512291000	정제유	5.4	5	
1512299000	기타	8.0	5	
1513110000	조유	3.0	EIF	
1513191000	정제유	3.0	EIF	
1513199000	기타	3.0	EIF	
1513211000	팜핵유	5.0	EIF	
1513212000	바바수유	8.0	EIF	
1513291010	팜핵유	5.0	EIF	
1513291020	바바수유	8.0	EIF	
1513299000	기타	8.0	EIF	
1514110000	조유	8.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514191000	정제유	10.0	10	
1514199000	기타	10.0	10	
151491100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8.0	10	
1514912000	겨자유	30.0	10	
151499101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10.0	10	
1514991020	겨자유	30.0	10	
1514999000	기타	10.0	10	
1515110000	조유	8.0	5	
1515190000	기타	8.0	5	
1515210000	조유	8.0	10	
1515290000	기타	8.0	5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8.0	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	16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0	16	
1515909010	미강유와 그 분획물	8.0	5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0	5	
1515909030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8.0	5	
1515909040	동유와 그 분획물	8.0	EIF	
1515909090	기타	8.0	5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8.0	EIF	
1516102000	경유와 그 분획물	8.0	EIF	
1516109000	기타	8.0	EIF	
151620101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6.0	16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0	10	
1516201030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36.0	10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0	16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0	16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8.0	EIF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0	EIF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0	5	
1516202040	면실유와 그 분획물	8.0	5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0	5	
1516202090	기타	8.0	5	
1517100000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8.0	5	
1517901000	이미테이션라드	8.0	EIF	
1517902000	쇼트닝	8.0	5	
1517909000	기타	8.0	5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0	5	
1518002000	에폭시화한 대두유	8.0	5	
1518009000	기타	8.0	5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8.0	EIF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0	5	
1521102000	팜왁스	8.0	EIF	
15211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521901000	경납	8.0	3	
1521902000	밀납	8.0	EIF	
1521909000	기타	8.0	EIF	
1522001010	천연의 것	8.0	EIF	
1522001090	기타	8.0	EIF	
1522009000	기타	8.0	EIF	
1601001000	소시지	18.0	10	
1601009000	기타	30.0	10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0	16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10	
1602209000	기타	30.0	1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7	
1602319000	기타	30.0	7	
1602321010	삼계탕	30.0	16	
1602321090	기타	30.0	16	
1602329000	기타	30.0	16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10	
1602399000	기타	30.0	10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16	
1602419000	기타	27.0	16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16	
1602429000	기타	27.0	16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16	
1602499000	기타	27.0	16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0	E	
1602509000	기타	72.0	E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E	
1602909000	기타	30.0	E	
1603001000	육 엑스	30.0	16	
1603002000	육즙	30.0	16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0.0	3	
1603004000	어류의 즙	30.0	3	
1603009000	기타	30.0	5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5	
1604119000	기타	20.0	3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3	
1604129000	기타	20.0	3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3	
1604139000	기타	20.0	3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0	5	
1604141012	보일드한 것	20.0	5	
1604141019	기타	20.0	5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0	5	
1604141022	보일드한 것	20.0	5	
1604141029	기타	20.0	5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0	5	
1604141032	보일드한 것	20.0	5	
1604141039	기타	20.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604149000	기타	20.0	5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5	
1604159000	기타	20.0	5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5	
1604169000	기타	20.0	5	
1604191010	콩치	20.0	10	
1604191020	전갱이	20.0	5	
1604191030	뱀장어	20.0	5	
1604191090	기타	20.0	5	
1604199010	쥐치포	20.0	3	
1604199090	기타	20.0	5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20.0	5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20.0	5	
1604203000	생선 소시지	20.0	5	
1604204010	게맛의 것	20.0	5	
1604204090	기타	20.0	5	
1604209000	기타	20.0	5	
1604301000	캐비아	20.0	EIF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20.0	5-A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3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0	3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0	3	
1605101099	기타	20.0	3	
1605109000	기타	20.0	5	
1605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3	
1605209010	훈제한 것	20.0	3	
1605209020	브레드한 것	20.0	3	
1605209090	기타	20.0	5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3	
1605309000	기타	20.0	3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	3	
1605409000	기타	20.0	3	
1605901010	굴	20.0	3	
1605901020	홍합	20.0	5	
1605901030	바지락	20.0	5	
1605901040	새조개	20.0	5	
1605901070	골뱅이	20.0	7	
1605901080	오징어	20.0	5	
1605901091	전복	20.0	5	
1605901092	소라	20.0	5	
1605901099	기타	20.0	5	
1605902010	오징어	20.0	7	
1605902020	골뱅이	20.0	5	
1605902030	새조개	20.0	5	
1605902090	기타	20.0	5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0	10	
1605909020	해삼	20.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605909030	골뱅이	20.0	7	
1605909040	홍합	20.0	7	
1605909090	기타	20.0	10	
1701111000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3.0	EIF	
170111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0	EIF	
1701121000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3.0	EIF	
170112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0	EIF	
170191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40.0	16	
1701990000	기타	40.0	16	
1702111000	유당	49.5	16	
1702119000	유당시럽	20.0	16	
1702191000	유당	49.5	16	
1702199000	유당시럽	20.0	16	
1702201000	단풍당	8.0	5	
1702202000	단풍당시럽	8.0	5	
1702301000	포도당	8.0	10	
1702302000	포도당시럽	8.0	10	
1702401000	포도당	8.0	10	
1702402000	포도당시럽	8.0	1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0	10	
1702601000	과당	8.0	10	
1702602000	과당시럽	8.0	10	
1702901000	인조꿀	243.0	16	
1702902000	캐러멜당	8.0	5	
1702903000	맥아당	8.0	5	
1702909000	기타	8.0	5	
17031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0	EIF	
1703109000	기타	3.0	EIF	
17039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0	EIF	
1703909000	기타	3.0	EIF	
170410000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5	
1704901000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다)	8.0	5	
1704902010	드롭프스	8.0	5	
1704902020	캐러멜	8.0	5	
1704902090	기타	8.0	5	
1704909000	기타	8.0	5	
1801001000	볶지 아니한 것	2.0	EIF	
1801002000	볶은 것	8.0	EIF	
1802001000	코코아두의 각과 피	8.0	5	
1802009000	기타	8.0	5	
1803100000	탈지하지 아니한 것	5.0	3	
180320000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5.0	3	
1804000000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5.0	3	
1805000000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5.0	3	
1806100000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062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0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 퍼센트 이상의 것)	8.0	5	
1806209090	기타	8.0	5	
180631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0	5	
1806319000	기타	8.0	5	
180632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0	5	
1806329000	기타	8.0	5	
18069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0	5	
1806902111	조제분유의 것	36.0	10	
1806902119	기타	40.0	10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0	5	
1806902199	기타	8.0	5	
1806902210	보리가루의 것	8.0	5	
1806902290	기타	-	X	
1806902910	맥아엑스	30.0	5	
180690292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36.0	1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0	5	
1806902992	보리가루의 것	8.0	5	
1806902999	기타	-	X	
18069030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팥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5.4	5	
1806903091	날알상의 쌀	8.0	E	
1806903099	기타	8.0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8.0	5	
1806909090	기타	8.0	5	
1901101010	조제분유	36.0	10	
1901101090	기타	40.0	10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0	5	
1901109090	기타	8.0	5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X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8.0	10	
1901209000	기타	-	X	
1901901000	맥아엑스	30.0	10	
19019020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36.0	16	
190190202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6.0	16	
1901909010	오트밀	8.0	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X	
1901909092	보리가루의 것	8.0	10	
1901909099	기타	-	X	
1902111000	스파게티	8.0	3	
1902112000	마카로니	8.0	3	
1902119000	기타	8.0	3	
1902191000	국수	8.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902192000	당면	36% 또는 284원/kg, 양자중 고액(율)	16	
1902193000	냉면	8.0	5	
1902199000	기타	8.0	3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3	
1902301010	라면	8.0	EIF	
1902301090	기타	8.0	EIF	
1902309000	기타	8.0	EIF	
1902400000	쿠우스쿠우스	8.0	EIF	
1903001000	타피오카	8.0	5	
1903009000	기타	8.0	EIF	
1904101000	콘 플레이크	5.4	EIF	
1904102000	콘 칩	5.4	EIF	
1904103000	퍼프드 라이스	5.4	10	
1904109000	기타	5.4	EIF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45.0	16	
1904209000	기타	5.4	10	
1904300000	불거소맥	8.0	EIF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0	E	
1904901090	기타	8.0	E	
1904909000	기타	8.0	10	
1905100000	귀리빵	8.0	5	
1905200000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0	5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0	3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0	5	
1905400000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8.0	3	
1905901010	식빵	8.0	3	
1905901020	건빵	8.0	3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0	3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8.0	3	
1905901050	미과	8.0	5	
1905901090	기타	8.0	3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0	3	
1905909020	ライス 페이퍼	8.0	5	
1905909090	기타	8.0	3	
2001100000	오이류	30.0	10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0	5	
2001909010	쪽파	30.0	10	
2001909020	토마토	30.0	5	
2001909030	꽃양배추	30.0	5	
2001909040	스위트콘	30.0	10	
2001909050	염교	30.0	10	
2001909060	마늘	30.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001909070	양파	30.0	10	
2001909090	기타	30.0	5	
200210000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8.0	5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에 한한다)	5.0	EIF	
2002909000	기타	8.0	5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0	5	
2003109000	기타	20.0	5	
2003200000	송로	20.0	10	
2003901000	표고버섯	20.0	16	
2003902000	송이버섯	20.0	16	
2003909000	기타	20.0	5	
2004100000	감자	18.0	16	
2004901000	스위트콘	30.0	7	
2004909000	기타	30.0	7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	20.0	7	
2005109000	기타	20.0	7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0	16	
2005209000	기타	20.0	16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0.0	5	
2005511000	녹두의 것	20.0	10	
2005512000	팥의 것	20.0	5	
2005519000	기타	20.0	16	
2005591000	녹두의 것	20.0	10	
2005592000	팥의 것	20.0	5	
2005599000	기타	20.0	10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20.0	3	
2005700000	올리브	20.0	5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0	5	
2005910000	죽순	20.0	10	
2005991000	김치	20.0	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20.0	5	
2005999000	기타	20.0	5	
2006001000	마롱 글라세	30.0	16	
2006002000	파인애플	30.0	10	
2006003000	생강	30.0	5	
2006004000	연뿌리	30.0	5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	20.0	5	
2006006010	탈각한 콩	20.0	5	
2006006090	기타	20.0	5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20.0	5	
2006008000	올리브	20.0	5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0	5	
2006009020	죽순	20.0	10	
2006009030	기타 채소의 것	20.0	5	
2006009090	기타	30.0	5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0	7	
2007911000	잼·과실젤리 및 마말레이드	30.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007919000	기타	30.0	10	
2007991000	잼 · 과일 젤리 및 마말레이드	30.0	7	
2007999000	기타	30.0	5	
2008111000	피넛 버터	50.0	16	
2008119000	기타	63.9	16	
2008191000	밤	50.0	16	
2008192000	코코넛	45.0	16	
2008199000	기타	45.0	7	
2008200000	파인애플	45.0	10	
2008301000	유자	45.0	10	
2008309000	기타	45.0	E	
2008400000	배	45.0	16	
2008500000	살구	45.0	10	
2008600000	버찌	45.0	7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0	16	
2008709000	기타	45.0	16	
2008800000	딸기	45.0	16	
2008910000	팜 하트	45.0	10	
200892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0	10	
2008921090	기타	45.0	10	
2008922000	과실 샐러드	45.0	10	
2008929000	기타	45.0	10	
2008991000	포도	45.0	10	
2008992000	사과	45.0	16	
2008993000	팝콘	45.0	10	
2008994000	염장초피	45.0	16	
2008999000	기타	45.0	7	
2009110000	냉동한 것	54.0	10	
2009120000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4.0	E	
2009190000	기타	54.0	16	
20092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0.0	16	
2009290000	기타	30.0	16	
2009311000	레몬주스	50.0	5	
2009312000	라임주스	50.0	5	
2009319000	기타	54.0	7	
2009391000	레몬주스	50.0	10	
2009392000	라임주스	50.0	5	
2009399000	기타	54.0	16	
20094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0.0	10	
2009490000	기타	50.0	10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0	10	
2009610000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0	10	
2009690000	기타	45.0	10	
20097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0	16	
2009790000	기타	45.0	16	
2009801010	복숭아주스	50.0	10	
2009801020	딸기주스	50.0	7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009801090	기타	50.0	7	
2009802000	채소주스	30.0	5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0	16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0	1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0	10	
2009901090	기타	50.0	10	
2009902000	채소의 것	30.0	10	
2009909000	기타	50.0	10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0	5	
2101119000	기타	8.0	5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0	5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0	5	
2101129090	기타	8.0	5	
2101201000	설탕·레몬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0	10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0	10	
2101209019	기타	40.0	10	
2101209090	기타	40.0	10	
2101301000	보리의 것	8.0	5	
2101309000	기타	8.0	5	
2102101000	양조효모	8.0	5	
2102102000	증류효모	8.0	5	
2102103000	제빵효모	8.0	5	
2102104000	배양효모	8.0	5	
2102109000	기타	8.0	5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0	5	
2102202000	누룩	8.0	5	
2102203010	정제상의 것	8.0	5	
2102203090	기타	8.0	5	
2102204010	정제상의 것	8.0	5	
2102204090	기타	8.0	5	
2102209000	기타	8.0	5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0	5	
2103100000	간장	8.0	5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0	1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45.0	10	
2103301000	겨자의 분과 조분	8.0	5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0	5	
2103901010	된장	8.0	5	
2103901020	춘장	8.0	5	
2103901030	고추장	45.0	10	
2103901090	기타	45.0	10	
2103909010	마요네스	8.0	5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0	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103909040	메주	16% 또는 64원/kg, 양자중 고액(율)	16	
2103909090	기타	45.0	10	
2104101000	육류의 것	18.0	7	
2104102000	어류의 것	30.0	7	
2104103000	야채의 것	18.0	7	
2104109000	기타	18.0	7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30.0	7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0	5	
2105001090	기타	8.0	5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0	5	
2105009090	기타	8.0	5	
2106101000	두부	8.0	5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0	5	
2106109030	덱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8.0	5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0	EIF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0	5	
2106901090	기타	8.0	5	
2106902000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0	5	
2106903011	인삼차	8.0	16	
2106903019	기타	8.0	16	
2106903021	홍삼차	754.3	E	
2106903029	기타	754.3	E	
2106904010	김	8.0	3	
2106904090	기타	8.0	5	
2106909010	커피크리머	8.0	5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8.0	10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	8.0	10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8.0	1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0	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8.0	5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8.0	5	
2106909060	도토리분	8.0	5	
2106909070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8.0	5	
2106909080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0.0	7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8.0	10	
2106909099	기타	8.0	5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8.0	5	
2201901000	얼음과 눈	8.0	5	
2201909000	기타	8.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202101000	착색한 것	8.0	5	
2202109000	기타	8.0	5	
2202901000	인삼음료	8.0	16	
2202902000	과즙음료	9.0	7	
2202903000	식혜	8.0	5	
2202909000	기타	8.0	EIF	
2203000000	맥주	30.0	5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15.0	5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0	5	
2204212000	흰 포도주	15.0	5	
2204219000	기타	15.0	5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0	5	
2204292000	흰 포도주	15.0	5	
2204299000	기타	15.0	5	
2204300000	기타 포도즙	30.0	10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0	10	
2205900000	기타	15.0	10	
2206001010	사과주	15.0	5	
2206001020	배술	15.0	5	
2206001090	기타	15.0	5	
2206002010	청주	15.0	5	
2206002020	약주	15.0	5	
2206002030	탁주	15.0	5	
2206002090	기타	15.0	5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 또는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0	5	
2206009090	기타	15.0	5	
2207101000	조주정	10.0	5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0	15	
2207109090	기타	30.0	5	
220720000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8.0	5	
2208201000	꼬냇	15.0	3	
2208209000	기타	15.0	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0	3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0	3	
2208303000	라이 위스키	20.0	3	
2208309000	기타	20.0	3	
2208400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20.0	3	
2208500000	진 및 제네바	20.0	3	
2208600000	보드카	20.0	3	
2208701000	인삼주	20.0	5	
2208702000	오가피주	20.0	10	
2208709000	기타	20.0	3	
2208901000	브랜드리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을 제외한다)	20.0	3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208904000	소 주	30.0	3	
2208906000	고량주	30.0	5	
2208907000	데킬라	20.0	3	
2208909000	기타	30.0	5	
2209001000	양조식초	8.0	5	
2209009000	기타	8.0	5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9.0	16	
2301102000	수지박	5.0	EIF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0	5	
2301209000	기타	5.0	5	
2302100000	옥수수의 것	5.0	EIF	
2302300000	밀의 것	2.0	EIF	
2302401000	쌀의 것	5.0	EIF	
2302409000	기타	5.0	EIF	
2302500000	채두류의 것	5.0	EIF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0	EIF	
2303200000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5.0	EIF	
2303300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5.0	EIF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	EIF	
230500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	EIF	
2306100000	면실의 것	2.0	EIF	
2306200000	아마인의 것	5.0	EIF	
2306300000	해바라기씨의 것	5.0	EIF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0	EIF	
2306490000	기타	0.0	EIF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2.0	EIF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2.0	EIF	
2306901000	참깨의 것	63% 또는 72원/kg, 양자중 고액(율)	16	
2306902000	들깨의 것	5.0	EIF	
2306903000	옥수수 배(胚)의 것	5.0	EIF	
2306909000	기타	5.0	EIF	
2307000000	포도주박과 생주석	5.0	EIF	
2308001000	도토리	5.0	1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0	10	
2308003000	면실피	5.0	EIF	
2308009000	기타	46.4	10	
2309101000	개사료	5.0	EIF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0	EIF	
2309901010	양돈용의 것	4.2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309901020	양계용의 것	4.2	EIF	
2309901030	어류용의 것	5.0	EIF	
2309901040	축우용의 것	4.2	EIF	
2309901091	대용유의 것	71.0	10	
2309901099	기타	5.0	EIF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16	
2309902020	향미제를 주로 한 것	50.6	16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0	EIF	
2309902099	기타	50.6	16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0	EIF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0	EIF	
230990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5.0	EIF	
2309903090	기타	5.0	EIF	
2309909000	기타	50.6	16	
2401101000	황색종	20.0	10	
2401102000	버어리종	20.0	10	
2401103000	오리엔트종	20.0	10	
2401109000	기타	20.0	10	
2401201000	황색종	20.0	10	
2401202000	버어리종	20.0	10	
2401203000	오리엔트종	20.0	10	
2401209000	기타	20.0	10	
2401301000	앞의 주맥	20.0	10	
2401302000	앞 부스러기	20.0	10	
2401309000	기타	20.0	10	
2402101000	시가	40.0	10	
2402102000	셔루트	40.0	10	
2402103000	시가릴로	40.0	10	
2402201000	필터담배	40.0	16	
2402209000	기타	40.0	10	
2402900000	기타	40.0	10	
2403101000	파이프 담배	40.0	10	
2403109000	기타	40.0	10	
2403911000	판상엽	32.8	10	
2403919000	기타	40.0	10	
2403991000	씹는 담배	40.0	10	
2403992000	코 담배	40.0	10	
2403993000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40.0	10	
2403999000	기타	40.0	10	
2501001010	암염	1.0	EIF	
2501001020	천일염	1.0	EIF	
2501009010	식염	8.0	EIF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0	EIF	
2501009090	기타	8.0	EIF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EIF	
2503000000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504101000	인상흑연	3.0	EIF	
2504102000	토상흑연	3.0	EIF	
2504109000	기타	3.0	EIF	
2504901000	인상흑연	3.0	EIF	
2504902000	토상흑연	3.0	EIF	
2504909000	기타	3.0	EIF	
2505100000	규사	3.0	EIF	
2505901010	점토사	3.0	EIF	
2505901020	장석사	3.0	EIF	
2505901090	기타	3.0	EIF	
2505909000	기타	3.0	EIF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0	EIF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이고 100분의 0.1 이하인 것	3.0	EIF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0	EIF	
250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EIF	
2506209000	기타	3.0	EIF	
2507001010	하소하지 아니한 것	3.0	EIF	
2507001090	기타	3.0	EIF	
2507002010	가이로메	3.0	EIF	
2507002020	기부시	3.0	EIF	
2507002090	기타	3.0	EIF	
2507009000	기타	3.0	EIF	
2508100000	벤토나이트	3.0	EIF	
2508300000	내화점토	3.0	EIF	
2508401000	산성백토	3.0	EIF	
2508402000	탈색토와 표포토	3.0	EIF	
2508409000	기타	3.0	EIF	
2508501000	홍주석	3.0	EIF	
2508502000	남정석	3.0	EIF	
2508503000	규선석	3.0	EIF	
2508600000	물라이트	3.0	EIF	
2508701000	샤모트	3.0	EIF	
2508702000	다이나스어드	3.0	EIF	
2509000000	초크	3.0	EIF	
2510101000	천연인산칼슘	0.0	EIF	
25101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1.0	EIF	
2510109000	기타	1.0	EIF	
2510201000	천연인산칼슘	3.0	EIF	
25102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3.0	EIF	
2510209000	기타	3.0	EIF	
2511100000	천연황산바륨(중정석)	3.0	EIF	
2511200000	천연탄산바륨(독중석)	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512000000	규조토(예 : 키아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3.0	EIF	
2513101000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분쇄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0	EIF	
2513109000	기타	3.0	EIF	
2513201010	금강사	3.0	EIF	
2513201020	천연커런덤	3.0	EIF	
2513201030	천연석류석	3.0	EIF	
2513201090	기타	3.0	EIF	
2513202010	금강사	3.0	EIF	
2513202020	천연커런덤	3.0	EIF	
2513202030	천연석류석	3.0	EIF	
2513202090	기타	3.0	EIF	
25140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EIF	
2514009000	기타	3.0	EIF	
2515111000	대리석	3.0	EIF	
2515112000	트래버틴	3.0	EIF	
2515121000	대리석	3.0	EIF	
2515122000	트래버틴	3.0	EIF	
251520000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및 앨러바스터	3.0	EIF	
2516110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EIF	
2516120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0	EIF	
251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EIF	
2516209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0	EIF	
25169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EIF	
2516909000	기타	3.0	EIF	
2517101000	자갈	3.0	EIF	
2517102000	쇄석	3.0	EIF	
2517109000	기타	3.0	EIF	
2517200000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EIF	
2517300000	타르매카담	3.0	EIF	
2517410000	대리석의 것	3.0	EIF	
2517491000	현무암의 것	3.0	EIF	
2517492000	화강암의 것	3.0	EIF	
2517499000	기타	3.0	EIF	
251810000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3.0	EIF	
251820000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3.0	EIF	
2518300000	응결백운석	3.0	EIF	
25191000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0	EIF	
2519901000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	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519902000	천연산화마그네슘	3.0	EIF	
2519909000	기타	3.0	EIF	
2520101000	석고	5.0	EIF	
2520102000	무수석고	5.0	EIF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0	EIF	
2520209000	기타	5.0	EIF	
2521001000	석회석	3.0	EIF	
2521009000	기타	3.0	EIF	
2522100000	생석회	3.0	EIF	
2522200000	소석회	3.0	EIF	
2522300000	수경성 석회	3.0	EIF	
2523100000	시멘트클링커	5.0	EIF	
25232100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	EIF	
2523290000	기타	5.0	EIF	
2523300000	알루미나시멘트	8.0	EIF	
2523901000	슬랙시멘트	5.0	EIF	
2523909000	기타	5.0	EIF	
2524100000	청석면	5.0	EIF	
2524901000	갈석면	5.0	EIF	
2524902000	백석면	5.0	EIF	
2524909000	기타	5.0	EIF	
252510000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갬 운모	3.0	EIF	
2525200000	운모분	3.0	EIF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	3.0	EIF	
2526101000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0	EIF	
2526109000	기타	3.0	EIF	
2526200000	파쇄 또는 분상의 것	5.0	EIF	
2528100000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EIF	
2528901000	붕산칼슘	3.0	EIF	
2528902000	염화붕산마그네슘	3.0	EIF	
2528903000	천연붕산	3.0	EIF	
2528909000	기타	3.0	EIF	
2529100000	장석	3.0	EIF	
2529211000	분말의 것	2.0	EIF	
2529219000	기타	2.0	EIF	
2529221000	분말의 것	2.0	EIF	
2529229000	기타	2.0	EIF	
2529301000	백류석	2.0	EIF	
2529302000	하석	2.0	EIF	
2529303000	하석섬장암	2.0	EIF	
2530101000	질석	3.0	EIF	
2530102000	진주암과 녹니석	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3.0	EIF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0	EIF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마암광	3.0	EIF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	3.0	EIF	
2530904000	주사	3.0	EIF	
2530905000	납석	3.0	EIF	
2530906000	불석	3.0	EIF	
2530907000	명반석	3.0	EIF	
2530908000	규회석	3.0	EIF	
2530909010	도석	3.0	EIF	
2530909020	견운모	3.0	EIF	
2530909030	어드컬러	8.0	EIF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0	EIF	
2530909050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3.0	EIF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0	EIF	
2530909099	기타	3.0	EIF	
2601111000	적철광	0.0	EIF	
2601112000	자철광	0.0	EIF	
2601119000	기타	0.0	EIF	
2601121000	적철광	0.0	EIF	
2601122000	자철광	0.0	EIF	
2601129000	기타	0.0	EIF	
2601200000	배소한 황화철광	1.0	EIF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0	EIF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0.0	EIF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	0.0	EIF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0.0	EIF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0	EIF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0.0	EIF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0.0	EIF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	0.0	EIF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0.0	EIF	
2611001000	흑중석	0.0	EIF	
2611002000	회중석	0.0	EIF	
2611009000	기타	0.0	EIF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0.0	EIF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0.0	EIF	
2613100000	배소한 것	0.0	EIF	
2613900000	기타	0.0	EIF	
2614001000	루틸(금홍석)	0.0	EIF	
2614002000	아나타스(예추석)	0.0	EIF	
2614009000	기타	0.0	EIF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0	EIF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	0.0	EIF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	0.0	EIF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	0.0	EIF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	0.0	EIF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0	EIF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0.0	EIF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0.0	EIF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0.0	EIF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	0.0	EIF	
2617904000	비스무트광과 그 정광	0.0	EIF	
2617909000	기타	0.0	EIF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2.0	EIF	
2619001010	용광로 슬랙	2.0	EIF	
2619001090	기타	2.0	EIF	
2619002000	드로스	2.0	EIF	
2619003000	스케일링	2.0	EIF	
2619009000	기타	2.0	EIF	
2620110000	경아연 스펠타	2.0	EIF	
2620190000	기타	2.0	EIF	
2620210000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2.0	EIF	
2620290000	기타	2.0	EIF	
262030000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2.0	EIF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0	EIF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2.0	EIF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0	EIF	
2620990000	기타	2.0	EIF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0	EIF	
2621900000	기타	2.0	EIF	
2701110000	무연탄	0.0	EIF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0.0	EIF	
2701122000	기타 코크스용탄	0.0	EIF	
2701129010	휘발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0	EIF	
2701129090	기타	0.0	EIF	
2701190000	기타 석탄	0.0	EIF	
2701201000	연탄	1.0	EIF	
2701202000	마찌탄	1.0	EIF	
2701209000	기타	1.0	EIF	
270210000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1.0	EIF	
2702200000	응결한 갈탄	1.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703001000	응결하지 아니한 것	1.0	EIF	
2703002000	응결한 것	1.0	EIF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0	EIF	
2704001090	기타	3.0	EIF	
2704002000	반성코크스	3.0	EIF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	3.0	EIF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5.0	EIF	
2706001000	콜타르	5.0	EIF	
2706002000	갈탄타르 또는 토탄타르	5.0	EIF	
2706009000	기타	5.0	EIF	
2707100000	벤조올(벤젠)	3.0	EIF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0	EIF	
2707300000	크실올(크실렌)	3.0	EIF	
2707400000	나프탈렌	5.0	EIF	
270750000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에 한한다]	5.0	EIF	
2707910000	크레오소트유	5.0	EIF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	5.0	EIF	
2707992000	안트라센	5.0	EIF	
2707993000	페놀(석탄산)	8.0	EIF	
2707999000	기타	5.0	EIF	
2708100000	피치	5.0	EIF	
2708200000	피치코크스	5.0	EIF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3.0	EIF	
2709001090	기타	3.0	EIF	
2709002000	역청유	3.0	EIF	
2710111000	자동차 휘발유	5.0	EIF	
2710112000	항공 휘발유	5.0	EIF	
2710113000	프로필렌데트라머	5.0	EIF	
2710114000	나프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710115000	엔·지·엘(NGL)	0.0	EIF	
2710119000	기타	5.0	EIF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0	EIF	
2710191090	기타	5.0	EIF	
2710192010	등유	5.0	EIF	
2710192020	제트 연료유	5.0	EIF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	5.0	EIF	
2710192090	기타	5.0	EIF	
2710193000	경유	5.0	EIF	
27101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5.0	EIF	
2710194020	중유(방카 비유)	5.0	EIF	
2710194030	방카 씨유	5.0	EIF	
2710194090	기타	5.0	EIF	
2710195010	조유	7.0	EIF	
2710195020	윤활유기유	7.0	EIF	
2710196000	신전유	8.0	EIF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0	EIF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0	EIF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0	EIF	
2710197210	실린더오일	7.0	EIF	
2710197220	스핀들오일	7.0	EIF	
2710197230	기어오일	7.0	EIF	
2710197240	터빈오일	7.0	EIF	
2710197250	냉동기오일	7.0	EIF	
2710197310	컴파운드오일	7.0	EIF	
2710197320	유동파라핀	7.0	EIF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0	EIF	
2710197410	방청유	7.0	EIF	
2710197420	절삭유	7.0	EIF	
2710197430	세척유	7.0	EIF	
2710197440	주형이형유	7.0	EIF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0	EIF	
2710197510	프로세스유	7.0	EIF	
2710197520	전기전열유	7.0	EIF	
2710197530	열처리유	7.0	EIF	
2710197540	열매체유	7.0	EIF	
2710197900	기타	7.0	EIF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0	EIF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0	EIF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0	EIF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0	EIF	
2710198090	기타	8.0	EIF	
2710199000	기타	8.0	EIF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0	EIF	
2710911020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0.0	EIF	
2710911090	기타	5.0	EIF	
271091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710912090	기타	5.0	EIF	
2710913000	경유의 것	5.0	EIF	
271091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5.0	EIF	
2710914090	기타	5.0	EIF	
2710915000	조유 ·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0	EIF	
2710919000	기타	8.0	EIF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0	EIF	
2710991020	나프타 및 엔 · 지 · 엘의 것	0.0	EIF	
2710991090	기타	5.0	EIF	
271099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0	EIF	
2710992090	기타	5.0	EIF	
2710993000	경유의 것	5.0	EIF	
27109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5.0	EIF	
2710994090	기타	5.0	EIF	
2710995000	조유 ·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0	EIF	
2710999000	기타	8.0	EIF	
2711110000	천연가스	3.0	EIF	
2711120000	프로판	3.0	EIF	
2711130000	부탄	3.0	EIF	
2711141000	에틸렌	5.0	EIF	
2711142000	프로필렌	5.0	EIF	
2711143000	부틸렌	5.0	EIF	
2711144000	부타디엔	5.0	EIF	
2711190000	기타	5.0	EIF	
2711210000	천연가스	3.0	EIF	
2711290000	기타	5.0	EIF	
2712101000	바셀린	8.0	EIF	
2712109000	기타	8.0	EIF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에 한한다)	8.0	EIF	
2712901010	슬랙왁스 및 스케일왁스	8.0	EIF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0	EIF	
2712901090	기타	8.0	EIF	
2712909010	몬탄왁스	8.0	EIF	
2712909020	토탄왁스	8.0	EIF	
2712909030	세레신왁스	8.0	EIF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0	EIF	
2712909090	기타	8.0	EIF	
2713110000	하소하지 아니한 것	5.0	EIF	
2713120000	하소한 것	5.0	EIF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5.0	EIF	
2713900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5.0	EIF	
2714100000	역청질혈암 ·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714901000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5.0	EIF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0	EIF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0	EIF	
2715001000	컷백	5.0	EIF	
2715002000	아스팔트·역청·피치 또는 타르의 에멀전 또는 안정분산액	5.0	EIF	
2715003000	매스틱	5.0	EIF	
2715009000	기타	5.0	EIF	
2716000000	전기에너지	5.0	EIF	
2801100000	염소	5.5	EIF	
2801200000	요드	5.5	EIF	
2801301000	플루오르	5.5	EIF	
2801302000	브롬	5.5	EIF	
2802001000	승화황	5.0	EIF	
2802002000	침강황	5.0	EIF	
2802003000	콜로이드황	5.0	EIF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EIF	
2803009010	카본 블랙	5.5	EIF	
2803009090	기타	5.5	EIF	
2804100000	수소	5.5	EIF	
2804210000	아르곤	5.5	EIF	
2804291000	헬륨	5.5	EIF	
2804292000	네온	5.5	EIF	
2804293000	크립톤	5.5	EIF	
2804294000	크세논	5.5	EIF	
2804299000	기타	5.5	EIF	
2804300000	질소	5.5	EIF	
2804400000	산소	5.5	EIF	
2804501000	붕소	5.5	EIF	
2804502000	텔루르	5.5	EIF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0	EIF	
2804690000	기타	5.5	EIF	
2804701000	황린	5.0	EIF	
2804709000	기타	5.5	EIF	
2804800000	비스	5.5	EIF	
2804900000	셀렌	5.5	EIF	
2805110000	나트륨	5.5	EIF	
2805120000	칼슘	5.5	EIF	
2805190000	기타	5.5	EIF	
2805301000	세륨그룹	5.5	EIF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EIF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EIF	
2805304000	이트륨	5.5	EIF	
2805305000	스칸듐	5.5	EIF	
2805309000	기타	5.5	EIF	
2805400000	수은	5.5	EIF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EIF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07001090	기타	5.5	EIF	
2807002000	발연황산	5.5	EIF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08001090	기타	5.5	EIF	
2808002000	황질 산	5.5	EIF	
2809100000	오산화인	5.5	EIF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09201090	기타	5.5	EIF	
2809202010	메타인산	5.5	EIF	
2809202020	피로이산	5.5	EIF	
2809202090	기타	5.5	EIF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EIF	
2810001090	기타	5.5	EIF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EIF	
2810003000	메타붕산	5.5	EIF	
2810009000	기타	5.5	EIF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11119000	기타	5.5	EIF	
2811191000	황화수소	5.5	EIF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EIF	
2811193000	술파민산	5.5	EIF	
2811194000	과염소산	5.5	EIF	
2811195000	염소산	5.5	EIF	
2811196000	하이포아민산	5.5	EIF	
2811197000	아민산	5.5	EIF	
2811198000	비산	5.5	EIF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5.5	EIF	
2811199090	기타	5.5	EIF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EIF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EIF	
2811229010	실리카겔	5.5	EIF	
2811229090	기타	5.5	EIF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EIF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EIF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EIF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EIF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EIF	
2811299000	기타	5.5	EIF	
2812101010	삼염화요드	5.0	EIF	
2812101020	포스포르스 트리클로라이드	5.0	EIF	
2812101030	포스포르스 펜타클로라이드	5.0	EIF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0	EIF	
281210105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0	EIF	
2812101060	설퍼 디클로라이드	5.0	EIF	
2812101090	기타	5.0	EIF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0	EIF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0	EIF	
2812102090	기타	5.0	EIF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EIF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EIF	
2812909000	기타	5.5	EIF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EIF	
2813901020	오황화인	5.5	EIF	
2813901090	기타	5.5	EIF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EIF	
2813902090	기타	5.5	EIF	
2813903000	황화규소	5.5	EIF	
2813909000	기타	5.5	EIF	
2814100000	무수암모니아	1.0	EIF	
2814200000	암모니아수	2.0	EIF	
2815110000	고체의 것	5.5	EIF	
2815120000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8.0	EIF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5.5	EIF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EIF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EIF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EIF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EIF	
281640000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EIF	
2817001000	산화아연	5.5	EIF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EIF	
2818101000	선별된 입상의 것	3.0	EIF	
2818109000	기타	3.0	EIF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1.0	EIF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EIF	
2818309000	기타	5.5	EIF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EIF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EIF	
2819901090	기타	5.5	EIF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EIF	
2820100000	이산화망간	5.5	EIF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EIF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EIF	
2820909000	기타	5.5	EIF	
2821101000	산화철	5.5	EIF	
2821102000	수산화철	5.5	EIF	
2821200000	어드컬러	5.5	EIF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EIF	
282200109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0	EIF	
2822001099	기타	5.5	EIF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EIF	
2822002090	기타	5.5	EIF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23009000	기타	5.5	EIF	
2824100000	일산화연(리타지·메시코트)	5.5	EIF	
2824901000	연단 및 오렌지연	5.5	EIF	
2824909000	기타	5.5	EIF	
2825101000	히드라진 하이드레이트	5.5	EIF	
2825109010	히드라진	5.5	EIF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5.5	EIF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EIF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EIF	
2825109049	기타	5.5	EIF	
2825201000	산화리튬	5.5	EIF	
2825202000	수산화리튬	5.5	EIF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2.0	EIF	
2825309000	기타	3.0	EIF	
2825401000	산화니켈	5.5	EIF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EIF	
2825501000	산화동	5.5	EIF	
28255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825502090	기타	5.5	EIF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EIF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EIF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0	EIF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EIF	
2825800000	산화안티몬	5.5	EIF	
2825901010	산화칼슘	5.5	EIF	
2825901020	산화텅스텐	1.0	EIF	
2825901030	산화석	5.5	EIF	
2825901090	기타	5.5	EIF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EIF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EIF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EIF	
2825902040	수산화석	5.5	EIF	
2825902090	기타	5.5	EIF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EIF	
2825903090	기타	5.5	EIF	
2825909000	기타	5.5	EIF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EIF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EIF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EIF	
2826193090	기타	5.5	EIF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5.5	EIF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EIF	
2826199000	기타	5.5	EIF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방정석))	5.5	EIF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EIF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EIF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EIF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EIF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EIF	
2826909000	기타	5.5	EIF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EIF	
2827200000	염화칼슘	5.5	EIF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EIF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EIF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EIF	
2827391000	동염화물	5.5	EIF	
2827399000	기타	5.5	EIF	
2827411000	산화염화동	5.5	EIF	
282741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827412090	기타	5.5	EIF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EIF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EIF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EIF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EIF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EIF	
2827599000	기타	5.5	EIF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EIF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EIF	
2827609090	기타	5.5	EIF	
2828100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EIF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EIF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EIF	
2828901090	기타	5.5	EIF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EIF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EIF	
2828902090	기타	5.5	EIF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EIF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EIF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EIF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EIF	
2829199000	기타	5.5	EIF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EIF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EIF	
2829901090	기타	5.5	EIF	
2829902010	브롬산염	5.5	EIF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EIF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EIF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EIF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30109000	기타	5.5	EIF	
2830901000	황화물	5.5	EIF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EIF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EIF	
2831102000	술포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포실산나트륨)	5.5	EIF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EIF	
2831902000	술포실산염	5.5	EIF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EIF	
2832109000	기타	5.5	EIF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EIF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EIF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EIF	
2832209000	기타	5.5	EIF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EIF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EIF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EIF	
2832309000	기타	5.5	EIF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EIF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EIF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EIF	
2833199000	기타	5.5	EIF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EIF	
2833220000	황산알루미늄	5.5	EIF	
2833240000	황산니켈	5.5	EIF	
283325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833259000	기타	5.5	EIF	
2833270000	황산바륨	5.5	EIF	
2833291000	황산철	5.5	EIF	
2833299000	기타	5.5	EIF	
2833300000	명반	5.5	EIF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EIF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EIF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EIF	
2833409000	기타	5.5	EIF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EIF	
2834109000	기타	5.5	EIF	
2834210000	질산칼륨	5.5	EIF	
2834291000	질산바륨	5.5	EIF	
2834299000	기타	5.5	EIF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EIF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EIF	
2835101090	기타	5.5	EIF	
2835102000	아인산염	5.5	EIF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EIF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EIF	
2835240000	인산칼륨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EIF	
2835260000	기타 인산칼슘	5.5	EIF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EIF	
2835299000	기타	5.5	EIF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EIF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EIF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EIF	
2835399000	기타	5.5	EIF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4.0	EIF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EIF	
2836400000	탄산칼륨	5.5	EIF	
2836500000	탄산칼슘	5.5	EIF	
2836600000	탄산바륨	5.5	EIF	
2836910000	탄산리튬	5.5	EIF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EIF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EIF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기타 탄산암모늄	5.5	EIF	
2836991090	기타	5.5	EIF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EIF	
2837111000	시아나화나트륨	5.5	EIF	
2837112000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EIF	
2837191010	시아나화칼륨	5.5	EIF	
2837191020	시아나화동	5.5	EIF	
2837191030	시아나화아연	5.5	EIF	
2837191090	기타	5.5	EIF	
2837192000	산화시아나화물	5.5	EIF	
2837201000	페로시아나화물	5.5	EIF	
2837202000	페리시아나화물	5.5	EIF	
2837209000	기타	5.5	EIF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EIF	
2839190000	기타	5.5	EIF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EIF	
2839902000	규산바륨	5.5	EIF	
2839909000	기타	5.5	EIF	
2840110000	무수물	5.0	EIF	
2840190000	기타	5.0	EIF	
2840200000	기타 붕산염	5.0	EIF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0	EIF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EIF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EIF	
2841509000	기타	5.5	EIF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EIF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EIF	
2841692000	망간산염	5.5	EIF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EIF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EIF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5.0	EIF	
2841901000	석산염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41902010	티탄산바름	5.5	EIF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EIF	
2841902030	티탄산납	5.5	EIF	
2841902090	기타	5.5	EIF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EIF	
2841904000	철산염 및 아철산염	5.5	EIF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EIF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EIF	
2841909000	기타	5.5	EIF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EIF	
2842109000	기타	5.5	EIF	
2842901000	셀렌산염	5.5	EIF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 또는 착염	5.5	EIF	
2842905000	셀렌의 겐염 또는 착염	5.5	EIF	
2842909000	기타	5.5	EIF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EIF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EIF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EIF	
2843109000	기타	5.5	EIF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43219000	기타	5.5	EIF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43299000	기타	5.5	EIF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EIF	
2843309000	기타	5.5	EIF	
2843901000	아말감	5.5	EIF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EIF	
2843909090	기타	5.5	EIF	
2844101000	천연우라늄	0.0	EIF	
2844102000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2844109000	기타	0.0	EIF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0	EIF	
2844202000	분산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 또는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0.0	EIF	
2844209000	기타	0.0	EIF	
2844301000	분산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2844309000	기타	0.0	EIF	
2844401000	방사성원소	0.0	EIF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0	EIF	
2844403000	분산물(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2844409000	기타	0.0	EIF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0.0	EIF	
2845100000	중수(산화 중수소)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45901000	중수소	0.0	EIF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0	EIF	
2845909000	기타	0.0	EIF	
2846100000	세륨화합물	5.0	EIF	
2846901000	산화이트륨	5.0	EIF	
2846909000	기타	5.0	EIF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847009000	기타	5.5	EIF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	EIF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EIF	
2848009000	기타	5.5	EIF	
2849100000	탄화칼슘	5.5	EIF	
2849200000	탄화규소	5.0	EIF	
2849901000	복탄화물	5.5	EIF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EIF	
2849909090	기타	5.5	EIF	
2850001000	수소화물	5.5	EIF	
2850002000	질화물	5.5	EIF	
2850003000	아지화물	5.5	EIF	
2850004000	규화물	5.5	EIF	
2850005000	붕화물	5.5	EIF	
28520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8.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00호의 것	5.5	EIF	
2852002000	소호 제2918.11호, 제2931.00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또는 제3822.00.2091호의 것	6.5	EIF	
2852003000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또는 제3822.00.2092호의 것	6.5	EIF	
2852004000	소호 제3502.90호 또는 제3504.00호의 것	8.0	EIF	
2852005000	제3822.00.101호, 제3822.00.102호, 제3822.00.1093호, 제3822.00.201호, 제3822.00.202호 또는 제3822.00.2093호의 것	0.0	EIF	
2852006000	제3822.00.1099호 또는 제3822.00.2099호의 것	8.0	EIF	
2853001000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EIF	
2853002000	압축공기	5.5	EIF	
2853003000	아말감	5.5	EIF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853004090	기타	5.5	EIF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EIF	
2853009000	기타	5.5	EIF	
2901101000	부탄	0.0	EIF	
2901102000	핵산	0.0	EIF	
2901103000	헬탄	0.0	EIF	
2901109000	기타	0.0	EIF	
2901210000	에틸렌	0.0	EIF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0	EIF	
2901230000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0.0	EIF	
2901241000	1,3-부타디엔	0.0	EIF	
2901242000	이소프렌	0.0	EIF	
2901291000	핵센	0.0	EIF	
2901292000	옥텐	0.0	EIF	
2901299000	기타	0.0	EIF	
2902110000	시클로hex산	5.0	EIF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0	EIF	
2902199000	기타	5.0	EIF	
2902200000	벤젠	3.0	EIF	
2902300000	톨루엔	3.0	EIF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0	EIF	
2902420000	메타-크실렌	5.0	EIF	
2902430000	파라-크실렌	3.0	EIF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0	EIF	
2902500000	스티렌	0.0	EIF	
2902600000	에틸벤젠	5.0	EIF	
2902700000	큐멘	3.0	EIF	
2902901000	나프탈렌	0.0	EIF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0	EIF	
2902903000	메틸스티렌	0.0	EIF	
2902909000	기타	0.0	EIF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EIF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EIF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EIF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EIF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EIF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0	EIF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EIF	
2903199000	기타	5.5	EIF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EIF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EIF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EIF	
2903290000	기타	5.5	EIF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이브로모에탄)	5.5	EIF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EIF	
2903392000	브로모에탄(1,2-이브로모에탄을 제외한다)	5.5	EIF	
2903393000	요드메탄	5.5	EIF	
2903394000	hexafluoroethane(CFC-116)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EIF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EIF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EIF	
2903399000	기타	5.5	EIF	
2903410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EIF	
2903420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EIF	
2903430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EIF	
290344100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5.5	EIF	
290344200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5.5	EIF	
290345101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5.5	EIF	
2903451090	기타	5.5	EIF	
2903452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5.5	EIF	
2903452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5.5	EIF	
2903452090	기타	5.5	EIF	
2903453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5.5	EIF	
2903453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5.5	EIF	
2903453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5.5	EIF	
2903453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5.5	EIF	
2903453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5.5	EIF	
2903453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5.5	EIF	
2903453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5.5	EIF	
2903453090	기타	5.5	EIF	
29034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5.5	EIF	
29034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5.5	EIF	
29034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5.5	EIF	
2903471000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5.5	EIF	
2903479000	기타	5.5	EIF	
29034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5.5	EIF	
290349112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5.5	EIF	
290349113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5.5	EIF	
2903491190	기타	5.5	EIF	
290349121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5.5	EIF	
290349122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5.5	EIF	
290349123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5.5	EIF	
290349124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5.5	EIF	
2903491290	기타	5.5	EIF	
290349131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5.5	EIF	
2903491390	기타	5.5	EIF	
2903492000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 에탄 · 프로판의 유도체	5.5	EIF	
2903499000	기타	5.5	EIF	
29035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을 포함한다(ISO, INN)]	5.5	EIF	
2903520000	알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03590000	기타	5.5	EIF	
2903611000	클로로벤젠	5.5	EIF	
2903619000	기타	5.5	EIF	
2903621000	헥사클로로벤젠 (ISO)	5.5	EIF	
29036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EIF	
2903691000	염화벤질	5.5	EIF	
29036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EIF	
2903692090	기타	5.5	EIF	
29036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EIF	
2903699000	기타	5.5	EIF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EIF	
2904109000	기타	5.5	EIF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EIF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EIF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그 염	5.5	EIF	
2904209090	기타	5.5	EIF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EIF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EIF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EIF	
2904909000	기타	5.5	EIF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0	EIF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EIF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905122090	기타	5.5	EIF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0	EIF	
2905140000	기타 부탄올	5.5	EIF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EIF	
2905169000	기타	5.5	EIF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EIF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EIF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EIF	
2905191000	헵탈알코올	5.5	EIF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EIF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0	EIF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EIF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0	EIF	
2905199020	2-프로필-헵탈 알코올	5.0	EIF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0	EIF	
2905199090	기타	5.0	EIF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올·리날롤·로디놀 및 네올	5.0	EIF	
2905229000	기타	5.0	EIF	
2905290000	기타	5.0	EIF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0	EIF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EIF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EIF	
2905399000	기타	5.5	EIF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EIF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EIF	
2905430000	만니톨	8.0	5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0	5	
2905450000	글리세롤	8.0	EIF	
2905490000	기타	5.5	EIF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EIF	
2905590000	기타	5.5	EIF	
2906110000	멘톨	5.5	EIF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EIF	
2906131000	스테롤	5.5	EIF	
2906132000	이노시톨	5.5	EIF	
2906191000	보르네올	5.5	EIF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EIF	
2906199000	기타	5.5	EIF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EIF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EIF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EIF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EIF	
2906299000	기타	5.5	EIF	
2907111000	페놀	5.5	EIF	
2907112000	페놀의 염	5.5	EIF	
2907121000	크레졸	5.5	EIF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EIF	
2907131000	옥틸페놀	5.5	EIF	
2907132000	노닐페놀	5.0	EIF	
2907139000	기타	5.5	EIF	
2907151000	나프톨	5.5	EIF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EIF	
2907191000	티몰	5.5	EIF	
2907192000	크실레놀과 그들의 염	5.5	EIF	
2907199000	기타	5.5	EIF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EIF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EIF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EIF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EIF	
29072310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EIF	
29072320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EIF	
2907291000	카테콜	5.5	EIF	
2907299000	기타	5.5	EIF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0	EIF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을 제외한다)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0	EIF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0	EIF	
2908199000	기타	5.0	EIF	
2908910000	디노샘(ISO)과 그 염	5.5	EIF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5.5	EIF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EIF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EIF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EIF	
2908999000	기타	5.5	EIF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EIF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EIF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EIF	
2909199000	기타	5.5	EIF	
2909201000	시네올	5.5	EIF	
2909209000	기타	5.5	EIF	
2909301000	아니솔	5.5	EIF	
2909302000	아네톨	5.5	EIF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EIF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5.5	EIF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EIF	
29093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09309090	기타	5.5	EIF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EIF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EIF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 에테르	5.5	EIF	
2909449000	기타	5.5	EIF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EIF	
2909499000	기타	5.5	EIF	
2909501000	오이게놀	5.5	EIF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EIF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EIF	
2909509000	기타	5.5	EIF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EIF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EIF	
2909603000	메탈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EIF	
2909609000	기타	5.5	EIF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0	EIF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EIF	
2910300000	1-클로로-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히드린)	5.5	EIF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EIF	
2910900000	기타	5.5	EIF	
2911001010	아세탈	5.5	EIF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EIF	
2911009000	기타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EIF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EIF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EIF	
2912192000	시틀알	5.5	EIF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EIF	
2912199000	기타	5.5	EIF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EIF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EIF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EIF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EIF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EIF	
2912299000	기타	5.5	EIF	
2912301000	히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	5.5	EIF	
2912309000	기타	5.5	EIF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0	EIF	
2912420000	에틸바닐린(3-메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EIF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EIF	
2912499000	기타	5.5	EIF	
2912501000	트리옥산	5.5	EIF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EIF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EIF	
2912509000	기타	5.5	EIF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EIF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EIF	
2914110000	아세톤	5.5	EIF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0	EIF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EIF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EIF	
2914199000	기타	5.5	EIF	
2914210000	장뇌	5.0	EIF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0	EIF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0	EIF	
2914231000	이오논	5.0	EIF	
2914232000	메틸이오논	5.0	EIF	
2914291000	자스몬	5.0	EIF	
2914299000	기타	5.0	EIF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EIF	
2914390000	기타	5.5	EIF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 2-온)	5.5	EIF	
2914409000	기타	5.5	EIF	
2914501000	케톤-페놀	5.5	EIF	
2914509000	기타	5.5	EIF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EIF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14699010	퀴논알코올 · 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EIF	
2914699090	기타	5.5	EIF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0	EIF	
2914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4709090	기타	5.0	EIF	
2915110000	포름산	5.5	EIF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EIF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EIF	
2915129000	기타	5.5	EIF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EIF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EIF	
2915139000	기타	5.5	EIF	
2915210000	초산	5.5	EIF	
2915240000	무수초산	5.5	EIF	
2915291000	초산칼슘	5.5	EIF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EIF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EIF	
2915299000	기타	5.5	EIF	
2915310000	초산에틸	5.5	EIF	
2915320000	초산비닐	5.5	EIF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EIF	
2915339000	기타	5.5	EIF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EIF	
2915391000	초산아밀	5.5	EIF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EIF	
2915393000	초산메틸	5.5	EIF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EIF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5.5	EIF	
2915399000	기타	5.5	EIF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EIF	
2915409000	기타	5.5	EIF	
2915500000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5	EIF	
2915600000	부탄산 · 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5	EIF	
2915701000	팔미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5	EIF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EIF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EIF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EIF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EIF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EIF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EIF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EIF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EIF	
2915702090	기타	5.5	EIF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EIF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EIF	
2915909090	기타	5.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16111000	아크릴산	6.5	EIF	
2916119000	기타	6.5	EIF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EIF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EIF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EIF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EIF	
2916129000	기타	6.5	EIF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EIF	
2916139000	기타	6.5	EIF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EIF	
2916149000	기타	6.5	EIF	
2916151000	올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EIF	
2916152000	리놀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EIF	
2916153000	리놀렌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EIF	
2916190000	기타	6.5	EIF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EIF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EIF	
2916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6209090	기타	6.5	EIF	
2916311000	벤조산	6.5	EIF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EIF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EIF	
291631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6319090	기타	6.5	EIF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EIF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EIF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EIF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EIF	
2916351000	페닐아세트산에틸	6.5	EIF	
2916352000	페닐아세트산이소부틸	6.5	EIF	
2916353000	페닐아세트산이소아밀	6.5	EIF	
2916359000	기타	6.5	EIF	
2916360000	비나파크릴(ISO)	6.5	EIF	
2916391000	계피산	6.5	EIF	
2916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6399090	기타	6.5	EIF	
2917111000	옥살산	6.5	EIF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EIF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7121000	아디프산	6.5	EIF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EIF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EIF	
2917123090	기타	6.5	EIF	
2917131000	아젤라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EIF	
2917132000	세바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EIF	
2917191000	말레산	6.5	EIF	
2917192000	숙신산	6.5	EIF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EIF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EIF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EIF	
2917199000	기타	6.5	EIF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과 그들의 유도체	6.5	EIF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EIF	
2917329000	기타	6.5	EIF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6.5	EIF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EIF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헥틸	6.5	EIF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EIF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EIF	
2917349000	기타	6.5	EIF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EIF	
2917361000	테레프탈산	3.0	EIF	
2917369000	기타	6.5	EIF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EIF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EIF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EIF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EIF	
2917399000	기타	6.5	EIF	
2918111000	락트산	6.5	EIF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EIF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EIF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EIF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8140000	시트르산	6.5	EIF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EIF	
2918151090	기타	6.5	EIF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8161000	글루콘산	6.5	EIF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EIF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EIF	
2918191010	말산	6.5	EIF	
2918191090	기타	6.5	EIF	
2918192010	말산의 염	6.5	EIF	
2918192090	기타	6.5	EIF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EIF	
2918193090	기타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18194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EIF	
2918199000	기타	6.5	EIF	
2918211000	살리실산	6.5	EIF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EIF	
2918212090	기타	6.5	EIF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EIF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산의 염	6.5	EIF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EIF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EIF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EIF	
2918231090	기타	6.5	EIF	
2918232000	기타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EIF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EIF	
2918299010	갈산	6.5	EIF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6.5	EIF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EIF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EIF	
2918299090	기타	6.5	EIF	
29183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8309000	기타	6.5	EIF	
2918910000	2,4,5-티(ISO)(2,4,5- 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및 에스테르	6.5	EIF	
29189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8999000	기타	6.5	EIF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EIF	
291990101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19901019	기타	6.5	EIF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EIF	
2919901090	기타	6.5	EIF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EIF	
2919909000	기타	6.5	EIF	
29201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0119000	기타	6.5	EIF	
2920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 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6.5	EIF	
2920199090	기타	6.5	EIF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EIF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EIF	
2920901090	기타	6.5	EIF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EIF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EIF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EIF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EIF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EIF	
29209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0909090	기타	6.5	EIF	
2921111010	메틸아민	6.5	EIF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EIF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EIF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EIF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EIF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EIF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EIF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EIF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EIF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 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EIF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EIF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 클로로에틸)아민]	6.5	EIF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EIF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 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EIF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21199090	기타	6.5	EIF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EIF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EIF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EIF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EIF	
2921229000	기타	6.5	EIF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0	EIF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0	EIF	
2921299000	기타	5.0	EIF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EIF	
2921309000	기타	6.5	EIF	
2921411000	아닐린	6.5	EIF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EIF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EIF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EIF	
292142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1429090	기타	6.5	EIF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EIF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EIF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EIF	
2921439010	톨루이딘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2143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1439099	기타	6.5	EIF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EIF	
2921449000	기타	6.5	EIF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EIF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EIF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EIF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0	EIF	
2921459090	기타	6.5	EIF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214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1499000	기타	6.5	EIF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EIF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EIF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EIF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EIF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EIF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EIF	
2921519090	기타	6.5	EIF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EIF	
2921599010	벤지딘	6.5	EIF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EIF	
2921599030	4,4' 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EIF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EIF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EIF	
2921599090	기타	6.5	EIF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EIF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EIF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EIF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EIF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0	EIF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EIF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EIF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EIF	
2922193010	엔, 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22193020	엔, 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22193090	기타	6.5	EIF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EIF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EIF	
2922199000	기타	6.5	EIF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EIF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0	EIF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EIF	
2922219000	기타	6.5	EIF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EIF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EIF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EIF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EIF	
2922299040	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6.5	EIF	
2922299090	기타	6.5	EIF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노르메타돈(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염	6.5	EIF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EIF	
2922399000	기타	6.5	EIF	
2922411000	리신	6.5	EIF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EIF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EIF	
2922421000	글루탐산	5.0	EIF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EIF	
2922423000	기타 글루탐산의 염	6.5	EIF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EIF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EIF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EIF	
2922491000	글리신	6.5	EIF	
2922492000	알라닌	6.5	EIF	
2922493000	류우신	6.5	EIF	
2922494000	바린	6.5	EIF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EIF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EIF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EIF	
2922499000	기타	6.5	EIF	
2922501000	세린	6.5	EIF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EIF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 프로판디올	6.5	EIF	
2922504000	디알파하이드록시페닐글리신	6.5	EIF	
29225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2509090	기타	6.5	EIF	
2923101000	콜린	6.5	EIF	
2923102000	콜린의 염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23201000	레시틴	6.5	EIF	
2923202000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EIF	
2923900000	기타	6.5	EIF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EIF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EIF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EIF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EIF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EIF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EIF	
2924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4199090	기타	6.5	EIF	
29242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4219000	기타	6.5	EIF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6.5	EIF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EIF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6.5	EIF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EIF	
2924291090	기타	6.5	EIF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5.0	EIF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EIF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메프롤	0.0	EIF	
2924299092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4299099	기타	6.5	EIF	
2925111000	사카린	6.5	EIF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EIF	
2925120000	구루테치마이드(INN)	6.5	EIF	
2925191000	프탈아미드	6.5	EIF	
2925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5199090	기타	6.5	EIF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EIF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EIF	
2925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5299090	기타	6.5	EIF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EIF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아디아미드)	6.5	EIF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및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 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EIF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EIF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EIF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26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6909099	기타	6.5	EIF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EIF	
2927001900	기타	6.5	EIF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EIF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EIF	
2927002990	기타	6.5	EIF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EIF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EIF	
2928009010	페릴랄틴	6.5	EIF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EIF	
2928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28009099	기타	6.5	EIF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EIF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EIF	
2929109000	기타	6.5	EIF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EIF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EIF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6.5	EIF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EIF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6.5	EIF	
2929909000	기타	6.5	EIF	
2930201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0201090	기타	6.5	EIF	
29302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0202090	기타	6.5	EIF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폰파이드	6.5	EIF	
2930302000	티우람디술폰파이드	6.5	EIF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폰파이드	6.5	EIF	
2930400000	메티오닌	6.5	EIF	
2930501000	캡타폴(ISO)	6.5	EIF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EIF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EIF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EIF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EIF	
29309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0902099	기타	6.5	EIF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0903020	티오페놀	6.5	EIF	
2930903030	엔, 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EIF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 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	6.5	EIF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EIF	
2930904090	기타	6.5	EIF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탈술파이드	6.5	EIF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EIF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EIF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EIF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 프로판	6.5	EIF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EIF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EIF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EIF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5	EIF	
2930905090	기타	6.5	EIF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그들의 알킬화 혹은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 (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 및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EIF	
2930909010	티오산	6.5	EIF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EIF	
2930909030	시스테인	6.5	EIF	
2930909040	시스틴	6.5	EIF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EIF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6.5	EIF	
293090907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6.5	EIF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EIF	
2930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0909099	기타	6.5	EIF	
2931002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EIF	
2931002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1002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EIF	
29310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1002099	기타	6.5	EIF	
293100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그들에 대한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	6.5	EIF	
29310033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EIF	
29310034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EIF	
2931003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EIF	
29310037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EIF	
2931003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EIF	
2931003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EIF	
2931003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EIF	
2931003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EIF	
2931003915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1003919	기타	6.5	EIF	
2931004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EIF	
2931004090	기타	6.5	EIF	
2931005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EIF	
293100502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EIF	
2931005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EIF	
293100504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EIF	
2931005090	기타	6.5	EIF	
29310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EIF	
29310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EIF	
2931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1009099	기타	6.5	EIF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EIF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EIF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EIF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EIF	
2932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2199000	기타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2211000	쿠마린	5.0	EIF	
2932212000	메틸쿠마린	5.0	EIF	
2932213000	에틸쿠마린	5.0	EIF	
2932291000	노나라톤	5.0	EIF	
2932292000	운데카라톤	5.0	EIF	
2932293000	부티로라톤	5.0	EIF	
2932294000	산토닌	5.0	EIF	
2932295000	페놀프탈레인	5.0	EIF	
2932296000	글루쿠로노라톤	5.0	EIF	
293229700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0	EIF	
2932298000	아세틸케텐(디케텐)	5.0	EIF	
2932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2299090	기타	5.0	EIF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EIF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EIF	
2932930000	피페로날	6.5	EIF	
2932940000	사프롤	6.5	EIF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EIF	
2932991000	디옥산	6.5	EIF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EIF	
2932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2999090	기타	6.5	EIF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 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EIF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EIF	
2933119030	설피린	6.5	EIF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EIF	
293311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119099	기타	6.5	EIF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EIF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EIF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EIF	
29331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199099	기타	6.5	EIF	
2933211000	히단토인	6.5	EIF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EIF	
2933291000	리시딘	6.5	EIF	
2933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299090	기타	6.5	EIF	
2933311000	피리딘	6.5	EIF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EIF	
2933321000	피페리딘	6.5	EIF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3330000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마이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INN), 펜타일(INN), 케토베미돈(INN), 메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치딘(INN),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드롤(INN), 피리트라미드(INN), 프로피람(INN), 트리메페리딘(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33391000	이소니코산 하이드라지드	6.5	EIF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EIF	
2933394000	3-퀴누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EIF	
2933395000	퀴누클리딘-3-올	6.5	EIF	
2933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399090	기타	6.5	EIF	
2933410000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5	EIF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EIF	
29334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499090	기타	6.5	EIF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의 염	6.5	EIF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도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도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비닐비탈(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33540000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EIF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과론(INN), 메타과론(INN), 지페프롤(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EIF	
2933591910	피리미딘	6.5	EIF	
29335919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591999	기타	6.5	EIF	
2933592010	피페라진	6.5	EIF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EIF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EIF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EIF	
2933592090	기타	6.5	EIF	
2933599000	기타	6.5	EIF	
2933610000	멜라민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3691000	염화시아놀	3.0	EIF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EIF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EIF	
29336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699099	기타	6.5	EIF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0	EIF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EIF	
2933791000	이사틴	6.5	EIF	
2933792000	2-히드록시퀴놀린	6.5	EIF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EIF	
2933799000	기타	6.5	EIF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트리아졸람(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EIF	
2933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3999090	기타	6.5	EIF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6.5	EIF	
29341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4109090	기타	6.5	EIF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EIF	
2934202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6.5	EIF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EIF	
2934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4209090	기타	6.5	EIF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EIF	
2934309000	기타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올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그들의 염	6.5	EIF	
2934991000	모르포린	6.5	EIF	
2934992000	핵산과 그들의 염 및 유도체	6.5	EIF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EIF	
2934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4999090	기타	6.5	EIF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EIF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EIF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EIF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6.5	EIF	
2935007000	술파메톡신	6.5	EIF	
2935008010	술파민	6.5	EIF	
2935008020	술파피리딘	6.5	EIF	
2935008030	술파디아아진	6.5	EIF	
2935008040	술파메라진	6.5	EIF	
2935008050	술파티아졸	6.5	EIF	
2935008090	기타	6.5	EIF	
293500902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35009090	기타	6.5	EIF	
2936210000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6.5	EIF	
2936220000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6.5	EIF	
2936230000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6.5	EIF	
2936240000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5	EIF	
2936250000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6.5	EIF	
2936260000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6.5	EIF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EIF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EIF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EIF	
2936279000	기타	6.5	EIF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EIF	
2936289000	기타	6.5	EIF	
2936291010	비타민 B9	6.5	EIF	
2936291090	기타	6.5	EIF	
2936292000	비타민 D와 그들의 유도체	6.5	EIF	
2936293000	비타민 H와 그 유도체	6.5	EIF	
2936294000	비타민 K와 그들의 유도체	6.5	EIF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6.5	EIF	
2936299000	기타	6.5	EIF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6909000	기타	6.5	EIF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EIF	
2937119000	기타	0.0	EIF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0	EIF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EIF	
2937199000	기타	0.0	EIF	
2937211000	코르티손	0.0	EIF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0	EIF	
2937213000	프레드니손	0.0	EIF	
2937214000	프레드니손	0.0	EIF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0	EIF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겐	0.0	EIF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EIF	
2937299000	기타	0.0	EIF	
2937310000	에피네프린	0.0	EIF	
293739100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EIF	
2937399000	기타	0.0	EIF	
2937400000	아미노산 유도체	0.0	EIF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또는 제2918.9호의 것	6.5	EIF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EIF	
2937509000	기타	0.0	EIF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EIF	
2937909000	기타	0.0	EIF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EIF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EIF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EIF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EIF	
2938903000	사포닌	6.5	EIF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EIF	
2938909000	기타	6.5	EIF	
2939111000	모르핀	0.0	EIF	
2939112000	에틸모르핀	0.0	EIF	
2939113000	코데인	0.0	EIF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2939119000	기타	0.0	EIF	
2939190000	기타	0.0	EIF	
293920000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0.0	EIF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0	EIF	
2939411000	에페드린	0.0	EIF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0	EIF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0	EIF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0	EIF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0	EIF	
2939491000	놀에페드린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39499000	기타	0.0	EIF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0	EIF	
2939590000	기타	0.0	EIF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0	EIF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0	EIF	
2939621000	엘고타민(INN)	0.0	EIF	
29396290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0.0	EIF	
2939631000	리세르그산	0.0	EIF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0	EIF	
2939690000	기타	0.0	EIF	
2939910000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0.0	EIF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0	EIF	
2939992000	아레코린	0.0	EIF	
2939993000	피페린	0.0	EIF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0	EIF	
2939999000	기타	0.0	EIF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EIF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EIF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EIF	
2940001090	기타	6.5	EIF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EIF	
2940002090	기타	6.5	EIF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6.5	EIF	
2941109010	페니실린 지 나트륨	6.5	EIF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	6.5	EIF	
2941109090	기타	6.5	EIF	
29412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41209000	기타	6.5	EIF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EIF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EIF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EIF	
2941309000	기타	6.5	EIF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EIF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EIF	
2941509000	기타	6.5	EIF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 메틸렌-5-옥시테트라시클린- 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EIF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EIF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EIF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EIF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EIF	
2941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2941909099	기타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942001000	케텐	6.5	EIF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EIF	
2942009090	기타	6.5	EIF	
3001201000	선추출물	0.0	EIF	
3001202000	간장추출물	0.0	EIF	
3001203000	담낭추출물	0.0	EIF	
3001204000	췌장추출물	0.0	EIF	
3001205000	위장추출물	0.0	EIF	
3001209000	기타	0.0	EIF	
3001901010	인체의 것	0.0	EIF	
3001901090	기타	0.0	EIF	
3001902010	웅담	0.0	EIF	
3001902090	기타	0.0	EIF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0	EIF	
3001909020	인체의 것	0.0	EIF	
3001909090	기타	0.0	EIF	
300210100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0	EIF	
3002102010	헤모글로빈	0.0	EIF	
3002102020	글로부린	0.0	EIF	
3002103000	트롬빈과 프로트롬비나제	0.0	EIF	
3002109010	면역혈청	0.0	EIF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3002109090	기타	0.0	EIF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품의 것에 한한다)	0.0	EIF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0	EIF	
3002309000	기타	0.0	EIF	
3002901000	인혈	0.0	EIF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0.0	EIF	
3002903010	색시톡신	6.5	EIF	
3002903020	라이신	8.0	EIF	
3002903090	기타	0.0	EIF	
3002904000	미생물배양체	0.0	EIF	
3002905000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0.0	EIF	
3002906000	살균소	0.0	EIF	
3002909000	기타	0.0	EIF	
3003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	8.0	EIF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0	EIF	
3003201000	항결핵제 및 항암제	8.0	EIF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0	EIF	
3003209090	기타	8.0	EIF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0	EIF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003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0	EIF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8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0	EIF	
3003399000	기타	8.0	EIF	
3003401000	항암제	8.0	EIF	
3003409110	모르핀제제	8.0	EIF	
3003409120	키닌제제	8.0	EIF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0	EIF	
3003409210	카페인제제	8.0	EIF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0	EIF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0	EIF	
3003409310	코카인제제	8.0	EIF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0	EIF	
3003409330	니코틴제제	8.0	EIF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0	EIF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0	EIF	
3003409600	피페린제제	8.0	EIF	
3003409900	기타	8.0	EIF	
3003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0	EIF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0	EIF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0	EIF	
3003909300	비타민제제	8.0	EIF	
3003909400	녹용제제	8.0	EIF	
3003909500	인삼제제	8.0	EIF	
3003909600	로알제리 제제	8.0	EIF	
3003909900	기타	8.0	EIF	
3004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8.0	EIF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0	EIF	
30042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0	EIF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0	EIF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0	EIF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0	EIF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0	EIF	
3004209900	기타	8.0	EIF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0	EIF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0	EIF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0	EIF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0	EIF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0	EIF	
3004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0	EIF	
3004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0	EIF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0	EIF	
3004397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0	EIF	
3004399000	기타	8.0	EIF	
3004401000	항암제	8.0	EIF	
3004409110	모르핀 제제	8.0	EIF	
3004409120	키닌 제제	8.0	EIF	
3004409130	테오브로민 제제	8.0	EIF	
3004409210	카페인 제제	8.0	EIF	
3004409220	스트리키닌 제제	8.0	EIF	
3004409230	에페드린 제제	8.0	EIF	
3004409310	코카인 제제	8.0	EIF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0	EIF	
3004409330	니코틴 제제	8.0	EIF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0	EIF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0	EIF	
3004409600	피페린제제	8.0	EIF	
3004409900	기타	8.0	EIF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8.0	EIF	
3004502010	비타민 B1제제	8.0	EIF	
3004502090	기타	8.0	EIF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8.0	EIF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8.0	EIF	
3004505000	비타민 E제제	8.0	EIF	
3004506000	비타민 H제제	8.0	EIF	
3004507000	비타민 K제제	8.0	EIF	
3004509000	기타	8.0	EIF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0	EIF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0	EIF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0	EIF	
3004909300	녹용제제	8.0	EIF	
3004909400	인삼제제	8.0	EIF	
3004909500	로얄제리 제제	8.0	EIF	
3004909900	기타	8.0	EIF	
3005101000	반창고	0.0	EIF	
3005109000	기타	0.0	EIF	
3005901000	탈지면	0.0	EIF	
3005902000	거어즈	0.0	EIF	
3005903000	붕대	0.0	EIF	
3005904000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0.0	EIF	
3005909000	기타	0.0	EIF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의 컷거트	0.0	EIF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0.0	EIF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0	EIF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006104000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0.0	EIF	
3006105010	플라스틱제의 것	6.5	EIF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8.0	EIF	
3006105090	기타	0.0	EIF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0	EIF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0	EIF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의 것)	0.0	EIF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0	EIF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0	EIF	
3006403000	뼈형성용 시멘트	0.0	EIF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0	EIF	
3006600000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0	EIF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유헌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6.5	EIF	
30069100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EIF	
3006921010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0.0	EIF	
3006921090	기타	0.0	EIF	
300692201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0	EIF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0.0	EIF	
3006922031	색시토신	6.5	EIF	
3006922032	라이신	8.0	EIF	
3006922090	기타	0.0	EIF	
3006923000	제3003호 및 제3004호의 것	8.0	EIF	
3006924000	제3005호 및 제3006호의 것	0.0	EIF	
3006925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EIF	
3101001010	구아노	6.5	EIF	
3101001090	기타	6.5	EIF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EIF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EIF	
3102101000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2.0	EIF	
3102109000	기타	6.5	EIF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EIF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EIF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EIF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EIF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6.5	EIF	
3102501000	천연의 것	6.5	EIF	
3102509000	기타	6.5	EIF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6.5	EIF	
310280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EIF	
3102909000	기타	6.5	EIF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EIF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EIF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인 것에 한한다)	6.5	EIF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EIF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EIF	
3103909000	기타	6.5	EIF	
3104200000	염화칼륨	0.0	EIF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0	EIF	
3104309000	기타	6.5	EIF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0	EIF	
3104901090	기타	6.5	EIF	
3104909000	기타	1.0	EIF	
3105100000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EIF	
310520000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EIF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EIF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EIF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EIF	
3105590000	기타	6.5	EIF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EIF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EIF	
3105909000	기타	6.5	EIF	
3201100000	케브라쵸 엑스	6.5	EIF	
3201200000	왓틀엑스	6.5	EIF	
3201901010	망그로브 엑스	6.5	EIF	
3201901020	미로보란 엑스	6.5	EIF	
3201901030	수마크 엑스	6.5	EIF	
3201901040	감비아 엑스	6.5	EIF	
3201901090	기타	6.5	EIF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EIF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6.5	EIF	
3201904000	기타 탄닌의 유도체	6.5	EIF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EIF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EIF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EIF	
3202109000	기타	6.5	EIF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EIF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202909000	기타	6.5	EIF	
3203001100	천연남	6.5	EIF	
3203001910	로그우드	6.5	EIF	
3203001920	백단향	6.5	EIF	
3203001930	엽록소	6.5	EIF	
3203001990	기타	6.5	EIF	
3203002010	코치니엘	6.5	EIF	
3203002020	커미즈	6.5	EIF	
3203002030	세피아	6.5	EIF	
3203002090	기타	6.5	EIF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	6.5	EIF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에 한한다)	4.0	EIF	
3204119000	기타	8.0	EIF	
3204121000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22000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30000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40000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50000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60000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70000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92000	래피드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8.0	EIF	
3204193000	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0	EIF	
3204199000	기타	8.0	EIF	
3204200000	합성유기형광증백제	6.5	EIF	
3204901000	합성유기루미노퍼	6.5	EIF	
3204909000	기타	6.5	EIF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EIF	
3205009000	기타	6.5	EIF	
3206110000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EIF	
3206190000	기타	6.5	EIF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EIF	
3206411000	군청	6.5	EIF	
3206419000	기타	6.5	EIF	
3206421000	리도폰	6.5	EIF	
3206429000	기타	6.5	EIF	
3206491000	아연회	6.5	EIF	
3206492000	광물성블랙	6.5	EIF	
3206493000	어드칼러	6.5	EIF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EIF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EIF	
3206499000	기타	6.5	EIF	
3206500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EIF	
3207100000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EIF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EIF	
3207202000	슬립	6.5	EIF	
3207209000	기타	6.5	EIF	
3207301000	금의 것	6.5	EIF	
3207302000	백금의 것	6.5	EIF	
3207303000	팔라듐의 것	6.5	EIF	
3207304000	은의 것	6.5	EIF	
3207309000	기타	6.5	EIF	
320740000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5	EIF	
3208101010	에나멜	6.5	EIF	
3208101090	기타	6.5	EIF	
320810200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EIF	
3208201011	에나멜	6.5	EIF	
3208201019	기타	6.5	EIF	
32082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EIF	
3208202011	에나멜	6.5	EIF	
3208202019	기타	6.5	EIF	
32082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EIF	
3208901011	에나멜	6.5	EIF	
3208901019	기타	6.5	EIF	
3208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EIF	
3208909011	에나멜	6.5	EIF	
3208909019	기타	6.5	EIF	
3208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EIF	
3209101011	에나멜	6.5	EIF	
3209101019	기타	6.5	EIF	
32091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EIF	
32091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9901011	에나멜	6.5	EIF	
3209901019	기타	6.5	EIF	
3209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09909011	에나멜	6.5	EIF	
3209909019	기타	6.5	EIF	
3209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EIF	
3210001011	에나멜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210001019	기타	6.5	EIF	
3210001091	에나멜	6.5	EIF	
3210001099	기타	6.5	EIF	
3210002010	오일 바니시	6.5	EIF	
3210002020	락·천연검 또는 천연수지를 기제로 한 바니시와 래커	6.5	EIF	
3210002030	역청질·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제로 한 바니시	6.5	EIF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액상 바니시	6.5	EIF	
3210003010	디스탬퍼	6.5	EIF	
3210003090	기타	6.5	EIF	
3211000000	조제드라이어	6.5	EIF	
3212100000	스탬프용의 박	6.5	EIF	
3212901000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6.5	EIF	
3212909000	기타	6.5	EIF	
3213101000	유성 회구류	6.5	EIF	
3213102000	수성 회구류	6.5	EIF	
3213109000	기타	6.5	EIF	
3213901000	유성 회구류	6.5	EIF	
3213902000	수성 회구류	6.5	EIF	
3213909000	기타	6.5	EIF	
321410106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EIF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EIF	
3214101090	기타	6.5	EIF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EIF	
3214109000	기타	6.5	EIF	
3214900000	기타	6.5	EIF	
3215110000	흑색의 것	6.5	EIF	
3215190000	기타	6.5	EIF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EIF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EIF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EIF	
3215904010	유성의 것	6.5	EIF	
3215904020	수성의 것	6.5	EIF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의 것	6.5	EIF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EIF	
3215906010	유성의 것	6.5	EIF	
3215906020	수성의 것	6.5	EIF	
3215906030	유성·수성겸용의 것	6.5	EIF	
3215909000	기타	6.5	EIF	
3301120000	오렌지유	5.0	EIF	
3301130000	레몬유	5.0	EIF	
3301190000	기타	5.0	EIF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5.0	EIF	
3301250000	기타 민트류의 것	5.0	EIF	
3301291000	바닐라유	5.0	EIF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0	EIF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0	EIF	
3301299000	기타	5.0	EIF	
3301300000	레지노이드	8.0	EIF	
3301901000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0	EIF	
3301902000	정유의 농축물	8.0	EIF	
3301903000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8.0	EIF	
3301904100	아편의 것	8.0	5	
3301904200	감초의 것	8.0	EIF	
3301904300	호프의 것	30.0	5	
3301904400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8.0	5	
3301904510	백삼의 것	20.0	16	
3301904520	홍삼의 것	754.3	16	
3301904530	기타의 인삼의 것	20.0	16	
3301904600	캐슈넛 쉼액의 것	8.0	5	
3301904700	생칠의 것	8.0	EIF	
3301904800	기타	8.0	5	
3302101000	식품공업용의 것	6.5	EIF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30.0	EIF	
3302102019	기타	8.0	EIF	
3302102090	기타	6.5	EIF	
3302900000	기타	6.5	EIF	
3303001000	향수	6.5	EIF	
3303002000	화장수	6.5	EIF	
3304101000	립스틱	6.5	EIF	
3304109000	기타	6.5	EIF	
3304201000	아이샤도우	6.5	EIF	
3304209000	기타	6.5	EIF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EIF	
3304309000	기타	6.5	EIF	
3304911000	화이스파우다	6.5	EIF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6.5	EIF	
3304919000	기타	6.5	EIF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EIF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EIF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EIF	
3304999000	기타	6.5	EIF	
3305100000	샴푸	6.5	EIF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6.5	EIF	
3305300000	헤어 래커	6.5	EIF	
3305901000	헤어린스	6.5	EIF	
3305902000	헤어크림	6.5	EIF	
3305909000	기타	6.5	EIF	
3306100000	치약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306201011	70텍시텍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8.0	EIF	
3306201019	기타	8.0	EIF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8.0	EIF	
3306209000	기타	8.0	EIF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EIF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EIF	
3307101000	아프터 세이빙로손	6.5	EIF	
3307109000	기타	6.5	EIF	
330720000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6.5	EIF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EIF	
3307302000	기타 목욕용 제품류	6.5	EIF	
3307410000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6.5	EIF	
3307490000	기타	6.5	EIF	
3307901000	탈모제	6.5	EIF	
3307902000	향낭	6.5	EIF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 또는 의안의 액	6.5	EIF	
3307909000	기타	6.5	EIF	
3401111000	약용비누	6.5	EIF	
3401119000	기타	6.5	EIF	
3401191010	세탁비누	6.5	EIF	
3401191090	기타	6.5	EIF	
3401192000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	6.5	EIF	
3401200000	기타 형상의 비누	6.5	EIF	
3401300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EIF	
3402110000	음이온성의 것	8.0	EIF	
3402120000	양이온성의 것	8.0	EIF	
340213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3402139000	기타	8.0	EIF	
3402190000	기타	8.0	EIF	
3402201000	조제세제	6.5	EIF	
3402202000	조제청정제	6.5	EIF	
3402209000	기타	6.5	EIF	
3402901000	조제계면활성제	6.5	EIF	
3402902000	조제세제	6.5	EIF	
3402903000	조제청정제	6.5	EIF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조제품	6.5	EIF	
34031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조제품	6.5	EIF	
3403119000	기타	6.5	EIF	
3403191000	조제절삭유	6.5	EIF	
3403192000	볼트·너트 방출제	6.5	EIF	
3403193000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6.5	EIF	
3403194000	이형조제품	6.5	EIF	
3403195000	신선용 조제윤활제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403199000	기타	6.5	EIF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조제품	6.5	EIF	
34039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조제품	6.5	EIF	
3403919000	기타	6.5	EIF	
3403991000	조제절삭유	6.5	EIF	
3403992000	신선용 조제유탄유	6.5	EIF	
3403999000	기타	6.5	EIF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EIF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EIF	
3404901020	오팔왁스	6.5	EIF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EIF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EIF	
3404901090	기타	6.5	EIF	
3404902000	조제왁스	6.5	EIF	
340510000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EIF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EIF	
340530000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5	EIF	
3405400000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6.5	EIF	
3405901010	초크를 기제로 한 것	6.5	EIF	
3405901020	규조토를 기제로 한 것	6.5	EIF	
3405901030	다이아몬드분 또는 더스트를 기제로 한 것	6.5	EIF	
3405901090	기타	6.5	EIF	
3405909000	기타	6.5	EIF	
34060000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EIF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6.5	EIF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6.5	EIF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EIF	
3501101000	커피 크림 제조용의 것	8.0	10	
3501109000	기타	20.0	10	
3501901110	커피 크림 제조용의 것	8.0	10	
3501901190	기타	20.0	10	
3501901200	기타 카세인 유도체	20.0	10	
3501902000	카세인 글루	20.0	10	
3502110000	건조한 것	8.0	10	
3502190000	기타	8.0	10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0	1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8.0	EIF	
3502909000	기타	8.0	EIF	
3503001010	젤라틴	8.0	5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0	EIF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8.0	EIF	
3503003000	기타 동물성 글루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504001010	펄톤	8.0	EIF	
3504001020	펄톤 유도체	8.0	EIF	
3504002010	케라틴	8.0	EIF	
3504002020	핵산단백질	8.0	EIF	
3504002030	유리단백질	8.0	EIF	
3504002090	기타	8.0	EIF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8.0	EIF	
3505101000	덱스트린	8.0	5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0	5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16	
3505104010	식품용의 것	385.7	16	
3505104090	기타	385.7	16	
3505105010	식품용의 것	385.7	16	
3505105090	기타	385.7	16	
3505109010	식품용의 것	385.7	16	
3505109090	기타	385.7	16	
3505201000	전분 글루	201.2	16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201.2	16	
3505209000	기타	201.2	16	
3506101000	고무를 기재로 한 것	6.5	EIF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재로 한 것	6.5	EIF	
3506109000	기타	6.5	EIF	
3506910000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재로 한 접착제	6.5	EIF	
3506991000	비엔나 글루	6.5	EIF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	6.5	EIF	
3506993000	규산염을 기재로 한 글루	6.5	EIF	
3506999000	기타	6.5	EIF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6.5	EIF	
3507901010	트립신	6.5	EIF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EIF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EIF	
3507901040	리파제	6.5	EIF	
3507901090	기타	6.5	EIF	
3507902000	펍신	6.5	EIF	
3507903000	맥아효소	6.5	EIF	
3507904010	파파인	6.5	EIF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EIF	
3507904030	피신	6.5	EIF	
3507906010	아밀라제	6.5	EIF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EIF	
3507907000	펙티효소	6.5	EIF	
3507908000	시토크롬 씨	6.5	EIF	
3507909000	기타	6.5	EIF	
3601001000	흑색화약	6.5	EIF	
3601002000	무연화약	6.5	EIF	
36020000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603001000	도화선	6.5	EIF	
3603002000	도폭선	6.5	EIF	
3603003000	뇌관	6.5	EIF	
3603004000	점화기	6.5	EIF	
3603005000	전기뇌관	6.5	EIF	
3604100000	불꽃제품	6.5	EIF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EIF	
3604909000	기타	6.5	EIF	
3605001000	황린성냥	6.5	EIF	
3605009000	기타	6.5	EIF	
3606100000	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6.5	EIF	
3606901010	메타연료	6.5	EIF	
3606901020	헥사민	6.5	EIF	
3606901030	고체알코올	6.5	EIF	
3606901090	기타	6.5	EIF	
3606902010	라이터돌	6.5	EIF	
3606902090	기타	6.5	EIF	
3606909010	라이터돌	6.5	EIF	
3606909090	기타	6.5	EIF	
3701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EIF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EIF	
370130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1309910	천문용의 것	6.5	EIF	
370130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에 한한다)의 것	3.0	EIF	
3701309999	기타	6.5	EIF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EIF	
370191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1919910	천문용의 것	6.5	EIF	
370191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1919990	기타	6.5	EIF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0	EIF	
370199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1999910	천문용의 것	6.5	EIF	
370199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1999990	기타	6.5	EIF	
3702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2311110	네가티브	6.5	EIF	
3702311120	포지티브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702311210	네가티브	6.5	EIF	
3702311220	포지티브	6.5	EIF	
3702311910	네가티브	6.5	EIF	
3702311920	포지티브	6.5	EIF	
37023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319010	광전복음용의 것	6.5	EIF	
37023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319090	기타	6.5	EIF	
3702321110	네가티브	6.5	EIF	
3702321120	포지티브	6.5	EIF	
3702321210	네가티브	6.5	EIF	
3702321220	포지티브	6.5	EIF	
3702321910	네가티브	6.5	EIF	
3702321920	포지티브	6.5	EIF	
37023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329010	광전복음용의 것	6.5	EIF	
37023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EIF	
3702329090	기타	6.5	EIF	
3702391110	네가티브	6.5	EIF	
3702391120	포지티브	6.5	EIF	
3702391210	네가티브	6.5	EIF	
3702391220	포지티브	6.5	EIF	
3702391910	네가티브	6.5	EIF	
3702391920	포지티브	6.5	EIF	
370239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399010	광전복음용의 것	6.5	EIF	
370239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399090	기타	6.5	EIF	
3702411010	네가티브	6.5	EIF	
3702411020	포지티브	6.5	EIF	
37024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419010	광전복음용의 것	6.5	EIF	
37024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419090	기타	6.5	EIF	
3702421010	네가티브	6.5	EIF	
3702421020	포지티브	6.5	EIF	
37024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429010	광전복음용의 것	6.5	EIF	
37024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429090	기타	6.5	EIF	
3702431010	네가티브	6.5	EIF	
3702431020	포지티브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7024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43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43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439090	기타	6.5	EIF	
3702441010	네가티브	6.5	EIF	
3702441020	포지티브	6.5	EIF	
37024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4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4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449090	기타	6.5	EIF	
3702511010	네가티브	6.5	EIF	
3702511020	포지티브	6.5	EIF	
37025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5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5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5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519090	기타	6.5	EIF	
3702521010	네가티브	6.5	EIF	
3702521020	포지티브	6.5	EIF	
37025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5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5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529090	기타	6.5	EIF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6.5	EIF	
3702541010	네가티브	6.5	EIF	
3702541020	포지티브	6.5	EIF	
37025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5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5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549090	기타	6.5	EIF	
3702551010	네가티브	6.5	EIF	
3702551020	포지티브	6.5	EIF	
37025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55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55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559090	기타	6.5	EIF	
3702561010	네가티브	6.5	EIF	
3702561020	포지티브	6.5	EIF	
370256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56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70256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569090	기타	6.5	EIF	
3702911010	네가티브	6.5	EIF	
3702911020	포지티브	6.5	EIF	
37029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9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9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9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919090	기타	6.5	EIF	
3702931010	네가티브	6.5	EIF	
3702931020	포지티브	6.5	EIF	
37029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9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93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93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939090	기타	6.5	EIF	
3702941010	네가티브	6.5	EIF	
3702941020	포지티브	6.5	EIF	
37029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9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9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9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949090	기타	6.5	EIF	
3702951010	네가티브	6.5	EIF	
3702951020	포지티브	6.5	EIF	
37029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29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EIF	
370295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EIF	
370295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EIF	
3702959090	기타	6.5	EIF	
370310101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3101020	심전계용의 것	6.5	EIF	
3703101030	사진복사용의 것	6.5	EIF	
3703101040	기록용의 것	6.5	EIF	
3703101090	기타	6.5	EIF	
370310901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3109020	심전계용의 것	6.5	EIF	
3703109030	사진복사용의 것	6.5	EIF	
3703109040	기록용의 것	6.5	EIF	
3703109090	기타	6.5	EIF	
370320100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3202000	심전계용의 것	6.5	EIF	
3703203000	사진복사용의 것	6.5	EIF	
3703204000	기록용의 것	6.5	EIF	
3703209000	기타	6.5	EIF	
370390100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3902000	심전계용의 것	6.5	EIF	
3703903000	사진복사용의 것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703904000	기록용의 것	6.5	EIF	
3703909000	기타	6.5	EIF	
3704001110	뉴스용의 것	0.0	EIF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	0.0	EIF	
3704001190	기타	0.0	EIF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의 것(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에 한한다)	0.0	EIF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3704001900	기타	0.0	EIF	
3704002000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	6.5	EIF	
3705101000	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	6.5	EIF	
3705109000	기타	0.0	EIF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0	EIF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0	EIF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0	EIF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0	EIF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0	EIF	
3705909010	학술연구용의 것	0.0	EIF	
3705909020	천문용의 것	0.0	EIF	
3705909030	항공촬영용의 것	0.0	EIF	
3705909090	기타	0.0	EIF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6.5% 또는 195원/m	EIF	
3706102000	뉴스용의 것	6.5% 또는 4원/m	EIF	
3706103010	랏슈	6.5% 또는 26원/m	EIF	
37061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원/m	EIF	
37061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원/m	EIF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품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6.5% 또는 26원/m	EIF	
3706105010	네가티브	6.5% 또는 1,092원/m	EIF	
3706105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원/m	EIF	
3706106010	네가티브	6.5% 또는 1,560원/m	EIF	
3706106020	포지티브	6.5% 또는 260원/m	EIF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6.5% 또는 9원/m	EIF	
3706902000	뉴스용의 것	6.5% 또는 5원/m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706903010	랏슈	6.5% 또는 26원/m	EIF	
37069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원/m	EIF	
37069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원/m	EIF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품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6.5% 또는 26원/m	EIF	
3706905010	네가티브	6.5% 또는 25원/m	EIF	
3706905020	포지티브	6.5% 또는 8원/m	EIF	
3706906010	네가티브	6.5% 또는 1,092원/m	EIF	
3706906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원/m	EIF	
3707100000	감광유제	6.5	EIF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EIF	
3707901090	기타	6.5	EIF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EIF	
370790291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7902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7902990	기타	6.5	EIF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EIF	
3707903910	엑스선용의 것	6.5	EIF	
3707903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EIF	
3707903990	기타	6.5	EIF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EIF	
3707909200	조색제	6.5	EIF	
3707909300	세정제	6.5	EIF	
3707909400	섬광재료	6.5	EIF	
3707909900	기타	6.5	EIF	
3801101000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0	EIF	
3801109000	기타	6.5	EIF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6.5	EIF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5	EIF	
3801900000	기타	6.5	EIF	
3802100000	활성탄	6.5	EIF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EIF	
3802901020	활성토	6.5	EIF	
3802901090	기타	6.5	EIF	
3802902000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6.5	EIF	
38030000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5.0	EIF	
3804001000	액상의 것	6.5	EIF	
3804009000	기타	6.5	EIF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EIF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EIF	
3805900000	기타	6.5	EIF	
3806101000	로진	6.5	5	
3806102000	수지산	6.5	EIF	
3806201000	로진염	6.5	EIF	
3806202000	수지산염	6.5	EIF	
3806209000	기타	6.5	EIF	
3806300000	에스테르 검	6.5	EIF	
3806902000	런검	6.5	EIF	
3806903000	로진스프릿 및 로진유	6.5	EIF	
3806909000	기타	6.5	EIF	
3807001000	목타르·목타르유 및 목크레오소트	6.5	EIF	
3807002000	목나프타	6.5	EIF	
3807003000	식물성피치	6.5	EIF	
3807009010	목초액	6.5	5	
3807009090	기타	6.5	EIF	
38085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3808509000	기타	6.5	EIF	
38089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3808919000	기타	6.5	EIF	
380892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3808929000	기타	6.5	EIF	
3808931000	제초제	6.5	EIF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EIF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EIF	
3808940000	소독제	6.5	EIF	
3808991000	살서제(쥐약)	6.5	EIF	
3808999000	기타	6.5	EIF	
380910000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8.0	5	
3809910000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6.5	EIF	
3809920000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6.5	EIF	
3809930000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6.5	EIF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6.5	EIF	
3810109000	기타	6.5	EIF	
3810901000	납볼임·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6.5	EIF	
3810909000	기타	6.5	EIF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6.5	EIF	
3811190000	기타	6.5	EIF	
3811210000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5.0	EIF	
3811290000	기타	5.0	EIF	
3811900000	기타	6.5	EIF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제로 한 것	6.5	EIF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12103000	티우람 솔파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EIF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제로 한 것	6.5	EIF	
3812105000	머캡토 벤조티아졸을 기제로 한 것	6.5	EIF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솔파이드(DM)를 기제로 한 것	6.5	EIF	
3812109000	기타	6.5	EIF	
381220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EIF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EIF	
3812302000	기타 복합안정제	6.5	EIF	
3813001000	소화기용의 조제품	6.5	EIF	
3813002000	소화기용의 장전물	6.5	EIF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EIF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EIF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 및 톨루엔 혼합물	6.5	EIF	
3814001090	기타	6.5	EIF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EIF	
3814002190	기타	6.5	EIF	
3814002900	기타	6.5	EIF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6.5	EIF	
3815121000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6.5	EIF	
3815122000	팔라듐 또는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EIF	
3815129000	기타	6.5	EIF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의 것	6.5	EIF	
3815192000	티타늄 또는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EIF	
3815199000	기타	6.5	EIF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EIF	
3815909000	기타	6.5	EIF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EIF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EIF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EIF	
3816009000	기타	6.5	EIF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6.5	EIF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0.0	EIF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0.0	EIF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EIF	
3819002000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6.5	EIF	
3820001000	부동조제품	6.5	EIF	
3820002000	조제제빙액	6.5	EIF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6.5	EIF	
3822001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0	EIF	
3822001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22001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류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지	0.0	EIF	
3822001019	기타	0.0	EIF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3822001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EIF	
3822001092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6.5	EIF	
3822001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류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3822001099	기타	8.0	EIF	
3822002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0	EIF	
3822002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0	EIF	
3822002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류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지	0.0	EIF	
3822002019	기타	0.0	EIF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3822002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EIF	
382200209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6.5	EIF	
3822002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류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3822002099	기타	8.0	EIF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0	EIF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1.0	EIF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2.0	EIF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3.0	EIF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4.0	EIF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5.0	EIF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5.4	EIF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6.5	EIF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7.0	EIF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0	EIF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0	EIF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0	EIF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	27.0	EIF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퍼센트인 것	30.0	EIF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	36.0	EIF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퍼센트인 것	4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0	EIF	
3822003058	제3706.10.1000호, 제3706.10.5020호 및 제3706.90.6020호의 것	6.5% 또는 182원/m	EIF	
3822003059	제3706.10.2000호 및 제3706.90.2000호의 것	6.5% 또는 4원/m	EIF	
3822003060	제3706.10.3010호, 제3706.10.4000호, 제3706.90.3010호 및 제3706.90.4000호의 것	6.5% 또는 26원/m	EIF	
3822003061	제3706.10.3020호 및 제3706.90.3020호의 것	6.5% 또는 468원/m	EIF	
3822003062	제3706.10.3030호 및 제3706.90.3030호의 것	6.5% 또는 78원/m	EIF	
3822003063	제3706.10.5010호 및 제3706.90.6010호의 것	6.5% 또는 1,092원/m	EIF	
3822003064	제3706.10.6010호의 것	6.5% 또는 1,560원/m	EIF	
3822003065	제3706.10.6020호의 것	6.5% 또는 260원/m	EIF	
3822003066	제3706.90.1000호 및 제3706.90.5020호의 것	6.5% 또는 8원/m	EIF	
3822003067	제3706.90.5010호의 것	6.5% 또는 25원/m	EIF	
3823110000	스테아린산	8.0	EIF	
3823120000	올레인산	8.0	EIF	
3823130000	톨유 지방산	8.0	EIF	
3823191000	팔미틴산	8.0	EIF	
3823192000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8.0	EIF	
3823199000	기타	8.0	EIF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0	EIF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0	EIF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0	EIF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5.0	EIF	
3823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3823709090	기타	5.0	EIF	
382410000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5	EIF	
382430000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5	EIF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5	EIF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EIF	
3824600000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0	5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한 세정제	6.5	EIF	
3824719000	기타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EIF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EIF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EIF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EIF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EIF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EIF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6.5	EIF	
3824790000	기타	6.5	EIF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EIF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EIF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EIF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0	EIF	
3824902100	진공관의 겿타	6.5	EIF	
3824902200	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조제품	6.5	EIF	
38249024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0	EIF	
3824902490	기타	6.5	EIF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919	기타	6.5	EIF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EIF	
382490393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로 주로 구성된 화학품의 기타 혼합물	6.5	EIF	
3824903990	기타	6.5	EIF	
3824904100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6.5	EIF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EIF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904400	바니시 또는 글루의 경화제	6.5	EIF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EIF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EIF	
3824905300	수정액	6.5	EIF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EIF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EIF	
3824906300	소다석회	6.5	EIF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EIF	
3824906500	방청제	6.5	EIF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EIF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EIF	
3824907200	염화파라핀	6.5	EIF	
3824907300	소포제	6.5	EIF	
3824907400	발포제	6.5	EIF	
3824907500	조제탄산칼슘	6.5	EIF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EIF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EIF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재로 한 것	6.5	EIF	
3824908090	기타	6.5	EIF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6.5	EIF	
3824909020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6.5	EIF	
3824909030	추잉검 베이스	6.5	EIF	
3824909050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6.5	EIF	
3824909090	기타	6.5	EIF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EIF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EIF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0.0	EIF	
3825302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EIF	
3825303000	소호 제4015.11호의 것	8.0	EIF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8.0	EIF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EIF	
3825490000	기타	6.5	EIF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6.5	EIF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EIF	
3825690000	기타	6.5	EIF	
3825900000	기타	6.5	EIF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EIF	
3901109000	기타	6.5	EIF	
3901201000	펄프의 것	6.5	EIF	
3901209000	기타	6.5	EIF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EIF	
3901900000	기타	6.5	EIF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EIF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EIF	
3902900000	기타	6.5	EIF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EIF	
3903190000	기타	6.5	EIF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EIF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EIF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EIF	
3903909000	기타	6.5	EIF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EIF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6.5	EIF	
3904220000	가소화 한 것	6.5	EIF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EIF	
390440000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EIF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EIF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EIF	
3904690000	기타	6.5	EIF	
3904900000	기타	6.5	EIF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EIF	
3905190000	기타	6.5	EIF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EIF	
3905290000	기타	6.5	EIF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3905910000	공중합체	6.5	EIF	
3905990000	기타	6.5	EIF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EIF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0	EIF	
3906909000	기타	8.0	EIF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EIF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EIF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EIF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EIF	
3907209000	기타	6.5	EIF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EIF	
3907309000	기타	6.5	EIF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EIF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EIF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EIF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EIF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EIF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EIF	
3907999000	기타	6.5	EIF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EIF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EIF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 6,12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908900000	기타	6.5	EIF	
3909101000	요소수지	6.5	EIF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EIF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EIF	
3909300000	기타 아미노수지	6.5	EIF	
3909400000	페놀수지	6.5	EIF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EIF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EIF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EIF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EIF	
3910009090	기타	6.5	EIF	
3911101000	석유수지	8.0	EIF	
3911102000	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8.0	EIF	
3911103000	폴리테르펜	8.0	EIF	
3911901000	폴리숄파이드	6.5	EIF	
3911902000	폴리숄폰	6.5	EIF	
3911903000	푸란수지	6.5	EIF	
3911909000	기타	6.5	EIF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5.0	EIF	
3912120000	가소화 한 것	5.0	EIF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EIF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EIF	
3912319000	기타	6.5	EIF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EIF	
3912399000	기타	6.5	EIF	
3912901000	재생셀룰로오스	6.5	EIF	
3912909000	기타	6.5	EIF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EIF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EIF	
3913109000	기타	6.5	EIF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EIF	
3913902010	염화고무	6.5	EIF	
3913902020	염산고무	6.5	EIF	
3913902030	산화고무	6.5	EIF	
3913902040	환화고무	6.5	EIF	
3913902090	기타	6.5	EIF	
3913909010	텍스트란	6.5	EIF	
3913909090	기타	6.5	EIF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EIF	
3914009000	기타	6.5	EIF	
3915101000	제조당시 필름·쉬트·판 및 박 상태의 것	6.5	EIF	
3915102000	제조당시 파이프 및 호스 상태의 것	6.5	EIF	
3915109000	기타	6.5	EIF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EIF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의 것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EIF	
3915905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EIF	
3915909000	기타	6.5	EIF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EIF	
3916904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EIF	
3916909000	기타	6.5	EIF	
3917101000	경화 단백질의 것	6.5	EIF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의 것	6.5	EIF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292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EIF	
3917299000	기타	6.5	EIF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19000	기타	6.5	EIF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29000	기타	6.5	EIF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39000	기타	6.5	EIF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17399000	기타	6.5	EIF	
3917400000	연결구류	6.5	EIF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6.5	EIF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의 것	6.5	EIF	
3918109000	기타	6.5	EIF	
391890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EIF	
391910000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5	EIF	
3919900000	기타	6.5	EIF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0430000	전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EIF	
3920490000	기타	6.5	EIF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EIF	
3920590000	기타	6.5	EIF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EIF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EIF	
3920690000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EIF	
392071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EIF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EIF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EIF	
3920799000	기타	6.5	EIF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EIF	
3920920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EIF	
3920930000	아미노수지의 것	6.5	EIF	
3920940000	페놀수지의 것	6.5	EIF	
3920991000	항공기용의 것	6.5	EIF	
3920999010	폴리아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4.0	EIF	
3920999090	기타	6.5	EIF	
392111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112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1130000	폴리우레탄의 것	6.5	EIF	
392114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EIF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0	EIF	
3921191090	기타	6.5	EIF	
3921192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0	EIF	
3921192090	기타	6.5	EIF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의 것	6.5	EIF	
3921193090	기타	6.5	EIF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EIF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EIF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EIF	
3921194090	기타	6.5	EIF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EIF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EIF	
3921195090	기타	6.5	EIF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EIF	
392119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EIF	
392119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EIF	
3921199040	페놀수지의 것	6.5	EIF	
3921199090	기타	6.5	EIF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EIF	
3921904010	경질의 것	6.5	EIF	
3921904020	연질의 것	6.5	EIF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의 것	6.5	EIF	
3921905090	기타	6.5	EIF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EIF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EIF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EIF	
3921906090	기타	6.5	EIF	
3921907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EIF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EIF	
3921907090	기타	6.5	EIF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칼의 것	6.5	EIF	
392190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EIF	
392190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EIF	
3921909040	페놀수지의 것	6.5	EIF	
3921909050	폴리우레탄의 것	6.5	EIF	
3921909090	기타	6.5	EIF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EIF	
3922102000	세면대	6.5	EIF	
3922103000	설거지통	6.5	EIF	
3922200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6.5	EIF	
3922901000	비데	6.5	EIF	
3922909000	기타	6.5	EIF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EIF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의 것	6.5	EIF	
392329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EIF	
3923300000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EIF	
3923400000	스폴·콥·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EIF	
3923500000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EIF	
3923900000	기타	6.5	EIF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EIF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EIF	
3924902000	탁상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5	EIF	
3924909000	기타	6.5	EIF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5	EIF	
3925200000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6.5	EIF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5	EIF	
3925900000	기타	6.5	EIF	
3926101000	필통 및 지우개	6.5	EIF	
3926102000	바인더 및 앨범	6.5	EIF	
3926109000	기타	6.5	EIF	
392620000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EIF	
3926300000	가구용 부착구·자동차 차체[코우치워크(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5	EIF	
392640000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6.5	EIF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EIF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과 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3926903000	레이블 및 태그	6.5	EIF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EIF	
3926905000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 및 이와 유사한 틀	6.5	EIF	
3926909000	기타	6.5	EIF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4001211000	알 · 에스 · 에스 1엑스	0.0	EIF	
4001212000	알 · 에스 · 에스 1호	0.0	EIF	
4001213000	알 · 에스 · 에스 2호	0.0	EIF	
4001214000	알 · 에스 · 에스 3호	0.0	EIF	
4001215000	알 · 에스 · 에스 4호	0.0	EIF	
4001216000	알 · 에스 · 에스 5호	0.0	EIF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0	EIF	
4001290000	기타	0.0	EIF	
4001301000	치클검	2.0	EIF	
4001309000	기타	2.0	EIF	
4002110000	라텍스	8.0	EIF	
4002190000	기타	8.0	EIF	
4002201000	라텍스	8.0	EIF	
4002209000	기타	8.0	EIF	
4002311000	라텍스	5.0	EIF	
4002319000	기타	5.0	EIF	
4002391000	라텍스	5.0	EIF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0	EIF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0	EIF	
4002410000	라텍스	8.0	EIF	
4002490000	기타	8.0	EIF	
4002510000	라텍스	8.0	EIF	
4002590000	기타	8.0	EIF	
4002601000	라텍스	8.0	EIF	
4002609000	기타	8.0	EIF	
4002701000	라텍스	8.0	EIF	
4002709000	기타	8.0	EIF	
4002801000	라텍스	8.0	EIF	
4002809000	기타	8.0	EIF	
4002910000	라텍스	8.0	EIF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0	EIF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0	EIF	
4002993000	티오폴라스트(TM)	8.0	EIF	
4002999000	기타	8.0	EIF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 · 판 · 스위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8.0	EIF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 · 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3.0	EIF	
4005101000	판 · 스위트 및 스트립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005109000	기타	8.0	EIF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8.0	EIF	
4005910000	판·쉬트 및 스트립	8.0	EIF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0	EIF	
4005999000	기타	8.0	EIF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8.0	EIF	
4006901000	고무봉	8.0	EIF	
4006902000	고무관	8.0	EIF	
4006903000	고무형재	8.0	EIF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 및 와셔	8.0	EIF	
4006905000	고무사	8.0	EIF	
4006909000	기타	8.0	EIF	
4007001000	고무사	8.0	EIF	
4007002000	고무끈	8.0	EIF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0	EIF	
4008119000	기타	8.0	EIF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0	EIF	
4008199000	기타	8.0	EIF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0	EIF	
4008219000	기타	8.0	EIF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0	EIF	
4008299000	기타	8.0	EIF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0	EIF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0	EIF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0	EIF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0	EIF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0	EIF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0	EIF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0	EIF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0	EIF	
4010110000	금속만으로만 보강된 것	8.0	EIF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0	EIF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0	EIF	
4010199000	기타	8.0	EIF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8.0	EIF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8.0	EIF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8.0	EIF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8.0	EIF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8.0	EIF	
4010390000	기타	8.0	EIF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8.0	EIF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8.0	EIF	
4011109000	기타	8.0	EIF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8.0	EIF	
4011201090	기타	8.0	EIF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8.0	EIF	
4011202090	기타	8.0	EIF	
4011209000	기타	8.0	EIF	
4011300000	항공기용의 것	5.0	EIF	
4011400000	모터싸이클용의 것	8.0	EIF	
4011500000	자전거용의 것	8.0	EIF	
401161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8.0	EIF	
401162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8.0	EIF	
40116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4011690000	기타	8.0	EIF	
401192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8.0	EIF	
40119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8.0	EIF	
401194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4011990000	기타	8.0	EIF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8.0	EIF	
4012120000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8.0	EIF	
4012130000	항공기용의 것	5.0	EIF	
4012190000	기타	8.0	EIF	
4012201000	항공기용의 것	5.0	EIF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8.0	EIF	
40122090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8.0	EIF	
4012209090	기타	8.0	EIF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0	EIF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0	EIF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0	EIF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0	EIF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0	EIF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8.0	EIF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0	EIF	
4012909090	기타	8.0	EIF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8.0	EIF	
4013102000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8.0	EIF	
4013200000	자전거용의 것	8.0	EIF	
4013901000	항공기용의 것	5.0	EIF	
4013909010	모터싸이클 또는 모터스쿠터용의 것	8.0	EIF	
4013909020	산업용 또는 농경용의 것	8.0	EIF	
4013909090	기타	8.0	EIF	
4014100000	콘돔	8.0	EIF	
4014901000	젓꼭지	8.0	EIF	
4014909000	기타	8.0	EIF	
4015110000	외과용의 것	8.0	EIF	
4015190000	기타	8.0	EIF	
4015901000	잠수복	8.0	EIF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0	EIF	
4015909000	기타	8.0	EIF	
4016100000	셀룰라 고무의 것	8.0	EIF	
4016910000	바닥 깔개와 매트	8.0	EIF	
4016920000	지우개	8.0	EIF	
4016930000	가스켓 · 워셔 및 기타 실	8.0	EIF	
4016940000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0	EIF	
4016952000	베개	8.0	EIF	
4016953000	쿠션	8.0	EIF	
4016959000	기타	8.0	EIF	
4016991010	기구 · 비행선 · 비행기계류 · 글라이더 · 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0.0	EIF	
4016991090	기타	8.0	EIF	
4016992000	고무밴드	8.0	EIF	
4016993000	병마개	8.0	EIF	
4016999000	기타	8.0	EIF	
4017001000	경질 고무	8.0	EIF	
4017002000	경질 고무의 제품	8.0	EIF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0	EIF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1501011	카우하이드	1.0	EIF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	1.0	EIF	
4101501013	옥스하이드	1.0	EIF	
4101501014	불하이드	1.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101501019	기타	1.0	EIF	
4101501021	카우하이드	1.0	EIF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1.0	EIF	
4101501023	옥스하이드	1.0	EIF	
4101501024	불하이드	1.0	EIF	
4101501029	기타	1.0	EIF	
4101501090	기타	1.0	EIF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1901011	송아지의 것	1.0	EIF	
4101901019	기타	1.0	EIF	
4101901091	송아지의 것	1.0	EIF	
4101901099	기타	1.0	EIF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2100000	탈모하지 아니한 것	1.0	EIF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0	EIF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0	EIF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3201010	뱀의 것	1.0	EIF	
4103201020	도마뱀의 것	1.0	EIF	
4103201030	악어의 것	1.0	EIF	
4103201090	기타	1.0	EIF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0	EIF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0	EIF	
4103901010	장어류의 것	1.0	EIF	
4103901020	캥가루의 것	1.0	EIF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1.0	EIF	
4103901090	기타	1.0	EIF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3.0	EIF	
4103902090	기타	5.0	EIF	
4104110000	폴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5.0	EIF	
4104190000	기타	5.0	EIF	
4104410000	폴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5.0	EIF	
4104490000	기타	5.0	EIF	
410510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0	EIF	
410530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1062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0	EIF	
41062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0	EIF	
41063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0	EIF	
41063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0	EIF	
4106400000	파충류의 것	5.0	EIF	
41069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0	EIF	
41069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0	EIF	
4107110000	풀그레인, 언스프릿	5.0	EIF	
4107120000	그레인 스프릿	5.0	EIF	
4107190000	기타	5.0	EIF	
4107910000	풀그레인, 언스프릿	5.0	EIF	
4107920000	그레인 스프릿	5.0	EIF	
4107990000	기타	5.0	EIF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5.0	EIF	
4113100000	산양의 것	5.0	EIF	
4113200000	돼지의 것	5.0	EIF	
4113300000	파충류의 것	5.0	EIF	
4113900000	기타	5.0	EIF	
411410000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5.0	EIF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5.0	EIF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5.0	EIF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	5.0	EIF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성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한다)	8.0	EIF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3.0	EIF	
4201001000	파충류제의 것	8.0	EIF	
4201009010	안장 및 안장용 방석	8.0	EIF	
4201009020	고삐줄	8.0	EIF	
4201009030	끈	8.0	EIF	
4201009040	재갈	8.0	EIF	
4201009090	기타	8.0	EIF	
4202111010	뱀의 것	8.0	EIF	
4202111020	도마뱀의 것	8.0	EIF	
4202111030	악어의 것	8.0	EIF	
4202111040	장어류의 것	8.0	EIF	
4202111050	캥가루의 것	8.0	EIF	
4202111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0	EIF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0	EIF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0	EIF	
42021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0	EIF	
4202121090	기타	8.0	EIF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0	EIF	
4202191000	판지제의 것	8.0	EIF	
4202199000	기타	8.0	EIF	
4202211010	뱀의 것	8.0	EIF	
4202211020	도마뱀의 것	8.0	EIF	
4202211030	악어의 것	8.0	EIF	
4202211040	장어류의 것	8.0	EIF	
4202211050	캥가루의 것	8.0	EIF	
4202211090	기타	8.0	EIF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0	EIF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0	EIF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0	EIF	
42022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0	EIF	
4202221090	기타	8.0	EIF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0	EIF	
4202291000	판지제의 것	8.0	EIF	
4202299000	기타	8.0	EIF	
4202311010	뱀의 것	8.0	EIF	
4202311020	도마뱀의 것	8.0	EIF	
4202311030	악어의 것	8.0	EIF	
4202311040	장어류의 것	8.0	EIF	
4202311050	캥가루의 것	8.0	EIF	
4202311090	기타	8.0	EIF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0	EIF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0	EIF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0	EIF	
42023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0	EIF	
4202321090	기타	8.0	EIF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0	EIF	
4202391000	판지제의 것	8.0	EIF	
4202399000	기타	8.0	EIF	
4202911010	뱀의 것	8.0	EIF	
4202911020	도마뱀의 것	8.0	EIF	
4202911030	악어의 것	8.0	EIF	
4202911040	장어류의 것	8.0	EIF	
4202911050	캥가루의 것	8.0	EIF	
4202911090	기타	8.0	EIF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0	EIF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0	EIF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0	EIF	
42029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0	EIF	
4202921090	기타	8.0	EIF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202991000	판지제의 것	8.0	EIF	
4202999000	기타	8.0	EIF	
4203101010	코트류	13.0	EIF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0	EIF	
4203101050	조끼류	13.0	EIF	
4203101060	바지류	13.0	EIF	
4203101070	스커트류	13.0	EIF	
4203101080	오버롤류	13.0	EIF	
4203101090	기타	13.0	EIF	
4203102010	코트류	13.0	EIF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0	EIF	
4203102050	조끼류	13.0	EIF	
4203102060	바지류	13.0	EIF	
4203102070	스커트류	13.0	EIF	
4203102080	오버롤류	13.0	EIF	
4203102090	기타	13.0	EIF	
4203103010	코트류	13.0	EIF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0	EIF	
4203103050	조끼류	13.0	EIF	
4203103060	바지류	13.0	EIF	
4203103070	스커트류	13.0	EIF	
4203103080	오버롤류	13.0	EIF	
4203103090	기타	13.0	EIF	
4203109010	코트류	13.0	EIF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0	EIF	
4203109050	조끼류	13.0	EIF	
4203109060	바지류	13.0	EIF	
4203109070	스커트류	13.0	EIF	
4203109080	오버롤류	13.0	EIF	
4203109090	기타	13.0	EIF	
4203211000	야구장갑	13.0	EIF	
4203212000	골프장갑	13.0	EIF	
4203213000	스키장갑	13.0	EIF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0	EIF	
4203215000	배팅장갑	13.0	EIF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0	EIF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0	EIF	
4203219000	기타	13.0	EIF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0	EIF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0	EIF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0	EIF	
4203299000	기타	13.0	EIF	
4203301010	뱀의 것	13.0	EIF	
4203301020	도마뱀의 것	13.0	EIF	
4203301030	악어의 것	13.0	EIF	
4203301040	장어류의 것	13.0	EIF	
4203301090	기타	13.0	EIF	
4203309000	기타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203400000	기타의 의류부속품	13.0	EIF	
4205001110	벨트	8.0	EIF	
4205001190	기타	8.0	EIF	
4205001900	기타의 가죽제품	8.0	EIF	
4205002110	벨트	8.0	EIF	
4205002190	기타	8.0	EIF	
4205002900	기타의 컴퍼지션 레더제품	8.0	EIF	
4206001000	캣거트	8.0	EIF	
4206009000	기타	8.0	EIF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0	EIF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 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0	EIF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0	EIF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0	EIF	
4301802000	오파섬의 것	3.0	EIF	
4301803000	라쿤의 것	3.0	EIF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0	EIF	
4301805000	토끼의 것	3.0	EIF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0	EIF	
4301809000	기타	3.0	EIF	
430190000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0	EIF	
4302110000	밍크의 것	5.0	EIF	
4302191000	해리의 것	5.0	EIF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0	EIF	
4302193000	여우의 것	5.0	EIF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0	EIF	
4302196000	오파섬의 것	5.0	EIF	
4302197000	라쿤의 것	5.0	EIF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0	EIF	
4302199010	면양의 것	5.0	EIF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 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에 한한다)	5.0	EIF	
4302199090	기타	5.0	EIF	
4302201000	밍크의 것	5.0	EIF	
4302202000	토끼의 것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302203000	해리의 것	5.0	EIF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0	EIF	
4302205000	여우의 것	5.0	EIF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0	EIF	
4302209010	오파섬의 것	5.0	EIF	
4302209020	라쿤의 것	5.0	EIF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0	EIF	
4302209090	기타	5.0	EIF	
430230000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5.0	EIF	
4303101100	밍크의 것	16.0	EIF	
4303101200	토끼의 것	16.0	EIF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0	EIF	
4303101400	해리의 것	16.0	EIF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0	EIF	
4303101600	여우의 것	16.0	EIF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0	EIF	
4303101910	오파섬의 것	16.0	EIF	
4303101920	라쿤의 것	16.0	EIF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0	EIF	
4303101990	기타	16.0	EIF	
4303102100	밍크의 것	16.0	EIF	
4303102200	토끼의 것	16.0	EIF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0	EIF	
4303102400	해리의 것	16.0	EIF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0	EIF	
4303102600	여우의 것	16.0	EIF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0	EIF	
4303102910	오파섬의 것	16.0	EIF	
4303102920	라쿤의 것	16.0	EIF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0	EIF	
4303102990	기타	16.0	EIF	
4303900000	기타	16.0	EIF	
4304001000	인조모피	8.0	EIF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0	EIF	
4401100000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2.0	EIF	
4401210000	침엽수류	2.0	EIF	
4401221000	펄프 제조용의 것	0.0	EIF	
4401229000	기타	2.0	EIF	
4401301000	목재 펄리트	2.0	EIF	
4401309000	기타	2.0	EIF	
4402101000	성형목탄	2.0	3	
4402109000	기타	2.0	3	
4402901000	성형목탄	2.0	3	
4402909000	기타	2.0	3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0	EIF	
4403102000	활엽수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03109000	침엽수	0.0	EIF	
4403201000	삼나무	0.0	EIF	
4403202010	더글러스퍼	0.0	EIF	
4403202020	헴록	0.0	EIF	
4403203000	적송	0.0	EIF	
4403204000	전나무	0.0	EIF	
4403205000	낙엽송	0.0	EIF	
4403207000	가문비나무	0.0	EIF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	0.0	EIF	
4403209000	기타	0.0	EIF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 ·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0.0	EIF	
4403491000	화이트라왕 · 화이트메란티 · 화이트세라야 · 옐로메란티 및 아란	0.0	EIF	
4403492010	티크	0.0	EIF	
4403492020	케루잉	0.0	EIF	
4403492030	카폴	0.0	EIF	
4403492040	제루통	0.0	EIF	
4403492090	기타	0.0	EIF	
4403493000	오꾸메 · 오베체 · 사펠리 · 시뵘 · 아까쥬다 푸리케 · 마코레 및 이로코	0.0	EIF	
4403494000	티아마 · 만소니아 · 이롬바 · 디베투우 · 림 바 및 아조베	0.0	EIF	
4403495000	마호가니 및 발사	0.0	EIF	
4403499000	기타	0.0	EIF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0.0	EIF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0	EIF	
4403991010	자단	0.0	EIF	
4403991020	흑단	0.0	EIF	
4403991040	물푸레나무	0.0	EIF	
4403991050	호도나무	0.0	EIF	
4403991090	기타	0.0	EIF	
4403992000	리그넘바이트	0.0	EIF	
4403993010	사시나무	0.0	EIF	
4403993020	포플러	0.0	EIF	
4403993030	단풍나무	0.0	EIF	
4403993040	느릅나무	0.0	EIF	
4403993050	자작나무	0.0	EIF	
4403993060	피나무	0.0	EIF	
4403994000	오동나무	0.0	EIF	
4403999011	말라스	0.0	EIF	
4403999012	타운	0.0	EIF	
4403999019	기타	0.0	EIF	
4403999090	기타	0.0	EIF	
4404102000	목재의 봉	5.0	5	
4404109000	기타	5.0	5	
4404202000	목재의 봉	5.0	5	
4404209000	기타	5.0	5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05000000	목모와 목분	5.0	5	
4406100000	주악처리하지 아니한 것	5.0	5	
4406900000	기타	5.0	5	
4407101000	삼나무	5.0	5	
4407102000	미송	5.0	5	
4407103000	적송	5.0	5	
4407104000	전나무	5.0	5	
4407105000	낙엽송	5.0	5	
4407107000	가문비나무	5.0	5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	5.0	5	
4407109000	기타	5.0	5	
4407210000	마호가니(스웨덴니아종)	5.0	5	
4407220000	비롤라·임부아 및 발사	5.0	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5.0	5	
4407260000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 ·엘로메란티 및 아란	5.0	5	
4407270000	사팔리	5.0	5	
4407280000	이로코	5.0	5	
4407291000	케루잉·라민·카폴·종콩·멜바우·제루 통 및 캄파스	5.0	5	
4407292000	티크	5.0	5	
4407293000	오꾸메·오베체·시뽀·아까쥬다푸리케· 마꼬레·티아마·만소니아·이롬바·디베 토우·림바 및 아조베	5.0	5	
4407299000	기타	5.0	5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5.0	5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5.0	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5.0	5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5.0	5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5.0	5	
4407991010	자단	5.0	5	
4407991020	흑단	5.0	5	
4407991040	호도나무	5.0	5	
4407991090	기타	5.0	5	
4407992000	리그넘바이트	5.0	5	
4407993010	사시나무	5.0	5	
4407993020	포플러	5.0	5	
4407993040	느릅나무	5.0	5	
4407993050	자작나무	5.0	5	
4407993060	피나무	5.0	5	
4407994000	오동나무	5.0	5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5.0	5	
4407999090	기타	5.0	5	
440810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0	3	
4408109100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109200	무늬목	3.0	3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08109910	삼나무	5.0	3	
4408109920	미송	5.0	3	
4408109930	적송	5.0	3	
4408109940	전나무	5.0	3	
4408109950	낙엽송	5.0	3	
4408109960	가문비나무	5.0	3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	5.0	3	
4408109990	기타	5.0	3	
4408313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0	3	
440831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19012	무늬목	3.0	3	
4408319019	기타	5.0	3	
440831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19022	무늬목	3.0	3	
4408319029	기타	5.0	3	
440839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0	3	
440839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99012	무늬목	3.0	3	
4408399019	기타	5.0	3	
440839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99022	무늬목	3.0	3	
4408399029	기타	5.0	3	
440839903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99032	무늬목	3.0	3	
4408399039	기타	5.0	3	
440839904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99042	무늬목	3.0	3	
4408399049	기타	5.0	3	
440839905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99052	무늬목	3.0	3	
4408399059	기타	5.0	3	
440839909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399092	무늬목	3.0	3	
4408399099	기타	5.0	3	
4408901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0	3	
4408909150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909160	무늬목	3.0	3	
4408909191	자단	5.0	3	
4408909192	흑단	5.0	3	
4408909193	물푸레나무	5.0	3	
4408909194	호도나무	5.0	3	
4408909195	참나무	5.0	3	
4408909199	기타	5.0	3	
4408909210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909220	무늬목	3.0	3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08909290	기타	5.0	3	
4408909370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909380	무늬목	3.0	3	
4408909391	사시나무	5.0	3	
4408909392	포플러	5.0	3	
4408909393	단풍나무	5.0	3	
4408909394	느릅나무	5.0	3	
4408909395	자작나무	5.0	3	
4408909396	피나무	5.0	3	
4408909410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909420	무늬목	3.0	3	
4408909490	기타	5.0	3	
4408909912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909913	무늬목	3.0	3	
4408909914	바보엔	5.0	3	
4408909919	기타	5.0	3	
4408909991	합판 제조용의 것	3.0	EIF	
4408909992	무늬목	3.0	3	
4408909999	기타	5.0	3	
4409100000	침엽수류	8.0	10	
4409210000	대나무제의 것	8.0	10	
4409290000	기타	8.0	5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0	10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0	10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0	10	
4410119000	기타	8.0	10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0	10	
4410129000	기타	8.0	10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0	7	
4410191090	기타	8.0	7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0	10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0	10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0	10	
4410199090	기타	8.0	10	
4410900000	기타	8.0	10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0	10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0	10	
4411129000	기타	8.0	10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0	10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0	10	
4411139000	기타	8.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0	10	
4411142010	마루판	8.0	10	
4411142090	기타	8.0	10	
4411149000	기타	8.0	10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0	10	
4411922010	마루판	8.0	10	
4411922090	기타	8.0	10	
4411929000	기타	8.0	10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0	10	
4411932010	마루판	8.0	10	
4411932090	기타	8.0	10	
4411939000	기타	8.0	10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0	10	
4411949000	기타	8.0	10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10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0	10	
4412102000	마루판	8.0	10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쉼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0	10	
4412109090	기타	8.0	10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1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1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	10	
441231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	10	
441231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	10	
441231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10	
441232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2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2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2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	10	
441232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	10	
441232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	10	
441232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1239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91090	기타	10.0	10	
4412399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0	5	
4412399090	기타	10.0	10	
4412941000	블록보드	8.0	10	
4412942000	라민보드	8.0	10	
4412943000	배튼보드	8.0	10	
44129910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7	
4412991019	기타	8.0	5	
441299102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7	
4412991029	기타	8.0	5	
441299103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7	
4412991039	기타	8.0	5	
4412991041	마루판(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0	10	
4412991042	마루판(기타의 것에 한한다)	8.0	10	
4412991043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0	7	
4412991049	기타	8.0	5	
4412992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7	
4412992090	기타	8.0	5	
4412993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7	
4412993090	기타	8.0	7	
44129991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10	
4412999119	기타	8.0	10	
44129991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7	
4412999199	기타	8.0	10	
44129992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10	
4412999219	기타	8.0	10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129992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10	
4412999299	기타	8.0	10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8.0	10	
4414000000	목재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0	7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와 케이블드럼	8.0	7	
4415200000	페렛,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페렛칼러	8.0	7	
4416000000	목재의 통·배럴·배트·텍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8.0	7	
4417000000	목재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8.0	7	
4418100000	창문과 창문틀	8.0	7	
4418200000	문·문틀 및 문지방	8.0	7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섯터	8.0	7	
4418500000	지붕이는 판자	8.0	7	
4418600000	기둥 및 들보	8.0	7	
4418711000	파아켓트패널	8.0	7	
4418719000	기타	8.0	7	
4418721000	파아켓트패널	8.0	7	
4418729000	기타	8.0	7	
4418791000	파아켓트패널	8.0	7	
4418799000	기타	8.0	7	
4418901000	셀룰라우드패널	8.0	7	
4418909000	기타	8.0	7	
4419001000	대접(공기)	8.0	7	
4419002010	대나무제의 것	8.0	7	
4419002090	기타	8.0	7	
4419009000	기타	8.0	7	
4420101000	조상	8.0	7	
4420109000	기타	8.0	7	
4420901000	기목 세공과 상감 세공한 목재	8.0	7	
4420902010	담배상자	8.0	7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0	7	
4420902030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0	7	
4420902090	기타	8.0	7	
4420909010	담배 및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0	7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0	7	
4420909090	기타	8.0	7	
4421100000	옷걸이	8.0	7	
4421901010	보빈	8.0	7	
4421901090	기타	8.0	7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8.0	7	
4421903000	이쑤시개	8.0	7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0	7	
4421905000	부채·핸드스크리인(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0	7	
4421909000	기타	8.0	7	
450110000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8.0	5	
4501900000	기타	8.0	5	
450200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8.0	5	
4503100000	마개	8.0	5	
4503900000	기타	8.0	5	
4504100000	블록·판·쉬트·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및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8.0	5	
4504900000	기타	8.0	5	
4601211000	매트류	8.0	EIF	
4601212000	발	8.0	EIF	
4601221000	매트류	8.0	EIF	
4601222000	발	8.0	EIF	
4601291000	매트류	8.0	EIF	
4601292000	발	8.0	EIF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0	EIF	
4601929000	기타	8.0	EIF	
4601930000	등나무제의 것	8.0	EIF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8.0	EIF	
4601949000	기타	8.0	EIF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쉬트상의 물품	8.0	EIF	
4601999000	기타	8.0	EIF	
4602111000	바구니	8.0	5	
4602112000	쟁반, 접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 또는 식탁용품	8.0	5	
4602119000	기타	8.0	5	
4602120000	등나무제의 것	8.0	5	
4602191000	골풀제품	8.0	EIF	
4602199000	기타	8.0	EIF	
4602900000	기타	8.0	EIF	
470100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70100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0	EIF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0.0	EIF	
4703110000	침엽수류의 것	0.0	EIF	
4703190000	활엽수류의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0	EIF	
4703212000	표백한 것	0.0	EIF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0	EIF	
4703292000	표백한 것	0.0	EIF	
4704110000	침엽수류의 것	0.0	EIF	
4704190000	활엽수류의 것	0.0	EIF	
4704210000	침엽수류의 것	0.0	EIF	
4704290000	활엽수류의 것	0.0	EIF	
470500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0	EIF	
4706100000	면린터펄프	0.0	EIF	
470620000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0	EIF	
4706301000	기계펄프	0.0	EIF	
4706302000	화학펄프	0.0	EIF	
4706303000	반화학펄프	0.0	EIF	
4706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70691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0	EIF	
47069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70692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0	EIF	
47069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70693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0	EIF	
47071000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0.0	EIF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47073000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0.0	EIF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0	EIF	
48010000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4802100000	수제지와 판지	0.0	EIF	
480220000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지와 판지	0.0	EIF	
4802400000	벽지용의 원지	0.0	EIF	
480254101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41090	기타	0.0	EIF	
480254901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49090	기타	0.0	EIF	
480255101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51020	복사용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80255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IF	
4802551040	팬시지	0.0	EIF	
4802551090	기타	0.0	EIF	
480255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59090	기타	0.0	EIF	
480256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61020	복사용지	0.0	EIF	
480256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IF	
4802561040	팬시지	0.0	EIF	
4802561090	기타	0.0	EIF	
480256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69090	기타	0.0	EIF	
480257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71020	복사용지	0.0	EIF	
480257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IF	
4802571040	팬시지	0.0	EIF	
4802571090	기타	0.0	EIF	
480257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79090	기타	0.0	EIF	
480258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81020	팬시지	0.0	EIF	
4802581090	기타	0.0	EIF	
4802582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82090	기타	0.0	EIF	
480258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589090	기타	0.0	EIF	
480261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611020	복사용지	0.0	EIF	
480261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IF	
4802611040	팬시지	0.0	EIF	
4802611090	기타	0.0	EIF	
480261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619090	기타	0.0	EIF	
480262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802621020	복사용지	0.0	EIF	
480262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IF	
4802621040	팬시지	0.0	EIF	
4802621090	기타	0.0	EIF	
480262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629090	기타	0.0	EIF	
480269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691020	복사용지	0.0	EIF	
480269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IF	
4802691040	팬시지	0.0	EIF	
4802691090	기타	0.0	EIF	
480269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2699090	기타	0.0	EIF	
48030010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0.0	EIF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0.0	EIF	
4803009000	기타	0.0	EIF	
4804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804190000	기타	0.0	EIF	
4804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804290000	기타	0.0	EIF	
4804311000	전기절열지와 판지	0.0	EIF	
4804312000	콘덴사지와 판지	0.0	EIF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0	EIF	
4804319000	기타	0.0	EIF	
4804391000	전기전열지와 판지	0.0	EIF	
4804392000	콘덴사지와 판지	0.0	EIF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0	EIF	
4804399000	기타	0.0	EIF	
4804411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0	EIF	
4804411090	기타	0.0	EIF	
4804419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0	EIF	
4804419090	기타	0.0	EIF	
480442101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0	EIF	
4804421020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4804421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 및 이와 유사한 것	0.0	EIF	
4804421090	기타	0.0	EIF	
480442901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0	EIF	
4804429020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4804429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 및 이와 유사한 것	0.0	EIF	
480442909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0	EIF	
4804499000	기타	0.0	EIF	
4804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0	EIF	
480452100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0	EIF	
4804522000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 및 이와 유사한 것	0.0	EIF	
4804529000	기타	0.0	EIF	
4804590000	기타	0.0	EIF	
4805110000	반화학 후로팅지	0.0	EIF	
4805120000	스트로 후로팅지	0.0	EIF	
4805190000	기타	0.0	EIF	
480524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5249000	기타	0.0	EIF	
480525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5259000	기타	0.0	EIF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0	EIF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0	EIF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0	EIF	
480591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5919010	콘텐사지와 판지	0.0	EIF	
4805919090	기타	0.0	EIF	
480592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5929000	기타	0.0	EIF	
480593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IF	
4805939000	기타	0.0	EIF	
4806100000	황산지	0.0	EIF	
4806200000	내지지	0.0	EIF	
4806300000	트래싱지	0.0	EIF	
4806401000	그라신지	0.0	EIF	
4806409000	기타	0.0	EIF	
48070000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스위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480810000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4808200000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4808300000	기타의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4808900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809201000	한겹의 것	0.0	EIF	
4809202000	두겹 이상의 것	0.0	EIF	
4809901000	전사지	0.0	EIF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의 것	0.0	EIF	
4809902090	기타	0.0	EIF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0	EIF	
4809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0	EIF	
4809909000	기타	0.0	EIF	
481013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0	EIF	
4810139000	기타	0.0	EIF	
481014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0	EIF	
4810149000	기타	0.0	EIF	
481019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0	EIF	
4810199000	기타	0.0	EIF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0.0	EIF	
4810290000	기타	0.0	EIF	
4810311000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 및 이와 유사한 것	0.0	EIF	
4810319000	기타	0.0	EIF	
4810321000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 및 이와 유사한 것	0.0	EIF	
4810329000	기타	0.0	EIF	
4810390000	기타	0.0	EIF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0	EIF	
4810921090	기타	0.0	EIF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0	EIF	
4810929000	기타	0.0	EIF	
4810991000	지형지	0.0	EIF	
4810992000	여과지	0.0	EIF	
4810999000	기타	0.0	EIF	
4811101000	루팡지	0.0	EIF	
4811109000	기타	0.0	EIF	
4811410000	셀프접착지	0.0	EIF	
4811490000	기타	0.0	EIF	
4811511000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0.0	EIF	
481151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0	EIF	
4811519019	기타	0.0	EIF	
4811519090	기타	0.0	EIF	
4811590000	기타	0.0	EIF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글리세 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0.0	EIF	
4811901010	괘선, 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	0.0	EIF	
481190109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0	EIF	
4811902090	기타	0.0	EIF	
481200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0	EIF	
481310000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0.0	EIF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0.0	EIF	
4813900000	기타	0.0	EIF	
4814100000	인그레인지	0.0	EIF	
4814201000	벽지	0.0	EIF	
4814202000	링크라스타	0.0	EIF	
4814209000	기타	0.0	EIF	
4814901010	갈포섬유제의 것	0.0	EIF	
4814901090	기타	0.0	EIF	
4814909000	기타	0.0	EIF	
4816201000	한겹의 것	0.0	EIF	
4816202000	두겹 이상의 것	0.0	EIF	
4816901000	전사지	0.0	EIF	
4816902010	제곱미터당 총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0.0	EIF	
4816902090	기타	0.0	EIF	
4816903000	인쇄용 재판용지	0.0	EIF	
4816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0	EIF	
4816905000	등사원지	0.0	EIF	
4816909000	기타	0.0	EIF	
4817100000	봉투	0.0	EIF	
4817200000	봉함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0.0	EIF	
481730000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0.0	EIF	
4818100000	화장지	0.0	EIF	
4818200000	지제의 손수건·크렌싱티슈·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0.0	EIF	
4818300000	책상보 및 서비에트	0.0	EIF	
481840100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0.0	EIF	
4818409000	기타	0.0	EIF	
4818500000	의류 및 의류부속품	0.0	EIF	
4818900000	기타	0.0	EIF	
48191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48192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0	EIF	
481940000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0.0	EIF	
4819501000	액체포장에 적합한 것	0.0	EIF	
4819509000	기타	0.0	EIF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 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0	EIF	
4820200000	연습장	0.0	EIF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홀더 및 서철표지	0.0	EIF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삼입식 카본세트	0.0	EIF	
482050000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0.0	EIF	
4820900000	기타	0.0	EIF	
4821100000	인쇄한 것	0.0	EIF	
4821900000	기타	0.0	EIF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0.0	EIF	
4822900000	기타	0.0	EIF	
4823200000	여과용의 지와 판지	0.0	EIF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슈트 및 다이알	0.0	EIF	
4823610000	대나무제의 것	0.0	EIF	
4823690000	기타	0.0	EIF	
482370000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0.0	EIF	
4823901010	천공된 카드	0.0	EIF	
4823901090	기타	0.0	EIF	
4823902000	전기절연지	0.0	EIF	
4823903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0	EIF	
4823903019	기타	0.0	EIF	
482390302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0	EIF	
4823903029	기타	0.0	EIF	
4823903090	기타	0.0	EIF	
4823905000	자카드 직기용의 천공지	0.0	EIF	
482390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0	EIF	
4823909019	기타	0.0	EIF	
4823909090	기타	0.0	EIF	
4901101000	국문판	0.0	EIF	
4901109000	기타	0.0	EIF	
4901911000	국문판	0.0	EIF	
4901919000	기타	0.0	EIF	
4901991000	국문판	0.0	EIF	
4901999000	기타	0.0	EIF	
4902101010	신문	0.0	EIF	
4902101090	기타	0.0	EIF	
4902109000	기타	0.0	EIF	
4902901010	잡지	0.0	EIF	
4902901090	기타	0.0	EIF	
4902909010	잡지	0.0	EIF	
4902909090	기타	0.0	EIF	
490300000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0.0	EIF	
490400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905100000	지구의	0.0	EIF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0	EIF	
4905919000	기타	0.0	EIF	
4905990000	기타	0.0	EIF	
4906001000	설계도	0.0	EIF	
4906002000	도안	0.0	EIF	
4906009000	기타	0.0	EIF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0	EIF	
4907009000	기타	0.0	EIF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0.0	EIF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쿠션 후로링 스위트용의 것	0.0	EIF	
4908909000	기타	0.0	EIF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4910001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것	0.0	EIF	
4910009000	기타	0.0	EIF	
4911100000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달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0.0	EIF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0	EIF	
4911919000	기타	0.0	EIF	
4911990000	기타	0.0	EIF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1% 또는 5,276원/kg, 양자중 고액(율)	EIF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3.0	EIF	
50020010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율)	EIF	
50020010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율)	EIF	
50020010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율)	EIF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율)	EIF	
5002002000	옥사	3.0	EIF	
50020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2.0	EIF	
5003001200	폴숨	2.0	EIF	
5003001300	비수	2.0	EIF	
5003001400	생피저	2.0	EIF	
5003001900	기타	2.0	EIF	
5003009100	페니	2.0	EIF	
5003009200	견노일(부렛)	2.0	EIF	
5003009900	기타	2.0	EIF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5005001000	견수방사	8.0	EIF	
5005002000	견방사	8.0	EIF	
5005003000	견방주사	8.0	EIF	
5006001000	견사	8.0	EIF	
5006002000	견수방사	8.0	EIF	
5006003000	견방사	8.0	EIF	
5006004000	견방주사	8.0	EIF	
5006005000	누에의 거트	8.0	EIF	
5007100000	견 노일직물	13.0	EIF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0	EIF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0	EIF	
5007202020	사틴	13.0	EIF	
5007202030	그레이프 대신	13.0	EIF	
5007202090	기타	13.0	EIF	
5007209000	기타	13.0	EIF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0	EIF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0	EIF	
5007903000	기타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0	EIF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0	EIF	
5007909000	기타	13.0	EIF	
5101110000	깍은 양모	0.0	EIF	
5101190000	기타	0.0	EIF	
5101210000	깍은 양모	0.0	EIF	
5101290000	기타	0.0	EIF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0	EIF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0	EIF	
5102190000	기타	0.0	EIF	
5102200000	조수모	0.0	EIF	
51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0.0	EIF	
5103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0.0	EIF	
5103300000	조수모의 웨이스트	0.0	EIF	
5104000000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0.0	EIF	
5105100000	카드한 양모	0.0	EIF	
5105210000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5105291000	순모울툼	0.0	EIF	
5105292000	혼방울툼	0.0	EIF	
5105293000	조사	0.0	EIF	
5105299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0	EIF	
5105390000	기타	0.0	EIF	
5105400000	조수모(카드 또는 코윳한 것에 한한다)	0.0	EIF	
5106101000	순모의 것	8.0	7	
5106109000	기타	8.0	5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0	5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0	5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0	5	
5106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0	5	
5106209000	기타	8.0	5	
5107101000	순모의 것	8.0	5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71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7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7209000	기타 섬유와 혼방한 것	8.0	7	
5108100000	카드한 것	8.0	5	
5108200000	코윳한 것	8.0	7	
5109101000	양모사	8.0	5	
5109109000	섬수모사	8.0	5	
5109901000	양모사	8.0	5	
5109909000	섬수모사	8.0	5	
5110000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5	
5111111000	양모의 것	13.0	5	
5111112000	섬수모의 것	13.0	5	
5111191000	양모의 것	13.0	7	
5111192000	섬수모의 것	13.0	7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0	5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0	5	
5111900000	기타	13.0	5	
5112111000	양모의 것	13.0	5	
5112112000	섬수모의 것	13.0	7	
5112191000	양모의 것	13.0	5	
5112192000	섬수모의 것	13.0	5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0	7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0	7	
5112900000	기타	13.0	5	
511300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13.0	5	
5201001000	실면	0.0	EIF	
5201009010	섬유길이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201009020	섬유길이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5201009030	섬유길이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5201009050	섬유길이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5201009060	섬유길이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IF	
520210000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0.0	EIF	
5202910000	가아넷스톡	0.0	EIF	
5202990000	기타	0.0	EIF	
52030000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0	EIF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0	EIF	
5204190000	기타	8.0	EIF	
5204200000	소매용의 것	8.0	EIF	
5205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119000	기타	8.0	EIF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4.0	EIF	
5205121090	기타	8.0	EIF	
5205129000	기타	8.0	EIF	
5205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139000	기타	8.0	EIF	
5205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149000	기타	8.0	EIF	
5205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159000	기타	8.0	EIF	
5205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219000	기타	8.0	EIF	
5205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7	
5205229000	기타	8.0	7	
5205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7	
5205239000	기타	8.0	7	
5205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7	
5205249000	기타	8.0	7	
52052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7	
5205269000	기타	8.0	7	
52052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279000	기타	8.0	EIF	
52052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289000	기타	8.0	EIF	
5205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319000	기타	8.0	EIF	
5205321010	370.37데시텍스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4.0	EIF	
5205321090	기타	8.0	EIF	
520532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205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339000	기타	8.0	EIF	
5205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349000	기타	8.0	EIF	
5205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359000	기타	8.0	EIF	
5205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19000	기타	8.0	EIF	
5205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29000	기타	8.0	EIF	
5205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39000	기타	8.0	EIF	
5205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49000	기타	8.0	EIF	
52054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69000	기타	8.0	EIF	
52054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79000	기타	8.0	EIF	
52054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5489000	기타	8.0	EIF	
5206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119000	기타	8.0	EIF	
52061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129000	기타	8.0	EIF	
5206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139000	기타	8.0	EIF	
5206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149000	기타	8.0	EIF	
5206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159000	기타	8.0	EIF	
5206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219000	기타	8.0	EIF	
5206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229000	기타	8.0	EIF	
5206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239000	기타	8.0	EIF	
5206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249000	기타	8.0	EIF	
52062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259000	기타	8.0	EIF	
5206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319000	기타	8.0	EIF	
52063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329000	기타	8.0	EIF	
5206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339000	기타	8.0	EIF	
5206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34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206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359000	기타	8.0	EIF	
5206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419000	기타	8.0	EIF	
5206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429000	기타	8.0	EIF	
5206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439000	기타	8.0	EIF	
5206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449000	기타	8.0	EIF	
52064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6459000	기타	8.0	EIF	
52071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7109000	기타	8.0	EIF	
52079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EIF	
5207909000	기타	8.0	EIF	
52081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1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1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8190000	기타 직물의 것	10.0	EIF	
52082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2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2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8290000	기타 직물의 것	10.0	EIF	
52083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3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3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83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084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4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4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84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085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2085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2085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8599000	기타	10.0	EIF	
5209110000	평직물	10.0	EIF	
52091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91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09210000	평직물	10.0	EIF	
52092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92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09310000	평직물	10.0	EIF	
52093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93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09410000	평직물	10.0	EIF	
5209420000	데님	10.0	EIF	
5209430000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94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09510000	평직물	10.0	EIF	
52095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095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0110000	평직물	10.0	EIF	
52101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0199000	기타	10.0	EIF	
5210210000	평직물	10.0	EIF	
52102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0299000	기타	10.0	EIF	
5210310000	평직물	10.0	EIF	
52103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03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0410000	평직물	10.0	EIF	
52104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0499000	기타	10.0	EIF	
5210510000	평직물	10.0	EIF	
52105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1110000	평직물	10.0	EIF	
52111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11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1200000	표백한 것	10.0	EIF	
5211310000	평직물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2113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13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1410000	평직물	10.0	EIF	
5211420000	데님	10.0	EIF	
5211430000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14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1510000	평직물	10.0	EIF	
52115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0	EIF	
5211590000	기타 직물	10.0	EIF	
52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0	EIF	
5212120000	표백한 것	10.0	EIF	
5212130000	염색한 것	10.0	EIF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0	EIF	
5212150000	날염한 것	10.0	EIF	
5212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0	EIF	
5212220000	표백한 것	10.0	EIF	
5212230000	염색한 것	10.0	EIF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0	EIF	
5212250000	날염한 것	10.0	EIF	
5301100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2.0	EIF	
5301210000	쇄경 또는 타마한 것	2.0	EIF	
5301290000	기타	2.0	EIF	
5301301000	아마의 토우	2.0	EIF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	2.0	EIF	
530210000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2.0	EIF	
5302901000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직한 것을 제외한다)	2.0	EIF	
5302902010	대마의 토우	2.0	EIF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	2.0	EIF	
5303101000	황마	2.0	EIF	
530310200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0	EIF	
5303901010	황마	2.0	EIF	
530390109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0	EIF	
5303909010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2.0	EIF	
5303909090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 및 웨이스트	2.0	EIF	
5305001010	생 것	2.0	EIF	
5305001090	기타	2.0	EIF	
5305002010	생 것	2.0	EIF	
5305002090	기타	2.0	EIF	
5305003010	생 것	2.0	EIF	
5305003090	기타	2.0	EIF	
5305009010	생 것	2.0	EIF	
5305009090	기타	2.0	EIF	
5306101000	순아마사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306102000	혼방아마사	8.0	EIF	
5306201000	순아마사	8.0	EIF	
5306202000	혼방아마사	8.0	EIF	
5307101000	황마사	8.0	EIF	
5307109000	기타	8.0	EIF	
5307201000	황마사	8.0	EIF	
5307209000	기타	8.0	EIF	
5308100000	코이어사	8.0	EIF	
5308200000	대마사	8.0	EIF	
5308901000	라미사	8.0	EIF	
5308909000	기타	8.0	EIF	
5309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EIF	
5309190000	기타	2.0	EIF	
5309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EIF	
5309290000	기타	2.0	EIF	
5310101000	황마직물	8.0	EIF	
5310109000	기타	8.0	EIF	
5310901000	황마직물	8.0	EIF	
5310909000	기타	8.0	EIF	
5311001000	라미의 것	8.0	EIF	
5311002000	대마의 것	8.0	EIF	
5311003000	지사의 것	8.0	EIF	
5311009000	기타	8.0	EIF	
540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1109000	기타	8.0	EIF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0	EIF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401209000	기타	8.0	EIF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0	EIF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0	EIF	
5402191012	어망사	8.0	EIF	
5402191019	기타	8.0	EIF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0	EIF	
5402191022	어망사	8.0	EIF	
5402191029	기타	8.0	EIF	
5402191090	기타	8.0	EIF	
5402199000	기타	8.0	EIF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8.0	EIF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8.0	EIF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8.0	EIF	
5402311090	기타	8.0	EIF	
5402319000	기타	8.0	EIF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8.0	EIF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8.0	EIF	
5402321090	기타	8.0	EIF	
540232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0	EIF	
5402339000	기타	8.0	EIF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0	EIF	
5402390000	기타	8.0	EIF	
5402440000	탄성사	8.0	EIF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8.0	EIF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8.0	EIF	
5402451090	기타	8.0	EIF	
5402459000	기타	8.0	EIF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0	EIF	
5402469000	기타	8.0	EIF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0	EIF	
5402479000	기타	8.0	EIF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0	EIF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2499000	기타	8.0	EIF	
54025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2599000	기타	8.0	EIF	
54026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0	EIF	
5402699000	기타	8.0	EIF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0	EIF	
5403311000	텍스처드사	2.0	EIF	
5403319000	기타	2.0	EIF	
5403321000	텍스처드사	2.0	EIF	
5403329000	기타	2.0	EIF	
5403331000	텍스처드사	8.0	EIF	
5403339000	기타	8.0	EIF	
5403391000	텍스처드사	8.0	EIF	
5403399000	기타	8.0	EIF	
5403411000	텍스처드사	2.0	EIF	
5403419000	기타	2.0	EIF	
5403421000	텍스처드사	8.0	EIF	
5403429000	기타	8.0	EIF	
5403491000	텍스처드사	8.0	EIF	
5403499000	기타	8.0	EIF	
5404110000	탄성사	8.0	EIF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0	EIF	
540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0	EIF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0	EIF	
5404199000	기타	8.0	EIF	
5404901000	스트립상의 것	8.0	EIF	
54049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0	EIF	
5405009000	기타	8.0	EIF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0	EIF	
54060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의 필라멘트사	8.0	EIF	
5407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의 것	8.0	EIF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20000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0	EIF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0	EIF	
5407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0	EIF	
5407420000	염색한 것	8.0	EIF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0	EIF	
5407440000	날염한 것	8.0	EIF	
5407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0	EIF	
5407520000	염색한 것	8.0	EIF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0	EIF	
5407540000	날염한 것	8.0	EIF	
54076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0	EIF	
5407612000	염색한 것	8.0	EIF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0	EIF	
5407614000	날염한 것	8.0	EIF	
54076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0	EIF	
5407692000	염색한 것	8.0	EIF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0	EIF	
5407694000	날염한 것	8.0	EIF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719000	기타	8.0	EIF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729000	기타	8.0	EIF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739000	기타	8.0	EIF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749000	기타	8.0	EIF	
54078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819000	기타	8.0	EIF	
54078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829000	기타	8.0	EIF	
54078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839000	기타	8.0	EIF	
54078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407849000	기타	8.0	EIF	
5407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919000	기타	8.0	EIF	
5407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929000	기타	8.0	EIF	
54079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939000	기타	8.0	EIF	
54079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0	EIF	
5407949000	기타	8.0	EIF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0	EIF	
5408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0	EIF	
5408220000	염색한 것	8.0	EIF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0	EIF	
5408240000	날염한 것	8.0	EIF	
5408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0	EIF	
5408320000	염색한 것	8.0	EIF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0	EIF	
5408340000	날염한 것	8.0	EIF	
5501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0	EIF	
550130200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0	EIF	
5501900000	기타	8.0	EIF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7.5	EIF	
5502002010	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EIF	
5502002020	44,000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EIF	
5502009000	기타	7.5	EIF	
550311100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3119000	기타	8.0	EIF	
550319100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3199000	기타	8.0	EIF	
550320100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0	EIF	
5503209090	기타	8.0	EIF	
550330101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3301020	콘주게이트 단면의 것	8.0	EIF	
5503301090	기타	8.0	EIF	
550330201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3302020	콘주게이트 단면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503302090	기타	8.0	EIF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0	EIF	
5503900000	기타	8.0	EIF	
5504101000	이형단면의 것	2.0	EIF	
5504102000	폴리노직 단면의 것	2.0	EIF	
5504109000	기타	2.0	EIF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04902000	리오셀의 것	4.0	EIF	
5504909000	기타	8.0	EIF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0	EIF	
550520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2.0	EIF	
550610100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6109000	기타	8.0	EIF	
550620100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6209000	기타	8.0	EIF	
550630101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6301020	콘쥬게이트단면의 것	8.0	EIF	
5506301090	기타	8.0	EIF	
550630201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6302020	콘쥬게이트단면의 것	8.0	EIF	
5506302090	기타	8.0	EIF	
5506900000	기타	8.0	EIF	
5507001010	이형단면의 것	8.0	EIF	
5507001020	폴리노직단면의 것	8.0	EIF	
5507001090	기타	8.0	EIF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07009000	기타	8.0	EIF	
5508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508103000	아크릴 또는 모타크릴의 것	8.0	EIF	
5508109000	기타	8.0	EIF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EIF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08209000	기타	8.0	EIF	
5509111000	강력사	8.0	EIF	
5509119000	기타	8.0	EIF	
5509121000	강력사	8.0	EIF	
5509129000	기타	8.0	EIF	
5509211000	강력사	8.0	EIF	
5509219000	기타	8.0	EIF	
5509221000	강력사	8.0	EIF	
5509229000	기타	8.0	EIF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0	EIF	
550931200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0	EIF	
550932200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9410000	단사	8.0	EIF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509510000	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인플섬유와 혼방한 것	8.0	EIF	
5509520000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8.0	EIF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0	EIF	
5509590000	기타	8.0	EIF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0	EIF	
550961200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0	EIF	
550962200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0	EIF	
550969102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0	EIF	
5509692020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09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509919000	기타	8.0	EIF	
5509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509929000	기타	8.0	EIF	
5509990000	기타	8.0	EIF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7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7	
5510119000	기타	8.0	7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EIF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10129000	기타	8.0	EIF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EIF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10209000	기타	8.0	EIF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EIF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10309000	기타	8.0	EIF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EIF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10909000	기타	8.0	EIF	
551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5111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11109000	기타	8.0	EIF	
55112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0	EIF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0	EIF	
55112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0	EIF	
5511209000	기타	8.0	EIF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0	EIF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0	EIF	
5511309000	기타	8.0	EIF	
55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2191000	염색한 것	10.0	EIF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0	EIF	
5512193000	날염한 것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221200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2290000	기타	10.0	EIF	
5512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2919000	기타	10.0	EIF	
55129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2999000	기타	10.0	EIF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0	EIF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0	EIF	
5513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31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3199000	기타	10.0	EIF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0	EIF	
5513239000	기타	10.0	EIF	
5513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32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3299000	기타	10.0	EIF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33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33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3399000	기타	10.0	EIF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3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34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3499000	기타	10.0	EIF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0	EIF	
551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41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0	EIF	
5514199000	기타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0	EIF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0	EIF	
5514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42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4299000	기타	10.0	EIF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0	EIF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0	EIF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0	EIF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0	EIF	
5514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0	EIF	
5514492020	모다크릴의 것	10.0	EIF	
5514499000	기타	10.0	EIF	
55151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119000	기타	10.0	EIF	
55151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129000	기타	10.0	EIF	
55151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139000	기타	10.0	EIF	
55151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199000	기타	10.0	EIF	
55152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219000	기타	10.0	EIF	
55152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229000	기타	10.0	EIF	
55152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299000	기타	10.0	EIF	
5515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919000	기타	10.0	EIF	
55159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5515999000	기타	10.0	EIF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119000	기타	10.0	EIF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129000	기타	10.0	EIF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139000	기타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149000	기타	10.0	EIF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219000	기타	10.0	EIF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229000	기타	10.0	EIF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239000	기타	10.0	EIF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249000	기타	10.0	EIF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319000	기타	10.0	EIF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329000	기타	10.0	EIF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339000	기타	10.0	EIF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349000	기타	10.0	EIF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419000	기타	10.0	EIF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429000	기타	10.0	EIF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439000	기타	10.0	EIF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449000	기타	10.0	EIF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919000	기타	10.0	EIF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929000	기타	10.0	EIF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939000	기타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0	EIF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0	EIF	
5516949000	기타	10.0	EIF	
5601100000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8.0	EIF	
5601210000	면제의 것	8.0	EIF	
56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0	EIF	
5601290000	기타	8.0	EIF	
5601301000	섬유의 플록	8.0	EIF	
5601309000	기타	8.0	EIF	
5602101000	니들룸 펄트	8.0	EIF	
5602102000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8.0	EIF	
5602211000	피아노 펄트	8.0	EIF	
5602219000	기타	8.0	EIF	
5602290000	기타 섬유제의 것	8.0	EIF	
5602900000	기타	8.0	EIF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0	EIF	
5603119000	기타	8.0	EIF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0	EIF	
5603129000	기타	8.0	EIF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0	EIF	
5603139000	기타	8.0	EIF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0	EIF	
5603149000	기타	8.0	EIF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8.0	EIF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8.0	EIF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8.0	EIF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8.0	EIF	
560410000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8.0	EIF	
5604901000	모조갯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에 한한다)	8.0	EIF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8.0	EIF	
5604909000	기타	8.0	EIF	
56050000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8.0	EIF	
5606001000	짐프사	8.0	EIF	
5606002000	셔닐사	8.0	EIF	
5606003000	루프웨일사	8.0	EIF	
56060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607210000	포장용 끈	10.0	EIF	
5607290000	기타	10.0	EIF	
5607410000	포장용 끈	10.0	EIF	
5607490000	기타	10.0	EIF	
5607500000	기타 합성섬유의 것	10.0	EIF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10.0	EIF	
5607909000	기타	10.0	EIF	
56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0	EIF	
5608119000	기타	10.0	EIF	
56081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0	EIF	
5608199000	기타	10.0	EIF	
5608901000	면제의 것	10.0	EIF	
5608909000	기타	10.0	EIF	
5609001000	면제의 것	8.0	EIF	
5609002000	식물성섬유제의 것(면제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56090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0	EIF	
5609009000	기타	8.0	EIF	
5701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57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5702100000	켈름·슈맥·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10.0	EIF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 깔개	10.0	EIF	
5702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57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0	EIF	
57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5702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57024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0	EIF	
570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5702500000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	10.0	EIF	
57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5702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0	EIF	
5702990000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57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57032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0	EIF	
5703300000	기타 인조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570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5704100000	타일(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10.0	EIF	
5704900000	기타	10.0	EIF	
57050000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0	EIF	
5801101000	파일직물	13.0	EIF	
5801102000	셔닐직물	13.0	EIF	
58012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13.0	EIF	
5801220000	절단된 코르덴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801230000	기타 위파일 식물	13.0	EIF	
58012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식물	13.0	EIF	
5801250000	절단된 경파일 식물	13.0	EIF	
5801260000	서닐식물	13.0	EIF	
58013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파일 식물	13.0	EIF	
5801320000	절단된 코르덴	13.0	EIF	
5801330000	기타 위파일 식물	13.0	EIF	
58013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식물	13.0	EIF	
5801350000	절단된 경파일 식물	13.0	EIF	
5801360000	서닐식물	13.0	EIF	
5801900000	기타 섬유제의 것	13.0	EIF	
580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8.0	EIF	
5802190000	기타	8.0	EIF	
5802200000	기타 섬유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8.0	EIF	
5802300000	터후트 직물	8.0	EIF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8.0	EIF	
5804101000	견제의 것	13.0	EIF	
5804102000	면제의 것	13.0	EIF	
5804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5804109000	기타	13.0	EIF	
580421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5804291000	견제의 것	13.0	EIF	
5804292000	면제의 것	13.0	EIF	
5804299000	기타	13.0	EIF	
5804300000	수제의 레이스	13.0	EIF	
58050010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0	EIF	
5805001090	기타	8.0	EIF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	8.0	EIF	
5806101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0	EIF	
5806102000	면제의 것	8.0	EIF	
5806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0	EIF	
5806109000	기타	8.0	EIF	
580620000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8.0	EIF	
5806310000	면제의 것	8.0	EIF	
5806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0	EIF	
5806391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0	EIF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을 제외한다)제의 것	8.0	EIF	
5806399000	기타	8.0	EIF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덱)	8.0	EIF	
5807101000	레이블	8.0	EIF	
5807109000	기타	8.0	EIF	
5807901000	레이블	8.0	EIF	
5807909000	기타	8.0	EIF	
5808100000	브레이드(원단상에 한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	8.0	EIF	
5808909000	기타	8.0	EIF	
5809000000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8.0	EIF	
5810100000	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3.0	EIF	
5810910000	면제의 것	13.0	EIF	
5810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5810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5811001000	견제의 것	8.0	EIF	
58110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0	EIF	
5811003000	면제의 것	8.0	EIF	
5811004000	인조섬유제의 것	8.0	EIF	
5811009000	기타	8.0	EIF	
5901100000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0	EIF	
5901901000	트레이싱포	8.0	EIF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0	EIF	
5901903000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0	EIF	
5902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8.0	EIF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8.0	EIF	
5902900000	기타	8.0	EIF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0	EIF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0	EIF	
5903900000	기타	10.0	EIF	
5904100000	리놀륨	8.0	EIF	
5904900000	기타	8.0	EIF	
5905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8.0	EIF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0	EIF	
590691000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8.0	EIF	
5906990000	기타	8.0	EIF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 또는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0	EIF	
5907002000	극장용,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8.0	EIF	
5907009000	기타	8.0	EIF	
5908001000	심지	8.0	EIF	
5908009000	기타	8.0	EIF	
5909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5910000000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5911101000	세폭직물의 것	8.0	EIF	
5911109000	기타	8.0	EIF	
5911200000	볼팅클로드(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8.0	EIF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8.0	EIF	
5911400000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8.0	EIF	
5911900000	기타	8.0	EIF	
6001101000	면제의 것	10.0	EIF	
6001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0.0	EIF	
6001109000	기타	10.0	EIF	
6001210000	면제의 것	10.0	EIF	
60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0	EIF	
6001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6001910000	면제의 것	10.0	EIF	
6001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0	EIF	
60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0	EIF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0	EIF	
6002900000	기타	10.0	EIF	
60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6003200000	면제의 것	10.0	EIF	
6003300000	합성 섬유제의 것	10.0	EIF	
6003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0.0	EIF	
6003900000	기타	10.0	EIF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0	EIF	
6004900000	기타	10.0	EIF	
6005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6005220000	염색한 것	10.0	EIF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0	EIF	
6005240000	날염한 것	10.0	EIF	
6005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6005320000	염색한 것	10.0	EIF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0	EIF	
6005340000	날염한 것	10.0	EIF	
6005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6005420000	염색한 것	10.0	EIF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0	EIF	
6005440000	날염한 것	10.0	EIF	
6005900000	기타	10.0	EIF	
6006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EIF	
6006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6006220000	염색한 것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0	EIF	
6006240000	날염한 것	10.0	EIF	
6006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6006320000	염색한 것	10.0	EIF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0	EIF	
6006340000	날염한 것	10.0	EIF	
6006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0	EIF	
6006420000	염색한 것	10.0	EIF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0	EIF	
6006440000	날염한 것	10.0	EIF	
6006900000	기타	10.0	EIF	
610120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1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1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13.0	EIF	
61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2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220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2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2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2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3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3102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31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32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3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33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34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4191000	면제의 것	13.0	EIF	
6104199000	기타	13.0	EIF	
61042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4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4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43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4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4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44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104491000	견제의 것	13.0	EIF	
6104499000	기타	13.0	EIF	
61045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45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4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46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462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46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5100000	면제의 것	13.0	5	
6105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5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5901000	견제의 것	13.0	EIF	
61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5909000	기타	13.0	EIF	
6106100000	면제의 것	13.0	5	
6106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6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6901000	견제의 것	13.0	EIF	
6106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6909000	기타	13.0	EIF	
61071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71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71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7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72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7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7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7999000	기타	13.0	EIF	
61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191000	면제의 것	13.0	EIF	
6108199000	기타	13.0	EIF	
61082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83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83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3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08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108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08999000	기타	13.0	EIF	
6109101000	티셔츠	13.0	5	
6109109000	기타	13.0	5	
6109901010	티셔츠	13.0	EIF	
6109901090	기타	13.0	EIF	
6109902010	티셔츠	13.0	EIF	
6109902090	기타	13.0	EIF	
6109903010	티셔츠	13.0	EIF	
6109903090	기타	13.0	EIF	
6109909010	티셔츠	13.0	EIF	
6109909090	기타	13.0	EIF	
6110110000	양모의 것	13.0	EIF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13.0	EIF	
6110190000	기타	13.0	EIF	
6110200000	면제의 것	13.0	5	
6110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0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0901000	견제의 것	13.0	EIF	
6110909000	기타	13.0	EIF	
6111201000	의류	13.0	5	
6111202000	부속품	13.0	EIF	
6111301000	의류	13.0	EIF	
6111302000	부속품	13.0	EIF	
6111901000	의류	13.0	EIF	
6111902000	부속품	13.0	EIF	
6112110000	면제의 것	13.0	EIF	
6112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12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112209000	기타	13.0	EIF	
61123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124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13.0	EIF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13.0	EIF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13.0	EIF	
6114200000	면제의 것	13.0	EIF	
6114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4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4901000	견제의 것	13.0	EIF	
6114909000	기타	13.0	EIF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0	EIF	
611521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11522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3.0	EIF	
6115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153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115309000	기타	13.0	EIF	
611594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15950000	면제의 것	13.0	EIF	
611596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115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116100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8.0	EIF	
6116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0	EIF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0	EIF	
6116929000	기타	8.0	EIF	
6116930000	합성섬유제의 것	8.0	EIF	
6116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0	EIF	
6117101000	견제의 것	13.0	EIF	
61171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117103000	면제의 것	13.0	EIF	
6117104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117109000	기타	13.0	EIF	
6117801000	넥타이류	13.0	EIF	
6117809000	기타	13.0	EIF	
6117900000	부분품	13.0	EIF	
6201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11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1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1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1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1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19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1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1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2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21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2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2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29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2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2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3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3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3220000	면제의 것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2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32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3299000	기타	13.0	EIF	
62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33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0	EIF	
6203429000	기타	13.0	EIF	
62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4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41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1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4199000	기타	13.0	EIF	
62042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42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2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4299000	기타	13.0	EIF	
6204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43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3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4399000	기타	13.0	EIF	
6204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44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4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4499000	기타	13.0	EIF	
62045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452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5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4599000	기타	13.0	EIF	
62046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0	EIF	
6204629000	기타	13.0	EIF	
62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46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4699000	기타	13.0	EIF	
6205200000	면제의 것	13.0	5	
6205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5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5901000	견제의 것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2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5909000	기타	13.0	5	
6206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13.0	EIF	
6206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6300000	면제의 것	13.0	5	
62064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64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6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711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719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207199000	기타	13.0	EIF	
620721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7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79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7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799301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79930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7999000	기타	13.0	EIF	
62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81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8192000	면제의 것	13.0	EIF	
6208199000	기타	13.0	EIF	
620821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08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2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08991000	견제의 것	13.0	EIF	
6208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8999000	기타	13.0	EIF	
6209201000	의류	13.0	EIF	
6209202000	부속품	13.0	EIF	
6209301000	의류	13.0	EIF	
6209302000	부속품	13.0	EIF	
620990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09901090	기타	13.0	EIF	
6209902000	부속품	13.0	EIF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2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2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2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2103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3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3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0	EIF	
621111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211119000	기타	13.0	EIF	
621112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211129000	기타	13.0	EIF	
6211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211209000	기타	13.0	EIF	
62113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0	EIF	
6211329000	기타	13.0	EIF	
62113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113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11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11399000	기타	13.0	EIF	
6211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0	EIF	
62114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0	EIF	
6211429000	기타	13.0	EIF	
62114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114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211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212101000	면제의 것	13.0	EIF	
6212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212109000	기타	13.0	EIF	
6212201000	면제의 것	13.0	EIF	
62122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212209000	기타	13.0	EIF	
6212300000	콜세렛	13.0	EIF	
6212900000	기타	13.0	EIF	
6213200000	면제의 것	8.0	EIF	
621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0	EIF	
6214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0	EIF	
6214200000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8.0	EIF	
6214300000	합성섬유제의 것	8.0	EIF	
6214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8.0	EIF	
6214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0	EIF	
6215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0	EIF	
6215200000	인조섬유제의 것	8.0	EIF	
621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0	EIF	
6216001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8.0	EIF	
62160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217100000	부속품	13.0	EIF	
6217900000	부분품	13.0	EIF	
6301100000	전기모포	10.0	EIF	
6301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0	EIF	
630130000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0	EIF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0	EIF	
630190000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10.0	EIF	
6302101000	면제의 것	13.0	EIF	
6302109000	기타	13.0	EIF	
6302210000	면제의 것	13.0	EIF	
6302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302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2310000	면제의 것	13.0	EIF	
63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3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240000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것에 한한다)	13.0	EIF	
6302510000	면제의 것	13.0	EIF	
63025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302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260000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13.0	EIF	
6302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3029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0	EIF	
63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303191000	면제의 것	13.0	EIF	
6303199000	기타	13.0	EIF	
6303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3039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303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3.0	EIF	
6304190000	기타	13.0	EIF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3.0	EIF	
6304920000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3.0	EIF	
6304930000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3.0	EIF	
6304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3.0	EIF	
6305100000	황마 또는 제5303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鞣皮)섬유제의 것	8.0	EIF	
6305200000	면제의 것	8.0	EIF	
63053200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8.0	EIF	
6305390000	기타	8.0	EIF	
630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0	EIF	
6306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306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62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306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6300000	뿔	13.0	EIF	
6306401000	면제의 것	13.0	EIF	
63064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0	EIF	
6306910000	면제의 것	13.0	EIF	
63069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0	EIF	
6306999000	기타	13.0	EIF	
6307100000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10.0	EIF	
630720000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10.0	EIF	
6307901000	신발류 끈	10.0	EIF	
6307902000	보자기	10.0	EIF	
6307903000	드레스 패턴	10.0	EIF	
6307909000	기타	10.0	EIF	
6308000000	러그 · 태피스트리 ·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0	EIF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8.0	EIF	
6310100000	선별한 것	8.0	EIF	
6310900000	기타	8.0	EIF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8.0	EIF	
6401921000	스키부츠	8.0	EIF	
6401929010	고무제의 것	8.0	EIF	
6401929090	기타	8.0	EIF	
6401991010	고무제의 것	8.0	EIF	
6401991090	기타	8.0	EIF	
6401999000	기타	8.0	EIF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0	EIF	
6402190000	기타	13.0	EIF	
6402200000	신발(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13.0	EIF	
6402911000	방한화	13.0	EIF	
6402912000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EIF	
6402919000	기타	13.0	EIF	
6402991000	샌달 또는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402992000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EIF	
6402999000	기타	13.0	EIF	
6403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13.0	EIF	
6403190000	기타	13.0	EIF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13.0	EIF	
640340000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13.0	EIF	
6403511000	드레스화	13.0	EIF	
6403519000	기타	13.0	EIF	
6403591000	드레스화	13.0	EIF	
6403599000	기타	13.0	EIF	
6403911000	드레스화	13.0	EIF	
6403912000	등산화	13.0	EIF	
6403913000	평상화	13.0	EIF	
6403914000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EIF	
6403919000	기타	13.0	EIF	
6403991000	드레스화	13.0	EIF	
6403992000	등산화	13.0	EIF	
6403993000	평상화	13.0	EIF	
6403994000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EIF	
6403999000	기타	13.0	EIF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EIF	
6404191000	실내화	13.0	EIF	
6404199000	기타	13.0	EIF	
6404201000	실내화	13.0	EIF	
6404209000	기타	13.0	EIF	
6405100000	갑피가 가죽 또는 컴퍼지션레더인 것	13.0	EIF	
640520000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13.0	EIF	
6405900000	기타	13.0	EIF	
6406101000	갑피	8.0	EIF	
6406102000	부분품	8.0	EIF	
6406201000	바깥바닥	8.0	EIF	
6406202000	뒷굽	8.0	EIF	
6406910000	목재제의 것	8.0	EIF	
6406991000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8.0	EIF	
6406992000	힐 쿠션	8.0	EIF	
6406993000	각반	8.0	EIF	
6406994000	레깅	8.0	EIF	
640699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5010000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손(슬릿맨손을 포함한다)	8.0	EIF	
65020000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6505100000	헤어네트	8.0	EIF	
6505901010	합성섬유제의 것	8.0	EIF	
6505901090	기타 섬유제의 것	8.0	EIF	
6505902010	운동모	8.0	EIF	
6505902020	베레모	8.0	EIF	
6505902090	기타	8.0	EIF	
6505909000	기타	8.0	EIF	
6506100000	안전모자	8.0	EIF	
650691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6506991000	가죽제의 것	8.0	EIF	
6506992000	금속제의 것	8.0	EIF	
6506999000	기타	8.0	EIF	
65070000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8.0	EIF	
660110000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13.0	EIF	
6601910000	대가 절첩식의 것	13.0	EIF	
6601991000	지팡이겸용 우산	13.0	EIF	
6601992000	양산	13.0	EIF	
6601999000	기타	13.0	EIF	
6602001000	지팡이	8.0	EIF	
6602002000	시트스틱	8.0	EIF	
6602003000	채찍·승마용 채찍	8.0	EIF	
6602009000	기타	8.0	EIF	
660320000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0	EIF	
6603900000	기타	13.0	EIF	
670100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우모와 그 부분·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을 제외한다)	8.0	EIF	
670210000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6702901000	직물제의 것	8.0	EIF	
6702902000	지제의 것	8.0	EIF	
6702909000	기타	8.0	EIF	
6703001010	세척·정돈한 것	8.0	EIF	
6703001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703009000	기타	8.0	EIF	
6704110000	전체가발	8.0	EIF	
6704191000	부분가발	8.0	EIF	
6704192000	가수염	8.0	EIF	
6704193000	가눈썹	8.0	EIF	
6704194000	가속눈썹	8.0	EIF	
6704199000	기타	8.0	EIF	
6704201000	전체가발	8.0	EIF	
6704202000	부분가발	8.0	EIF	
6704203000	가수염	8.0	EIF	
6704204000	가눈썹	8.0	EIF	
6704205000	가속눈썹	8.0	EIF	
6704209000	기타	8.0	EIF	
6704900000	기타 재료제의 것	8.0	EIF	
680100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6802100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8.0	EIF	
6802211000	대리석	8.0	EIF	
6802212000	트래버틴	8.0	EIF	
6802213000	엘러바스터	8.0	EIF	
6802230000	화강암	8.0	5	
6802291000	기타 석회질 암석	8.0	EIF	
6802299000	기타	8.0	5	
6802911000	대리석	8.0	EIF	
6802912000	트래버틴	8.0	EIF	
6802913000	엘러바스터	8.0	EIF	
6802920000	기타 석회질 암석	8.0	EIF	
6802930000	화강암	8.0	5	
6802990000	기타석	8.0	5	
6803001000	벼루	8.0	5	
6803009000	기타	8.0	5	
680410000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그라인딩용 및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6804210000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8.0	EIF	
6804220000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8.0	EIF	
6804230000	천연석제의 것	8.0	EIF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0	EIF	
6805100000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8.0	EIF	
680520000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8.0	EIF	
680530000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8.0	EIF	
6806101000	슬랙울	8.0	EIF	
6806102000	록울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0	EIF	
6806109000	기타	8.0	EIF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8.0	EIF	
6806202000	팽창점토	8.0	EIF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0	EIF	
6806209000	기타	8.0	EIF	
6806901000	내화피복재	8.0	EIF	
6806909000	기타	8.0	EIF	
6807100000	롤상의 것	8.0	EIF	
6807900000	기타	8.0	EIF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8.0	EIF	
6809110000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8.0	EIF	
6809190000	기타	8.0	EIF	
6809900000	기타 제품	8.0	EIF	
6810111000	블록	8.0	EIF	
6810112000	벽돌	8.0	EIF	
6810191000	타일	8.0	EIF	
6810192000	판석	8.0	EIF	
6810193000	기타(지붕타일)	8.0	EIF	
6810199000	기타	8.0	EIF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에 한한다)	8.0	EIF	
6810991000	빔 및 거더	8.0	EIF	
6810992000	파일	8.0	EIF	
6810993000	전주	8.0	EIF	
6810994000	철도침목	8.0	EIF	
6810995000	관	8.0	EIF	
6810999000	기타	8.0	EIF	
6811401010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8.0	EIF	
6811401090	기타	8.0	EIF	
6811402010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8.0	EIF	
6811402090	기타	8.0	EIF	
6811403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0	EIF	
6811409010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8.0	EIF	
6811409090	기타	8.0	EIF	
6811810000	파형의 쉬트	8.0	EIF	
6811820000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8.0	EIF	
6811830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0	EIF	
6811890000	기타 제품	8.0	EIF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8.0	EIF	
6812802000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8.0	EIF	
6812803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0	EIF	
68128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812910000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8.0	EIF	
6812920000	지 ·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8.0	EIF	
6812930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0	EIF	
6812990000	기타	8.0	EIF	
6813201010	자동차용	8.0	EIF	
6813201090	기타	8.0	EIF	
6813202010	자동차용	8.0	EIF	
6813202090	기타	8.0	EIF	
6813209010	자동차용	8.0	EIF	
6813209090	기타	8.0	EIF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8.0	EIF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0	EIF	
6813899000	기타	8.0	EIF	
6814100000	판 ·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6814900000	기타	8.0	EIF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0	EIF	
6815102000	탄소섬유	8.0	EIF	
6815109000	기타	8.0	EIF	
6815200000	이탄제품	8.0	EIF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0	EIF	
6815990000	기타	8.0	5	
6901001000	벽돌	8.0	EIF	
6901002000	블록	8.0	EIF	
6901003000	타일	8.0	EIF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0	EIF	
6901009090	기타	8.0	EIF	
6902100000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및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0	EIF	
6902200000	알루미나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0	EIF	
6902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0	EIF	
6902909000	기타	8.0	EIF	
6903101000	레토트	8.0	EIF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것	3.0	EIF	
6903102090	기타	8.0	EIF	
6903103000	반응그릇	8.0	EIF	
6903104000	머플	8.0	EIF	
6903105000	노즐	8.0	EIF	
6903106000	플러그	8.0	EIF	
6903107000	관	8.0	EIF	
6903108000	봉	8.0	EIF	
69031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903201000	레토트	8.0	EIF	
6903202000	도가니	8.0	EIF	
6903203000	반응그릇	8.0	EIF	
6903204000	머플	8.0	EIF	
6903205000	노즐	8.0	EIF	
6903206000	플러그	8.0	EIF	
6903207000	관	8.0	EIF	
6903208000	봉	8.0	EIF	
6903209000	기타	8.0	EIF	
6903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0	EIF	
6903909010	레토트	8.0	EIF	
6903909020	도가니	8.0	EIF	
6903909030	반응그릇	8.0	EIF	
6903909040	머플	8.0	EIF	
6903909050	노즐	8.0	EIF	
6903909060	플러그	8.0	EIF	
6903909070	관	8.0	EIF	
6903909080	봉	8.0	EIF	
6903909090	기타	8.0	EIF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0	EIF	
6904900000	기타	8.0	EIF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0	EIF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 및 굴뚝용 내장재	8.0	EIF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0	EIF	
6905909000	기타	8.0	EIF	
6906001000	관·도관 및 흡통	8.0	EIF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0	EIF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0	EIF	
6907109000	기타	8.0	EIF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0	EIF	
6907909000	기타	8.0	EIF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0	EIF	
6908109000	기타	8.0	EIF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0	EIF	
6908909000	기타	8.0	EIF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0	EIF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0	EIF	
6909190000	기타	8.0	EIF	
6909900000	기타	8.0	EIF	
6910101000	세면대	8.0	EIF	
6910102000	목욕통	8.0	EIF	
6910103000	수세식변기통	8.0	EIF	
6910104000	소변기	8.0	EIF	
6910109000	기타	8.0	EIF	
6910900000	기타	8.0	EIF	
691110100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0	EIF	
6911102000	공기, 대접 및 접시	8.0	EIF	
69111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6911901000	가정용품	8.0	EIF	
6911902000	화장용품	8.0	EIF	
6911909000	기타	8.0	EIF	
6912001010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8.0	EIF	
6912001020	공기, 대접 및 접시	8.0	EIF	
6912001090	기타	8.0	EIF	
6912002000	가정용품	8.0	EIF	
6912003000	화장용품	8.0	EIF	
6912009000	기타	8.0	EIF	
6913101000	상·소상 및 흉상	8.0	EIF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0	EIF	
6913109090	기타	8.0	EIF	
6913901000	상·소상 및 흉상	8.0	EIF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0	EIF	
6913909090	기타	8.0	EIF	
6914101000	화분	8.0	EIF	
6914109000	기타	8.0	EIF	
6914901000	화분	8.0	EIF	
6914909000	기타	8.0	EIF	
7001001000	과	5.0	EIF	
7001002000	웨이스트와 스크랩·파유리	3.0	EIF	
7002100000	구	8.0	EIF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0	EIF	
7002209000	기타	8.0	EIF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0	EIF	
7002319000	기타	8.0	EIF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체의 것	8.0	EIF	
7002390000	기타	8.0	EIF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3200000	망입 쉬트유리	8.0	EIF	
7003300000	프로파일	8.0	EIF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0	EIF	
7005291020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0	EIF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0	EIF	
7005291091	맑은 유리	8.0	EIF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1099	기타	8.0	EIF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0	EIF	
7005292020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0	EIF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0	EIF	
7005292091	맑은 유리	8.0	EIF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2099	기타	8.0	EIF	
7005293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3090	기타	8.0	EIF	
7005294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4090	기타	8.0	EIF	
7005295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5090	기타	8.0	EIF	
7005296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6090	기타	8.0	EIF	
7005297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7090	기타	8.0	EIF	
7005298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005298090	기타	8.0	EIF	
7005299010	맑은 유리	8.0	EIF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0	EIF	
7005299090	기타	8.0	EIF	
7005300000	망입유리	8.0	EIF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0	EIF	
7006002000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0	EIF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0	EIF	
7006009000	기타	8.0	EIF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0	EIF	
700721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0	EIF	
700729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0	EIF	
700729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0	EIF	
700800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8.0	EIF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7009910000	틀이 붙지 아니한 것	8.0	EIF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0	EIF	
7010100000	앰플	8.0	EIF	
7010200000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8.0	EIF	
7010900000	기타	8.0	EIF	
7011100000	전등용의 것	8.0	EIF	
7011201000	천연색용의 것	8.0	EIF	
7011209000	기타	8.0	EIF	
7011900000	기타	8.0	EIF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0	EIF	
701322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0	EIF	
7013280000	기타	8.0	EIF	
701333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0	EIF	
7013370000	기타	8.0	EIF	
70134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0	EIF	
70134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것	8.0	EIF	
7013490000	기타	8.0	EIF	
70139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0	EIF	
7013990000	기타	8.0	EIF	
7014001000	실드빔 램프의 것	8.0	EIF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0	EIF	
7014009020	유리제의 광학용품	8.0	EIF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015901000	선글라스용의 것	8.0	EIF	
7015902000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것	8.0	EIF	
7015909000	기타	8.0	EIF	
701610000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7016901000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7016909010	레드라이트	8.0	EIF	
7016909020	스테인그라스	8.0	EIF	
7016909090	기타	8.0	EIF	
7017100000	석영유리제의 것	8.0	EIF	
7017200000	선평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8.0	EIF	
7017900000	기타	8.0	EIF	
7018101000	비드	8.0	EIF	
7018102000	모조진주	8.0	EIF	
7018103000	모조귀석과 반귀석	8.0	EIF	
7018104000	모조산호	8.0	EIF	
7018109000	기타	8.0	EIF	
7018200000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8.0	EIF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을 제외한다)	8.0	EIF	
7018909000	기타	8.0	EIF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0	EIF	
7019120000	로빙	8.0	EIF	
7019190000	기타	8.0	EIF	
7019310000	매트	8.0	EIF	
7019320000	얇은 쉬트(보일)	8.0	EIF	
7019390000	기타	8.0	EIF	
7019400000	로빙직물	8.0	EIF	
701951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0	EIF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8.0	EIF	
7019590000	기타	8.0	EIF	
7019901000	글라스울	8.0	EIF	
7019909000	기타	8.0	EIF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액터 튜브와 홀더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석영도가니	3.0	EIF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0	EIF	
7020001019	기타	8.0	EIF	
7020001090	기타	8.0	EIF	
7020009000	기타	8.0	EIF	
710110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0	EIF	
7101102000	가공한 것	8.0	EIF	
7101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0	EIF	
7101220000	가공한 것	8.0	EIF	
7102100000	선별하지 아니한 것	1.0	EIF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1.0	EIF	
7102290000	기타	5.0	EIF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1.0	EIF	
7102390000	기타	5.0	EIF	
710310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1.0	EIF	
7103911000	공업용의 것	5.0	EIF	
7103919010	루비	5.0	EIF	
7103919020	사파이어	5.0	EIF	
7103919030	에메랄드	5.0	EIF	
7103991000	공업용의 것	5.0	EIF	
7103999010	오팔	5.0	EIF	
7103999020	비취	5.0	EIF	
7103999030	옥수	5.0	EIF	
7103999040	수정	5.0	EIF	
7103999090	기타	5.0	EIF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0	EIF	
7104201000	다이아몬드	5.0	EIF	
7104209000	기타	5.0	EIF	
7104901010	다이아몬드	5.0	EIF	
7104901020	인조수정	5.0	EIF	
7104901090	기타	5.0	EIF	
7104909010	다이아몬드	5.0	EIF	
7104909090	기타	5.0	EIF	
7105101000	천연의 것	5.0	EIF	
7105102000	합성의 것	5.0	EIF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0	EIF	
7105909000	기타	5.0	EIF	
7106100000	분	3.0	EIF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0	EIF	
7106919000	기타	3.0	EIF	
7106921000	붕 및 형재	3.0	EIF	
7106922000	판·шит 및 스트립	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106923000	선	3.0	EIF	
7106929000	기타	3.0	EIF	
7107001000	봉 및 형재	3.0	EIF	
7107002000	판·쉬트 및 스트립	3.0	EIF	
7107003000	선	3.0	EIF	
7107004000	관 및 중공봉	3.0	EIF	
7107009000	기타	3.0	EIF	
7108110000	분	3.0	EIF	
7108121000	럼프·빌레트 및 입	3.0	EIF	
7108129000	기타	3.0	EIF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0	EIF	
7108131090	기타	3.0	EIF	
7108139010	봉 및 형재	3.0	EIF	
7108139020	판·쉬트 및 스트립	3.0	EIF	
7108139090	기타	3.0	EIF	
7108200000	화폐용의 것	0.0	EIF	
710900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0	EIF	
71101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0	EIF	
7110190000	기타	3.0	EIF	
7110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0	EIF	
7110290000	기타	3.0	EIF	
71103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0	EIF	
7110390000	기타	3.0	EIF	
71104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0	EIF	
7110490000	기타	3.0	EIF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0	EIF	
711230000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2.0	EIF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0	EIF	
7112919000	기타	3.0	EIF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0	EIF	
7112929000	기타	3.0	EIF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0	EIF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의 것	6.5	EIF	
7112999000	기타	3.0	EIF	
7113110000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7113191000	백금제의 것	8.0	EIF	
7113192000	금제의 것	8.0	EIF	
7113199000	기타	8.0	EIF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0	EIF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0	EIF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0	EIF	
71132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114111000	식탁용의 것	8.0	EIF	
7114112000	화장실용의 것	8.0	EIF	
711411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0	EIF	
7114114000	깍연용의 것	8.0	EIF	
7114119000	기타	8.0	EIF	
7114191000	식탁용의 것	8.0	EIF	
7114192000	화장실용의 것	8.0	EIF	
711419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0	EIF	
7114194000	깍연용의 것	8.0	EIF	
7114199000	기타	8.0	EIF	
7114201000	식탁용의 것	8.0	EIF	
7114202000	화장실용의 것	8.0	EIF	
711420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0	EIF	
7114204000	깍연용의 것	8.0	EIF	
7114209000	기타	8.0	EIF	
711510000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8.0	EIF	
7115901010	백금도가니	8.0	EIF	
7115901090	기타	8.0	EIF	
7115909010	금제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0	EIF	
7115909020	은제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0	EIF	
7115909090	기타	8.0	EIF	
7116101000	천연진주의 것	8.0	EIF	
7116102000	양식진주의 것	8.0	EIF	
7116201000	공업용의 것	8.0	EIF	
7116209010	신변장식용의 것	8.0	EIF	
7116209090	기타	8.0	EIF	
7117110000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8.0	EIF	
7117191000	목걸이	8.0	EIF	
7117192000	팔찌	8.0	EIF	
7117193000	귀걸이	8.0	EIF	
7117194000	브로우치	8.0	EIF	
7117195000	반지	8.0	EIF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0	EIF	
7117199000	기타	8.0	EIF	
7117900000	기타	8.0	EIF	
7118100000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0	EIF	
7118901000	금화	0.0	EIF	
7118902000	은화	0.0	EIF	
7118909000	기타	0.0	EIF	
7201101000	주물용의 것	0.0	EIF	
7201102000	제강용의 것	0.0	EIF	
7201109000	기타	0.0	EIF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7201501000	합금선철	2.0	EIF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	2.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0	5	
7202190000	기타	5.0	5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3.0	EIF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0	EIF	
7202299000	기타	3.0	EIF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5.0	5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3.0	EIF	
7202490000	기타	3.0	EIF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	3.0	EIF	
7202600000	페로니켈	3.0	EIF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넘	3.0	EIF	
7202800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3.0	EIF	
7202910000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3.0	EIF	
7202920000	페로바나듐	3.0	EIF	
7202930000	페로니오븀	3.0	EIF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에 한한다)	3.0	EIF	
7202999000	기타	3.0	EIF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0	EIF	
7203900000	기타	1.0	EIF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0	EIF	
7204290000	기타	0.0	EIF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204410000	선삭·셰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7204490000	기타	0.0	EIF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0.0	EIF	
7205101000	쇼트	5.0	EIF	
7205102000	그리트	5.0	EIF	
7205109000	기타	5.0	EIF	
7205210000	합금강의 것	5.0	EIF	
7205290000	기타	5.0	EIF	
7206100000	잉곳	0.0	EIF	
7206900000	기타	0.0	EIF	
7207111000	블룸	0.0	EIF	
7207112000	빌레트	0.0	EIF	
7207121000	슬래브	0.0	EIF	
7207122000	쉬트바	0.0	EIF	
7207190000	기타	0.0	EIF	
7207201000	블룸	0.0	EIF	
7207202000	빌레트	0.0	EIF	
7207203000	슬래브	0.0	EIF	
7207204000	쉬트바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07209000	기타	0.0	EIF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IF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259000	기타	0.0	EIF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269000	기타	0.0	EIF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279000	기타	0.0	EIF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369000	기타	0.0	EIF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379000	기타	0.0	EIF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389000	기타	0.0	EIF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399000	기타	0.0	EIF	
7208400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0.0	EIF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519000	기타	0.0	EIF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529000	기타	0.0	EIF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539000	기타	0.0	EIF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8549000	기타	0.0	EIF	
7208900000	기타	0.0	EIF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159000	기타	0.0	EIF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169000	기타	0.0	EIF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179000	기타	0.0	EIF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189000	기타	0.0	EIF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259000	기타	0.0	EIF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269000	기타	0.0	EIF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279000	기타	0.0	EIF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09289000	기타	0.0	EIF	
7209900000	기타	0.0	EIF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IF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10200000	납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0	EIF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0309000	기타	0.0	EIF	
7210410000	파형의 것	0.0	EIF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0491090	기타	0.0	EIF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0499090	기타	0.0	EIF	
721050000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0690000	기타	0.0	EIF	
721070000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0	EIF	
7210901000	니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0902000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0909000	기타	0.0	EIF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0.0	EIF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1149000	기타	0.0	EIF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1199000	기타	0.0	EIF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1239000	기타	0.0	EIF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1299000	기타	0.0	EIF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1909000	기타	0.0	EIF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IF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2209000	기타	0.0	EIF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2301090	기타	0.0	EIF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12309090	기타	0.0	EIF	
721240000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0	EIF	
7212501000	니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2502000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2509000	기타	0.0	EIF	
7212600000	클래드한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	0.0	EIF	
721320000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0	EIF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0	EIF	
7213911090	기타	0.0	EIF	
7213919000	기타	0.0	EIF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0	EIF	
7213991090	기타	0.0	EIF	
7213999000	기타	0.0	EIF	
7214100000	단조한 것	0.0	EIF	
7214201000	철근	0.0	EIF	
7214209000	기타	0.0	EIF	
721430000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0	EIF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0.0	EIF	
7214999000	기타	0.0	EIF	
721510000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1550000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15900000	기타	0.0	EIF	
7216101000	유형강	0.0	EIF	
7216102000	아이형강	0.0	EIF	
7216103000	에치형강	0.0	EIF	
7216210000	엘형강	0.0	EIF	
7216220000	티형강	0.0	EIF	
7216310000	유형강	0.0	EIF	
7216320000	아이형강	0.0	EIF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IF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IF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IF	
7216401000	엘형강	0.0	EIF	
7216402000	티형강	0.0	EIF	
7216500000	기타 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0	EIF	
7216690000	기타	0.0	EIF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0.0	EIF	
7216990000	기타	0.0	EIF	
721710000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17200000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7301000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17309000	기타	0.0	EIF	
7217900000	기타	0.0	EIF	
7218101000	잉곳	0.0	EIF	
7218109000	기타	0.0	EIF	
7218911000	슬래브	0.0	EIF	
7218912000	쉬트바	0.0	EIF	
7218919000	기타	0.0	EIF	
7218991000	블룸	0.0	EIF	
7218992000	빌레트	0.0	EIF	
7218999000	기타	0.0	EIF	
721911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111090	기타	0.0	EIF	
7219119000	기타	0.0	EIF	
721912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121090	기타	0.0	EIF	
7219129000	기타	0.0	EIF	
721913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131090	기타	0.0	EIF	
7219139000	기타	0.0	EIF	
721914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141090	기타	0.0	EIF	
7219149000	기타	0.0	EIF	
721921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211090	기타	0.0	EIF	
7219219000	기타	0.0	EIF	
721922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221090	기타	0.0	EIF	
7219229000	기타	0.0	EIF	
721923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231090	기타	0.0	EIF	
7219239000	기타	0.0	EIF	
721924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241090	기타	0.0	EIF	
7219249000	기타	0.0	EIF	
721931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311090	기타	0.0	EIF	
7219319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1932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321090	기타	0.0	EIF	
7219329000	기타	0.0	EIF	
721933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331090	기타	0.0	EIF	
7219339000	기타	0.0	EIF	
721934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341090	기타	0.0	EIF	
7219349000	기타	0.0	EIF	
721935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351090	기타	0.0	EIF	
7219359000	기타	0.0	EIF	
721990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19901090	기타	0.0	EIF	
7219909000	기타	0.0	EIF	
722011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20111090	기타	0.0	EIF	
7220119000	기타	0.0	EIF	
722012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20121090	기타	0.0	EIF	
7220129000	기타	0.0	EIF	
722020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20201090	기타	0.0	EIF	
7220209000	기타	0.0	EIF	
7220901010	니켈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IF	
7220901090	기타	0.0	EIF	
7220909000	기타	0.0	EIF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0.0	EIF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0	EIF	
7222190000	기타	0.0	EIF	
722220000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22300000	기타 봉	0.0	EIF	
7222400000	형강	0.0	EIF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0.0	EIF	
7224101000	잉곳	0.0	EIF	
7224109000	기타	0.0	EIF	
7224901000	블룸	0.0	EIF	
7224902000	빌레트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24903000	슬래브	0.0	EIF	
7224904000	슈트바	0.0	EIF	
7224909000	기타	0.0	EIF	
7225110000	방향성의 것	0.0	EIF	
7225190000	기타	0.0	EIF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25309090	기타	0.0	EIF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25409090	기타	0.0	EIF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5509000	기타	0.0	EIF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25919090	기타	0.0	EIF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25929019	기타	0.0	EIF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IF	
7225929099	기타	0.0	EIF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5999000	기타	0.0	EIF	
7226110000	방향성의 것	0.0	EIF	
7226190000	기타	0.0	EIF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6910000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0	EIF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0	EIF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에 한한다)	0.0	EIF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전해 도포한 것	0.0	EIF	
72269930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226999000	기타	0.0	EIF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0	EIF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0	EIF	
7227909000	기타	0.0	EIF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0	EIF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0	EIF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2850000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7228600000	기타의 봉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228700000	형강	0.0	EIF	
7228800000	중공드릴봉	0.0	EIF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0	EIF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9901090	기타	0.0	EIF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9902090	기타	0.0	EIF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0	EIF	
7229909090	기타	0.0	EIF	
7301101000	유형	0.0	EIF	
7301109000	기타	0.0	EIF	
7301201000	유형강	0.0	EIF	
7301202000	에치형강	0.0	EIF	
7301203000	아이형강	0.0	EIF	
7301209000	기타	0.0	EIF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0	EIF	
7302101090	기타	0.0	EIF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0	EIF	
7302102090	기타	0.0	EIF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0	EIF	
7302103090	기타	0.0	EIF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0	EIF	
7302104090	기타	0.0	EIF	
7302300000	침단케조 · 교차구류 ·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8.0	EIF	
7302400000	계목판과 저판	0.0	EIF	
7302900000	기타	0.0	EIF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제의 것	8.0	EIF	
7303001090	기타	8.0	EIF	
7303002000	중공 프로파일	8.0	EIF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0	EIF	
7304190000	기타	0.0	EIF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0.0	EIF	
7304230000	기타 드릴파이프	0.0	EIF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7304290000	기타	0.0	EIF	
73043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0	EIF	
7304390000	기타	0.0	EIF	
73044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0	EIF	
7304490000	기타	0.0	EIF	
73045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0	EIF	
7304590000	기타	0.0	EIF	
7304900000	기타	0.0	EIF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IF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IF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305190000	기타	0.0	EIF	
7305200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0.0	EIF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0	EIF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것	0.0	EIF	
7305319000	기타	0.0	EIF	
7305390000	기타	0.0	EIF	
7305900000	기타	0.0	EIF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7306190000	기타	0.0	EIF	
7306211000	케이싱	0.0	EIF	
7306212000	튜브	0.0	EIF	
7306291000	케이싱	0.0	EIF	
7306292000	튜브	0.0	EIF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0	EIF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0	EIF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0	EIF	
7306301090	기타	0.0	EIF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0	EIF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0	EIF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0	EIF	
7306302090	기타	0.0	EIF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IF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IF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0	EIF	
7306611090	기타	0.0	EIF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0	EIF	
730661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0	EIF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0	EIF	
7306691090	기타	0.0	EIF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0	EIF	
730669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0	EIF	
7306901000	이중권 강관	0.0	EIF	
7306909000	기타	0.0	EIF	
730711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0	EIF	
7307190000	기타	8.0	EIF	
7307210000	플랜지	8.0	EIF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7307229000	기타	8.0	EIF	
73072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0	EIF	
7307290000	기타	8.0	EIF	
7307910000	플랜지	8.0	EIF	
7307921000	나선가공한 슬리브(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307929000	기타	8.0	EIF	
73079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0	EIF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7307999000	기타	8.0	EIF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0	EIF	
7308200000	탐과 격자주	8.0	EIF	
730830000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8.0	EIF	
730840000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광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0	EIF	
7308901000	수문	0.0	EIF	
7308909000	기타	0.0	EIF	
73090000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8.0	EIF	
7310210000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8.0	EIF	
7310290000	기타	8.0	EIF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8.0	EIF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8.0	EIF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IF	
7312101019	기타	0.0	EIF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IF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0	EIF	
7312101099	기타	0.0	EIF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IF	
7312102019	기타	0.0	EIF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IF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0	EIF	
7312102099	기타	0.0	EIF	
7312900000	기타	0.0	EIF	
7313001000	유자선	0.0	EIF	
7313009000	기타	0.0	EIF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7314140000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0	EIF	
7314190000	기타	0.0	EIF	
7314200000	그릴·망 및 울타리(점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0	EIF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7314390000	기타	0.0	EIF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0	EIF	
7314490000	기타	0.0	EIF	
7314500000	익스팬디드메탈	0.0	EIF	
7315110000	롤러체인	8.0	EIF	
7315120000	기타체인	8.0	EIF	
7315190000	부분품	8.0	EIF	
7315200000	스키드체인	8.0	EIF	
7315810000	스터드링크	8.0	EIF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8.0	EIF	
7315890000	기타	8.0	EIF	
7315900000	기타 부분품	8.0	EIF	
7316001000	닳	8.0	EIF	
7316002000	부분품	8.0	EIF	
731700101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0	EIF	
7317001019	기타	0.0	EIF	
731700102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0	EIF	
7317001029	기타	0.0	EIF	
7317002000	압정	0.0	EIF	
7317003000	제도용 및 사무용 핀	0.0	EIF	
7317004000	파형 못	0.0	EIF	
7317005000	스테이플	0.0	EIF	
7317009000	기타	0.0	EIF	
7318110000	코치스크루	8.0	EIF	
7318120000	기타 목재용 스크루	8.0	EIF	
7318130000	스크루훅과 스크루링	8.0	EIF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	8.0	EIF	
7318151000	머신스크루	8.0	EIF	
7318152000	볼 트	8.0	EIF	
7318153000	볼트와 너트(세트로 된 것에 한한다)	8.0	EIF	
7318159000	기타	8.0	EIF	
7318160000	너트	8.0	EIF	
7318190000	기타	8.0	EIF	
7318210000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8.0	EIF	
7318220000	기타 와셔	8.0	EIF	
7318230000	리벳	8.0	EIF	
7318240000	코터와 코터핀	8.0	EIF	
7318290000	기타	8.0	EIF	
7319200000	안전핀	8.0	EIF	
73193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핀	8.0	EIF	
7319309000	기타	8.0	EIF	
7319901010	수봉침	8.0	EIF	
7319901020	수편침	8.0	EIF	
7319901090	기타	8.0	EIF	
7319909000	기타	8.0	EIF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0	EIF	
732010200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판상스프링	8.0	EIF	
73201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320201000	자동차용의 것	8.0	EIF	
7320202000	충격 흡수용의 것	8.0	EIF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의 것	8.0	EIF	
7320204000	가구용의 것	8.0	EIF	
7320209000	기타	8.0	EIF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0	EIF	
7320909000	기타 스프링	8.0	EIF	
73211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검용의 것	8.0	EIF	
73211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0	EIF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0	EIF	
73218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검용의 것	8.0	EIF	
73218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0	EIF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0	EIF	
7321900000	부분품	8.0	EIF	
7322111000	방열기	8.0	EIF	
7322112000	부분품	8.0	EIF	
7322191000	방열기	8.0	EIF	
7322192000	부분품	8.0	EIF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0	EIF	
7322909010	공기가열기	8.0	EIF	
7322909020	온풍배분기	8.0	EIF	
7322909030	부분품	8.0	EIF	
7323100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0	EIF	
732391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0	EIF	
732392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8.0	EIF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8.0	EIF	
7323940000	철강(주철을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8.0	EIF	
7323990000	기타	8.0	EIF	
7324101000	설거지	8.0	EIF	
7324102000	세면대	8.0	EIF	
7324210000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0	EIF	
7324299000	기타	8.0	EIF	
7324901000	화장용세트	8.0	EIF	
7324908000	기타	8.0	EIF	
7324909000	부분품	8.0	EIF	
732510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0	EIF	
73259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0	EIF	
7325991000	주철제의 것	8.0	EIF	
7325992000	주강제의 것	8.0	EIF	
7325993000	합금강제의 것	8.0	EIF	
732599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3261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0	EIF	
7326190000	기타	8.0	EIF	
7326200000	철강선제의 제품	8.0	EIF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	8.0	EIF	
7326909000	기타	8.0	EIF	
7401001000	동의 매트	0.0	EIF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0	EIF	
74020010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0.0	EIF	
7402002000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0.0	EIF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0	5	
7403120000	와이어바	5.0	EIF	
7403130000	빌레트	5.0	EIF	
7403191000	슬래브	5.0	EIF	
7403192000	잉곳	5.0	EIF	
7403199000	기타	5.0	EIF	
7403210000	동-아연의 합금(황동)	5.0	EIF	
7403220000	동-주석의 합금(청동)	5.0	EIF	
7403291010	동-니켈의 합금(백동)	5.0	EIF	
7403291020	동-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0	EIF	
7403299000	기타	5.0	EIF	
74040000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405000000	동의 마스터알로이	5.0	EIF	
7406100000	비충상조직의 분	8.0	EIF	
7406201000	충상조직의 분	8.0	EIF	
7406202000	플레이크	8.0	EIF	
7407100000	정제한 동의 것	8.0	EIF	
7407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0	EIF	
7407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0	EIF	
7407292010	동-니켈의 합금의 것(백동)	8.0	EIF	
7407292020	동-니켈-아연의 합금의 것(양백)	8.0	EIF	
7407299000	기타	8.0	EIF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408190000	기타	8.0	EIF	
7408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0	EIF	
74082210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8.0	EIF	
7408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8.0	EIF	
7408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0	EIF	
7408299000	기타	8.0	EIF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119000	기타	8.0	EIF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199000	기타	8.0	EIF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219000	기타	8.0	EIF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29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319000	기타	8.0	EIF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399000	기타	8.0	EIF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401090	기타	8.0	EIF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402090	기타	8.0	EIF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0	EIF	
7409909000	기타	8.0	EIF	
7410110000	정제한 동의 것	8.0	EIF	
7410120000	동합금의 것	8.0	EIF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0	EIF	
7410219000	기타	8.0	EIF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0	EIF	
7410229000	기타	8.0	EIF	
7411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8.0	EIF	
7411210000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8.0	EIF	
7411221000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8.0	EIF	
7411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8.0	EIF	
7411291000	동-주석 합금제의 것(청동)	8.0	EIF	
7411299000	기타	8.0	EIF	
7412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3.0	EIF	
7412200000	동 합금제의 것	3.0	EIF	
7413000000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3.0	EIF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 또는 도포한 것	8.0	EIF	
7415109000	기타	8.0	EIF	
7415210000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8.0	EIF	
7415290000	기타	8.0	EIF	
7415330000	스크루, 볼트와 너트	8.0	EIF	
7415390000	기타	8.0	EIF	
7418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0	EIF	
7418191000	식탁용품·주방용품	8.0	EIF	
7418192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5.0	EIF	
7418192090	기타	8.0	EIF	
7418199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의 것	5.0	EIF	
7418199090	기타	8.0	EIF	
7418201000	위생용품	8.0	EIF	
7418202000	부분품	8.0	EIF	
7419101000	체인	8.0	EIF	
7419102000	부분품	8.0	EIF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419991010	클로드	8.0	EIF	
7419991090	기타	8.0	EIF	
7419992000	동제의 스프링	8.0	EIF	
7419999000	기타	8.0	EIF	
7501100000	니켈의 매트	0.0	EIF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0	EIF	
7501201090	기타	0.0	EIF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0	EIF	
7501209090	기타	0.0	EIF	
7502101000	음극	3.0	EIF	
7502109000	기타	3.0	EIF	
7502200000	니켈 합금	3.0	EIF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504001000	분	5.0	EIF	
7504002000	플레이크	5.0	EIF	
7505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0	EIF	
7505120000	니켈 합금의 것	5.0	EIF	
75052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0	EIF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5.0	EIF	
75061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5.0	EIF	
7506102000	박	5.0	EIF	
75062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5.0	EIF	
7506202000	박	5.0	EIF	
7507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0	EIF	
7507120000	니켈 합금제의 것	8.0	EIF	
7507200000	관연결구류	8.0	EIF	
7508100000	니켈선제의 클로드·그릴 및 망	8.0	EIF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0	EIF	
75089020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0	EIF	
7508902020	니켈 합금제의 것	8.0	EIF	
7508909000	기타	8.0	EIF	
76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0	EIF	
7601201000	캐스팅 알루미늄	1.0	EIF	
7601202000	빌레트	3.0	EIF	
7601209000	기타	1.0	EIF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603100000	비충상조직의 분	8.0	EIF	
7603201000	분	8.0	EIF	
7603202000	플레이크	8.0	EIF	
7604101000	봉	8.0	EIF	
7604102010	중공프로파일	8.0	EIF	
7604102090	기타	8.0	EIF	
7604210000	중공프로파일	8.0	EIF	
7604291000	봉	8.0	EIF	
7604299000	기타 프로파일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605190000	기타	8.0	EIF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7605290000	기타	8.0	EIF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0	EIF	
7606119000	기타	8.0	EIF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0	EIF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0	EIF	
7606919000	기타	8.0	EIF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0	EIF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0	EIF	
7607119000	기타	8.0	EIF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0	EIF	
7607199000	기타	8.0	EIF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0	EIF	
7607209000	기타	8.0	EIF	
7608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것	8.0	EIF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8.0	EIF	
76090000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8.0	EIF	
7610100000	문 ·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8.0	EIF	
7610901000	구조물	8.0	EIF	
7610908000	기타	8.0	EIF	
7610909000	부분품	8.0	EIF	
76110000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 탱크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0	EIF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0	EIF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8.0	EIF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8.0	EIF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8.0	EIF	
7613001000	압축가스용의 것	8.0	EIF	
7613002000	액화가스용의 것	8.0	EIF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0	EIF	
7614900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615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0	EIF	
761519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0	EIF	
7615192000	식탁용품·주방용품	8.0	EIF	
7615193000	기타 가정용 물품	8.0	EIF	
7615199000	부분품	8.0	EIF	
7615201000	위생용품	8.0	EIF	
7615202000	부분품	8.0	EIF	
7616100000	못·압정·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혹 ·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0	EIF	
7616910000	알루미늄선재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8.0	EIF	
7616991000	보빈	8.0	EIF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	8.0	EIF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	8.0	EIF	
7616999090	기타	8.0	EIF	
7801101000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0	10	
7801109000	기타	3.0	1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3.0	5	
7801991000	정제하지 아니한 것	1.0	EIF	
7801992010	연-주석 합금	3.0	5	
7801992090	기타	3.0	5	
780200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804111000	슈트 및 스트립	8.0	EIF	
7804112000	박	8.0	EIF	
7804190000	기타	8.0	EIF	
7804201000	분	8.0	EIF	
7804202000	플레이크	8.0	EIF	
7806001000	연제용기	8.0	EIF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0	EIF	
7806003010	봉	8.0	EIF	
7806003020	프로파일	8.0	EIF	
7806003030	선	8.0	EIF	
7806004010	관	8.0	EIF	
7806004020	관연결구류	8.0	EIF	
7806009000	기타	8.0	EIF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0	1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0	1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0	10	
7901202000	아연-동 합금	3.0	10	
7901209000	기타	3.0	1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7903100000	아연더스트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903901000	분	8.0	EIF	
7903902000	플레이크	8.0	EIF	
7904001000	봉	8.0	EIF	
7904002000	프로파일	8.0	EIF	
7904003000	선	8.0	EIF	
79050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8.0	EIF	
7905002000	박	8.0	EIF	
7907001000	아연제의 홀통·지붕덮개·채광 창틀 및 기타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0	EIF	
7907002010	관	8.0	EIF	
7907002020	관연결구류	8.0	EIF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0	EIF	
7907009090	기타	8.0	EIF	
80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3.0	EIF	
8001200000	주석 합금	3.0	EIF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8003001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0	EIF	
8003001090	기타	8.0	EIF	
8003002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0	EIF	
8003002090	기타	8.0	EIF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0	EIF	
8007002000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8007003010	박	8.0	EIF	
8007003021	분	8.0	EIF	
8007003022	플레이크	8.0	EIF	
8007004000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	8.0	EIF	
8007009000	기타	8.0	EIF	
8101100000	분	3.0	EIF	
8101940000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0	EIF	
8101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0	EIF	
8101969000	기타	8.0	EIF	
8101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8101991010	봉	8.0	EIF	
8101991020	프로파일	8.0	EIF	
8101991030	판·쉬트 및 스트립	8.0	EIF	
8101991040	박	8.0	EIF	
8101999000	기타	8.0	EIF	
8102100000	분	3.0	EIF	
8102940000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0	EIF	
8102951000	봉	8.0	EIF	
8102952000	프로파일	8.0	EIF	
8102953000	판·쉬트 및 스트립	8.0	EIF	
8102954000	박	8.0	EIF	
8102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102969000	기타	8.0	EIF	
8102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8102990000	기타	8.0	EIF	
8103201000	괴	3.0	EIF	
8103202000	분	3.0	EIF	
8103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8103900000	기타	8.0	EIF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0	EIF	
8104190000	기타	3.0	EIF	
8104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0	EIF	
8104301000	출밥·연삭설 및 입	8.0	EIF	
8104302000	분	8.0	EIF	
8104901000	붕	8.0	EIF	
8104909000	기타	8.0	EIF	
8105201000	괴	3.0	EIF	
8105202000	코발트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	3.0	EIF	
8105203000	분	3.0	EIF	
8105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05900000	기타	3.0	EIF	
8106001010	괴	3.0	EIF	
810600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06001030	분	3.0	EIF	
8106009000	기타	3.0	EIF	
8107201000	괴	3.0	EIF	
8107202000	분	3.0	EIF	
8107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07900000	기타	3.0	EIF	
8108201000	괴	3.0	EIF	
8108202000	분	3.0	EIF	
8108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0	EIF	
8108902000	관	8.0	EIF	
8108909000	기타	8.0	EIF	
8109201000	괴	3.0	EIF	
8109202000	분	3.0	EIF	
8109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09901010	관	0.0	EIF	
8109901020	판, 쉬트 및 스트립	0.0	EIF	
8109901030	붕	0.0	EIF	
8109901090	기타	0.0	EIF	
8109909000	기타	3.0	EIF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 분	3.0	EIF	
8110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10900000	기타	3.0	EIF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112120000	괴, 분	3.0	EIF	
811213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12190000	기타	3.0	EIF	
8112210000	괴, 분	3.0	EIF	
81122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12290000	기타	3.0	EIF	
8112510000	괴, 분	3.0	EIF	
81125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0	EIF	
8112590000	기타	3.0	EIF	
8112921000	게르마늄	3.0	EIF	
8112922000	바나듐	3.0	EIF	
8112923000	갈륨	3.0	EIF	
8112924000	하프늄	3.0	EIF	
8112925000	인듐	3.0	EIF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0	EIF	
8112927000	레늄	3.0	EIF	
8112929000	기타	3.0	EIF	
8112991000	게르마늄	3.0	EIF	
8112992000	바나듐	3.0	EIF	
8112993000	갈륨	3.0	EIF	
8112994000	하프늄	3.0	EIF	
8112995000	인듐	3.0	EIF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0	EIF	
8112997000	레늄	3.0	EIF	
8112999000	기타	3.0	EIF	
811300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0	EIF	
8201100000	가래 및 삽	8.0	EIF	
8201200000	포크	8.0	EIF	
8201300000	곡괭이·픽스·괭이와 쇠스랑	8.0	EIF	
8201400000	도끼·빌축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0	EIF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8.0	EIF	
8201600000	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0	EIF	
8201901000	낫	8.0	EIF	
8201902000	초절기	8.0	EIF	
8201903000	제재용 썰기	8.0	EIF	
8201909000	기타	8.0	EIF	
8202101000	목재용의 것	8.0	EIF	
8202102000	금속용의 것	8.0	EIF	
8202109000	기타	8.0	EIF	
8202200000	띠톱의 날	8.0	EIF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8.0	EIF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0	EIF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0	EIF	
8202392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0	EIF	
8202399000	부분품	8.0	EIF	
8202400000	전기톱의 날	8.0	EIF	
8202911000	쇠톱의 날	8.0	EIF	
8202919000	기타	8.0	EIF	
8202990000	기타	8.0	EIF	
8203101000	톱날용의 것	8.0	EIF	
8203109000	기타	8.0	EIF	
820320100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8.0	EIF	
8203202000	집게	8.0	EIF	
8203203000	핀셋	8.0	EIF	
8203204000	못뽑기	8.0	EIF	
8203209000	기타	8.0	EIF	
8203300000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유사한 공구	8.0	EIF	
8203401000	파이프커터	8.0	EIF	
8203402000	볼트크로퍼 및 클리퍼	8.0	EIF	
8203403000	천공편치	8.0	EIF	
8203409000	기타	8.0	EIF	
8204110000	조정할 수 없는 것	8.0	EIF	
8204120000	조정할 수 있는 것	8.0	EIF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205101000	드릴링용의 것	8.0	EIF	
8205102000	드레딩용의 것	8.0	EIF	
8205103000	태핑용의 것	8.0	EIF	
8205109000	기타	8.0	EIF	
8205200000	해머와 슬레즈해머	8.0	EIF	
8205300000	목재가공용의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0	EIF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	8.0	EIF	
8205510000	가정용공구	8.0	EIF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0	EIF	
8205592000	땀인두	8.0	EIF	
8205593000	그리스 건	8.0	EIF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0	EIF	
8205596000	미장 및 도장용 공구	8.0	EIF	
8205597000	시계제조용 공구	8.0	EIF	
8205599000	기타	8.0	EIF	
8205600000	블로램프	8.0	EIF	
8205701000	바이스	8.0	EIF	
8205702000	클램프	8.0	EIF	
8205709000	기타	8.0	EIF	
8205801000	앤빌	8.0	EIF	
8205802000	가반식단야로	8.0	EIF	
8205803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그라인딩휠	8.0	EIF	
82058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205900000	앞의 각 소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 물품의 세트	8.0	EIF	
8206000000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8.0	EIF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8.0	EIF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0	EIF	
8207199000	부분품	8.0	EIF	
8207201000	인발용의 것	8.0	EIF	
8207202000	압출용의 것	8.0	EIF	
8207301000	프레스용의 것	8.0	EIF	
8207302000	스탬핑용의 것	8.0	EIF	
8207303000	편칭용의 것	8.0	EIF	
8207309000	기타	8.0	EIF	
8207401000	태핑용의 것	8.0	EIF	
8207402000	드레딩용의 것	8.0	EIF	
8207409000	기타	8.0	EIF	
8207501010	고속도강재의 것	8.0	EIF	
8207501090	기타	8.0	EIF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	8.0	EIF	
8207509000	기타	8.0	EIF	
8207601000	리머	8.0	EIF	
8207602000	랩	8.0	EIF	
8207603000	브로치	8.0	EIF	
8207609000	기타	8.0	EIF	
8207701000	기어커터	8.0	EIF	
8207702000	밀링커터	8.0	EIF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	8.0	EIF	
8207704000	로타리파일	8.0	EIF	
8207709000	기타	8.0	EIF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0	EIF	
8207809000	기타	8.0	EIF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0	EIF	
8207909000	기타	8.0	EIF	
8208100000	금속 가공용의 것	8.0	EIF	
8208200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20830000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8.0	EIF	
8208400000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0	EIF	
8208900000	기타	8.0	EIF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0	EIF	
8209001040	서메트제의 것	8.0	EIF	
8209001090	기타	8.0	EIF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0	EIF	
8209002040	서메트제의 것	8.0	EIF	
8209002090	기타	8.0	EIF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8.0	EIF	
8210003000	비터 및 믹서	8.0	EIF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8.0	EIF	
8210005000	오프너·코르크 및 실러	8.0	EIF	
8210008000	기타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0	EIF	
8210009000	부분품	8.0	EIF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0	EIF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0	EIF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0	EIF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0	EIF	
8211940000	칼날	8.0	EIF	
8211950000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8.0	EIF	
8212100000	면도기	8.0	EIF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0	EIF	
8212900000	기타의 부분품	8.0	EIF	
8213001000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8.0	EIF	
8213002010	재단용의 것	8.0	EIF	
8213002020	이발용의 것	8.0	EIF	
8213002090	기타	8.0	EIF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0	EIF	
8213004000	가위날	8.0	EIF	
8213009000	기타	8.0	EIF	
8214101000	연필깎기	8.0	EIF	
8214109000	기타	8.0	EIF	
821420000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0	EIF	
8214901000	조발기	8.0	EIF	
8214902000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와 초퍼 및 민상용 칼	8.0	EIF	
8214909000	기타	8.0	EIF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8.0	EIF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8.0	EIF	
8215911000	스푼	8.0	EIF	
8215912000	포크	8.0	EIF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	8.0	EIF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0	EIF	
8215915000	각종 집게	8.0	EIF	
8215919000	기타	8.0	EIF	
8215991000	스푼	8.0	EIF	
8215992000	포크	8.0	EIF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	8.0	EIF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0	EIF	
8215995000	각종 집게	8.0	EIF	
8215999000	기타	8.0	EIF	
8301100000	자물쇠	8.0	EIF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0	EIF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0	EIF	
8301401090	기타	8.0	EIF	
8301409000	기타	8.0	EIF	
830150000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0	EIF	
8301600000	부분품	8.0	EIF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0	EIF	
8302100000	경첩	8.0	EIF	
8302200000	카스터	8.0	EIF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0	EIF	
8302411000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0	EIF	
8302419000	기타	8.0	EIF	
8302420000	기타(가구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0	EIF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0	EIF	
8302499000	기타	8.0	EIF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0	EIF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0	EIF	
8303001000	금고	8.0	EIF	
8303009000	기타	8.0	EIF	
83040000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를 제외한다)	8.0	EIF	
8305100000	서류철용 피팅	8.0	EIF	
83052000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8.0	EIF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0	EIF	
830610000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8.0	EIF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0	EIF	
8306290000	기타	8.0	EIF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0	EIF	
8306302000	비금속제의 거울	8.0	EIF	
8307100000	철강제의 것	8.0	EIF	
830790000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8.0	EIF	
8308101000	흑	8.0	EIF	
8308102000	아이 및 아이릿	8.0	EIF	
830820000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8.0	EIF	
8308901000	유금 및 유금이 붙은 프레임	8.0	EIF	
8308902000	버클 및 버클유금	8.0	EIF	
8308903000	구슬	8.0	EIF	
8308904000	스팽글	8.0	EIF	
8308909000	기타	8.0	EIF	
8309100000	크라उन코르크	8.0	EIF	
8309901000	캔뚜껑(E.O.E)	8.0	EIF	
83099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3100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0	EIF	
8311109000	기타	8.0	EIF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0	EIF	
8311209000	기타	8.0	EIF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0	EIF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0	EIF	
8311309090	기타	8.0	EIF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0	EIF	
8311909000	기타	8.0	EIF	
8401100000	원자로	0.0	EIF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0.0	EIF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0.0	EIF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0	EIF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8.0	EIF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8.0	EIF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0	EIF	
8402199000	기타	8.0	EIF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	8.0	EIF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0	EIF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0	EIF	
8403101000	유류사용의 것	8.0	EIF	
8403102000	석탄사용의 것	8.0	EIF	
8403103000	가스사용의 것	8.0	EIF	
8403109000	기타	8.0	EIF	
8403900000	부분품	8.0	EIF	
8404101000	연료절약기	8.0	EIF	
8404102000	과열기	8.0	EIF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8.0	EIF	
8404104000	가스회수기	8.0	EIF	
8404109000	기타	8.0	EIF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0	EIF	
8404901000	보일러용의 응축기의 것	8.0	EIF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의 것	8.0	EIF	
8404909000	기타	8.0	EIF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0	EIF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0	EIF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0	EIF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0	EIF	
8405109000	기타	8.0	EIF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0	EIF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0	EIF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0	EIF	
8405909000	기타	8.0	EIF	
8406103000	출력이 2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0	EIF	
8406109000	기타	5.0	EIF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0	EIF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0	EIF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0	EIF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0	EIF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0	EIF	
8406909000	기타	8.0	EIF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0	EIF	
8407210000	아웃보드 모터	8.0	EIF	
8407290000	기타	8.0	EIF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0	EIF	
8407319000	기타	8.0	EIF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0	EIF	
8407329000	기타	8.0	EIF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0	EIF	
8407339000	기타	8.0	EIF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0	EIF	
8407349000	기타	8.0	EIF	
8407901000	철도차량용의 것	0.0	EIF	
8407909000	기타	8.0	EIF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EIF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EIF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0	EIF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0	EIF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8.0	EIF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8.0	EIF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8.0	EIF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0	EIF	
8408901010	철도용기관차의 내연기관	0.0	EIF	
8408901090	기타	5.0	EIF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0	EIF	
8408909021	400킬로와트 이상 출력의 발전기용의 것[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또는 1,800인 것에 한한다]	4.0	EIF	
8408909029	기타	8.0	EIF	
8408909030	제8429호용의 내연기관	8.0	EIF	
8408909090	기타	8.0	EIF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의 것	5.0	EIF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0	EIF	
8409912000	아웃보드 모터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09919000	기타	8.0	EIF	
8409991000	철도차량용의 것	5.0	EIF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0	EIF	
8409993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0	EIF	
8409993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0	EIF	
8409993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0	EIF	
8409999010	발전용의 것	8.0	EIF	
8409999090	기타	8.0	EIF	
8410111000	수력터어빈	0.0	EIF	
8410119000	기타	8.0	EIF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EIF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EIF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0	EIF	
8410901090	기타	8.0	EIF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0	EIF	
8410909090	기타	8.0	EIF	
841111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119010	선박용의 것	8.0	EIF	
8411119090	기타	8.0	EIF	
841112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129010	선박용의 것	8.0	EIF	
8411129090	기타	8.0	EIF	
841121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219010	선박용의 것	8.0	EIF	
8411219090	기타	8.0	EIF	
841122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229010	선박용의 것	8.0	EIF	
8411229090	기타	8.0	EIF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819010	선박용의 것	8.0	EIF	
8411819090	기타	8.0	EIF	
841182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829010	선박용의 것	8.0	EIF	
8411829090	기타	8.0	EIF	
841191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919000	기타	8.0	EIF	
841199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11999000	기타	8.0	EIF	
84121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5.0	EIF	
8412101090	기타	5.0	EIF	
8412109000	기타	8.0	EIF	
8412211000	액압실린더	8.0	EIF	
8412219000	기타	8.0	EIF	
8412290000	기타	8.0	EIF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12390000	기타	8.0	EIF	
8412800000	기타	8.0	EIF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의 것	5.0	EIF	
8412901090	기타	5.0	EIF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0	EIF	
8412909000	기타	8.0	EIF	
8413110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13190000	기타	8.0	EIF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8413301000	항공기의 것	8.0	EIF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의 것	8.0	EIF	
8413303000	선박의 것	8.0	EIF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8.0	EIF	
8413309000	기타	8.0	EIF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0	EIF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0	EIF	
8413509010	플러저펌프	8.0	EIF	
8413509020	피스톤펌프	8.0	EIF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0	EIF	
8413509090	기타	8.0	EIF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0	EIF	
8413609010	기어펌프	8.0	EIF	
8413609020	베인펌프	8.0	EIF	
8413609030	스크루펌프	8.0	EIF	
8413609090	기타	8.0	EIF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0	EIF	
8413709010	터빈펌프	8.0	EIF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0	EIF	
8413709090	기타	8.0	EIF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0	EIF	
8413819000	기타	8.0	EIF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0	EIF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0	EIF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0	EIF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0	EIF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0	EIF	
8413915000	로타리펌프의 것	8.0	EIF	
8413919000	기타	8.0	EIF	
8413920000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8.0	EIF	
84141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3} 토르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3.0	EIF	
8414109090	기타	8.0	EIF	
841420000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8.0	EIF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0	EIF	
841440000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0	EIF	
841451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14519000	기타	8.0	EIF	
841459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14599000	기타	8.0	EIF	
84146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14609000	기타	8.0	EIF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84148091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14809190	기타	8.0	EIF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0	EIF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0	EIF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8.0	EIF	
8414809900	기타	8.0	EIF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0	EIF	
841490901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의 것	8.0	EIF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8414909090	기타	8.0	EIF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0	EIF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0	EIF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0	EIF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0	EIF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0	EIF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0	EIF	
8415200000	자동차용의 것(탐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15810000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0	EIF	
8415820000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8.0	EIF	
8415830000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8.0	EIF	
8415900000	부분품	8.0	EIF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0	EIF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8.0	EIF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8.0	EIF	
8416201000	분쇄한 고체연료용의 것	8.0	EIF	
8416202000	기체연료용의 것	8.0	EIF	
8416209000	기타	8.0	EIF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0	EIF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0	EIF	
84169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17101010	철광석용의 것	8.0	EIF	
8417101090	기타	8.0	EIF	
8417102010	철강용의 것	8.0	EIF	
8417102090	기타	8.0	EIF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8.0	EIF	
8417801010	시멘트용의 것	8.0	EIF	
8417801020	유리용의 것	8.0	EIF	
8417801030	도자기용의 것	8.0	EIF	
8417801090	기타	8.0	EIF	
8417802000	이화학용의 것	8.0	EIF	
8417809000	기타	8.0	EIF	
8417900000	부분품	8.0	EIF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0	EIF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8.0	EIF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8418109000	기타	8.0	EIF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8.0	EIF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8.0	EIF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8.0	EIF	
8418291000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18299000	기타	8.0	EIF	
841830000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0	EIF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0	EIF	
8418501000	쇼케이스	8.0	EIF	
8418509000	기타	8.0	EIF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0	EIF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0	EIF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0	EIF	
8418692020	아이스큐버	8.0	EIF	
8418692030	냉수기	8.0	EIF	
8418692090	기타	8.0	EIF	
8418693000	열펌프	8.0	EIF	
8418910000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8.0	EIF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0	EIF	
8418999000	기타	8.0	EIF	
8419110000	가스식의 즉식식 물가열기	8.0	EIF	
8419190000	기타	8.0	EIF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0.0	EIF	
8419310000	농산물용의 것	8.0	EIF	
8419320000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8.0	EIF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0	EIF	
8419399000	기타	8.0	EIF	
8419400000	증류기 또는 정류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195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19509000	기타	8.0	EIF	
841960000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0	EIF	
8419810000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8.0	EIF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	8.0	EIF	
8419899010	가열기	8.0	EIF	
8419899020	냉각기	8.0	EIF	
8419899030	증발기	8.0	EIF	
8419899040	응축기	8.0	EIF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 및 그 장치	8.0	EIF	
8419899060	고온 및 저온항온기	8.0	EIF	
8419899070	항온항습기	8.0	EIF	
8419899080	공기조절기	8.0	EIF	
8419899090	기타	8.0	EIF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의 것	8.0	EIF	
8419909010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8.0	EIF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0	EIF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0	EIF	
841990904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0	EIF	
8419909090	기타	8.0	EIF	
8420101000	제지용의 것	8.0	EIF	
8420102000	직물용의 것	8.0	EIF	
8420103000	가죽용의 것	8.0	EIF	
8420104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것	8.0	EIF	
8420109000	기타	8.0	EIF	
8420910000	실린더	8.0	EIF	
8420990000	기타	8.0	EIF	
8421110000	크림분리기	8.0	EIF	
8421120000	의류탈수기	8.0	EIF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 및 이화학용의 것	8.0	EIF	
8421192000	식품공업용의 것	8.0	EIF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의 것	8.0	EIF	
8421199000	기타	8.0	EIF	
8421211000	가정형의 것	8.0	EIF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	8.0	EIF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3.0	EIF	
8421219090	기타	8.0	EIF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8.0	EIF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의 것	8.0	EIF	
8421232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21239000	기타	8.0	EIF	
8421291000	낙농용의 것	8.0	EIF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	8.0	EIF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21294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21299000	기타	8.0	EIF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0	EIF	
8421312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21319000	기타	8.0	EIF	
8421391000	가정형의 것	8.0	EIF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8.0	EIF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것	8.0	EIF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2139903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21399090	기타	8.0	EIF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0	EIF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8.0	EIF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8.0	EIF	
8421999020	정수기 교체용 필터	8.0	EIF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21999090	기타	8.0	EIF	
8422110000	가정형의 것	8.0	EIF	
8422190000	기타	8.0	EIF	
8422200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8.0	EIF	
8422301000	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8.0	EIF	
8422302000	병 기타 용기의 봉합용 또는 봉지용 기계	8.0	EIF	
8422303000	병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8.0	EIF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0	EIF	
8422309000	기타	8.0	EIF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0	EIF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0	EIF	
8422409020	자동결속기	8.0	EIF	
8422409030	진공포장기	8.0	EIF	
8422409090	기타	8.0	EIF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0	EIF	
8422902000	기타 포장기계의 것	8.0	EIF	
8422909000	기타	8.0	EIF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8.0	EIF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0	EIF	
8423202000	히이드 미터 또는 히이드웨이어	8.0	EIF	
8423209000	기타	8.0	EIF	
8423300000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정량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8.0	EIF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8.0	EIF	
8423820000	최대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8.0	EIF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0	EIF	
8423899000	기타	8.0	EIF	
8423901010	정도등급을 가진 분동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23901090	기타	8.0	EIF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0	EIF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424201000	스프레이 건	8.0	EIF	
8424202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424202090	기타	8.0	EIF	
8424209000	기타	8.0	EIF	
8424301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8.0	EIF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0	EIF	
8424309000	기타	8.0	EIF	
8424811000	자주식 방제기	8.0	EIF	
8424812000	기타 방제기	8.0	EIF	
8424819000	기타	8.0	EIF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24899000	기타	8.0	EIF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0	EIF	
8424902000	스프레이 건의 것	8.0	EIF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0	EIF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24909090	기타	8.0	EIF	
8425111010	체인블록	0.0	EIF	
8425111090	기타	0.0	EIF	
8425112010	체인블록	0.0	EIF	
8425112090	기타	0.0	EIF	
8425190000	기타	0.0	EIF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0.0	EIF	
8425319000	기타	0.0	EIF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0.0	EIF	
8425399000	기타	0.0	EIF	
8425410000	차고용의 재킹시스템에 내장된 것	0.0	EIF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IF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0	EIF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IF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0	EIF	
8426110000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0.0	EIF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0	EIF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	0.0	EIF	
8426190000	기타	0.0	EIF	
8426200000	타워크레인	0.0	EIF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0	EIF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	0.0	EIF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0	EIF	
8426491000	신축붐식의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26492000	앵글식의 것	0.0	EIF	
8426499000	기타	0.0	EIF	
8426910000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0	EIF	
8426991000	선박의 데릭	0.0	EIF	
8426999000	기타	0.0	EIF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8.0	EIF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8.0	EIF	
8427109000	기타	8.0	EIF	
8427201010	적재중량이 3톤 이하인 것	8.0	EIF	
8427201020	적재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것	8.0	EIF	
8427209000	기타	8.0	EIF	
8427901000	수동식 팔리트 트럭	8.0	EIF	
8427909000	기타	8.0	EIF	
8428101000	리프트	0.0	EIF	
8428102000	스킵 호이스트	0.0	EIF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0	EIF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0	EIF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것	0.0	EIF	
8428320000	기타 버켓형의 것	0.0	EIF	
8428331010	분당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0.0	EIF	
8428331020	분당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0.0	EIF	
8428332000	컨베이어	0.0	EIF	
8428390000	기타	0.0	EIF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0	EIF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이동식 보도)	0.0	EIF	
8428600000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및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0.0	EIF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0	EIF	
8428909000	기타	0.0	EIF	
8429111000	불도우저	0.0	EIF	
8429112000	앵글도저	0.0	EIF	
8429190000	기타	0.0	EIF	
8429200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0.0	EIF	
8429300000	스크레이퍼	0.0	EIF	
8429401000	탐핑머신	0.0	EIF	
8429402000	로드롤러	0.0	EIF	
8429511010	로우더	0.0	EIF	
8429511020	백호우 로우더	0.0	EIF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우더	0.0	EIF	
8429511090	기타	0.0	EIF	
8429519000	기타	0.0	EIF	
8429521010	휠 타입의 것	0.0	EIF	
8429521020	무한궤도식의 것	0.0	EIF	
8429521090	기타	0.0	EIF	
8429529000	기타	0.0	EIF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29599000	기타	0.0	EIF	
8430100000	항타기와 항발기	0.0	EIF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0.0	EIF	
8430310000	자주식의 것	0.0	EIF	
8430390000	기타	0.0	EIF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0	EIF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0	EIF	
8430491000	시추기	0.0	EIF	
8430499000	기타	0.0	EIF	
8430500000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0.0	EIF	
8430610000	탐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0.0	EIF	
8430690000	기타	0.0	EIF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0.0	EIF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8.0	EIF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0	EIF	
8431390000	기타	0.0	EIF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의 것	0.0	EIF	
8431419000	기타	0.0	EIF	
8431420000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0.0	EIF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0	EIF	
8431491000	유압브레이크	0.0	EIF	
8431492000	크라샤	0.0	EIF	
8431499000	기타	0.0	EIF	
8432100000	플라우(쟁기)	0.0	EIF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0	EIF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0	EIF	
8432292000	제초기	0.0	EIF	
8432299000	기타	0.0	EIF	
8432301000	파종기	0.0	EIF	
8432302000	식부기	0.0	EIF	
8432303000	이식기	0.0	EIF	
8432309000	기타	0.0	EIF	
8432401000	퇴비살포기	0.0	EIF	
8432402000	비료살포기	0.0	EIF	
8432800000	기타의 기계	0.0	EIF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0	EIF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0	EIF	
8432909000	기타	0.0	EIF	
8433110000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0	EIF	
8433190000	기타	0.0	EIF	
8433200000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0.0	EIF	
8433300000	기타의 건조제조용 기계	0.0	EIF	
8433400000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33510000	수확 · 탈곡 겸용기	0.0	EIF	
8433520000	기타의 탈곡기	0.0	EIF	
8433530000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0.0	EIF	
8433590000	기타	0.0	EIF	
8433601000	조란 선별기	0.0	EIF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0	EIF	
8433609090	기타	0.0	EIF	
8433901000	수확 · 탈곡 겸용기의 것	0.0	EIF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0	EIF	
8433909000	기타	0.0	EIF	
8434100000	착유기	0.0	EIF	
8434201000	균질기	0.0	EIF	
8434209000	기타	0.0	EIF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0	EIF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0	EIF	
8434909000	기타	0.0	EIF	
8435101000	과즙 추출용의 프레스	8.0	EIF	
8435102000	과즙 추출용의 크러셔	8.0	EIF	
8435103000	과즙음료 제조용의 균질기	8.0	EIF	
8435109000	기타	8.0	EIF	
8435900000	부분품	8.0	EIF	
8436101000	사료절단기	8.0	EIF	
8436102000	사료분쇄기	8.0	EIF	
8436103000	사료배합기	8.0	EIF	
8436109000	기타	8.0	EIF	
8436211000	부란기	8.0	EIF	
8436219000	기타	8.0	EIF	
8436290000	기타	8.0	EIF	
8436800000	기타의 기계	8.0	EIF	
8436910000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0	EIF	
8436990000	기타	8.0	EIF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0	EIF	
8437109000	기타	8.0	EIF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0	EIF	
8437802000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기계	8.0	EIF	
8437901000	종자 ·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 · 분류 또는 선별기의 것	8.0	EIF	
8437909000	기타	8.0	EIF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0	EIF	
8438109000	기타	8.0	EIF	
8438200000	과자 · 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8.0	EIF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0	EIF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0	EIF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0	EIF	
8438509000	기타	8.0	EIF	
8438600000	과실 · 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8.0	EIF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38809000	기타	8.0	EIF	
8438900000	부분품	8.0	EIF	
8439101000	쇄목기	8.0	EIF	
8439102000	절단기	8.0	EIF	
8439103000	스트레이너	8.0	EIF	
8439104000	프레스파아트기	8.0	EIF	
8439105000	비이터어	8.0	EIF	
8439109000	기타	8.0	EIF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0	EIF	
8439202000	초지기	8.0	EIF	
8439209000	기타	8.0	EIF	
8439301000	권취기	8.0	EIF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0	EIF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0	EIF	
8439309000	기타	8.0	EIF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0	EIF	
8439990000	기타	8.0	EIF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0	EIF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0	EIF	
8440109000	기타	8.0	EIF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0	EIF	
8440909000	기타	8.0	EIF	
8441100000	절단기	8.0	EIF	
844120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8.0	EIF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0	EIF	
8441300000	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8.0	EIF	
844140000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8.0	EIF	
8441801000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8.0	EIF	
8441809000	기타	8.0	EIF	
8441900000	부분품	8.0	EIF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8.0	EIF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0	EIF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0	EIF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0	EIF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 장치,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442309000	기타	8.0	EIF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장치의 것	8.0	EIF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장치의 것	8.0	EIF	
8442409000	기타	8.0	EIF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0	EIF	
8443110000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에 한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43120000	오프셋 인쇄기계(쉬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8443130000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8.0	EIF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0	EIF	
8443170000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8.0	EIF	
8443191000	직물날염기	8.0	EIF	
8443192000	기타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룸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0	EIF	
8443199000	기타	8.0	EIF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0	EIF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0	EIF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0	EIF	
8443311090	기타	0.0	EIF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0	EIF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1.10호의 것을 제외한다)	8.0	EIF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0	EIF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0	EIF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0	EIF	
8443321090	기타	0.0	EIF	
8443322000	팩시밀리	0.0	EIF	
8443323000	텔레프린터	0.0	EIF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0	EIF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43325090	기타	8.0	EIF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443391090	기타	8.0	EIF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0	EIF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0	EIF	
8443393020	밀착식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43394000	열식복사기	8.0	EIF	
8443399000	기타	8.0	EIF	
8443911010	자동급지기	8.0	EIF	
8443911020	접기, 풀칠, 천공 또는 지철용의 기계	8.0	EIF	
8443911030	연속번호기	8.0	EIF	
8443911090	기타	8.0	EIF	
8443919000	기타	8.0	EIF	
84439910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0.0	EIF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0	EIF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0	EIF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0	EIF	
8443994020	지공급기	0.0	EIF	
8443994030	분류기	0.0	EIF	
8443994090	기타	0.0	EIF	
844399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 또는 제8443.39.1090호의 것	8.0	EIF	
8443999000	기타	8.0	EIF	
8444001000	방사기	5.0	EIF	
8444002000	연신기	5.0	EIF	
8444003000	텍스처기	5.0	EIF	
8444004000	절단기	5.0	EIF	
8444009000	기타	5.0	EIF	
8445110000	카드기	5.0	EIF	
8445120000	코밍기	5.0	EIF	
8445130000	연조기 또는 조반기	5.0	EIF	
8445191000	훈타면기	5.0	EIF	
8445192000	래프성형기	5.0	EIF	
8445193000	조면기	8.0	EIF	
8445199000	기타	5.0	EIF	
8445201010	정방기	5.0	EIF	
8445201090	기타	5.0	EIF	
8445202010	정방기	5.0	EIF	
8445202090	기타	5.0	EIF	
8445203000	견방의 것	5.0	EIF	
8445209000	기타	5.0	EIF	
8445301000	휠라멘트사용의 것	5.0	EIF	
8445302000	방적사용의 것	5.0	EIF	
8445309000	기타	5.0	EIF	
8445401000	콘 와인더	5.0	EIF	
8445402000	치이즈 와인더	5.0	EIF	
8445409000	기타	5.0	EIF	
8445901000	정경기	8.0	EIF	
8445902000	정경호부기	8.0	EIF	
8445903000	통경기	8.0	EIF	
8445904000	연경기	8.0	EIF	
8445909000	기타	8.0	EIF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46211000	면직기	8.0	EIF	
8446212000	모직기	8.0	EIF	
8446213000	견직기	8.0	EIF	
8446219000	기타	8.0	EIF	
8446290000	기타	8.0	EIF	
8446301010	면직기	8.0	EIF	
8446301020	견직기	8.0	EIF	
8446301030	타올직기	8.0	EIF	
8446301090	기타	8.0	EIF	
8446302010	면직기	8.0	EIF	
8446302020	견직기	8.0	EIF	
8446302030	타올직기	8.0	EIF	
8446302090	기타	8.0	EIF	
8446303010	면직기	8.0	EIF	
8446303020	견직기	8.0	EIF	
8446303030	타올직기	8.0	EIF	
8446303090	기타	8.0	EIF	
8446309010	면직기	8.0	EIF	
8446309020	견직기	8.0	EIF	
8446309030	타올직기	8.0	EIF	
8446309090	기타	8.0	EIF	
8447111000	양말편기	8.0	EIF	
8447119000	기타	8.0	EIF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8447201010	수편기(반자동 횡편기를 포함한다)	8.0	EIF	
8447201020	자동횡편기	8.0	EIF	
8447201090	기타	8.0	EIF	
8447202010	랏셀기	8.0	EIF	
8447202020	트리코트기	8.0	EIF	
8447202090	기타	8.0	EIF	
8447209000	기타	8.0	EIF	
8447901000	레이스기	8.0	EIF	
8447902010	자동자수기	8.0	EIF	
8447902090	기타	8.0	EIF	
8447903000	결망기	8.0	EIF	
8447909000	기타	8.0	EIF	
8448111000	도비기	8.0	EIF	
8448112000	자카드기	8.0	EIF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0	EIF	
8448119000	기타	8.0	EIF	
8448191000	경사용 비임스탠드와 크리얼	8.0	EIF	
8448192000	자동정지기	8.0	EIF	
8448193000	경사연접기	8.0	EIF	
8448199010	사(絲)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를 제외한다)	5.0	EIF	
8448199090	기타	8.0	EIF	
8448201000	방사 니플	5.0	EIF	
8448209000	기타	5.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48310000	침포	8.0	EIF	
8448321000	소면기의 컷(가닛와이어를 제외한다)	5.0	EIF	
8448329000	기타	8.0	EIF	
8448331000	스핀들플라이어	5.0	EIF	
8448339010	스핀들	8.0	EIF	
8448339020	스피닝링	8.0	EIF	
8448339030	링트래블러	8.0	EIF	
8448391000	경사비임	8.0	EIF	
8448399000	기타	8.0	EIF	
8448420000	직조기용의 바디·종광과 종광 프레임	8.0	EIF	
8448491000	셔틀	8.0	EIF	
8448499000	기타	8.0	EIF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0	EIF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0	EIF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0	EIF	
8448519000	기타	8.0	EIF	
8448590000	기타	8.0	EIF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0	EIF	
8449001090	기타	8.0	EIF	
8449002000	모자제조용의 형	8.0	EIF	
8449009000	부분품	8.0	EIF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0	EIF	
8450120000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8.0	EIF	
8450190000	기타	8.0	EIF	
84502000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0	EIF	
8450900000	부분품	8.0	EIF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0	EIF	
8451210000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0	EIF	
8451290000	기타	8.0	EIF	
8451301000	스티임 프레스	8.0	EIF	
8451309000	기타	8.0	EIF	
8451401000	세척기	8.0	EIF	
8451402000	표백기	8.0	EIF	
8451403000	염색기	8.0	EIF	
8451501000	권취기·재권취기	8.0	EIF	
8451502000	절단기	8.0	EIF	
8451509000	기타	8.0	EIF	
8451801000	열처리기	8.0	EIF	
8451802000	폭출기	8.0	EIF	
8451803000	머서라이징기	8.0	EIF	
8451809010	방축가공기	8.0	EIF	
8451809020	도포 또는 침투기	8.0	EIF	
8451809030	기모기	8.0	EIF	
8451809040	패딩기	8.0	EIF	
8451809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8.0	EIF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0	EIF	
8451909000	기타	8.0	EIF	
8452101010	직진형의 것	8.0	EIF	
8452101020	지그재그형의 것	8.0	EIF	
8452101030	프리아암식의 것	8.0	EIF	
8452101090	기타	8.0	EIF	
8452102000	수동식의 것	8.0	EIF	
8452211000	신발제조용의 것	8.0	EIF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의 것	8.0	EIF	
8452213000	피혁 및 기타 후물용의 것	8.0	EIF	
8452214000	모피용의 것	8.0	EIF	
8452219000	기타	8.0	EIF	
8452291000	신발 제조용의 것	8.0	EIF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의 것	8.0	EIF	
8452293000	피혁 및 기타 후물용의 것	8.0	EIF	
8452294000	모피용의 것	8.0	EIF	
8452299000	기타	8.0	EIF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0	EIF	
8452400000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8.0	EIF	
8452900000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8.0	EIF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0	EIF	
8453102000	유피기계	8.0	EIF	
8453103000	원피·모피 또는 피혁가공기계	8.0	EIF	
8453201000	신발제조기계	8.0	EIF	
8453202000	신발수선기계	8.0	EIF	
8453800000	기타의 기계	8.0	EIF	
8453900000	부분품	8.0	EIF	
8454100000	전로	8.0	EIF	
845420000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8.0	EIF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0	EIF	
8454301090	기타	8.0	EIF	
8454309000	기타	8.0	EIF	
8454901000	전로의 것	8.0	EIF	
8454909000	기타	8.0	EIF	
8455100000	관 압연기	8.0	EIF	
84552100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8.0	EIF	
8455220000	냉간 압연기	8.0	EIF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0	EIF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0	EIF	
8455309000	기타	8.0	EIF	
8455900000	기타 부분품	8.0	EIF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0	EIF	
8456109000	기타	8.0	EIF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0	EIF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0	EIF	
8456301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56309000	기타	8.0	EIF	
8456900000	기타	8.0	EIF	
8457101000	수직형	8.0	EIF	
8457102000	수평형	8.0	EIF	
8457103000	문형	8.0	EIF	
8457109000	기타	8.0	EIF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8.0	EIF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8.0	EIF	
8458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58190000	기타	8.0	EIF	
84589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58990000	기타	8.0	EIF	
845910000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8.0	EIF	
8459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0	EIF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0	EIF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0	EIF	
8459299000	기타	8.0	EIF	
8459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59390000	기타	8.0	EIF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0	EIF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0	EIF	
8459409000	기타	8.0	EIF	
84595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59590000	기타	8.0	EIF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0	EIF	
8459612000	평삭 밀링머신	8.0	EIF	
8459619000	기타	8.0	EIF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0	EIF	
8459692000	평삭 밀링머신	8.0	EIF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0	EIF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0	EIF	
8459699000	기타	8.0	EIF	
8459701000	태핑머신	8.0	EIF	
8459709000	기타의 나사절삭기	8.0	EIF	
8460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60190000	기타	8.0	EIF	
8460211000	원통연삭기	8.0	EIF	
8460212000	내면연삭기	8.0	EIF	
8460213000	무심연삭기	8.0	EIF	
8460214000	프로파일연삭기	8.0	EIF	
8460219000	기타	8.0	EIF	
8460291000	원통연삭기	8.0	EIF	
8460292000	내면연삭기	8.0	EIF	
8460293000	무심연삭기	8.0	EIF	
8460294000	프로파일연삭기	8.0	EIF	
846029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60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60390000	기타	8.0	EIF	
8460401000	호닝머신	8.0	EIF	
8460402000	래핑머신	8.0	EIF	
8460900000	기타	8.0	EIF	
8461200000	웨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8.0	EIF	
8461300000	부로칭머신	8.0	EIF	
846140101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61401090	기타	8.0	EIF	
8461402000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8.0	EIF	
84615000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8.0	EIF	
8461900000	기타	8.0	EIF	
8462101000	에어해머	8.0	EIF	
8462109000	기타	8.0	EIF	
8462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62290000	기타	8.0	EIF	
8462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0	EIF	
8462390000	기타	8.0	EIF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0	EIF	
8462412000	낫칭기	8.0	EIF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0	EIF	
8462492000	낫칭기	8.0	EIF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0	EIF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6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메트릭톤 초과 1,5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0	EIF	
8462991090	기타	8.0	EIF	
8462999000	기타	8.0	EIF	
846310000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파일·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8463200000	나사전조기	8.0	EIF	
8463300000	선가공기	8.0	EIF	
8463900000	기타	8.0	EIF	
8464100000	톱기계	8.0	EIF	
8464201000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용의 것	8.0	EIF	
8464202000	기타 유리용의 것	8.0	EIF	
8464209000	기타	8.0	EIF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기계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기계	8.0	EIF	
8464903000	도자기 가공기계	8.0	EIF	
8464909000	기타	8.0	EIF	
846510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109000	기타	8.0	EIF	
846591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19000	기타	8.0	EIF	
846592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29000	기타	8.0	EIF	
846593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39000	기타	8.0	EIF	
846594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49000	기타	8.0	EIF	
846595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59000	기타	8.0	EIF	
846596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69000	기타	8.0	EIF	
846599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0	EIF	
8465999000	기타	8.0	EIF	
846610000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8.0	EIF	
84662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66209000	기타	8.0	EIF	
846630000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8.0	EIF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8.0	EIF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8.0	EIF	
8466930000	제8456호 내지 제8461호의 기계용의 것	8.0	EIF	
8466940000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8.0	EIF	
8467111000	착암기	8.0	EIF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0	EIF	
8467113000	그라인더	8.0	EIF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0	EIF	
8467115000	드릴	8.0	EIF	
8467119000	기타	8.0	EIF	
8467191000	착암기	8.0	EIF	
8467199000	기타	8.0	EIF	
8467210000	각종의 드릴	8.0	EIF	
8467220000	톱	8.0	EIF	
8467290000	기타	8.0	EIF	
8467810000	체인톱	8.0	EIF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또는 제8479.10호의 것	0.0	EIF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또는 제8479.89.9091호의 것	8.0	EIF	
8467891090	기타	8.0	EIF	
8467899000	기타	8.0	EIF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0	EIF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0	EIF	
8467990000	기타	8.0	EIF	
8468100000	수지식 취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0	EIF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0	EIF	
8468209000	기타	8.0	EIF	
8468800000	기타의 기기	8.0	EIF	
8468900000	부분품	8.0	EIF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0	EIF	
8469001020	자동타자기	8.0	EIF	
8469002000	기타의 전동식 타자기	8.0	EIF	
8469003000	기타의 수동식 타자기	8.0	EIF	
8470103010	17단위 미만인 것	0.0	EIF	
8470103020	17단위 이상인 것	0.0	EIF	
8470104010	제8472.90.9000호의 것	0.0	EIF	
8470104090	기타	0.0	EIF	
8470211000	17단위 미만인 것	0.0	EIF	
8470212000	17단위 이상인 것	0.0	EIF	
8470290000	기타	0.0	EIF	
8470300000	기타의 계산기	0.0	EIF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0	EIF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0	EIF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0	EIF	
8470903000	회계기	0.0	EIF	
8470909000	기타	0.0	EIF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0.0	EIF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IF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IF	
8471419000	기타	0.0	EIF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IF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IF	
8471491090	기타	0.0	EIF	
8471499000	기타	0.0	EIF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IF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IF	
8471509000	기타	0.0	EIF	
8471601010	문자(표식)독취장치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0	EIF	
8471601030	마우스	0.0	EIF	
8471601040	스캐너	0.0	EIF	
8471601090	기타	0.0	EIF	
8471602000	출력장치	0.0	EIF	
847160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0.0	EIF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0	EIF	
8471603090	기타	0.0	EIF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0	EIF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0	EIF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0	EIF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0	EIF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0	EIF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0	EIF	
8471702039	기타	0.0	EIF	
8471702090	기타	0.0	EIF	
8471709000	기타	0.0	EIF	
8471800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0	EIF	
8471900000	기타	0.0	EIF	
8472100000	등사기	8.0	EIF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0	EIF	
8472302000	소인기	8.0	EIF	
8472309000	기타	8.0	EIF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0	EIF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0	EIF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0.0	EIF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8.0	EIF	
8472901090	기타	8.0	EIF	
8472902000	등사용 또는 인쇄용 자동제판기	8.0	EIF	
8472903000	표권발행기	8.0	EIF	
8472904000	연필절삭기	8.0	EIF	
8472905000	서류절단기	8.0	EIF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0	EIF	
8472909000	기타	8.0	EIF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8473109000	기타	8.0	EIF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0	EIF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0.0	EIF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0.0	EIF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0.0	EIF	
8473301000	자기헤드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0	EIF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0	EIF	
8473304010	사운드카드	0.0	EIF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0	EIF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0	EIF	
8473304050	통신접속카드	0.0	EIF	
8473304060	디램 모듈	0.0	EIF	
8473304090	기타	0.0	EIF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0	EIF	
8473309090	기타	0.0	EIF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를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를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8473409000	기타	8.0	EIF	
8473501000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0	EIF	
8473509000	기타	0.0	EIF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0.0	EIF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0.0	EIF	
8474209000	기타	0.0	EIF	
8474311000	배치 플랜트	0.0	EIF	
8474319000	기타	0.0	EIF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0	EIF	
8474329000	기타	0.0	EIF	
8474390000	기타	0.0	EIF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0	EIF	
8474802000	조괴기·형입기와 성형기	0.0	EIF	
8474809000	기타	0.0	EIF	
8474900000	부분품	0.0	EIF	
8475100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8.0	EIF	
8475210000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용의 기계	8.0	EIF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8.0	EIF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의 것	8.0	EIF	
8475299000	기타	8.0	EIF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8.0	EIF	
8475909000	기타	8.0	EIF	
8476210000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76290000	기타	8.0	EIF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0	EIF	
8476819000	기타	8.0	EIF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0	EIF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8.0	EIF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0	EIF	
8476899000	기타	8.0	EIF	
8476900000	부분품	8.0	EIF	
84771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0	EIF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0	EIF	
84772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0	EIF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0	EIF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0	EIF	
8477400000	진공성형기 기타의 열성형기	8.0	EIF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와 기타의 이너튜브 성형기	8.0	EIF	
8477590000	기타	8.0	EIF	
8477800000	기타의 기계	8.0	EIF	
8477900000	부분품	8.0	EIF	
8478100000	기계	8.0	EIF	
8478900000	부분품	8.0	EIF	
8479101000	모울타르 또는 콘크리트 살포기	0.0	EIF	
8479102000	기타의 도로공사용 기계	0.0	EIF	
8479109000	기타	0.0	EIF	
8479200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8.0	EIF	
847930000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8.0	EIF	
847940000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8.0	EIF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8479.89.9060호 또는 제8479.89.9091호의 것	8.0	EIF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0	EIF	
8479509000	기타	8.0	EIF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0	EIF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0	EIF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0	EIF	
8479812090	기타	8.0	EIF	
8479813000	권선기	8.0	EIF	
8479814000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8.0	EIF	
8479819000	기타	8.0	EIF	
8479821000	혼합기	8.0	EIF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0	EIF	
8479823000	균질기	8.0	EIF	
8479824000	교반기	8.0	EIF	
847982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8.0	EIF	
8479891090	기타	8.0	EIF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8.0	EIF	
847989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8.0	EIF	
8479899030	아일레팅기 또는 튜우볼러리베팅기	8.0	EIF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0	EIF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0	EIF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0	EIF	
8479899080	조상기	8.0	EIF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0	EIF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11.0	EIF	
8479899099	기타	8.0	EIF	
8479901010	냉방기기의 것(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0	EIF	
8479901020	가정형 기기의 것	8.0	EIF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0	EIF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0	EIF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0	EIF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0	EIF	
8479909020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기계류의 것	8.0	EIF	
847990903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용의 것	8.0	EIF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8.0	EIF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채·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8.0	EIF	
8479909060	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8.0	EIF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의 것	8.0	EIF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8.0	EIF	
8479909090	기타	8.0	EIF	
848010000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8.0	EIF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0	EIF	
8480300000	주형 제조용의 모형	8.0	EIF	
84804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0	EIF	
8480490000	기타	8.0	EIF	
8480500000	유리 성형용의 주형	8.0	EIF	
848060000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8.0	EIF	
84807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0	EIF	
8480790000	기타	8.0	EIF	
8481100000	감압밸브	8.0	EIF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0	EIF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0	EIF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0	EIF	
8481400000	안전밸브	8.0	EIF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0	EIF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0	EIF	
8481801030	기타 자동제어식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81801090	기타	8.0	EIF	
8481802000	탭 · 코크와 트랩	8.0	EIF	
8481809000	기타	8.0	EIF	
8481901000	액튜에이터	8.0	EIF	
8481909000	기타	8.0	EIF	
8482101000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0	EIF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8.0	EIF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	8.0	EIF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	8.0	EIF	
8482500000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8.0	EIF	
8482800000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0	EIF	
8482910000	볼 · 니들 및 롤러	8.0	EIF	
8482990000	기타	8.0	EIF	
84831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의 것	8.0	EIF	
8483109090	기타	8.0	EIF	
84832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83209000	기타	8.0	EIF	
84833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83309000	기타	8.0	EIF	
8483401010	롤러 스크루	3.0	EIF	
8483401090	기타	3.0	EIF	
8483409010	기어	8.0	EIF	
8483409020	기어박스	8.0	EIF	
8483409030	무단변속기	8.0	EIF	
8483409041	제87류 차량용의 것	8.0	EIF	
8483409049	기타	8.0	EIF	
8483409090	기타	8.0	EIF	
84835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483509000	기타	8.0	EIF	
84836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83609000	기타	8.0	EIF	
84839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483909000	기타	8.0	EIF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의 것	8.0	EIF	
8484109000	기타	8.0	EIF	
8484200000	메커니컬 실	8.0	EIF	
8484900000	기타	8.0	EIF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0	EIF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0.0	EIF	
8486103010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0	EIF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0	EIF	
8486103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0	EIF	
8486104019	기타	8.0	EIF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0	EIF	
8486104029	기타	8.0	EIF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0	EIF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0.0	EIF	
8486105030	기타의 노와 오븐	0.0	EIF	
8486109000	기타	8.0	EIF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0	EIF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0	EIF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상의 반도체 소자 제조용의 것	0.0	EIF	
8486202290	기타	8.0	EIF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0	EIF	
8486202390	기타	0.0	EIF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0	EIF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0	EIF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0	EIF	
8486205190	기타	8.0	EIF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0	EIF	
8486205990	기타	8.0	EIF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	0.0	EIF	
8486206020	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0.0	EIF	
8486206090	기타	0.0	EIF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0.0	EIF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0	EIF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0	EIF	
8486208190	기타	8.0	EIF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0	EIF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0	EIF	
8486208490	기타	8.0	EIF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 또는 세척을 위한 분사기	0.0	EIF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	0.0	EIF	
8486209190	기타	0.0	EIF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0	EIF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0	EIF	
8486209390	기타	8.0	EIF	
8486209400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0	EIF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0	EIF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0	EIF	
8486209900	기타	8.0	EIF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0	EIF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0	EIF	
84863030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0	EIF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8.0	EIF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8.0	EIF	
8486303041	건식식각기	8.0	EIF	
8486303049	기타	8.0	EIF	
8486304010	연마기 또는 광택기	8.0	EIF	
8486304090	기타	8.0	EIF	
8486305010	도포기	8.0	EIF	
8486305020	도포·현상기	8.0	EIF	
8486305031	물리적방식의 것	8.0	EIF	
8486305032	화학적방식의 것	8.0	EIF	
8486305039	기타	8.0	EIF	
8486306010	실, 숏트, 스페이서 또는 액정 디스플레이	8.0	EIF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8.0	EIF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8.0	EIF	
8486306090	기타	8.0	EIF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0	EIF	
8486308000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8.0	EIF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트	8.0	EIF	
8486309090	기타	8.0	EIF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0	EIF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0	EIF	
848640103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0	EIF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또는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8.0	EIF	
8486401090	기타	8.0	EIF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8.0	EIF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0	EIF	
8486402039	기타	8.0	EIF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0	EIF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8.0	EIF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0.0	EIF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0	EIF	
8486402091	굽힘·접음·교정·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0.0	EIF	
8486402092	굽힘·접음·교정·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8.0	EIF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에 한한다)	8.0	EIF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와 오븐	8.0	EIF	
8486402099	기타	8.0	EIF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상자 및 기타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0	EIF	
8486403090	기타	0.0	EIF	
8486901010	제8486.10.1000호, 제8486.10.2000호, 제8486.10.3010호, 제8486.10.3020호, 제8486.10.4011호, 제8486.10.4021호, 제8486.10.5010호, 제8486.10.5020호 또는 제8486.10.5030호의 것	0.0	EIF	
8486901020	제8486.10.3090호, 제8486.10.4019호, 제8486.10.4029호 또는 제8486.10.9000호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902010	제8486.20.1000호, 제8486.20.2100호, 제8486.20.2210호, 제8486.20.2310호, 제8486.20.2390호, 제8486.20.3000호, 제8486.20.4000호, 제8486.20.5110호, 제8486.20.5910호, 제8486.20.6010호, 제8486.20.6020호, 제8486.20.6090호, 제8486.20.7000호, 제8486.20.8110호, 제8486.20.8120호, 제8486.20.8410호, 제8486.20.8420호, 제8486.20.9110호, 제8486.20.9120호, 제8486.20.9190호, 제8486.20.9200호, 제8486.20.9310호, 제8486.20.9320호, 제8486.20.9400호, 제8486.20.9500호 또는 제8486.20.9600호의 것	0.0	EIF	
8486902020	제8486.20.2290호,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 제8486.20.8190호, 제8486.20.8490호, 제8486.20.9390호 또는 제8486.20.9900호의 것	8.0	EIF	
8486903010	제8486.30.1000호 또는 제8486.30.2000호의 것	0.0	EIF	
8486903020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1호, 제8486.30.3049호, 제8486.30.4010호, 제8486.30.4090호, 제8486.30.6020호, 제8486.30.7000호, 제8486.30.8000호, 제8486.30.9020호 또는 제8486.30.9090호의 것	8.0	EIF	
8486903030	제8486.30.5010호, 제8486.30.5020호, 제8486.30.5031호, 제8486.30.5032호, 제8486.30.5039호, 제8486.30.6010호, 제8486.30.6030호 또는 제8486.30.6090호의 것	8.0	EIF	
8486904010	제8486.40.1010호, 제8486.40.1020호, 제8486.40.1030호, 제8486.40.2010호, 제8486.40.2031호, 제8486.40.2070호, 제8486.40.2080호, 제8486.40.2091호, 제8486.40.2094호, 제8486.40.2095호, 제8486.40.3010호, 제8486.40.3090호, 제8486.40.4011호, 제8486.40.4012호 또는 제8486.40.4020호의 것	0.0	EIF	
8486904020	제8486.40.1040호, 제8486.40.1090호, 제8486.40.2020호, 제8486.40.2039호, 제8486.40.2040호, 제8486.40.2050호, 제8486.40.2061호, 제8486.40.2062호, 제8486.40.2063호, 제8486.40.2092호, 제8486.40.2093호, 제8486.40.2099호 또는 제8486.40.9000호의 것	8.0	EIF	
848710000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8.0	EIF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487909010	오일 실링	8.0	EIF	
8487909090	기타	8.0	EIF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0	EIF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0	EIF	
850110300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	8.0	EIF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311090	기타	8.0	EIF	
8501312000	직류발전기	8.0	EIF	
8501321000	직류전동기	8.0	EIF	
8501322000	직류발전기	8.0	EIF	
8501331000	직류전동기	8.0	EIF	
8501332000	직류발전기	8.0	EIF	
8501341000	직류전동기	8.0	EIF	
8501342000	직류발전기	8.0	EIF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52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EIF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0	EIF	
8501639000	기타	8.0	EIF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IF	
85021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0	EIF	
8502131090	기타	8.0	EIF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IF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IF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0	EIF	
8502203090	기타	8.0	EIF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IF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31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2400000	회전변환기	8.0	EIF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0	EIF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8.0	EIF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0	EIF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0	EIF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0	EIF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0	EIF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0	EIF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0	EIF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0	EIF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0	EIF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0	EIF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0	EIF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0	EIF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0	EIF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IF	
8504401090	기타	8.0	EIF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IF	
8504402019	기타	8.0	EIF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IF	
8504402099	기타	8.0	EIF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0	EIF	
8504403090	기타	8.0	EIF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0	EIF	
8504404090	기타	8.0	EIF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0	EIF	
8504405090	기타	8.0	EIF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0	EIF	
8504409019	기타	0.0	EIF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IF	
8504409099	기타	8.0	EIF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0	EIF	
8504501090	기타	8.0	EIF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0	EIF	
8504502090	기타	8.0	EIF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0	EIF	
8504509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 및 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8504909000	기타	8.0	EIF	
8505111000	알니코의 것	8.0	EIF	
8505119000	기타	8.0	EIF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0	EIF	
8505199000	기타	8.0	EIF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8.0	EIF	
8505901000	전자석	8.0	EIF	
8505902000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바이스와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0	EIF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	8.0	EIF	
8505909000	부분품	8.0	EIF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0	EIF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0	EIF	
8506109000	기타	8.0	EIF	
8506300000	산화수은제의 것	8.0	EIF	
8506400000	산화은제의 것	8.0	EIF	
8506500000	리튬제의 것	8.0	EIF	
8506600000	에어징크제의 것	8.0	EIF	
8506801000	산화아연제의 것	8.0	EIF	
8506809000	기타	8.0	EIF	
8506900000	부분품	8.0	EIF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축전지	8.0	EIF	
8507200000	기타의 연산 축전지	8.0	EIF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8.0	EIF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0	EIF	
8507801000	니켈수소 축전지	8.0	EIF	
8507802000	리튬이온 축전지	8.0	EIF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0	EIF	
8507809000	기타	8.0	EIF	
8507901000	격리판	8.0	EIF	
8507909000	기타	8.0	EIF	
8508110000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0	EIF	
8508191000	가정용의 것	8.0	EIF	
8508199000	기타	8.0	EIF	
8508600000	기타의 진공청소기	8.0	EIF	
8508701000	제8508.11.0000호 또는 제8508.19.1000호의 것	8.0	EIF	
8508702000	제8508.19.9000호 또는 제8508.60.0000호의 것	8.0	EIF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09801000	커피분쇄기	8.0	EIF	
8509802000	얼음분쇄기	8.0	EIF	
8509803000	바닥광택기	8.0	EIF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0	EIF	
8509809000	기타	8.0	EIF	
8509900000	부분품	8.0	EIF	
8510100000	면도기	8.0	EIF	
8510200000	이발기	8.0	EIF	
8510300000	모발제거기	8.0	EIF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0	EIF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0	EIF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0	EIF	
85111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109000	기타	8.0	EIF	
85112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209000	기타	8.0	EIF	
85113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309000	기타	8.0	EIF	
85114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409000	기타	8.0	EIF	
85115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509000	기타	8.0	EIF	
85118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809000	기타	8.0	EIF	
8511901000	항공기용의 것	3.0	EIF	
8511909000	기타	8.0	EIF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8.0	EIF	
8512201000	조명용 기구	8.0	EIF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8.0	EIF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0	EIF	
8512400000	원드스크린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8.0	EIF	
8512900000	부분품	8.0	EIF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0	EIF	
8513102000	손전등	8.0	EIF	
8513109000	기타	8.0	EIF	
8513900000	부분품	8.0	EIF	
8514101000	이화학용의 것	8.0	EIF	
85141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0	EIF	
85141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0	EIF	
8514109000	기타	8.0	EIF	
8514201000	이화학용의 것	8.0	EIF	
85142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0	EIF	
85142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0	EIF	
8514209000	기타	8.0	EIF	
8514300000	기타의 노와 오븐	8.0	EIF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5144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8514909000	기타	8.0	EIF	
8515110000	납땜용의 인두와 건	8.0	EIF	
8515190000	기타	8.0	EIF	
8515211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515211090	기타	8.0	EIF	
8515212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515212090	기타	8.0	EIF	
8515213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515213090	기타	8.0	EIF	
8515219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515219090	기타	8.0	EIF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0	EIF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0	EIF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0	EIF	
8515299000	기타	8.0	EIF	
8515311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515311090	기타	8.0	EIF	
8515319010	로봇트형의 것	8.0	EIF	
8515319090	기타	8.0	EIF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0	EIF	
8515399000	기타	8.0	EIF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0	EIF	
8515802000	전자빔용기기	8.0	EIF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기기	8.0	EIF	
8515809000	기타	8.0	EIF	
8515901000	용접기의 것	8.0	EIF	
8515909000	기타	8.0	EIF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8.0	EIF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0	EIF	
8516290000	기타	8.0	EIF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0	EIF	
8516320000	기타의 이용기기	8.0	EIF	
8516330000	손 건조기	8.0	EIF	
8516400000	전기다리미	8.0	EIF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0	EIF	
8516601000	전기오븐	8.0	EIF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0	EIF	
8516609000	기타	8.0	EIF	
85167100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8.0	EIF	
8516720000	토스터	8.0	EIF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0	EIF	
8516799000	기타	8.0	EIF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0	EIF	
8516900000	부분품	8.0	EIF	
85171100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IF	
8517121090	기타	0.0	EIF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IF	
8517122090	기타	0.0	EIF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IF	
8517123090	기타	0.0	EIF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IF	
8517124090	기타	0.0	EIF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IF	
8517129090	기타	0.0	EIF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0	EIF	
8517189000	기타	0.0	EIF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0	EIF	
8517619000	기타	0.0	EIF	
8517621000	텔레프린터	0.0	EIF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0	EIF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0	EIF	
8517622090	기타	0.0	EIF	
8517623110	단국장치	0.0	EIF	
8517623120	중계장치	0.0	EIF	
8517623190	기타	0.0	EIF	
8517623210	단국장치	0.0	EIF	
8517623220	중계장치	0.0	EIF	
8517623290	기타	0.0	EIF	
8517623310	광중계장치	0.0	EIF	
8517623320	광단국장치	0.0	EIF	
8517623390	기타	0.0	EIF	
8517623410	에이/디, 디/에이변환기	0.0	EIF	
8517623420	코덱	0.0	EIF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0	EIF	
8517623490	기타	0.0	EIF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0	EIF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0	EIF	
8517623590	기타	0.0	EIF	
8517623900	기타	0.0	EIF	
8517624010	키-폰	0.0	EIF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0	EIF	
8517624090	기타	0.0	EIF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0	EIF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0	EIF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0	EIF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0	EIF	
8517626039	기타	0.0	EIF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0	EIF	
8517626050	무선통신용교환기	0.0	EIF	
8517626060	무선통신용중계기	0.0	EIF	
8517626090	기타	0.0	EIF	
8517627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계의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17629000	기타	0.0	EIF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0	EIF	
8517691211	휴대용의 것	0.0	EIF	
8517691219	기타	8.0	EIF	
8517691290	기타	8.0	EIF	
8517691900	기타	8.0	EIF	
8517692000	영상전화기	0.0	EIF	
8517699000	기타	0.0	EIF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0	EIF	
8517701021	키패드	0.0	EIF	
8517701022	케이스	0.0	EIF	
8517701029	기타	0.0	EIF	
8517701090	기타	0.0	EIF	
851770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0.0	EIF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0	EIF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0	EIF	
8517703022	사선통신용 교환기의 것	0.0	EIF	
8517703029	기타	0.0	EIF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0	EIF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0	EIF	
8517703039	기타	0.0	EIF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0	EIF	
8517703049	기타	0.0	EIF	
851770305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0	EIF	
851770306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제8517.70.10호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851770307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0	EIF	
8517703090	기타	0.0	EIF	
85177040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지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0	EIF	
8517704019	기타	8.0	EIF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0	EIF	
8517704090	기타	8.0	EIF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 내지 3.4킬로헤르츠인 것에 한한다)	0.0	EIF	
8518109000	기타	8.0	EIF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8.0	EIF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8.0	EIF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 내지 3.4킬로헤르츠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에 한한다)	0.0	EIF	
8518299000	기타	8.0	EIF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18309000	기타	8.0	EIF	
8518400000	가정주파증폭기	8.0	EIF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0	EIF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 및 제8518.29.1000호의 것에 한한다)	0.0	EIF	
8518909000	기타	8.0	EIF	
8519201000	코인 혹은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0	EIF	
8519309000	기타	8.0	EIF	
8519500000	전화응답기	0.0	EIF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에 한한다)	8.0	EIF	
8519812210	자동차용의 것	8.0	EIF	
8519812220	휴대용의 것(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8.0	EIF	
8519812290	기타	8.0	EIF	
8519812310	자동차용의 것	8.0	EIF	
8519812320	휴대용의 것	8.0	EIF	
8519812390	기타	8.0	EIF	
8519812900	기타	8.0	EIF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0	EIF	
8519814111	자동차용의 것	8.0	EIF	
8519814112	휴대용의 것	8.0	EIF	
8519814119	기타	8.0	EIF	
8519814190	기타	8.0	EIF	
8519814210	자동차용의 것	8.0	EIF	
8519814220	휴대용의 것	8.0	EIF	
8519814290	기타	8.0	EIF	
8519814310	릴형의 것	8.0	EIF	
8519814390	기타	8.0	EIF	
8519815010	릴형의 것	8.0	EIF	
8519815020	디스크형의 것	8.0	EIF	
8519815030	카세트형의 것	8.0	EIF	
8519815090	기타	8.0	EIF	
8519819000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8.0	EIF	
8519891090	기타	8.0	EIF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19899010	기타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8519899020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521101000	폭이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21102000	폭이 12.7밀리미터 이하인 것	8.0	EIF	
8521901000	디스크형의 것	8.0	EIF	
8521909000	기타	8.0	EIF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0	EIF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0	EIF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0	EIF	
8522901090	기타	8.0	EIF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0	EIF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8522909090	기타	8.0	EIF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기록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IF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IF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IF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0	EIF	
8523291290	기타	0.0	EIF	
8523291900	기타	0.0	EIF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292119	기타	0.0	EIF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292129	기타	0.0	EIF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292139	기타	0.0	EIF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292219	기타	8.0	EIF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292229	기타	8.0	EIF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13.0% 또는 34원/분(표준속도)	EIF	
8523292239	기타	8.0	EIF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292919	기타	0.0	EIF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23292999	기타	8.0	EIF	
85234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0	EIF	
852340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402119	기타	0.0	EIF	
85234021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0	EIF	
8523402131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0	EIF	
8523402139	기타	8.0	EIF	
852340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402919	기타	0.0	EIF	
852340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402992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0	EIF	
8523402999	기타	8.0	EIF	
852351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0	EIF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512190	기타	0.0	EIF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51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0	EIF	
8523512990	기타	8.0	EIF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것 및 그 부분품	0.0	EIF	
8523529000	기타 및 그 부분품	8.0	EIF	
852359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0	EIF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592190	기타	0.0	EIF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59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0	EIF	
8523592990	기타	8.0	EIF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0.0	EIF	
85238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0	EIF	
8523802100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8.0	EIF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IF	
8523802290	기타	0.0	EIF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0	EIF	
852380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23802990	기타	8.0	EIF	
85255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8.0	EIF	
8525502000	텔레비전용의 것	8.0	EIF	
8525509000	기타	8.0	EIF	
85256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0.0	EIF	
8525602000	텔레비전용의 것	0.0	EIF	
8525609000	기타	0.0	EIF	
8525801010	녹화기용의 것	8.0	EIF	
8525801020	모니터용의 것	8.0	EIF	
8525801090	기타	8.0	EIF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0	EIF	
8525802090	기타	0.0	EIF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0	EIF	
85261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526109000	기타	8.0	EIF	
85269110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526911090	기타	8.0	EIF	
85269120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526912090	기타	8.0	EIF	
85269130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526913020	자동차용의 것	8.0	EIF	
8526913090	기타	8.0	EIF	
8526914000	로오랑 리이시버	8.0	EIF	
85269190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8526919020	자동차용의 것	8.0	EIF	
8526919090	기타	8.0	EIF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8.0	EIF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0	EIF	
8527131000	카세트형의 것	8.0	EIF	
8527132000	디스크형의 것	8.0	EIF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0	EIF	
8527139000	기타	8.0	EIF	
8527190000	기타	8.0	EIF	
8527211000	카세트형의 것	8.0	EIF	
8527212000	디스크형의 것	8.0	EIF	
852721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0	EIF	
8527219000	기타	8.0	EIF	
8527290000	기타	8.0	EIF	
8527911010	카세트형의 것	8.0	EIF	
8527911020	디스크형의 것	8.0	EIF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0	EIF	
8527911090	기타	8.0	EIF	
8527919000	기타	8.0	EIF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0	EIF	
8527990000	기타	8.0	EIF	
85284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284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0	EIF	
8528491090	기타	8.0	EIF	
85284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0	EIF	
8528492090	기타	8.0	EIF	
8528511000	액정모니터	0.0	EIF	
8528519000	기타	0.0	EIF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0	EIF	
8528591090	기타	8.0	EIF	
85285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0	EIF	
8528592090	기타	8.0	EIF	
85286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0	EIF	
8528690000	기타	8.0	EIF	
8528711010	천연색의 것	8.0	EIF	
8528711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0	EIF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0	EIF	
8528712090	기타	8.0	EIF	
8528719010	천연색의 것	8.0	EIF	
8528719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0	EIF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0	EIF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0	EIF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0	EIF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0	EIF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0	EIF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0	EIF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0	EIF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0	EIF	
8528729000	기타	8.0	EIF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미만인 것	8.0	EIF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8.0	EIF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0	EIF	
8528739000	기타	8.0	EIF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의 것	8.0	EIF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용의 것	8.0	EIF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의 것	8.0	EIF	
8529109290	기타	8.0	EIF	
85291093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0	EIF	
8529109900	기타	8.0	EIF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0	EIF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절기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0	EIF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0	EIF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0	EIF	
8529909610	천연색튜너	8.0	EIF	
8529909620	흑백 또는 단색튜너	8.0	EIF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0	EIF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의 것	8.0	EIF	
8529909649	기타	8.0	EIF	
8529909650	기타 흑백 또는 단색용의 것	8.0	EIF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것 또는 디지털카메라의 것(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0	EIF	
8529909920	소호 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것	0.0	EIF	
8529909990	기타	8.0	EIF	
8530101010	지상장치용의 것	8.0	EIF	
8530101090	기타	8.0	EIF	
8530109000	기타	8.0	EIF	
8530800000	기타의 기기	8.0	EIF	
8530900000	부분품	8.0	EIF	
8531101000	도난경보기	8.0	EIF	
8531102000	화재경보기	8.0	EIF	
8531103000	가스경보기	8.0	EIF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0	EIF	
8531105000	사이렌	8.0	EIF	
8531109000	기타의 신호기기	8.0	EIF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0	EIF	
8531201090	기타	0.0	EIF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0	EIF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8.0	EIF	
8531801090	기타	8.0	EIF	
8531809000	기타	8.0	EIF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8.0	EIF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0.0	EIF	
8531909000	기타	8.0	EIF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0	EIF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0	EIF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0	EIF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0	EIF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0	EIF	
8532250000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0	EIF	
8532290000	기타	0.0	EIF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0	EIF	
8532309000	기타	0.0	EIF	
8532901000	고정식의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32902000	가변식의 것	0.0	EIF	
8532909000	기타	0.0	EIF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0.0	EIF	
8533211000	칩형의 것	0.0	EIF	
8533219000	기타	0.0	EIF	
8533291000	칩형의 것	0.0	EIF	
8533299000	기타	0.0	EIF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0	EIF	
8533390000	기타	0.0	EIF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0	EIF	
8533402000	써머스터	0.0	EIF	
8533403000	바리스터	0.0	EIF	
8533409000	기타	0.0	EIF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0	EIF	
8533909000	기타의 것	0.0	EIF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0	EIF	
8534002000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0	EIF	
8534009000	기타	0.0	EIF	
8535100000	퓨즈	8.0	EIF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0	EIF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0	EIF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0	EIF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0	EIF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0	EIF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0	EIF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0	EIF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0	EIF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8.0	EIF	
8535901000	커넥터	8.0	EIF	
8535902000	터미널	8.0	EIF	
8535909000	기타	8.0	EIF	
8536101000	관형의 것	8.0	EIF	
8536109000	기타	8.0	EIF	
8536200000	자동차단기	8.0	EIF	
853630000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8.0	EIF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36490000	기타	8.0	EIF	
8536501000	회전형의 것	8.0	EIF	
8536502000	푸쉬 버튼형의 것	8.0	EIF	
8536503000	마이크로형의 것	8.0	EIF	
8536504000	전자계폐형의 것(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0	EIF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인 것에 한한다)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컷(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에 한한다)	0.0	EIF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컷(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8536509090	기타	8.0	EIF	
8536610000	램프홀더	8.0	EIF	
8536691000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컷	0.0	EIF	
8536699000	기타	8.0	EIF	
8536701000	플라스틱재의 컷	6.5	EIF	
8536702000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의 컷	8.0	EIF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컷(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EIF	
8536703090	기타	8.0	EIF	
8536901000	접속함	0.0	EIF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0	EIF	
8536909090	기타	8.0	EIF	
8537101000	배전반	8.0	EIF	
8537102000	자동제어반	8.0	EIF	
8537109000	기타	8.0	EIF	
8537201000	배전반	8.0	EIF	
8537202000	자동제어반	8.0	EIF	
8537209000	기타	8.0	EIF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7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8.0	EIF	
8538901000	개폐기의 컷	8.0	EIF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컷	8.0	EIF	
8538903000	계전기기의 컷	8.0	EIF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컷	8.0	EIF	
8538909000	기타	8.0	EIF	
8539100000	실드빔 램프유닛	8.0	EIF	
8539210000	팅스텐 할로겐의 컷	8.0	EIF	
8539221000	백열램프	8.0	EIF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0	EIF	
8539223000	빔 램프	8.0	EIF	
8539224000	집어용 램프	8.0	EIF	
8539229000	기타	8.0	EIF	
8539290000	기타	8.0	EIF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8.0	EIF	
8539321000	수은램프	8.0	EIF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0	EIF	
8539323000	메탈할라이드램프	8.0	EIF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8.0	EIF	
8539399000	기타	8.0	EIF	
8539410000	아크 램프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0	EIF	
8539491090	기타	8.0	EIF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0	EIF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0	EIF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0	EIF	
8539909000	기타	8.0	EIF	
8540110000	천연색의 것	8.0	EIF	
8540120000	흑백 또는 단색의 것	8.0	EIF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	8.0	EIF	
8540209000	기타	8.0	EIF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0	EIF	
85405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8.0	EIF	
8540601000	천연색의 것	8.0	EIF	
8540609000	기타	8.0	EIF	
8540710000	자전관	8.0	EIF	
8540720000	속도변조관	8.0	EIF	
8540790000	기타	8.0	EIF	
8540810000	수신관 또는 증폭관	8.0	EIF	
8540891000	송신기용의 열전자관	8.0	EIF	
8540892000	방전관	8.0	EIF	
8540893000	디지트론	8.0	EIF	
8540899000	기타	8.0	EIF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0	EIF	
8540912000	전자총	8.0	EIF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0	EIF	
8540919000	기타	8.0	EIF	
8540990000	기타	8.0	EIF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0	EIF	
8541109000	기타	0.0	EIF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0	EIF	
8541219000	기타	0.0	EIF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0	EIF	
8541299000	기타	0.0	EIF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0	EIF	
8541302000	다이라스터	0.0	EIF	
8541303000	다이액	0.0	EIF	
8541304000	트라이액	0.0	EIF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0	EIF	
8541402010	레이저소자	0.0	EIF	
8541402090	기타	0.0	EIF	
8541409010	광전도 셀	0.0	EIF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0	EIF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0	EIF	
854140909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0	EIF	
8541502000	정류소자	0.0	EIF	
8541509000	기타	0.0	EIF	
8541601000	수정진동자	0.0	EIF	
8541609000	기타	0.0	EIF	
8541901000	리드프레임	0.0	EIF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0	EIF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0	EIF	
8541909000	기타	0.0	EIF	
854231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0	EIF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IF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IF	
8542321010	디램	0.0	EIF	
8542321020	에스램	0.0	EIF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0	EIF	
8542321090	기타	0.0	EIF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IF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IF	
854233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0	EIF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IF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IF	
854239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0	EIF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IF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IF	
8542901010	리드프레임	0.0	EIF	
8542901090	기타	0.0	EIF	
8542902010	리드프레임	0.0	EIF	
8542902090	기타	0.0	EIF	
8542903010	리드프레임	0.0	EIF	
8542903090	기타	0.0	EIF	
8543100000	입자가속기	8.0	EIF	
8543200000	신호발생기	8.0	EIF	
8543300000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0	EIF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라이저	8.0	EIF	
8543702010	이온정수기	8.0	EIF	
8543702020	미용기기	8.0	EIF	
8543702030	오디오믹서	8.0	EIF	
8543702040	이퀄라이저	8.0	EIF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0	EIF	
8543702090	기타	8.0	EIF	
854370300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0.0	EIF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0	EIF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0	EIF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0	EIF	
8543709090	기타	8.0	EIF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0	EIF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43909019	기타	0.0	EIF	
8543909020	전자변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8543909090	기타	8.0	EIF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0	EIF	
8544119000	기타	8.0	EIF	
8544190000	기타	8.0	EIF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8.0	EIF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8544421010	전기통신용의 것	0.0	EIF	
8544421090	기타	8.0	EIF	
8544422010	전기통신용의 것	0.0	EIF	
8544422090	기타	8.0	EIF	
8544429010	전기통신용의 것	0.0	EIF	
8544429090	기타	8.0	EIF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0	EIF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4491090	기타	8.0	EIF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0	EIF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4492090	기타	8.0	EIF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0	EIF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4499090	기타	8.0	EIF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0	EIF	
8544601090	기타	8.0	EIF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0	EIF	
8544602090	기타	8.0	EIF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0	EIF	
8544603090	기타	8.0	EIF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0	EIF	
8545110000	노출의 것	5.0	EIF	
8545190000	기타	5.0	EIF	
8545200000	브러시	8.0	EIF	
8545901000	탄소봉	8.0	EIF	
8545909000	기타	8.0	EIF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0	EIF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초과 10킬로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킬로볼트 초과 300킬로볼트 이하인 것	8.0	EIF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546901000	플라스틱제의 애자	8.0	EIF	
8546909000	기타	8.0	EIF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0	EIF	
854720000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8.0	EIF	
8547900000	기타	8.0	EIF	
8548101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EIF	
8548102000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 또는 제7204.49호의 것	0.0	EIF	
8548103000	소호 제7404.00호의 것	0.0	EIF	
8548104010	소호 제7503.00호의 것	0.0	EIF	
8548104020	소호 제7902.00호의 것	0.0	EIF	
8548105000	소호 제7802.00호의 것	0.0	EIF	
8548106010	소호 제8107.30호의 것	3.0	EIF	
8548106020	소호 제8111.00호의 것	3.0	EIF	
8548107000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또는 제8506.80호의 것	8.0	EIF	
8548109000	기타	8.0	EIF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0	EIF	
8548909000	기타	8.0	EIF	
8601100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0	EIF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0	EIF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0	EIF	
8602900000	기타	0.0	EIF	
8603101000	객차	5.0	EIF	
8603102000	화차	5.0	EIF	
8603901000	객차	5.0	EIF	
8603902000	화차	5.0	EIF	
8604001000	공작차	5.0	EIF	
8604002000	기중기차	5.0	EIF	
8604003000	검사차	5.0	EIF	
8604004000	케도검사차	5.0	EIF	
8604009000	기타	5.0	EIF	
8605001010	침대차	5.0	EIF	
8605001090	기타	5.0	EIF	
8605002000	수하물차	5.0	EIF	
8605003000	우편차	5.0	EIF	
8605004000	병원차	5.0	EIF	
8605009000	기타	5.0	EIF	
8606100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0.0	EIF	
860630000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8606911000	단열 또는 냉동용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8606919000	기타	0.0	EIF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IF	
8606990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607110000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0	EIF	
8607120000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0	EIF	
8607191000	차축	5.0	EIF	
8607192000	차륜	5.0	EIF	
8607193000	윤축	5.0	EIF	
8607199000	기타	5.0	EIF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0	EIF	
8607290000	기타	5.0	EIF	
8607301000	축	5.0	EIF	
8607302000	연결장치	5.0	EIF	
8607303000	완충장치	5.0	EIF	
8607309000	기타	5.0	EIF	
8607910000	기관차용의 것	5.0	EIF	
8607990000	기타	5.0	EIF	
8608001000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8.0	EIF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의 기기	8.0	EIF	
8608009000	부분품	8.0	EIF	
8609001000	액체 운반용의 것	0.0	EIF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의 것	0.0	EIF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의 것	0.0	EIF	
8609004000	동물 운반용의 것	0.0	EIF	
8609005000	냉동 및 냉장용의 것	0.0	EIF	
8609009000	기타	0.0	EIF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8.0	EIF	
8701201000	신차	8.0	EIF	
8701202000	중고차	8.0	EIF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0	EIF	
8701901010	신차	8.0	EIF	
8701901020	중고차	8.0	EIF	
8701909110	50마력 미만인 것	0.0	EIF	
8701909190	기타	0.0	EIF	
8701909900	기타	8.0	EIF	
8702101010	신차	10.0	EIF	
8702101020	중고차	10.0	EIF	
8702102010	신차	10.0	EIF	
8702102020	중고차	10.0	EIF	
8702103010	신차	10.0	EIF	
8702103020	중고차	10.0	EIF	
8702901010	신차	10.0	EIF	
8702901020	중고차	10.0	EIF	
8702902010	신차	10.0	EIF	
8702902020	중고차	10.0	EIF	
8702903010	신차	10.0	EIF	
8702903020	중고차	10.0	EIF	
8703101000	설상주행용의 것	8.0	EIF	
8703102000	골프용차	8.0	EIF	
87031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703217000	신차	8.0	EIF	
8703218000	중고차	8.0	EIF	
8703227000	신차	8.0	EIF	
8703228000	중고차	8.0	EIF	
8703231010	신차	8.0	EIF	
8703231020	중고차	8.0	EIF	
8703239010	신차	8.0	EIF	
8703239020	중고차	8.0	EIF	
8703241010	신차	8.0	EIF	
8703241020	중고차	8.0	EIF	
8703249010	신차	8.0	EIF	
8703249020	중고차	8.0	EIF	
8703317000	신차	8.0	EIF	
8703318000	중고차	8.0	EIF	
8703321010	신차	8.0	EIF	
8703321020	중고차	8.0	EIF	
8703329010	신차	8.0	EIF	
8703329020	중고차	8.0	EIF	
8703337000	신차	8.0	EIF	
8703338000	중고차	8.0	EIF	
8703907000	전기자동차	8.0	EIF	
8703909000	기타	8.0	EIF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0	EIF	
8704211010	신차	10.0	EIF	
8704211020	중고차	10.0	EIF	
8704219010	냉동 및 냉장차	10.0	EIF	
8704219020	탱크차	10.0	EIF	
8704219090	기타	10.0	EIF	
8704221011	신차	10.0	EIF	
8704221012	중고차	10.0	EIF	
8704221091	신차	10.0	EIF	
8704221092	중고차	10.0	EIF	
8704229010	냉동 및 냉장차	10.0	EIF	
8704229020	탱크차	10.0	EIF	
8704229090	기타	10.0	EIF	
8704231010	신차	10.0	EIF	
8704231020	중고차	10.0	EIF	
8704239010	냉동 및 냉장차	10.0	EIF	
8704239020	탱크차	10.0	EIF	
8704239090	기타	10.0	EIF	
8704311010	신차	10.0	EIF	
8704311020	중고차	10.0	EIF	
8704319010	냉동 및 냉장차	10.0	EIF	
8704319020	탱크차	10.0	EIF	
8704319090	기타	10.0	EIF	
8704321010	신차	10.0	EIF	
8704321020	중고차	1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704329010	냉동 및 냉장차	10.0	EIF	
8704329020	탱크차	10.0	EIF	
8704329090	기타	10.0	EIF	
8704901010	신차	10.0	EIF	
8704901020	중고차	10.0	EIF	
8704909010	냉동 및 냉장차	10.0	EIF	
8704909020	탱크차	10.0	EIF	
8704909090	기타	10.0	EIF	
8705101000	신축볶식의 것	8.0	EIF	
8705102000	앵글식의 것	8.0	EIF	
8705109000	기타	8.0	EIF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0	EIF	
8705300000	소방차	8.0	EIF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0	EIF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0	EIF	
8705901090	기타	8.0	EIF	
8705909010	구난차	8.0	EIF	
8705909020	도로청소차	8.0	EIF	
8705909030	이동공작차	8.0	EIF	
8705909040	이동방송차	8.0	EIF	
8705909050	이동진료차	8.0	EIF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0	EIF	
8705909070	제설차	8.0	EIF	
8705909090	기타	8.0	EIF	
8706001010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90.10호의 것	8.0	EIF	
8706001090	기타	8.0	EIF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8.0	EIF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8.0	EIF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8.0	EIF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8.0	EIF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8.0	EIF	
8707901010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90.10호의 것	8.0	EIF	
8707901090	기타	8.0	EIF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8.0	EIF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8.0	EIF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8.0	EIF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0	EIF	
8708210000	안전벨트	8.0	EIF	
8708290000	기타	8.0	EIF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0	EIF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0	EIF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0	EIF	
8708309000	기타	8.0	EIF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8.0	EIF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0	EIF	
870870000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8.0	EIF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0	EIF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0	EIF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0	EIF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8.0	EIF	
8708951000	에어백	8.0	EIF	
8708959000	기타	8.0	EIF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8.0	EIF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8.0	EIF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8.0	EIF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8.0	EIF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8.0	EIF	
8708999000	기타	8.0	EIF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0	EIF	
8709190000	기타	8.0	EIF	
8709900000	부분품	8.0	EIF	
8710001000	전차	0.0	EIF	
8710002000	기타의 장갑차량	0.0	EIF	
8710009000	부분품	0.0	EIF	
8711101000	모터사이클	8.0	EIF	
8711102000	모페드	8.0	EIF	
8711103000	사이드카	8.0	EIF	
8711109000	기타	8.0	EIF	
8711201000	모터사이클	8.0	EIF	
8711202000	사이드카	8.0	EIF	
8711209000	기타	8.0	EIF	
8711301000	모터사이클	8.0	EIF	
8711302000	사이드카	8.0	EIF	
8711309000	기타	8.0	EIF	
8711401000	모터사이클	8.0	EIF	
8711402000	사이드카	8.0	EIF	
8711409000	기타	8.0	EIF	
8711501000	모터사이클	8.0	EIF	
8711502000	사이드카	8.0	EIF	
8711509000	기타	8.0	EIF	
8711901000	모터사이클	8.0	EIF	
8711902000	사이드카	8.0	EIF	
8711909000	기타	8.0	EIF	
8712001000	경기용의 것	8.0	EIF	
8712009010	화물운반용의 것	8.0	EIF	
8712009020	삼륜자전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712009090	기타	8.0	EIF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0	EIF	
8713900000	기타	0.0	EIF	
8714110000	안장	8.0	EIF	
8714190000	기타	8.0	EIF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0	EIF	
8714911000	프레임	8.0	EIF	
8714912000	포크	8.0	EIF	
8714919000	기타 부분품	8.0	EIF	
8714921000	휠 림	8.0	EIF	
8714922000	스포크	8.0	EIF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8.0	EIF	
8714932000	프리 휠스프로킷 휠	8.0	EIF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	8.0	EIF	
8714942000	기타 브레이크	8.0	EIF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0	EIF	
8714950000	안장	8.0	EIF	
8714961000	페달	8.0	EIF	
8714962000	크랭크 기어	8.0	EIF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0	EIF	
8714990000	기타	8.0	EIF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0	EIF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871620000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0	EIF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8.0	EIF	
8716390000	기타	8.0	EIF	
871640000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0	EIF	
8716801000	손수레	8.0	EIF	
8716802000	우마차	8.0	EIF	
8716803000	썰매	8.0	EIF	
8716809000	기타	8.0	EIF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0	EIF	
8716909000	기타	8.0	EIF	
8801001010	글라이더	0.0	EIF	
8801001020	행글라이더	0.0	EIF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0	EIF	
8801009090	기타	0.0	EIF	
8802111000	군용의 것	0.0	EIF	
8802119000	기타	0.0	EIF	
8802121000	군용의 것	0.0	EIF	
8802129000	기타	0.0	EIF	
88022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0	EIF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0	EIF	
88022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0	EIF	
8802209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8023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0	EIF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0	EIF	
88023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0	EIF	
8802309000	기타	0.0	EIF	
88024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0	EIF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0	EIF	
88024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0	EIF	
8802409000	기타	0.0	EIF	
8802601010	인공위성	0.0	EIF	
8802601090	기타	0.0	EIF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0	EIF	
8802603000	서보비틀	0.0	EIF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0.0	EIF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0.0	EIF	
8803301000	비행기용의 것	0.0	EIF	
8803302000	헬리콥터용의 것	0.0	EIF	
8803901000	글라이더 또는 행글라이더용의 것	0.0	EIF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용의 것	0.0	EIF	
8803909000	기타	0.0	EIF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0	EIF	
8804002000	로토슈트	0.0	EIF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0	EIF	
8804009020	로토슈트의 것	0.0	EIF	
8805101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101090	기타	5.0	EIF	
8805102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102090	기타	5.0	EIF	
8805109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109090	기타	5.0	EIF	
8805211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211090	기타	5.0	EIF	
8805212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212090	기타	5.0	EIF	
8805291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291090	기타	5.0	EIF	
8805292010	군·경찰용의 것	0.0	EIF	
8805292090	기타	5.0	EIF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0.0	EIF	
8901200000	탱커	0.0	EIF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8901901000	화물선	0.0	EIF	
8901902000	화객선	0.0	EIF	
8902001010	철강선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902001020	에프 · 알 · 피션	0.0	EIF	
8902001030	목조선	0.0	EIF	
8902001090	기타	0.0	EIF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 · 저장선	0.0	EIF	
8902002090	기타	0.0	EIF	
8903100000	인플랫터블식의 것	8.0	EIF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8.0	EIF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	8.0	EIF	
8903999000	기타	8.0	EIF	
8904001000	예인선	5.0	EIF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	5.0	EIF	
8904009000	기타	5.0	EIF	
8905100000	준설선	5.0	EIF	
8905201000	시추대	5.0	EIF	
8905202000	작업대	5.0	EIF	
8905209000	기타	5.0	EIF	
8905901000	조명선	5.0	EIF	
8905902000	소방선	5.0	EIF	
8905903000	기중기선	5.0	EIF	
8905904000	발전선	5.0	EIF	
8905905000	해난구조선	5.0	EIF	
8905906000	공작선	5.0	EIF	
8905907000	시추선	5.0	EIF	
8905908000	부선거	5.0	EIF	
8905909000	기타	5.0	EIF	
8906100000	군함	0.0	EIF	
8906900000	기타	0.0	EIF	
890710000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5.0	EIF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을 제외한다)	5.0	EIF	
8907902000	탱크	5.0	EIF	
8907903000	코퍼댐	5.0	EIF	
8907904000	부잔교	5.0	EIF	
8907905000	부표	5.0	EIF	
8907906000	수로부표	5.0	EIF	
8907909000	기타	5.0	EIF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0	EIF	
8908009000	기타	0.0	EIF	
9001101000	광섬유	8.0	EIF	
9001102000	광섬유다발	8.0	EIF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0	EIF	
9001200000	편광재료제의 판	8.0	EIF	
9001300000	콘택트렌즈	8.0	EIF	
90014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0	EIF	
9001409000	기타	8.0	EIF	
90015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0	EIF	
90015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01901000	프리즘	8.0	EIF	
9001902000	반사경	8.0	EIF	
9001903000	기타의 렌즈	8.0	EIF	
9001909000	기타	8.0	EIF	
9002111000	사진기용의 것	8.0	EIF	
9002119010	촬영기 및 비디오카메라용의 것	8.0	EIF	
9002119020	영사기용의 것	8.0	EIF	
9002119090	기타	8.0	EIF	
9002191000	현미경용의 것	8.0	EIF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의 것	8.0	EIF	
9002199000	기타	8.0	EIF	
9002201000	사진기용의 것	8.0	EIF	
9002209000	기타	8.0	EIF	
9002901000	사진기용의 것	8.0	EIF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0	EIF	
9002909090	기타	8.0	EIF	
900311000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0	EIF	
9003199000	기타	8.0	EIF	
9003900000	부분품	8.0	EIF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0	EIF	
9004109000	기타	8.0	EIF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0	EIF	
9004901090	기타	8.0	EIF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0	EIF	
9004909090	기타	8.0	EIF	
9005100000	쌍안경	8.0	EIF	
9005801000	단안경	8.0	EIF	
9005802010	반사망원경	8.0	EIF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0	EIF	
9005802030	자오의 · 적도의 · 천경의와 경위의	8.0	EIF	
9005802090	기타	8.0	EIF	
9005809000	기타	8.0	EIF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0	EIF	
9006100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8.0	EIF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0	EIF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0	EIF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0	EIF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0	EIF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0	EIF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0	EIF	
9006409000	기타	8.0	EIF	
9006511000	특수용도사진기	8.0	EIF	
9006519000	기타	8.0	EIF	
9006521000	특수용도사진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0652901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9006529090	기타	8.0	EIF	
9006531000	특수용도사진기	8.0	EIF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0	EIF	
900653902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9006539090	기타	8.0	EIF	
9006591000	특수용도사진기	8.0	EIF	
900659901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9006599090	기타	8.0	EIF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8.0	EIF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0	EIF	
9006699000	기타	8.0	EIF	
9006910000	카메라용의 것	8.0	EIF	
9006990000	기타	8.0	EIF	
9007110000	폭이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불 8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8.0	EIF	
9007191000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0	EIF	
9007199000	기타	8.0	EIF	
9007201000	폭이 16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0	EIF	
9007209010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0	EIF	
9007209020	폭이 2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의 것	8.0	EIF	
9007910000	촬영기용의 것	8.0	EIF	
9007920000	영사기용의 것	8.0	EIF	
9008100000	환등기	8.0	EIF	
9008200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8.0	EIF	
9008300000	기타의 투영기	8.0	EIF	
9008401000	인쇄제판 조정용의 것	8.0	EIF	
9008402000	마이크로 필름용의 것	8.0	EIF	
9008409000	기타	8.0	EIF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0101000	인쇄 제판용의 것	8.0	EIF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8.0	EIF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9010109090	기타	8.0	EIF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0	EIF	
9010509000	기타	8.0	EIF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0	EIF	
9010901010	제9010.50.1000호의 것	0.0	EIF	
9010901090	기타	0.0	EIF	
9010909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0	EIF	
9011109000	기타	8.0	EIF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0	EIF	
9011201090	기타	8.0	EIF	
9011209000	기타	8.0	EIF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0	EIF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0	EIF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0	EIF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0	EIF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0	EIF	
9011809000	기타	8.0	EIF	
9011901000	제9011.10.1000호 및 제9011.20.1010호의 것	0.0	EIF	
9011909000	기타	8.0	EIF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0.0	EIF	
9012101090	기타	8.0	EIF	
9012102000	회절기기	8.0	EIF	
9012901000	제9012.10.1010호의 것	0.0	EIF	
9012909000	기타	8.0	EIF	
901310000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및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8.0	EIF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8.0	EIF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0	EIF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0	EIF	
9013801130	텔레비전용의 것	8.0	EIF	
9013801140	모니터용의 것	8.0	EIF	
9013801190	기타	8.0	EIF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0	EIF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0	EIF	
9013801930	텔레비전용의 것	8.0	EIF	
9013801990	기타	8.0	EIF	
9013802000	확대경, 루페 및 섬유 카운터	8.0	EIF	
9013803000	도어아이	8.0	EIF	
9013809000	기타	8.0	EIF	
9013901000	제9013.80.1020호의 것	0.0	EIF	
9013909000	기타	8.0	EIF	
90141010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9014101090	기타	8.0	EIF	
9014102010	항공기용의 것	8.0	EIF	
9014102090	기타	8.0	EIF	
9014109000	기타	8.0	EIF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148000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8.0	EIF	
9014901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9014909000	기타	8.0	EIF	
9015100000	거리측정기	8.0	EIF	
901520000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8.0	EIF	
9015300000	수준기	8.0	EIF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0	EIF	
9015801000	토지 측량용의 것	8.0	EIF	
9015802000	수로 측량용의 것	8.0	EIF	
9015803000	해양 측량용의 것	8.0	EIF	
9015804000	수리 계측용의 것	8.0	EIF	
9015805000	기상 관측용의 것	8.0	EIF	
9015809000	기타	8.0	EIF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6001000	직시식의 것	8.0	EIF	
9016002000	전자식의 것	8.0	EIF	
9016008000	기타	8.0	EIF	
9016009000	부분품 및 부속품	8.0	EIF	
9017101000	플로터	0.0	EIF	
9017109000	기타	8.0	EIF	
9017201010	플로터	0.0	EIF	
9017201090	기타	8.0	EIF	
9017202010	플로터	0.0	EIF	
9017202090	기타	8.0	EIF	
9017203000	계산용구	8.0	EIF	
9017209000	기타	8.0	EIF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0	EIF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0	EIF	
9017303000	버어니어 캘리퍼스	8.0	EIF	
9017309000	기타	8.0	EIF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8.0	EIF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9017809090	기타	8.0	EIF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0	EIF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0	EIF	
9017909090	기타	8.0	EIF	
9018111000	심전계	8.0	EIF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0	EIF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0	EIF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8.0	EIF	
9018191000	뇌파계	8.0	EIF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0	EIF	
9018194000	혈압측정기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0	EIF	
9018198000	기타	8.0	EIF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20100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8.0	EIF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310000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018321000	주사침	8.0	EIF	
9018322000	봉합침	8.0	EIF	
9018329000	기타	8.0	EIF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8.0	EIF	
9018392000	카테터	8.0	EIF	
9018398000	기타	8.0	EIF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0	EIF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491000	치과용 바아	8.0	EIF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0	EIF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0	EIF	
9018498000	기타	8.0	EIF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501000	안과용 기기	8.0	EIF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8901000	임신진단기	8.0	EIF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8.0	EIF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0	EIF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8.0	EIF	
9018909040	인공신장기	8.0	EIF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0	EIF	
9018909060	수익용 기기	8.0	EIF	
9018909080	기타	8.0	EIF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0	EIF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0	EIF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0	EIF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IF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0	EIF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0	EIF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0	EIF	
9019204000	인공호흡기	0.0	EIF	
9019208000	기타	0.0	EIF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IF	
9020001000	가스마스크	8.0	EIF	
9020008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	8.0	EIF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2110000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0.0	EIF	
9021210000	의치	0.0	EIF	
9021290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21310000	인조관절	0.0	EIF	
9021390000	기타	0.0	EIF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0.0	EIF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0.0	EIF	
9021901000	스크루·스테이블·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0	EIF	
9021908000	기타	0.0	EIF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IF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0	EIF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0	EIF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0	EIF	
9022141090	기타	8.0	EIF	
9022142000	수의학용의 것	8.0	EIF	
90221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0	EIF	
9022192000	공업용의 것	8.0	EIF	
9022199000	기타	8.0	EIF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8.0	EIF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0	EIF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0	EIF	
9022211090	기타	8.0	EIF	
9022212000	수의학용의 것	8.0	EIF	
90222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0	EIF	
9022292000	공업용의 것	8.0	EIF	
9022299000	기타	8.0	EIF	
9022300000	엑스선관	8.0	EIF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0	EIF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0	EIF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0	EIF	
9022901090	기타	8.0	EIF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23001000	인체 또는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0	EIF	
9023009000	기타	8.0	EIF	
9024101000	경도시험기	8.0	EIF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0	EIF	
9024103000	압축시험기	8.0	EIF	
9024104000	피로시험기	8.0	EIF	
9024105000	만능시험기	8.0	EIF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 또는 와이어의 접착력 및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8.0	EIF	
9024109000	기타	8.0	EIF	
9024801010	신축시험기	8.0	EIF	
9024801020	마모시험기	8.0	EIF	
9024801090	기타	8.0	EIF	
9024809010	탄성시험기	8.0	EIF	
9024809020	소성시험기	8.0	EIF	
9024809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024909000	기타	8.0	EIF	
9025111000	의료용 또는 수의용 온도계	0.0	EIF	
9025119000	기타	8.0	EIF	
9025191000	온도계	8.0	EIF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0	EIF	
9025192090	기타	8.0	EIF	
9025801000	액체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0	EIF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0	EIF	
9025802090	기타	8.0	EIF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0	EIF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0	EIF	
9025803090	기타	8.0	EIF	
9025809000	기타	8.0	EIF	
9025901100	온도센서	8.0	EIF	
9025901200	습도센서	8.0	EIF	
9025901900	기타센서	8.0	EIF	
9025909000	기타	8.0	EIF	
9026101000	유량계	0.0	EIF	
9026102000	액면계	0.0	EIF	
9026109000	기타	0.0	EIF	
9026201110	액체형의 것	0.0	EIF	
9026201120	금속형의 것	0.0	EIF	
9026201190	기타	0.0	EIF	
9026201900	기타	0.0	EIF	
9026209000	기타	0.0	EIF	
9026801000	열측정계	0.0	EIF	
9026802000	풍력계	0.0	EIF	
9026809000	기타	0.0	EIF	
9026901100	레벨센서	0.0	EIF	
9026901200	유량·유속센서	0.0	EIF	
9026901300	압력센서	0.0	EIF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를 제외한다)	0.0	EIF	
9026901900	기타센서	0.0	EIF	
9026909000	기타	0.0	EIF	
902710000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8.0	EIF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0	EIF	
9027301000	분광계	0.0	EIF	
9027302000	분광광도계	0.0	EIF	
9027303000	분광사진기	0.0	EIF	
9027501000	편광계	0.0	EIF	
9027502000	굴절계	0.0	EIF	
9027503000	비색계	0.0	EIF	
9027504000	조도계	0.0	EIF	
9027509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0.0	EIF	
9027802010	피·에이치 미터	0.0	EIF	
9027802020	열량계	0.0	EIF	
9027802030	점도계	0.0	EIF	
9027802040	팽창계	0.0	EIF	
9027802050	노출계	8.0	EIF	
9027802090	기타	0.0	EIF	
9027901000	마이크로통	8.0	EIF	
9027909110	가스센서	8.0	EIF	
9027909121	분진센서	0.0	EIF	
9027909122	매연센서	8.0	EIF	
9027909130	열량센서	0.0	EIF	
9027909190	기타	0.0	EIF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통의 것	8.0	EIF	
9027909999	기타	0.0	EIF	
9028101010	디지털식의 것	8.0	EIF	
9028101090	기타	8.0	EIF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0	EIF	
9028201010	디지털식의 것	8.0	EIF	
9028201090	기타	8.0	EIF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0	EIF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8.0	EIF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8.0	EIF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0	EIF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029101000	적산회전계	8.0	EIF	
9029102000	생산량계	8.0	EIF	
9029103000	택시미터	8.0	EIF	
9029104000	주행거리계	8.0	EIF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계기	8.0	EIF	
9029109000	기타	8.0	EIF	
9029201010	시계식의 것	8.0	EIF	
9029201090	기타	8.0	EIF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	8.0	EIF	
9029901100	속도센서	8.0	EIF	
9029901200	회전센서	8.0	EIF	
9029901900	기타센서	8.0	EIF	
9029909000	기타	8.0	EIF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0.0	EIF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0	EIF	
9030201090	기타	8.0	EIF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0	EIF	
9030202090	기타	8.0	EIF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0	EIF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30331000	전압계	8.0	EIF	
9030332000	전류계	8.0	EIF	
9030333000	회로계	8.0	EIF	
9030334000	저항계	8.0	EIF	
9030335000	검류계	8.0	EIF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0	EIF	
9030339000	기타	8.0	EIF	
9030391000	전압계	8.0	EIF	
9030392000	전류계	8.0	EIF	
9030393000	회로계	8.0	EIF	
9030394000	저항계	8.0	EIF	
9030395000	검류계	8.0	EIF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0	EIF	
9030399000	기타	8.0	EIF	
9030401000	누화계	0.0	EIF	
9030402000	개인측정계	0.0	EIF	
9030403000	만곡률계	0.0	EIF	
9030404000	잡음전압계	0.0	EIF	
9030409000	기타	0.0	EIF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0	EIF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8.0	EIF	
9030890000	기타	8.0	EIF	
9030901100	전자기센서	8.0	EIF	
9030901200	방사선센서	8.0	EIF	
9030901900	기타센서	8.0	EIF	
9030909010	소호 제9030.82호의 것(소호 제9030.90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0	EIF	
9030909090	기타	8.0	EIF	
9031100000	균형시험기	8.0	EIF	
9031200000	테스트벤치	8.0	EIF	
9031411000	포시미터	0.0	EIF	
9031419000	기타	0.0	EIF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0	EIF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8.0	EIF	
9031493000	포시미터	8.0	EIF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0	EIF	
9031494090	기타	8.0	EIF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0.0	EIF	
9031499090	기타	8.0	EIF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0	EIF	
9031802000	로드셀	8.0	EIF	
9031809010	내연기관특성 시험기	8.0	EIF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0	EIF	
9031809030	면적계	8.0	EIF	
9031809040	구면계	8.0	EIF	
9031809050	직물검사장치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0	EIF	
9031809070	흙·균열 등 측정기	8.0	EIF	
9031809080	동력시험기	8.0	EIF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9031809099	기타	8.0	EIF	
90319011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0	EIF	
9031901119	기타의 것	0.0	EIF	
9031901190	기타	8.0	EIF	
903190129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0	EIF	
9031901292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0	EIF	
9031901299	기타	8.0	EIF	
90319019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0	EIF	
9031901919	기타의 것	0.0	EIF	
9031901990	기타	8.0	EIF	
90319090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0	EIF	
9031909019	기타의 것	0.0	EIF	
9031909090	기타	8.0	EIF	
9032101010	냉장고용의 것	8.0	EIF	
903210102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101090	기타	8.0	EIF	
9032102000	고정식의 것	8.0	EIF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	8.0	EIF	
9032811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11090	기타	8.0	EIF	
9032812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0	EIF	
9032812099	기타	8.0	EIF	
9032819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19090	기타	8.0	EIF	
9032891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91090	기타	8.0	EIF	
9032892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92090	기타	8.0	EIF	
9032893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93090	기타	8.0	EIF	
903289901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899090	기타	8.0	EIF	
9032901000	항공기용의 것	5.0	EIF	
9032909000	기타	8.0	EIF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EIF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0	EIF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101199000	기타	8.0	EIF	
9101210000	자동권식의 것	8.0	EIF	
9101290000	기타	8.0	EIF	
9101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0	EIF	
9101990000	기타	8.0	EIF	
910211100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0211901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02119090	기타	8.0	EIF	
910212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0212901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02129090	기타	8.0	EIF	
910219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0219901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02199090	기타	8.0	EIF	
910221100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02219000	기타	8.0	EIF	
910229100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02299000	기타	8.0	EIF	
9102911000	스톱워치	8.0	EIF	
910291200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91901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02919090	기타	8.0	EIF	
9102991000	스톱워치	8.0	EIF	
9102992000	맹인용의 것	8.0	EIF	
9102999000	기타	8.0	EIF	
9103101000	여행용시계	8.0	EIF	
9103109000	기타	8.0	EIF	
9103901000	여행용시계	8.0	EIF	
9103909000	기타	8.0	EIF	
9104001000	차량용의 것	8.0	EIF	
9104002000	항공기용의 것	8.0	EIF	
9104004000	선박용의 것	8.0	EIF	
9104009000	기타	8.0	EIF	
91051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0	EIF	
9105190000	기타	8.0	EIF	
91052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0	EIF	
9105290000	기타	8.0	EIF	
9105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105990000	기타	8.0	EIF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8.0	EIF	
9106901000	순찰시계	8.0	EIF	
9106902000	타이머	8.0	EIF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0	EIF	
9106909000	기타	8.0	EIF	
9107001000	동기 전동기를 갖춘 것	8.0	EIF	
9107009000	기타	8.0	EIF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0	EIF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0	EIF	
9108190000	기타	5.0	EIF	
9108200000	자동권식의 것	5.0	EIF	
9108900000	기타	5.0	EIF	
9109110000	자명종 시계용의 것	8.0	EIF	
9109190000	기타	8.0	EIF	
9109900000	기타	8.0	EIF	
911011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10112000	자동권식의 것	8.0	EIF	
9110119000	기타	8.0	EIF	
911012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10122000	자동권식의 것	8.0	EIF	
9110129000	기타	8.0	EIF	
911019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10192000	자동권식의 것	8.0	EIF	
9110199000	기타	8.0	EIF	
911090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0	EIF	
9110909000	기타	8.0	EIF	
9111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0	EIF	
911120000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111800000	기타의 케이스	8.0	EIF	
9111901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11909000	기타	8.0	EIF	
9112200000	케이스	8.0	EIF	
9112900000	부분품	8.0	EIF	
9113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0	EIF	
911320000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11390100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113902000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	8.0	EIF	
9113909000	기타	8.0	EIF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0	EIF	
9114200000	시계용 보석	8.0	EIF	
9114300000	문자판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	8.0	EIF	
9114900000	기타	8.0	EIF	
9201101000	자동식의 것	8.0	EIF	
9201109000	기타	8.0	EIF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0	EIF	
9201901000	하프시코드	8.0	EIF	
9201909000	기타	8.0	EIF	
9202101000	바이올린	8.0	EIF	
9202102000	첼로	8.0	EIF	
9202109000	기타	8.0	EIF	
9202901000	기타	8.0	EIF	
9202902000	하프	8.0	EIF	
9202903000	만도린	8.0	EIF	
9202904000	밴조우	8.0	EIF	
9202909000	기타	8.0	EIF	
9205101000	트럼펫	8.0	EIF	
9205102000	트럼본	8.0	EIF	
9205109000	기타	8.0	EIF	
9205901010	플루트	8.0	EIF	
9205901020	클라리넷	8.0	EIF	
9205901030	섹스폰	8.0	EIF	
9205901040	리코오더	8.0	EIF	
9205901090	기타	8.0	EIF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0	EIF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0	EIF	
9205902090	기타	8.0	EIF	
9205903010	아코디언	8.0	EIF	
9205903020	멜로디카	8.0	EIF	
9205903090	기타	8.0	EIF	
9205904000	하모니카	8.0	EIF	
9205909000	기타	8.0	EIF	
9206001000	북	8.0	EIF	
9206002000	목금	8.0	EIF	
9206003000	심벌	8.0	EIF	
9206004000	캐스터네츠	8.0	EIF	
9206005000	마라카스	8.0	EIF	
9206006000	탬버린	8.0	EIF	
9206009000	기타	8.0	EIF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0	EIF	
9207103000	피아노	8.0	EIF	
9207109000	기타	8.0	EIF	
9207901000	기타	8.0	EIF	
9207902000	아코디언	8.0	EIF	
9207903000	리듬박스	8.0	EIF	
9207909000	기타	8.0	EIF	
9208100000	뮤지컬박스	8.0	EIF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8.0	EIF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	8.0	EIF	
9208904000	유우지컬 소오	8.0	EIF	
9208909000	기타	8.0	EIF	
9209301000	금속선제의 것	8.0	EIF	
9209309000	기타	8.0	EIF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0	EIF	
9209991000	유지컬 무브먼트의 것	8.0	EIF	
9209992000	박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8.0	EIF	
9209993000	유지컬 박스용의 메커니즘	8.0	EIF	
9209999000	기타	8.0	EIF	
9301110000	자주식의 것	0.0	EIF	
9301190000	기타	0.0	EIF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0.0	EIF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0	EIF	
9301902010	노리쇠작동	0.0	EIF	
9301902020	반자동	0.0	EIF	
9301902030	완전자동	0.0	EIF	
9301902090	기타	0.0	EIF	
9301903000	기관총	0.0	EIF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	0.0	EIF	
9301904090	기타	0.0	EIF	
9301909000	기타	0.0	EIF	
9302001010	리볼버	0.0	EIF	
9302001021	반자동	0.0	EIF	
9302001029	기타	0.0	EIF	
9302001030	피스톨(다열총열)	0.0	EIF	
9302001090	기타	0.0	EIF	
9302009010	리볼버	0.0	EIF	
9302009021	반자동	0.0	EIF	
9302009029	기타	0.0	EIF	
9302009030	피스톨(다열총열)	0.0	EIF	
9302009090	기타	0.0	EIF	
9303100000	총구장전화기	8.0	EIF	
9303201011	펌프작동	8.0	EIF	
9303201012	반자동	8.0	EIF	
9303201019	기타	8.0	EIF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0	EIF	
9303201090	기타	8.0	EIF	
9303209011	펌프작동	8.0	EIF	
9303209012	반자동	8.0	EIF	
9303209019	기타	8.0	EIF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0	EIF	
930320909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303301010	단발	8.0	EIF	
9303301020	반자동	8.0	EIF	
9303301090	기타	8.0	EIF	
9303309010	단발	8.0	EIF	
9303309020	반자동	8.0	EIF	
9303309090	기타	8.0	EIF	
9303900000	기타	8.0	EIF	
9304001000	공기총	8.0	EIF	
9304009000	기타	8.0	EIF	
9305101010	격발장치	0.0	EIF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0	EIF	
9305101030	총열	0.0	EIF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0	EIF	
930510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0	EIF	
930510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0	EIF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 및 플레이트	0.0	EIF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0.0	EIF	
9305101090	기타	0.0	EIF	
9305109010	격발장치	8.0	EIF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0	EIF	
9305109030	총열	8.0	EIF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0	EIF	
9305109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0	EIF	
9305109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0	EIF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 및 플레이트	8.0	EIF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0	EIF	
9305109090	기타	8.0	EIF	
9305210000	산탄총의 총열	8.0	EIF	
9305291000	격발장치	8.0	EIF	
9305292000	프레임과 총몸	8.0	EIF	
9305293000	라이플 총열	8.0	EIF	
930529400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0	EIF	
930529500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0	EIF	
930529600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0	EIF	
930529700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0	EIF	
9305298000	브리치·노리쇠 및 노리쇠집	8.0	EIF	
9305299000	기타	8.0	EIF	
9305911010	격발장치	0.0	EIF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0	EIF	
9305911030	총열	0.0	EIF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0	EIF	
930591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0	EIF	
930591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0	EIF	
930591107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0	EIF	
9305911080	브리치·노리쇠 및 노리쇠집	0.0	EIF	
9305911090	기타	0.0	EIF	
9305919000	기타	0.0	EIF	
9305990000	기타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306210000	탄약	0.0	EIF	
9306290000	기타	0.0	EIF	
9306301000	리벳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의 탄약 및 이들의 부분품	0.0	EIF	
9306309000	기타	0.0	EIF	
9306900000	기타	0.0	EIF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0	EIF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0.0	EIF	
9401200000	차량용의 의자	8.0	EIF	
9401302000	등나무제의 것	0.0	EIF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IF	
9401309000	기타	0.0	EIF	
9401401000	등나무제의 것	0.0	EIF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IF	
9401409000	기타	0.0	EIF	
94015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0	EIF	
9401591000	등나무제의 것	0.0	EIF	
9401599000	기타	0.0	EIF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IF	
9401619000	기타	0.0	EIF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IF	
9401699000	기타	0.0	EIF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IF	
9401719000	기타	0.0	EIF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IF	
9401799000	기타	0.0	EIF	
9401801000	석재의 것	0.0	EIF	
9401809000	기타	0.0	EIF	
9401901000	목재의 것	8.0	EIF	
9401902000	금속제의 것	8.0	EIF	
9401909000	기타	8.0	EIF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0	EIF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0	EIF	
9402101090	기타	0.0	EIF	
9402109010	이발용 또는 미용실용 의자	0.0	EIF	
9402109090	기타	0.0	EIF	
9402901000	수술대	0.0	EIF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0	EIF	
9402903000	분만대	0.0	EIF	
9402908000	기타	0.0	EIF	
9402909000	부분품	0.0	EIF	
9403100000	사무실용 금속제 가구	0.0	EIF	
9403201000	침대	0.0	EIF	
9403209000	기타	0.0	EIF	
9403301000	책상	0.0	EIF	
9403309000	기타	0.0	EIF	
9403401000	식탁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403409000	기타	8.0	EIF	
9403501000	침대	0.0	EIF	
9403509000	기타	0.0	EIF	
9403601010	문갑	0.0	EIF	
9403601020	화장대	0.0	EIF	
9403601030	장롱	0.0	EIF	
9403601090	기타	0.0	EIF	
9403609010	문갑	0.0	EIF	
9403609020	화장대	0.0	EIF	
9403609030	장롱	0.0	EIF	
9403609090	기타	0.0	EIF	
9403701000	보행기	0.0	EIF	
9403709000	기타	0.0	EIF	
94038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0	EIF	
9403890000	기타	0.0	EIF	
9403900000	부분품	8.0	EIF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8.0	EIF	
9404210000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404290000	기타 재료의 것	8.0	EIF	
9404300000	슬리핑 백	8.0	EIF	
9404900000	기타	8.0	EIF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0	EIF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0	EIF	
9405109000	기타	8.0	EIF	
94052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0	EIF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0	EIF	
9405209000	기타	8.0	EIF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0	EIF	
9405309000	기타	8.0	EIF	
9405401000	방폭형의 것	8.0	EIF	
9405402000	투광형의 것	8.0	EIF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0	EIF	
9405409000	기타	8.0	EIF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0	EIF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0	EIF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0	EIF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0	EIF	
9405609000	기타	8.0	EIF	
9405911000	샬레리아용의 것	8.0	EIF	
9405919000	기타	8.0	EIF	
9405921000	샬레리아용의 것	8.0	EIF	
9405929000	기타	8.0	EIF	
9405991000	샬레리아용의 것	8.0	EIF	
9405999000	기타	8.0	EIF	
9406001000	목재의 것	8.0	10	
940600901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406009020	철강제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406009030	알루미늄제의 것	8.0	EIF	
9406009090	기타	8.0	EIF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0	EIF	
9503001200	스쿠터	0.0	EIF	
9503001300	페달차	0.0	EIF	
9503001400	인형용의 차	0.0	EIF	
9503001800	기타	0.0	EIF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IF	
9503002110	직물제의 것	8.0	EIF	
9503002120	고무제의 것	0.0	EIF	
950300213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0	EIF	
9503002150	유리제의 것	0.0	EIF	
9503002160	목제의 것	0.0	EIF	
9503002190	기타	8.0	EIF	
9503002910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0	EIF	
9503002990	기타	0.0	EIF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0	EIF	
9503003190	부속품	0.0	EIF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503.00.31호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0	EIF	
9503003411	직물제의 것	8.0	EIF	
9503003419	기타	8.0	EIF	
9503003491	직물제의 것	8.0	EIF	
9503003492	고무제의 것	0.0	EIF	
9503003493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503003494	금속제의 것	8.0	EIF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0	EIF	
9503003496	유리제의 것	0.0	EIF	
9503003497	목제의 것	0.0	EIF	
9503003499	기타	8.0	EIF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0	EIF	
9503003600	퍼즐	0.0	EIF	
9503003700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0	EIF	
9503003800	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8.0	EIF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 및 이와 유사한 것	8.0	EIF	
9503003919	기타	8.0	EIF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을 제외한다)	0.0	EIF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0	EIF	
9504201000	당구대	0.0	EIF	
9504202000	당구공	0.0	EIF	
9504209000	기타	0.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504300000	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0.0	EIF	
9504400000	유희용 카드	0.0	EIF	
9504901010	핀 테이블	0.0	EIF	
9504901020	핀 세터	0.0	EIF	
9504901030	볼링 볼	0.0	EIF	
9504901040	레인	0.0	EIF	
9504901050	볼링 핀	0.0	EIF	
9504901090	기타	0.0	EIF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0	EIF	
9504903000	기타의 용구	0.0	EIF	
95049090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0.0	EIF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0	EIF	
9504909090	기타	0.0	EIF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0	EIF	
9505900000	기타	8.0	EIF	
9506110000	스키	8.0	EIF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8.0	EIF	
9506190000	기타	8.0	EIF	
9506210000	세일보드	8.0	EIF	
9506290000	기타	8.0	EIF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8.0	EIF	
9506320000	골프공	8.0	EIF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0	EIF	
9506399000	기타	8.0	EIF	
9506401000	탁구대	8.0	EIF	
9506402000	탁구라켓	8.0	EIF	
9506403000	탁구공	8.0	EIF	
9506409000	기타	8.0	EIF	
9506510000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0	EIF	
9506599000	기타	8.0	EIF	
9506610000	로온테니스 공	8.0	EIF	
9506621000	축구공	8.0	EIF	
9506622000	농구공	8.0	EIF	
9506623000	배구공	8.0	EIF	
9506624000	송구공	8.0	EIF	
9506625000	미식축구용	8.0	EIF	
9506629000	기타	8.0	EIF	
9506691000	배드민턴공	8.0	EIF	
9506692000	야구공	8.0	EIF	
9506699000	기타	8.0	EIF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8.0	EIF	
9506990000	기타	8.0	EIF	
9507101000	유리섬유제의 것	8.0	EIF	
9507102000	카아본제의 것	8.0	EIF	
9507109000	기타	8.0	EIF	
9507200000	낙시바늘(낙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507300000	낙시 릴	8.0	EIF	
9507901000	낙시용 망과 기타의 낙시용구	8.0	EIF	
9507909000	기타	8.0	EIF	
950810000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8.0	EIF	
9508900000	기타	8.0	EIF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8.0	EIF	
9601901010	진주양식용 핵	0.0	EIF	
9601901090	기타	8.0	EIF	
9601902000	뿔로 된 것	8.0	EIF	
9601903000	뼈로 된 것	8.0	EIF	
9601904000	산호제의 것	8.0	EIF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0	EIF	
9601909090	기타	8.0	EIF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0	EIF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예 : 상아야자)와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의 제품	8.0	EIF	
9602009020	흑옥(광물성의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0	EIF	
9602009090	기타	8.0	EIF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EIF	
9603210000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8.0	EIF	
9603290000	기타	8.0	EIF	
9603300000	회화용의 붓·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8.0	EIF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토퍼용·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를 제외한다) 및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8.0	EIF	
9603500000	기타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8.0	EIF	
9603900000	기타	8.0	EIF	
96040000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8.0	EIF	
96050000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8.0	EIF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606210000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0	EIF	
9606220000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0	EIF	
9606291000	조개껍질제의 것	8.0	EIF	
9606299000	기타	8.0	EIF	
9606300000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8.0	EIF	
9607110000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8.0	EIF	
960719100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607199000	기타	8.0	EIF	
9607201000	비금속제의 것	8.0	EIF	
9607202000	플라스틱제의 것	8.0	EIF	
9607209000	기타	8.0	EIF	
9608100000	볼펜	8.0	EIF	
9608200000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8.0	EIF	
9608310000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8.0	EIF	
9608391000	만년필	8.0	EIF	
9608399000	기타	8.0	EIF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	8.0	EIF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0	EIF	
9608402090	기타	8.0	EIF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0	EIF	
960860000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8.0	EIF	
9608911000	펜촉	8.0	EIF	
9608912000	넙포인트	8.0	EIF	
9608991000	부분품	8.0	EIF	
9608999000	기타	8.0	EIF	
9609101000	연필	8.0	EIF	
9609102000	색연필	8.0	EIF	
9609103000	크레용	8.0	EIF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8.0	EIF	
9609901000	크레용 및 오일파스텔	8.0	EIF	
9609902000	파스텔	8.0	EIF	
9609903010	필기용의 것	8.0	EIF	
9609903090	기타	8.0	EIF	
9609909000	기타	8.0	EIF	
9610001000	석판	8.0	EIF	
9610002000	흑판	8.0	EIF	
9610009000	기타	8.0	EIF	
9611001000	스탬프	8.0	EIF	
9611002000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8.0	EIF	
9611009000	기타	8.0	EIF	
9612101000	타자기용의 것	8.0	EIF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것	8.0	EIF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9612109000	기타	8.0	EIF	
9612200000	잉크 패드	8.0	EIF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0	EIF	
961320000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0	EIF	
9613800000	기타의ライター	8.0	EIF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0	EIF	
9613909000	기타	8.0	EIF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	8.0	EIF	
9614009000	기타	8.0	EIF	
9615111000	빗	8.0	EIF	
9615119000	기타	8.0	EIF	
9615191000	빗	8.0	EIF	
9615199000	기타	8.0	EIF	
9615901000	머리핀	8.0	EIF	
9615909000	기타	8.0	EIF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8.0	EIF	
9616200000	화장용 분점과 패드	8.0	EIF	
9617001000	보온병	8.0	EIF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0	EIF	
9617008000	기타	8.0	EIF	
9617009000	부분품	8.0	EIF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0	EIF	
9618002000	자동 인형	8.0	EIF	
9618009000	기타	8.0	EIF	
9701101000	회화	0.0	EIF	
9701102000	데생	0.0	EIF	
9701103000	파스텔	0.0	EIF	
9701900000	기타	0.0	EIF	
9702001000	판화	0.0	EIF	
9702002000	인쇄화	0.0	EIF	
9702003000	석판화	0.0	EIF	
9703001000	조각	0.0	EIF	
9703002000	조상	0.0	EIF	
9704001000	우표	0.0	EIF	
9704009000	기타	0.0	EIF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0.0	EIF	
9706001000	도자기류	0.0	EIF	
9706002000	악기류	0.0	EIF	
9706009000	기타	0.0	EIF	

부속서 2나
페루의 양허표

[번역]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101101000	- - 말	0	EIF	
0101102000	- - 당나귀	0	EIF	
0101901100	- - - 경주용의 것	9	EIF	
0101901900	- - - 기타	9	EIF	
0101909000	- - 기타	0	EIF	
0102100000	- 순수종의 번식용의 것	0	EIF	
0102901000	- - 싸움용의 것	9	EIF	
0102909000	- - 기타	0	EIF	
0103100000	- 순수종의 번식용의 것	0	EIF	
01039100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0	EIF	
01039200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0	EIF	
0104101000	- - 순수종의 번식용의 것	0	EIF	
0104109000	- - 기타	0	EIF	
0104201000	- - 순수종의 번식용의 것	0	EIF	
0104209000	- - 기타	0	EIF	
01051100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	0	EIF	
0105120000	- - 칠면조	0	EIF	
0105190000	- - 기타	0	EIF	
01059400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	0	EIF	
0105990000	- - 기타	9	EIF	
0106110000	- - 영장류	9	EIF	
0106120000	- -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9	EIF	
0106191100	- - - - 과나코를 포함한 라마(라마 글라마)	9	EIF	
0106191200	- - - - 알파카(라마 파쿠스)	9	EIF	
0106191900	- - - - 기타	9	EIF	
0106199000	- - - 기타	9	EIF	
0106200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9	EIF	
0106310000	- - 맹금류	9	EIF	
0106320000	- -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9	EIF	
0106390000	- - 기타	9	EIF	
0106901000	- - 곤충류	9	EIF	
0106909000	- - 기타	9	EIF	
0201100000	- 도체와 이분도체	20	15	
0201200000	- 기타 뼈째 절단한 것	20	12	
0201300010	- - 얇게 절단한 것	20	12	
0201300090	- - 기타	20	12	
0202100000	- 도체와 이분도체	20	15	
0202200000	- 기타 뼈째 절단한 것	20	12	
0202300010	- - 얇게 절단한 것	20	12	
0202300090	- - 기타	20	12	
0203110000	- - 도체와 이분도체	17	10	
0203120000	- -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7	10	
0203190000	- - 기타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203210000	- - 도체와 이분도체	17	10	
0203220000	- -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7	10	
0203290000	- - 기타	17	10	
0204100000	-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9	5	
0204210000	- - 도체와 이분도체	9	5	
0204220000	- - 기타 뼈째 절단한 것	9	5	
0204230000	- - 뼈 없는 것	9	5	
0204300000	-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한 것에 한한다)	9	5	
0204410000	- - 도체와 이분도체	9	5	
0204420000	- - 기타 뼈째 절단한 것	9	5	
0204430000	- - 뼈 없는 것	9	5	
0204500000	- 산양의 고기	9	5	
0205000000	말, 당나귀, 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	EIF	
0206100000	-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9	12	
0206210000	- - 혀	9	10	
0206220000	- - 간	9	10	
0206290000	- - 기타	9	10	
0206300000	-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9	10	
0206410000	- - 간	9	10	
0206490000	- - 기타	9	10	
0206800000	-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EIF	
0206900000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	EIF	
0207110000	- - 절단하지 아니한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120000	- - 절단하지 아니한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130011	- - - 이분도체와 다리 사분도체(이들을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17	17-A	
0207130012	- - - 이분도체와 다리 사분도체(이들을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17	17-A	
0207130090	- - - 기타	17	17-A	
0207140010	- - - 이분도체와 다리 사분도체(이들을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17	17-A	
0207140021	- - - 기타	17	17-A	
0207140022	- - - 기타	17	17-A	
0207140090	- - - 기타	17	17-A	
0207240000	- - 절단하지 아니한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250000	- - 절단하지 아니한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260000	- - 절단한 것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270000	- - 절단한 것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320000	- - 절단하지 아니한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330000	- - 절단하지 아니한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340000	- -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350000	- -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0207360000	-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208100000	- 토끼의 것	9	EIF	
0208300000	- 영장류의 것	9	EIF	
0208400000	-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의 것;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9	EIF	
0208500000	- 파충류의 것[뱀과 (바다)거북을 포함한다]	9	EIF	
0208900000	- 기타	9	EIF	
0209001000	- 베이컨	17	5	
0209009000	- 기타	17	10	
0210110000	- -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7	10	
0210120000	-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17	5	
0210190000	- - 기타	17	10	
0210200000	- 쇠고기	20	15	
0210910000	- - 영장류의 것	9	EIF	
0210920000	- -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의 것;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9	EIF	
0210930000	- - 파충류[뱀과 (바다)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9	EIF	
0210991000	- - - 육과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20	10	
0210999000	- - - 기타	20	10	
0301100000	- 관상용 어류	9	3	
0301911000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9	7	
0301919000	- - - 기타	9	7	
0301920000	- - 뱀장어(앵굴라종)	9	10	
0301930000	- - 잉어	9	3	
0301940000	-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9	5	
0301950000	-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9	3	
0301991000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9	5	
0301999000	- - - 기타	0	EIF	
0302110000	- -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0	EIF	
0302120000	-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벨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	EIF	
0302190000	- - 기타	0	EIF	
03022100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	EIF	
0302220000	-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0	EIF	
0302230000	- - 서대(솔레아종)	0	EIF	
0302290000	- - 기타	0	EIF	
0302310000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0	EIF	
03023200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	EIF	
03023300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0	EIF	
03023400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0	EIF	
0302350000	-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0	EIF	
0302360000	-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302390000	- - 기타	0	EIF	
030240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	EIF	
030250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	EIF	
03026100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0	EIF	
0302620000	- -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0	EIF	
03026300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	EIF	
0302640000	- -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킴버 자포니쿠스)	0	EIF	
0302650000	- - 곱상어와 기타 상어	0	EIF	
0302660000	- - 뱀장어(앵굴라종)	0	EIF	
030267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EIF	
03026800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	EIF	
0302690000	- - 기타	0	EIF	
0302700000	- 간과 어란	0	EIF	
0303110000	-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벨카)	0	EIF	
0303190000	- - 기타	0	EIF	
0303210000	- -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EIF	
0303220000	- -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0	EIF	
0303290000	- - 기타	0	EIF	
03033100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	EIF	
0303320000	-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0	EIF	
0303330000	- - 서대(솔레아종)	0	EIF	
0303390000	- - 기타	0	EIF	
0303410000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0	EIF	
03034200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	EIF	
03034300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투우	0	EIF	
03034400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0	EIF	
0303450000	-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0	EIF	
0303460000	-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0	EIF	
0303490000	- - 기타	0	EIF	
030351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0	EIF	
0303520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EIF	
030361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EIF	
03036200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	EIF	
0303710010	- - - 머리와 내장이 없는 것	0	EIF	
0303710090	- - - 기타	0	EIF	
0303720000	- -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0	EIF	
03037300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	EIF	
0303740000	- -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킴버 자포니쿠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303750000	- - 곱상어와 기타 상어	0	EIF	
0303760000	- - 뱀장어(앵굴라종)	0	EIF	
0303770000	- -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 디센트라쿠스 푼크타투스)	0	EIF	
0303780000	-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0	EIF	
0303790000	- - 기타	0	EIF	
0303800000	- 간과 어란	0	EIF	
030411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EIF	
03041200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	EIF	
0304190000	- - 기타	0	EIF	
030421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EIF	
03042200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	EIF	
0304291010	- - - - 덩어리의 것(껍질을 제거한 것으로서, 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0304291020	- - - - 덩어리의 것(껍질을 제거한 것으로서, 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0304291030	- - - - 덩어리의 것(잘게 다진 것에 한한다)	0	EIF	
0304291040	- - - - 절단된 것(타브렛형)(껍질을 제거한 것으로서, 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0304291050	- - - - 껍질을 제거하고 구분 포장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0304291060	- - - - 껍질을 제거하고 구분 포장된 것(뼈가 없는 것에 한한다)	0	EIF	
0304291090	- - - - 기타	0	EIF	
0304299000	- - - 기타	0	EIF	
030491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EIF	
03049200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	EIF	
0304990000	- - 기타	0	EIF	
0305100000	-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9	3	
0305200000	-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	EIF	
0305301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의 것	0	EIF	
0305309000	- - 기타	0	EIF	
0305410000	- -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	EIF	
030542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0	EIF	
0305490000	- - 기타	0	EIF	
0305510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EIF	
0305591000	- - - 상어 지느러미와 기타 곱상어	0	EIF	
0305592000	- -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0	EIF	
0305599000	- - - 기타	0	EIF	
030561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0	EIF	
0305620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EIF	
0305630000	- - 멸치(엔그로리스종)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305690000	- - 기타	0	EIF	
03061100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0	EIF	
0306120000	-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	EIF	
0306131100	- - - - 원상(原像)의 것	0	EIF	
0306131200	- - - - 꼬리(껍데기가 없는 것에 한한다)	0	EIF	
0306131300	- - - - 꼬리(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찌거나 끓는 물로 조리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0306131400	- - - - 꼬리(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찌거나 끓는 물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	EIF	
0306131900	- - - - 기타	0	EIF	
0306139100	- - - - 새우	0	EIF	
0306139900	- - - - 기타	0	EIF	
0306140000	- - 게	0	EIF	
0306190000	- - 기타[각각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EIF	
03062100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0	EIF	
0306220000	-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	EIF	
0306231100	-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0	EIF	
0306231910	- - - -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EIF	
0306231990	- - - - - 기타	0	EIF	
0306239100	-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0	EIF	
0306239900	- - - - 기타	0	EIF	
0306240000	- - 게(마크루라는 제외한다)	0	EIF	
0306291000	- - - 분, 조분 및 펠리트	0	EIF	
0306299000	- - - 기타	0	EIF	
0307100000	- 굴	0	EIF	
0307211000	- - - 가리비과의 조개(부채꼴의 조개)	0	EIF	
0307219000	- - - 기타	0	EIF	
0307291000	- - - 가리비과의 조개(부채꼴의 조개)	0	EIF	
0307299000	- - - 기타	0	EIF	
0307310000	-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EIF	
0307390000	- - 기타	0	EIF	
0307410000	-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EIF	
0307490000	- - 기타	0	EIF	
0307510000	-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EIF	
0307590000	- - 기타	0	EIF	
0307600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0	EIF	
0307911000	- - - 성게	0	EIF	
0307919000	- - - 기타	0	EIF	
0307992000	- - - 로코스(곤출레빠스 곤출레빠스)	0	EIF	
0307993000	- - - 해삼(이소스티초푸스 푸스쿠스)	0	EIF	
0307994000	- - - 바다달팽이	0	EIF	
0307995000	- - - 라파스	0	EIF	
0307999010	- - - - 맛조개(메조데마 도나쿰)	0	EIF	
0307999090	- - - - 기타	0	EIF	
0401100000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	9	15	부속서 2라 참조
0401200000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초과 6퍼센트 이하인 것	9	15	부속서 2라 참조
0401300000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초과인 것	17	1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402101000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109000	- - 기타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11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11900	- - - - 기타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19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19900	- - - - 기타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91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91900	- - - - 기타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99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299900	- - - - 기타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911000	- - - 무당연유	17	17-B	
0402919000	- - - 기타	17	17-B	
0402991000	- - - 가당연유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2999000	- - - 기타	17	17-B	
0403100020	- - 향 또는 과일,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7	15	
0403100090	- - 기타	17	15	
0403901000	- - 버터밀크	17	15	
0403909010	- - - 향 또는 과일,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7	15	
0403909090	- - - 기타	17	15	
0404101000	- - 무기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한 유장	17	10	
0404109000	- - 기타	9	12	부속서 2라 참조
0404900000	- 기타	17	10	
0405100000	- 버터	9	15	부속서 2라 참조
0405200000	- 데어리 스프레드	17	15	
0405902000	- - 무수 데어리 유(버터오일)	9	15	부속서 2라 참조
0405909000	- - 기타	9	15	부속서 2라 참조
040610000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17	17-B	
040620000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17	17-B	
0406300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6400000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17	17-B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406904000	-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미만인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6905000	-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이상 56퍼센트 미만인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6906000	-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6퍼센트 이상 69퍼센트 미만인 것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6909000	- - 기타	9	17-B	부속서 2라 참조
0407001000	- 종란	0	EIF	
0407002000	- 백신 생산용의 것(특정 병원균이 없는 것에 한한다)	9	EIF	
0407009000	- 기타	9	10	
0408110000	- - 건조한 것	9	10	
0408190000	- - 기타	9	10	
0408910000	- - 건조한 것	9	10	
0408990000	- - 기타	9	10	
0409001000	- 용량이 300 킬로그램 초과인 용기에 넣은 것	9	EIF	
0409009000	- 기타	9	EIF	
0410000000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EIF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모의 웨이스트	9	EIF	
0502100000	- 돼지털, 비육돈의 털 또는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9	EIF	
0502900000	- 기타	0	EIF	
0504001000	- 위	9	10	
0504002000	- 장	9	EIF	
0504003000	- 방광	9	EIF	
0505100000	- 충전재용 깃털; 솜털	0	EIF	
0505900000	- 기타	9	EIF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9	EIF	
0506900000	- 기타	9	EIF	
0507100000	-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0	EIF	
0507900000	- 기타	9	EIF	
050800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 분과 웨이스트	9	EIF	
0510001000	- 담즙(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과 기타 동물성 생산품	9	EIF	
0510009000	- 기타	9	EIF	
0511100000	- 소의 정액	0	EIF	
0511911000	- - - 어란	0	EIF	
0511912000	- - - 어류의 웨이스트	9	EIF	
0511919000	- - - 기타	9	5	
0511991000	- - - 코치니엘 및 이와 유사한 곤충류	9	EIF	
0511993000	- - - 동물의 정액(소의 정액은 제외한다)	0	EIF	
0511994000	- - - 배아	0	EIF	
0511999020	- - - - 동물성의 천연해면	0	EIF	
0511999090	- -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601100000	- 인경, 과경, 과근, 구경 및 근경(휴면상태의 것에 한한다)	0	EIF	
0601200000	- 인경, 과경, 과근, 구경 및 근경(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0	EIF	
0602101000	- - 난	0	EIF	
0602109000	- - 기타	0	EIF	
0602200000	- 수목 및 관목(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용의 과일 또는 견과류를 맺는 것에 한한다)	0	EIF	
0602300000	- 철죽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0602400000	- 장미(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0602901000	- - 난(뿌리내린 묘를 포함한다)	0	EIF	
0602909000	- - 기타	0	EIF	
0603110000	- - 장미	9	EIF	
0603121000	- - - 미니어처	9	EIF	
0603129000	- - - 기타	9	EIF	
0603130000	- - 난	9	EIF	
0603141000	- - - 품품	9	EIF	
0603149000	- - - 기타	9	EIF	
0603191000	- - - 안개초(일루전)(집소필라 파니큐라타 엘)	9	EIF	
0603192000	- - - 애스터	9	EIF	
0603193000	- - - 알스트로메리아	9	EIF	
0603194000	- - - 거베라	9	EIF	
0603199000	- - - 기타	9	EIF	
0603900000	- 기타	9	EIF	
0604100000	- 이끼와 지의	9	EIF	
0604910000	- - 신선한 것	9	EIF	
0604990000	- - 기타	9	EIF	
0701100000	- 종자	0	EIF	
0701900000	- 기타	9	5	
070200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EIF	
0703100000	- 양파와 쪽파	9	EIF	
0703201000	- - 종자	9	EIF	
0703209000	- - 기타	9	EIF	
0703900000	- 리크 및 기타 파속의 채소	9	EIF	
0704100000	-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0	EIF	
0704200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	EIF	
0704900000	- 기타	0	EIF	
0705110000	- - 절구상추	0	EIF	
0705190000	- - 기타	0	EIF	
0705210000	- - 화이트루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종 포리오섬)	0	EIF	
0705290000	- - 기타	0	EIF	
0706100000	- 당근과 순무	0	EIF	
0706900000	- 기타	0	EIF	
0707000000	오이 및 게르킨(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EIF	
0708100000	- 완두(피섬 새티범)	9	EIF	
0708200000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9	EIF	
0708900000	- 기타 채두류	9	EIF	
0709200000	- 아스파라거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709300000	- 가지(에그플랜트)	0	EIF	
0709400000	- 셀러리(셀러리악은 제외한다)	0	EIF	
070951000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	EIF	
0709590000	- - 기타	0	EIF	
0709600000	- 고추류(캐프시쿰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	EIF	
0709700000	- 시금치류[뉴질랜드 시금치 및 오라체 시금치(가든 시금치)]	0	EIF	
0709901000	- - 스위트콘(자메이스종 사카라타)	0	EIF	
0709902000	- - 올리브	0	EIF	
0709903000	- - 양영경퀴	0	EIF	
0709909000	- - 기타	0	EIF	
0710100000	- 감자	9	EIF	
0710210000	- - 완두(피섬 새티범)	9	EIF	
0710220000	-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9	EIF	
0710290000	- - 기타	9	EIF	
0710300000	- 시금치류[뉴질랜드 시금치 및 오라체 시금치(가든 시금치)]	9	EIF	
0710400000	- 스위트콘	0	EIF	
0710801000	- - 아스파라거스	9	EIF	
0710809000	- - 기타	9	EIF	
0710900000	- 채소류의 혼합물	9	EIF	
0711200000	- 올리브	17	EIF	
0711400000	- 오이 및 게르킨	17	EIF	
071151000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7	EIF	
0711590000	- - 기타	17	EIF	
0711900000	- 기타 채소류; 채소류의 혼합물	17	EIF	
0712200000	- 양파	9	EIF	
071231000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9	EIF	
0712320000	-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9	EIF	
0712330000	-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9	EIF	
0712390000	- - 기타	9	5	
0712901000	- - 마늘	9	5	
0712902000	- - 스위트콘(파종용에 한한다)	9	EIF	
0712909000	- - 기타	9	EIF	
0713101000	- - 종자	0	EIF	
0713109010	- - - 원상(原像)의 것	9	5	
0713109020	- - - 쪼갠 것	9	5	
0713201000	- - 종자	0	EIF	
0713209000	- - 기타	9	5	
0713311000	- - - 종자	0	EIF	
0713319000	- - - 기타	9	EIF	
0713321000	- - - 종자	0	EIF	
0713329000	- - - 기타	9	EIF	
0713331100	- - - - 검은색의 것	0	EIF	
0713331900	- - - - 기타	0	EIF	
0713339100	- - - - 검은색의 것	9	EIF	
0713339200	- - - - 카나리오	9	EIF	
0713339900	- - - - 기타	9	5	
0713391000	- - - 종자	0	EIF	
0713399100	- - - - 리마 콩(파세러스 루나투스)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713399200	- - - - 검은눈 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9	EIF	
0713399900	- - - - 기타	9	EIF	
0713401000	- - 종자	0	EIF	
0713409000	- - 기타	9	5	
0713501000	- - 종자	0	EIF	
0713509000	- - 기타	9	EIF	
0713901000	- - 종자	0	EIF	
0713909000	- - 기타	9	EIF	
0714100000	- 매니옥(카사바)	9	EIF	
0714201000	- - 종자	9	EIF	
0714209000	- - 기타	9	EIF	
0714901000	- - 마카(레피디움 메예니이)	9	EIF	
0714909000	- - 기타	9	EIF	
0801111000	- - - 종자	9	EIF	
0801119000	- - - 기타	9	EIF	
0801190000	- - 기타	9	EIF	
0801210000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9	EIF	
0801220000	- - 탈각한 것	9	EIF	
0801310000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9	EIF	
0801320000	- - 탈각한 것	9	EIF	
0802110000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9	EIF	
0802121000	- - - 종자	9	EIF	
0802129000	- - - 기타	9	EIF	
0802210000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9	EIF	
0802220000	- - 탈각한 것	9	EIF	
0802310000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9	EIF	
0802320000	- - 탈각한 것	9	EIF	
0802400000	- 밤(카스타네아종)	9	5	
0802500000	- 피스타치오	9	EIF	
0802600000	- 마카다미아 너트	9	EIF	
0802900000	- 기타	9	EIF	
0803001100	- - 플랜틴 종류의 것	9	EIF	
0803001200	- - 카벤디쉬 밸러리 종류의 것	9	EIF	
0803001300	- - (드와프 카벤디쉬, 오리토) (무사 아쿠미나타)	9	EIF	
0803001900	- - 기타	9	EIF	
0803002000	- 건조한 것	9	EIF	
0804100000	- 대추야자	9	EIF	
0804200000	- 무화과	9	EIF	
0804300000	- 파인애플	9	EIF	
0804400000	- 애버카도우	9	EIF	
0804501000	- - 과아버	9	EIF	
0804502000	- - 망고와 망고스틴	9	EIF	
0805100000	- 오렌지	9	EIF	
0805201000	-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9	EIF	
0805202000	- - 탄젤로(시트러스 레티쿨라테 x 시트러스 파라디시스)	9	EIF	
0805209000	- - 기타	9	EIF	
0805400000	-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9	EIF	
0805501000	- - 레몬(시트러스 리몬, 시트러스 리모눔)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805502100	- - - 레몬(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리몬 수틸, 리몬 코문, 리몬 크리올로)	9	EIF	
0805502200	- - - 라임(타히티 레몬)(시트러스 라티폴리아)	9	EIF	
0805900000	- 기타	9	EIF	
0806100000	- 신선한 것	9	EIF	
0806200000	- 건조한 것	9	5	
0807110000	- - 수박	9	EIF	
0807190000	- - 기타	9	EIF	
0807200000	- 포포우(파파야)	9	EIF	
0808100000	- 사과	9	EIF	
0808201000	- - 배	9	EIF	
0808202000	- - 마르멜로	9	EIF	
0809100000	- 살구	9	EIF	
0809200000	- 버찌	9	EIF	
0809300000	-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9	EIF	
0809400000	- 자두와 슬로우	9	EIF	
0810100000	- 초본류 딸기(프루틀러스)	9	EIF	
0810200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및 로간베리	9	EIF	
0810400000	- 크랜베리, 빌베리 및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9	EIF	
0810500000	- 키위프루트	9	EIF	
0810600000	- 두리안	9	EIF	
0810901000	- - 그라나디야, 마라꾸야(파아치타) 및 기타 패션프루트(파시플로라종)	9	EIF	
0810902000	- - 가시여지, 번여지 및 기타 어노나(어노나종)	9	EIF	
0810903000	- - 나무 토마토(리마 토메이트, 타마리요)(시포만드라 베타시아)	9	EIF	
0810904000	- - 피타야(세레우스종)	9	EIF	
0810905000	- - 우추바(우빌라스)(피살리스 페루비아나)	9	EIF	
0810909000	- - 기타	9	5	
0811101000	-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17	EIF	
0811109000	- - 기타	17	EIF	
0811200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흑색,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17	EIF	
0811901000	-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17	EIF	
0811909100	- - - 망고(망기페라 인디카 엘)	17	EIF	
0811909200	- - - 카우 카우(미르시아리아 두비아)	17	EIF	
0811909300	- - - 루쿠마(루쿠마 오보바타)	17	EIF	
0811909400	- - - 패션프루트(파아치타)(파시플로라 에둘리스)	17	EIF	
0811909500	- - - 가시여지(아노나 무리카타)	17	EIF	
0811909600	- - - 포포우	17	EIF	
0811909900	- - - 기타	17	EIF	
0812100000	- 버찌	17	EIF	
0812902000	- -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17	EIF	
0812909000	- - 기타	17	EIF	
0813100000	- 살구	9	EIF	
0813200000	- 프룬	9	EIF	
0813300000	- 사과	9	EIF	
0813400000	- 기타 과실	9	EIF	
0813500000	-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0814001000	- 레몬(시트러스 리모눔, 커먼 레몬, 크레올레 레몬)(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의 것	17	EIF	
0814009000	- 기타	17	EIF	
0901111000	- - - 종자	17	EIF	
0901119000	- - - 기타	17	EIF	
09011200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17	EIF	
0901211000	- - - 콩	17	EIF	
0901212000	- - - 분쇄한 것	9	EIF	
09012200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9	EIF	
0901900000	- 기타	9	EIF	
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즉시 포장된 것에 한한다)	9	EIF	
0902200000	-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EIF	
0902300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즉시 포장된 것에 한한다)	9	EIF	
0902400000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9	EIF	
0903000000	마태	17	EIF	
0904110000	- -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9	EIF	
0904120000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EIF	
0904201010	- - - 원상(原像)의 것	0	EIF	
0904201020	- - - 조각으로 한 것 또는 얇게 썬 것	0	EIF	
0904201030	-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EIF	
0904209000	- - 기타	0	EIF	
0905000000	바닐라	9	EIF	
0906110000	- - 계피(시나모姆 제일라니쿰 블룸)	9	EIF	
0906190000	- - 기타	9	EIF	
09062000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EIF	
0907000000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9	EIF	
0908100000	- 육두구	9	EIF	
0908200000	- 메이스	9	EIF	
0908300000	- 소두구	9	EIF	
0909100000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종자	9	EIF	
0909201000	- - 종자	9	EIF	
0909209000	- - 기타	9	EIF	
0909300000	- 커민의 종자	9	EIF	
0909400000	- 캐러웨이의 종자	9	EIF	
0909500000	- 회향의 종자; 주니퍼의 열매	9	EIF	
0910100000	- 생강	9	EIF	
0910200000	- 샤프란	9	EIF	
0910300000	- 심황(薑黃)	9	EIF	
0910910000	-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9	EIF	
0910991000	- - - 월계수의 잎	9	EIF	
0910999000	- - - 기타	9	EIF	
1001101000	- - 종자	0	EIF	
1001109000	- - 기타	0	EIF	
1001901000	- - 파종용 밀	0	EIF	
1001902000	- - 기타 밀	0	EIF	
1001903000	- - 메슬린	9	EIF	
1002001000	- 종자	0	EIF	
1002009000	- 기타	17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003001000	- 종자	0	EIF	
1003009000	- 기타	9	EIF	
1004001000	- 종자	0	EIF	
1004009000	- 기타	17	EIF	
1005100000	- 종자	0	EIF	
1005901100	- - - 노란색의 것	9	12	부속서 2라 참조
1005901200	- - - 흰색의 것	9	12	부속서 2라 참조
1005902000	- - 버스팅 옥수수(자메이스류의 마이크로스퍼마 또는 자메이스종의 에버타)	9	10	
1005903000	- - 흰 옥수수(자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자이겐트)	9	10	
1005904000	- - 보라 옥수수(자메이스 아미라세아류의 모라도)	9	10	
1005909000	- - 기타	9	12	부속서 2라 참조
1006101000	- - 종자	0	X	
1006109000	- - 기타	9	X	부속서 2라 참조
1006200000	- 현미	9	X	부속서 2라 참조
1006300000	- 반도정미 또는 완전도정미(백미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9	X	부속서 2라 참조
1006400000	- 쌀미	9	X	부속서 2라 참조
1007001000	- 종자	0	EIF	
1007009000	- 기타	9	12	부속서 2라 참조
1008101000	- - 종자	0	EIF	
1008109000	- - 기타	0	EIF	
1008201000	- - 종자	0	EIF	
1008209000	- - 기타	9	EIF	
1008301000	- - 종자	0	EIF	
1008309000	- - 기타	0	EIF	
1008901100	- - - 종자	0	EIF	
1008901900	- - - 기타	0	EIF	
1008909100	- - - 종자	9	EIF	
1008909200	- - - 키위차(줄맨드라미)(파종용은 제외한다)	9	EIF	
1008909900	- - - 기타	9	EIF	
1101000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0	EIF	
1102100000	- 호밀가루	9	EIF	
1102200000	- 옥수수가루	9	10	
1102900000	- 기타	9	5 ¹⁾	
1103110000	- - 밀의 것	9	5	
1103130000	- - 옥수수의 것	9	12	부속서 2라 참조
1103190000	- - 기타 곡물의 것	0	EIF ¹⁾	
1103200000	- 펄리트	0	EIF ¹⁾	
1104120000	- - 귀리의 것	9	5	
1104190000	- - 기타 곡물의 것	9	EIF ¹⁾	

1) 이 HS 규정하에 분류된 상품은 페루 양허표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 유형으로 취급한다(동일한 HS 규정하에 분류된 쌀 관련 상품은 제외하며, 쌀 관련 상품은 단계별 양허 유형 "X"로 취급한다)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104220000	- - 귀리의 것	9	5	
1104230000	- - 옥수수의 것	17	10	
1104291000	- - - 보리의 것	9	5	
1104299000	- - - 기타	9	5	
1104300000	- 곡물의 배아[원상(原像)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9	EIF	
1105100000	- 분, 조분과 분말	0	EIF	
1105200000	- 플레이크, 입(粒) 및 펠리트	0	EIF	
1106100000	-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에 한한다)	0	EIF	
1106201000	- - 마카(레피디움 메에니이)	9	EIF	
1106209000	- - 기타	9	EIF	
1106301000	- - 바나나의 것	9	EIF	
1106302000	- - 루쿠마의 것	9	EIF	
1106309000	- - 기타	9	EIF	
1107100000	- 볶지 아니한 것	9	EIF	
1107200000	- 볶은 것	9	EIF	
1108110000	- - 밀 전분	9	5	
1108120000	- - 옥수수 전분	9	12	부속서 2라 참조
1108130000	- - 감자 전분	9	12	부속서 2라 참조
1108140000	- - 매니옥(카사바) 전분	9	5	
1108190000	- - 기타 전분	9	5	
1108200000	- 이눌린	9	EIF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1201001000	- 종자	0	EIF	
1201009000	- 기타	0	EIF	
1202101000	- - 종자	0	EIF	
1202109000	- - 기타	9	EIF	
120220000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1203000000	코프라	9	EIF	
1204001000	- 종자	0	EIF	
1204009000	- 기타	9	EIF	
1205101000	- - 종자	0	EIF	
1205109000	- - 기타	0	EIF	
1205901000	- - 종자	0	EIF	
1205909000	- - 기타	0	EIF	
1206001000	- 종자	0	EIF	
1206009000	- 기타	9	EIF	
1207201000	- - 종자	0	EIF	
1207209000	- - 기타	9	EIF	
1207401000	- - 종자	0	EIF	
1207409000	- - 기타	9	EIF	
1207501000	- - 종자	0	EIF	
1207509000	- - 기타	0	EIF	
1207910000	- - 양귀비 종자	9	EIF	
1207991100	- - - - 팜과 아몬드 핵	0	EIF	
1207991900	- - - - 기타	0	EIF	
1207999100	- - - - 캐리트 종자	9	EIF	
1207999900	- -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208100000	- 대두의 것	9	EIF	
1208900000	- 기타	9	EIF	
1209100000	- 사탕무 종자	0	EIF	
1209210000	- - 루우산(알팔파) 종자	0	EIF	
1209220000	- -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0	EIF	
1209230000	- - 페스큐 종자	0	EIF	
1209240000	- -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	EIF	
1209250000	- - 라이그래스(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로오리엄 페레네 엘) 종자	0	EIF	
1209290000	- - 기타	0	EIF	
12093000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EIF	
1209911000	- - - 양파, 리크, 마늘 및 알리움속의 기타 채소의 것	0	EIF	
1209912000	- - - 스프라우트, 꽃양배추, 브로콜리, 순무와 기타 브라시카속의 것	0	EIF	
1209913000	- - - 당근(다우쿠스 카로타)의 것	0	EIF	
1209914000	- - - 상추(락투카 사비타)의 것	0	EIF	
1209915000	- - - 토마토(리코퍼시쿰 종)의 것	0	EIF	
1209919000	- - - 기타	0	EIF	
1209991000	- - - 과수 또는 산림수의 종자	0	EIF	
1209992000	- - - 담배의 종자	0	EIF	
1209993000	- - - 타라(캐살피네아 스피노사)의 종자	0	EIF	
1209994000	- - - 안나토(오노토, 비자)의 종자	0	EIF	
1209999000	- - - 기타	0	EIF	
1210100000	- 호프(분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상이나 펠리트상의 것도 아닌 것에 한한다)	0	EIF	
1210200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한다); 루플린	0	EIF	
1211200000	- 인삼근	9	5	
1211300000	- 코카잎	9	EIF	
1211400000	- 양귀비 줄기	9	EIF	
1211903000	- - 야생 마조람(오레가눔속의 것)	9	EIF	
1211905000	- - 고양이의 발톱(운카리아 토멘토사)	9	EIF	
1211906000	- - 방취목 (이에르바루이사)(심보포곤 시트라투스)	9	EIF	
1211909040	- - - 제충국(펠리터)	9	EIF	
1211909090	- - - 기타	9	5	
1212200000	- 해초류와 기타 조류	9	5	
1212910000	- - 사탕무	9	EIF	
1212991000	- - - 사탕수수	9	EIF	
1212999010	- - - - 로우커스트두와 종자	9	EIF	
1212999090	- - - - 기타	9	EIF	
1213000000	곡물의 껍질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1214100000	-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0	EIF	
1214900000	- 기타	0	EIF	
1301200000	- 아라비아 검	0	EIF	
1301904000	- - 트래거캔스 검	0	EIF	
1301909010	- - - 락	0	EIF	
1301909090	-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302111000	- - - 양귀비 줄기의 농축물	9	EIF	
1302119000	- - - 기타	9	EIF	
1302120000	- - 감초의 것	9	EIF	
1302130000	- - 호프의 것	0	EIF	
1302191100	- - - - 소매용으로 제시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	9	5	
1302191900	- - - - 기타	9	5	
1302192000	- - - 대두의 추출물(분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1302199100	- - - - 소매용으로 제시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	9	5	
1302199900	- - - - 기타	9	5	
1302200000	-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0	EIF	
1302310000	- - 한천	0	EIF	
1302320000	- - 점질물 및 디크너(로우커스트두, 로우커스트두의 종자 또는 구아의 종자로부터 얻은 것으로, 변성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1302391000	- - - 타라 종자의 점질물(캐살피네아 스피노사)	9	5	
1302399000	- - - 기타	9	5	
1401100000	- 대나무	9	EIF	
1401200000	- 등나무	9	EIF	
1401900000	- 기타	9	EIF	
1404200000	- 먼린터	9	EIF	
1404901000	- - 아나토의 분말	9	EIF	
1404902000	- - 타라의 분말(캐살피네아 스피노사)	9	EIF	
1404909010	- - -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기타 재료의 지지물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총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케이폭은 제외한다)	0	EIF	
1404909090	- - - 기타	9	EIF	
1501001000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9	10	
1501003000	- 가금지	9	5	
1502001100	- - 변성의 것	9	EIF	
1502001900	- - 기타	9	EIF	
1502009000	- 기타	0	EIF	
150300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탈로우유(유화 또는 혼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1504101000	- - 대구 간의 것	0	EIF	
1504102100	- - - 조유	9	3	
1504102900	- - - 기타	9	3	
1504201000	- - 조유	9	5	
1504209000	- - 기타	9	5	
1504300000	-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	9	3	
1505001000	- 조상의 울그리스	0	EIF	
1505009100	- - 라놀린	0	EIF	
1505009900	- - 기타	0	EIF	
1506001000	- 우족유	0	EIF	
1506009000	- 기타	0	EIF	
1507100000	- 조유(검질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1507901000	- - 첨가된 변성 물질의 함유량이 1퍼센트 이하인 것	0	EIF	
1507909000	- - 기타	0	EIF	
1508100000	- 조유	0	EIF	
1508900000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509100000	- 버어진의 것	0	EIF	
1509900000	- 기타	0	EIF	
1510000000	기타 유와 그들의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들의 유 또는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0	EIF	
1511100000	- 조유	9	5	
1511900000	- 기타	0	EIF	
1512111000	- - - 해바라기의 것	0	EIF	
1512112000	- - - 잇꽃의 것	0	EIF	
1512191000	- - - 해바라기의 것	9	EIF	
1512192000	- - - 잇꽃의 것	9	EIF	
1512210000	- -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1512290000	- - 기타	0	EIF	
1513110000	- - 조유	0	EIF	
1513190000	- - 기타	0	EIF	
1513211000	- - - 팜핵의 것	9	5	
1513212000	- - - 바바수의 것	0	EIF	
1513291000	- - - 팜핵의 것	9	5	
1513292000	- - - 바바수의 것	9	EIF	
1514110000	- - 조유	0	EIF	
1514190000	- - 기타	9	EIF	
1514910000	- - 조유	0	EIF	
1514990000	- - 기타	9	EIF	
1515110000	- - 조유	0	EIF	
1515190000	- - 기타	9	EIF	
1515210000	- - 조유	9	5	
1515290000	- - 기타	9	10	
1515300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0	EIF	
1515500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0	EIF	
1515900010	- - 동유와 그 분획물	0	EIF	
1515900090	- - 기타	9	5	
1516100000	- 동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	9	5	
151620000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9	5	
1517100000	- 마가린(엑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0	EIF	
1517900000	- 기타	9	10	
1518001000	- 리놀신	9	5	
1518009000	- 기타	0	EIF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9	EIF	
1521101000	- - 카나버 왁스	0	EIF	
1521102000	- - 칸데릴라 왁스	0	EIF	
1521109000	- - 기타	0	EIF	
1521901000	- - 밀랍 또는 기타 곤충납	9	EIF	
1521902000	- - 경납	9	EIF	
1522000000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6010000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이들 제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7	10	
1602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	17	10	
1602200000	- 동물 간의 것	17	10	
1602311000	- - - 조미한 냉동 조각	17	10	
1602319000	- - - 기타	17	10	
1602321011	- - - - 이분도체와 다리 사분도체(이들을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17	17-A	
1602321012	- - - - 기타	17	17-A	
1602321090	- - - 기타	17	17-A	
1602329011	- - - 기타	17	17-A	
1602329012	- - - 기타	17	17-A	
1602329090	- - - 기타	17	17-A	
1602391000	- - - 조미한 냉동 조각	17	10	
1602399000	- - - 기타	17	10	
1602410000	- - 넓적다리살과 이를 절단한 것	17	10	
1602420000	-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17	10	
1602490000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7	10	
1602500000	- 소의 것	20	10	
160290000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0	12	
1603000000	육,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9	10	
1604110000	- - 연어	0	EIF	
1604120000	- - 청어	0	EIF	
1604131010	- - - - 타원형 패키징으로 된 것	0	EIF	
1604131020	- - - - 톨 패키징으로 된 것	0	EIF	
1604131090	- - - - 기타	0	EIF	
1604132000	- - - 기름에 담근 것	0	EIF	
1604133000	- - - 물과 소금에 보일드한 것	0	EIF	
1604139000	- - - 기타	0	EIF	
1604141000	- - - 다랑어	0	EIF	
1604142000	- - - 가다랑어 및 버니투우	0	EIF	
1604150000	- - 고등어	0	EIF	
1604160000	- - 멸치	0	EIF	
1604190000	- - 기타	0	EIF	
16042000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0	EIF	
160430000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품	0	EIF	
1605100000	- 게	0	EIF	
1605200000	- 새우와 보리새우	0	EIF	
1605300000	- 바닷가재	0	EIF	
1605400000	- 기타 갑각류	0	EIF	
1605901000	- - 조개, 전복과 맛조개	0	EIF	
1605909000	- - 기타	0	EIF	
1701111000	- - - 갈색의 설탕덩어리(찬카카)	0	EIF	
1701119000	- - - 기타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1120000	- - 사탕무당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1910000	-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701991000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9	5	
1701999000	- - - 기타	0	EIF	부속서 2라 참조
1702110000	- - 건조상태에서 계산하여 유당(무수유당으로 표시한다)의 함유량이 99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1702191000	- - - 유당	0	EIF	
1702192000	- - - 유당 시럽	9	5	
1702200000	- 단풍당과 단풍나무시럽	9	5	
1702301000	- - 건조상태에서 계산하여 포도당(무수포도당으로 표시한다)의 함유량이 99퍼센트 이상인 것(텍스트로스)	0	EIF	
1702302000	- - 포도당 시럽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2309000	- - 기타	9	5	
1702401000	- - 포도당	9	5	
1702402000	- - 포도당 시럽	9	5	
1702500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EIF	
1702600000	- 기타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초과인 것으로, 전화당은 제외한다)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2901000	- - 인조꿀 대용물(천연꿀과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1702902000	- - 캐러멜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2903000	- - 향미나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2904000	- - 기타 시럽	9	12	부속서 2라 참조
1702909000	- - 기타	0	EIF	
1703100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9	EIF	
1703900000	- 기타	9	EIF	
1704101000	- - 당으로 도포한 것	9	10	
1704109000	- - 기타	9	10	
1704901000	- - 막대사탕, 캔디류, 드롭프스를 포함하는 토피와 사탕과자	9	10	
1704909000	- - 기타	9	10	
1801001100	- - 종자	9	EIF	
1801001900	- - 기타	9	EIF	
1801002000	- 볶은 것	9	EIF	
1802000000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0	EIF	
1803100000	- 탈지하지 아니한 것	9	5	
1803200000	-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9	5	
1804001100	- - 산성도 지수(올레산으로 표시한다)가 1퍼센트 이하인 것	9	5	
1804001200	- - 산성도 지수(올레산으로 표시한다)가 1퍼센트 초과 1.65퍼센트 이하인 것	9	5	
1804001300	- - 산성도 지수(올레산으로 표시한다)가 1.65퍼센트 초과인 것	9	5	
1804002000	- 코코아 지와 유	9	5	
180500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1806100000	-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9	5	
1806201000	-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7	5	
1806209000	- - 기타	17	5	
1806311000	- -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9	5	
1806319000	- - - 기타	9	5	
1806320000	- -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9	10	
1806900000	- 기타	9	10 ¹⁾	
1901101000	- - 모유로부터 얻은 조제유	9	15	
1901109100	- - -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로부터 얻은 유아용 조제식료품	9	15	
1901109900	- - - 기타	9	15	
1901200000	- 제 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0	EIF ¹⁾	
1901901000	- - 맥아엑스	9	5	
1901902000	- - 밀크캐러멜 또는 밀크스위트(만자 불량코)	0	EIF	부속서 2라 참조
1901909000	- - 기타	0	EIF ¹⁾	부속서 2라 참조
1902110000	- - 조란을 함유하는 것	0	EIF	
1902190000	- - 기타	0	EIF	
1902200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1902300000	- 기타 파스타	0	EIF	
1902400000	- 쿠우스쿠우스	0	EIF	
19030000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그 대용물(플레이크상, 낱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0	EIF	
1904100000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9	10	
1904200000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로 만든 조제식료품 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9	5	
1904300000	- 불거소맥	0	EIF	
1904900000	- 기타	17	10	
1905100000	- 커리빵	0	EIF	
1905200000	-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1905310000	- - 스위트 비스킷	0	EIF	
1905320000	- - 와플과 웨이퍼	0	EIF	
1905400000	-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제품	0	EIF	
1905901000	- - 소금과 향미가 첨가된 비스킷	0	EIF	
1905909000	- - 기타	0	EIF	
2001100000	- 오이 및 게르킨	9	EIF	
2001901000	- - 올리브	9	EIF	
2001909000	- - 기타	9	EIF	
2002100000	-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9	EIF	
2002900000	- 기타	9	EIF	
20031000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9	EIF	

1) 이 HS 규정하에 분류된 상품은 페루 양허표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 유형으로 취급한다(동일한 HS 규정하에 분류된 쌀 관련 상품은 제외하며, 쌀 관련 상품은 단계별 양허 유형 "X"로 취급한다)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003200000	- 송로	9	EIF	
2003900000	- 기타	9	EIF	
2004100000	- 감자	9	5	
2004900000	- 기타 채소류 및 채소혼합물	9	EIF	
2005100000	- 균질화한 채소	9	EIF	
2005200000	- 감자	9	5	
2005400000	- 완두(피섬 새티범)	9	EIF	
2005510000	- - 콩(탈각한 것에 한한다)	9	EIF	
2005590000	- - 기타	9	EIF	
2005600000	- 아스파라거스	9	EIF	
2005700000	- 올리브	9	EIF	
2005800000	- 스위트콘(자메이스종 사카라타)	9	EIF	
2005910000	- - 죽순	9	EIF	
2005991000	- - - 양영경귀	9	EIF	
2005992000	- - - 피퀴요고추(캐프시컴 아눔)	9	EIF	
2005999000	- - - 기타	9	5	
20060000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류, 과실류, 견과류, 과일 껍질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에 한한다)	9	5	
2007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	9	5	
2007911000	- - -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9	EIF	
2007912000	- - - 푸레 및 페이스트	9	EIF	
2007991100	- - - -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9	5	
2007991200	- - - - 푸레 및 페이스트	9	5	
2007999100	- - - -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9	5	
2007999200	- - - - 푸레 및 페이스트	9	10	
2008111000	- - - 버터	17	EIF	
2008119000	- - - 기타	9	5	
2008191000	- - - 캐슈넛	9	EIF	
2008192000	- - - 피스타치오	9	EIF	
2008199000	-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9	5	
2008201000	-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9	EIF	
2008209000	- - 기타	9	EIF	
2008300000	- 감귤류 과실	9	5	
2008400000	- 배	9	EIF	
2008500000	- 살구	9	EIF	
2008601000	-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9	EIF	
2008609000	- - 기타	9	EIF	
2008702000	-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9	EIF	
2008709000	- - 기타	9	EIF	
2008800000	- 초본류 딸기(프루틸러스)	9	EIF	
2008910000	- - 팜 하트	9	EIF	
2008920000	- - 혼합물	9	EIF	
2008992000	- - - 포포우(파파야)	9	EIF	
2008993000	- - - 망고	9	EIF	
2008999000	- - - 기타	9	5	
2009110000	- - 냉동한 것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009120000	- -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9	EIF	
2009190000	- - 기타	9	EIF	
2009210000	-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9	EIF	
2009290000	- - 기타	9	EIF	
2009310000	-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9	EIF	
2009391000	- - - 소호 제0805.50.21호의 레몬의 것	9	EIF	
2009399000	- - - 기타	9	EIF	
2009410000	-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9	EIF	
2009490000	- - 기타	9	EIF	
2009500000	- 토마토 주스	9	EIF	
2009610000	- - 브릭스 값이 30 이하인 것	17	EIF	
2009690000	- - 기타	17	EIF	
2009710000	-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9	EIF	
2009790000	- - 기타	9	EIF	
2009801100	- - - 포포우의 것	9	5	
2009801200	- - - 마라꾸야(파시플로라 에돌리스)의 것	9	5	
2009801300	- - - 가시여지(안노나 무리카타)의 것	9	5	
2009801400	- - - 망고의 것	9	5	
2009801500	- - - 카무 카무(미르시아리아 두비아)의 것	9	5	
2009801900	- - - 기타	9	5	
2009802000	- - 기타 단일 채소의 주스	9	5	
2009900000	- 혼합주스	9	EIF	
2101110000	- -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EIF	
2101120000	- -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210120000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나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2101300000	-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및 그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EIF	
2102101000	- - 배양효모	9	EIF	
2102109000	- - 기타	9	5	
2102200000	- 불활성 효모;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9	5	
2102300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9	EIF	
2103100000	- 간장	0	EIF	
2103200000	-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 소스	0	EIF	
2103301000	- - 겨자의 분	9	5	
2103302000	- - 조제한 겨자	0	EIF	
2103901000	- - 마요네스	0	EIF	
2103902000	- - 혼합조미료	0	EIF	
2103909000	- - 기타	0	EIF	
2104101000	- - 스프와 브로드용 조제품	0	EIF	
2104102000	- - 조제한 스프와 브로드	0	EIF	
210420000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0	EIF	
2105001000	- 아이스크림(유지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9	15	
2105009000	- 기타	17	15	
2106101100	- - - 대두(건조상태에서 단백질의 함유량이 65퍼센트와 75퍼센트 사이인 것에 한한다)의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106101900	- - - 기타	9	5	
2106102000	- -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9	5	
2106901000	- - 분말 크림, 아이스크림, 푸딩, 플랜, 젤리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210690210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0	EIF	
2106902900	- - - 기타	0	EIF	
2106903000	- - 단백질 가수분해물	9	5	
2106904000	- - 자기소화 효모	0	EIF	
2106905000	- - 제빵 개량제	9	5	
2106906000	- - 식품 감미료	0	EIF	
2106907100	- - - 식물, 식물의 부분, 종자 또는 과실의 혼합물이나 엑스를 함유하는 것	0	EIF	
2106907200	- - - 식물, 식물의 부분, 종자 또는 과실의 혼합물이나 엑스를 함유하는 것(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것에 한한다)	0	EIF	
2106907300	- - -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	0	EIF	
2106907400	- - - 비타민을 함유하는 것	0	EIF	
2106907900	- - - 기타	0	EIF	부속서 2라 참조
2106908000	- - 12개월까지의 유아용 비유(乳)성 모유 대용물	0	EIF	
2106909000	- - 기타	0	EIF	부속서 2라 참조
2201100011	- - - 천연의 것(탄산의 것을 포함한다)	9	EIF	
2201100012	- - - 인공의 것(탄산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9	EIF	
2201100030	- - 탄산수	9	EIF	
2201900010	- - 비탄산수	9	EIF	
2201900020	- - 얼음	9	EIF	
2201900090	- - 기타	9	5	
220210000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9	5	
2202900000	- 기타	9	5	
2203000000	맥아로 만든 맥주	9	5	
2204100000	- 발포성 포도주	9	5	
2204210000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	5	
2204291000	- - -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가 차단 또는 중지된 것에 한한다)	0	EIF	
2204299000	- - - 기타	9	5	
2204300000	- 기타 포도즙	9	5	
2205100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	5	
2205900000	- 기타	9	5	
2206000000	기타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220710000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9	5	
2207200010	-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9	5	
2207200090	- - - 기타	9	5	
2208202100	- - - 피스코	9	5	
2208202200	- - - 신가니	9	EIF	
2208202900	- -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208203000	- -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그라파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2208300000	- 위스키류	9	5	
220840000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9	5	
2208500000	- 진 및 체네바	9	5	
2208600000	- 보드카	9	5	
2208701000	- - 아니스의 것	9	5	
2208702000	- - 크림	9	5	
2208709000	- - 기타	9	5	
2208901000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5	
2208902000	- - 용설란의 증류주	9	5	
2208904200	- - - 아니스의 것	9	5	
2208904900	- - - 기타	9	5	
2208909000	- - 기타	9	5	
22090000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0	EIF	
2301101000	- - 수지박	0	EIF	
2301109000	- - 기타	0	EIF	
2301201100	- -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 초과인 것	0	EIF	
2301201900	- -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 이하인 것	0	EIF	
2301209000	- - 기타	0	EIF	
2302100000	- 옥수수의 것	0	EIF	
2302300000	- 밀의 것	0	EIF	
2302400010	- - 쌀의 것	0	EIF	
2302400090	- - 기타	0	EIF	
2302500000	- 채두류의 것	0	EIF	
2303100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	EIF	
2303200000	-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0	EIF	
2303300000	-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0	EIF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30500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306100000	- 면실의 것	0	EIF	
2306200000	- 아마인의 것	0	EIF	
2306300000	- 해바라기 종자의 것	0	EIF	
2306410000	-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 종자의 것	0	EIF	
2306490000	- - 기타	0	EIF	
2306500000	- 코코넛 또는 코프라의 것	0	EIF	
2306600000	- 팜넛 또는 핵의 것	0	EIF	
2306900000	- 기타	0	EIF	
2307000000	포도주박; 생주석	0	EIF	
2308001000	- 마리골드 꽃의 가루	0	EIF	
2308009000	- 기타	0	EIF	
2309101000	- - 밀봉캔으로 된 것	0	EIF	
2309109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309901000	- - 가당사료	0	EIF	
2309902000	- - 프리믹스	0	EIF	
2309903000	- - 송아지 사료용 밀크 대용물	0	EIF	
2309909000	- - 기타	0	EIF	부속서 2라 참조
2401101000	- - 블랙 담배	9	5	
2401102000	- - 블론드 담배	9	5	
2401201000	- - 블랙 담배	9	5	
2401202000	- - 블론드 담배	9	5	
2401300000	- 담배 부산물	9	EIF	
2402100000	- 시가, 셔루트 및 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EIF	
2402201000	- - 블랙 담배의 것	9	5	
2402202000	- - 블론드 담배의 것	9	5	
2402900000	- 기타	9	EIF	
2403100000	- 흡연용 담배(비율에 관계없이 담배대용물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2403910000	-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9	EIF	
2403990000	- - 기타	9	EIF	
2501001000	- 식탁염	9	5	
2501002000	- 순도가 99.5퍼센트 이상인 염화나트륨(수용액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01009100	- - 변성의 것	9	5	
2501009200	- - 가축 사료용의 것	9	5	
2501009910	- - - 해수	0	EIF	
2501009990	- - - 기타	9	5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2503000000	각종 황(승화황, 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EIF	
2504100000	-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9	5	
2504900000	- 기타	9	5	
2505100000	- 규사	9	5	
2505900000	- 기타	9	5	
2506100000	- 석영	9	5	
2506200000	- 규암	9	5	
2507001000	- 고령토(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07009000	- 기타	0	EIF	
2508100000	- 벤토나이트	9	5	
2508300000	- 내화점토	9	5	
2508400000	- 기타 점토	0	EIF	
2508500000	-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0	EIF	
2508600000	- 물라이트	0	EIF	
2508700000	-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0	EIF	
2509000000	초크	9	5	
2510100000	-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EIF	
2510200000	- 분쇄한 것	0	EIF	
2511100000	- 천연황산바름(중정석)	9	5	
2511200000	- 천연탄산바름(독중석)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512000000	규조토(예: 키이젤거어, 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2513100010	- -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으로 된 것[분쇄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9	5	
2513100090	- - 기타	0	EIF	
2513200000	- 금강사, 천연커런덤, 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0	EIF	
25140000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2515110000	-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0	EIF	
2515120000	-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0	EIF	
2515200000	-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0	EIF	
2516110000	-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0	EIF	
2516120000	-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0	EIF	
2516200000	- 사암	0	EIF	
2516900000	-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 암석	0	EIF	
2517100000	- 자갈, 왕자갈, 쇄석(콘크리트용, 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17200000	- 슬래그,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2517.10호에 언급된 재료를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17300000	- 타르매카담	0	EIF	
2517410000	- - 대리석의 것	0	EIF	
2517490000	- - 기타	0	EIF	
2518100000	-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9	5	
2518200000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9	5	
2518300000	- 응결백운석	0	EIF	
2519100000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EIF	
2519901000	- - 용융마그네시아	0	EIF	
2519902000	- -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19903000	- - 소결한 마그네슘(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20100000	- 석고; 무수석고	0	EIF	
2520200000	- 플라스터	0	EIF	
2521000000	석회석용제;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9	5	
2522100000	- 생석회	0	EIF	
2522200000	- 소석회	0	EIF	
2522300000	- 수경성 석회	0	EIF	
2523100000	- 시멘트 클링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523210000	-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523290000	- - 기타	0	EIF	
2523300000	- 알루미나시멘트	0	EIF	
25239000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0	EIF	
2524101000	- - 섬유	0	EIF	
2524109000	- - 기타	0	EIF	
2524900000	- 기타	0	EIF	
2525100000	-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갬 운모	9	5	
2525200000	- 운모분	9	5	
2525300000	- 운모 웨이스트	9	5	
2526100000	-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상도 아닌 것	9	5	
2526200000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EIF	
2528100000	-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2528900000	- 기타	9	EIF	
2529100000	- 장식	9	5	
25292100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퍼센트 이하인 것	0	EIF	
25292200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퍼센트 초과인 것	9	5	
2529300000	-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0	EIF	
2530100000	-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2530200000	- 키이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0	EIF	
2530900010	- 천연 빙정석; 천연 치올라이트	0	EIF	
2530900020	- -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0	EIF	
2530900090	- - 기타	0	EIF	
2601110000	- - 응결하지 아니한 것	9	EIF	
2601120000	- - 응결한 것	9	EIF	
2601200000	- 배소한 황화철광	9	EIF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계산하여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EIF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9	EIF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	9	5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9	5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	EIF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9	EIF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9	EIF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	9	5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0	EIF	
261100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9	EIF	
2612100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9	5	
2612200000	- 토륨광과 그 정광	9	5	
2613100000	- 배소한 것	9	5	
2613900000	- 기타	9	EIF	
261400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0	EIF	
2615100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	EIF	
2615900000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616100000	- 은광과 그 정광	9	EIF	
2616901000	- - 금광과 그 정광	9	EIF	
2616909000	- - 기타	0	EIF	
2617100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9	5	
2617900000	- 기타	9	5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래그(슬래그샌드)	9	5	
2619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래그, 드로스(입상의 슬래그는 제외한다), 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9	5	
2620110000	- - 경아연 스펠타	0	EIF	
2620190000	- - 기타	0	EIF	
2620210000	- -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9	5	
2620290000	- - 기타	9	5	
2620300000	-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0	EIF	
2620400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9	5	
2620600000	- 비소, 수은, 탈륨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그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들의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9	5	
26209100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	9	5	
2620990000	- - 기타	9	5	
2621100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9	5	
2621900000	- 기타	9	5	
2701110000	- - 무연탄	0	EIF	
2701120000	- - 유연탄	0	EIF	
2701190000	- - 기타 석탄	0	EIF	
2701200000	-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마젤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0	EIF	
2702100000	- 갈탄(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2702200000	- 응결한 갈탄	0	EIF	
27030000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704001000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0	EIF	
2704002000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0	EIF	
2704003000	- 레토르트 카본	0	EIF	
2705000000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	EIF	
2706000000	석탄, 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	EIF	
2707100000	- 벤조올(벤젠)	0	EIF	
2707200000	- 톨루올(톨루엔)	0	EIF	
2707300000	- 크실올(크실렌)	0	EIF	
2707400000	- 나프탈렌	0	EIF	
2707501000	- - 솔벤트 나프타	0	EIF	
2707509000	- - 기타	0	EIF	
2707910000	- - 크레오소트유	9	5	
2707991000	- - - 안트라센	0	EIF	
2707999000	-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708100000	- 피치	9	5	
2708200000	- 피치 코크스	0	EIF	
2709000000	역청에서 얻어진 원유	0	EIF	
2710111100	- - - - 항공기 엔진용의 것	0	EIF	
2710111310	- - - - - 반디토넨트지수가 84 이하인 것	0	EIF	
2710111321	- - - - - 반디토넨트지수가 84 초과 90 이하인 것	0	EIF	
2710111329	- - - - - 기타	0	EIF	
2710111331	- - - - - 반디토넨트지수가 90 초과 95 이하인 것	0	EIF	
2710111339	- - - - - 기타	0	EIF	
2710111341	- - - - - 반디토넨트지수가 95 초과 97 이하인 것	0	EIF	
2710111349	- - - - - 기타	0	EIF	
2710111351	- - - - - 반디토넨트지수가 97 초과인 것	0	EIF	
2710111359	- - - - - 기타	0	EIF	
2710111900	- - - - - 기타	0	EIF	
2710112000	- - - 테트라에틸납을 함유한 휘발유	0	EIF	
2710119100	- - - - 화이트 스피릿	0	EIF	
2710119200	- - - - 리액터 및 터빈용 가솔린형의 제트 연료유	0	EIF	
2710119300	- - - - 테트라프로필렌	0	EIF	
2710119400	- - - -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	0	EIF	
2710119500	- - - - 노르말 올레핀의 혼합물	0	EIF	
2710119900	- - - - 기타	0	EIF	
2710191200	- - - -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	0	EIF	
2710191300	- - - - 노르말 올레핀의 혼합물	0	EIF	
2710191400	- - - - 등유	0	EIF	
2710191510	- - - - - 항공산업용의 것	0	EIF	
2710191590	- - - - - 기타	0	EIF	
2710191900	- - - - - 기타	0	EIF	
2710192111	- - - - - 디젤2	0	EIF	
2710192119	- - - - - 기타	0	EIF	
2710192121	- - - - - 디젤2	0	EIF	
2710192129	- - - - - 기타	0	EIF	
2710192131	- - - - - 디젤2	0	EIF	
2710192139	- - - - - 기타	0	EIF	
2710192141	- - - - - 디젤2	0	EIF	
2710192149	- - - - - 기타	0	EIF	
2710192191	- - - - - 기타	0	EIF	
2710192199	- - - - - 기타	0	EIF	
2710192210	- - - - - 잔사유 6	0	EIF	
2710192290	- - - - - 기타	0	EIF	
2710192900	- - - - - 기타	0	EIF	
2710193100	- - - - -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	0	EIF	
2710193200	- - - - - 노르말 올레핀의 혼합물	0	EIF	
2710193300	- - - - - 전기절연유	0	EIF	
2710193400	- - - - - 윤활용 그리스	0	EIF	
2710193500	- - - - - 윤활기유	0	EIF	
2710193600	- - - - - 유압 전송용 오일	0	EIF	
2710193700	- - - - - 화이트 오일(석유젤리 또는 파라핀왁스의 것에 한한다)	0	EIF	
2710193800	- - - - - 기타 윤활유	0	EIF	
2710193900	- - -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7109100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로민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0	EIF	
2710990000	- - 기타	0	EIF	
2711110000	- - 천연가스	0	EIF	
2711120000	- - 프로판	0	EIF	
2711130000	- - 부탄	0	EIF	
2711140000	- -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및 부타디엔	0	EIF	
2711190000	- - 기타	0	EIF	
2711210000	- - 천연가스	0	EIF	
2711290000	- - 기타	0	EIF	
2712101000	- - 조상의 것	0	EIF	
2712109000	- - 기타	0	EIF	
2712200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EIF	
2712901000	- -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석유왁스	0	EIF	
2712902000	- - 오우조커라이트와 세레신	0	EIF	
2712903000	- - 파라핀(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2712909000	- - 기타	0	EIF	
2713110000	- - 하소하지 아니한 것	9	5	
2713120000	- - 하소한 것	0	EIF	
2713200000	- 석유아스팔트	9	EIF	
2713900000	-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사유	9	5	
2714100000	-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0	EIF	
2714900000	- 기타	0	EIF	
2715001000	- 역청질 매스틱	9	5	
2715009000	- 기타	9	5	
2716000000	전기에너지(선택적 호)	0	EIF	
2801100000	- 염소	9	10	
2801200000	- 요오드	0	EIF	
2801300000	- 플루오르; 브롬	0	EIF	
2802000000	승화황 또는 침강황; 콜로이드황	9	5	
2803001000	- 아세틸렌 블랙	0	EIF	
2803009000	- 기타	0	EIF	
2804100000	- 수소	9	5	
2804210000	- - 아르곤	9	5	
2804290000	- - 기타	9	EIF	
2804300000	- 질소	9	5	
2804400000	- 산소	9	5	
2804501000	- - 붕소	9	5	
2804502000	- - 텔루르	9	5	
28046100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2804690000	- - 기타	0	EIF	
2804701000	- - 적인 또는 비정질	0	EIF	
2804709000	- - 기타	0	EIF	
2804800000	- 비소	0	EIF	
2804901000	- - 분상의 셀레늄	9	5	
2804909000	- - 기타	9	5	
2805110000	- - 나트륨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805120000	- - 칼슘	0	EIF	
2805190000	- - 기타	0	EIF	
2805300000	- 히토류금속, 스칸듐 및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805400000	- 수은	9	5	
2806100000	- 염화수소(염산)	9	5	
2806200000	- 클로로황산	0	EIF	
2807001000	- 황산	9	8	
2807002000	- 발연황산	9	5	
2808001000	- 질산	0	EIF	
2808002000	- 황질산	0	EIF	
2809100000	- 오산화인	0	EIF	
2809201000	- - 인산	0	EIF	
2809202000	- - 폴리인산	0	EIF	
2810001000	- 오르토 붕산	9	EIF	
2810009000	- 기타	9	EIF	
28111100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0	EIF	
2811191000	- - - 아미노술포산(술파민산)	0	EIF	
2811193000	- - - 인 유도체	0	EIF	
2811194000	- - - 시안화수소	9	5	
2811199020	- - - - 황 유도체, 셀레늄 유도체, 텔루륨 유도체	0	EIF	
2811199090	- - - - 기타	9	5	
2811210000	- - 이산화탄소	9	5	
2811221000	- - - 실리카겔	0	EIF	
2811229000	- - - 기타	0	EIF	
2811292000	- - - 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9	5	
2811294000	- - - 삼산화이비소(세스퀴산화비소, 아비산화물, 흰색 비소)	9	5	
2811299000	- - - 기타	0	EIF	
2812101000	- - 삼염화비소	9	5	
2812102000	- - 이염화탄소(포스겐)	9	5	
2812103100	- - - 옥시염화인	9	5	
2812103200	- - - 삼염화인	9	5	
2812103300	- - - 오염화인	9	5	
2812103900	- - - 기타	9	5	
2812104100	- - - 일염화황	9	5	
2812104200	- - - 이염화황	9	5	
2812104900	- - - 기타	9	5	
2812105000	- - 염화티오닐	9	5	
2812109000	- - 기타	9	5	
2812900000	- 기타	0	EIF	
2813100000	- 이황화탄소	0	EIF	
2813902000	- - 황화인	0	EIF	
2813909000	- - 기타	0	EIF	
2814100000	- 무수암모니아	0	EIF	
2814200000	- 암모니아수	9	10	
2815110000	- - 고체의 것	9	5	
2815120000	-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9	10	
2815200000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0	EIF	
2815300000	-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816100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	EIF	
2816400000	-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0	EIF	
2817001000	- 산화아연	0	EIF	
2817002000	- 과산화아연	0	EIF	
2818100000	-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818200000	-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 제외한다)	0	EIF	
2818300000	- 수산화알루미늄	0	EIF	
2819100000	- 삼산화크로뮴	0	EIF	
2819901000	- - 삼산화이크로뮴(세스퀴산화크로뮴 또는 녹색 산화물)	9	5	
2819909000	- - 기타	0	EIF	
2820100000	- 이산화망간	0	EIF	
2820900000	- 기타	0	EIF	
2821101000	- - 산화물	0	EIF	
2821102000	- - 수산화물	0	EIF	
2821200000	- 어드컬러	0	EIF	
28220000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0	EIF	
2823001000	- 이산화티타늄(산화티타늄 또는 무수티타늄)	0	EIF	
2823009000	- 기타	0	EIF	
2824100000	-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9	5	
2824900000	- 기타	9	5	
2825100000	-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0	EIF	
2825200000	-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0	EIF	
2825300000	-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0	EIF	
2825400000	-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0	EIF	
2825500000	- 산화동 및 수산화동	9	5	
2825600000	-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0	EIF	
2825700000	-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0	EIF	
2825800000	- 산화안티모니	0	EIF	
2825901000	- - 산화주석 및 수산화주석	0	EIF	
2825904000	- - 산화칼슘 및 수산화칼슘	9	5	
2825909010	- - - 산화비스무트 및 수산화비스무트	0	EIF	
2825909090	- - - 기타	9	5	
2826120000	- - 알루미늄의 것	0	EIF	
2826191000	- - - 나트륨의 것	0	EIF	
2826199000	- - - 기타	0	EIF	
2826300000	- 헥사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0	EIF	
2826900000	- 기타	0	EIF	
2827100000	- 염화암모늄	9	10	
2827200000	- 염화칼슘	9	10	
2827310000	- - 마그네슘의 것	0	EIF	
2827320000	- - 알루미늄의 것	0	EIF	
2827350000	- - 니켈의 것	0	EIF	
2827391000	- - - 동의 것	0	EIF	
2827393000	- - - 주석의 것	9	5	
2827394000	- - - 철의 것	9	5	
2827395000	- - - 아연의 것	9	5	
2827399010	- - - - 코발트의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827399090	- - - - 기타	0	EIF	
2827410000	- - 동의 것	9	5	
2827491000	- - - 알루미늄의 것	0	EIF	
2827499000	- - - 기타	0	EIF	
2827510000	- -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0	EIF	
2827590000	- - 기타	0	EIF	
2827601000	- - 나트륨의 것 또는 칼륨의 것	0	EIF	
2827609000	- - 기타	0	EIF	
2828100000	-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및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9	10	
2828901100	- - - 나트륨의 것	9	10	
2828901900	- - - 기타	0	EIF	
2828902000	- - 염소산염	0	EIF	
2828903000	- - 하이포아브롬산염	0	EIF	
2829110000	- - 나트륨의 것	0	EIF	
2829191000	- - - 칼륨의 것	0	EIF	
2829199000	- - - 기타	0	EIF	
2829901000	- - 과염소산	0	EIF	
2829902000	- - 요오드산칼륨	0	EIF	
2829909000	- - 기타	0	EIF	
2830101000	- - 황화나트륨	9	10	
2830102000	- - 황화수소나트륨	9	5	
2830901000	- - 황화칼륨	0	EIF	
2830909000	- - 기타	0	EIF	
2831100000	- 나트륨의 것	0	EIF	
2831900000	- 기타	0	EIF	
2832100000	- 황화나트륨	0	EIF	
2832201000	- - 암모늄의 것	9	5	
2832209000	- - 기타	0	EIF	
2832301000	- - 나트륨의 것	9	5	
2832309000	- - 기타	0	EIF	
2833110000	- - 황산이나트륨	0	EIF	
2833190000	- - 기타	9	5	
2833210000	- - 마그네슘의 것	0	EIF	
2833220000	- - 알루미늄의 것	9	10	
2833240000	- - 니켈의 것	9	5	
2833250000	- - 동의 것	0	EIF	
2833270000	- - 바륨의 것	0	EIF	
2833291000	- - - 철의 것	9	5	
2833293000	- - - 납의 것	9	5	
2833295000	- - - 크롬의 것	9	10	
2833296000	- - - 아연의 것	0	EIF	
2833299000	- - - 기타	9	5	
2833301000	- - 알루미늄의 것	0	EIF	
2833309000	- - 기타	0	EIF	
2833401000	- - 나트륨의 것	0	EIF	
2833409000	- - 기타	0	EIF	
2834100000	- 아질산염	0	EIF	
2834210000	- - 칼륨의 것	0	EIF	
2834291000	- - - 마그네슘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834299000	- - - 기타	0	EIF	
2835100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	EIF	
2835220000	- - 일나트륨 또는 이나트륨의 것	0	EIF	
2835240000	- - 칼륨의 것	0	EIF	
2835250000	-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0	EIF	
2835260000	- - 기타 인산칼슘	0	EIF	
2835291000	- - - 철의 것	0	EIF	
2835292000	- - - 삼암모늄의 것	0	EIF	
2835299010	- - - - 삼나트륨의 것	0	EIF	
2835299090	- - - - 기타	9	10	
2835310000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0	EIF	
2835391000	- - - 피로인산나트륨	0	EIF	
2835399000	- - - 기타	0	EIF	
2836200000	- 탄산이나트륨	0	EIF	
2836300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9	10	
2836400000	- 탄산칼륨	0	EIF	
2836500000	- 탄산칼슘	9	10	
2836600000	- 탄산바륨	0	EIF	
2836910000	- - 탄산리튬	0	EIF	
2836920000	- - 탄산스트론튬	0	EIF	
2836991000	- - - 침강성 탄산마그네슘	0	EIF	
2836992000	- - - 탄산암모늄	0	EIF	
2836993000	- - - 탄산코발트	0	EIF	
2836994000	- - - 탄산니켈	0	EIF	
2836995000	- - - 세스퀴탄산나트륨	0	EIF	
2836999000	- - - 기타	0	EIF	
2837111000	- - - 시안화물	0	EIF	
2837112000	- - - 산화시안화물	0	EIF	
2837190000	- - 기타	0	EIF	
2837200000	- 시안착염	0	EIF	
2839110000	- - 메타규산나트륨	9	10	
2839190000	- - 기타	9	10	
2839901000	- - 알루미늄의 것	0	EIF	
2839902000	- - 침강성 칼슘의 것	0	EIF	
2839903000	- - 마그네슘의 것	9	5	
2839904000	- - 칼륨의 것	9	10	
2839909000	- - 기타	0	EIF	
2840110000	- - 무수물	0	EIF	
2840190000	- - 기타	9	EIF	
2840200000	- 기타 불산염	9	EIF	
2840300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	EIF	
2841300000	- 중크롬산나트륨	0	EIF	
2841501000	- - 아연의 크롬산염 또는 납의 크롬산염	9	5	
2841502000	- - 크롬산칼륨	0	EIF	
2841503000	- - 크롬산나트륨	0	EIF	
2841504000	- - 중크롬산칼륨	0	EIF	
2841505000	- - 중크롬산탈륨	0	EIF	
2841509000	- - 기타	0	EIF	
2841610000	- - 과망간산칼륨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841690000	- - 기타	0	EIF	
2841700000	- 몰리브덴산염	9	5	
2841800000	- 텅스텐산염(올프라메이트)	0	EIF	
2841901000	- - 알루미늄산염	0	EIF	
2841909000	- - 기타	0	EIF	
2842100000	-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842901000	- - 아비산염과 비산염	9	10	
2842902100	- - - 암모늄과 아연의 것	9	5	
2842902900	- - - 기타	0	EIF	
2842903000	- - 인산의 겹염 또는 착염(인산염)	0	EIF	
2842909000	- - 기타	0	EIF	
2843100000	- 콜로이드 귀금속	0	EIF	
2843210000	- - 질산은	9	7	
2843290000	- - 기타	0	EIF	
2843300000	- 금 화합물	9	3	
2843900000	- 기타 화합물; 아말감	9	3	
2844100000	-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도자제품 및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0	EIF	
284420000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도자제품과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이들 제품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0	EIF	
284430000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도자제품 및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토륨 또는 이들 제품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0	EIF	
2844401000	- - 방사성 잔재물	0	EIF	
2844409000	- - 기타	0	EIF	
2844500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0	EIF	
2845100000	- 중수(산화 중수소)	0	EIF	
2845900000	- 기타	0	EIF	
2846100000	- 세륨 화합물	0	EIF	
2846900000	- 기타	0	EIF	
284700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848000000	인화물(화학적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0	EIF	
2849100000	- 칼슘의 것	9	10	
2849200000	- 규소의 것	0	EIF	
2849901000	- - 텅스텐의 것	0	EIF	
2849909000	- - 기타	0	EIF	
2850001000	- 납 아지화물	0	EIF	
2850002000	- 아지화물	0	EIF	
2850009000	- 기타	0	EIF	
2852001000	- 수은 황화물	0	EIF	
2852002100	- - 메르브로민(DCI)(머큐로크롬)	0	EIF	
2852002910	- - - 젯산의 염과 에스테르	9	5	
2852002990	-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852009011	- - - 염화제1수은	0	EIF	
2852009012	- - - 염화제2수은	0	EIF	
2852009021	- - - 산염화물 및 수산염화물	0	EIF	
2852009022	- - - 요오드화물 및 옥시-요오드화물	0	EIF	
2852009023	- - - 황화물; 폴리황화물(비화학적으로 정의된 것도 포함한다)	0	EIF	
2852009024	- - - 질화물	0	EIF	
2852009025	- - - 폴리인산염	0	EIF	
2852009026	- - - 시안화물과 옥시시안화물	0	EIF	
2852009027	- - - 시안착염	0	EIF	
2852009031	- - - 뇌산염, 시안산염 및 티오시안산염	0	EIF	
2852009032	- - -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0	EIF	
2852009033	- - -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정의된 것도 포함한다)	0	EIF	
2852009034	- - - 아비산염과 비산염	9	5	
2852009035	- - - 염화물의 겹염 또는 착염	0	EIF	
2852009036	- - - 인산의 겹염 또는 착염(인산염)	0	EIF	
2852009037	- - - 무기산 또는 과산화산염의 잔재물	0	EIF	
2852009041	- - - 무기 염기; 산화물,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9	5	
2852009042	- - - 귀금속 화합물의 무기물 또는 유기물	9	5	
2852009043	- - - 인화물	0	EIF	
2852009044	- - - 탄화물	0	EIF	
2852009045	- - - 수소화물, 질화물, 아지화물, 규화물 및 붕화물	0	EIF	
2852009050	- - 무기 화합물의 잔재물	9	5	
2852009061	- - -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9	5	
2852009062	-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0	EIF	
2852009063	- - - 알부미네이트와 기타 알부민 유도체	0	EIF	
2852009064	- - - 단백질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2852009065	- - - 사진용 화학 조제품(바니시, 글루, 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단일 제품(사진용 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9	5	
2852009066	- - - 서포팅 시트 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및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서포팅 시트 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2852009067	- - - 인증표준물질	0	EIF	
2853001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9	5	
2853003000	-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액체 공기와 정화 공기	9	5	
2853009000	- 기타	9	5	
2901100000	- 포화된 것	0	EIF	
2901210000	- - 에틸렌	9	5	
2901220000	- - 프로펜(프로필렌)	9	5	
2901230000	- - 부텐(부틸렌) 및 그 이성체	0	EIF	
2901240000	- -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0	EIF	
2901290000	- - 기타	0	EIF	
2902110000	- - 시클로헥산	9	5	
2902190000	- - 기타	0	EIF	
2902200000	- 벤젠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02300000	- 톨루엔	0	EIF	
2902410000	- - 오르토-크실렌	9	5	
2902420000	- - 메타-크실렌	0	EIF	
2902430000	- - 파라-크실렌	0	EIF	
29024400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0	EIF	
2902500000	- 스티렌	0	EIF	
2902600000	- 에틸벤젠	0	EIF	
2902700000	- 큐멘	9	5	
2902901000	- - 나프탈렌	0	EIF	
2902909000	- - 기타	0	EIF	
2903111000	- - - 염화메탄(염화메틸)	0	EIF	
2903112000	- - - 염화에탄(염화에틸)	0	EIF	
2903120000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EIF	
2903130000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EIF	
2903140000	- - 사염화탄소	9	5	
2903150000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9	5	
2903191000	- -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9	5	
2903199000	- - - 기타	0	EIF	
29032100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9	5	
2903220000	- - 삼염화에틸렌	0	EIF	
29032300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EIF	
2903291000	- - - 염화비닐리덴(단량체)	0	EIF	
2903299000	- - - 기타	0	EIF	
2903310000	- - 이브로화에틸렌(ISO)(1,2-이브로모에탄)	0	EIF	
2903391000	- - - 브로모에탄(메틸 브로마이드)	0	EIF	
2903392100	- - - - 디플루오르메탄	0	EIF	
2903392200	- - - - 트리플루오르메탄	0	EIF	
2903392300	- - - - 디플루오르에탄	0	EIF	
2903392400	- - - - 트리플루오르에탄	0	EIF	
2903392500	- - - - 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EIF	
2903392600	- - - - 펜타플루오르에탄	0	EIF	
2903393000	- - - 1,1,3,3,3-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르메틸)-1-프로펜	9	5	
2903399000	- - - 기타	0	EIF	
2903410000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20000	-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30000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40000	-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51000	- - -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52000	- - - 펜타클로로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53000	- -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54100	- - - -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4200	- - - -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4300	- - - -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4400	- - -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4500	- - -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4600	- - -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4700	- - - -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9	EIF	
2903459000	-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034600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70000	- -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0	EIF	
2903491100	- -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EIF	
2903491300	- -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EIF	
2903491400	- -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0	EIF	
2903491500	- - -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	0	EIF	
2903491600	- - - -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0	EIF	
2903491700	- -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EIF	
2903491800	- -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9	EIF	
2903491900	- - - - 기타	0	EIF	
2903492000	- - -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9	EIF	
2903499000	- - - 기타	0	EIF	
2903511000	- - - 린데인(ISO) 감마 이성체	9	EIF	
2903512000	- - - 알파, 베타 및 델타 이성체	9	EIF	
2903519000	- - - 기타	0	EIF	
2903521000	- - - 엘드린(ISO)	9	EIF	
2903522000	- - - 클로르덴(ISO)	9	EIF	
2903523000	- - - 헵타클로르(ISO)	9	EIF	
2903591000	- - - 캄페클로르(독사펜)	9	EIF	
2903592000	- - - 미렉스	0	EIF	
2903599000	- - - 기타	0	EIF	
29036100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 디클로로벤젠	0	EIF	
2903621000	- - - 헥사클로로벤젠(ISO)	9	EIF	
2903622000	-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9	EIF	
2903690000	- - 기타	0	EIF	
2904101000	- - 나프탈렌술폰산	9	EIF	
2904109000	- - 기타	9	8	
2904201000	- - 디니트로톨루엔	9	EIF	
2904202000	- - 트리니트로톨루엔(TNT)	0	EIF	
2904203000	- - 티니트로부틸메타크릴렌과 디니트로부틸파라시멘	0	EIF	
2904204000	- - 니트로벤젠	0	EIF	
2904209000	- - 기타	0	EIF	
2904901000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9	EIF	
2904909000	- - 기타	0	EIF	
29051100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0	EIF	
2905121000	- - - 프로필알코올	0	EIF	
2905122000	- - - 이소프로필알코올	0	EIF	
29051300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0	EIF	
2905141000	- - - 이소부틸	0	EIF	
2905149000	- - - 기타	0	EIF	
2905161000	- - - 2-에틸헥산올	0	EIF	
2905169000	- - - 기타 옥틸알코올	0	EIF	
29051700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 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 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05191000	- - - 메틸아밀	0	EIF	
2905192000	- - - 기타 핵실알코올(핵산올); 헵탈알코올(헵탄올)	0	EIF	
2905193000	- - - 노닐알코올(노난올)	0	EIF	
2905194000	- - - 데실알코올(데칸올)	0	EIF	
2905195000	- - -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알코올)	9	EIF	
2905196000	- - - 펜탄올(아밀알코올)과 이성체	0	EIF	
2905199000	- - - 기타	0	EIF	
29052200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	EIF	
2905290000	- - 기타	0	EIF	
29053100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	EIF	
29053200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0	EIF	
2905391000	- - - 부틸렌글리콜(부탄디올)	0	EIF	
2905399000	- - - 기타	0	EIF	
2905410000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	EIF	
2905420000	- - 펜타에리트리톨	0	EIF	
2905430000	- - 만니톨	0	EIF	
2905440000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0	EIF	
2905450000	- - 글리세롤	9	EIF	
2905490000	- - 기타	0	EIF	
2905510000	- - 에스클로비놀(INN)	0	EIF	
2905590000	- - 기타	0	EIF	
2906110000	- - 멘톨	0	EIF	
2906120000	- -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	EIF	
2906130000	- - 스테롤과 이노시톨	0	EIF	
2906190000	- - 기타	0	EIF	
2906210000	- - 벤질알코올	0	EIF	
2906290000	- - 기타	0	EIF	
2907111000	- - - 페놀(석탄산)	0	EIF	
2907112000	- - - 염	0	EIF	
2907120000	- - 크레졸과 그들의 염	0	EIF	
2907131000	- - - 노닐페놀	0	EIF	
2907139000	- - - 기타	0	EIF	
2907150000	- - 나프톨과 그들의 염	0	EIF	
2907190000	- - 기타	0	EIF	
2907210000	- - 레소르시놀과 그 염	0	EIF	
2907220000	-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0	EIF	
2907230000	-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0	EIF	
2907291000	- - - 페놀알코올	0	EIF	
2907299000	- - - 기타	0	EIF	
2908110000	- - 펜타클로로페놀(ISO)	0	EIF	
2908190000	- - 기타	0	EIF	
2908910000	- - 디노셉(ISO)과 그 염	0	EIF	
2908991000	- - - 술폰화만 된 유도체, 그 염과 에스테르	0	EIF	
2908992100	- - - - 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	0	EIF	
2908992200	- - - - 디니트로페놀	0	EIF	
2908992300	- - - -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닐)	0	EIF	
2908992900	- -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08999000	- - - 기타	0	EIF	
2909110000	- - 디에틸에테르	0	EIF	
2909191000	- - - 메틸터샤리부틸에테르	9	EIF	
2909199000	- - - 기타	0	EIF	
2909200000	-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IF	
2909301000	- - 아네톨	0	EIF	
2909309000	- - 기타	0	EIF	
2909410000	-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	EIF	
2909430000	-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	EIF	
2909440000	- -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0	EIF	
2909491000	- - - 디프로필렌글리콜	0	EIF	
2909492000	- - - 트리에틸렌글리콜	9	EIF	
2909493000	- - - 글리세릴구아아아콜	0	EIF	
2909494000	- - - 프로필렌글리콜의 메틸에테르	0	EIF	
2909495000	- - - 프로필렌글리콜의 기타 에테르	0	EIF	
2909496000	- - -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에테르	0	EIF	
2909499000	- - - 기타	0	EIF	
2909501000	- - 구아아아콜, 오이게놀 및 이소오이게놀; 구아아아콜술폰화칼륨	0	EIF	
2909509000	- - 기타	0	EIF	
2909601000	-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9	EIF	
2909609000	- - 기타	0	EIF	
2910100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EIF	
2910200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EIF	
2910300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EIF	
2910400000	- 디엘드린(ISO, INN)	9	EIF	
2910902000	- - 엔드린(ISO)	9	EIF	
2910909000	- - 기타	0	EIF	
291100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IF	
2912110000	-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9	7	
29121200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	EIF	
2912192000	- - - 시트랄과 시트로넬알	0	EIF	
2912193000	- - - 글루테르알데히드	9	EIF	
2912199000	- - - 기타	0	EIF	
2912210000	- - 벤즈알데히드	0	EIF	
2912291000	- - - 신남알데히드와 페닐아세트알데히드	0	EIF	
2912299000	- - - 기타	0	EIF	
2912300000	- 알데히드알코올	0	EIF	
29124100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EIF	
2912420000	-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EIF	
2912490000	- - 기타	0	EIF	
2912500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	EIF	
2912600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13000000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제2912호의 제품의 것에 한한다)	0	EIF	
2914110000	- - 아세톤	0	EIF	
29141200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EIF	
29141300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EIF	
2914190000	- - 기타	0	EIF	
2914210000	- - 장뇌	0	EIF	
2914221000	- - - 시클로헥사논	0	EIF	
2914222000	- - - 메틸시클로헥사논	0	EIF	
29142300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	EIF	
2914292000	- - - 이소포론	0	EIF	
2914299000	- - - 기타	0	EIF	
29143100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EIF	
2914390000	- - 기타	0	EIF	
2914401000	- -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알코올)	0	EIF	
2914409000	- - 기타	0	EIF	
2914500000	-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0	EIF	
2914610000	- - 안트라퀴논	0	EIF	
2914690000	- - 기타	0	EIF	
2914700000	-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IF	
2915110000	- - 포름산	0	EIF	
2915121000	- - - 포름산나트륨	0	EIF	
2915129000	- - - 기타	0	EIF	
29151300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0	EIF	
2915210000	- - 초산	0	EIF	
2915240000	- - 무수초산	0	EIF	
2915291000	- - - 초산칼슘, 초산납, 초산동, 초산크로뮴, 초산알루미늄과 초산철	0	EIF	
2915292000	- - - 초산나트륨	0	EIF	
2915299010	- - - - 초산코발트	9	EIF	
2915299090	- - - - 기타	0	EIF	
2915310000	- - 초산에틸	0	EIF	
2915320000	- - 초산비닐	0	EIF	
2915330000	- - 초산노르말부틸	0	EIF	
2915360000	- - 초산디노셉(ISO)	0	EIF	
2915391000	- - - 초산2-에톡시에틸	0	EIF	
2915392100	- - - - 초산프로필	0	EIF	
2915392200	- - - - 초산이소프로필	0	EIF	
2915393000	- - - 초산아밀과 초산이소아밀	0	EIF	
2915399000	- - - 기타	0	EIF	
2915401000	- - 산	0	EIF	
2915402000	- - 염 및 에스테르	0	EIF	
2915501000	- - 프로피온산	0	EIF	
2915502100	- - - 염	0	EIF	
2915502200	- - - 에스테르	0	EIF	
2915601100	- - - 부탄산	0	EIF	
2915601900	- - - 기타	0	EIF	
2915602000	- - 펜탄산, 염 및 에스테르	0	EIF	
2915701000	- - 팔미트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15702100	- - - 스테아르산	0	EIF	
2915702200	- - - 염	9	EIF	
2915702900	- - - 에스테르	9	5	
2915902000	- - 브로모아세트산	0	EIF	
2915903100	- - - 염화아세틸	0	EIF	
2915903900	- - - 기타	0	EIF	
2915904000	- - 틴옥타노에이트	9	EIF	
2915905000	- - 라우르산	0	EIF	
2915909000	- - 기타	0	EIF	
2916111000	- - - 아크릴산	0	EIF	
2916112000	- - - 염	0	EIF	
2916121000	- - - 아크릴산부틸	0	EIF	
2916129000	- - - 기타	0	EIF	
2916130000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	EIF	
2916141000	- - - 메타아크릴산메틸	0	EIF	
2916149000	- - - 기타	0	EIF	
2916151000	- - - 올레산	0	EIF	
2916152000	- - - 올레산 염 및 에스테르	0	EIF	
2916159000	- - - 기타	0	EIF	
2916191000	- - - 소르브산과 그들의 염	0	EIF	
2916192000	- - - 아크릴산 유도체	0	EIF	
2916199000	- - - 기타	0	EIF	
2916201000	- - 알레트린(ISO)	0	EIF	
2916202000	- - 퍼메트린(ISO)(INN)	0	EIF	
2916209000	- - 기타	0	EIF	
2916311000	- - - 벤조산	0	EIF	
2916313000	- - - 벤조산나트륨	0	EIF	
2916314000	- - - 벤조산나프틸, 벤조산암모늄, 벤조산칼륨, 벤조산칼슘, 벤조산메틸 및 벤조산에틸	0	EIF	
2916319000	- - - 기타	0	EIF	
2916321000	- - - 과산화벤조일	9	EIF	
2916322000	- - - 염화벤조일	0	EIF	
2916340000	- -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0	EIF	
2916350000	-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0	EIF	
2916360000	- - 비나파크릴(ISO)	0	EIF	
2916390000	- - 기타	0	EIF	
2917111000	- - - 옥살산	9	EIF	
2917112000	- - - 염과 에스테르	0	EIF	
2917121000	- - - 아디프산	0	EIF	
2917122000	- - - 염과 에스테르	0	EIF	
2917131000	- - - 아젤라산(INN),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EIF	
2917132000	- - - 세바스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EIF	
2917140000	- - 무수말레산	0	EIF	
2917191000	- - - 말레산	0	EIF	
2917192000	- - - 말레산의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9	EIF	
2917193000	- - - 푸마르산	0	EIF	
2917199000	- - - 기타	0	EIF	
2917200000	-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유도체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173200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0	EIF	
29173300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9	EIF	
2917341000	- - - 오르토프탈산디메틸 또는 오르토프탈산디에틸	9	EIF	
2917342000	- - - 오르토프탈산디부틸	9	EIF	
2917349000	- - - 기타	0	EIF	
2917350000	- - 무수프탈산	0	EIF	
2917361000	- - - 테레프탈산	0	EIF	
2917362000	- - - 염	0	EIF	
29173700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0	EIF	
2917392000	- - - 오르토프탈산과 그들의 염	9	5	
2917393000	- - - 이소프탈산, 그 에스테르와 염	0	EIF	
2917394000	- - - 무수트리멜리트산	0	EIF	
2917399000	- - - 기타	0	EIF	
2918111000	- - - 락트산	0	EIF	
2918112000	- - - 락트산칼슘	0	EIF	
2918119000	- - - 기타	9	EIF	
2918120000	- - 타르타르산	0	EIF	
29181300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EIF	
2918140000	- - 시트르산	0	EIF	
2918153000	- - - 시트르산나트륨	0	EIF	
2918159000	- - - 기타	0	EIF	
2918161000	- - - 글루콘산	0	EIF	
2918162000	- - - 글루콘산칼슘	0	EIF	
2918163000	- - - 글루콘산나트륨	0	EIF	
2918169000	- - - 기타	0	EIF	
29181800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EIF	
2918191000	- - - 2,2-디페닐-2-히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9	EIF	
2918192000	- - - 글루콘산 유도체	0	EIF	
2918199000	- - - 기타	0	EIF	
2918211000	- - - 살리실산	0	EIF	
2918212000	- - - 염	0	EIF	
2918221000	-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0	EIF	
2918222000	- - - 염과 에스테르	0	EIF	
2918230000	- - 살리실산의 기타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0	EIF	
2918291100	- - - - 파라-히드록시벤조산메틸	0	EIF	
2918291200	- - - - 파라-히드록시벤조산프로필	0	EIF	
2918291900	- - - - 기타	0	EIF	
2918299000	- - - 기타	9	EIF	
29183000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0	EIF	
29189100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9	EIF	
2918991100	- - - - 2,4-디(ISO)	0	EIF	
2918991200	- - - - 염	0	EIF	
2918992000	- - - 2,4-디 에스테르	0	EIF	
2918993000	- - - 디캄바(ISO)	0	EIF	
2918994000	- - - 엠시피에이(ISO)	0	EIF	
2918995000	- - - 2,4-디비 4-(2,4-디클로로페녹시)부티르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18996000	- - - 디클로르프로프(ISO)	0	EIF	
2918997000	- - - 디클로포프-메틸, 메틸(2-(4-(2,4- 디클로로페녹시)프로피오네이트	0	EIF	
2918999100	- - - - 나프록센나트륨	0	EIF	
2918999200	- - - - 2,4 디클로로페녹시프로피온산	0	EIF	
2918999900	- - - - 기타	0	EIF	
2919100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0	EIF	
2919901100	- - - 글리세로인산나트륨	9	EIF	
2919901900	- - - 기타	0	EIF	
2919902000	- - 디메틸-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DDVP)	0	EIF	
2919903000	- - 클로르펜빈포스(ISO)	0	EIF	
2919909000	- - 기타	0	EIF	
2920111000	- - - 파라티온(ISO)	0	EIF	
2920112000	- - -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9	EIF	
2920191000	- - - 에틸파라티온	9	EIF	
2920192000	- - - 오-에틸-오-피- 니트로페닐벤조티오포스페이트(EPN)	0	EIF	
2920199000	- - - 기타	0	EIF	
2920901000	- -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세롤)	9	EIF	
2920902000	- - 펜트라이트(테트라니트로펜타에리트리톨)	0	EIF	
2920903100	- - - 디메틸과 트리메틸	9	EIF	
2920903200	- - - 디에틸과 트리에틸	9	EIF	
2920903900	- - - 기타	0	EIF	
2920909000	- - 기타	0	EIF	
2921110000	- - 메틸아민, 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0	EIF	
2921191000	- - -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9	EIF	
2921192000	- - -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9	EIF	
2921193000	- - -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 클로로에틸)아민)	9	EIF	
292119400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9	EIF	
2921195000	- - - 디에틸아민과 그 염	0	EIF	
2921199000	- - - 기타	0	EIF	
29212100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EIF	
29212200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	EIF	
2921290000	- - 기타	0	EIF	
2921300000	-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 염	0	EIF	
2921410000	- - 아닐린과 그 염	0	EIF	
2921421000	- - - 클로로아닐린	0	EIF	
2921422000	- - - 엔-메틸-엔,2,4,6- 테트라니트로아닐린(테트랄리트)	0	EIF	
2921429000	- - - 기타	0	EIF	
2921430000	- -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 염	0	EIF	
2921440000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214500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 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 염	0	EIF	
2921461000	- - - 암페타민(INN)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21462000	- - - 벤즈페타민 (INN), 텍스암페타민 (INN), 에틸암페타민 (INN)과 펜캄파민 (INN)	0	EIF	
2921463000	- - - 레페타민 (INN), 레브암페타민 (INN), 메페노렉스 (INN)와 펜터민 (INN)	0	EIF	
2921469000	- - - 기타	0	EIF	
2921491000	- - - 크살리딘	0	EIF	
2921499000	- - - 기타	0	EIF	
2921510000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메타-페닐렌디아민 및 파라-페닐렌디아민,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그 염	0	EIF	
2921590000	- - 기타	0	EIF	
2922111000	- - - 모노에탄올아민	0	EIF	
2922112000	- - - 염	0	EIF	
2922121000	- - - 디에탄올아민	0	EIF	
2922122000	- - - 염	0	EIF	
2922131000	- - - 트리에탄올아민	0	EIF	
2922132000	- - - 염	0	EIF	
2922141000	- - - 덱스트로프로폭시펜 (INN)	9	EIF	
2922142000	- - - 염	9	EIF	
2922192100	- - - -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 수소화된 염	9	EIF	
2922192200	- - - -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 수소화된 염	9	EIF	
2922192900	- - - - 기타	0	EIF	
2922193000	- - - 에틸디에탄올아민	9	EIF	
2922194000	- - - 메틸디에탄올아민	9	EIF	
2922199000	- - - 기타	0	EIF	
2922210000	- - 아미노히드록시나프탈렌술폰 산과 그들의 염	0	EIF	
2922290000	- - 기타	0	EIF	
2922311000	- - - 암페프라몬 (INN)	0	EIF	
2922312000	- - - 메타돈 (INN)	0	EIF	
2922313000	- - - 노르메타돈 (INN)	0	EIF	
2922319000	- - - 기타	0	EIF	
2922390000	- - 기타	0	EIF	
2922410000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그 염	0	EIF	
2922421000	- - - 글루탐산모노나트륨	9	10	
2922429000	- - - 기타	0	EIF	
29224300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EIF	
2922441000	- - - 틸리딘 (INN)	0	EIF	
2922449000	- - - 기타	0	EIF	
2922491000	- - - 글리신 (INN), 그 염 및 에스테르	0	EIF	
2922493000	- - - 알라닌 (INN), 페닐알라닌 (INN), 류우신 (INN), 이소류우신 (INN)과 아스파르트산 (INN)	0	EIF	
2922494100	- - -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EDTA)	0	EIF	
2922494200	- - - - 염	0	EIF	
2922499000	- - - 기타	0	EIF	
2922503000	- - 2-아미노-1-(2,5-디메톡시-4-메틸)-페닐프로판 (STP, DOM)	0	EIF	
2922504000	- - 아미노산페놀, 그들의 염 및 유도체	0	EIF	
2922509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23100000	- 콜린과 그 염	0	EIF	
2923200000	- 레시틴 및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	EIF	
2923901000	- - 콜린 유도체	0	EIF	
2923909000	- - 기타	0	EIF	
29241100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0	EIF	
2924120000	- - 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0	EIF	
2924190000	- - 기타	0	EIF	
2924211000	- - - 디우론(ISO)	9	EIF	
2924219000	- - - 기타	0	EIF	
29242300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안트라닐산)과 그 염	0	EIF	
2924240000	- - 에티나메이트(INN)	9	EIF	
2924291000	- - - 파라-아세트아미도페놀(파라세타몰)(INN)	0	EIF	
2924292000	- - - 리도카인(INN)	0	EIF	
2924293000	- - - 카르바릴(ISO)(INN)	0	EIF	
2924294000	- - - 프로파닐(ISO)	0	EIF	
2924295000	- - - 메타락실(ISO)	0	EIF	
2924296000	- - - 아스파르테임(INN)	0	EIF	
2924297000	- - - 아테놀올(INN)	0	EIF	
2924298000	- - - 부타클로르(2'-클로로-2',6' 디에틸-엔-(부톡시메틸)아세트아닐리드)	0	EIF	
2924299100	- - - - 2'-클로로-2',6' 디에틸-엔-(메톡시메틸)아세트아닐리드	0	EIF	
2924299900	- - - - 기타	0	EIF	
2925110000	- - 사카린과 그 염	0	EIF	
2925120000	- - 글루테티미드(INN)	0	EIF	
2925190000	- - 기타	0	EIF	
29252100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0	EIF	
2925291000	- - - 구아니딘, 유도체와 염	0	EIF	
2925299000	- - - 기타	0	EIF	
2926100000	- 아크릴로니트릴	0	EIF	
2926200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EIF	
2926301000	-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9	EIF	
2926302000	- - 메타돈(INN)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9	EIF	
2926902000	- - 아세토니트릴	0	EIF	
2926903000	- - 아세톤시안히드린	0	EIF	
2926904000	- - 2-시아노-엔[(에틸아미노)카르보닐]-2-(메톡시아미노)아세트아미드(사이목사닐)	0	EIF	
2926905000	- - 사이퍼메트린	0	EIF	
2926909000	- - 기타	0	EIF	
2927000000	디아조화합물,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0	EIF	
2928001000	- 에틸-메틸-케톡심(부탄온옥심)	0	EIF	
2928002000	- 폭심(ISO)(INN)	9	EIF	
2928009000	- 기타	0	EIF	
2929101000	- - 톨루엔디아소시아네이트	0	EIF	
2929109000	- - 기타	0	EIF	
2929901000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29902000	- -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9	EIF	
2929903000	- - 시클라멘산나트륨(INN)	0	EIF	
2929909000	- - 기타	0	EIF	
2930201000	- - 에틸디프로필티오카르바메이트	0	EIF	
2930209000	- - 기타	0	EIF	
2930301000	- - 테트라메틸티우람디설파이드(ISO)(INN)	0	EIF	
2930309000	- - 기타	0	EIF	
2930400000	- 메티오닌	0	EIF	
2930500000	- 캡타폴(ISO)과 메타미도포스(ISO)	0	EIF	
2930901100	- - - 티오파네이트-메틸(ISO)	0	EIF	
2930901900	- - - 기타	0	EIF	
293090210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0	EIF	
2930902900	- - - 기타	0	EIF	
2930903000	- - 말라티온(ISO)	0	EIF	
2930904000	- - 부티레이트(ISO), 티오벤카브, 베노레이트	0	EIF	
2930905100	- - - 이소프로필 크산틴산나트륨(ISO)	9	5	
2930905900	- - - 기타	9	5	
2930906000	- - 티오디글리콜(INN)[비스(2-히드록시에틸)설파이드]]	9	EIF	
2930907000	- - 오,오-디에틸 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	9	EIF	
2930908000	- -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9	EIF	
2930909100	- - -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에 결합된 인 원자를 함유한 것(기타 탄소원자가 없는 것에 한한다)	0	EIF	
2930909200	- - - 메티오닌의 염, 에스테르 및 유도체	0	EIF	
2930909310	- - - - 디메티오산(ISO)	0	EIF	
2930909320	- - - - 펜티온(ISO)	9	EIF	
2930909400	- - -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 그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	9	EIF	
2930909500	- - - 2-클로로에틸과 클로로메틸설파이드; 비스(2-클로로에틸)설파이드	9	EIF	
2930909600	- - -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9	EIF	
2930909700	- - -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옥사이드;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옥사이드	9	EIF	
2930909900	- - - 기타	0	EIF	
2931001000	- 테트라에틸납	0	EIF	
2931003100	- - 글리포세이트(ISO)	0	EIF	
2931003200	- - 염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31004000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9	EIF	
2931009100	- -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에 결합된 인 원자를 함유한 것(기타 탄소원자가 없는 것에 한한다)	9	EIF	
2931009200	- - 트리클로르폰(ISO)	0	EIF	
2931009300	- -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9	EIF	
2931009400	- - 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트리스(2-클로로비닐)아르신	9	EIF	
2931009500	- -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9	EIF	
2931009600	- -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포스포나이트; 그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의 에스테르; 그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	9	EIF	
2931009700	- -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오-피나코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9	EIF	
2931009900	- - 기타	0	EIF	
2932110000	- - 테트라히드로푸란	0	EIF	
2932120000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	EIF	
2932131000	- - - 푸르푸릴알코올	0	EIF	
2932132000	- - -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알코올	0	EIF	
2932190000	- - 기타	0	EIF	
2932210000	- - 쿠마린, 메틸쿠마린과 에틸쿠마린	0	EIF	
2932291000	- - - 와르파린(ISO)(INN)	0	EIF	
2932292000	- - - 페놀프탈레인(INN)	0	EIF	
2932299000	- - - 기타	0	EIF	
2932910000	- - 이소사프롤	0	EIF	
2932920000	-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EIF	
2932930000	- - 피페로날	0	EIF	
2932940000	- - 사프롤	0	EIF	
2932950000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9	EIF	
2932991000	- - - 피페로날부톡사이드	0	EIF	
2932992000	- - - 유칼립톨	0	EIF	
2932994000	- - - 카보퓨란(ISO)	0	EIF	
2932999000	- - - 기타	0	EIF	
2933111000	- - - 페나존(INN)(안티피린)	0	EIF	
2933113000	- - - 디피로나(4-메틸아미노-1,5 디메틸-2-페닐-3-피라조론 메탄술폰산 나트륨)	0	EIF	
2933119000	- - - 기타	0	EIF	
2933191000	- - - 페닐부타존(INN)	0	EIF	
2933199000	- - - 기타	0	EIF	
2933210000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0	EIF	
2933290000	- - 기타	0	EIF	
2933310000	- - 피리딘과 그 염	0	EIF	
2933320000	- - 피페리딘과 그 염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33331000	- - - 브로마제팜 (INN)	0	EIF	
2933332000	- - - 펜타닐 (INN)	0	EIF	
2933333000	- - - 페티딘 (INN)	9	EIF	
2933334000	- - - 페티딘 (INN) 제조중간체 에이; (4-시아노-1-메틸-4-페닐-피페리딘 또는 1-메틸-4-페닐-4-시아노피페리딘)	9	EIF	
2933335000	- - - 알펜타닐 (INN), 아닐레리딘 (INN), 베지트라마이드 (INN), 디페녹신 (INN), 디펜옥실레이트 (INN), 디피파논 (INN), 케토베미돈 (INN), 메틸페니데이트 (INN), 펜타조신 (INN), 펜사이클리딘 (INN) (PCP), 페노페리딘 (INN), 피프라드롤 (INN), 피리트라미드 (INN), 프로피람 (INN) 및 트리메페리딘 (INN)	9	EIF	
2933339000	- - - 기타	0	EIF	
2933391100	- - - - 피클로람 (ISO)	0	EIF	
2933391200	- - - - 옴	0	EIF	
2933392000	- - - 파라콰트디클로라이드	0	EIF	
2933393000	- - - 이소니코틴산 하이드라지드	0	EIF	
2933396000	- -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9	EIF	
2933397000	- - - 퀴뉴클리딘-3-올	9	EIF	
2933399000	- - - 기타	0	EIF	
2933410000	- - 레보파놀 (INN) 및 그 염	0	EIF	
2933491000	- - - 6-에톡시-1,2-디히드로-2,2,4-트리메틸퀴놀린 (에톡시퀸)	0	EIF	
2933499000	- - - 기타	0	EIF	
2933520000	- - 말로닐우레아 (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EIF	
2933531000	- - - 페노바르비탈 (INN)	0	EIF	
2933532000	- - - 아로바르비탈 (INN), 아모바르비탈 (INN), 바르비탈 (INN), 부탈비탈 (INN) 및 부토바르비탈 (INN)	0	EIF	
2933533000	- - - 싸이클로바르비탈 (INN), 메틸페노바르비탈 (INN) 및 펜토바르비탈 (INN)	0	EIF	
2933534000	- - - 섹부타바르비탈 (INN), 세코바르비탈 (INN) 및 비날비탈 (INN)	0	EIF	
2933539000	- - - 기타	0	EIF	
2933540000	- - 말로닐우레아 (바르비투르산)의 기타 유도체; 그 염	0	EIF	
2933551000	- - - 로프라졸람 (INN)	9	EIF	
2933552000	- - - 메크로과론 (INN)	9	EIF	
2933553000	- - - 메타과론 (INN)	9	EIF	
2933554000	- - - 지페프롤 (INN)	9	EIF	
2933559000	- - - 기타	0	EIF	
2933591000	- - - 피페라진 (디에틸렌디아민)과 2,5-디메틸피페라진 (디메틸-2,5-디에틸렌디아민)	0	EIF	
2933592000	- - - 암프로륨 (INN)	0	EIF	
2933593000	- - - 기타 피페라진 유도체	0	EIF	
2933594000	- - - 티오펜달나트륨 (INN)	0	EIF	
2933595000	- - - 시프로플록사신 (INN)과 그 염	0	EIF	
2933596000	- - - 히드록시진 (INN)	0	EIF	
2933599000	- - - 기타	0	EIF	
2933610000	- - 멜라민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33691000	- - - 아트라진 (ISO)	0	EIF	
2933699000	- - - 기타	0	EIF	
2933710000	- - 6-핵산락탐 (에프시론-카프로락탐)	9	EIF	
2933720000	- - 클로바잠 (INN)과 메티프리론 (INN)	0	EIF	
2933791000	- - - 프리미돈 (INN)	0	EIF	
2933799000	- - - 기타	0	EIF	
2933911000	- - - 알프라졸람 (INN)	0	EIF	
2933912000	- - - 디아제팜 (INN)	0	EIF	
2933913000	- - - 로라제팜 (INN)	9	EIF	
2933914000	- - - 트리아졸람 (INN)	9	EIF	
2933915000	- - - 카마제팜 (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INN), 클로나제팜 (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 (INN), 에스타졸람 (INN), 플루디아제팜 (INN), 플루니트라제팜 (INN)	0	EIF	
2933916000	- - - 플루라제팜 (INN), 할라제팜 (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 (INN), 로르메타제팜 (INN), 마진돌 (INN), 메다제팜 (INN), 미다졸람 (INN) 및 니메타제팜 (INN)	0	EIF	
2933917000	- - - 니트라제팜 (DCI), 노르다제팜 (DCI), 옥사제팜 (DCI), 피나제팜 (DCI), 프라제팜 (DCI), 피로발레로나 (DCI), 테마제팜 (DCI) 및 테트라제팜 (DCI)	9	EIF	
2933919000	- - - 기타	0	EIF	
2933991000	- - - 파르벤다졸 (INN)	0	EIF	
2933992000	- - - 알벤다졸 (INN)	0	EIF	
2933999010	- - - - 트리아디메폰	9	EIF	
2933999090	- - - - 기타	0	EIF	
2934101000	- - 티아벤다졸 (ISO)	0	EIF	
2934109000	- - 기타	0	EIF	
2934200010	- - 머캅토펜조티아졸	0	EIF	
2934200090	- - 기타	0	EIF	
2934300010	- - 페노티아진	9	EIF	
2934300090	- - 기타	0	EIF	
2934911000	- - - - - 아미노렉스 (INN), 브로티졸람 (INN), 클로티아제팜 (INN), 클록사졸람 (INN) 및 덱스트로모라마이드 (INN)	9	EIF	
2934912000	- - - 할록사졸람 (INN), 케타졸람 (INN), 메소카브 (INN), 옥사졸람 (INN) 및 페몰린 (INN)	9	EIF	
2934913000	- - - 펜메트라진 (INN), 펜디메트라진 (INN) 및 서펜타닐 (INN)	9	EIF	
2934919000	- - - 기타	0	EIF	
2934991000	- - - 술톤과 술탐	0	EIF	
2934992000	- - - (6-아미노페니실란)산	0	EIF	
2934993000	- - - 핵산과 그들의 염	0	EIF	
2934994000	- - - 레바미솔 (INN)	0	EIF	
2934999000	- - - 기타	0	EIF	
2935001000	- 설피라이드 (INN)	0	EIF	
2935009000	- 기타	0	EIF	
2936210000	- -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0	EIF	
2936220000	- -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0	EIF	
2936230000	- -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36240000	- -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0	EIF	
2936250000	- -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0	EIF	
2936260000	- -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0	EIF	
2936270000	- - 비타민 C와 그 유도체	0	EIF	
2936280000	- -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0	EIF	
2936291000	- - - 비타민 B9과 그들의 유도체	0	EIF	
2936292000	- - - 비타민 K와 그 유도체	0	EIF	
2936293000	- - - 비타민 PP와 그 유도체	0	EIF	
2936299000	- - -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0	EIF	
2936900000	- 기타(천연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EIF	
2937110000	-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EIF	
2937120000	- - 인슐린과 그 염	0	EIF	
2937191000	- - - 옥시토신(INN)	0	EIF	
2937199000	- - - 기타	0	EIF	
2937211000	- - - 히드로코르티손	0	EIF	
2937212000	- - - 프레드니손(INN) (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EIF	
2937219010	- - -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0	EIF	
2937219020	- - - - 코르티손	0	EIF	
2937221000	- - - 베타메타손(INN)	0	EIF	
2937222000	- - - 텍사메타손(INN)	0	EIF	
2937223000	- - - 트리암시놀론(INN)	0	EIF	
2937224000	- - - 플루오시노나이드(INN)	0	EIF	
2937229010	- - - - 히드로코르티손의 것	0	EIF	
2937229090	- - - - 기타	0	EIF	
2937231000	- - - 프로게스테론(INN)과 그 유도체	0	EIF	
2937232000	- - - 에스트리올(폴리쿨린하이드레이트)	9	EIF	
2937239000	- - - 기타	0	EIF	
2937291000	- - - 사이프로테론(INN)	0	EIF	
2937292000	- - - 피나스테라이드(INN)	0	EIF	
2937299010	- - - - 코르티코스테론과 그 에스테르	0	EIF	
2937299020	- - - - 프레그네논(INN)과 에폭시프레그네논	0	EIF	
2937299030	- - - - 히드로코르티손의 에스테르와 염	0	EIF	
2937299040	- - - - 디옥시코르티코스테론아세테이트(DCIM); 클로로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DCIM)	9	EIF	
2937299090	- - - - 기타	0	EIF	
2937310000	- - 에피네프린	0	EIF	
2937390000	- - 기타	0	EIF	
2937400000	- 아미노산 유도체	0	EIF	
2937500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EIF	
2937900000	- 기타	0	EIF	
2938100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	EIF	
2938902000	- - 사포닌	0	EIF	
2938909000	- - 기타	0	EIF	
2939111000	- - - 양귀비 줄기 농축물과 그 염	0	EIF	
2939112000	- - - 코데인과 그 염	0	EIF	
2939113000	- - - 디히드로코데인(INN)과 그 염	0	EIF	
2939114000	- - - 헤로인과 그 염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39115000	- - - 모르핀과 그 염	0	EIF	
2939116000	- - - 버프레노핀(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폰(INN); 그 염	0	EIF	
2939117000	- - - 폴코딘(INN), 니코모르핀(DCI),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폰(INN), 테바콘(INN) 및 테바인; 그 염	0	EIF	
2939191000	- - - 파파버린, 그 염과 유도체	0	EIF	
2939199000	- - - 기타	0	EIF	
293920000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 염	0	EIF	
2939300000	- 카페인과 그들의 염	0	EIF	
2939410000	- - 에페드린과 그 염	0	EIF	
29394200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EIF	
2939430000	- - 캐틴(INN)과 그 염	0	EIF	
2939492000	- - - 디엘-노르에페드린(페닐프로판올아민)과 그 염	0	EIF	
2939499000	- - - 기타	0	EIF	
29395100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EIF	
2939590000	- - 기타	0	EIF	
29396100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EIF	
2939620000	- -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EIF	
29396300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9	EIF	
2939690000	- - 기타	0	EIF	
2939911000	- - - 코카인; 그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9	EIF	
2939912000	- - - 에크고닌; 그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9	EIF	
2939914010	- - - - 메탐페타민(INN)	9	EIF	
2939914020	- - - -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0	EIF	
2939915010	- - -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9	EIF	
2939915020	- - - -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0	EIF	
2939916010	- - - - 레보메탐페타민	9	EIF	
2939916020	- - - -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0	EIF	
2939991000	- - - 스코폴아민, 그 염 및 유도체	0	EIF	
2939999000	- - - 기타	0	EIF	
29400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 젖당, 엿당, 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당아세탈과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2937호, 제2938호 또는 제2939호의 제품은 제외한다)	0	EIF	
2941101000	- - 암피실린(INN)과 그 염	0	EIF	
2941102000	- - 아목시실린(INN)과 그 염	0	EIF	
2941103000	- - 옥사실린(INN), 클록사실린(INN), 디클록사실린과 그 염	0	EIF	
2941104000	- - 암피실린, 아목시실린과 디클록사실린 유도체	0	EIF	
2941109000	- - 기타	0	EIF	
2941200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 염	0	EIF	
2941301000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ISO)(INN)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302000	-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309000	- - 기타	0	EIF	
2941400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5000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901000	- - 네오마이신(INN)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902000	- - 액티노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903000	- - 바시트라신(INN)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2941904000	- - 그라미시딘(INN)과 그 유도체; 그 염	0	EIF	
2941905000	- - 티로트리신(INN)	0	EIF	
2941906010	- - - 세파렉신(INN)	0	EIF	
2941906090	- - - 기타	0	EIF	
2941909000	- - 기타	0	EIF	
2942000000	기타 유기 화합물	0	EIF	
3001201000	- - 간의 것	9	EIF	
3001202000	- - 담즙의 것	9	EIF	
3001209000	- - 기타	9	EIF	
3001901000	- - 헤파린과 그 염	9	EIF	
3001909000	- - 기타	9	EIF	
3002101100	- - - 항사독제	9	5	
3002101200	- - - 항디프테리아제	9	5	
3002101300	- - - 항파상풍제	9	5	
3002101900	- - - 기타	9	5	
3002103100	- - - 인간의 혈장 및 기타 인간의 혈액분획물	9	5	
3002103200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9	5	
3002103300	-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9	EIF	
3002103900	- - - 기타	9	EIF	
3002201000	- - 소아마비 백신	9	5	
3002202000	- - 광견병 백신	9	5	
3002203000	- - 홍역 백신	9	5	
3002209000	- - 기타	9	5	
3002301000	- - 항아프타제	9	5	
3002309000	- - 기타	9	5	
3002901000	- - 미생물의 배양체	9	5	
3002902000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9	5	
3002903000	- - 인혈	9	EIF	
3002904000	- - 색소톡신	9	EIF	
3002905000	- - 리신	9	EIF	
3002909000	- - 기타	9	EIF	
3003100000	- 페니실린 또는 그 유도체(페니실란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9	10	
3003200000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9	10	
30033100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9	10	
3003390000	- - 기타	9	10	
3003400000	-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10	
3003901000	- - 인체용의 것	9	10	
3003902000	- - 수의용의 것	9	10	
3004101000	- - 인체용의 것	9	10	
3004102000	- - 수의용의 것	9	10	
3004201100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9	10	
3004201900	- - - 기타	9	10	
3004202000	- - 수의용의 것	9	10	
30043100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004321100	-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9	10	
3004321900	- - - - 기타	9	10	
3004322000	- - - 수의용의 것	9	10	
3004391100	-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9	10	
3004391900	- - - - 기타	9	10	
3004392000	- - - 수의용의 것	9	10	
3004401100	- - - 마취제	9	10	
3004401200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9	10	
3004401900	- - - 기타	9	10	
3004402000	- - 수의용의 것	9	10	
3004501000	- - 인체용의 것	9	10	
3004502000	- - 수의용의 것	9	10	
3004901000	- - 인간 혈장의 합성 대용물	9	5	
3004902100	- - - 마취제	9	10	
3004902200	- - - 니트로글리세린이 침투된 파치	9	10	
3004902300	- - - 비경구적 수유용의 것	9	10	
3004902400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9	10	
3004902900	- - - 기타	9	10	
3004903000	- - 수의용 기타 의약품	9	10	
3005101000	- - 접착성 테이프 및 접착성 붕대	9	10	
3005109000	- - 기타	9	10	
3005901000	- - 탈지면	9	10	
3005902000	- - 붕대	9	10	
3005903100	- - - 석고 또는 기타 물질(골절 치료에 적절한 것에 한한다)이 침투된 것	9	10	
3005903900	- - - 기타	9	10	
3005909000	- - 기타	9	10	
3006101000	- - 살균한 외과용 컷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9	10	
3006102000	- - 살균한 접착제(외과적 상처 봉합용의 것에 한한다)	9	10	
3006109000	- - 기타	9	EIF	
3006200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9	5	
3006301000	- - 바륨 황산염을 기제로 한 조영제	9	5	
3006302000	- - 기타 조영제	9	5	
3006303000	- - 진단용 시약	9	5	
3006401000	- -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9	5	
3006402000	- - 뼈형성용 시멘트	9	5	
3006500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9	5	
3006600000	- 호르몬, 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 화학조제품	9	5	
3006700000	- 겔 조제품(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인체용 또는 수의용약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것에 한한다)	9	5	
3006910000	-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9	5	
3006920000	- - 폐의약품	9	5	
3101001000	- 해조 구아노	0	EIF	
3101009000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102101000	- - 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5퍼센트 이상 46퍼센트 이하인 것(비료 품질)	0	EIF	
3102109000	- - 기타	0	EIF	
3102210000	- - 황산암모늄	0	EIF	
3102290000	- - 기타	0	EIF	
3102300010	- - 농업용의 것	0	EIF	
3102300020	- - 채광용의 것(안포급)	0	EIF	
3102300090	- - 기타	0	EIF	
3102400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0	EIF	
3102500000	- 질산나트륨	0	EIF	
3102600000	-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0	EIF	
31028000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0	EIF	
3102901000	- -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혼합물	0	EIF	
3102909000	- - 기타	0	EIF	
3103100000	- 과인산석회	0	EIF	
3103900010	- - 염기성 슬래그	0	EIF	
3103900090	- - 기타	0	EIF	
3104201000	- - 칼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2퍼센트 이상 62퍼센트 이하인 것(산화칼륨으로 표시한다)(비료 품질)	0	EIF	
3104209000	- - 기타	0	EIF	
3104300000	- 황산칼륨	0	EIF	
3104901000	- - 황산마그네슘과 황산칼륨	0	EIF	
3104909010	- - - 광로석, 칼리 암염 및 기타 조상의 천연 칼륨염	0	EIF	
3104909090	- - - 기타	0	EIF	
3105100000	- 제31류의 제품[정상(錠像)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총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0	EIF	
3105200000	- 3종의 비료요소 질소, 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0	EIF	
3105300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EIF	
3105400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	EIF	
31055100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것	0	EIF	
3105590000	- - 기타	0	EIF	
3105600000	- 2종의 비료요소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0	EIF	
3105901000	- - 질산칼륨나트륨(질산칼륨)	0	EIF	
3105902000	- - 2종의 비료 물질(인과 칼륨)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	0	EIF	
3105909000	- - 기타	0	EIF	
3201100000	- 퀘브라췌 엑스	0	EIF	
3201200000	- 왓틀 엑스	0	EIF	
3201902000	- - 퀘브라췌 유연제	0	EIF	
3201903000	- - 참나무의 엑스 또는 밤나무의 엑스	0	EIF	
3201909010	- - - 맹그로브 엑스	0	EIF	
3201909090	- - - 기타	9	EIF	
3202100000	- 합성유기유연제	9	5	
3202901000	- - 유연전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202909000	- - 기타	9	5	
3203001100	- - 로그우드의 것	0	EIF	
3203001200	- - 엽록소	0	EIF	
3203001300	- - 천연인디고	0	EIF	
3203001400	- - 안나토의 것	9	5	
3203001500	- - 마리골드(크산토필)의 것	9	5	
3203001600	- - 퍼플 콘(안토시아닌)의 것	9	5	
3203001700	- - 커큐민의 것	9	5	
3203001900	- - 기타	9	5	
3203002100	- - 코치니엘 카민	9	5	
3203002900	- - 기타	0	EIF	
3204110000	- - 분산성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20000	- -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30000	- - 염기성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40000	- - 직접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51000	- - - 합성인디고	0	EIF	
3204159000	- - - 기타	0	EIF	
3204160000	- - 반응성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70000	- - 안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91000	- - - 합성 카로티노이드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4199000	- - - 기타	0	EIF	
3204200000	- 합성유기형광증백제	0	EIF	
3204900000	- 기타	0	EIF	
3205000000	레이크안료; 레이크안료를 기제로 한 조제품(제32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9	10	
3206110000	- -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3206190000	- - 기타	0	EIF	
3206200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와 조제품	9	10	
3206410000	- -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EIF	
3206420000	- -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 및 기타 안료와 조제품	0	EIF	
3206491000	- - - 플라스틱, 고무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한 기타 안료의 농축 분산물	9	5	
3206492000	- - - 카드뮴 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조제품	0	EIF	
3206493000	- - - 육시안산철염(페로시아나이드 또는 페리시아나이드)을 기제로 한 안료 및 조제품	9	5	
3206499100	- - - - 광물성블랙	0	EIF	
3206499900	- - - - 기타	0	EIF	
3206500000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0	EIF	
3207100000	-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EIF	
3207201000	- - 법랑	0	EIF	
3207209000	- - 기타	0	EIF	
3207300000	-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9	10	
3207401000	- - 유리프리트	0	EIF	
3207409000	- - 기타	0	EIF	
3208100000	-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20820000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9	10	
3208900000	- 기타	9	10	
320910000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9	10	
3209900000	- 기타	9	10	
3210001000	- 부식과 결정을 막는 해양 페인트	9	10	
3210002000	- 피혁의 완성가공용 수성안료	0	EIF	
3210009000	- 기타	9	1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9	10	
3212100000	- 스탬프용 박	0	EIF	
3212901000	- -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과 플레이크를 포함하며,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으로, 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EIF	
3212902000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9	10	
3213101000	- - 수성물감(수채화)	9	10	
3213109000	- - 기타	9	10	
3213900000	- 기타	9	10	
3214101000	- - 퍼티, 수지 시멘트 및 기타 퍼티	9	10	
3214102000	- - 그림용 플라스틱	9	10	
3214900000	- 기타	9	10	
3215110000	- - 흑색의 것	9	10	
3215190000	- - 기타	9	10	
3215901000	- - 젤라틴판 또는 스텐실 복사기용의 것	9	10	
3215902000	- - 볼펜용의 것	0	EIF	
3215909000	- - 기타	9	10	
3301120000	- - 오렌지의 것	0	EIF	
3301130000	- - 레몬의 것	9	EIF	
3301191000	- - - 라임의 것	0	EIF	
3301199000	- - - 기타	0	EIF	
3301240000	- - 페퍼민트(멘타 피페리타)의 것	0	EIF	
3301250000	- - 기타 민트류의 것	0	EIF	
3301291000	- - - 아니스의 것	0	EIF	
3301292000	- - - 유칼립투스의 것	0	EIF	
3301293000	- - - 라벤더의 것	0	EIF	
3301299000	- - - 기타	0	EIF	
3301300000	- 레지노이드	0	EIF	
3301901000	- - 정유의 방향족 애크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크어스 솔루션	0	EIF	
3301902000	- - 추출한 올레오레진	9	EIF	
3301909000	- - 기타	0	EIF	
3302101000	- - 알코올 농도가 전용량의 0.5퍼센트 초과인 것	9	10	
3302109000	- - 기타	9	10	
3302900000	- 기타	9	10	
3303000000	향수 및 화장수	9	10	
3304100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9	10	
3304200000	- 눈화장용 제품류	9	10	
3304300000	- 매니큐어용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9	10	
3304910000	- - 파우더(압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10	
3304990000	- - 기타	9	10	
3305100000	- 샴푸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305200000	-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9	10	
3305300000	- 헤어 래커	9	10	
3305900000	- 기타	9	10	
3306100000	- 치약	9	10	
3306200000	-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	9	5	
3306900000	- 기타	9	10	
3307100000	- 프리셰이브, 셰이빙 또는 애프터셰이브 제품류	9	10	
3307200000	- 인체용탈취제 및 내발한제	9	10	
3307300000	-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9	10	
3307410000	- -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9	10	
3307490000	- - 기타	9	10	
3307901000	- - 콘택트 렌즈용 또는 의안용 액	9	5	
3307909000	- - 기타	9	10	
3401110000	-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9	10	
3401191000	- - - 봉상, 케이크상, 주형상의 것	9	10	
3401199000	- - - 기타	9	10	
3401200000	- 기타 형상의 비누	9	10	
3401300000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10	
3402111000	- - - 지방성 알코올에서 얻어진 황산염과 술폰산염	9	10	
3402119000	- - - 기타	9	10	
3402121000	- - - 지방성 아민의 염	9	10	
3402129000	- - - 기타	9	10	
3402131000	- - - 산화에틸렌과 11개 이상의 탄소의 선형 알코올의 혼합물을 농축해서 얻은 것	9	10	
3402139000	- - - 기타(비이온성의 것에 한한다)	9	10	
3402191000	- - - 알킬베타인 또는 술포베타인 단백질	9	5	
3402199000	- - - 기타	9	10	
3402200000	- 소매용 조제품	9	10	
3402901000	- - 섬유 산업용 세제	9	10	
3402909100	- - - 노닐 옥시벤존 술폰산 나트륨을 기제로 한 조제계면활성제	9	10	
3402909900	- - - 기타	9	10	
3403110000	- - 방직용 섬유재료, 가죽,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	EIF	
3403190000	- - 기타	0	EIF	
3403910000	- - 방직용 섬유재료, 가죽,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	EIF	
3403990000	- - 기타	0	EIF	
3404200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	EIF	
3404903000	- -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의 것	0	EIF	
3404904010	- - - 인조의 것	0	EIF	
3404904020	- - - 조제된 것	9	10	
3404909010	- - - 인조의 것	0	EIF	
3404909020	- - - 조제된 것	9	10	
3405100000	- 신발 또는 가죽용 광택제,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9	10	
3405200000	- 목제가구, 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 유지용 광택제,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405300000	- 자동차 차체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 광택제는 제외한다)	9	10	
3405400000	- 조제연마페이스트, 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9	10	
3405900000	- 기타	9	10	
3406000000	양초, 테이퍼 및 이와 유사한 것	9	7	
3407001000	- 조형용 페이스트	9	7	
3407002000	-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	9	3	
3407009000	-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9	5	
3501100000	- 카세인	0	EIF	
3501901000	- - 카세인 글루	9	EIF	
3501909000	- - 기타	0	EIF	
3502110000	- - 건조한 것	9	5	
3502190000	- - 기타	9	5	
3502200000	- 밀크알부민(물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9	EIF	
3502901000	- - 알부민	9	5	
3502909000	- -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0	EIF	
3503001000	- 젤라틴과 그 유도체	9	EIF	
3503002000	- 아이징글라스, 기타 동물성 글루	0	EIF	
3504001000	- 펄프톤과 그들의 유도체	0	EIF	
3504009000	- 기타	0	EIF	
3505100000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9	12	부속서 2라 참조
3505200000	- 글루	9	5	
3506100000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소매용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10	
3506910000	- - 제3901호에서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9	10	
3506990000	- - 기타	9	10	
3507100000	- 레네트와 그 농축물	0	EIF	
3507901300	- - - 채장효소	0	EIF	
3507901900	- - - 기타	0	EIF	
3507903000	- - 파파인	0	EIF	
3507904000	- - 기타 효소와 그들의 농축물	0	EIF	
3507905000	- - 고기 연화용 효소 조제품	9	EIF	
3507906000	- - 음료 정제용 효소 조제품	0	EIF	
3507909000	- - 기타	0	EIF	
3601000000	화약	9	10	
3602001100	- - 다이나마이트	9	7	
3602001900	- - 기타	9	10	
3602002000	- 질산암모늄을 기제로 한 것	9	10	
3602009000	- 기타	9	5	
3603001000	- 도화선	9	10	
3603002000	- 도폭선	9	7	
3603003000	- 뇌관(퍼커션 캡)	9	10	
3603004000	- 뇌관(데토네이팅 캡)	9	7	
3603005000	- 점화기	9	7	
3603006000	- 전기뇌관	9	7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604100000	- 불꽃제품	9	5	
3604900000	- 기타	9	5	
360500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9	10	
3606100000	- 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9	5	
3606900010	- - 페로세륨 및 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	0	EIF	
3606900090	- - 기타	9	EIF	
3701100000	- 엑스선용의 것	9	EIF	
3701200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9	EIF	
3701301000	- - 인쇄제판용 금속 플레이트	0	EIF	
3701309000	- - 기타	0	EIF	
3701910000	- -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0	EIF	
3701990000	- - 기타	0	EIF	
3702100000	- 엑스선용의 것	9	EIF	
3702310000	- -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9	EIF	
3702320000	- -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전으로 된 것에 한한다)	9	EIF	
3702390000	- - 기타	9	EIF	
3702410000	- - 폭이 610밀리미터 초과이고, 길이가 200미터 초과인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9	EIF	
3702420000	- - 폭이 610밀리미터 초과이고, 길이가 200미터 초과인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은 제외한다)	9	EIF	
3702430000	- - 폭이 610밀리미터 초과이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9	EIF	
3702440000	-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천연색 사진용 기타 필름(폴리크롬)	9	EIF	
370251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 이하인 것	9	EIF	
370252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 초과인 것	9	EIF	
370253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슬라이드용의 것	9	EIF	
370254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9	EIF	
370255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미터 초과인 것	9	EIF	
3702560000	- - 폭이 35밀리미터 초과인 것	9	EIF	
370291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9	EIF	
370293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9	EIF	
370294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미터 초과인 것	9	EIF	
3702950000	- - 폭이 35밀리미터 초과인 것	9	EIF	
3703100000	- 폭이 610밀리미터 초과인 롤상의 것	9	EIF	
3703200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9	EIF	
3703900000	- 기타	9	EIF	
3704000000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쇄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EIF	
3705100000	- 오프셋 복사용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705900000	- 기타	9	EIF	
370610000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9	EIF	
3706900000	- 기타	9	EIF	
3707100000	- 감광유제	9	EIF	
3707900000	- 기타	9	EIF	
3801100000	- 인조흑연	0	EIF	
3801200000	-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0	EIF	
3801300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0	EIF	
3801900000	- 기타	0	EIF	
3802100000	- 활성탄	0	EIF	
3802901000	- - 규조토(예: 키이젤거어, 트리폴라이트, 다이아토마이트)	0	EIF	
3802902000	- -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0	EIF	
3802909000	- - 기타	9	5	
38030000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0	EIF	
3804001000	- 아황산 리그닌	0	EIF	
3804009000	- 기타	9	5	
3805100000	- 검테레빈유,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0	EIF	
3805901000	- - 파인유	0	EIF	
3805909000	- - 기타	0	EIF	
3806100000	- 로진과 수지산	0	EIF	
3806200000	-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 또는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9	5	
3806300000	- 에스테르 검	0	EIF	
3806903000	- -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0	EIF	
3806904000	- - 런검	9	5	
3806909000	- - 기타	0	EIF	
3807000000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0	EIF	
3808500010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살충제	0	EIF	
3808500020	- - 기타 살충제	0	EIF	
3808500090	- - 기타	0	EIF	
3808911100	-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의 기타 합성 대용물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1200	- - - - 브롬화메틸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1900	- - - - 기타	0	EIF	
3808919100	- - - - 피레트룸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9200	-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의 기타 합성 대용물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9300	- - - - 카보퓨란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9400	- - - - 디메토에이트를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9910	- - - - - 브롬화메틸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08919990	- - - - - 기타	0	EIF	
3808921000	-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0	EIF	
3808929100	- - - - 구리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808929200	- - - - 파라조포스 또는 부타클러를 기제로 한 것 또는 아라클러의 것	0	EIF	
3808929900	- - - - 기타	0	EIF	
3808931000	-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0	EIF	
3808939000	- - - 기타	0	EIF	
3808941000	-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0	EIF	
3808949000	- - - 기타	0	EIF	
3808991000	-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0	EIF	
3808999000	- - - 기타	0	EIF	
3809100000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9	5	
3809910000	- -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9	10	
3809920000	- -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9	10	
3809930000	-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9	10	
3810101000	-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0	EIF	
3810102000	- - 납붙임, 땀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주석, 납 또는 안티모니 합금을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0	EIF	
3810109000	- - 기타	0	EIF	
3810901000	- - 납붙임, 땀질 또는 용접용 용제와 기타 조제품	0	EIF	
3810902000	- -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0	EIF	
3811110000	- - 납 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0	EIF	
3811190000	- - 기타	0	EIF	
3811211000	- - - 점도향상제(기타 첨가제와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3811212000	- - - 세제 및 분산제(기타 첨가제와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점도향상제를 제외한다)	0	EIF	
3811219000	- - - 기타	9	5	
3811290000	- - 기타	9	5	
3811900000	- 기타	0	EIF	
3812100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EIF	
3812200000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0	EIF	
3812301000	- - 산화방지 조제품	0	EIF	
3812309000	- - 기타	9	3	
3813001100	-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를 기제로 한 것(서로 다른 2종 이상의 할로겐 또는 이 제품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9	3	
3813001900	- - 기타	9	3	
3813002000	- 장전된 소화탄	9	5	
3814000000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9	5	
38151100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0	EIF	
38151200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0	EIF	
3815191000	- - - 활성물질로서 티타늄 또는 그 화합물의 것	0	EIF	
3815199000	- - - 기타	0	EIF	
3815900000	- 기타	0	EIF	
3816000000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817001000	- 도데실벤젠	0	EIF	
3817002000	- 알키나프탈렌의 혼합물	0	EIF	
3817009010	- - 트리데실벤젠	9	EIF	
3817009090	- - 기타	0	EIF	
381800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0	EIF	
38190000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10	
38200000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0	EIF	
3821000010	-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것	0	EIF	
3821000020	- 식물,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것	0	EIF	
3822003000	- 인증표준물질	0	EIF	
3822009000	- 기타	0	EIF	
3823110000	- - 스테아린산	9	EIF	
3823120000	- - 올레인산	9	EIF	
3823130000	- - 톨유 지방산	9	EIF	
3823190000	- - 기타	0	EIF	
3823701000	- - 라우릴 알코올	0	EIF	
3823702000	- - 세틸 알코올	0	EIF	
3823703000	- - 스테아릴 알코올	0	EIF	
3823709000	- - 기타	0	EIF	
3824100000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3824300000	-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3824400000	-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9	EIF	
3824500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9	EIF	
3824600000	-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3824710010	- - - 퍼클로로플루오르카본을 함유하는 것	9	EIF	
3824710090	- - - 기타	0	EIF	
38247200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9	EIF	
3824730000	-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	EIF	
3824740000	-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38247500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EIF	
38247600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	EIF	
3824770000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824780000	-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3824790010	- - - 불소 및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된 비환식탄화수소를 함유하는 것	9	EIF	
3824790020	- - - 기타(서로 다른 2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비환식 탄화수소의 퍼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9	EIF	
3824790090	- - - 기타	0	EIF	
38248100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하는 것	0	EIF	
38248200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	EIF	
38248300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하는 것	0	EIF	
3824901000	- - 석유 술포네이트	0	EIF	
3824902100	- - - 클로로파라핀	0	EIF	
3824902200	- - - 분자량이 매우 낮은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0	EIF	
3824903100	- - - 스케일방지 조제품	0	EIF	
3824903200	- - - 양조조제품, 액체 정제용 조제품	0	EIF	
3824904000	- - 퓨전 원뿔 점화 테스트; 소다석회; 착색된 실리카겔; 알칼리 철 산화물; 그래픽용 젤라틴을 기재로 한 페이스트	0	EIF	
3824905000	- - 나프텐산, 그 수불용성 염 및 그 에스테르	9	5	
3824906000	- - 웰보링 유체(로도스)용의 조제품	0	EIF	
3824907000	- - 미네랄 농축용 조제품(크산틴산염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0	EIF	
3824908000	- - 동화촉진제; 황산나트륨과 크롬산나트륨의 혼합물	0	EIF	
3824909100	- - - 기타(마네브, 지네브, 만코제브)	0	EIF	
3824909200	- - - 점착성이 있는 페라이트(분상 또는 입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3824909300	- - - 이온교환체	0	EIF	
3824909400	- - - 복합경화제	0	EIF	
3824909500	- - - P ₂ O ₅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4퍼센트 이하인 분리하지 아니한 인산(농축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382490960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의 수정액	9	EIF	
3824909700	- - - 프로피네브	0	EIF	
3824909800	- - - 축전지판 제조용 납 산화물과 금속 납 조제품(회색 산화물, 검은색 산화물)	0	EIF	
3824909911	- - -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EIF	
3824909912	- - -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13	- - - -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824909914	- -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15	- - - - -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20	- - - -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으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30	- - - -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으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41	- -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으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42	- -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으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51	- - - - -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으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9	5	
3824909959	- - - - - 기타	0	EIF	
3824909960	- - - -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이 결합되어 있고 그 이상 탄소원자가 결합되지 아니한 인 원자를 함유하는 화합품으로 주로 구성된 기타 혼합물	0	EIF	
3824909971	- - - - - 불소 및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된 비환식 탄화수소를 함유하는 것	9	5	
3824909979	- - - - - 기타	9	5	
3824909991	- - - - - 퓨젤유; 디펠유	0	EIF	
3824909999	- - - - - 기타	0	EIF	
3825100000	- 생활폐기물	9	3	
3825200000	- 하수 찌꺼기	9	3	
3825300000	- 임상 폐기물	9	3	
3825410000	- - 할로겐화된 것	9	3	
3825490000	- - 기타	9	3	
3825500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9	3	
38256100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9	3	
3825690000	- - 기타	9	3	
3825900000	- 기타	9	3	
3901100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EIF	
3901200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901300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0	EIF	
3901901000	- - 에틸렌-기타 올레핀 공중합체	0	EIF	
3901909000	- - 기타	0	EIF	
3902100000	- 폴리프로필렌	0	EIF	
3902200000	- 폴리이소부틸렌	0	EIF	
3902300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0	EIF	
3902900000	- 기타	0	EIF	
3903110000	- - 발포성의 것	0	EIF	
3903190000	- - 기타	0	EIF	
390320000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0	EIF	
3903300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0	EIF	
3903900000	- 기타	0	EIF	
3904101000	- - 유제로 중합하여 얻은 것	0	EIF	
3904102000	- - 현탁액으로 중합하여 얻은 것	0	EIF	
3904109000	- - 기타	0	EIF	
3904210000	-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9	10	
3904220000	- - 가소화한 것	0	EIF	
3904301000	- - 어떠한 기타 물질과도 혼합되지 아니한 것	0	EIF	
3904309000	- - 기타	0	EIF	
3904400000	-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0	EIF	
390450000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0	EIF	
3904610000	-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0	EIF	
3904690000	- - 기타	0	EIF	
3904900000	- 기타	0	EIF	
3905120000	- - 물에 분산된 것	9	10	
3905190000	- - 기타	0	EIF	
3905210000	- - 물에 분산된 것	9	10	
3905290000	- - 기타	9	10	
39053000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3905910000	- - 공중합체	0	EIF	
3905991000	- - - 폴리비닐부티랄	0	EIF	
3905992000	- - - 폴리비닐피롤리돈	0	EIF	
3905999000	- - - 기타	0	EIF	
3906100000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0	EIF	
3906901000	- - 폴리아크릴로니트릴	0	EIF	
3906902100	- - - 폴리아크릴산 나트륨(1퍼센트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흡수력이 자체 중량의 20배 이상인 것에 한한다)	9	EIF	
3906902900	- - - 기타	9	EIF	
3906909000	- - 기타	9	5	
3907100000	- 폴리아세탈수지	0	EIF	
3907201000	- - 폴리에틸렌글리콜	0	EIF	
3907202000	-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0	EIF	
3907203000	- - 산화프로필렌에서 유도된 폴리에테르 폴리올	0	EIF	
3907209000	- - 기타	0	EIF	
3907301000	- - 액체의 것	0	EIF	
3907309000	- - 기타	0	EIF	
3907400000	- 폴리카보네이트	0	EIF	
3907500000	- 알키드수지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907601000	- - 이산화티타늄이 첨가된 것	0	EIF	
3907609000	- - 기타	0	EIF	
3907700000	- 폴리(락트산)	0	EIF	
3907910000	- - 불포화의 것	0	EIF	
3907990000	- - 기타	0	EIF	
3908101000	- - 폴리아미드-6(폴리카프로락탐)	0	EIF	
3908109000	- - 기타	0	EIF	
3908900000	- 기타	9	10	
3909101000	- - 몰딩용 우레아 포름알데히드	0	EIF	
3909109000	- - 기타	0	EIF	
3909201000	- -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0	EIF	
3909209000	- - 기타	0	EIF	
3909300000	- 기타 아미노수지	9	10	
3909400000	- 페놀수지	0	EIF	
3909500000	- 폴리우레탄	9	10	
3910001000	- 분산액(에멀전 또는 서스펜션) 또는 용액	0	EIF	
3910009000	- 기타	0	EIF	
3911101000	- - 쿠마론-인덴수지	0	EIF	
3911109000	- - 기타	0	EIF	
3911900000	- 기타	0	EIF	
3912110000	-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0	EIF	
3912120000	- - 가소화한 것	0	EIF	
3912201000	- - 콜로디온 및 기타 용액과 분산액(에멀전 또는 서스펜션)	0	EIF	
3912209000	- - 기타	0	EIF	
39123100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및 그 염	0	EIF	
3912390010	- -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0	EIF	
3912390020	- - - 가소화한 것	0	EIF	
3912900000	- 기타	0	EIF	
3913100000	- 알긴산, 그 염 및 에스테르	0	EIF	
3913901000	- - 염화고무	0	EIF	
3913903000	- - 천연고무의 기타 화학적 유도체	0	EIF	
3913904000	- - 기타 변성된 천연중합체	0	EIF	
3913909000	- - 기타	0	EIF	
39140000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에서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재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0	EIF	
3915100000	- 에틸렌 중합체의 것	9	3	
3915200000	- 스티렌 중합체의 것	9	3	
3915300000	- 염화비닐 중합체의 것	9	3	
39159000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9	EIF	
3916100000	- 에틸렌 중합체의 것	9	5	
3916200000	- 염화비닐 중합체의 것	9	10	
39169000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9	10	
3917100000	-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케이싱)	0	EIF	
391721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0	EIF	
3917219000	- - - 기타	0	EIF	
3917220000	- - 프로필렌 중합체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91723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0	EIF	
3917239000	- - - 기타	0	EIF	
3917291000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9	10	
3917299100	-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0	EIF	
3917299900	- - - - 기타	0	EIF	
3917310000	- - 연질의 관, 파이프 및 호스(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3917321000	- - - 인조거트(소호 제391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3917329100	-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0	EIF	
3917329900	- - - - 기타	9	10	
391733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0	EIF	
3917339000	- - - 기타	0	EIF	
391739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0	EIF	
3917399000	- - - 기타	0	EIF	
3917400000	- 연결구류	0	EIF	
3918101000	- - 바닥 깔개	0	EIF	
3918109000	- - 기타	0	EIF	
3918901000	- - 바닥 깔개	0	EIF	
3918909000	- - 기타	0	EIF	
3919100000	-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10	
3919901100	- - - 롤상의 것(폭이 1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10	
3919901900	- - - 기타	9	10	
3919909000	- - 기타	9	10	
3920100000	- 에틸렌 중합체의 것	9	10	
3920201000	- - 두께가 25미크론 이하인 메탈라이즈드 프로필렌의 것	9	10	
3920209000	- - 기타	9	10	
39203010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9	10	
3920309000	- - 기타	9	10	
3920430000	- -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이상인 것	9	10	
3920490000	- - 기타	9	10	
3920510000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의 것	9	10	
3920590000	- - 기타	9	10	
3920610000	- -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0	EIF	
3920620000	-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0	EIF	
3920630000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9	10	
3920690000	-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IF	
3920710000	-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0	EIF	
39207300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EIF	
3920790000	- -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것	0	EIF	
3920911000	- - - 안전유리 제조용의 것	9	10	
3920919000	- - - 기타	9	10	
3920920000	- - 폴리아미드의 것	0	EIF	
3920930000	- - 아미노수지의 것	0	EIF	
3920940000	- - 페놀수지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920990000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0	EIF	
3921110000	- - 스티렌 중합체의 것	9	10	
3921120000	- - 염화비닐 중합체의 것	9	10	
3921130000	- - 폴리우레탄의 것	9	10	
3921140000	-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0	EIF	
3921191000	- - -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로 구성된 슈트(프로필렌 부직포 직물로 단순 지지한 것에 한한다)	9	10	
3921199000	- - - 기타	9	10	
3921901000	- - 지의 층화와 적층에 의해 얻어진 것	9	10	
3921909000	- - 기타	9	10	
3922101000	- - 유리 섬유로 보강된 플라스틱제의 욕목통	9	10	
3922109000	- - 기타	0	EIF	
3922200000	- 변기용 시트와 커버	0	EIF	
3922900000	- 기타	0	EIF	
3923101000	- - 카세트, CD, DVD 및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되는 것	9	10	
3923109000	- - 기타	9	10	
3923210000	- - 에틸렌 중합체의 것	9	10	
3923291000	- - - 채혈백	9	5	
3923292000	- - - 비경구 용액 포장용 백	9	10	
3923299000	- - - 기타	9	10	
3923301000	- - 용량이 18.9리터(5갤런) 초과인 것	9	10	
3923302000	- - 예비성형품	9	10	
3923309000	- - 기타	9	10	
3923401000	- - 테이프가 없는 카세트	9	10	
3923409000	- - 기타	9	10	
3923501000	- - 실리콘 마개	9	10	
3923509000	- - 기타	9	10	
3923900000	- 기타	9	10	
3924101000	- - 젓병	9	5	
3924109000	- - 기타	9	10	
3924900000	- 기타	9	10	
3925100000	-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 초과인 것에 한한다)	0	EIF	
3925200000	- 문, 창 및 그들의 틀과 문지방	0	EIF	
3925300000	- 셔터,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	0	EIF	
3925900000	- 기타	9	10	
3926100000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9	10	
3926200000	-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9	10	
3926300000	- 가구용 부착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	9	5	
3926400000	-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9	5	
3926901000	- - 어망용 부표	9	EIF	
3926902000	- - 코르셋, 의류 및 액세서리용 고래뼈 및 그 유사품	9	5	
3926903000	- - 스크루, 볼트, 와셔 및 일반 사용 부분품	9	5	
3926904000	- - 가스켓, 와셔 및 기타 실	9	10	
3926906000	- - 소음방지 프로텍터	9	EIF	
3926907000	- - 작업자 보호용 특수 마스크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3926909010	- - -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9	5	
3926909090	- - - 기타	9	5	
40011000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4001210000	- - 스모크드 슈트	0	EIF	
4001220000	- -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EIF	
4001291000	- - - 축유한 것	0	EIF	
4001292000	- - - 재응결한 고무 입(粒)	0	EIF	
4001299000	- - - 기타	0	EIF	
4001300000	-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울,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0	EIF	
4002111000	- -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의 것	0	EIF	
4002112000	- -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의 것	0	EIF	
4002191100	-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191200	-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192100	-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192200	-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201000	- - 라텍스	0	EIF	
4002209100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209200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311000	- - - 라텍스	0	EIF	
4002319100	-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319200	-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391000	- - - 라텍스	0	EIF	
4002399100	-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399200	-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410000	- - 라텍스	0	EIF	
4002491000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492000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510000	- - 라텍스	0	EIF	
4002591000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592000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601000	- - 라텍스	0	EIF	
4002609100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609200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701000	- - 라텍스	0	EIF	
4002709100	- - - 일차제품의 것	0	EIF	
4002709200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280000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의 혼합물	0	EIF	
4002910000	- - 라텍스	0	EIF	
4002991010	- - - - 오일에서 유도된 팩티스 고무	0	EIF	
4002991090	- - - - 기타	0	EIF	
4002992000	- - -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EIF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 또는 판,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그 분 및 입(粒)	9	5	
400510000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0	EIF	
4005200010	- - 밀봉포장용 암모니아칼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005200090	- - 기타	9	5	
4005911000	- - - 추잉검 베이스	0	EIF	
4005919000	- - - 기타	9	5	
4005991000	- - - 추잉검 베이스	9	5	
4005999000	- - - 기타	9	5	
4006100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벌-백 스트립	9	5	
4006900000	- 기타	9	5	
4007000000	벌크나이즈드된 고무사와 고무끈	0	EIF	
4008111000	- - - 기타 재료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	9	5	
4008112000	- - - 기타 재료와 결합한 것	9	5	
4008190000	- - 기타	9	5	
4008211000	- - - 기타 재료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	9	5	
4008212100	- - - - 인쇄제판용 블랭킷	0	EIF	
4008212900	- - - - 기타	9	5	
4008290000	- - 기타	0	EIF	
40091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9	10	
40091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9	10	
40092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9	10	
40092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9	10	
40093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9	10	
40093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9	10	
40094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9	10	
40094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9	10	
40101100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0	EIF	
4010120000	- -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것	0	EIF	
4010191000	- - -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0	EIF	
4010199000	- - - 기타	0	EIF	
401031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0	EIF	
401032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0	EIF	
401033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0	EIF	
401034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0	EIF	
40103500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IF	
40103600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IF	
4010390000	- - 기타	0	EIF	
4011101000	- - 래디알	0	EIF	
4011109000	- - 기타	0	EIF	
4011201000	- - 래디알	0	EIF	
4011209000	- - 기타	0	EIF	
4011300000	-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1400000	- 모터사이클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0115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1610000	- -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1620000	- - 건설용 또는 산업용 조정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IF	
4011630000	- - 건설용 또는 산업용 조정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초과인 것	0	EIF	
4011690000	- - 기타	0	EIF	
4011920000	- -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1930000	- - 건설용 또는 산업용 조정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IF	
4011940000	- - 건설용 또는 산업용 조정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초과인 것	0	EIF	
4011990000	- - 기타	0	EIF	
4012110000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2120000	- -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2130000	- -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2190000	- - 기타	0	EIF	
4012200000	- 공기타이어 중고품	0	EIF	
4012901000	- - 타이어 플랩	0	EIF	
4012902000	- - 솔리드 타이어	0	EIF	
4012903000	- - 쿠션 타이어	0	EIF	
4012904100	- - - 재생용의 것	0	EIF	
4012904900	- - - 기타	0	EIF	
4013100000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 버스 또는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32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EIF	
4013900000	- 기타	0	EIF	
4014100000	- 콘돔	9	EIF	
4014900000	- 기타	9	5	
4015110000	- - 외과용의 것	9	10	
4015191000	- - - 방사선 차단용의 것	9	EIF	
4015199000	- - - 기타	9	7	
4015901000	- - 방사선 차단용의 것	9	5	
4015902000	- - 잠수복	9	5	
4015909000	- - 기타	9	5	
4016100000	- 셀룰라 고무의 것	9	7	
4016910000	- - 바닥 깔개와 매트	9	7	
4016920000	- - 지우개	9	7	
4016930000	- - 가스켓, 와셔 및 기타 실	9	10	
4016940000	- -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4016951000	- - - 접는 탱크와 용기	9	5	
4016952000	- - - 공기타이어의 가황처리 및 재생기계용 백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016959000	- - - 기타	9	5	
4016991000	- - - 공업용 기타 물품	9	5	
4016992100	- - - - 베어링 먼지 커버	0	EIF	
4016992900	- - - - 기타	0	EIF	
4016993000	- - - 마개	9	5	
4016994000	- - - 이너튜브와 공기타이어 보수용 패치	9	5	
4016996000	- - - 인쇄제판용 블랭킷	9	3	
4016999000	- - - 기타	9	5	
4017000000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경질고무 제품	9	5	
4101200000	-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습식염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EIF	
4101500000	- 전신원피(16킬로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9	EIF	
4101900000	-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9	EIF	
4102100000	- 탈모하지 아니한 것	9	EIF	
4102210000	- - 산처리한 것	0	EIF	
4102290000	- - 기타	0	EIF	
4103200000	- 파충류의 것	9	EIF	
4103300000	- 돼지의 것	9	EIF	
4103900000	- 기타	9	EIF	
4104110000	- - 풀 그레인, 언스프릿, 그레인 스프릿	9	5	
4104190000	- - 기타	9	5	
4104410000	- - 풀 그레인, 언스프릿, 그레인 스프릿	9	5	
4104490000	- - 기타	9	5	
4105100000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9	5	
410530000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9	5	
4106210000	-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9	5	
4106220000	-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9	5	
4106310000	-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0	EIF	
4106320000	-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0	EIF	
4106400000	- 파충류의 것	9	5	
4106910000	-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0	EIF	
4106920000	-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0	EIF	
4107110000	- - 풀 그레인, 언스프릿	9	5	
4107120000	- - 그레인 스프릿	9	5	
4107190000	- - 기타	9	5	
4107910000	- - 풀 그레인, 언스프릿	9	5	
4107920000	- - 그레인 스프릿	9	5	
4107990000	- - 기타	9	5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가공한 면양 또는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9	5	
4113100000	- 산양 또는 어린산양의 것	9	5	
4113200000	- 돼지의 것	9	5	
4113300000	- 파충류의 것	9	5	
4113900000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114100000	-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9	5	
4114200000	-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9	EIF	
4115100000	- 콤파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한 것이고, 슬래브상, 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4115200000	-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 분말 및 분	9	5	
42010000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견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0	EIF	
4202111000	- - -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9	10	
4202119000	- - - 기타	9	10	
4202121000	- - -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9	10	
4202129000	- - - 기타	9	10	
4202190000	- - 기타	9	10	
4202210000	- - 외부표면이 가죽, 콤파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9	10	
4202220000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9	10	
4202290000	- - 기타	9	10	
4202310000	- - 외부표면이 가죽, 콤파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9	10	
4202320000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9	10	
4202390000	- - 기타	9	10	
4202911000	- - - 여행가방과 배낭	9	10	
4202919000	- - - 기타	9	10	
4202920000	-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9	10	
4202991000	- - - 여행가방과 배낭	9	10	
4202999000	- - - 기타	9	10	
4203100000	- 의류	9	10	
42032100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9	10	
4203290000	- - 기타	9	10	
4203300000	- 벨트 및 띠	9	10	
4203400000	- 기타 의류부속품	9	10	
4205001000	- 전동용 벨트	0	EIF	
4205009010	- - 가죽 또는 콤파지션 레더제의 공업용 물품	0	EIF	
4205009090	- - 기타	9	10	
4206001000	- 캣거트	9	EIF	
4206002000	- 내장, 골드비터 스킨(소시지용에 한한다)	9	EIF	
4206009000	- 기타	9	EIF	
4301100000	-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9	EIF	
4301300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 브로드테일, 카라쿨, 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중국,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301600000	-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9	EIF	
4301800000	- 기타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9	EIF	
4301900000	-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9	EIF	
4302110000	- - 밍크의 것	9	EIF	
4302190000	- - 기타	9	EIF	
4302200000	-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EIF	
4302300000	-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9	EIF	
4303101000	- - 알파카의 것	9	5	
4303109000	- - 기타	9	5	
4303901000	- - 알파카의 것	9	5	
4303909000	- - 기타	9	5	
4304000000	인조모피 및 그 제품	9	5	
4401100000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9	5	
4401210000	- - 침엽수류	9	5	
4401220000	- - 활엽수류	9	5	
4401300000	-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 브리케트,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4402100000	- 대나무제의 것	0	EIF	
4402900000	- 기타	0	EIF	
4403100000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방부제로 처리한 것	9	5	
4403200000	-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9	5	
4403410000	- -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9	5	
4403490000	- - 기타	9	5	
4403910000	-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9	5	
4403920000	-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9	5	
4403990000	- - 기타	9	5	
4404100000	- 침엽수류	9	5	
4404200000	- 활엽수류	9	5	
4405000000	목모; 목분	9	5	
4406100000	-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0	EIF	
4406900000	- 기타	0	EIF	
4407101000	- - 연필 제조용 스트립	0	EIF	
4407109000	- - 기타	9	5	
4407210000	- -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9	5	
4407220000	- - 비롤라, 임부아 및 발사	9	5	
4407250000	- -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9	5	
4407260000	- -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옐로메란티 및 아란	9	5	
4407270000	- - 사팔리	9	5	
4407280000	- - 이로코	9	5	
4407290000	-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407910000	-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9	5	
4407920000	-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9	5	
4407930000	- -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9	5	
4407940000	- -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9	5	
4407950000	-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9	5	
4407990000	- - 기타	9	5	
4408101000	- - 연필 제조용 스트립	0	EIF	
4408109000	- - 기타	9	5	
4408310000	- -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кау	9	5	
4408390000	- - 기타	9	5	
4408900000	- 기타	9	5	
4409101000	- - 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0	EIF	
4409102000	- - 주형가공한 목재	0	EIF	
4409109000	- - 기타	9	5	
4409210000	- - 대나무제의 것	0	EIF	
4409291000	- - - 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0	EIF	
4409292000	- - - 주형가공한 목재	0	EIF	
4409299000	- - - 기타	9	5	
4410110000	- - 파티클보드	9	10	
4410120000	- -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9	10	
4410190000	- - 기타	9	10	
4410900000	- 기타	9	10	
44111200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9	10	
44111300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9	10	
4411140000	- - 두께가 9밀리미터 초과인 것	9	10	
44119200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 초과인 것	9	10	
44119300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9	10	
44119400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9	10	
4412100000	- 대나무제의 것	9	10	
44123100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제44류 소호주 제1호에 열거된 열대산 목재인 것	9	10	
44123200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에 한한다)	9	10	
4412390000	- - 기타	9	10	
4412940000	- - 블록보드, 라민보드와 배튼보드	9	10	
4412990000	- - 기타	9	10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플레이트상,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9	10	
4414000000	목제의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9	10	
4415100000	-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בל드럼	9	10	
4415200000	- 페렛, 박스페렛 및 기타 깔판류; 페렛칼러	9	10	
4416000000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텍 및 기타 용기와 그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9	10	
4417001000	- 공구	0	EIF	
4417009000	- 기타	0	EIF	
4418100000	- 창문, 프렌치 윈도우와 그들의 틀	0	EIF	
4418200000	- 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418400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섀터	0	EIF	
4418500000	- 지붕널과 지붕이는 판자	9	5	
4418600000	- 기둥 및 들보	0	EIF	
4418710000	- - 모자이크 마루용의 것	0	EIF	
4418720000	- - 기타(다층의 것에 한한다)	0	EIF	
4418790000	- - 기타	0	EIF	
4418901000	- - 셀룰라 패널	9	10	
4418909000	- - 기타	0	EIF	
4419000000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9	10	
4420100000	- 목재의 소장 및 기타 장식품	9	10	
4420900000	- 기타	9	7	
4421100000	- 옷걸이	9	7	
4421901000	- - 스푼, 콧, 보빈, 릴 및 이와 유사한 물품(선반가공한 것에 한한다)	9	7	
4421902000	- - 이쑤시개	9	5	
4421903000	- - 아이스크림과 캔디용 스푼과 스틱	0	EIF	
4421905000	- - 성냥개비	0	EIF	
4421909000	- - 기타	9	7	
4501100000	-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0	EIF	
4501900000	- 기타	0	EIF	
450200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 판상, 스위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코르크 또는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0	EIF	
4503100000	- 코르크와 마개	0	EIF	
4503900000	- 기타	9	3	
4504100000	- 블록, 판, 스위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여하를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0	EIF	
4504901000	- - 마개	9	5	
4504902000	- - 가스켓이나 조인트 및 와셔	9	10	
4504909000	- - 기타	9	7	
4601210000	- - 대나무제의 것	9	5	
4601220000	- - 등나무제의 것	9	5	
4601290000	- - 기타	9	5	
4601920000	- - 대나무제의 것	9	5	
4601930000	- - 등나무제의 것	9	5	
4601940000	- -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9	5	
4601990000	- - 기타	9	5	
4602110000	- - 대나무제의 것	9	5	
4602120000	- - 등나무제의 것	9	5	
4602190000	- - 기타	9	5	
4602900000	- 기타	9	5	
4701000000	기계목재펄프	9	EIF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4703110000	- - 침엽수류	9	EIF	
4703190000	- - 활엽수류	9	EIF	
4703210000	- - 침엽수류	0	EIF	
4703290000	- - 활엽수류	0	EIF	
4704110000	- - 침엽수류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704190000	- - 활엽수류	0	EIF	
4704210000	- - 침엽수류	0	EIF	
4704290000	- - 활엽수류	0	EIF	
470500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9	EIF	
4706100000	- 면린터펄프	0	EIF	
4706200000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9	EIF	
4706300010	- - 기계펄프	0	EIF	
4706300020	- - 화학펄프	9	EIF	
4706300030	- - 반화학펄프	0	EIF	
4706910000	- - 기계펄프	0	EIF	
4706920000	- - 화학펄프	9	EIF	
4706930000	- - 반화학펄프	0	EIF	
4707100000	-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 지 또는 판지나 파형의 지 또는 판지	0	EIF	
4707200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만든 기타 지 또는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4707300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든 지 또는 판지(예: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EIF	
4707900000	-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EIF	
48010000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02100000	- 수제지 및 판지	9	EIF	
4802200010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은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2200090	- - 기타	9	EIF	
4802400000	- 벽지 베이스	9	EIF	
4802540010	- - - 탄소지용 베이스로 사용되는 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2540090	- - - 기타	9	5	
4802551010	-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것(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2551090	- - - - 기타	9	EIF	
4802552000	- - - 지폐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보안용지	9	EIF	
4802559000	- - - 기타	9	5	
4802561010	- - - - 지폐용으로 사용되는 보안용지[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 초과인 것으로,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2561090	- - - - 기타	9	5	
4802562000	- - - 지폐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보안용지	9	5	
4802569000	- -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02571010	- - - - 지폐용으로 사용되는 보안용지(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 펄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9	EIF	
4802571090	- - - - 기타	0	EIF	
4802572000	- - - 기타 보안용지	9	EIF	
4802579000	- - - 기타	9	7	
4802581010	- - - - 섬유지(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인 것이며, 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이고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것에 한한다)	0	EIF	
4802581090	- - - - 기타	9	5	
4802589010	- - - - 섬유지[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인 것이며, 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이고,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02589090	- - - - 기타	9	5	
4802611000	-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40그램 미만인 것(제48류의 주 제4호에 있는 기타 열거사항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다)	9	EIF	
4802619010	- - - -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초과인 것(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것이며, 보안용지는 제외한다)	0	EIF	
4802619020	- - - - 신문용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4802619030	- - - -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초과인 것(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것, 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이며, 보안용지는 제외한다)	0	EIF	
4802619040	- - - - 탄소지용 베이스로 사용되는 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것으로, 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2619090	- - - - 기타	9	EIF	
4802620010	- - -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초과인 것[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0밀리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이며, 보안용지는 제외한다]	0	EIF	
4802620020	- - -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초과인 것[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0밀리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 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이며, 보안용지는 제외한다]	0	EIF	
4802620030	- - - 탄소지용 베이스로 사용되는 지[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이며, 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02620090	- - - 기타	9	EIF	
4802691000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40그램 미만인 것(제48류의 주 제4호에 있는 기타 열거사항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다)	9	EIF	
4802699010	- - - -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초과인 것[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297밀리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스위트상의 것이며, 보안용지는 제외한다]	0	EIF	
4802699020	- - - -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초과인 것[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297밀리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스위트상의 것, 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이며, 보안용지는 제외한다]	0	EIF	
4802699030	- - - - 탄소지용 베이스로 사용되는 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의 것으로, 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2699040	- - - - 탄소지용 베이스로 사용되는 기타 지	9	EIF	
4802699090	- - - - 기타	9	5	
4803001000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9	5	
4803009000	- 기타	9	5	
48041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9	5	
4804190000	- - 기타	9	5	
4804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9	5	
4804290000	- - 기타	9	5	
4804310010	- - - 사포 제조용의 것	9	5	
4804310090	- - - 기타	9	5	
4804390000	- - 기타	9	5	
4804411000	- - - 탈지의 것(적충된 장식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EIF	
4804419010	- - - - 사포 제조용의 것	9	5	
4804419090	- - - - 기타	9	5	
4804420000	- - 전체를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 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 초과인 것	9	5	
4804490000	- - 기타	9	5	
4804510020	- - - 사포 제조용의 것	9	5	
4804510090	- - - 기타	9	5	
4804520000	- - 전체를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 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 초과인 것	9	5	
4804590000	- - 기타	9	5	
4805110000	- - 반화학 후로팅지	9	5	
4805120010	- - - 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4805120090	- - - 기타	9	5	
4805190010	- - - 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4805190090	- - - 기타	9	5	
480524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이하인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05250010	- - - 화학-기계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4805250090	- - - 기타	9	5	
4805300000	- 아황산 포장지	9	5	
4805401000	- - 면 또는 아바카 섬유 중량이 전중량의 100퍼센트이고, 풀을 먹이지 아니한 것으로, 광물 구성에 구애받지 아니한 것	0	EIF	
4805402000	- - 면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것	0	EIF	
4805409000	- - 기타	0	EIF	
4805500000	- 펄트지와 판지	9	5	
4805911000	- - - 탈지의 것(적층된 장식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EIF	
4805912000	- - - 전기 절연용의 것	0	EIF	
4805913000	- - - 다층의 지와 판지(소호 제4805.12호, 제4805.19호, 제4805.24호 또는 제480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9	5	
4805919010	- - - - 가스켓 또는 조인트용의 것	0	EIF	
4805919020	- - - - 사포 제조용의 것	9	5	
4805919090	- - - - 기타	9	5	
4805921000	- - - 전기 절연용의 것	0	EIF	
4805922000	- - - 다층의 지와 판지(소호 제4805.12호, 제4805.19호, 제4805.24호 또는 제480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9	5	
4805929000	- - - 기타	9	5	
4805931000	- - - 전기 절연용의 것	0	EIF	
4805932000	- - - 다층의 지와 판지(소호 제4805.12호, 제4805.19호, 제4805.24호 또는 제480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4805933000	- - - 비중이 1 초과인 경질의 판지	9	5	
4805939000	- - - 기타	0	EIF	
4806100000	- 황산지	0	EIF	
4806200000	- 내지지	9	5	
4806300000	- 트래싱지	0	EIF	
4806400000	- 그라신지와 기타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0	EIF	
4807000000	겹붙인 지와 판지(납작한 지 또는 판지 층을 접착제로 붙여 만든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4808100000	-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4808200000	-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4808300000	- 기타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4808900000	- 기타	9	5	
4809200000	- 셀프복사지	9	EIF	
4809900010	- - 등사원지용의 것	9	EIF	
4809900090	- - 기타	9	EIF	
4810131100	-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60그램 이하인 것	9	EIF	
4810131900	- - - - 기타	9	5	
4810132000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초과인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10141000	- - -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이 150밀리미터 초과인 것	9	5	
4810149000	- - - 기타	9	5	
4810190000	- - 기타	9	10	
4810220000	- - 경량의 도포한 지	9	5	
4810290000	- - 기타	9	5	
4810310000	- - 전체를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 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 초과이고,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5	
4810320000	- - 전체를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 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 초과이고,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9	5	
4810390000	- - 기타	9	5	
4810920000	- - 여러 겹의 것	9	5	
4810990000	- - 기타	9	5	
4811101010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101090	- - - 기타	9	EIF	
4811109000	- - 기타	9	5	
4811411000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9	5	
4811419000	- - - 기타	9	5	
4811491000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9	5	
4811499000	- - - 기타	9	5	
4811511010	-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511090	- - - - 기타	9	EIF	
4811512000	- - - 양 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식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4811519000	- - - 기타	0	EIF	
4811591010	-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591090	- - - - 기타	9	EIF	
4811592000	- - - 중간 알루미늄 판이 있는 것(식품 산업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11593000	- - - 멜라민 수지가 침투된 지(장식 또는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4811594010	-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594090	- - - - 기타	9	EIF	
4811595000	- - - 양 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식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4811596000	- - - 여과지	0	EIF	
4811599000	- - - 기타	0	EIF	
4811601010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601090	- - - 기타	9	EIF	
4811609000	- - 기타	9	EIF	
4811901000	- - 비중이 1 초과인 광택제(촉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4811902010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902090	- - - 기타	9	EIF	
4811905000	- - 껍선, 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	9	EIF	
4811908010	-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초과이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 초과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0	EIF	
4811908090	- - - 기타	9	EIF	
4811909000	- - 기타	9	EIF	
481200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	EIF	
4813100000	- 소책자 또는 튜브 형태의 것	9	EIF	
481320000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0	EIF	
4813900000	- 기타	9	EIF	
4814100000	- 인그레인지	0	EIF	
4814200000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제(표면에 그레인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한다)	9	5	
4814900010	-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제(표면에 조물재료로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하며, 이들을 서로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4814900090	- - 기타	0	EIF	
4816200000	- 셀프복사지	9	5	
4816900000	- 기타	9	EIF	
4817100000	- 봉투	9	10	
4817200000	- 봉함엽서,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17300000	-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9	10	
4818100000	- 화장지	9	10	
4818200000	- 손수건, 크렌싱 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월	9	10	
4818300000	- 책상보 및 서비에트	9	10	
4818401000	- - 아기 기저귀	9	10	
4818402000	- - 위생 타월과 탐폰	9	10	
4818409000	- - 기타	9	10	
4818500000	- 의류 및 의류부속품	9	5	
4818900000	- 기타	9	5	
4819100000	- 상자류(파형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9	10	
4819200000	- 접는 상자류(파형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9	10	
4819301000	- - 여러 번 접은 것	9	10	
4819309000	- - 기타	9	10	
4819400000	- 기타 부대와 자루(콘을 포함한다)	9	10	
4819500000	- 기타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한다)	9	10	
4819600000	- 서류상자, 서류받침,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10	
4820100000	- 장부, 회계부, 노트북, 주문장, 영수장, 편지지철, 메모철,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	5	
4820200000	- 연습장	9	10	
4820300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홀더 및 서철표지	9	10	
4820401000	- - 연속 용지	9	10	
4820409000	- - 기타	9	10	
4820500000	- 견본용 또는 수집용 앨범	9	5	
4820901000	- - 연속 용지(인쇄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10	
4820909000	- - 기타	9	10	
4821100000	- 인쇄한 것	9	10	
4821900000	- 기타	9	10	
48221000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9	10	
4822900000	- 기타	9	10	
4823200010	- - 도포하지 아니한 것(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23200090	- - 기타	0	EIF	
48234000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쉬트 및 다이알	9	5	
4823610000	- - 대나무제의 것	9	5	
4823690000	- - 기타	9	10	
4823700000	-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9	10	
4823902000	- - 전기절연지	0	EIF	
4823904000	- - 가스켓 또는 조인트	0	EIF	
4823905000	- - 자카드 및 이와 유사한 기계용 판지	0	EIF	
4823906000	- - 양재 패턴, 모델과 견본	9	5	
4823909010	- - - 크라프트 지 및 판지(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의 것, 적층된 장식 플라스틱 제조용의 것,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823909020	- - - 도포하지 아니한 지 또는 판지(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이하인 것, 적층된 장식 플라스틱 제조용의 것,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23909030	- - - 도포하지 아니한 지 또는 판지(가스켓, 와셔 및 기타 실용의 것,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23909040	- - - 황산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23909050	- - - 트래싱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23909060	- - - 그라신지와 기타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4823909070	- - - 도포하지 아니한 지(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제48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것 이상 가공되지 아니한 것,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 펄프로 만든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2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4823909091	- - - -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특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4823909099	- - - - 기타	9	5	
4901101000	- - 운세, 사진 로맨스 소설과 만화	0	EIF	
4901109000	- - 기타	0	EIF	
4901910000	- - 사전과 백과사전 및 그 분할 연속물	0	EIF	
4901991000	- - - 운세, 사진 로맨스 소설과 만화	0	EIF	
4901999000	- - - 기타	0	EIF	
490210000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EIF	
4902901000	- - 운세, 사진 로맨스 소설과 만화	0	EIF	
4902909000	- - 기타	0	EIF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 습화책	0	EIF	
490400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4905100000	- 지구의	9	5	
4905910000	- - 책자로 된 것	9	EIF	
4905990000	- - 기타	9	EIF	
490600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공학용, 공업용, 상업용, 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9	EIF	
4907001000	-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9	EIF	
4907002000	- 은행권	0	EIF	
4907003000	- 외국 신용 점포의 여행자 수표책	9	5	
4907009000	- 기타	9	EIF	
4908100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유리화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9	10	
4908901000	- - 섬유용 전사지(지속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4908909000	- - 기타	9	7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490900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10	
4910000000	각종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9	10	
4911100000	-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달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4911910000	- - 서화, 디자인 및 사진	9	10	
4911990000	- - 기타	9	5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EIF	
50020000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0	EIF	
50030000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0	EIF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5005000000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9	EIF	
5006000000	견사와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누에의 거트	9	EIF	
5007100000	- 견 노일직물	17	5	
5007200000	- 기타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견 노일은 제외한다)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7	5	
5007900000	- 기타 직물	17	5	
5101110000	- - 깎은 양모	9	EIF	
5101190000	- - 기타	9	EIF	
5101210000	- - 깎은 양모	9	5	
5101290000	- - 기타	9	EIF	
5101300000	- 탄화처리한 것	0	EIF	
51021100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9	5	
5102191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9	5	
5102192000	- - - 토끼 또는 라마의 것	0	EIF	
5102199000	- - - 기타	9	5	
5102200000	- 조수모	9	EIF	
51031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9	EIF	
51032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9	EIF	
5103300000	- 조수모의 웨이스트	9	EIF	
5104000000	가아넷스톡(양모의 것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것에 한한다)	9	EIF	
5105100000	- 카드한 양모	9	EIF	
5105210000	- - 코옴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5105291000	- - - 톱	9	EIF	
5105299000	- - - 기타	9	EIF	
51053100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9	EIF	
5105391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9	EIF	
5105392000	- - - 비쿠냐의 것	9	EIF	
5105399000	- - - 기타	9	EIF	
5105400000	-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9	EIF	
51061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9	10	
51062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9	10	
51071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9	10	
51072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108100000	- 카드한 것	9	5	
5108200000	- 코웁한 것	9	5	
51091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17	5	
5109900000	- 기타	17	10	
5110001000	- 소매용이 아닌 것	9	5	
5110009000	- 기타	17	5	
5111111000	- - - 양모의 것	17	10	
5111112000	- - - 비쿠냐의 것	17	10	
5111114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10	
5111119000	- - - 기타	17	10	
5111191000	- - - 양모의 것	17	10	
5111192000	- - - 비쿠냐의 것	17	10	
5111194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10	
5111199000	- - - 기타	17	10	
5111201000	- - 양모의 것	17	10	
5111202000	- - 비쿠냐의 것	17	10	
51112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5	
5111209000	- - 기타	17	10	
5111301000	- - 양모의 것	17	10	
5111302000	- - 비쿠냐의 것	17	10	
51113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5	
5111309000	- - 기타	17	10	
5111901000	- - 양모의 것	17	10	
5111902000	- - 비쿠냐의 것	17	10	
51119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5	
5111909000	- - 기타	17	10	
5112111000	- - - 양모의 것	17	10	
5112112000	- - - 비쿠냐의 것	17	10	
5112114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10	
5112119000	- - - 기타	17	10	
5112191000	- - - 양모의 것	17	10	
5112192000	- - - 비쿠냐의 것	17	10	
5112194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10	
5112199000	- - - 기타	17	10	
5112201000	- - 양모의 것	17	10	
5112202000	- - 비쿠냐의 것	17	10	
51122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5	
5112209000	- - 기타	17	10	
5112301000	- - 양모의 것	17	10	
5112302000	- - 비쿠냐의 것	17	10	
51123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5	
5112309000	- - 기타	17	10	
5112901000	- - 양모의 것	17	10	
5112902000	- - 비쿠냐의 것	17	10	
51129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7	5	
5112909000	- - 기타	17	10	
511300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17	5	
5201001000	- 섬유길이 34.92밀리미터(1 $\frac{3}{8}$ 인치) 초과인 것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201002000	- 섬유길이 28.57밀리미터(1 $\frac{1}{8}$ 인치) 초과 34.92밀리미터(1 $\frac{3}{8}$ 인치) 이하인 것	9	EIF	
5201003000	- 섬유길이 22.22밀리미터($\frac{7}{8}$ 인치) 초과 28.57밀리미터(1 $\frac{1}{8}$ 인치) 이하인 것	9	EIF	
5201009000	- 섬유길이 22.22밀리미터($\frac{7}{8}$ 인치) 이하인 것	9	EIF	
5202100000	-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9	5	
5202910000	- - 가아넷스톡	9	5	
5202990000	- - 기타	9	5	
5203000000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9	5	
5204110000	-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9	10	
5204190000	- - 기타	9	10	
5204200000	- 소매용의 것	17	10	
52051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52051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51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51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5150000	- - 125데시텍스 미만(미터식 변수 80수 초과)인 것	9	10	
52052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52052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52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52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5260000	-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인 것	9	5	
5205270000	-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인 것	9	5	
5205280000	- - 83.33 데시텍스 미만(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인 것	9	5	
52053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52053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53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53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535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인 것	9	10	
52054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2054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54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54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546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인 것	9	5	
520547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인 것	9	10	
520548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인 것	9	10	
52061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52061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61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61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6150000	- - 125데시텍스 미만(미터식 변수 80수 초과)인 것	9	10	
52062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52062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62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62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6250000	- - 125데시텍스 미만(미터식 변수 80수 초과)인 것	9	10	
52063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52063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63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63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635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인 것	9	10	
52064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인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2064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9	10	
52064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인 것	9	10	
52064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인 것	9	10	
520645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인 것	9	10	
5207100000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17	10	
5207900000	- 기타	17	10	
520811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12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13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8190000	- - 기타 직물	17	10	
5208211000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35그램 이하인 것	17	10	
5208219000	- - - 기타	17	10	
520822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23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8290000	- - 기타 직물	17	10	
520831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32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33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8390000	- - 기타 직물	17	10	
520841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5	
520842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43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5	
5208490000	- - 기타 직물	17	10	
520851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520000	- - 평직의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7	10	
5208591000	-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8599000	- - - 기타	17	10	
5209110000	- - 평직의 것	17	10	
520912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209190000	-- 기타 직물	17	10	
5209210000	-- 평직의 것	17	10	
52092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9290000	-- 기타 직물	17	10	
5209310000	-- 평직의 것	17	10	
52093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9390000	-- 기타 직물	17	10	
5209410000	-- 평직의 것	17	10	
5209420000	-- 데님	17	10	
5209430000	--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9490000	-- 기타 직물	17	10	
5209510000	-- 평직의 것	17	10	
52095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095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01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01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02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02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03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03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103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04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04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05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05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11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11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111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1200000	-- 표백한 것	17	10	
52113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13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113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14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1420000	-- 데님	17	10	
5211430000	--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114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1510000	-- 평직의 것	17	10	
52115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7	10	
5211590000	-- 기타 직물	17	10	
52121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7	10	
5212120000	-- 표백한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212130000	- - 염색한 것	17	10	
521214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212150000	- - 날염한 것	17	10	
5212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7	10	
5212220000	- - 표백한 것	17	10	
5212230000	- - 염색한 것	17	10	
521224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212250000	- - 날염한 것	17	10	
5301100000	-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0	EIF	
5301210000	- - 채경 또는 타마한 것	0	EIF	
5301290000	- - 기타	0	EIF	
5301300000	-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0	EIF	
5302100000	-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0	EIF	
5302900000	- 기타	0	EIF	
5303100000	-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9	EIF	
5303903000	- - 황마	9	EIF	
5303909000	- - 기타	9	EIF	
5305001100	- - 생 것	9	EIF	
5305001900	- - 기타	9	EIF	
5305009010	- - 코코넛(코이어)의 것	9	EIF	
5305009020	- - 사이잘마 및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것에 한한다)	9	EIF	
5305009090	- - 기타	0	EIF	
5306100000	- 단사	9	EIF	
5306201000	- - 소매용의 것	17	5	
5306209000	- - 기타	9	EIF	
5307100000	- 단사	9	EIF	
530720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9	EIF	
5308100000	- 코이어사	9	EIF	
5308200000	- 대마사	9	EIF	
5308900010	- - 지사	0	EIF	
5308900090	- - 기타	9	EIF	
53091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5	
5309190000	- - 기타	17	5	
5309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5	
5309290000	- - 기타	17	10	
531010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EIF	
5310900000	- 기타	17	5	
53110000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지사의 직물	17	5	
5401101000	- - 소매용의 것	17	10	
5401109000	- - 기타	9	10	
5401201000	- - 소매용의 것	17	10	
5401209000	- - 기타	9	10	
5402110000	- - 아라미드의 것	0	EIF	
5402191000	- - - 나일론 6.6의 것	0	EIF	
5402199000	- - - 기타	0	EIF	
5402200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0	EIF	
5402310000	-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402320000	-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에 한한다)	9	10	
54023300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9	10	
54023400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9	5	
5402390000	- - 기타	9	10	
540244001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EIF	
5402440090	- - - 기타	9	10	
5402450000	- -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0	EIF	
54024600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9	EIF	
54024700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9	EIF	
54024800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9	EIF	
540249100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EIF	
5402499000	- - - 기타	9	5	
5402510000	-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0	EIF	
54025200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IF	
5402590000	- - 기타	9	10	
5402610000	-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0	EIF	
54026200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9	10	
5402690000	- - 기타	9	10	
5403100000	- 강력사(비스코스 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9	EIF	
5403310000	-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는 것 또는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5	
5403320000	-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에 한한다)	9	5	
54033300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9	5	
5403390000	- - 기타	9	5	
5403410000	-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9	5	
54034200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9	5	
5403490000	- - 기타	9	5	
540411100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EIF	
5404119000	- - - 기타	0	EIF	
54041200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0	EIF	
540419100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EIF	
5404199000	- - - 기타	0	EIF	
5404900000	- 기타	9	10	
54050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5406001000	- 합성필라멘트사	17	10	
5406009000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17	5	
5407101000	- - 타이어 제조용의 것	9	5	
5407109000	- - 기타	17	10	
5407200000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17	10	
5407300000	- 제11부의 주 제9호에 열거된 직물	17	5	
54074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407420000	- - 염색한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4074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7440000	- - 날염한 것	17	10	
54075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407520000	- - 염색한 것	17	10	
54075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7540000	- - 날염한 것	17	10	
5407610000	- -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17	10	
5407690000	- - 기타	17	10	
5407711000	- - - 폴리비닐 알코올사의 타이어코드직물	0	EIF	
5407719000	- - - 기타	17	10	
5407720000	- - 염색한 것	17	10	
54077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7740000	- - 날염한 것	17	10	
54078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407820000	- - 염색한 것	17	10	
54078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7840000	- - 날염한 것	17	10	
54079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407920000	- - 염색한 것	17	10	
54079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7940000	- - 날염한 것	17	10	
5408100010	- - 타이어 제조용의 것	9	5	
5408100090	- - 기타	17	5	
5408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408220000	- - 염색한 것	17	10	
54082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8240000	- - 날염한 것	17	10	
54083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408320000	- - 염색한 것	17	10	
54083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408340000	- - 날염한 것	17	10	
550110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9	5	
5501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IF	
5501301000	- - 습식압출에 의해 얻어진 것	9	10	
5501309000	- - 기타	9	10	
5501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IF	
5501900000	- 기타	0	EIF	
5502001000	- 담배필터 제조용 초산셀룰로오스 로빙	0	EIF	
5502002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EIF	
5502009000	- 기타	0	EIF	
5503110000	- - 아라미드의 것	9	EIF	
5503190000	- - 기타	9	EIF	
5503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IF	
5503301000	- - 습식압출에 의해 얻어진 것	9	10	
5503309000	- - 기타	9	10	
5503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9	5	
5503901000	- - 비닐	0	EIF	
5503909000	- - 기타	0	EIF	
5504100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504900000	- 기타	0	EIF	
5505100000	- 합성 섬유 의 것	9	EIF	
55052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것	9	EIF	
550610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9	EIF	
5506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IF	
55063000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9	10	
5506900000	- 기타	9	EIF	
55070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9	EIF	
5508101000	- - 소매용의 것	17	10	
5508109000	- - 기타	9	10	
5508201000	- - 소매용의 것	17	10	
5508209000	- - 기타	9	10	
5509110000	- - 단사	9	10	
5509120000	-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9	10	
5509210000	- - 단사	9	10	
5509220000	-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9	10	
5509310000	- - 단사	9	10	
5509320000	-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9	10	
5509410000	- - 단사	9	10	
5509420000	-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9	10	
55095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9	10	
55095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9	10	
550953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9	10	
5509590000	- - 기타	9	10	
55096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9	10	
55096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9	10	
5509690000	- - 기타	9	10	
55099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9	10	
55099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9	10	
5509990000	- - 기타	9	10	
5510110000	- - 단사	9	10	
5510120000	-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9	10	
5510200000	- 기타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9	10	
5510300000	-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9	10	
5510900000	- 기타 사	9	10	
5511100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7	10	
5511200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17	10	
55113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것	17	10	
55121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2190000	- - 기타	17	10	
5512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512290000	- - 기타	17	10	
55129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2990000	- - 기타	17	10	
55131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12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13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3190000	- - 기타 직물	17	10	
55132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231000	-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239000	- - - 기타	17	10	
5513290000	- - 기타 직물	17	10	
55133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391000	-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392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3399000	- - - 기타	17	10	
55134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491000	-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3492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3499000	- - - 기타	17	10	
55141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12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191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4199000	- - - 기타	17	10	
55142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22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23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4290000	- - 기타 직물	17	10	
5514301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302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303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4309000	- - 기타 직물	17	10	
55144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420000	- - 3올 또는 4올의 능직의 것(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17	10	
551443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7	10	
5514490000	- - 기타 직물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5151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17	10	
55151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7	10	
551513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17	10	
5515190000	- - 기타	17	10	
55152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7	10	
55152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17	10	
5515290000	- - 기타	17	10	
55159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7	10	
5515990000	- - 기타	17	10	
55161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6120000	- - 염색한 것	17	10	
55161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516140000	- - 날염한 것	17	10	
5516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6220000	- - 염색한 것	17	10	
55162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516240000	- - 날염한 것	17	10	
55163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6320000	- - 염색한 것	17	10	
55163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516340000	- - 날염한 것	17	10	
55164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6420000	- - 염색한 것	17	10	
55164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516440000	- - 날염한 것	17	10	
55169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5516920000	- - 염색한 것	17	10	
55169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5516940000	- - 날염한 것	17	10	
5601100000	- 워딩제의 위생타월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9	10	
5601210000	- - 면제의 것	9	10	
56012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9	10	
5601290000	- - 기타	9	10	
5601300000	-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 및 밀네프	9	10	
5602100000	- 니들룸펠트와 스티치본드 섬유직물	9	10	
56022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9	10	
5602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10	
5602900000	- 기타	9	10	
560311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25그램 이하인 것	0	EIF	
5603121000	- - - 폴리에스테르제의 것(스티렌-부타디엔 고무가 1제곱미터당 43그램 이상 침투된 것으로서, 폭이 75밀리미터 이하로 잘라진 것에 한한다)	9	10	
5603129000	- - - 기타	9	10	
560313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9	10	
560314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초과인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60391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25그램 이하인 것	0	EIF	
560392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9	10	
560393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70그램 초과 1제곱미터당 150그램 이하인 것	9	10	
5603940000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초과인 것	9	10	
5604100000	-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9	10	
5604902000	- - 강력사(타이어 제조용 비가황 고무로 침투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9	10	
5604909000	- - 기타	9	10	
56050000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또는 분상의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0	EIF	
5606000000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9	10	
5607210000	- - 포장용 끈	9	5	
5607290000	- - 기타	9	5	
5607410000	- - 포장용 끈	9	10	
5607490000	- - 기타	9	10	
5607500000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9	10	
5607900000	- 기타	9	10	
5608110000	- - 제품으로 된 어망	0	EIF	
5608190000	- - 기타	9	10	
5608900000	- 기타	0	EIF	
5609000000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사,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물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10	
5701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9	10	
5701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10	
5702100000	- 켈렘, 슈맥, 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 러그	9	5	
5702200000	- 코코넛 섬유(코이어)제의 바닥 깔개	9	5	
5702310000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9	5	
5702320000	- -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2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2410000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9	5	
5702420000	- -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2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2500000	- 기타(파일직물이 아닌 것으로, 제품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10	
5702910000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9	5	
5702920000	- -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2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3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9	10	
570320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9	10	
5703300000	- 기타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5	
5703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10	
5704100000	- 타일(표면적이 최대 0.3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704900000	- 기타	9	10	
57050000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10	
5801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5	
5801210000	- - 절단되지 아니한 위파일 직물	17	10	
5801220000	- - 절단된 코르덴	17	10	
5801230000	- - 기타 위파일 직물	17	10	
5801240000	- - 에핑글(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7	10	
5801250000	- - 절단된 경파일 직물	17	10	
5801260000	- - 셔닐 직물	17	10	
5801310000	- - 절단되지 아니한 위파일 직물	17	10	
5801320000	- - 절단된 코르덴	17	10	
5801330000	- - 기타 위파일 직물	17	10	
5801340000	- - 에핑글(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7	10	
5801350000	- - 절단된 경파일 직물	17	10	
5801360000	- - 셔닐 직물	17	10	
5801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58021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7	10	
5802190000	- - 기타	17	10	
58022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테리타월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17	10	
5802300000	- 터후트 직물	17	10	
5803001000	- 면제의 것	17	10	
5803009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5804100000	- 튜올 및 기타 망직물	17	10	
580421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5804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5804300000	- 수제 레이스	17	5	
5805000000	고우벌린직, 플란더스직, 오버션직, 뉘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 태피스트리 및 자수 태피스트리(예 : 퍼티포인트,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7	5	
5806100000	- 파일직물(테리타월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을 포함한다) 및 셔닐직물	17	10	
5806200000	-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7	10	
5806310000	- - 면제의 것	17	10	
5806321000	- - - 폭이 4.1센티미터 이하인 것	17	10	
5806329000	- - - 기타	17	10	
5806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5806400000	-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직물(볼덕)	17	10	
5807100000	- 직조한 것	17	10	
5807900000	- 기타	17	10	
5808100000	-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17	5	
5808900000	- 기타	17	10	
5809000000	금속사 직물과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 직물(의류,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5810100000	- 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7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810910000	- - 면제의 것	17	10	
58109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5810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58110000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는 제외한다)	17	10	
5901100000	- 서적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검 또는 전분질의 물질로 도포한 것에 한한다)	17	10	
5901900000	- 기타	17	5	
5902101000	- - 고무를 입힌 것	0	EIF	
5902109000	- - 기타	9	EIF	
5902201000	- - 고무를 입힌 것	0	EIF	
5902209000	- - 기타	0	EIF	
5902900000	- 기타	0	EIF	
5903100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17	10	
5903200000	- 폴리우레탄의 것	17	10	
5903900000	- 기타	17	10	
5904100000	- 리놀륨	17	5	
5904900000	- 기타	17	5	
5905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17	5	
590610000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 테이프	17	5	
5906910000	- -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	17	10	
5906991000	- - -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로 직조한 직물	17	10	
5906999010	- - - - 고무제품 제조용 특수직물	9	5	
5906999090	- - - - 기타	17	10	
59070000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스튜디오용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캔버스	17	10	
5908000000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9	5	
5909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의 관상의 물품(기타 재료제의 내장, 보강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5910000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5911100000	-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속을 댄 직물로서, 고무, 가죽 또는 기타 물질로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위빙빔) 피복용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만들어진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0	EIF	
5911200000	- 불팅클로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591131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0	EIF	
591132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5911400000	-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0	EIF	
5911901000	- - 가스켓	0	EIF	
5911909000	- - 기타	0	EIF	
6001100000	- 롱 파일 편물	17	10	
6001210000	- - 면제의 것	17	10	
60012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001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001910000	- - 면제의 것	17	10	
60019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001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002400000	-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이고, 고무사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7	10	
6002900000	- 기타	17	10	
6003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10	
6003200000	- 면제의 것	17	10	
6003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0034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003900000	- 기타	17	10	
6004100000	-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이고, 고무사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17	10	
6004900000	- 기타	17	10	
6005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6005220000	- - 염색한 것	17	10	
60052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6005240000	- - 날염한 것	17	10	
60053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6005320000	- - 염색한 것	17	10	
60053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6005340000	- - 날염한 것	17	10	
60054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6005420000	- - 염색한 것	17	10	
60054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6005440000	- - 날염한 것	17	10	
6005900000	- 기타	17	10	
6006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5	
60062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6006220000	- - 염색한 것	17	10	
60062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6006240000	- - 날염한 것	17	10	
60063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6006320000	- - 염색한 것	17	10	
60063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6006340000	- - 날염한 것	17	10	
60064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7	10	
6006420000	- - 염색한 것	17	10	
6006430000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7	10	
6006440000	- - 날염한 것	17	10	
6006900000	- 기타	17	10	
6101200000	- 면제의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101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1901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101909000	- - 기타	17	10	
61021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2200000	- 면제의 것	17	10	
6102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2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3101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3102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3109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32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32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3291000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3299000	- - - 기타	17	10	
61033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33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33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3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34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34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34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3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41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4191000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4192000	- - - 면제의 것	17	10	
6104199000	- - - 기타	17	10	
61042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42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4291000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4299000	- - - 기타	17	10	
61043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43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43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4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44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44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44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4440000	-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104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45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45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45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45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46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046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46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046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5100041	- - - 단색으로만 염색된 직물(표백한 직물을 포함한다)의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105100042	-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줄무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의 것	17	10	
6105100049	- - - 기타	17	10	
6105100051	- - - 단색으로만 염색된 직물(표백한 직물을 포함한다)의 것	17	10	
6105100052	-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줄무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의 것	17	10	
6105100059	- - - 기타	17	10	
6105100080	- - 기타(남자용의 것에 한한다)	17	10	
6105100091	- - - 앞이 부분적으로 트여있고 골지게 짠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것(남자용의 것에 한한다)	17	10	
6105100092	- - - 칼라가 있고 앞이 부분적으로 트여있는 것	17	10	
6105100099	- - - 기타	17	10	
6105201000	-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섬유제의 것	17	10	
6105209000	- - 기타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105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6100021	- - - 단색으로만 염색된 직물(표백한 직물을 포함한다)의 것	17	10	
6106100022	-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줄무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의 것	17	10	
6106100029	- - - 기타	17	10	
6106100031	- - - 단색으로만 염색된 직물(표백한 직물을 포함한다)의 것	17	10	
6106100032	-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줄무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의 것	17	10	
6106100039	- - - 기타	17	10	
6106100090	- - 기타	17	10	
61062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6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71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71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7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72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72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7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79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7991000	-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7999000	- - - 기타	17	10	
610811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8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82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82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8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83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83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8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089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089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08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109100031	- - - 단색으로만 염색된 직물(표백한 직물을 포함한다)의 것	17	10	
6109100032	-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줄무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의 것	17	10	
6109100039	- - - 기타	17	10	
6109100041	- - - 단색으로만 염색된 직물(표백한 직물을 포함한다)의 것	17	10	
6109100042	- -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줄무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의 것	17	10	
6109100049	- - - 기타	17	10	
6109100050	- - 언더셔츠	17	10	
6109901000	-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섬유제의 것	17	10	
6109909000	- - 기타	17	10	
6110111010	- - - - 터틀넥이 있는 것	17	10	
6110111090	- - - - 기타	17	10	
6110112000	- - - 조끼	17	10	
6110113000	- - - 카디건	17	10	
6110119010	- - - - 터틀넥이 있는 것	17	10	
6110119090	- - - - 기타	17	10	
61101200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17	5	
6110191010	- - - - 터틀넥이 있는 것	17	5	
6110191090	- - - - 기타	17	5	
6110192000	- - - 조끼	17	5	
6110193000	- - - 카디건	17	5	
6110199010	- - - - 터틀넥이 있는 것	17	5	
6110199090	- - - - 기타	17	5	
6110201010	- - - 터틀넥이 있는 것	17	10	
6110201090	- - - 기타	17	10	
6110202000	- - 조끼	17	10	
6110203000	- - 카디건	17	10	
6110209010	- - - 터틀넥이 있는 것	17	10	
6110209090	- - - 기타	17	10	
6110301000	-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섬유제의 것	17	10	
6110309000	- - 기타	17	10	
6110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1200000	- 면제의 것	17	10	
6111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1901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11909000	- - 기타	17	10	
6112110000	- - 면제의 것	17	10	
61121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2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2200000	- 스키슈트	17	5	
611231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2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241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2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3000000	의류(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17	5	
6114200000	- 면제의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114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114901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14909000	- - 기타	17	10	
6115101000	- - 단계압박 양말류	17	10	
6115109000	- - 기타	17	10	
6115210000	- -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17	10	
61152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7	10	
6115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5301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5309000	- - 기타	17	10	
611594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115950000	- - 면제의 것	17	10	
611596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5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6100000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17	5	
61169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116920000	- - 면제의 것	17	10	
61169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116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117100000	-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것	17	5	
6117801000	- - 무릎 및 발목 패드	17	5	
6117802000	- - 벙커리류	17	5	
6117809000	- - 기타	17	10	
6117901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117909000	- - 기타	17	10	
62011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11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11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201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19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19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19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201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21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21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21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202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29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29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29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202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31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2031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3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32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32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3291000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203299000	- - - 기타	17	10	
62033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2033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33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3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34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203421010	- - - - 긴 바지 및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7	10	
6203421020	- - -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17	10	
6203422010	- - - - 긴 바지 및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7	10	
6203422020	- - -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17	10	
6203429010	- - - - 긴 바지 및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7	10	
6203429020	- - -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17	10	
62034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3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41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41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41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4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42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42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42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4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43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2043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43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4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44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44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44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4440000	-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4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45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2045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45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45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46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10	
62046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46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46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5200000	- 면제의 것	17	10	
6205300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5901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5909000	- - 기타	17	10	
6206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제의 것	17	10	
62062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5	
6206300000	- 면제의 것	17	10	
6206400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6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711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7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20721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722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7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791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7991000	-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7999000	- - - 기타	17	10	
620811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81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821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822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8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8910000	- - 면제의 것	17	10	
620892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08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09200000	- 면제의 것	17	10	
6209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09901000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5	
6209909000	- - 기타	17	10	
6210100000	- 제5602호 또는 제5603호의 직물의 것	17	10	
6210200000	-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에서 제6201.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17	10	
6210300000	- 기타 의류(소호 제6202.11호에서 제6202.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17	10	
6210400000	-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17	10	
6210500000	-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17	10	
6211110000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17	10	
6211120000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17	10	
6211200000	- 스키슈트	17	5	
62113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1133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11391000	-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10	
6211399000	- - - 기타	17	10	
6211410000	-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10	
6211420000	- - 면제의 것	17	10	
621143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11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12100000	- 브래지어	17	10	
6212200000	- 거들 및 팬티거들	17	5	
6212300000	- 콜세렛	17	5	
6212900000	- 기타	17	10	
6213200000	- 면제의 것	17	10	
6213901000	- - 견 또는 견웨이스트제의 것	17	5	
6213909000	- - 기타	17	10	
6214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제의 것	17	5	
62142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7	5	
6214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2144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214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215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제의 것	17	5	
6215200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215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5	
6216001000	- 특히 작업자 보호용의 것	9	5	
6216009000	- 기타	17	5	
6217100000	- 부착품	17	5	
6217900000	- 부분품	17	10	
6301100000	- 전기모포	17	5	
6301201000	- - 양모제의 것	17	10	
6301202000	- - 비쿠냐 모제의 것	17	10	
6301209000	- - 기타	17	5	
6301300000	-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7	10	
6301400000	-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7	10	
6301900000	-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17	10	
6302101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302109000	- - 기타	17	10	
6302210000	- - 면제의 것	17	10	
6302220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302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302310000	- - 면제의 것	17	10	
63023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302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10	
6302401000	-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7	10	
6302409000	- - 기타	17	10	
6302510000	- - 면제의 것	17	10	
63025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302591000	- - - 리넨제의 것	17	10	
6302599000	- - - 기타	17	10	
6302600000	- 면제의 토일렛티넨 및 주방리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17	10	
6302910000	- - 면제의 것	17	10	
63029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17	10	
6302991000	- - - 리넨제의 것	17	5	
6302999000	- - - 기타	17	5	
63031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5	
6303191000	- - - 면제의 것	17	5	
6303199000	- - - 기타	17	5	
6303910000	- - 면제의 것	17	5	
63039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5	
6303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5	
6304110000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7	10	
6304190000	- - 기타	17	10	
6304910000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7	10	
6304920000	-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17	10	
6304930000	- -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17	5	
6304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17	10	
6305101000	- - 황마제의 것	17	10	
6305109000	- - 기타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305200000	- 면제의 것	17	10	
6305320000	- -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17	10	
6305331000	- - - 폴리에틸렌제의 것	17	10	
6305332000	- - - 폴리프로필렌제의 것	17	10	
6305390000	- - 기타	17	10	
6305901000	- - 피타 섬유(까부야, 피끼)제의 것	17	10	
6305909000	- - 기타	17	10	
63061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10	
6306191000	- - - 면제의 것	17	10	
6306199000	- - - 기타	17	5	
63062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17	5	
6306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5	
6306300000	- 돛	17	5	
630640000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17	5	
6306910000	- - 면제의 것	17	5	
6306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7	5	
6307100000	- 마루닥이포, 접시닥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7	5	
6307200000	-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9	EIF	
6307901000	- - 드레스패턴	17	10	
6307902000	- - 안전 벨트	17	5	
6307903000	- - 안면 보호구	17	5	
6307909000	- - 기타	17	5	
630800000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 제조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17	10	
6309000000	헌 의류 및 기타 헌 물품	17	10	
6310101000	- - 직물 조각, 트리밍	17	5	
6310109000	- - 기타	17	5	
6310900000	- 기타	17	5	
640110000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갖춘 신발류	17	10	
6401920000	- - 발목을 덮는 것으로서,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것	17	10	
6401990000	- - 기타	17	10	
6402120000	- -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7	EIF	
6402190000	- - 기타	17	10	
6402200000	- 신발류(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17	10	
6402910000	- - 발목을 덮는 것	17	10	
6402991000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갖춘 것	17	10	
6402999000	- - - 기타	17	10	
6403120000	- -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7	EIF	
6403190000	- - 기타	17	10	
6403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이 가죽제인 것으로, 갑피가 발등을 교차하고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 끈으로 된 것에 한한다)	17	5	
640340000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갖춘 것에 한한다)	17	5	
6403510000	- - 발목을 덮는 것	17	5	
6403590000	- - 기타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403911000	- - - 목제창 신발류(안창과 보호용 금속 토캡이 없는 것에 한한다)	17	10	
6403919000	- - - 기타	17	10	
6403991000	- - - 목제창 신발류(안창과 보호용 금속 토캡이 없는 것에 한한다)	17	10	
6403999000	- - - 기타	17	10	
6404111000	- - - 스포츠용 신발류	17	10	
6404112000	- - -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7	10	
6404190000	- - 기타	17	10	
6404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에 한한다)	17	5	
6405100000	- 갑피가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	17	10	
640520000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17	5	
6405900000	- 기타	17	10	
640610000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17	10	
6406200000	- 바깥 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에 한한다)	17	10	
6406910000	- - 목제의 것	17	10	
6406993000	- - -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	17	10	
6406999000	- - - 기타	17	10	
6501000000	펠트제의 모체(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레토우 및 맨손(슬릿맨손을 포함한다)	9	5	
6502001000	- 토킬라 짚 또는 모코라 짚의 것	9	5	
6502009000	- 기타	9	5	
6504000000	모자와 기타 헤드기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6505100000	- 헤어네트	9	5	
6505901000	- - 펠트제의 모자와 기타 헤드기어 또는 제6501호의 모체(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6505909000	- - 기타	9	5	
6506100000	- 안전모	9	5	
6506910000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9	5	
6506990000	- - 기타 재료제의 것	9	5	
6507000000	헤드기어용 헤드밴드, 내장재, 커버, 해트파운데이션, 해트프레임, 챙 및 턱끈	9	5	
6601100000	- 정원용 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9	5	
6601910000	- - 대가 절첩식인 것	9	5	
6601990000	- - 기타	9	5	
6602000000	지팡이, 시트 스틱, 채찍, 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6603200000	- 산류의 틀[대(스틱)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9	5	
6603900000	- 기타	9	5	
670100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그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9	5	
6702100000	- 플라스틱제의 것	9	5	
6702900000	- 기타 재료제의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703000000	인모(정돈, 표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양모 또는 기타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5	
6704110000	- - 전체가발	9	5	
6704190000	- - 기타	9	5	
6704200000	- 인모제의 것	9	5	
6704900000	- 기타 재료제의 것	9	5	
6801000000	포석, 연석 및 판석(천연석제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6802100000	-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粒), 세편 및 분	0	EIF	
6802210000	- - 대리석, 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0	EIF	
6802230000	- - 화강암	0	EIF	
6802291000	- - - 석회질 암석	0	EIF	
6802299000	- - - 기타	0	EIF	
6802910000	- - 대리석, 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0	EIF	
6802920000	- - 기타 석회질 암석	0	EIF	
6802930000	- - 화강암	0	EIF	
6802990000	- - 기타 석	0	EIF	
68030000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 제품	0	EIF	
6804100000	-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6804210000	- - 응결된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제의 것	0	EIF	
6804220000	- -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0	EIF	
6804230000	- - 천연석제의 것	0	EIF	
6804300000	- 수지석(手砥石)	0	EIF	
6805100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9	10	
6805200000	-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9	10	
6805300000	-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것	9	10	
6806100000	- 슬랙을, 록을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그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스위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6806200000	-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팽창점토,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성 재료(그 혼합물을 포함한다)	0	EIF	
6806900000	- 기타	0	EIF	
6807100000	- 롤상의 것	0	EIF	
6807900000	- 기타	0	EIF	
6808000000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제품(식물성 섬유, 짚 또는 목재의 대땃밥, 칩, 파티클, 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제의 것으로서, 시멘트, 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0	EIF	
6809110000	- -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0	EIF	
6809190000	- - 기타	9	5	
6809900000	- 기타 제품	9	5	
6810110000	- - 건축용 블록 및 벽돌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810190000	- - 기타	0	EIF	
6810910000	-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6810990000	- - 기타	0	EIF	
6811400010	- - 파형의 쉬트	0	EIF	
6811400020	- - 기타 쉬트, 패널,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EIF	
6811400090	- - 기타 제품	0	EIF	
6811810000	- - 파형의 쉬트	0	EIF	
6811820000	- - 기타 쉬트, 패널,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EIF	
6811830000	- - 관 및 관 연결구류	0	EIF	
6811890000	- - 기타 제품	0	EIF	
6812800010	- - 지, 판지 및 펄트	0	EIF	
6812800020	- - 청석면과 압축탄성중합체(가스켓용의 것으로서, 쉬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6812800030	- - 가공한 청석면 섬유; 청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청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0	EIF	
6812800090	- - 기타	9	5	
6812910000	- -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헤드기어	9	5	
6812920000	- - 지, 표지용 판지 및 펄트	0	EIF	
6812930000	- -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쉬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6812991000	- -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0	EIF	
6812992000	- - - 사	9	5	
6812993000	- - - 로프와 코드(엮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6812994000	- - -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6812995000	- - - 가스켓	9	5	
6812999000	- - - 기타	9	5	
6813200000	- 석면을 함유한 것	9	10	
6813810000	-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9	10	
6813890000	- - 기타	9	10	
6814100000	- 판,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6814900000	- 기타	0	EIF	
6815100000	- 비전기식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0	EIF	
6815200000	- 이탄 제품	9	EIF	
6815910000	- -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9	5	
6815990000	- - 기타	9	5	
6901000000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규조토,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0	EIF	
6902100000	- 마그네슘,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초과인 것	0	EIF	
6902201000	- - 실리카(SiO_2)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0퍼센트 초과인 것	0	EIF	
6902209000	- - 기타	0	EIF	
6902900000	- 기타	0	EIF	
6903101000	- - 레토트 및 도가니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6903109000	- - 기타	0	EIF	
6903201000	- - 레토트 및 도가니	0	EIF	
6903209000	- - 기타	0	EIF	
6903901000	- - 레토트 및 도가니	0	EIF	
6903909000	- - 기타	0	EIF	
6904100000	- 건축용 벽돌	0	EIF	
6904900000	- 기타	0	EIF	
6905100000	- 지붕용 타일	0	EIF	
6905900000	- 기타	0	EIF	
6906000000	도자제의 관, 도관, 홍통 및 관 연결구류	0	EIF	
6907100000	-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0	EIF	
6907900000	- 기타	0	EIF	
6908100000	-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0	EIF	
6908900000	- 기타	0	EIF	
6909110000	- - 자기제의 것	9	5	
69091200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9	5	
6909190000	- - 기타	9	5	
6909900000	- 기타	9	10	
6910100000	- 자기제의 것	0	EIF	
6910900000	- 기타	0	EIF	
6911100000	-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9	5	
6911900000	- 기타	9	5	
691200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9	10	
6913100000	- 자기제의 것	9	5	
6913900000	- 기타	9	5	
6914100000	- 자기제의 것	9	5	
6914900000	- 기타	9	10	
7001001000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9	5	
7001003000	- 유리괴	9	5	
7002100000	- 구	0	EIF	
7002200000	- 봉	0	EIF	
7002310000	- -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0	EIF	
7002320000	-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0	EIF	
7002390000	- - 기타	0	EIF	
7003121000	- - - 평평한 것	0	EIF	
7003122000	- - - 골진 것, 파형의 것, 압착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0	EIF	
7003191000	- - - 평평한 것	0	EIF	
7003192000	- - - 골진 것, 파형의 것, 압착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0	EIF	
7003200000	- 망입 쉬트	0	EIF	
7003300000	- 프로파일	0	EIF	
7004200010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00420009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004900020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004900090	- - 기타	0	EIF	
7005100000	-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이 있는 것에 한한다)	9	5	
7005211100	- - - - 플로트	0	EIF	
7005211900	- - - - 기타	0	EIF	
7005219000	- - - 기타	0	EIF	
7005291000	-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005299000	- - - 기타	0	EIF	
7005300000	- 망입 유리	0	EIF	
7006000000	제7003호,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천공한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틀을 씌우지 아니하거나 기타 재료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007110000	- -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9	10	
7007190000	- - 기타	9	10	
7007210000	- -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9	10	
7007290000	- - 기타	9	10	
700800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0	EIF	
7009100000	-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7009910000	- - 틀을 씌우지 아니한 것	9	5	
7009920000	- - 틀을 씌운 것	9	5	
7010100000	- 앰플	9	5	
7010200000	-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9	5	
7010901000	- - 1리터 초과인 것	9	10	
7010902000	- - 0.33리터 초과 1리터 이하인 것	9	10	
7010903000	- - 0.15리터 초과 0.33리터 이하인 것	9	10	
7010904000	- - 0.15리터 이하인 것	9	10	
7011100000	- 전등용의 것	9	5	
7011200000	- 음극선관용의 것	0	EIF	
7011900000	- 기타	9	10	
7013100000	- 유리 도자제의 것	9	10	
7013220000	- - 납 크리스탈제의 것	9	10	
7013280000	- - 기타	9	10	
7013330000	- - 납 크리스탈제의 것	9	10	
7013370000	- - 기타	9	5	
7013410000	- - 납 크리스탈제의 것	9	10	
7013420000	-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제의 것	9	10	
7013490000	- - 기타	9	8	
7013910000	- - 납 크리스탈제의 것	9	8	
7013990000	- - 기타	9	10	
70140000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은 제외하고,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10	
7015100000	- 시력교정 안경용 유리	9	5	
7015900000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016100000	- 유리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7016901000	- -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스테인그라스에 한하며, 무색 유리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7016902000	- - 다공 또는 다포유리(블록, 패널, 플레이트, 셀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7016909000	- - 기타	0	EIF	
7017100000	-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0	EIF	
70172000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9	5	
7017900000	- 기타	0	EIF	
7018100000	- 유리 비드, 모조진주, 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9	EIF	
7018200000	- 유리 마이크로스피어(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5	
7018900010	- -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9	5	
7018900090	- - 기타	9	5	
7019110000	-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7019120000	- - 로빙	0	EIF	
7019190000	- - 기타	0	EIF	
7019310000	- - 매트	0	EIF	
7019320000	- - 얇은 쉬트(보일)	0	EIF	
7019390000	- - 기타	0	EIF	
7019400000	- 로빙직물	0	EIF	
7019510000	-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9	5	
7019520000	-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의 것으로서, 중량이 1제곱미터당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인 필라멘트로 된 것에 한한다)	9	5	
7019590000	- - 기타	0	EIF	
7019901000	- - 글라스 울(벌크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7019909000	- - 기타	9	5	
7020001000	- 유리 외피(진공절연처리된 플라스크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7020009000	- 기타	9	5	
7101100000	- 천연진주	9	EIF	
71012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9	EIF	
7101220000	- - 가공한 것	9	EIF	
710210000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9	EIF	
71022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부르팅한 것	0	EIF	
7102290000	- - 기타	0	EIF	
71023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부르팅한 것	9	EIF	
7102390000	- - 기타	9	EIF	
7103101000	- - 에메랄드	9	EIF	
7103109000	- - 기타	9	EIF	
7103911000	- - - 루비 및 사파이어	9	EIF	
7103912000	- - - 에메랄드	9	EIF	
7103990000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104100000	- 압전기용 석영	0	EIF	
7104200000	-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9	EIF	
7104900000	- 기타	9	EIF	
7105100000	- 다이아몬드의 것	0	EIF	
7105900000	- 기타	9	EIF	
7106100000	- 분	9	EIF	
7106911000	- - - 합금하지 아니한 것	9	EIF	
7106912000	- - - 합금한 것	9	EIF	
7106920000	- - 반제품의 것	9	5	
7107000000	은을 입힌 비(卑)금속(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7108110000	- - 분	9	5	
7108120000	- -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9	5	
7108130000	- - 기타 반제품 형상의 것	9	5	
7108200000	- 화폐용의 것	9	5	
7109000000	-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71101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EIF	
7110190000	- - 기타	0	EIF	
71102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EIF	
7110290000	- - 기타	0	EIF	
71103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EIF	
7110390000	- - 기타	0	EIF	
71104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EIF	
7110490000	- - 기타	0	EIF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7112300000	-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한 회	9	5	
71129100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9	5	
71129200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9	5	
7112990000	- - 기타	9	5	
7113110000	-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7	
7113190000	-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7	
7113200000	-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을 입힌 것에 한한다)	9	7	
7114111000	- - - 순도 0.925인 것	9	7	
7114119000	- - - 기타	9	7	
7114190000	-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7	
7114200000	-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을 입힌 것에 한한다)	9	7	
7115100000	-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7115900000	- 기타	0	EIF	
711610000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9	5	
711620000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제의 것	9	5	
7117110000	- - 커프스 단추 및 장식용 단추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117190000	- - 기타	9	8	
7117900000	- 기타	9	5	
7118100000	-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9	5	
7118900000	- 기타	9	5	
7201100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7201200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퍼센트 초과인 것에 한한다)	0	EIF	
7201500000	-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	0	EIF	
720211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 초과인 것	0	EIF	
7202190000	- - 기타	0	EIF	
72022100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5퍼센트 초과인 것	0	EIF	
7202290000	- - 기타	0	EIF	
7202300000	- 페로실리코망간	0	EIF	
720241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퍼센트 초과인 것	0	EIF	
7202490000	- - 기타	0	EIF	
7202500000	- 페로실리코크로뮴	0	EIF	
7202600000	- 페로니켈	0	EIF	
7202700000	- 페로몰리브데늄	0	EIF	
72028000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0	EIF	
7202910000	-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0	EIF	
7202920000	- - 페로 바나듐	0	EIF	
7202930000	- - 페로 니오븀	0	EIF	
7202990000	- - 기타	0	EIF	
7203100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EIF	
7203900000	- 기타	0	EIF	
7204100000	-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72042100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0	EIF	
7204290000	- - 기타	0	EIF	
7204300000	- 주석으로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7204410000	- - 선삭, 세이빙, 칩, 밀링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7204490000	- - 기타	0	EIF	
7204500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0	EIF	
7205100000	- 입(粒)	0	EIF	
7205210000	- - 합금강의 것	0	EIF	
7205290000	- - 기타	0	EIF	
7206100000	- 잉곳	0	EIF	
7206900000	- 기타	0	EIF	
72071100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EIF	
7207120000	- - 기타[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에 한한다]	0	EIF	
7207190000	- - 기타	0	EIF	
7207200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208101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08102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8103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104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208251000	-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08252000	-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826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27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360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0837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12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208379000	- - - 기타	0	EIF	
720838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12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208389000	- - - 기타	0	EIF	
720839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12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208399100	- - - - 두께가 1.8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8399900	- - - - 기타	0	EIF	
7208401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08402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8403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404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511000	- - - 두께가 12.5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08512000	-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852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208529000	- - - 기타	0	EIF	
720853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54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8900000	- 기타	0	EIF	
720915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0	EIF	
72091600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917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9181000	- - - 두께가 0.25밀리미터 이상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9182000	- - - 두께가 0.2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925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0	EIF	
72092600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927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0928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09900000	- 기타	0	EIF	
721011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EIF	
721012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0200000	-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턴플레이트를 포함한다)	0	EIF	
7210300000	-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0410000	- - 파형의 것	0	EIF	
7210490000	- - 기타	0	EIF	
7210500000	-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0610000	- -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0690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210701000	- -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사전 도포한 것	0	EIF	
7210709000	- - 기타	0	EIF	
7210900000	- 기타	0	EIF	
7211130000	- -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 초과이며,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코일상의 것이 아닌 것이며, 부조된 무늬가 없는 것에 한한다)	0	EIF	
7211140000	-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721119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211199000	- - - 기타	0	EIF	
721123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퍼센트 미만인 것	0	EIF	
7211290000	- - 기타	0	EIF	
7211900000	- 기타	0	EIF	
7212100000	-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2200000	-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2300000	-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2400000	- 플라스틱으로 페인트, 바니시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2500000	- 기타의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2600000	- 클래드한 것	0	EIF	
72131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을 가지는 것	0	EIF	
7213200000	-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	EIF	
7213911000	- - - 크롬, 니켈, 동 및 몰리브데늄의 총 함유량이 0.12퍼센트 미만인 것	0	EIF	
7213919000	- - - 기타	0	EIF	
7213990000	- - 기타	0	EIF	
7214100000	- 단조한 것	0	EIF	
72142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을 가지는 것 또는 압연 후 꼬임 가공된 것	0	EIF	
72143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4309000	- - 기타	0	EIF	
7214911000	- - -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4919000	- - - 기타	0	EIF	
721499100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4999000	- - - 기타	0	EIF	
72151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5109000	- - 기타	0	EIF	
72155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5509000	- - 기타	0	EIF	
72159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5909000	- - 기타	0	EIF	
7216100000	- 유, 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EIF	
7216210000	- - 엘형강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216220000	- - 티형강	0	EIF	
7216310000	- - 유형강	0	EIF	
7216320000	- - 아이형강	0	EIF	
7216330000	- - 에이치형강	0	EIF	
7216400000	-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EIF	
7216500000	- 기타 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2166100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EIF	
7216690000	- - 기타	0	EIF	
72169100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0	EIF	
7216990000	- - 기타	0	EIF	
7217100000	-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7217200000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7300000	- 기타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17900000	- 기타	0	EIF	
7218100000	-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0	EIF	
72189100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0	EIF	
7218990000	- - 기타	0	EIF	
7219110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1912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913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14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210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21922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923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24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31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EIF	
721932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3300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34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1935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19900000	- 기타	0	EIF	
722011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EIF	
722012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220200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EIF	
7220900000	- 기타	0	EIF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7222111000	- - -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2119000	- - - 기타	0	EIF	
7222191000	- - - 횡단면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2199000	- - - 기타	0	EIF	
72222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2209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2223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2309000	- - 기타	0	EIF	
7222400000	- 형강	0	EIF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0	EIF	
7224100000	-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0	EIF	
7224900000	- 기타	0	EIF	
7225110000	- - 방향성의 것	0	EIF	
7225190000	- - 기타	0	EIF	
7225300000	- 기타(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7225400000	- 기타(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0	EIF	
722550000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225910000	- -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25920000	- -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EIF	
7225990000	- - 기타	0	EIF	
7226110000	- - 방향성의 것	0	EIF	
7226190000	- - 기타	0	EIF	
7226200000	- 고속도강의 것	0	EIF	
7226910000	-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EIF	
7226920000	-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EIF	
7226990000	- - 기타	0	EIF	
7227100000	- 고속도강의 것	0	EIF	
7227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	EIF	
7227900000	- 기타	0	EIF	
7228100000	- 고속도강의 봉	0	EIF	
72282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8209000	- - 기타	0	EIF	
7228300000	- 기타의 봉(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228401000	- - 횡단면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8409000	- - 기타	0	EIF	
72285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8509000	- - 기타	0	EIF	
72286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7228609000	- - 기타	0	EIF	
7228700000	- 형강	0	EIF	
7228800000	- 중공드릴봉	0	EIF	
7229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	EIF	
7229900000	- 기타	0	EIF	
7301100000	- 강시판	0	EIF	
7301200000	- 형강	0	EIF	
7302100000	- 케조	0	EIF	
7302300000	- 철판케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스피스	0	EIF	
7302400000	- 계목판과 저판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302901000	- - 침목	0	EIF	
7302909000	- - 기타	0	EIF	
73030000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0	EIF	
7304110000	-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EIF	
7304190000	- - 기타	0	EIF	
7304220000	- -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0	EIF	
7304230000	- - 기타 드릴파이프	0	EIF	
7304240000	- -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04290000	- - 기타	0	EIF	
7304310000	-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EIF	
7304390000	- - 기타	0	EIF	
7304410000	-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EIF	
7304490000	- - 기타	0	EIF	
7304510000	-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EIF	
7304590000	- - 기타	0	EIF	
7304900000	- 기타	0	EIF	
7305110000	-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	EIF	
7305120000	-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0	EIF	
7305190000	- - 기타	0	EIF	
7305200000	-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0	EIF	
7305310000	-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0	EIF	
7305390000	- - 기타	0	EIF	
7305900000	- 기타	0	EIF	
73061100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06190000	- - 기타	0	EIF	
73062100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06290000	- - 기타	0	EIF	
7306301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306309100	- - - 이중벽의 강제 튜브(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7306309200	- - - 단일벽의 강제 튜브(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7306309900	- - - 기타	0	EIF	
7306400000	- 기타(용접한 것이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06500000	- 기타(용접한 것이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06610000	- -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0	EIF	
7306690000	- - 기타	0	EIF	
7306900000	- 기타	0	EIF	
7307110000	- - 비가단주철제의 것	0	EIF	
7307190000	- - 기타	0	EIF	
7307210000	- - 플렌지	0	EIF	
7307220000	- - 나선가공한 엘보, 밴드와 슬리브	0	EIF	
7307230000	- - 바트용접한 연결구	0	EIF	
7307290000	- - 기타	0	EIF	
7307910000	- - 플렌지	0	EIF	
7307920000	- - 나선가공한 엘보, 밴드와 슬리브	0	EIF	
7307930000	- - 바트용접한 연결구	0	EIF	
7307990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308100000	- 다리와 교량	0	EIF	
7308200000	- 탑과 격자주	0	EIF	
7308300000	- 문,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EIF	
7308400000	- 비계, 차단기, 지주 또는 갱도받침용 기구	0	EIF	
7308901000	- -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 봉, 형강,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7308902000	- - 수문	0	EIF	
7308909000	- - 기타	0	EIF	
7309000000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각종 재료(압축 또는 액화가스는 제외한다)용의 것으로, 철강제의 것이며, 용적이 300리터 초과인 것으로,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31010000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9	5	
7310210000	- -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캔	9	10	
7310291000	- - - 정액의 운반용 또는 분배용 이중벽 용기	0	EIF	
7310299000	- - - 기타	0	EIF	
7311001000	- 이음매가 없는 것	0	EIF	
7311009000	- 기타	0	EIF	
7312101000	- - 타이어 아머용의 것	0	EIF	
7312109000	- - 기타	9	EIF	
7312900000	- 기타	9	8	
7313001000	- 유자선	0	EIF	
7313009000	- 기타	0	EIF	
7314120000	- -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14140000	- -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14191000	- - - 기계용 엔드리스밴드	0	EIF	
7314199000	- - - 기타	0	EIF	
7314200000	- 그릴, 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9	7	
7314310000	-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7	
7314390000	- - 기타	9	7	
7314410000	-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10	
73144200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9	10	
7314490000	- - 기타	9	7	
7314500000	- 익스팬디드메탈	0	EIF	
7315110000	- - 롤러체인	0	EIF	
7315120000	- - 기타체인	0	EIF	
7315190000	- - 부분품	9	5	
7315200000	- 스킵체인	9	EIF	
7315810000	- - 스테드링크	9	5	
73158200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0	EIF	
7315890000	- - 기타	0	EIF	
7315900000	- 기타 부분품	9	5	
731600000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317000000	철강제의 못, 압정, 제도용 핀, 파형 못,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두부가 기타 재료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두부가 동제인 그러한 제품은 제외한다)	9	10	
7318110000	- - 코치스크루	9	7	
7318120000	- - 기타 목재용 스크루	9	10	
7318130000	- - 스크루혹과 스크루링	9	10	
7318140000	- - 셀프타핑 스크루	9	7	
7318151000	- - - 콘크리트용의 익스팬시블 앵커 볼트	0	EIF	
7318159000	- - - 기타	9	5	
7318160000	- - 너트	9	5	
7318190000	- - 기타	9	10	
7318210000	- -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9	5	
7318220000	- - 기타 와셔	9	5	
7318230000	- - 리벳	9	10	
7318240000	- - 코터와 코터핀	9	5	
7318290000	- - 기타	9	8	
7319200000	- 안전핀	9	5	
7319300000	- 기타 핀	9	5	
7319901000	- - 수봉침, 짜깁기 바늘 또는 자수침	9	EIF	
7319909000	- - 기타	9	EIF	
732010000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9	5	
7320201000	- - 차량 서스펜션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9	5	
7320209000	- - 기타	9	5	
7320900000	- 기타	9	5	
7321111100	- - - - 내장 쿠키	9	10	
7321111200	- - - - 테이블 쿠키	9	10	
7321111900	- - - - 기타	9	10	
7321119000	- - - 기타	9	10	
7321120000	- - 액체연료용의 것	9	10	
7321191000	- - - 고체연료용의 것	9	10	
7321199000	- - - 기타	9	10	
7321810000	- -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9	10	
7321820000	- - 액체연료용의 것	9	10	
7321891000	- - - 고체연료용의 것	9	10	
7321899000	- - - 기타	9	10	
7321901000	- - 탱크가 없는 물가열기용 가스 노 버너	0	EIF	
7321909000	- - 기타	0	EIF	
7322110000	- - 주철제의 것	0	EIF	
7322190000	- - 기타	0	EIF	
7322900000	- 기타	0	EIF	
7323100000	-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7323911000	- - - 제품	9	8	
7323912000	- - - 부분품	9	10	
7323921000	- - - 제품	9	8	
7323922000	- - - 부분품	9	10	
7323931000	- - - 제품	9	10	
7323932000	- - - 부분품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323941000	- - - 제품	9	10	
7323949000	- - - 부분품	9	10	
7323991000	- - - 제품	9	10	
7323999000	- - - 부분품	9	8	
732410000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7324210000	- -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7324290000	- - 기타	0	EIF	
7324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IF	
7325100000	- 비가단주철제의 것	0	EIF	
73259100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EIF	
7325990000	- - 기타	9	10	
73261100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EIF	
7326190000	- - 기타	0	EIF	
7326200000	- 철강선제의 제품	9	7	
7326901000	- - 가변 단면의 부재(部材)	0	EIF	
7326909000	- - 기타	0	EIF	
7401001000	- 동의 매트	0	EIF	
7401002000	- 시멘트동(침전동)	0	EIF	
7402001000	- 조동	9	3	
7402002000	- 기타 정제하지 아니한 것	9	3	
7402003000	- 전해정제용 동 양극	9	3	
74031100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9	3	
7403120000	- - 와이어바	9	3	
7403130000	- - 빌렛	9	3	
7403190000	- - 기타	9	3	
7403210000	- - 동-아연의 합금(황동)	9	3	
7403220000	- - 동-주석의 합금(청동)	9	3	
7403291000	- - - 동-니켈의 합금(백동) 또는 동-니켈-아연의 합금(양백)	9	3	
7403299000	- - - 기타	0	EIF	
74040000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7405000000	동의 마스터알로이	0	EIF	
7406100000	- 비충상조직의 분	0	EIF	
7406200000	- 충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0	EIF	
7407100000	- 정제한 동의 것	9	5	
7407210000	- - 동-아연 합금(황동)의 것	9	5	
7407290000	- - 기타	9	5	
74081100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408190000	- - 기타	0	EIF	
7408210000	- - 동-아연 합금(황동)의 것	9	5	
7408220000	- - 동-니켈 합금(백동)의 것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양백)의 것	9	5	
7408290000	- - 기타	9	5	
7409110000	- - 코일상의 것	0	EIF	
7409190000	- - 기타	9	5	
7409210000	- - 코일상의 것	9	5	
7409290000	- - 기타	0	EIF	
7409310000	- - 코일상의 것	9	5	
7409390000	-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409400000	- 동-니켈 합금(백동)의 것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양백)의 것	9	5	
7409900000	- 기타 동합금의 것	0	EIF	
7410110000	- - 정제한 동의 것	0	EIF	
7410120000	- - 동합금의 것	0	EIF	
7410210000	- - 정제한 동의 것	9	5	
7410220000	- - 동합금의 것	9	5	
7411100000	- 정제한 동제의 것	0	EIF	
7411210000	- - 동-아연 합금(황동)제의 것	9	5	
7411220000	- - 동-니켈 합금(백동)제의 것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양백)제의 것	9	5	
7411290000	- - 기타	9	5	
7412100000	- 정제한 동제의 것	9	5	
7412200000	- 동합금제의 것	0	EIF	
7413000000	동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741510000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 스테이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9	5	
7415210000	-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9	5	
7415290000	- - 기타	9	5	
7415330000	- - 스크루; 볼트와 너트	9	5	
7415390000	- - 기타	9	5	
7418110000	-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7418191000	- - - 비전기식 조리용기구 또는 가열기구와 그 부분품	9	5	
7418199000	- - - 기타	9	5	
7418200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9	5	
7419100000	- 체인과 그 부분품	9	5	
7419910000	- - 주조, 주형,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7419991000	- - -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	0	EIF	
7419992000	- - - 동제의 스프링	0	EIF	
7419999000	- - - 기타	9	5	
7501100000	- 니켈의 매트	0	EIF	
7501200000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0	EIF	
7502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0	EIF	
7502200000	- 니켈 합금	0	EIF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75040000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0	EIF	
7505110000	-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EIF	
7505120000	- - 니켈 합금의 것	0	EIF	
7505210000	-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EIF	
7505220000	- - 니켈 합금의 것	0	EIF	
7506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EIF	
7506200000	- 니켈 합금의 것	0	EIF	
7507110000	-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0	EIF	
7507120000	- - 니켈 합금제의 것	0	EIF	
7507200000	- 관 연결구류	0	EIF	
7508100000	- 니켈선제의 클로드, 그릴 및 망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508901000	- - 전기도금용 양극(전기분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	0	EIF	
7508909000	- - 기타	0	EIF	
7601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0	EIF	
7601200000	- 알루미늄 합금	0	EIF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7603100000	- 비충상조직의 분	0	EIF	
7603200000	- 충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0	EIF	
7604101000	- - 봉	9	5	
7604102000	- - 프로파일(중공 프로파일을 포함한다)	0	EIF	
7604210000	- - 중공프로파일	0	EIF	
7604291000	- - - 봉	9	5	
7604292000	- - - 기타 프로파일	9	5	
76051100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605190000	- - 기타	0	EIF	
76052100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7605290000	- - 기타	0	EIF	
7606110000	-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0	EIF	
7606122000	-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퍼센트 이상인 것(두랄루민)	0	EIF	
7606129000	- - - 기타	0	EIF	
7606911000	- - - 관형 용기 제조용 디스크	0	EIF	
7606919000	- - - 기타	0	EIF	
7606922000	- - - 관형 용기 제조용 디스크	9	5	
7606923000	-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퍼센트 이상인 것(두랄루민)	0	EIF	
7606929000	- - - 기타	0	EIF	
7607110000	- - 압연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607190000	- - 기타	0	EIF	
7607200000	- 뒷면을 붙인 것	0	EIF	
7608101000	- - 바깥지름이 9.52밀리미터 이하이고, 벽의 두께가 0.9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IF	
7608109000	- - 기타	0	EIF	
7608200000	-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9	5	
7609000000	알루미늄제의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9	5	
7610100000	- 문,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EIF	
7610900000	- 기타	0	EIF	
7611000000	알루미늄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각종 재료(압축 또는 액화가스는 제외한다)용의 것이며, 용적이 300리터 초과인 것으로,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7612100000	- 연질의 관형 용기	9	10	
7612901000	- - 우유 운송용 용기	9	10	
7612903000	- - 극저온 용기	0	EIF	
7612904000	- - 통, 드럼 및 캔	9	5	
7612909000	- - 기타	9	5	
7613000000	알루미늄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761410000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0	EIF	
7614900000	- 기타	0	EIF	
7615110000	-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7615191100	- - - - 압력 쿠키	9	10	
7615191900	- - - - 기타	9	10	
7615192000	- - - 식탁용품,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의 부분품	9	5	
7615200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9	10	
7616100000	- 못, 압정,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혹,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	5	
7616910000	- -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그릴, 망 및 울타리	0	EIF	
7616991000	- - - 익스팬디드메탈	0	EIF	
7616999000	- - - 기타	0	EIF	
7801100000	- 정제한 연	9	EIF	
7801910000	- - 중량 기준으로 안티모니를 주된 기타 원소로 함유하는 것	9	EIF	
7801990000	- - 기타	9	EIF	
780200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7804110000	- - 쉬트, 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EIF	
7804190000	- - 기타	9	EIF	
7804200000	- 분과 플레이크	9	EIF	
7806001000	- 방사성 제품용 차폐 용기	0	EIF	
7806002000	- 봉, 프로파일과 선	0	EIF	
7806003000	- 관과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0	EIF	
7806009000	- 기타	9	EIF	
7901110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7901120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퍼센트 미만인 것	0	EIF	
7901200000	- 아연 합금	9	1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7903100000	- 아연의 더스트	0	EIF	
7903900000	- 기타	0	EIF	
7904001000	- 선	0	EIF	
7904009000	- 기타	0	EIF	
7905000011	- - 두께가 0.65밀리미터 이하인 것	9	EIF	
7905000012	- - 두께가 0.65밀리미터 초과인 것	9	EIF	
7905000091	- 디스크(육각형의 것으로, 최대치수가 30밀리미터 초과인 것에 한한다)	9	EIF	
7905000099	- - 기타	9	EIF	
7907001000	- 홍통, 지붕덮개, 채광 창틀 및 기타 가공한 건축용 재료	0	EIF	
7907002000	- 관과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0	EIF	
7907009000	- 기타	9	EIF	
8001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9	EIF	
8001200000	- 주석 합금	9	EIF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003001000	- 주석 합금의 봉 및 선(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9	5	
8003009000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007001000	- 판, 쉬트, 스트립 및 박(두께가 0.2밀리미터 초과인 것에 한한다)	0	EIF	
8007002000	- 박[인쇄하였는지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분과 플레이크	0	EIF	
8007003000	- 관과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0	EIF	
8007009000	- 기타	0	EIF	
8101100000	- 분	0	EIF	
8101940000	- -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0	EIF	
8101960000	- - 선	0	EIF	
81019700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01990000	- - 기타	0	EIF	
8102100000	- 분	0	EIF	
8102940000	- -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0	EIF	
8102950000	- - 붕(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 판, 쉬트, 스트립 및 박	0	EIF	
8102960000	- - 선	0	EIF	
81029700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02990000	- - 기타	0	EIF	
8103200000	-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분	0	EIF	
8103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03900000	- 기타	0	EIF	
81041100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8퍼센트 이상인 것	0	EIF	
8104190000	- - 기타	0	EIF	
81042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8104300000	- 줄밥, 연삭설 및 입(粒)(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에 한한다); 분	0	EIF	
8104900000	- 기타	0	EIF	
8105200000	-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분	0	EIF	
8105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5	
8105900000	- 기타	0	EIF	
8106001100	- - 바늘모양의 것	0	EIF	
8106001900	- - 기타	0	EIF	
8106002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8106009000	- 기타	0	EIF	
8107200010	- - 볼상의 것	9	EIF	
8107200090	- - 기타	9	EIF	
8107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07900000	- 기타	0	EIF	
8108200000	- 티타늄의 괴; 분	0	EIF	
8108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08900000	- 기타	0	EIF	
8109200000	- 지르코늄의 괴; 분	0	EIF	
8109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09900000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110100000	- 안티모니의 과; 분	9	EIF	
81102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10900000	- 기타	0	EIF	
8111001100	- - 망간의 과; 분	0	EIF	
81110012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IF	
8111009000	- 기타	0	EIF	
8112120000	- - 과; 분	0	EIF	
81121300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12190000	- - 기타	0	EIF	
8112210000	- - 과; 분	0	EIF	
81122200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12290000	- - 기타	0	EIF	
8112510000	- - 과; 분	9	EIF	
81125200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9	EIF	
8112590000	- - 기타	0	EIF	
8112921010	- - - - 게르마늄 및 바나듐	0	EIF	
8112921090	- - - - 기타	0	EIF	
8112922010	- - - - 게르마늄 및 바나듐	0	EIF	
8112922090	- - - - 기타	0	EIF	
8112990000	- - 기타	0	EIF	
811300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EIF	
8201100000	- 가래 및 삽	0	EIF	
8201200000	- 포크	0	EIF	
8201300000	- 곡괭이, 픽스, 괭이와 쇠스랑	0	EIF	
8201401000	- - 마체테 칼	0	EIF	
8201409000	- - 기타	0	EIF	
8201500000	- 전정가위 및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0	EIF	
8201601000	- - 양손용 전지가위	0	EIF	
8201609000	- - 기타	0	EIF	
8201901000	- - 낫, 초절기 또는 짚용 칼	0	EIF	
8201909000	- - 기타	0	EIF	
8202101000	- - 수동식 톱	0	EIF	
8202109000	- - 기타	0	EIF	
8202200000	- 띠톱의 날	0	EIF	
8202310000	- -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인 것	0	EIF	
82023900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IF	
8202400000	- 전기톱의 날	0	EIF	
8202910000	- - 직선형 톱날(금속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202990000	- - 기타	0	EIF	
8203100000	- 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0	EIF	
8203200000	-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집게, 핀셋 및 이와 유사한 공구	0	EIF	
8203300000	- 금속 절단용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0	EIF	
8203400000	- 파이프 커터, 볼트 크로퍼, 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0	EIF	
8204110000	- - 조정할 수 없는 것	0	EIF	
8204120000	- - 조정할 수 있는 것	0	EIF	
8204200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205100000	- 드릴링, 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0	EIF	
8205200000	- 해머와 슬레즈 해머	0	EIF	
8205300000	- 대패, 끌, 둥근끌 및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목재 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205401000	- - 일자형 나사용의 것	0	EIF	
8205409000	- - 기타	0	EIF	
8205510000	- - 가정용 공구	9	5	
8205591000	- - - 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	0	EIF	
8205592000	- - - 끌	0	EIF	
8205593000	- - - 조각칼과 끌	0	EIF	
8205596000	- - - 기름 통 및 주유기; 그리스 건	0	EIF	
8205599100	- - - - 특수 공구(시계제조자용 및 보석상용에 한한다)	0	EIF	
8205599200	- - - - 석공, 주형공, 미장공, 도장공용 공구(모종삽, 스무더, 서버, 스크레이퍼 등)	0	EIF	
8205599900	- - - - 기타	0	EIF	
8205601000	- - 볼로램프	0	EIF	
8205609000	- - 기타	0	EIF	
8205700000	- 바이스,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8205800000	- 앤빌; 가반식 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그라인딩휠	0	EIF	
8205900000	- 전술한 소호들에 해당하는 둘 이상 물품의 세트	0	EIF	
8206000000	제8202호에서 제8205호의 둘 이상의 공구(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8207131000	- - - 트레판 및 크라운	0	EIF	
8207132000	- - - 드릴	0	EIF	
8207133000	- - - 일체 나사송곳	0	EIF	
8207139000	- - - 기타 공구	0	EIF	
8207191000	- - - 트레판 및 크라운	0	EIF	
8207192100	- - - - 다이아몬드 모양의 것	0	EIF	
8207192900	- - - - 기타	0	EIF	
8207193000	- - - 일체 나사송곳	0	EIF	
8207198000	- - - 기타 공구	0	EIF	
8207200000	- 다이(금속 인발용 또는 압출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207300000	- 프레싱, 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0	EIF	
8207400000	- 태핑 또는 드레딩용 공구	0	EIF	
8207500000	- 드릴링용 공구(착암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207600000	-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	0	EIF	
8207700000	- 밀링용 공구	0	EIF	
8207800000	- 터닝용 공구	0	EIF	
8207900000	- 기타 호환성 공구	0	EIF	
8208100000	- 금속 가공용의 것	0	EIF	
8208200000	- 목재 가공용의 것	0	EIF	
8208300000	-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0	EIF	
8208400000	-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용의 것	0	EIF	
8208900000	- 기타	0	EIF	
8209001000	- 텅스텐 카바이드제(볼프람)의 것	0	EIF	
8209009000	- 기타	0	EIF	
8210001000	- 분쇄기	9	5	
8210009000	- 기타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211100000	- 물품이 조합된 세트	9	10	
8211910000	- - 식탁용 칼(날이 고정된 것에 한한다)	9	10	
8211920000	- - 기타 칼(날이 고정된 것에 한한다)	0	EIF	
8211931000	- - - 달구질 및 접목용 칼	9	10	
8211939000	- - - 기타	9	10	
8211941000	- - - 식탁용 칼용의 것	9	10	
8211949000	- - - 기타	9	5	
8211950000	- -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0	EIF	
8212101000	- - 면도기	9	EIF	
8212102000	- - 안전 면도기	9	EIF	
82122000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9	EIF	
8212900000	- 기타 부분품	9	EIF	
821300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그 날	9	5	
8214100000	- 종이용 칼, 편지 개봉기, 지우개용 칼, 연필깎이와 그 날	0	EIF	
8214200000	-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9	5	
8214901000	- - 조발기	0	EIF	
8214909000	- - 기타	9	10	
8215100000	-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9	10	
8215200000	- 물품이 조합된 기타 세트	9	10	
82159100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9	10	
8215990000	- - 기타	9	10	
8301100000	- 패드록	0	EIF	
8301200000	- 자물쇠(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0	EIF	
8301300000	- 자물쇠(가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0	EIF	
8301401000	- - 장갑 또는 보강한 금고용의 것	0	EIF	
8301409000	- - 기타	0	EIF	
8301500000	- 유금 및 유금이 붙은 프레임(자물쇠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0	EIF	
8301600000	- 부분품	9	5	
8301700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0	EIF	
8302101000	- - 자동차용의 것	9	10	
8302109000	- - 기타	0	EIF	
8302200000	- 카스터	0	EIF	
8302300000	- 기타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9	5	
8302410000	-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0	EIF	
8302420000	- - 기타(가구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EIF	
8302490000	- - 기타	0	EIF	
8302500000	- 모자걸이,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0	EIF	
8302600000	- 자동도어 폐지기	0	EIF	
8303001000	- 장갑 또는 보강한 금고	0	EIF	
8303002000	- 스트롱박스과 스트롱룸용 문과 저장실	0	EIF	
8303009000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304000000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카드인덱스함, 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 펜트레이,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의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9	5	
8305100000	- 서류철용 피팅	9	5	
8305200000	-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9	5	
8305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9	5	
8306100000	- 벨, 징 및 이와 유사한 것	9	5	
83062100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9	5	
8306290000	- - 기타	9	5	
8306300000	- 사진틀,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9	5	
8307100000	- 철강제의 것	0	EIF	
8307900000	-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9	5	
8308101100	- - - 철강제의 것	9	5	
8308101200	- - - 알루미늄제의 것	9	10	
8308101900	- - - 기타	9	10	
8308109000	- - 기타	9	7	
8308200000	- 관리벨트 또는 이고(二股)리벨트	9	7	
8308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9	7	
8309100000	- 크라운코르크	9	7	
8309900000	- 기타	9	10	
83100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9	5	
8311100000	- 비(卑)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9	5	
8311200000	- 비(卑)금속제의 선(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9	5	
8311300000	- 비(卑)금속제의 봉과 선(봉에 도포한 것이거나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땀, 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9	5	
8311900000	- 기타	9	5	
8401100000	- 원자로	0	EIF	
8401200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EIF	
8401300000	- 연료체(카트리지)(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8401400000	- 원자로의 부분품	0	EIF	
8402110000	- - 수관보일러(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초과인 것에 한한다)	0	EIF	
8402120000	- - 수관보일러(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8402190000	- - 기타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0	EIF	
8402200000	- 과열수보일러	0	EIF	
8402900000	- 부분품	0	EIF	
8403100000	- 보일러	0	EIF	
8403900000	- 부분품	0	EIF	
840410000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0	EIF	
8404200000	-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0	EIF	
8404900000	- 부분품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05100000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405900000	- 부분품	0	EIF	
8406100000	- 선박추진용 터빈	0	EIF	
8406810000	- -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인 것	0	EIF	
8406820000	-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0	EIF	
8406900000	- 부분품	0	EIF	
8407100000	- 항공기 엔진	0	EIF	
8407210000	- - 아웃보드 모터	0	EIF	
8407290000	- - 기타	0	EIF	
8407310000	-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0	EIF	
8407320000	-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0	EIF	
8407330000	-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0	EIF	
8407340000	-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인 것	0	EIF	
8407900000	- 기타 엔진	0	EIF	
8408100000	- 선박추진용 엔진	0	EIF	
8408201000	- -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이하인 것	0	EIF	
8408209000	- - 기타	0	EIF	
8408901000	- - 전력이 130킬로와트(174마력) 이하인 것	0	EIF	
8408902000	- - 전력이 130킬로와트(174마력) 초과인 것	0	EIF	
840910000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0	EIF	
8409911000	- - - 블록 및 실린더 헤드	0	EIF	
8409912000	- - - 실린더 라이너	0	EIF	
8409913000	- - - 커넥팅 로드	0	EIF	
8409914000	- - - 피스톤	0	EIF	
8409915000	- - - 링	0	EIF	
8409916000	- - - 카뷰레이터 및 그 부분품	0	EIF	
8409917000	- - - 밸브	0	EIF	
8409918000	- - - 크랭크케이스	0	EIF	
8409919100	- - - - 자동차 카뷰레이션 시스템 연료조작 전환 장비	0	EIF	
8409919900	- - - - 기타	0	EIF	
8409991000	- - - 피스톤	0	EIF	
8409992000	- - - 링	0	EIF	
8409993000	- - - 연료 시스템용 인젝터 및 기타 부분품	0	EIF	
8409994000	- - - 블록 및 실린더 헤드	0	EIF	
8409995000	- - - 실린더 라이너	0	EIF	
8409996000	- - - 커넥팅 로드	0	EIF	
8409997000	- - - 밸브	0	EIF	
8409998000	- - - 크랭크케이스	0	EIF	
8409999100	- - - - 밸브 가이드	0	EIF	
8409999200	- - - - 피스톤 핀	0	EIF	
8409999900	- - - - 기타	0	EIF	
84101100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4101200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410130000	- - 동력이 10,000킬로와트 초과인 것	0	EIF	
8410900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111100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0	EIF	
84111200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초과인 것	0	EIF	
84112100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4112200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초과인 것	0	EIF	
84118100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4118200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초과인 것	0	EIF	
8411910000	- -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0	EIF	
8411990000	- - 기타	0	EIF	
8412100000	-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0	EIF	
8412210000	-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0	EIF	
8412290000	- - 기타	0	EIF	
8412310000	-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0	EIF	
8412390000	- - 기타	0	EIF	
8412801000	- - 풍력 엔진	0	EIF	
8412809000	- - 기타	0	EIF	
8412901000	- - 항공기 엔진의 것	0	EIF	
8412909000	- - 기타	0	EIF	
8413110000	- -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것에 한한다)	0	EIF	
8413190000	- - 기타	0	EIF	
8413200000	- 수직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413301000	- - 항공기 엔진용의 것	0	EIF	
8413302000	- - 기타(분사 펌프에 한한다)	0	EIF	
8413309100	- - - 연료의 것	0	EIF	
8413309200	- - - 기름의 것	0	EIF	
8413309900	- - - 기타	0	EIF	
8413400000	- 콘크리트 펌프	0	EIF	
8413500000	- 기타 용적형 왕복 펌프	0	EIF	
8413601000	- - 더블스크루 펌프(축류의 것에 한한다)	0	EIF	
8413609000	- - 기타	0	EIF	
8413701100	- - - 출력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8413701900	- - - 기타	0	EIF	
8413702100	- - - 출력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8413702900	- - - 기타	0	EIF	
8413811000	- - 분사 펌프	0	EIF	
8413819000	- - - 기타	0	EIF	
8413820000	- - 액체 엘리베이터	0	EIF	
8413911000	- - - 연료 보급소 펌프	0	EIF	
8413912000	- - - 항공기 엔진용의 것	0	EIF	
8413913000	- - - 기타 엔진의 연료용, 윤활유용 또는 냉각제용의 것	0	EIF	
8413919000	- - 기타	0	EIF	
8413920000	- -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0	EIF	
8414100000	- 진공펌프	0	EIF	
8414200000	- 수동식 또는 족답식 기체펌프	0	EIF	
8414304000	- - 화물운송용 자동차용의 것	0	EIF	
8414309100	- - - 동력이 0.37킬로와트(1/2마력) 이하인 것(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인 것에 한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14309200	- - - 동력이 0.37킬로와트(1/2마력) 초과인 것(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인 것에 한한다)	0	EIF	
8414309900	- - - 기타	0	EIF	
8414401000	- - 동력이 30킬로와트(40마력) 미만인 것	0	EIF	
8414409000	- - 기타	0	EIF	
8414510000	- - 테이블, 바닥, 벽, 창문, 천장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17	5	
8414590000	- - 기타	0	EIF	
8414600000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5	
8414801000	- - 자동차용 압축기	0	EIF	
8414802100	- - - 동력이 30킬로와트(40마력) 미만인 것	0	EIF	
8414802200	- - - 동력이 30킬로와트(40마력) 이상 262.5킬로와트(352마력) 미만인 것	0	EIF	
8414802300	- - - 동력이 262.5킬로와트(352마력) 이상인 것	0	EIF	
8414809000	- - 기타	0	EIF	
8414901000	- - 압축기의 것	0	EIF	
8414909000	- - 기타	0	EIF	
8415101000	- - 시간당 30,000비티유 이하인 냉장 유닛을 장착한 것	0	EIF	
8415109000	- - 기타	0	EIF	
8415200000	-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415811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 이하인 냉장 유닛을 장착한 것	0	EIF	
8415819000	- - - 기타	0	EIF	
8415822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 이하인 것	0	EIF	
8415823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 초과 240,000비티유 이하인 것	0	EIF	
8415824000	- - - 시간당 240,000비티유 초과인 것	0	EIF	
8415831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 이하인 것	0	EIF	
8415839000	- - - 기타	0	EIF	
8415900000	- 부분품	0	EIF	
8416100000	- 액체연료용 노용 버너	0	EIF	
8416201000	- - 분쇄한 고체연료용 노용 버너	0	EIF	
8416202000	- - 가스용 노용 버너	0	EIF	
8416203000	- - 콤비네이션 버너	0	EIF	
8416300000	- 기계식 스토커(그들의 기계식 불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0	EIF	
8416900000	- 부분품	0	EIF	
8417100000	- 배소,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 노와 오븐(광석, 황철강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417201000	- - 터널오븐	0	EIF	
8417209000	- - 기타	0	EIF	
8417802000	- - 도자제품용 노	0	EIF	
8417803000	- - 이화학용 노	0	EIF	
8417809000	- - 기타	0	EIF	
8417900000	- 부분품	0	EIF	
8418101000	- - 용량이 184리터 미만인 것	17	10	
8418102000	- - 용량이 184리터 이상 269리터 미만인 것	17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18103000	- - 용량이 269리터 이상 382리터 미만인 것	17	10	
8418109000	- - 기타	17	10	
8418211000	- - - 용량이 184리터 미만인 것	17	10	
8418212000	- - 용량이 184리터 이상 269리터 미만인 것	17	10	
8418213000	- - 용량이 269리터 이상 382리터 미만인 것	17	10	
8418219000	- - - 기타	17	10	
8418291000	- - -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17	5	
8418299000	- - - 기타	17	10	
8418300000	- चेस्ट형의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10	
8418400000	- 직립형의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7	10	
8418500000	-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용 기타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0	EIF	
8418610000	-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0	EIF	
8418691100	- - - - 압축식의 것	0	EIF	
8418691200	- - - - 흡수식의 것	0	EIF	
8418699100	- - - - 제빙기	0	EIF	
8418699200	- - - - 분수식 식수대	0	EIF	
8418699300	- - - - 분해될 수 있는 패널로 구성된 챔버 또는 터널(냉장 장치를 포함한다)	0	EIF	
8418699400	- - - - 화물운송 차량용 냉장 유닛	0	EIF	
8418699900	- - - - 기타	0	EIF	
8418910000	- - 냉장 또는 냉동 장치를 넣도록 고안된 가구	0	EIF	
8418991000	- - - 플레이트 증발기	0	EIF	
8418992000	- - - 응축기	0	EIF	
8418999010	- - - - 부분품(소호 제8418.91.00호의 가구의 것에 한한다)	17	10	
8418999090	- - - - 기타	0	EIF	
8419110000	- -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17	10	
8419191000	- - - 용량이 120리터 이하인 것	9	10	
8419199000	- - - 기타	9	10	
8419200000	-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 살균기	0	EIF	
8419310000	- - 농산물용의 것	0	EIF	
8419320000	- - 목재,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용의 것	0	EIF	
8419391000	- - - 이화학용 동결건조 장치 또는 동결건조기	0	EIF	
8419392000	- - - 스프레이 드라이 유닛	0	EIF	
8419399100	- - - - 광물용의 것	0	EIF	
8419399900	- - - - 기타	0	EIF	
8419400000	- 증류기 또는 정류기	0	EIF	
8419501000	- - 저온살균기	0	EIF	
8419509000	- - 기타	0	EIF	
8419600000	- 공기 또는 기타 가스 액화용 기계	0	EIF	
8419810000	- -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0	EIF	
8419891000	- - - 가압처리기	0	EIF	
8419899100	- - - - 증발기	0	EIF	
8419899200	- - - - 배소기	0	EIF	
8419899300	- - - - 살균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19899900	- - - - 기타	0	EIF	
8419901000	- - 물가열기의 것	0	EIF	
8419909000	- - 기타	0	EIF	
8420101000	- - 제빵, 제과 및 비스킷 산업용의 것	0	EIF	
8420109000	- - 기타	0	EIF	
8420910000	- - 실린더	0	EIF	
8420990000	- - 기타	0	EIF	
8421110000	- - 크림분리기	0	EIF	
8421120000	- - 의류탈수기	0	EIF	
8421191000	- - - 이화학용의 것	0	EIF	
8421192000	- - - 제당산업용의 것	0	EIF	
8421193000	- - - 종이 및 셀룰로오스 산업용의 것	0	EIF	
8421199000	- - - 기타	0	EIF	
8421211000	- - - 가정용의 것	9	10	
8421219000	- - - 기타	0	EIF	
8421220000	- - 물을 제외한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0	EIF	
8421230000	-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0	EIF	
8421291000	- - - 압착식 여과기	0	EIF	
8421292000	- - - 자기(磁氣)식 및 전자기식 여과기	0	EIF	
8421293000	- - - 제9018호의 의학 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여과기	0	EIF	
8421294000	- - - 격자형의 관형 여과기(추출 샤프트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421299000	- - - 기타	0	EIF	
8421310000	- -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0	EIF	
8421391000	- - - 사이클론형의 것	0	EIF	
8421392000	- - - 공기 또는 기타 가스용 정전기식 여과기	0	EIF	
8421399000	- - - 기타	0	EIF	
8421910000	- - 원심분리기의 것(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	EIF	
8421991000	- - - 엔진 필터용 필터링 부품	0	EIF	
8421999000	- - - 기타	0	EIF	
8422110000	- - 가정용의 것	17	5	
8422190000	- - 기타	0	EIF	
8422200000	-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병 또는 기타 용기의 것에 한한다)	0	EIF	
8422301000	- - 수직 충전기(생산량이 1분당 40개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8422309000	- - 기타	0	EIF	
8422401000	- - 사전 포장된 상품용 포장 기계	0	EIF	
8422402000	- - 진공 포장 기계	0	EIF	
8422403000	- - 담배 포장 기계	0	EIF	
8422409000	- - 기타	0	EIF	
8422900000	- 부분품	0	EIF	
8423100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0	EIF	
842320000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0	EIF	
8423301000	- - 시멘트, 아스팔트 및 이와 유사한 물질용 저울	0	EIF	
8423309000	- - 기타	0	EIF	
8423810010	- - - 다목적 또는 특수목적용의 것	0	EIF	
8423810090	- - - 기타	0	EIF	
8423821000	- - - 차량무게 측정용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23829010	- - - 다목적 또는 특수목적용의 것	0	EIF	
8423829090	- - - 기타	0	EIF	
8423891000	- - - 차량무게 측정용의 것	0	EIF	
8423899010	- - - 다목적 또는 특수목적용의 것	0	EIF	
8423899090	- - - 기타	0	EIF	
8423900000	-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0	EIF	
842410000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424200000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0	EIF	
8424300000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0	EIF	
8424812000	- - - 휴대용 기기(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EIF	
8424813100	- - - 드립 또는 분무기	0	EIF	
8424813900	- - - 기타	0	EIF	
8424819000	- - - 기타	0	EIF	
8424890000	- - 기타	0	EIF	
8424901000	- - 스프링클러 및 점적기(관개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424909000	- - 기타	0	EIF	
8425110000	- - 전동기로 구동되는 것	0	EIF	
8425190000	- - 기타	0	EIF	
8425311000	- - - 갱도에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호이스트 원치; 지하 광산 작업용으로 특수 고안된 원치	0	EIF	
8425319000	- - - 기타	0	EIF	
8425391000	- - - 갱도에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호이스트 원치; 지하 광산 작업용으로 특수 고안된 원치	0	EIF	
8425399000	- - - 기타	0	EIF	
8425410000	- - 차고용 내장 재킹시스템	0	EIF	
8425422000	- - - 휴대용 카잭	0	EIF	
8425429000	- - - 기타	0	EIF	
8425491000	- - - 휴대용 카잭	0	EIF	
8425499000	- - - 기타	0	EIF	
8426110000	- -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0	EIF	
8426121000	-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EIF	
8426122000	- - - 스트래들 캐리어	0	EIF	
8426190000	- - 기타	0	EIF	
8426200000	- 타워크레인	0	EIF	
8426300000	-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0	EIF	
8426411000	- - -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0	EIF	
8426419000	- - - 기타	0	EIF	
8426490000	- - 기타	0	EIF	
8426910000	-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고안된 것	0	EIF	
8426991000	- - - 크레인 및 공기 케이블	0	EIF	
8426992000	- - - 데릭 크레인	0	EIF	
8426999000	- - - 기타	0	EIF	
8427100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0	EIF	
8427200000	- 기타 자주식 트럭	0	EIF	
8427900000	- 기타 트럭	0	EIF	
8428101000	- - 케이지 또는 균형추가 없는 것	0	EIF	
8428109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28200000	-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0	EIF	
8428310000	- - 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된 것	0	EIF	
8428320000	- - 기타(버켓형의 것에 한한다)	0	EIF	
8428330000	- - 기타(벨트형의 것에 한한다)	0	EIF	
8428390000	- - 기타	0	EIF	
8428400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0	EIF	
8428600000	-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0	EIF	
8428901000	- -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장비	0	EIF	
8428909000	- - 기타	0	EIF	
8429110000	- - 무한 궤도식의 것	0	EIF	
8429190000	- - 기타	0	EIF	
8429200000	- 그레이더와 레벨러	0	EIF	
8429300000	- 스크레이퍼	0	EIF	
8429400000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0	EIF	
8429510000	- - 셔블로더 및 프론트로더	0	EIF	
8429520000	-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0	EIF	
8429590000	- - 기타	0	EIF	
8430100000	- 향타기와 향발기	0	EIF	
8430200000	-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0	EIF	
8430310000	- - 자주식의 것	0	EIF	
8430390000	- - 기타	0	EIF	
8430410000	- - 자주식의 것	0	EIF	
8430490000	- - 기타	0	EIF	
8430500000	- 기타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0	EIF	
8430611000	- - - 로드롤러	0	EIF	
8430619000	- - - 기타	0	EIF	
8430691000	- - - 스크레이퍼	0	EIF	
8430699000	- - - 기타	0	EIF	
8431101000	- -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원치 및 캡스턴의 것	0	EIF	
8431109000	- - 기타	0	EIF	
843120000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0	EIF	
8431310000	- -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	EIF	
8431390000	- - 기타	0	EIF	
8431410000	- - 버켓, 셔블, 그랩과 그립	0	EIF	
8431420000	- -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0	EIF	
8431431000	- - - 로커 암	0	EIF	
8431439000	- - - 기타	0	EIF	
8431490000	- - 기타	0	EIF	
8432100000	- 플라우(쟁기)	0	EIF	
84322100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EIF	
8432291000	- - - 기타 하로우(쇄토기) 및 파쇄기	0	EIF	
8432292000	- - - 컬티베이터(중경기), 제초기와 호우	0	EIF	
8432300000	- 파종기, 식부기와 이식기	0	EIF	
8432400000	-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0	EIF	
8432800000	- 기타 기계	0	EIF	
8432901000	- - 코울터와 디스크	0	EIF	
8432909000	-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33111000	- - - 자주식의 것	0	EIF	
8433119000	- - - 기타	0	EIF	
8433191000	- - - 자주식의 것	17	3	
8433199000	- - - 기타	17	3	
8433200000	- 기타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를 포함한다)	0	EIF	
8433300000	- 기타 건조제조용 기계	0	EIF	
8433400000	- 짚 또는 건조용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0	EIF	
8433510000	- - 수확, 탈곡 겸용기	0	EIF	
8433520000	- - 기타 탈곡기	0	EIF	
8433530000	- -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0	EIF	
8433591000	- - - 수확 기계	0	EIF	
8433592000	- - - 옥수수 탈곡기	0	EIF	
8433599000	- - - 기타	0	EIF	
8433601000	- - 조란용의 것	0	EIF	
8433609000	- - 기타	0	EIF	
8433901000	- -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의 것	9	EIF	
8433909000	- - 기타	0	EIF	
8434100000	- 착유기	0	EIF	
8434200000	- 낙농기계	0	EIF	
8434901000	- - 착유기의 것	0	EIF	
8434909000	- - 기타	0	EIF	
8435100000	- 기계	0	EIF	
8435900000	- 부분품	0	EIF	
84361000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0	EIF	
8436210000	- - 부란기와 양육기	0	EIF	
8436291000	- - - 자동 급이기(給餌器), 자동 급수기	0	EIF	
8436292000	- - - - 산란 및 채란 시스템	0	EIF	
8436299000	- - - 기타	0	EIF	
8436801000	- - 비료 배합기 및 파쇄기	0	EIF	
8436809000	- - 기타	0	EIF	
8436910000	- -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0	EIF	
8436990000	- - 기타	0	EIF	
8437101100	- - - 색 분류기	0	EIF	
8437101900	- - - 기타	0	EIF	
8437109000	- - 기타	0	EIF	
8437801100	- - - 곡물용의 것	0	EIF	
8437801900	- - - 기타	0	EIF	
8437809100	- - - 쌀 가공용의 것	0	EIF	
8437809200	- - - 밀가루 및 기타 제분제품 분류 및 분리용의 것	0	EIF	
8437809300	- - - 곡물 연마용의 것	0	EIF	
8437809900	- - - 기타	0	EIF	
8437900000	- 부분품	0	EIF	
8438101000	- - 베이커리 기계	0	EIF	
8438102000	- - 마카로니, 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식품 제조용 기계	0	EIF	
8438201000	- - 과자 제조용의 것	0	EIF	
8438202000	- - 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것	0	EIF	
8438300000	- 설탕 제조용 기계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38400000	- 양조용 기계	0	EIF	
8438501000	- - 가금용 자동가공장치	0	EIF	
8438509000	- - 기타	0	EIF	
8438600000	- 과일, 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0	EIF	
8438801000	- - 커피용 허스킹머신 및 펄핑머신	0	EIF	
8438802000	- -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갑각무척추동물 가공용 기계	0	EIF	
8438809000	- - 기타	0	EIF	
8438900000	- 부분품	0	EIF	
8439100000	-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제의 펄프 제조용 기계	0	EIF	
8439200000	- 지 또는 판지 제조용 기계	0	EIF	
8439300000	- 지 또는 판지 완성가공용 기계	0	EIF	
8439910000	- -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제의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	EIF	
8439990000	- - 기타	0	EIF	
8440100000	- 기계	0	EIF	
8440900000	- 부분품	0	EIF	
8441100000	- 절단기	0	EIF	
8441200000	- 종이백, 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0	EIF	
8441300000	- 카톤, 박스, 케이스, 튜브,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0	EIF	
8441400000	-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 제품 몰딩용 기계	0	EIF	
8441800000	- 기타 기계	0	EIF	
8441900000	- 부분품	0	EIF	
8442301000	- - 사진 식자기	0	EIF	
8442302000	- - 기타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 장치 및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442309000	- - 기타	0	EIF	
8442400000	- 전술한 기계, 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0	EIF	
8442501000	- - 인쇄용 활자	0	EIF	
8442509000	- - 기타	0	EIF	
8443110000	- -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에 한한다)	0	EIF	
8443120000	- - 오프셋 인쇄기계(쉬트식의 것, 사무실용의 것으로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이며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EIF	
8443130000	- -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0	EIF	
84431400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4431500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443160000	- - 곡면인쇄용 기계	0	EIF	
8443170000	- -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0	EIF	
8443191000	- - - 스탬핑용의 것	0	EIF	
8443199000	- - - 기타	0	EIF	
8443310000	-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0	EIF	
8443320000	- -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43391000	- - - 잉크젯방식 인쇄기	0	EIF	
8443392000	- - - 팩시밀리	0	EIF	
8443399000	- - - 기타	0	EIF	
8443910000	- - 제8442호의 플레이트,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8443990000	- - 기타	0	EIF	
8444000000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의 방사, 연신, 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0	EIF	
8445110000	- - 카드기	0	EIF	
8445120000	- - 코움기	0	EIF	
8445130000	- - 연조기 또는 조방기	0	EIF	
8445191000	- - - 조면기	0	EIF	
8445199000	- - - 기타	0	EIF	
8445200000	- 방직기계	0	EIF	
8445300000	- 합사기 또는 연사기	0	EIF	
8445400000	-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0	EIF	
8445900000	- 기타	0	EIF	
844610000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조용의 것	0	EIF	
84462100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0	EIF	
8446290000	- - 기타	0	EIF	
8446300000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직조용의 것(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0	EIF	
84471100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84471200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8447201000	- - 횡편기(가정용의 것에 한한다)	17	EIF	
8447202000	- - 기타 횡편기	0	EIF	
8447203000	- - 스티치 분당기	0	EIF	
8447900000	- 기타	0	EIF	
8448110000	- -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에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 복사,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0	EIF	
8448190000	- - 기타	0	EIF	
8448200000	- 제8444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8448310000	- - 침포	0	EIF	
8448321000	- - - 조면기의 것	0	EIF	
8448329000	- - - 기타	0	EIF	
8448330000	- - 스피들, 스피들플라이어,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0	EIF	
8448390000	- - 기타	0	EIF	
8448420000	- - 직조기용 바디, 종광과 종광 프레임	0	EIF	
8448490000	- - 기타	0	EIF	
8448510000	-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바늘과 기타 물품	0	EIF	
8448590000	- - 기타	0	EIF	
8449001000	- 기계; 모자제조용 블록	0	EIF	
8449009000	- 부분품	0	EIF	
8450110000	- - 완전자동식 기계	17	4	
8450120000	- - 기타 기계(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17	4	
8450190000	- - 기타	17	5	
8450200000	- 기계(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0	EIF	
8450900000	- 부분품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51100000	- 드라이클리닝기	0	EIF	
8451210000	-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IF	
8451290000	- - 기타	0	EIF	
845130000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0	EIF	
8451401000	- - 세척기	0	EIF	
8451409000	- - 기타	0	EIF	
8451500000	- 직물 권취기, 재권취기, 접음기, 절단기 또는 핑킹기	0	EIF	
8451800000	- 기타 기계	0	EIF	
8451900000	- 부분품	0	EIF	
8452101000	- - 재봉기의 헤드	17	EIF	
8452102000	- - 재봉기	17	EIF	
8452210000	- - 자동식의 유닛	0	EIF	
8452290000	- - 기타	0	EIF	
8452300000	- 재봉기용 바늘	0	EIF	
8452400000	- 재봉기용 가구, 밀판과 덮개 및 그 부분품	0	EIF	
8452900000	-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0	EIF	
8453100000	-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 유평기 또는 가공기계	0	EIF	
8453200000	-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	0	EIF	
8453800000	- 기타 기계	0	EIF	
8453900000	- 부분품	0	EIF	
8454100000	- 전로	0	EIF	
8454200000	- 잉곳용 주형과 레이들	0	EIF	
8454300000	- 주조기	0	EIF	
8454900000	- 부분품	0	EIF	
8455100000	- 관 압연기	0	EIF	
8455210000	- - 열간 또는 열간 및 냉간 겸용의 것	0	EIF	
8455220000	- - 냉간의 것	0	EIF	
8455300000	- 압연기용 롤	0	EIF	
8455900000	- 기타 부분품	0	EIF	
8456100000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0	EIF	
8456200000	- 초음파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0	EIF	
8456300000	-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0	EIF	
8456900000	- 기타	0	EIF	
8457100000	- 머시닝센터	0	EIF	
8457200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0	EIF	
8457300000	- 멀티스테이션용 트랜스퍼 머신	0	EIF	
8458111000	- - - 만능 슬라이드 선반	0	EIF	
8458112000	- - - - 터릿 선반	0	EIF	
8458119000	- - - 기타	0	EIF	
8458191000	- - - 만능 슬라이드 선반	0	EIF	
8458192000	- - - 터릿 선반	0	EIF	
8458193000	- - - 기타(자동식의 것에 한한다)	0	EIF	
8458199000	- - - 기타	0	EIF	
84589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58990000	- - 기타	0	EIF	
8459101000	- - 드릴링용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59102000	- - 보링용의 것	0	EIF	
8459103000	- - 밀링용의 것	0	EIF	
8459104000	- - 드레딩용 또는 태핑용의 것	0	EIF	
84592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59290000	- - 기타	0	EIF	
84593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59390000	- - 기타	0	EIF	
8459400000	- 기타 보링머신	0	EIF	
84595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59590000	- - 기타	0	EIF	
84596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59690000	- - 기타	0	EIF	
8459700000	- 기타 드레딩 또는 태핑머신	0	EIF	
84601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0190000	- - 기타	0	EIF	
84602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0290000	- - 기타	0	EIF	
84603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0390000	- - 기타	0	EIF	
8460400000	- 호닝 또는 래핑머신	0	EIF	
8460901000	- - 연삭기	0	EIF	
8460909000	- - 기타	0	EIF	
8461200000	- 웨이핑 또는 슬로팅머신	0	EIF	
8461300000	- 부로칭머신	0	EIF	
8461400000	-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0	EIF	
8461500000	- 톱기계 또는 절단기	0	EIF	
8461901000	- - 플레이닝머신	0	EIF	
8461909000	- - 기타	0	EIF	
8462101000	- - 해머	0	EIF	
8462102100	- - - 프레스	0	EIF	
8462102900	- - - 기타	0	EIF	
84622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2291000	- - - 프레스	0	EIF	
8462299000	- - - 기타	0	EIF	
84623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2391000	- - - 프레스	0	EIF	
8462399000	- - - 기타	0	EIF	
84624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2491000	- - - 프레스	0	EIF	
8462499000	- - - 기타	0	EIF	
8462910000	- - 유압식 프레스	0	EIF	
8462990000	- - 기타	0	EIF	
8463101000	- - 철사 제조기	0	EIF	
8463109000	- - 기타	0	EIF	
8463200000	- 나사 전조기	0	EIF	
8463300000	- 선가공기	0	EIF	
8463901000	- - 리베팅 기계	0	EIF	
8463909000	- - 기타	0	EIF	
8464100000	- 톱기계	0	EIF	
8464200000	- 연마기 또는 광택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64900000	- 기타	0	EIF	
8465100000	- 다(多) 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多)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8465911000	-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5919100	- - - - 원형톱	0	EIF	
8465919200	- - - - 띠톱	0	EIF	
8465919900	- - - - 기타	0	EIF	
8465921000	-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5929000	- - - 기타	0	EIF	
8465931000	-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5939000	- - - 기타	0	EIF	
8465941000	-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5949000	- - - 기타	0	EIF	
8465951000	-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5959000	- - - 기타	0	EIF	
8465960000	- - 분할기, 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0	EIF	
8465991000	- - - 수치제어식의 것	0	EIF	
8465999000	- - - 기타	0	EIF	
8466100000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0	EIF	
8466200000	- 가공 홀더	0	EIF	
8466300000	- 분할대와 공작기계용 기타 특수부착물	0	EIF	
8466910000	- -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0	EIF	
8466920000	- - 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0	EIF	
8466930000	- - 제8456호에서 제8461호의 기계용의 것	0	EIF	
8466940000	- - 제8462호에서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0	EIF	
8467111000	- - - 드릴, 보어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8467112000	- - - 렌치, 스크루드라이버, 너트 세트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8467119000	- - - 기타	0	EIF	
8467191000	- - - 컴팩팅 래머	0	EIF	
8467192000	- - - 콘크리트 진동기	0	EIF	
8467199000	- - - 기타	0	EIF	
8467210000	- - 각종 드릴	0	EIF	
8467220000	- - 톱	0	EIF	
8467290000	- - 기타	0	EIF	
8467810000	- - 체인톱	0	EIF	
8467891000	- - - 톱(체인톱은 제외한다)	0	EIF	
8467899000	- - - 기타	0	EIF	
8467910000	- - 체인톱의 것	0	EIF	
84679200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0	EIF	
8467990000	- - 기타	0	EIF	
8468100000	- 수지식 취관	0	EIF	
8468201000	-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것(절단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0	EIF	
8468209000	- - 기타	0	EIF	
8468800000	- 기타 기기	0	EIF	
8468900000	- 부분품	0	EIF	
8469001000	- 전동식 타자기	0	EIF	
8469009000	- 기타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70100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없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 재생 및 표시기	0	EIF	
84702100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EIF	
8470290000	- - 기타	0	EIF	
8470300000	- 기타 계산기	0	EIF	
8470500000	- 금전 등록기	0	EIF	
8470901000	- - 우편요금계기	0	EIF	
8470902000	- - 표권 발행기	0	EIF	
8470909000	- - 기타	0	EIF	
8471300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8471410000	- - 동일 하우징 속에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및 입력 및 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471490000	- -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0	EIF	
847150000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471602000	- - 키보드, 엑스-와이 좌표장치	0	EIF	
8471609000	- - 기타	0	EIF	
8471700000	- 기억장치	0	EIF	
847180000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	EIF	
8471900000	- 기타	0	EIF	
8472100000	- 등사기	0	EIF	
8472300000	-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점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 봉합기 또는 봉인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0	EIF	
8472901000	- - 주화 또는 은행권 계산기 또는 분류기	0	EIF	
8472902000	- - 자동현금지급기	0	EIF	
8472903000	- - 수표 확인기	0	EIF	
8472904000	- - 천공기 또는 지철기	0	EIF	
8472905000	- - 현금지급기	0	EIF	
8472909000	- - 기타	0	EIF	
8473100000	- 제8469호의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0	EIF	
8473210000	- -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의 전자 계산기의 것	0	EIF	
8473290000	- - 기타	0	EIF	
8473300000	- 제8471호의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0	EIF	
8473401000	- - 등사기의 것	0	EIF	
8473409000	- - 기타	0	EIF	
8473500000	- 제8469호에서 제8472호의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8474101000	- - 주조용의 스트리퍼 스크리닝기	0	EIF	
8474102000	- - 진동식 체	0	EIF	
8474109000	- - 기타	0	EIF	
8474201000	- - 회전식 콘 파쇄기	0	EIF	
8474202000	- - 충격 파쇄기	0	EIF	
8474203000	- - 링 파쇄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74209000	- - 기타	0	EIF	
8474311000	- - - 최대 용량이 3세제곱미터인 것	0	EIF	
8474319000	- - - 기타	0	EIF	
8474320000	- -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0	EIF	
8474391000	- - - 도자기 산업용 특수 기계	0	EIF	
8474392000	- - - 주물용 모래 믹서	0	EIF	
8474399000	- - - 기타	0	EIF	
8474801000	- - 도자기 페이스트의 조괴기, 형입기 또는 성형기	0	EIF	
8474802000	- - 주물사 성형기	0	EIF	
8474803000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성형기	0	EIF	
8474809000	- - 기타	0	EIF	
8474900000	- 부분품	0	EIF	
8475100000	-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 전구(유리 외피의 것에 한한다)용 조립기계	0	EIF	
8475210000	- - 광섬유 및 그 예비 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0	EIF	
8475290000	- - 기타	0	EIF	
8475900000	- 부분품	0	EIF	
8476210000	-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EIF	
8476290000	- - 기타	0	EIF	
8476810000	-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EIF	
8476890000	- - 기타	0	EIF	
8476900000	- 부분품	0	EIF	
8477100000	- 사출 성형기	0	EIF	
8477200000	- 압출기	0	EIF	
8477300000	- 취입 성형기	0	EIF	
8477400000	- 진공성형기 및 기타 열성형기	0	EIF	
8477510000	- - 공기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 이너튜브 성형기	0	EIF	
8477591000	- - - 압축 성형 유압식 프레스	0	EIF	
8477599000	- - - 기타	0	EIF	
8477800000	- 기타 기계	0	EIF	
8477900000	- 부분품	0	EIF	
8478101000	- - 담배 필터 부착 기계	0	EIF	
8478109000	- - 기타	0	EIF	
8478900000	- 부분품	0	EIF	
8479100000	- 토목공사,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	0	EIF	
8479201000	- - 추출용 기계	0	EIF	
8479209000	- - 기타	0	EIF	
8479300000	-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재료의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 기계	0	EIF	
8479400000	-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0	EIF	
8479500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8479600000	- 증발식 에어컨	0	EIF	
8479810000	-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0	EIF	
8479820000	- -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기계식 체, 시프팅기, 균질기, 유화기 또는 교반기	0	EIF	
8479891000	- - - 비누 산업용 기계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79892000	- - - 가습기 또는 제습기(제8415호 또는 제8424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479893000	- - - 기계용 자동 펌프 운할 시스템	0	EIF	
8479894000	- - -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비유연 파이프 유지용의 것	0	EIF	
8479895000	- - - 모터가 있는 윈드실드 와이핑 장치	0	EIF	
8479898000	- - - 프레스	0	EIF	
8479899000	- - - 기타	0	EIF	
8479900000	- 부분품	0	EIF	
8480100000	- 금속구조용의 주형틀	0	EIF	
8480200000	- 주형 베이스	0	EIF	
8480300000	- 주형 제조용의 모형	0	EIF	
8480410000	-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0	EIF	
8480490000	- - 기타	0	EIF	
8480500000	- 유리 성형용의 주형	0	EIF	
8480600000	-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0	EIF	
8480711000	- - 면도기 부분품인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사출식 또는 압축식 주형	0	EIF	
8480719000	-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사출식 또는 압축식 기타 주형	0	EIF	
8480790000	- - 기타	0	EIF	
8481100010	- - 관개용으로 특수설계된 것	0	EIF	
8481100090	- - 기타	17	5	
8481200010	- - 관개용으로 특수설계된 것	0	EIF	
8481200090	- - 기타	0	EIF	
8481300010	- - 관개용으로 특수설계된 것	0	EIF	
8481300090	- - 기타	17	10	
8481400010	- - 관개용으로 특수설계된 것	0	EIF	
8481400090	- - 기타	0	EIF	
8481801000	- - 가정용 수도꼭지	0	EIF	
8481802000	- - 크리스마스 트리 밸브	9	EIF	
8481803000	- - 타이어 밸브	0	EIF	
8481804000	- - 볼 밸브	9	EIF	
8481805100	- - - 작동압력이 13.8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EIF	
8481805900	- - - 기타	0	EIF	
8481806000	- - 기타 게이트 밸브	0	EIF	
8481807000	- - 공칭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글로브 밸브	0	EIF	
8481808000	- - 기타 솔레노이드 밸브	0	EIF	
8481809100	- - - 디스펜서 밸브	0	EIF	
8481809900	- - - 기타	0	EIF	
8481901000	- - 크리스마스 트리 밸브의 바디	0	EIF	
8481909000	- - 기타	0	EIF	
8482100000	- 볼베어링	0	EIF	
8482200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원추형 롤러조립품을 포함한다)	0	EIF	
8482300000	- 구형 롤러베어링	0	EIF	
8482400000	- 니들 롤러베어링	0	EIF	
8482500000	- 기타 원통형 롤러베어링	0	EIF	
8482800000	- 기타(볼베어링/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EIF	
8482910000	- - 볼, 니들 및 롤러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482990000	- - 기타	0	EIF	
84831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EIF	
8483109100	- - - 크랭크 샤프트	9	EIF	
8483109200	- - - 캠 샤프트	9	EIF	
8483109300	- - - 플렉시블 샤프트	9	EIF	
8483109900	- - - 기타	0	EIF	
848320000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0	EIF	
84833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EIF	
8483309000	- - 기타	0	EIF	
8483403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EIF	
8483409100	- - - 기어박스 및 기타 변속기	0	EIF	
8483409200	- - -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별도로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9	EIF	
8483409900	- - - 기타	9	EIF	
8483500000	-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9	EIF	
8483601000	- - 클러치	0	EIF	
8483609000	- - 기타	0	EIF	
8483904000	-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별도로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9	EIF	
8483909000	- - 부분품	9	EIF	
8484100000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9	10	
8484200000	- 메커니컬 실	0	EIF	
8484900000	- 기타	9	10	
848610000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EIF	
848620000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EIF	
848630000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EIF	
8486400000	- 제84류의 주 제9호다목에 열거된 기계와 기기	0	EIF	
8486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8487100000	-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	0	EIF	
8487901000	- - 비자동 윤활 포트	0	EIF	
8487902000	- - 오일 실 링	0	EIF	
8487909000	- - 기타	0	EIF	
8501101000	- - 장난감용 모터	9	EIF	
8501102000	-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0	EIF	
8501109100	- - - 직류	0	EIF	
8501109200	- - - 교류(단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8501109300	- - - 교류(다상의 것에 한한다)	0	EIF	
85012011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201900	- - - 기타	0	EIF	
85012021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202900	- - - 기타	0	EIF	
85013110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312000	- - - 기타 전동기	0	EIF	
8501313000	- - - 직류발전기	0	EIF	
85013210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322100	-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01322900	- - - 기타	0	EIF	
8501324000	- - - 직류발전기	0	EIF	
85013310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332000	- - - 기타 전동기	0	EIF	
8501333000	- - - 직류발전기	0	EIF	
85013410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342000	- - - 기타 전동기	0	EIF	
8501343000	- - - 직류발전기	0	EIF	
85014011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401900	- - - 기타	0	EIF	
85014021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402900	- - - 기타	0	EIF	
85014031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403900	- - - 기타	0	EIF	
85014041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404900	- - - 기타	0	EIF	
8501511000	- -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0	EIF	
8501519000	- - - 기타	0	EIF	
8501521000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501522000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8.5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501523000	- - - 출력이 18.5킬로와트 초과 3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501524000	- - - 출력이 30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IF	
8501530000	-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인 것	0	EIF	
8501611000	- - - 출력이 18.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1612000	- - - 출력이 18.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1619000	- - - 기타	0	EIF	
85016200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16300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1640000	-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인 것	0	EIF	
8502111000	- - - 교류의 것	0	EIF	
8502119000	- - - 기타	0	EIF	
8502121000	- - - 교류의 것	0	EIF	
8502129000	- - - 기타	0	EIF	
8502131000	- - - 교류의 것	0	EIF	
8502139000	- - - 기타	0	EIF	
8502201000	- - 교류의 것	0	EIF	
8502209000	- - 기타	0	EIF	
8502310000	- - 풍력의 것	0	EIF	
8502391000	- - - 교류의 것	0	EIF	
8502399000	- - - 기타	0	EIF	
8502400000	- 전기 회전변환기	0	EIF	
85030000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EIF	
8504100000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0	EIF	
8504211100	- -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04211900	- - - 기타	0	EIF	
8504219000	- - - 기타	0	EIF	
8504221000	-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4229000	- - - 기타	0	EIF	
8504230000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인 것	0	EIF	
8504311000	- - - 용량이 0.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4319000	- - - 기타	0	EIF	
8504321000	-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4329000	- - - 기타	0	EIF	
8504330000	-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4341000	- -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4342000	- -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04343000	-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인 것	0	EIF	
8504401000	- - 파워서플라이유닛(무정전전원장치)	0	EIF	
8504402000	- - 전기 시동 장치	0	EIF	
8504409000	- - 기타	0	EIF	
8504501000	- - 전압 260볼트 이하용의 것 및 공칭 전류 30암페어 이하용의 것	0	EIF	
8504509000	- - 기타	0	EIF	
8504900000	- 부분품	0	EIF	
8505110000	- - 금속제의 것	0	EIF	
8505191000	- - -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자석 가스켓	0	EIF	
8505199000	- - - 기타	0	EIF	
8505200000	-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0	EIF	
8505901000	- - 전자석	0	EIF	
8505902000	- - 척,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홀딩 장치	0	EIF	
8505903000	- - 전자석 리프팅 헤드	0	EIF	
8505909000	- - 부분품	0	EIF	
8506101100	- - - 원통 형태인 것	9	5	
8506101200	- - - 버튼 형태의 전지	9	5	
8506101900	- - - 기타	9	5	
8506109100	- - - 원통 형태인 것	9	10	
8506109200	- - - 버튼 형태의 전지	9	5	
8506109900	- - - 기타	9	5	
8506301000	- - 원통 형태인 것	9	EIF	
8506302000	- - 버튼 형태의 전지	9	EIF	
8506309000	- - 기타	9	EIF	
8506401000	- - 원통 형태인 것	9	EIF	
8506402000	- - 버튼 형태의 전지	9	EIF	
8506409000	- - 기타	9	EIF	
8506501000	- - 원통 형태인 것	9	EIF	
8506502000	- - 버튼 형태의 전지	9	EIF	
8506509000	- - 기타	9	EIF	
8506601000	- - 원통 형태인 것	9	EIF	
8506602000	- - 버튼 형태의 전지	9	EIF	
8506609000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06801000	- - 원통 형태인 것	9	EIF	
8506802000	- - 버튼 형태의 전지	9	EIF	
8506809000	- - 기타	9	5	
8506900000	- 부분품	9	5	
850710000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 축전지	9	10	
8507200000	- 기타 연산(鉛酸) 축전지	9	10	
8507300000	- 니켈-카드뮴 축전지	9	10	
8507400000	- 니켈-철 축전지	9	10	
8507800000	- 기타 축전지	9	10	
8507901000	- - 상자 및 덮개	9	10	
8507902000	- - 격리판	9	10	
8507903000	- - 판	9	10	
8507909000	- - 기타	9	10	
8508110000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백 또는 기타 용량이 20리터 이하인 저장조를 갖춘 것	9	5	
8508190000	- - 기타	0	EIF	
8508600000	- 기타 진공청소기	0	EIF	
8508700000	- 부분품	9	EIF	
8509401000	- - 블렌더	9	10	
8509409000	- - 기타	9	10	
8509801000	- - 바닥 광택기	9	10	
8509802000	- -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9	10	
8509809000	- - 기타	9	10	
8509900000	- 부분품	9	5	
8510100000	- 면도기	9	3	
8510201000	- - 이발기	9	3	
8510202000	- - 동물용 이발기	0	EIF	
8510300000	- 모발제거기	9	3	
8510901000	- - 커터 헤드, 커터날, 칼날 및 빗날	9	3	
8510909000	- - 기타	9	3	
85111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EIF	
8511109000	- - 기타	9	5	
85112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3	
8511209000	- - 기타	9	5	
85113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3	
8511309100	- - - 배전기	9	5	
8511309200	- - - 점화코일	9	5	
85114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3	
8511409000	- - 기타	9	5	
85115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EIF	
8511509000	- - 기타	9	5	
8511801000	- - 항공기용 엔진의 것	9	EIF	
8511809000	- - 기타	9	EIF	
8511901000	- - 항공기용 엔진 장비의 것	9	3	
8511902100	- - - 브레이크 플레이트	9	5	
8511902900	- - - 기타	9	5	
8511903000	- - 점화 플러그(항공기 엔진용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9	5	
8511909000	- - 기타	9	5	
85121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12201000	- - 도로의 헤드램프(소호 제 8539.10호의 실드빔 램프는 제외한다)	0	EIF	
8512209000	- - 기타	0	EIF	
8512301000	- - 경음기	0	EIF	
8512309000	- - 기타	0	EIF	
8512400000	- 윈드스크린 와이퍼, 제상기와 제무기	0	EIF	
8512901000	- - 자동차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암 및 블레이드	0	EIF	
8512909000	- - 기타	0	EIF	
8513101000	- - 안전 램프	0	EIF	
8513109000	- - 기타	9	EIF	
8513900000	- 부분품	9	EIF	
8514100000	- 저항가열식 노와 오븐	0	EIF	
8514200000	-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노와 오븐	0	EIF	
8514301000	- - 아크의 것	0	EIF	
8514309000	- - 기타	0	EIF	
8514400000	- 기타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0	EIF	
8514900000	- 부분품	0	EIF	
8515110000	- - 납땜용 인두와 건	0	EIF	
8515190000	- - 기타	0	EIF	
8515210000	-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0	EIF	
8515290000	- - 기타	0	EIF	
8515310000	-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0	EIF	
8515390000	- - 기타	0	EIF	
8515801000	- - 초음파 기계	0	EIF	
8515809000	- - 기타	0	EIF	
8515900000	- 부분품	0	EIF	
8516100000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9	10	
85162100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9	10	
8516291000	- - - 스토브	9	10	
8516299000	- - - 기타	9	10	
8516310000	- - 헤어드라이어	9	10	
8516320000	- - 기타 이용기기	9	EIF	
8516330000	- - 손 건조기	9	10	
8516400000	- 전기다리미	9	10	
8516500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9	EIF	
8516601000	- - 오븐	9	10	
8516602000	- - 쿠키	9	EIF	
8516603000	- - 조리판, 보일링링, 그릴러와 로스터	9	10	
8516710000	- -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9	10	
8516720000	- - 토스터	9	10	
8516790000	- - 기타	9	10	
8516800000	- 전열용 저항체	0	EIF	
8516900000	- 부분품	9	5	
8517110000	- -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8517120000	-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EIF	
8517180000	- - 기타	0	EIF	
8517610000	- - 기지국	0	EIF	
8517621000	- - - 전화 및 전신 교환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17622000	- - - 반송전류라인시스템 또는 디지털라인시스템용의 통신기기	0	EIF	
8517629000	- - - 기타	0	EIF	
8517691000	- - - 영상전화기	0	EIF	
8517692000	- - - 전화 및 전신 수신기기	0	EIF	
8517699000	- - - 기타	0	EIF	
8517700000	- 부분품	0	EIF	
851810000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0	EIF	
8518210000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0	EIF	
8518220000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0	EIF	
8518290000	- - 기타	0	EIF	
851830000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0	EIF	
8518400000	-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0	EIF	
8518500000	- 전기 음향증폭세트	0	EIF	
8518901000	- - 콘, 진동판, 요크	9	EIF	
8518909000	- - 기타	9	EIF	
8519200000	- 코인, 은행권, 은행카드, 토큰 또는 기타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9	EIF	
8519301000	-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9	EIF	
8519309000	- - 기타	9	EIF	
8519500000	- 전화응답기	9	5	
8519811000	- - - 카세트 플레이어	9	EIF	
8519812000	- - - 광학식 판독 시스템이 있는 재생 기기	9	10	
8519819000	- - - 기타	9	EIF	
8519891000	- - - 레코드 플레이어	9	EIF	
8519899000	- - - 기타	9	10	
8521100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9	EIF	
8521901000	- - 콤팩트 디스크 기록에 사용하는 유형의 것	9	EIF	
8521909000	- - 기타	9	EIF	
8522100000	- 픽업 카트리지	9	EIF	
8522902000	- - 가구 또는 박스	9	10	
8522903000	- -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 스타일리(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	5	
8522904000	- - 광학식 판독 시스템이 있는 재생 장치	0	EIF	
8522905000	- - 카세트 재생 장치	0	EIF	
8522909000	- - 기타	0	EIF	
8523210000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갖춘 카드	0	EIF	
8523291000	- - - 마그네틱 디스크	0	EIF	
8523292100	- - - -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8523292200	- - - -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IF	
8523292300	- - - - 폭이 6.5밀리미터 초과인 것	0	EIF	
8523293110	-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IF	
8523293190	- - - - - 기타	9	3	
8523293210	-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IF	
8523293290	- - - - - 기타	9	3	
8523293310	-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IF	
8523293390	- - - - - 기타	9	3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23299000	- - - 기타	0	EIF	
8523401000	- - 기록되지 아니한 것	0	EIF	
8523402100	- - - 음성만을 재생하기 위한 것	0	EIF	
8523402200	- - - 영상 또는 영상 및 음성을 재생하기 위한 것	0	EIF	
8523402900	- - - 기타	0	EIF	
8523510000	- -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	EIF	
8523520000	- - 스마트카드	0	EIF	
8523591000	- - - 근접식 카드 및 태그	0	EIF	
8523599000	- - - 기타	0	EIF	
8523801000	- - 디스크와 왁스 블랭크, 스트립 또는 필름 및 기타 매트릭스와 마스터	0	EIF	
8523802110	- - - - 기록되지 아니한 것	0	EIF	
8523802120	- - - - 기록된 것	9	EIF	
8523802910	- - - - 기록되지 아니한 것	0	EIF	
8523802920	- - - - 기록된 것	9	EIF	
8523803000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IF	
8523809000	- - 기타	0	EIF	
8525501000	- - 라디오 방송용의 것	0	EIF	
8525502000	- - 텔레비전용의 것	0	EIF	
8525601000	- - 라디오 방송용의 것	0	EIF	
8525602000	- - 텔레비전용의 것	0	EIF	
8525801000	- - 텔레비전 카메라	0	EIF	
8525802000	-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0	EIF	
8526100000	- 레이더기기	0	EIF	
8526910000	- - 항행용 무선기기	0	EIF	
8526920000	- - 무선원격조종기기	0	EIF	
85271200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9	EIF	
8527130000	- - 기타 기기(음성기록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9	EIF	
8527190000	- - 기타	9	EIF	
8527210000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9	EIF	
8527290000	- - 기타	9	EIF	
8527910000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9	EIF	
8527920000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9	EIF	
8527990000	- - 기타	9	EIF	
85284100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EIF	
8528490000	- - 기타	9	EIF	
85285100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EIF	
8528590000	- - 기타	9	EIF	
85286100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EIF	
8528690000	- - 기타	9	EIF	
8528710000	- - 비디오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에 장착되기 위해 설계되지 아니한 것	9	EIF	
8528720000	- -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9	EIF	
8528730000	- -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9	EIF	
8529101000	- - 페라이트 안테나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29102000	- - 파라볼라 안테나	0	EIF	
8529109000	- - 기타; 부분품	0	EIF	
8529901000	- - 가구 또는 박스	0	EIF	
8529902000	- - 인쇄된 구성품이 있는 판	0	EIF	
8529909000	- - 기타	0	EIF	
8530100000	- 철도 또는 궤도용 기기	0	EIF	
8530801000	- - 교통신호 및 그 컨트롤 케이스	0	EIF	
8530809000	- - 기타	0	EIF	
8530900000	- 부분품	0	EIF	
8531100000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0	EIF	
8531200000	- 액정표시장치(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된 표시반	0	EIF	
8531800000	- 기타 기기	0	EIF	
8531900000	- 부분품	0	EIF	
8532100000	- 고정식 축전기(50/60헤르츠 회로용으로 설계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에 한한다)(전력용 축전기)	0	EIF	
8532210000	- - 탄탈륨의 것	0	EIF	
85322200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EIF	
85322300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의 것에 한한다)	0	EIF	
85322400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의 것에 한한다)	0	EIF	
8532250000	-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EIF	
8532290000	- - 기타	0	EIF	
8532300000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0	EIF	
8532900000	- 부분품	0	EIF	
853310000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0	EIF	
85332100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EIF	
8533290000	- - 기타	0	EIF	
8533311000	- - - 전압 260볼트 이하 전류 30암페어 이하인 가감저항기	0	EIF	
8533312000	- - - 전위차계	0	EIF	
8533319000	- - - 기타	0	EIF	
8533391000	- - - 전압 260볼트 이하 전류 30암페어 이하인 가감저항기	0	EIF	
8533392000	- - - 기타 가감저항기	0	EIF	
8533393000	- - - 전위차계	0	EIF	
8533399000	- - - 기타	0	EIF	
8533401000	- - 전압 260볼트 이하 전류 30암페어 이하인 가감저항기	0	EIF	
8533402000	- - 기타 가감저항기	0	EIF	
8533403000	- - 탄소 전위차계	0	EIF	
8533404000	- - 기타 전위차계	0	EIF	
8533409000	- - 기타	0	EIF	
8533900000	- 부분품	0	EIF	
8534000000	인쇄회로	0	EIF	
8535100000	- 퓨즈	0	EIF	
8535210000	-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IF	
8535290000	- - 기타	0	EIF	
853530000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35401000	- - 피뢰기 및 전압제한기	0	EIF	
8535402000	- - 서지억제기	0	EIF	
8535901000	- - 스위치	0	EIF	
8535909000	- - 기타	0	EIF	
8536101000	- - 제87류의 차량용 퓨즈	0	EIF	
8536102000	- - 전압 260볼트 이하 전류 30암페어 이하인 기타의 것	0	EIF	
8536109000	- - 기타	0	EIF	
8536202000	- - 전압 260볼트 이하 전류 30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36209000	- - 기타	0	EIF	
8536301100	- - - 전화선 보호용 전극 가스 튜브 피뢰기	0	EIF	
8536301900	- - - 기타	0	EIF	
8536309000	- - 기타	0	EIF	
8536411000	- - -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8536419000	- - - 기타	0	EIF	
8536491100	- - - - 접촉기	0	EIF	
8536491900	- - - - 기타	0	EIF	
8536499000	- - - 기타	0	EIF	
8536501100	- -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0	EIF	
8536501900	- - - 기타	0	EIF	
8536509000	- - 기타	0	EIF	
8536610000	- - 램프 홀더	0	EIF	
8536690000	- - 기타	0	EIF	
8536700000	-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9	EIF	
8536901000	- - 전압 260볼트 이하 전류 30암페어 이하인 연결기기	0	EIF	
8536902000	- - 전압이 24볼트 이하인 전극	0	EIF	
8536909000	- - 기타	0	EIF	
8537101000	- -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0	EIF	
8537109000	- - 기타	0	EIF	
8537200000	- 전압이 1,000볼트 초과인 것	0	EIF	
8538100000	-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 기반(제8537호의 물품용의 것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8538900000	- 기타	0	EIF	
8539100000	- 실드빔 램프유닛	0	EIF	
8539210000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9	EIF	
8539221000	- - - 미니어처형	9	EIF	
8539229000	- - - 기타	0	EIF	
8539291000	- - - 제8512호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 기기(실내 조명 또는 신호용의 것은 제외한다)	9	EIF	
8539292000	- - - 미니어처형	9	EIF	
8539299010	- - - - 무영등	0	EIF	
8539299090	- - - - 기타	9	EIF	
8539311000	- - - 관형의 것(일직선 모양에 한한다)	9	EIF	
8539312000	- - - 관형의 것(원형에 한한다)	9	EIF	
8539313000	- - - 콤팩트(통합한 것과 통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8539319000	- - - 기타	9	EIF	
8539320000	- -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39392000	- - - 플래시 전구	9	EIF	
8539399000	- - - 기타	9	EIF	
8539410000	- - 아크 램프	0	EIF	
8539490000	- - 기타	0	EIF	
8539901000	- - 나사 이음쇠	9	EIF	
8539909000	- - 기타	9	EIF	
8540110000	- - 천연색의 것	9	EIF	
8540120000	- -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9	3	
8540200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 광전관	9	EIF	
8540400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EIF	
8540500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9	EIF	
8540600000	- 기타 음극선관	9	EIF	
8540710000	- - 자전관	9	3	
8540720000	- - 속도변조관	9	EIF	
8540790000	- - 기타	9	EIF	
8540810000	- - 수신관 또는 증폭관	9	EIF	
8540890000	- - 기타	9	EIF	
8540910000	- - 음극선관의 것	9	EIF	
8540990000	- - 기타	9	EIF	
8541100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EIF	
8541210000	- -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0	EIF	
8541290000	- - 기타	0	EIF	
8541300000	- 사이리스터, 다이랙 및 트라이랙(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EIF	
8541401000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된 것인지 또는 패널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541409000	- - 기타	0	EIF	
8541500000	-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	0	EIF	
8541600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EIF	
8541900000	- 부분품	0	EIF	
8542310000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변환기, 논리회로, 증폭기, 클럭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와 결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542320000	- - 메모리	0	EIF	
8542330000	- - 증폭기	0	EIF	
8542390000	- - 기타	0	EIF	
8542900000	- 부분품	0	EIF	
8543100000	- 입자가속기	0	EIF	
8543200000	- 신호발생기	0	EIF	
8543300000	- 전기도금, 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EIF	
8543701000	- - 전기 팬서	0	EIF	
8543702000	- - 금속 감지기	0	EIF	
8543703000	- - 리모콘	0	EIF	
8543709000	- - 기타	0	EIF	
8543900000	- 부분품	0	EIF	
8544110000	- - 동제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544190000	- - 기타	9	EIF	
854420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전기도체	9	EIF	
854430000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9	EIF	
8544421000	- - - 전기통신의 것	0	EIF	
8544422000	- - - 기타(동제의 것에 한한다)	0	EIF	
8544429000	- - - 기타	0	EIF	
8544491010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EIF	
8544491090	- - - - 기타	0	EIF	
8544499010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EIF	
8544499090	- - - - 기타	9	EIF	
8544601000	- - 동제의 것	0	EIF	
8544609000	- - 기타	9	5	
8544700000	- 광섬유 케이블	0	EIF	
8545110000	- - 노용의 것	0	EIF	
8545190000	- - 기타	9	EIF	
8545200000	- 브러시	0	EIF	
8545902000	- - 전지 탄소	0	EIF	
8545909000	- - 기타	9	EIF	
8546100000	- 유리제의 것	0	EIF	
8546200000	- 도자제의 것	0	EIF	
8546901000	- - 실리콘제의 것	0	EIF	
8546909000	- - 기타	9	EIF	
8547101000	- - 점화전 플러그 몸체	9	EIF	
8547109000	- - 기타	9	EIF	
8547200000	-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9	EIF	
8547901000	- - 도관과 그 조인트[절연재료로 속을 덴 비(卑)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	EIF	
8547909000	- - 기타	0	EIF	
8548100000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9	EIF	
8548900000	- 기타	9	EIF	
8601100000	-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EIF	
8601200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	EIF	
8602100000	- 디젤 전기기관차	0	EIF	
8602900000	- 기타	0	EIF	
8603100000	-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EIF	
8603900000	- 기타	0	EIF	
8604001000	- 자주식의 것	0	EIF	
8604009000	- 기타	0	EIF	
86050000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수하물차, 우편차 및 기타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이 아닌 것으로서,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606100000	-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8606300000	-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8606.10호 또는 제8606.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86069100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EIF	
8606920000	-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초과인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606990000	- - 기타	0	EIF	
8607110000	- - 구동식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0	EIF	
8607120000	- - 기타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0	EIF	
86071900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IF	
86072100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	EIF	
8607290000	- - 기타	0	EIF	
8607300000	- 축과 기타 연결장치, 완충장치 및 그 부분품	0	EIF	
8607910000	- - 기관차의 것	0	EIF	
8607990000	- - 기타	0	EIF	
86080000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의 것을 포함한다) 신호, 안전 또는 교통관제용 기기; 전술한 것의 부분품	0	EIF	
860900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되고 장비된 것에 한한다)	0	EIF	
8701100000	- 보행운전형 트랙터	0	EIF	
8701200000	- 세미트레일러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0	EIF	
8701300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0	EIF	
8701900000	- 기타	0	EIF	
8702101000	- - 16인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것	0	EIF	
8702109000	- - 기타	0	EIF	
8702901000	- - 트롤리 버스	0	EIF	
8702909110	- - -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0	EIF	
8702909190	- - - - 기타	0	EIF	
8702909910	- - -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0	EIF	
8702909990	- - - - 기타	0	EIF	
8703100000	-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고안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9	10	
8703210010	- - - 조립된 것	9	10	
8703210090	- - - 기타	9	10	
8703221000	- - - 사륜구동(4 x 4)인 것	9	10	
8703229010	- - - - 구급차, 죄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229020	- - - - 기타 조립된 것	9	10	
8703229090	- - - - 기타	9	10	
8703231000	- - - 사륜구동(4 x 4)인 것	9	10	
8703239010	- - - - 구급차, 죄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239020	- - - - 기타 조립된 차량	9	5	
8703239090	- - - - 기타	9	10	
8703241000	- - - 사륜구동(4 x 4)인 것	9	EIF	
8703249010	- - - - 구급차, 죄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249020	- - - - 기타 조립된 차량	9	EIF	
8703249090	- - - - 기타	9	EIF	
8703311000	- - - 사륜구동(4 x 4)인 것	9	10	
8703319010	- - - - 구급차, 죄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319020	- - - - 기타 조립된 차량	9	10	
8703319090	- - - - 기타	9	10	
8703321000	- - - 사륜구동(4 x 4)인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703329010	- - - - 구급차, 좌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329020	- - - - 기타 조립된 차량	9	5	
8703329090	- - - - 기타	9	10	
8703331000	- - - 사륜구동(4 x 4)인 것	9	10	
8703339010	- - - - 구급차, 좌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339020	- - - - 기타 조립된 차량	9	10	
8703339090	- - - - 기타	9	10	
8703900010	- - 구급차, 좌수 호송차 및 영구차	9	10	
8703900020	- - 기타 조립된 차량	9	10	
8703900090	- - 기타	9	10	
8704100000	- 비고속도로용으로 고안된 덤프차	0	EIF	
8704211010	- - - - 조립된 픽업트럭	0	EIF	
8704211090	- - - - 기타	0	EIF	
8704219000	- - - 기타	0	EIF	
8704221000	- - - 6.2톤 이하인 것	0	EIF	
8704222000	- - - 6.2톤 초과 9.3톤 이하인 것	0	EIF	
8704229000	- - - 9.3톤 초과인 것	0	EIF	
8704230000	- - 총중량이 20톤 초과인 것	0	EIF	
8704311010	- - - - 조립된 픽업트럭	0	EIF	
8704311090	- - - - 기타	0	EIF	
8704319000	- - - 기타	0	EIF	
8704321000	- - - 6.2톤 이하인 것	0	EIF	
8704322000	- - - 6.2톤 초과 9.3톤 이하인 것	0	EIF	
8704329000	- - - 9.3톤 초과인 것	0	EIF	
8704900000	- 기타	0	EIF	
8705100000	- 기중기차	0	EIF	
8705200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차	0	EIF	
8705300000	- 소방차	0	EIF	
8705400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0	EIF	
8705901100	- - - 청소차	0	EIF	
8705901900	- - - 기타	0	EIF	
8705902000	- - 이동방사선차	0	EIF	
8705909000	- - 기타	0	EIF	
8706001000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0	EIF	
8706002100	- - 총중량이 4.537톤 이하인 것	0	EIF	
8706002900	- - 기타	0	EIF	
8706009100	- - 총중량이 5톤 초과 6.2톤 이하인 차량용의 것	0	EIF	
8706009200	- - 총중량이 6.2톤 초과인 차량용의 것	0	EIF	
8706009900	- - 기타	0	EIF	
8707100000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0	EIF	
8707901000	- - 제8702호의 차량용의 것	0	EIF	
8707909000	- - 기타	0	EIF	
870810000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0	EIF	
8708210000	- - 안전벨트	0	EIF	
8708291000	- - - 보닛	0	EIF	
8708292000	- - - 흡판이, 보닛, 사이드, 문 및 그 부분품	0	EIF	
8708293000	- - - 앞면 그릴	0	EIF	
8708294000	- - - 대쉬보드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708295000	- - - 프레임이 있는 창문; 발열 저항체와 전기 커넥터를 갖춘 창문(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708299000	- - - 기타	0	EIF	
8708301000	-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0	EIF	
8708302100	- - - 드럼	0	EIF	
8708302200	- - - 공압식 시스템	0	EIF	
8708302300	- - - 유압식 시스템	0	EIF	
8708302400	- - - 서보 브레이크	0	EIF	
8708302500	- - - 디스크	0	EIF	
8708302900	- - - 기타 부분품	0	EIF	
8708401000	- - 기계식의 것	0	EIF	
8708409000	- - 기타	0	EIF	
8708501100	- - - 구동 차축	0	EIF	
8708501900	- - - 부분품	0	EIF	
8708502100	- - - 비구동 차축	0	EIF	
8708502900	- - - 부분품	0	EIF	
8708701000	- - 로드휠 및 부분품	0	EIF	
8708702000	- - 림, 허브 캡 및 기타 부속품	0	EIF	
8708801000	- - 볼과 소켓 조인트 및 그 부분품	0	EIF	
8708802000	- - 쇼크 업소버 및 그 부분품	0	EIF	
8708809000	- - 기타	0	EIF	
8708910000	- - 방열기와 그 부분품	0	EIF	
8708920000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0	EIF	
8708931000	- - - 클러치	0	EIF	
8708939100	- - - - 플레이트 및 디스크	0	EIF	
8708939900	- - - - 기타	0	EIF	
8708940000	- -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0	EIF	
8708950000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0	EIF	
8708991100	- - - - 새시 프레임	0	EIF	
8708991900	- - - - 부분품	0	EIF	
8708992100	- - - - 카아던 변속기	0	EIF	
8708992900	- - - - 부분품	0	EIF	
8708993100	- - - - 기계식 시스템	0	EIF	
8708993200	- - - - 유압식 시스템	0	EIF	
8708993300	- - - - 엔드 피팅	0	EIF	
8708993900	- - - - 기타 부분품	0	EIF	
8708994000	- - - 트랙 및 그 부분품	0	EIF	
8708995000	- - - 연료 탱크	0	EIF	
8708999600	- - - - 안전벨트용 디토네이터 및 센서 록	0	EIF	
8708999900	- - - - 기타	0	EIF	
8709110000	- - 전기식의 것	0	EIF	
8709190000	- - 기타	0	EIF	
8709900000	- 부분품	0	EIF	
8710000000	전차와 기타 장갑차량(모터를 갖춘 것으로서,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러한 차량의 부분품	9	10	
8711100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9	10	
8711200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9	10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71130000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9	10	
871140000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9	10	
871150000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 초과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9	10	
8711900000	- 기타	9	10	
87120000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론자전거와 기타 자전거(배달용 삼륜자전거를 포함한다)	9	10	
8713100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9	EIF	
8713900000	- 기타	9	EIF	
8714110000	- - 안장	0	EIF	
8714190000	- - 기타	0	EIF	
8714200000	-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9	EIF	
8714910000	- - 프레임과 포크 및 그 부분품	0	EIF	
8714921000	- - - 휠 림	0	EIF	
8714929000	- - - 스포크	0	EIF	
8714930000	- -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프리 휠스프로킷 휠	0	EIF	
8714940000	-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0	EIF	
8714950000	- - 안장	0	EIF	
8714960000	- -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그 부분품	0	EIF	
8714990000	- - 기타	0	EIF	
8715001000	- 유모차	9	10	
8715009000	- 부분품	9	10	
8716100000	- 이동주택형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주거용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8716200000	- 농업용의 자동 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EIF	
8716310000	- -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0	EIF	
8716390000	- - 기타	0	EIF	
8716400000	-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EIF	
8716801000	- - 손수레	0	EIF	
8716809000	- - 기타	0	EIF	
8716900000	- 부분품	0	EIF	
8801000010	- 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	9	EIF	
8801000090	- 기타	0	EIF	
8802110000	- - 자중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IF	
8802120000	- - 자중이 2,000킬로그램 초과인 것	0	EIF	
8802201000	- - 최대 이륙 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군용으로 특수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0	EIF	
8802209000	- - 기타	0	EIF	
8802301000	- - 최대 이륙 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군용으로 특수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0	EIF	
8802309000	- - 기타	0	EIF	
8802400000	- 자중이 15,000킬로그램 초과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0	EIF	
8802600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서보비틀과 우주선 운반로켓	0	EIF	
8803100000	-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8803200000	- 기계지지부와 그 부분품	0	EIF	
8803300000	-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0	EIF	
8803900000	- 기타	0	EIF	
880400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그 부분품과 그 부속품	9	EIF	
880510000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감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0	EIF	
8805210000	- -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	EIF	
8805290000	- - 기타	0	EIF	
8901101100	- - - 50톤 이하인 것	0	EIF	
8901101900	- - - 기타	0	EIF	
89011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 초과인 것	0	EIF	
8901201100	- - - 50톤 이하인 것	0	EIF	
8901201900	- - - 기타	0	EIF	
89012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 초과인 것	0	EIF	
8901301100	- - - 50톤 이하인 것	0	EIF	
8901301900	- - - 기타	0	EIF	
89013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 초과인 것	0	EIF	
8901901100	- - - 50톤 이하인 것	0	EIF	
8901901900	- - - 기타	0	EIF	
89019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 초과인 것	0	EIF	
8902001100	- - 50톤 이하인 것	0	EIF	
8902001900	- - 기타	0	EIF	
8902002000	- 레지스터가 1,000톤 초과인 것	0	EIF	
8903100000	- 인플랫터블식의 것	0	EIF	
8903910000	-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8903920000	-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0	EIF	
8903991000	- - - 제트 스키	0	EIF	
8903999000	- - - 기타	0	EIF	
8904001000	- 50톤 이하인 것	0	EIF	
8904009000	- 기타	0	EIF	
8905100000	- 준설선	0	EIF	
8905200000	-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8905900000	- 기타	0	EIF	
8906100000	- 군함	0	EIF	
8906901000	- - 레지스터가 1,000톤 이하인 것	0	EIF	
8906909000	- - 기타	0	EIF	
8907100000	-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0	EIF	
8907901000	- - 등부표	0	EIF	
8907909000	- - 기타	0	EIF	
8908000000	선박과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1100000	- 광섬유, 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0	EIF	
9001200000	-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9	EIF	
9001300000	- 콘택트렌즈	9	EIF	
9001400000	- 유리제의 안경렌즈	9	EIF	
9001500000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9	EIF	
9001900000	- 기타	9	EIF	
9002110000	- - 카메라용, 영상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용 또는 사진 축소기용의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002190000	- - 기타	9	EIF	
9002200000	- 필터	9	EIF	
9002900000	- 기타	9	EIF	
9003110000	- - 플라스틱제의 것	9	5	
9003191000	- -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9	5	
9003199000	- - - 기타	9	EIF	
9003900000	- 부분품	9	5	
9004100000	- 선글라스	9	5	
9004901000	- - 작업용 보호 안경	9	EIF	
9004909000	- - 기타	9	EIF	
9005100000	- 쌍안경	9	EIF	
9005800000	- 기타 기기	0	EIF	
900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0	EIF	
9006100000	- 인쇄제판용 사진기	0	EIF	
9006300000	- 수중촬영용, 공중측량용 또는 내장기관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검사용으로 특수 고안된 사진기; 법정용 또는 범죄학용 비교 사진기	0	EIF	
9006400000	- 즉석인화사진기	9	EIF	
9006510000	-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9	EIF	
9006521010	- - - -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6521090	- - - - 기타	9	EIF	
9006529010	- - - -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6529090	- - - - 기타	9	EIF	
9006531010	- - - -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6531090	- - - - 기타	9	5	
9006539010	- - - -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6539090	- - - - 기타	9	5	
9006591010	- - - -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6591090	- - - - 기타	9	EIF	
9006599010	- - - -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06599090	- - - - 기타	9	EIF	
90066100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9	5	
9006690000	- - 기타	9	EIF	
9006910000	- - 촬영기용의 것	9	5	
9006990000	- - 기타	9	EIF	
9007110000	- - 폭이 16밀리미터 미만인 필름용 또는 더블 8밀리미터 필름용의 것	9	EIF	
9007190000	- - 기타	0	EIF	
90072010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필름용의 것	0	EIF	
9007209000	- - 기타	0	EIF	
9007910000	- - 촬영기용의 것	0	EIF	
9007920000	- - 영사기용의 것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008100000	- 환등기	0	EIF	
9008200000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0	EIF	
9008300000	- 기타 투영기	0	EIF	
9008400000	-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9008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0100000	-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의 것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0	EIF	
901050000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타 기기; 네가토스코우프	0	EIF	
9010600000	- 영사용 스크린	0	EIF	
9010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1100000	- 입체현미경	0	EIF	
9011200000	- 기타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11800000	- 기타 현미경	0	EIF	
9011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2100000	- 광학 현미경을 제외한 현미경; 회절기	0	EIF	
9012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3100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제90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고안된 망원경	0	EIF	
9013200000	- 레이저(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EIF	
9013801000	- - 확대경	0	EIF	
9013809000	- - 기타	0	EIF	
9013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4100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	0	EIF	
9014200000	-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0	EIF	
9014800000	- 기타 기기	0	EIF	
9014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5100000	- 거리측정기	0	EIF	
9015201000	- - 경위의	0	EIF	
9015202000	- - 시거의	0	EIF	
9015300000	- 수준기	0	EIF	
90154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0	EIF	
9015409000	- - 기타	0	EIF	
90158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0	EIF	
9015809000	- - 기타	0	EIF	
901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6001100	- - 전기식의 것	0	EIF	
9016001200	- - 전자식의 것	0	EIF	
9016001900	- - 기타	0	EIF	
90160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710000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9017201000	- - 축소확대기	0	EIF	
9017202000	- - 제도 세트(수학 상자)와 그들의 구성품(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인지 또는 별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9017203000	- - 계산척, 계산반 및 실린더형 계산기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017209000	- - 기타	0	EIF	
9017300000	-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와 게이지류	0	EIF	
9017801000	- - 직선 측정용의 것	0	EIF	
9017809000	- - 기타	0	EIF	
9017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18110000	- - 심전계	0	EIF	
90181200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0	EIF	
90181300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0	EIF	
9018140000	- -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0	EIF	
9018190000	- - 기타	0	EIF	
9018200000	- 자외선 또는 적외선 기기	0	EIF	
9018312000	- - - 플라스틱제의 것	9	5	
9018319000	- - - 기타	0	EIF	
9018320000	- - 관형의 금속 바늘 및 봉합용 바늘	9	EIF	
9018390010	- - - 튜브 세트(혈액 투석, 수혈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용 바늘이 있는 것에 한한다)	0	EIF	
9018390090	- - - 기타	0	EIF	
90184100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9018491000	- - - 치과용 바아, 디스크, 드릴 및 브러시	0	EIF	
9018499000	- - - 기타	0	EIF	
9018500000	- 기타 안과용 기기	0	EIF	
9018901000	- - 전자식 의학의 것	0	EIF	
9018909000	- - 기타	0	EIF	
901910000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EIF	
9019200000	- 오존흡입기, 산소흡입기, 에어로졸치료기,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0	EIF	
9020000000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식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0	EIF	
9021101000	- - 정형외과용 기기	9	EIF	
9021102000	- - 골절치료용 기기	9	EIF	
9021210000	- - 의치	9	EIF	
9021290000	- - 기타	9	EIF	
9021310000	- - 인조관절	9	EIF	
9021391000	- - - 심장판막	9	EIF	
9021399000	- - - 기타	9	EIF	
9021400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9	EIF	
9021500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9	EIF	
9021900000	- 기타	9	EIF	
90221200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EIF	
9022130000	- -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22140000	- - 기타(내과용, 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에 한한다)	0	EIF	
9022190000	- - 기타 용도의 것	0	EIF	
9022210000	- -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0	EIF	
9022290000	- - 기타 용도의 것	0	EIF	
9022300000	- 엑스선관	0	EIF	
902290000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0	EIF	
9023001000	- 사람 또는 동물 해부 모형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023002000	- 현미경 표본	0	EIF	
9023009000	- 기타	0	EIF	
9024100000	- 금속 시험용 기기	0	EIF	
9024800000	- 기타 기기	0	EIF	
9024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25111000	- - - 의료용의 것	9	EIF	
9025119000	- - - 기타	0	EIF	
9025191100	- - - - 고온계	0	EIF	
9025191200	- - - - 제87류의 차량용 온도계	0	EIF	
9025191900	- - - - 기타	0	EIF	
9025199000	- - - 기타	0	EIF	
9025803000	-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0	EIF	
9025804100	- - - 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	0	EIF	
9025804900	- - - 기타	0	EIF	
9025809000	- - 기타	0	EIF	
902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26101100	- - - 제87류의 차량용 연료 측정기	0	EIF	
9026101200	- - - 수평계	0	EIF	
9026101900	- - - 기타	0	EIF	
9026109000	- - 기타	0	EIF	
9026200000	- 압력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EIF	
9026801100	- - - 열전대 열측정계	0	EIF	
9026801900	- - - 기타	0	EIF	
9026809000	- - 기타	0	EIF	
9026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271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0	EIF	
9027109000	- - 기타	0	EIF	
90272000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EIF	
9027300000	- 분광계,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EIF	
9027500000	- 기타 기기(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EIF	
9027802000	- - 편광계, 피에이치 미터, 탁도계, 검염계 및 팽창계	0	EIF	
9027803000	- - 연기 탐지기	0	EIF	
9027809000	- - 기타	0	EIF	
9027901000	- - 마이크로톤	0	EIF	
9027909000	-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28100000	- 기체용 계기	0	EIF	
9028201000	- - 수도 계량기	0	EIF	
9028209000	- - 기타	0	EIF	
9028301000	- - 단상의 것	0	EIF	
9028309000	- - 기타	0	EIF	
9028901000	- - 전기용 계기의 것	0	EIF	
9028909000	- - 기타	9	EIF	
9029101000	- - 택시미터	0	EIF	
9029102000	- - 생산량계(전자식의 것)	0	EIF	
9029109000	- - 기타	0	EIF	
9029201000	- - 속도계(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은 제외한다)	0	EIF	
9029202000	- - 회전 속도계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029209000	- - 기타	0	EIF	
9029901000	- - 속도계의 것	9	EIF	
9029909000	- - 기타	9	EIF	
9030100000	- 전리선 측정 또는 검출용 기기	0	EIF	
9030200000	- 오실로스코프와 오실로그래프	0	EIF	
9030310000	- - 멀티미터(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9030320000	- - 멀티미터(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EIF	
90303300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90303900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EIF	
9030400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수 고안된 기타 기기(예: 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	0	EIF	
90308200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EIF	
90308400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EIF	
9030890000	- - 기타	0	EIF	
9030901000	- - 전기량 측정용 기기의 것	0	EIF	
9030909000	- - 기타	0	EIF	
9031101000	- - 전자식의 것	0	EIF	
9031109000	- - 기타	0	EIF	
9031200000	- 테스트벤치	0	EIF	
90314100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0	EIF	
9031491000	- - - 광학식 비교기, 비교벤치, 측정벤치, 간섭계, 광학식 표면 테스터, 자동필러를 갖춘 장치, 얼라인먼트 망원경, 광학식 자, 마이크로미터 판독 장치, 광학식 각도계와 포시미터	0	EIF	
9031492000	- - - 윤곽투영기	0	EIF	
9031499000	- - - 기타	0	EIF	
9031802000	- - 제87류의 차량의 엔진 조절용 기기(싱크로스코프)	0	EIF	
9031803000	- - 측면기	0	EIF	
9031809000	- - 기타	0	EIF	
9031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IF	
9032100000	- 자동온도조절기	0	EIF	
9032200000	- 마노스텝	0	EIF	
9032810000	- - 유압식 또는 공압식의 것	0	EIF	
9032891100	- - - - 전압이 260볼트 이하이며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	0	EIF	
9032891900	- - - - 기타	0	EIF	
9032899000	- - - 기타	0	EIF	
9032901000	- - 자동온도조절기의 것	0	EIF	
9032902000	- - 전압조절기의 것	0	EIF	
9032909000	- - 기타	0	EIF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 기기, 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9101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	EIF	
9101190000	- - 기타	9	EIF	
9101210000	- - 자동권식의 것	9	EIF	
9101290000	- - 기타	9	EIF	
91019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9	EIF	
9101990000	- - 기타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102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	EIF	
91021200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	EIF	
9102190000	- - 기타	9	EIF	
9102210000	- - 자동권식의 것	9	EIF	
9102290000	- - 기타	9	EIF	
91029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9	EIF	
9102990000	- - 기타	9	EIF	
9103100000	- 전기구동식의 것	9	EIF	
9103900000	- 기타	9	EIF	
910400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9	EIF	
9104009000	- 기타	9	EIF	
91051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9	EIF	
9105190000	- - 기타	9	EIF	
9105210000	- - 전기식의 것	9	EIF	
9105290000	- - 기타	9	EIF	
9105911000	- - - 전기시계시스템용 시계(어미 시계 및 자시계)	0	EIF	
9105919000	- - - 기타	0	EIF	
9105990000	- - 기타	0	EIF	
9106100000	-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0	EIF	
9106901000	- - 주차 미터	0	EIF	
9106909000	- - 기타	0	EIF	
910700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EIF	
9108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가 장착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9	EIF	
91081200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	EIF	
9108190000	- - 기타	9	EIF	
9108200000	- 자동권식의 것	9	EIF	
9108900000	- 기타	9	EIF	
9109110000	- - 자명종 시계의 것	9	EIF	
9109190000	- - 기타	9	EIF	
9109900000	- 기타	9	EIF	
9110110000	- -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 세트)	9	EIF	
91101200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9	EIF	
9110190000	- - 러프 무브먼트	9	EIF	
9110900000	- 기타	9	EIF	
9111100000	- 케이스(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	EIF	
9111200000	- 케이스[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금 또는 은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9111800000	- 기타 케이스	9	EIF	
9111900000	- 부분품	9	EIF	
9112200000	- 케이스	9	EIF	
9112900000	- 부분품	9	EIF	
911310000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9	EIF	
911320000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9113901000	- - 플라스틱제의 것	9	EIF	
9113902000	- - 가죽제의 것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113909000	- - 기타	9	EIF	
9114100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9	EIF	
9114200000	- 보석	9	EIF	
9114300000	- 문자판	9	EIF	
9114400000	- 지판과 브리지	9	EIF	
9114900000	- 기타	9	EIF	
9201100000	- 업라이트 피아노	9	EIF	
9201200000	- 그랜드 피아노	9	EIF	
9201900000	- 기타	9	EIF	
9202100000	- 활을 사용하는 것	9	EIF	
9202900000	- 기타	9	EIF	
9205100000	- 금관악기	9	EIF	
9205901000	- - 건반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 하모늄 및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의 건반 악기	9	EIF	
9205902000	- - 아코디언 및 이와 유사한 악기	9	EIF	
9205903000	- - 하모니카	9	EIF	
9205909000	- - 기타	9	EIF	
9206000000	타악기(예: 북, 목금, 심벌즈,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9	EIF	
9207100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9	EIF	
9207900000	- 기타	9	EIF	
9208100000	- 뮤지컬박스	9	EIF	
9208900000	- 기타	9	EIF	
9209300000	- 악기용 현	9	EIF	
9209910000	- - 피아노용 부분품과 부속품	9	EIF	
9209920000	- - 제9202호의 악기용 부분품과 부속품	9	EIF	
9209940000	- - 제9207호의 악기용 부분품과 부속품	9	EIF	
9209990000	- - 기타	9	EIF	
9301110000	- - 자주식의 것	9	EIF	
9301190000	- - 기타	9	EIF	
9301200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9	EIF	
9301901000	- - 완전 자동식 산탄총	9	EIF	
9301902100	- - - 노리쇠 작동식의 것	9	EIF	
9301902200	- - - 반자동식의 것	9	EIF	
9301902300	- - - 완전 자동식의 것	9	EIF	
9301902900	- - - 기타	9	EIF	
9301903000	- - 기관총	9	EIF	
9301904100	- - - 완전 자동식의 것	9	EIF	
9301904900	- - - 기타	9	EIF	
9301909000	- - 기타	9	EIF	
9302001000	- 리볼버	9	EIF	
9302002100	- - 반자동식의 것	9	EIF	
9302002900	- - 기타	9	EIF	
9302003000	- 다열 총열 피스톨	9	EIF	
9303100000	- 총구장전 화기	9	EIF	
9303201100	- - - 펌프 작동식의 것	9	EIF	
9303201200	- - - 반자동식의 것	9	EIF	
9303201900	- - - 기타	9	EIF	
9303202000	- -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것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303209000	- - 기타	9	EIF	
9303301000	- - 단발	9	EIF	
9303302000	- - 반자동식의 것	9	EIF	
9303309000	- - 기타	9	EIF	
9303900000	- 기타	9	EIF	
9304001000	- 압축 공기식의 것	9	EIF	
9304009000	- 기타	9	EIF	
9305101000	- - 방아쇠 장치	9	EIF	
9305102000	- - 프레임 및 총몸	9	EIF	
9305103000	- - 총열	9	EIF	
9305104000	- - 피스톤, 핀 및 반동 완충기(총구 브레이크)	9	EIF	
9305105000	- - 탄창 및 그 부분품	9	EIF	
9305106000	-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9	EIF	
9305107000	- - 개머리판, 권총 손잡이 및 락플레이트	9	EIF	
9305108000	- - 볼록(피스톨용의 것에 한한다) 및 실린더(리볼버용의 것에 한한다)	9	EIF	
9305109000	- - 기타	9	EIF	
9305210000	- - 산탄총 총열	9	EIF	
9305291000	- - - 방아쇠 장치	9	EIF	
9305292000	- - - 프레임 및 총몸	9	EIF	
9305293000	- - - 소총 총열	9	EIF	
9305294000	- - - 피스톤, 핀 및 반동 완충기(총구 브레이크)	9	EIF	
9305295000	- - - 탄창 및 그 부분품	9	EIF	
9305296000	- -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9	EIF	
9305297000	- - - 소음 억제장치 및 그 부분품	9	EIF	
9305298000	- - -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 집	9	EIF	
9305299000	- - - 기타	9	EIF	
9305911100	- - - - 방아쇠 장치	9	EIF	
9305911200	- - - - 프레임 및 총몸	9	EIF	
9305911300	- - - - 총열	9	EIF	
9305911400	- - - - 피스톤, 핀 및 반동 완충기(총구 브레이크)	9	EIF	
9305911500	- - - - 탄창 및 그 부분품	9	EIF	
9305911600	- - -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9	EIF	
9305911700	- - - - 소음 억제장치 및 그 부분품	9	EIF	
9305911800	- - - -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 집	9	EIF	
9305911900	- - - - 기타	9	EIF	
9305919000	- - - 기타	9	EIF	
9305990000	- - 기타	9	EIF	
9306210000	- - 탄약	9	EIF	
9306291000	- - - 탄환	9	3	
9306299000	- - - 부분품	9	3	
9306302000	- - 피스톨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용, 무통도살기용 공포탄	9	3	
9306303000	- - 기타 탄약	9	3	
9306309000	- - 부분품	9	3	
9306901100	- - - 전쟁 무기용의 것	9	EIF	
9306901200	- - - 작살총용 작살	9	EIF	
9306901900	- - - 기타	9	EIF	
9306909000	- - 부분품	9	EIF	
9307000000	검류,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그 부분품과 그 집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401100000	- 항공기용 의자	0	EIF	
9401200000	- 자동차용 의자	0	EIF	
940130000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9	5	
9401400000	- 침대겸용 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 제외한다)	9	5	
9401510000	- - 대나무제 또는 등나무제의 것	9	5	
9401590000	- - 기타	9	5	
9401610000	- - 의자의 속, 용수철, 카바 등을 댄 것	9	10	
9401690000	- - 기타	9	10	
9401710000	- - 의자의 속, 용수철, 카바 등을 댄 것	9	8	
9401790000	- - 기타	9	5	
9401800000	- 기타 의자	9	10	
9401901000	- - 뒤로 젖히는 의자용 장치	9	5	
9401909000	- - 기타	9	5	
9402101000	- - 치과용 의자	0	EIF	
9402109000	- - 기타	0	EIF	
9402901000	- - 수술대와 그 부분품	0	EIF	
9402909000	- - 기타의 것과 그 부분품	0	EIF	
9403100000	-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9	10	
9403200000	- 기타 금속제가구	9	10	
9403300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9	10	
9403400000	- 주방용 목제가구	9	10	
9403500000	- 침실용 목제가구	9	10	
9403600000	- 기타 목제가구	9	10	
9403700000	- 플라스틱제의 가구	9	5	
9403810000	- - 대나무제 또는 등나무제의 것	9	5	
9403890000	- - 기타	9	5	
9403900000	- 부분품	9	5	
9404100000	- 매트리스 서포트	9	10	
9404210000	- - 셀룰러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10	
9404290000	- - 기타 재료제의 것	9	5	
9404300000	- 슬리핑 백	9	5	
9404900000	- 기타	9	5	
9405101000	- - 수술실 또는 치과실용의 특수한 것(무영등)	0	EIF	
9405109000	- - 기타	9	EIF	
9405200000	- 전기식 테이블, 책상, 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9	5	
9405300000	-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세트	9	5	
9405401000	- - 공공 조명용의 것	0	EIF	
9405402000	- - 투광기	0	EIF	
9405409000	- - 기타	0	EIF	
9405501000	- - 압축된 액체 연료의 것	9	5	
9405509000	- - 기타	9	5	
9405600000	-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0	EIF	
9405910000	- - 유리제의 것	9	5	
9405920000	- - 플라스틱제의 것	9	5	
9405990000	- - 기타	9	5	
9406000000	조립식 건축물	0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503001000	-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 달린 완구; 인형용 차	9	EIF	
9503002100	- -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신발과 모자	9	5	
9503002900	- - 기타	9	EIF	
9503003000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9503004000	- 각종 퍼즐	9	5	
9503009100	- - 전기식 기차(궤도, 신호기기 및 기타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9	5	
9503009200	- - 조립식 완구	9	EIF	
9503009300	- - 동물 또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 모형의 완구	9	EIF	
9503009400	- - 완구용 악기류 및 기구	9	EIF	
9503009500	- - 세트 또는 모음으로 되어있는 것	9	EIF	
9503009600	- - 기타(모터가 장착된 것에 한한다)	9	EIF	
9503009900	- - 기타	9	EIF	
9504100000	-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5	
9504200000	- 각종 당구 용구와 부속품	9	EIF	
9504301000	- - 확률의 것	9	EIF	
9504309000	- - 기타	9	EIF	
9504400000	- 유희용 카드	9	EIF	
9504901000	- - 체스 및 체커 게임	9	EIF	
9504902000	- - 볼링 필수품(자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9504909100	- - - 확률의 것	9	EIF	
9504909900	- - - 기타	9	EIF	
9505100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9	EIF	
9505900000	- 기타	9	EIF	
9506110000	- - 스키	9	EIF	
9506120000	- -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9	EIF	
9506190000	- - 기타	9	EIF	
9506210000	- - 세일보드	9	EIF	
9506290000	- - 기타	9	EIF	
9506310000	- - 골프채(완제품에 한한다)	9	EIF	
9506320000	- - 골프공	9	EIF	
9506390000	- - 기타	9	EIF	
9506400000	- 탁구 용구	9	EIF	
9506510000	- -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9506590000	- - 기타	9	EIF	
9506610000	- - 로온테니스 공	9	EIF	
9506620000	-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9	EIF	
9506690000	- - 기타	9	EIF	
950670000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9	EIF	
9506910000	-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 용구	9	EIF	
9506991000	- - - 야구 및 소프트볼 용구(공은 제외한다)	9	EIF	
9506999000	- - - 기타	9	5	
9507100000	- 낚싯대	9	5	
9507200000	- 낚싯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	EIF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507300000	- 낚시 릴	9	EIF	
9507901000	- - 낚시용의 것	9	EIF	
9507909000	- - 기타	9	EIF	
9508100000	- 순회서커스용 및 순회동물원용 용품	0	EIF	
9508900000	- 기타	0	EIF	
9601100000	- 가공한 아이보리와 아이보리 제품	9	EIF	
9601900000	- 기타	9	5	
9602001000	- 제약품용 젤라틴 캡슐	0	EIF	
9602009000	- 기타	9	5	
96031000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 식물성재료를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5	
9603210000	- -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9	EIF	
9603290000	- - 기타	9	EIF	
9603301000	- - 회화용 붓	9	5	
9603309000	- - 기타	9	EIF	
9603400000	- 페인트용, 디스탬퍼용, 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9	5	
9603500000	- 기타 브러시(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9	EIF	
9603901000	- -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매듭 및 술 모양으로 정돈된 것	9	EIF	
9603909000	- - 기타	9	EIF	
9604000000	수동식 체 및 수동식 어레미	0	EIF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9	EIF	
9606100000	-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그 부분품	0	EIF	
9606210000	- - 플라스틱제의 것(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9606220000	- - 비(卑)금속제의 것(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EIF	
9606291000	- - - 타구아(식물성 아이보리)제의 것	0	EIF	
9606299000	- - - 기타	0	EIF	
9606301000	- - 플라스틱제 또는 타구아(식물성 아이보리)제의 것	0	EIF	
9606309000	- - 기타	0	EIF	
9607110000	- - 비(卑)금속제의 체인스쿠프가 부착된 것	0	EIF	
9607190000	- - 기타	0	EIF	
9607200000	- 부분품	0	EIF	
9608101000	- - 볼펜	9	10	
9608102100	- - - 볼포인트용 홀더(볼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EIF	
9608102900	- - - 기타	0	EIF	
9608201000	- - 팁이 펄트로 된 것과 마커	9	5	
9608209000	- - 부분품	0	EIF	
9608310000	- - 인디언 잉크용 드로잉 펜	9	5	
9608390000	- - 기타	9	5	
9608400000	-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9	5	
9608500000	- 전술한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9	5	

HS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격밴드제도
960860000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9	EIF	
9608910000	- - 펜촉과 닙포인트	9	EIF	
9608990000	- - 기타	9	5	
960910000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9	5	
9609200000	-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9	EIF	
9609900000	- 기타	9	5	
96100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9	5	
9611000000	일부인, 봉합용 또는 넘버링용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것(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고안된 것에 한한다); 수동식 컴포징 스틱 및 그러한 컴포징 스틱이 장착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	5	
9612100000	- 리본	9	5	
9612200000	- 잉크 패드	9	EIF	
961310000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9	EIF	
9613200000	-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9	EIF	
9613800000	- 기타 라이터	9	EIF	
9613900000	- 부분품	9	EIF	
9614000000	깍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 또는 궤련 홀더 및 그 부분품	9	EIF	
9615110000	- - 경화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9	EIF	
9615190000	- - 기타	9	EIF	
9615900000	- 기타	9	5	
961610000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그 마운트와 두부	9	EIF	
9616200000	- 화장용 또는 화장품용 분취과 패드	9	5	
9617000000	보온병과 기타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0	EIF	
96180000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0	EIF	
9701100000	- 회화, 데생과 파스텔	9	EIF	
9701900000	- 기타	9	EIF	
9702000000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9	EIF	
970300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9	EIF	
970400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우편요금 별납증서, 초일봉투,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	EIF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학, 고생물학,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EIF	
9706000000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9	EIF	

부속서 2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의 양허표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4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및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다음 날부터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닭고기**에 대해서는,
적용품목: HSK 0207.11.1000, 0207.11.9000, 0207.13.1010, 0207.13.1020,
0207.13.103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4,361	4,448	4,537	4,628	4,720	4,81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8.0	18.0	18.0	18.0	18.0	13.5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4,911	5,009	5,110	5,21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3.5	0

나.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적용품목: HSK 0207.33.0000, 0207.36.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10	826	843	860	877	89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8.0	18.0	18.0	18.0	18.0	13.5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912	930	949	96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3.5	0

다.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무당연유**에 대해서는,
적용품목: HSK 0402.91.1000, 0402.91.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65	66	68	69	70	7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89.0	89.0	89.0	89.0	89.0	66.8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73	75	76	7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6.8	66.8	66.8	66.8	0

라.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체다치즈**에 대해서는,
적용품목: HSK 0406.90.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730	745	759	775	790	80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27.0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822	839	855	87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7.0	0

마.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천연꿀에 대해서는,
적용품목: HSK 0409.0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66	271	277	282	288	29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3.0	243.0	243.0	243.0	243.0	24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300	306	312	318	324	33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3.0	243.0	243.0	243.0	182.3	182.3

이행년도	13	14	15	16	17
발동수준(미터톤)	337	344	351	35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82.3	182.3	182.3	182.3	0

바.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콩류에 대해,
적용품목: HSK 0713.31.9000, 0713.32.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0713.31.9000	64	65	67	68	69	71
0713.32.9000	296	302	308	314	320	32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607.5	607.5	607.5	607.5	607.5	455.6
0713.32.9000	420.8	420.8	420.8	420.8	420.8	315.6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0713.31.9000	72	74	75	76	해당없음
0713.32.9000	333	340	347	35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455.6	455.6	455.6	455.6	0
0713.32.9000	315.6	315.6	315.6	315.6	0

사.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맨더린에 대해서는,
적용품목: HSK 0805.2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7,040	7,181	7,324	7,471	7,620	7,77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7,928	8,087	8,248	8,413	8,582	8,75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08.0	108.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발동수준(미터톤)	8,928	9,107	9,289	9,4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8.0	108.0	108.0	108.0	0

부속서 2라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¹⁾

HS	품목명
0401100000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
0401200000	-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초과 6퍼센트 이하인 것
0402101000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0402109000	- - 기타
0402211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0402211900	- - - - 기타
0402219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0402219900	- - - - 기타
0402291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0402291900	- - - - 기타
0402299100	- - - - 실함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0402299900	- - - - 기타
0402991000	- - - 가당연유
0404109000	- - 기타
0405100000	- 버터
0405902000	- - 무수 데어리 유(버터오일)
0405909000	- - 기타
0406300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
0406904000	-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미만인 것
0406905000	-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이상 56퍼센트 미만인 것
0406906000	-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6퍼센트 이상 69퍼센트 미만인 것
0406909000	- - 기타
1005901100	- - - 노란색의 것
1005901200	- - - 흰색의 것
1005909000	- - 기타
1006109000	- - 기타
1006200000	- 현미

1) 이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는, 종가세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철폐된다.

HS	품목명
1006300000	- 반도정미 또는 완전도정미(백미 또는 광택 연부를 불문한다)
1006400000	- 쉼미
1007009000	- 기타
1103130000	- - 옥수수의 것
1108120000	- - 옥수수 전분
1108130000	- - 감자 전분
1701119000	- - - 기타
1701120000	- - 사탕무당
1701999000	- - - 기타
1702302000	- - 포도당 시럽
1702600000	- 기타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초과인 것으로, 전화당은 제외한다)
1702902000	- - 캐러멜
1702903000	- - 향미나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
1702904000	- - 기타 시럽
1901902000	- - 밀크캐러멜 또는 밀크스위트(만자 블랑코)
1901909000	- - 기타
2106907900	- - - 기타
2106909000	- - 기타
2309909000	- - 기타
3505100000	-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2. 추가적으로,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가.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다.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렵, 밋사냥,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¹⁾

- 라.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마. 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 바.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사.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아.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 2)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1) 이 호에도 불구하고,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이 조에 따라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해 획득된 재료의 경우,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 가치, 또는

다. 자가 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의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가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이 조에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3.4 조

중간재

1. 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그리고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제 3.5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또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그리고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아. 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차. 동물의 도살, 또는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해 당사국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가.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나. **단순한 혼합**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나,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3.6 조

누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제품은 제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3.7 조 최소허용수준

1. 다음의 경우,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그 상품의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항은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되는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8 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위해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해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계속하여 사용된다.

제 3.9 조 세트

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세트는 그 세트의 모든 구성 요소가 원산지 상품인 때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때에는,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세트의 총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세트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10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개로 확인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1 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가. 제3.1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품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거나,
- 나. 제3.1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품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거나, 또는
- 다.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제 3.12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 중인 상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

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 기구 및 보급품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 및 보급품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마.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된 예비부품 및 재료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장비 및 건물의 운용에 사용된 윤활제, 윤활유, 조합용 재료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사. 그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그 생산의 일부임이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제 3.14 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

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 1)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2)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된다.

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 그리고

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제 3.15 조

영역 원칙

1. 제3.1조부터 제3.14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당사국 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 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나에 열거된 상품은 그러한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공정 및 처리를 거쳤더라도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16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해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의 항구 또는 입국 장소까지의 운임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는 원산지 국가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수출자란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수송수단과 관계없이, 최종 수출 항구 또는 최종 수출 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총의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재료란 구성품, 성분, 원료, 부품 또는 부분품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제3.1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을 재배, 사육, 추출, 채집, 수집, 채굴, 수확, 어로, 밭사냥,

수립,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 해석 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정 또는 구체적 규정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구체적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 그 규정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개별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쳐야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라. 구체적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수준에서 세번 조항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제외된 세번 조항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 마.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 류란 HS의 류를 말한다.
 - 호란 HS상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 부란 HS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 소호란 HS상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1 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제 1 류 산 동물		
010110	번식용의 것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190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210	번식용의 것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290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310	번식용의 것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410	면양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420	산양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511	닭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512	칠면조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519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594	닭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599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11	영장류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1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19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31	맹금류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32	앵무류(파로트류·파라키트류·금강앵무류 및 유허앵무류를 포함한다)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39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010690	기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1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130	뼈 없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2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230	뼈 없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203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3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10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21	도체와 이분도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22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23	뼈 없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41	도체와 이분도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43	뼈 없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450	산양의 고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5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1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21	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22	간(肝)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41	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690	기타(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1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20713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14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4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5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6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7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32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33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36	기타(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810	토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830	영장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84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900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20	쇠고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91	영장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9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210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3류의 주해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치어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030110	관상용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2	뱅장어(앵겔라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3	잉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4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5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2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벨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케타·양코링쿠스 차비차·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2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3	서대(솔레아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5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30261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4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5	곱상어와 기타 상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6	뱅장어(앵귈라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6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70	간과 어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1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2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2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3	서대(솔레아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5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2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1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3	검정대구(폴라치우치 비렌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3037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 스콤버 자포니쿠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5	곱상어와 기타 상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6	뱀장어(앵겔라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7	농어(디젠트라추스 라브락스 · 디젠트라추스 푼크타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8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7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80	간과 어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1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1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2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2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10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 훈제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벨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케타 · 앙코링쿠스 차비차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5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3	멸치(엔그로리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피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4	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24	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29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10	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2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3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4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5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5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 류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12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1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210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221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2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291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2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310	요구르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510	버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5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64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690	기타 치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700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40811	건조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408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40891	건조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408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40900	천연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210	돼지 또는 멧돼지의 털 및 그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와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510	새의 솜털 및 충전재용 우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5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6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710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7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만 해당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만 해당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51000	용연향·해리향·시뵈과 사향·캐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과 기타 동물성 생산물(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1110	소의 정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11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2부의 주해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제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切花)와 장식용의 잎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12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210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23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240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11	장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12	카네이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13	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14	국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410	이끼와 지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491	신선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4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10	종자용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190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702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310	양파와 쪽파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320	마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39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410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490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511	결구상추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51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521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52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610	당근과 순무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690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7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82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890	기타 채두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20	아스파라거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40	셀러리(셀러리악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5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6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70	시금치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0990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71010	감자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22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2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30	시금치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40	스위트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80	기타 채소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120	올리브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140	오이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1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15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190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220	양파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23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232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종)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23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290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10	완두(피섬새티범)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31	녹두[비그나 멩고(엘)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잭종]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32	팥(아주기)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39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71340	렌즈콩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5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390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410	매니옥(카사바)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420	고구마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71490	기타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11	말린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119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1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122	탈각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132	탈각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12	탈각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22	탈각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32	탈각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40	밤(카스타네아종)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50	피스타치오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60	마카다미아 너트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290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3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410	대추야자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80420	무화과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430	파인애플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440	애버카도우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450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510	오렌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5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클레멘타인·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54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550	레몬(시트리스 리몬, 시트리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590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610	신선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620	건조한 것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711	수박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719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720	포포우(파파야)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810	사과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820	배 및 마르멜로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910	살구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920	버찌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930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0940	자두와 슬로우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010	초본류 딸기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040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050	키위프루트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81060	두리언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090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110	초본류 딸기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12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와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190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210	버찌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290	기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310	살구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320	프룬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330	사과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340	기타 과일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35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0814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9 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1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즉시 포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2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즉시 포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4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300	마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4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4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420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9.60호 또는 제0710.80 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090500	바닐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11	계피(신나모姆 제이나이쿰 불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700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810	육두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820	메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830	소두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910	아니스 또는 대화향의 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920	코리앤더의 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930	커민의 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940	캐러웨이의 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95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1010	생강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1020	샤프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1030	심황(강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1091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10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류	곡물	
100110	듀럼종의 밀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190	기타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200	호밀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300	보리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400	귀리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510	종자용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590	기타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610	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620	현미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640	쇄미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700	수수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810	메밀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820	밀리트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00830	카나리시드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00890	기타 곡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10210	호밀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10220	옥수수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11	밀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13	옥수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19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20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12	귀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19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22	귀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23	옥수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29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30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10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2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61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1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620	사과·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1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630	제8류 물품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710	볶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10720	볶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10811	밀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10812	옥수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3	감자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4	매니옥(카사바)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10819	기타 전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20	이눌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109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2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22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300	코프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4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51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5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6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720	면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740	참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750	겨자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791	양귀비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7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810	대두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10	사탕무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21	루우산(알팔파)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22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23	페스큐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25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3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91	채소 종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09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01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02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만 해당한다)와 루플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120	인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130	코카잎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140	양귀비줄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291	사탕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2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21300	곡물의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4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21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20	아라비아 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1	아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2	감초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3	호프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30220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31	한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32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0	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120	등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420	면린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 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제15류)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00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200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3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와 텔로우유로서 유화·혼합 또는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0430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0500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6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507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810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910	버어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09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110	조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21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21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1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2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1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9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1	조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61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620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10	마가린(엑상마가린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518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만 해당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종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2000	글리세롤(조상의 것만 해당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2110	식물성 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2200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 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제16류-제24류)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만 해당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 또는 제5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20	동물간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31	칠면조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32	닭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50	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제2류 또는 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411	연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2	청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와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 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5	고등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60416	멸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3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10	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530	바닷가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540	기타 갑각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11	사탕수수당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12	사탕무당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만, 전화당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60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만, 전화당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90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인 것만 해당한다)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41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7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볶지 않은 것 또는 볶은 것을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200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10	탈지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2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400	코코아 버터(지와 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5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61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또는 용기에 들거나 즉시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32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120	제 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211	조란을 넣은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230	기타의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190240	쿠우스쿠우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3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날알상·진주상·무거 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420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로부터 얻어진 조제식료품 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부터 얻어진 조제식료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430	불거소맥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90510	귀리빵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520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531	스위트 비스킷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532	와플과 웨이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540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10	오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210	전 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31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320	송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00410	감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490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10	균질화한 채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20	감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40	완두(피성 새티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51	탈각한 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5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60	아스파라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70	올리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91	죽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9.60호, 제0709.90호, 제0710.80호, 제0710.90호, 제0711.90호, 또는 제0712.90호에 분류된 피킬로 고추와 아티초크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791	감귤류의 과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7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11	낙화생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20	파인애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30	감귤류 과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40	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50	살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60	버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70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80	딸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91	팜 하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00892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3.00호, 제0804.50호, 제0811.90호 또는 제0812.90호에 분류된 바나나와 망고, 제0810.90호의 것, 또는 제08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11	냉동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12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2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3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4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50	토마토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61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6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7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7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80	기타 단일의 과일 또는 채소의 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90	혼합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11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112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120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130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10	활성효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20	불활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10310	간장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320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10500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 제1212.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22 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110	광수와 탄산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300	맥주(맥아로 만든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10	발포성 포도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30	기타 포도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51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600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72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2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30	위스키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2084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50	진 및 제네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60	보드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9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1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과 펠리트 및 수지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10	옥수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30	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40	기타 곡물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50	채두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3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400	대두유의 추출로부터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500	낙화생유의 추출로부터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10	면실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20	아마인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30	해바라기씨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41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60	팜넛 또는 핵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700	포도주박과 생주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10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4012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130	담배 부산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10	시가·셔루트 및 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20	퀄런(담배를 함유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10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91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또는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2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300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410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510	규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610	석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620	규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700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10	벤토나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30	내화점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40	기타 점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50	홍주석·남정석 및 규선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60	몰라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70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900	초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010	분쇄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020	분쇄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110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120	천연탄산바륨(독중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200	규조토(예 : 키이젤겨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310	부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320	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514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5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512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52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및 앨러바스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20	사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9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10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20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30	타르매카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41	대리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81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830	응결백운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91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010	석고와 무수석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020	플라스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100	석회석용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210	생석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220	소석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230	수경성 석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10	시멘트클링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21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30	알루미나시멘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90	기타 수경성 시멘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410	청석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51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갬 운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520	운모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6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상도 아닌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620	파쇄 또는 분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810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10	장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30	백류석, 하석과 하석성장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301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3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6 류	광 · 슬랙 및 회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112	응결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120	배소한 황화철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300	동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700	연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310	배소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610	은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8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9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 · 드로스(입상의 슬랙은 제외한다) · 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62011	경아연 스펀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3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6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학적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7 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제27류의 주해	화학 반응의 제품인 제2707호부터 제2710호까지의 모든 상품은 그 화학 반응이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이 류의 목적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11	무연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112	유연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119	기타 석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젱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21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220	응결한 갈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703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4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만 해당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500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6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 여부는 불문하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710	벤조올(벤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720	톨루올(톨루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730	크실올(크실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740	나프탈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75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791	크레오소트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7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810	피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820	피치코크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0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710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11	천연가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12	프로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13	부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및 부타디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21	천연가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210	석유젤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0.75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71311	하소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12	하소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20	석유아스팔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9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10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500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 · 천연역청 · 석 유아스팔트 ·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만 해당한다(예 : 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600	전기에너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 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제 28 류 무기화합품 및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10	염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0120	요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130	플루오르 및 브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200	승화황 또는 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300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10	수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21	아르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30	질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40	산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50	붕소와 텔루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70	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80	비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490	셀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511	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512	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0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530	회토류금속·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540	수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610	염화수소(염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620	클로로황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800	질산과 황질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910	오산화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1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121	이산화탄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122	이산화규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310	이황화탄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3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1410	무수암모니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420	암모니아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511	고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12	수용액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2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30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64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7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810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910	삼산화크로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1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010	이산화망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120	어드컬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2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2300	산화티타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410	일산화연(리타지·메시코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1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20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30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40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50	산화동 및 수산화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60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70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80	산화안티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6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10	염화암모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20	염화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35	니켈 염화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41	산화염화동과 수산화염화동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2751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81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911	염소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9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2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010	황화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 및 술폭실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1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210	아황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220	기타 아황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230	티오황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11	황산이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3321	황산마그네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22	황산알루미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24	황산니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25	황산동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27	황산바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30	명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410	아질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421	질산칼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4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22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24	인산칼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26	기타 인산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5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40	탄산칼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50	탄산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60	탄산바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91	탄산리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92	탄산스트론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6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711	시아나화나트륨 및 산화시아나화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720	시아나칼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9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011	무수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0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020	기타 붕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50	기타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및 과산화크롬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61	과망간산칼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70	몰리브덴산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1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210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321	질산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3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330	금 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390	기타 화합물 및 아말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43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440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 또는 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방사성 잔재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510	중수(산화 중수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610	세륨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6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8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910	탄화칼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4920	탄화규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84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5200	무기 또는 유기 수산화합물(아말감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85300	기타 무기화합물(중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및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29 류	유기화합품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121	에틸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123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124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11	시클로hex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20	벤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30	톨루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41	오르토-크실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43	파라-크실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50	스티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60	에틸벤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70	큐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14	사염화탄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22	삼염화에틸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이브로모에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1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2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 및 클로로펜타플루오르메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5	불소 및 염소만을 가지는 퍼할로겐화 기타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7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51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을 포함한다(ISO, 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5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61	클로로벤젠·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para-디클로로벤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62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 클로로페닐)에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3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 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14	기타 부탄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 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 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 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43	만니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0545	글리세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5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611	멘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612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621	벤질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6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12	크레졸과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15	나프톨과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0723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7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8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8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11	디에틸에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3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09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 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030	1-클로로-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040	디엘드린(ISO, 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1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30	알데히드 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42	에틸바닐린(3-메톡시-4- 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3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11	아세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21	장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50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61	안트라퀴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470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1511	포름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12	포름산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21	초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24	무수초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31	초산에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32	초산비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36	초산디노셉(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50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60	부탄산 · 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70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15	올레산 ·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과 그들의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31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34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35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36	비나파크릴(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6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11	옥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12	아디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13	아젤라산 · 세바스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14	무수말레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1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과 그들의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4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5	무수프탈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7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1	락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2	타르타르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4	시트르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6	글루콘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18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23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3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과 그들의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91	2,4,5-티(SO)(2,4,5- 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8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1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011	파라티온(SO) 및 파라티온- 메틸(SO)(메틸-파라티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0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30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및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1	아닐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 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6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와 펜터민(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 페닐렌디아민 · 파라- 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1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2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31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과 노르메타돈(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310	콜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320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3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4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2421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424	에치나메이트(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4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511	사카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512	구루테치מיד(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5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מיד)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및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 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6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8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2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3020	티오키아바메이트와 디티오키아바메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30	티우람모노술폰파이드 · 티우람디술폰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폰파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40	메티오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50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90	기타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또는 제3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30.90호의 디티오키아본산염으로 변경된 것 ; 또는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0.90호의 그 밖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100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21	쿠마린 · 메틸쿠마린과 에틸쿠마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29	기타 락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91	이소사프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93	피페로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94	사프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2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31	피리딘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33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마이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INN), 펜타일(INN), 케토베미돈(INN), 메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치딘(INN),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드롤(INN), 피리트라미드(INN), 프로피람(INN)과 트리메페리딘(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41	레보파놀(INN) 및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53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도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과 비닐비탈(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3354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55	로프라졸람(INN), 메크로과론(INN), 메타과론(INN)과 지페프롤(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61	멜라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79	기타 락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91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과 트리아졸람(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3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410	불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3430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491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과 서펜타닐(INN)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4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500	술폰아미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1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2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3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4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5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6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7	비타민 C와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8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29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11	소마토트로핀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21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 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31	에피네프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40	아미노산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폰(INN), 모르핀,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폰(INN), 풀코딘(INN), 테바콘(INN)과 테바인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30	카페인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43	캐친(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91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39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 해당하며, 자당·젖당·엿당·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와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 또는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150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1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94200	기타 유기화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30 류	의료용품	
300120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210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3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만 해당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32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3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34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4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만 해당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42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4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44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450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51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10	살균한 외과용의 컷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와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60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7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92	폐의료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1 류	비료	
3101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21	황산암모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10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50	질산나트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6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310	과인산석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1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10420	염화칼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10430	황산칼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1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10510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2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320110	케브라쵸 엑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120	왓틀엑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210	합성유기유연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조제품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41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2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3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4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5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6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7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9	기타(소호 제3204.11호 내지 소호 제3204.19호 중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20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500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11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20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41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42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기타 안료와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5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10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20	법랑과 유약·유약용의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30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4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82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91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9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000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래커 및 디스탬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100	조제드라이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210	스탬프용의 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310	세트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410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코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511	흑색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품품류	
330112	오렌지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13	레몬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25	기타 민트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30	레지노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3021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300	향수 및 화장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491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4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510	샴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530	헤어 래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610	치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620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710	면도용 제품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72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7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741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7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20	기타 형상의 비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3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1	음이온성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40212	양이온성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40213	비이온성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40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402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40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1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20	목제가구·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3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40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6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만 해당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10	카세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11	건조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스위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400	펄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51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520	글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610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691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6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71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6 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	화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410	불꽃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5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610	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6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10	엑스선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130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19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10	엑스선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23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전으로 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1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2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3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4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1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2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3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4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5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6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1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3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4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5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310	롤상의 것(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70510	오프셋 복사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610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710	감광유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10	인조흑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12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210	활성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3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400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51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610	로진과 수지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620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630	에스테르 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8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700	목타르 · 목타르유 ·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891	살충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892	살균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893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894	소독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8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91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991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992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0993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0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 땀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상으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111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1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8112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22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23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300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충전물 및 충전된 소화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19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820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1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200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311	스테아린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312	올레인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313	톨유 지방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1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3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60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7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510	생활폐기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20	하수 찌꺼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30	감염성폐기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6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제39류-제40류)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10	폴리프로필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11	발포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2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22	가소화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12	물에 분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21	물에 분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91	공중합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30	에폭시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50	알키드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70	폴리(락트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91	불포화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10	요소수지 및 티오요소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20	멜라민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90930	기타 아미노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40	페놀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50	폴리우레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110	석유수지·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1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12	가소화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310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4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6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10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케이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만 해당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만 해당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40	연결구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8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91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92043	전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69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71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7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79	기타 셀룰로오스유도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92	폴리아미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93	아미노수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94	페놀수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99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1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2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3	폴리우레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4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9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210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과 세면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220	변기용 시트와 커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21	에틸렌 중합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30	카보이병 · 병 ·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40	스폴 · 콤팩 ·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50	뚜껑 · 마개 ·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10	저장기 · 탱크 ·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20	문 · 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3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392630	가구용 부착구·자동차 차체[코우치워크(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4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21	스모크드 쉬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30	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11	라텍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부틸고무)(IIR)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41	라텍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51	라텍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80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91	라텍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10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2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91	판·쉬트 및 스트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700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11	판·쉬트 및 스트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21	판·쉬트 및 스트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30	항공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40	모터사이클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50	자전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1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2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2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4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0121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12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13	항공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3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320	자전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410	콘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511	외과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10	셀룰라 고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1	바닥 깔개와 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2	지우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3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4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5	기타 팽창성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700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제41류-제43류)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20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150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190	기타(버트, 밴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320	파충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330	돼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1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41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104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3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40	파충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11	폴그레인, 언스프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12	그레인 스프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91	폴그레인, 언스프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92	그레인 스프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10	산양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20	돼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30	파충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420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51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52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2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31	외부 표면이 가죽·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3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10	의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30	벨트와 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40	기타의 의류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500	기타의 가죽제품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600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만 해당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 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만 해당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만 해당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만 해당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11	밍크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4류-제46류)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10	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21	침엽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22	활엽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30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210	대나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20	기타(침엽수류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41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410	침엽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420	활엽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500	목모와 목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61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6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10	침엽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1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2	비롤라·임부아 및 발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5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6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7	사펠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8	이로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3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40810	침엽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31	다크레드메란티 ·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910	침엽수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921	대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9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11	파티클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12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12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13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14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92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0.8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93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0.5그램 초과0.8그램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94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0.5그램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10	대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94	블록보드, 라민보드와 배튼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 플레이트상 ·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400	목재의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510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 ·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와 케이בל드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520	페렛,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페렛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600	목재의 통 · 배럴 · 배트 · 텡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700	목재의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10	창문, 프랑스 창과 창문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20	문 · 문틀 및 문지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섯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50	지붕이는 판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60	기둥 및 들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7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900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010	목재의 조상 및 기타의 장식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110	옷걸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1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5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502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50310	마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5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50410	블록·판·쉬트·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및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5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21	대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122	등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192	대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193	등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60194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211	대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212	등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6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0 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제47류-제49류)	
제 47 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00	기계목재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311	침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319	활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321	침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329	활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411	침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419	활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421	침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70429	활엽수류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5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610	면린터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620	회수(웨이스트와 스크랩)한 지 또는 판지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630	기타(대나무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691	기계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692	화학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693	반화학펄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71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73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7079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제48류의 주해	절단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4801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10	수제지와 판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2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40	벽지용의 원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4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5	롤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80256	슈트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7	기타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8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61	롤상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62	슈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6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3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축유한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착색한 것·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슈트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4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5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5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11	반화학 후로팅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12	스트로 후로팅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2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25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30	아황산포장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40	여과지와 판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50	펠트지와 판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9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9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93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80610	황산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20	내지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30	트래싱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40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7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해당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1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20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30	기타의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920	셀프복사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13	롤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14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31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3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92	여러 겹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10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41	셀프접착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51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81190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2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31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32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410	인그레인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420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620	셀프복사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710	봉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720	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73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810	화장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820	지제의 손수건·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830	책상보 및 서비에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840	위생 타올과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850	의류 및 의류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1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2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3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4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50	기타의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20	연습장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3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홀더 및 서철표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삼입식 카본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5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110	인쇄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20	여과용의 지와 판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쉬트 및 다이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61	대나무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7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490110	단매의 것(접어포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191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1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210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30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4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510	지구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591	책자로 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5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만 해당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만 해당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1110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달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1191	서화·디자인 및 사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911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 50 류	견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200	생사(곤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3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4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500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만 해당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600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만 해당한다) 및 누에의 거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710	견 노일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720	기타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790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1 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10111	깎은 양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21	깎은 양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30	탄화처리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2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220	조수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3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32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330	조수모의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400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10	카드한 양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21	코옴한 양모(단편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40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10810	카드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820	코윳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9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11120	기타(주로 또는 단독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30	기타(주로 또는 단독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20	기타(주로 또는 단독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11230	기타(주로 또는 단독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3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2 류 면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21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291	가아넷스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2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3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420	소매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51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5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52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6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7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615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변수 8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5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819	기타 직물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9	기타 직물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3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3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83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3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5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85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5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1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1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1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2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2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92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3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3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3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2	데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3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094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5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5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5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1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1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2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102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3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3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3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4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4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5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105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1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1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1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20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3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3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113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2	데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3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51	평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5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115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2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3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4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5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21222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3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5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3 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1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121	쇄경 또는 타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1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130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21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310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5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610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6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30710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7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810	코이어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820	대마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101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1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11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12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11	아라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3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232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44	탄성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45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5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5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26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26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또는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2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411	탄성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4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500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10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만 해당한다)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2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30	제 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74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761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78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8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8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408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2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2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3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4083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제 55 류	인조스테이프섬유	
5501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200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11	아라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4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510	합성섬유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70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프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82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11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1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21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2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31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093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41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4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1	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2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3	주로 면과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0961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6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91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9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11	단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01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20	기타의 사(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30	기타의 사(주로 면과 혼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90	기타의 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13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만 해당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2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33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4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만 해당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1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만 해당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3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만 해당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449	기타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1	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3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2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22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9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1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1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1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2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2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3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516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3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4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4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92	염색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551694	날염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이고 날염 또는 염색된 것
제 56 류	워딩 · 펠트 및 부직포 · 특수사 ·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10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1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1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601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130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밀네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10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2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29	기타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1	1제곱미터당 총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2	1제곱미터당 총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603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605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600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만 해당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21	포장용 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2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41	포장용 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4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60750	기타 합성섬유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31호부터 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5402.69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900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57 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1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10	켈럼·슈맥·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3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7024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50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9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99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20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70330	기타 인조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410	타일(표면적이 최고0.3제곱미터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5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8 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1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122	절단된 코르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3	기타 위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4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5	절단된 경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6	셔닐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131	절단되지 아니한 위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2	절단된 코르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3	기타 위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4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5	절단된 경파일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136	셔닐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90	기타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2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220	기타 섬유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230	터후트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3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10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21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430	수제의 레이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500	고우벌린직 · 플란더스직 · 오버션직 ·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 및 예를 들어 파티포인트 · 십자수 같은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10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과 셔닐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2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총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3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63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덱)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710	직조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7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0810	브레이드(원단상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900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하며, 다른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010	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0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8109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0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10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902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22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9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410	리놀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5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61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90691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69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7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만 해당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9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보강한 것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91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만 해당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10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펄트 및 펄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물품으로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20	불팅클로드(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31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32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59114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10	롱파일 편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 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1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9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30	합성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4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2	염색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52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4	날염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32	염색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534	날염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2	염색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4	날염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5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2	염색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624	날염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2	염색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4	날염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00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42	염색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4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44	날염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제61류의 주해	이 류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품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품은 그 상품을 위한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1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13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1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2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2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23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2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10	슈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32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2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33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3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34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4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1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419	기타 방직용 섬유 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2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2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3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3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4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4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5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5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5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6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6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6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51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52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61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62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1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7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11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8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83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3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91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011	양모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0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0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03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0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1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130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1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1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12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220	스키슈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31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41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2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300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4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43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21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22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30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94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95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61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6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69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69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6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710	쇼울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11780	기타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790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제62류의 주해	이 류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품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품은 그 상품을 위한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한다.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1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9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1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9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2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2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3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4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1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2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2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3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4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5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5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6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6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6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63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71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7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7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7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7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811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8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8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8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8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8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89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09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930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9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010	제5602호 또는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020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 내지 제6201.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030	기타 의류(소호 제6202.11호 내지 제6202.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040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050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111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12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20	스키슈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3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13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42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210	브래지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230	콜세렛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3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420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44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5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520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600	장갑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21710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790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낱마	
제63류의 주해	이 류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품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품은 그 상품을 위한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한다.	
630110	전기모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12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13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14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19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10	베드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22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2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3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232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4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5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25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6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293	인조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2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312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3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3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4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4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4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492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493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4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510	황마 또는 제5303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520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532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53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612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6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622	합성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6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630	돛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691	면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6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710	마루뒹이포·접시뒹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072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7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800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9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31010	선별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10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40291	발목을 덮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3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51	발목을 덮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91	발목을 덮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팩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팩지션레더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10호를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40691	목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40699	기타 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501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펠트제의 플래도우 및 맨손(슬릿맨손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2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4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510	헤어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610	안전모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699	기타 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7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6 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1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191	대가 절첩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200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32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우모와 그 부분·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210	플라스틱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290	기타 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300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만 해당한다)와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11	전체가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20	인모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90	기타 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 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801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만 해당하며, 슬레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1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만 해당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21	대리석·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23	화강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29	기타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91	대리석·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92	기타 석회질 암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93	화강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299	기타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41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421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422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만 해당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423	천연석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430	수지석(手砥石)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510	방직용 섬유 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8052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53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610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 스위트 또는 롤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62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710	롤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패밥 · 칩 · 파티클 · 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 · 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911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9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0990	기타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011	건축용 블록 및 벽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0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0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81181	파형의 쉬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182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183	관 및 관의 연결구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189	기타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280	청석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1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2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3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3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410	판·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510	비전기용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520	이탄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69 류		도자제품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90100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아토마이트)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21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22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2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310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320	알루미나(Al ₂ O ₃)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 ₂)의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510	기와(지붕타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5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600	도자제의 관·도관·흙통 및 관의 연결구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71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7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81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8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11	자기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19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010	자기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0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110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1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310	자기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3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691410	자기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490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210	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220	봉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231	석영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312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 또는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320	망입 쉬트유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330	프로파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420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 또는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490	기타 유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510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불투명한 것·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0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530	망입유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600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만 해당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07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07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991	틀이 붙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992	틀이 붙은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010	앰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020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110	전등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120	음극선관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22	납 크리스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28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33	납 크리스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37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41	납 크리스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42	선팅창계수가 섭씨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91	납 크리스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61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710	석영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01720	선팅창계수가 섭씨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810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820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11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12	로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31	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32	얇은 쉬트(보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40	로빙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51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52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1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020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4 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제71류)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0110	천연진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1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122	가공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10	선별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31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391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410	압전기용 석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420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10	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9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92	일차제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700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11	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20	화폐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9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1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4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111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311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319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411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419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51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1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5 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제 72 류	철강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15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60	페로니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70	페로몰리브데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8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1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2	페로바나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3	페로니오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41	선삭·셰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변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510	입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521	합금강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610	잉곳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12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0.25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10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4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7	두께가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8	두께가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7	두께가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8	두께가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11	두께가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12	두께가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20	납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41	파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2105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7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13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0.25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10	주석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3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4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50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60	클래드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20	기타(괘삭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10	단조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30	기타(괘삭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51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55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21610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21	엘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22	티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31	유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32	아이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33	에이치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40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50	기타 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1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20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30	기타 비(卑)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8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8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33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0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220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2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30	기타 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40	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4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4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11	방향성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30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40	기타(코일상의 것은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11	방향성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20	고속도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710	고속도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10	고속도강의 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3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4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5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60	기타의 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70	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80	중공드릴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10	강시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120	형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210	궤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230	첨단궤조 · 교차구류 ·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240	계목판과 저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3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11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22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23	기타 드릴파이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3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044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5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4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30	기타(용접한 것만 해당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만 해당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50	기타(용접한 것만 해당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69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6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11	비가단주철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21	플랜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23	바트용접용 연결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91	플랜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93	바트용접용 연결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7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810	다리와 교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820	타과 격자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0830	문 ·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840	비계 · 차단기 · 지주 또는 광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09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 탱크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01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021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0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100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210	연선 · 로프 및 케이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300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끈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끈 2중선으로서 올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12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14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20	그릴 · 망 및 올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1431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41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450	익스팬디드메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11	롤러체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12	기타체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19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20	스키드체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81	스터드링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590	기타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600	철강제의 닳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700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1811	코치스크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12	기타 목재용 스크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13	스크루축과 스크루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15	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16	너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21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22	기타 와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23	리벳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24	코터와 코터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8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920	안전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930	기타 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010	판상스프링과 그 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020	나선용 스프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2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1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12	액체연료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19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8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82	액체연료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89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211	주철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2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31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391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392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393	스테인리스강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32410	설거지와 세면대(스테인리스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421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4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510	비가단주철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59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61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6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620	철강선제의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740100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200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312	와이어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313	빌레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40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321	동-아연의 합금(황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322	동-주석의 합금(청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329	기타 동합금(제7405호의 마스터얼로이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500	동의 마스터얼로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610	비충상조직의 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620	충상조직의 분과 플레이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710	정제한 동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7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7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 되지 않는다.
7408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 되지 않는다.
7408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 되지 않는다.
740822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 아연 합금의 것(양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 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408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11	코일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21	코일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31	코일상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4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0990	기타 동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011	정제한 동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012	동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021	정제한 동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022	동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110	정제한 동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121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41122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210	정제한 동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220	동 합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300	동제의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510	못과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521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533	스크루, 볼트와 너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5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811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8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820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991	주조 · 주형 ·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9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10	니켈의 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50120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2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220	니켈 합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4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2	니켈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2	니켈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20	니켈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7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712	니켈 합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720	관연결구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810	니켈선제의 클로드·그릴 및 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120	알루미늄 합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10	비층상조직의 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20	층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21	중공프로파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60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6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6061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612	알루미늄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69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692	알루미늄 합금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7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720	뒷면을 붙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8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820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9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01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611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3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511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6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61610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691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6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8 류	연(鉛)과 그 제품	
780110	정제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2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1	쉬트·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20	분과 플레이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600	연제의 기타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790120	아연 합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310	아연더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400	아연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500	아연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700	아연제의 기타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1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120	주석 합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3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700	주석제의 기타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81 류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4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6	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7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10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4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5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 ·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6	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7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320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33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3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2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 · 연삭설 및 입,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5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괴,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53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10600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0720	카드뮴의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73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820	티타늄의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83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8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920	지르코늄의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93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9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010	안티모니의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12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13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21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22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51	과,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52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92	과,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112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113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82 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10	가래 및 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20	포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30	곡괭이·픽스·괭이와 쇠스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40	도끼·빌축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60	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90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10	수동식 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20	띠톱의 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40	전기톱의 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2032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30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유사한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40	파이프 커터·볼트 크로퍼·천공편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411	조정할 수 없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412	조정할 수 있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10	드릴링·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20	해머와 슬레즈해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30	목재가공용의 대패·끌·동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40	스크루드라이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51	가정용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60	블로램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70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80	앤빌, 가반식 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90	앞의 각 소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 물품의 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600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20713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20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30	프레스 · 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40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5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60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70	밀링용의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80	터닝용의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90	기타 호완성 공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10	금속 가공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20	목재 가공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3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40	농업 ·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900	공구용의 판 · 봉 · 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4	칼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5	비(俵)금속제의 손잡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210	면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290	기타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300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기와 그 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42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83 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110	자물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40	기타의 자물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5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6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10	경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20	카스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50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300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304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510	서류철용 피팅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52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1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3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710	철강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79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810	촉·아이 및 아이릿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82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910	크라운코르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31110	비(卑)금속제의 용접봉(플렉스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20	비(卑)금속제의 선(플렉스를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30	비(卑)금속제의 봉과 선(플렉스를 봉에 도포한 것이거나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4류-제85류)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10	원자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13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채(카트리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19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0220	과열수보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310	보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410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착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42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04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510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5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681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682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06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10	항공기용 엔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21	아웃보드 모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31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32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90	기타의 엔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820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890	기타의 엔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0910	항공기 엔진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9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011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012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013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11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21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22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1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91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21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231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8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11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40	콘크리트 펌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5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60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381	펌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91	펌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92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410	진공펌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2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3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51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46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8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10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2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81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82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83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610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620	기타의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63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6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710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황철광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78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7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810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21	압축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3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50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61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91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11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20	내과용·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31	농산물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32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40	증류기 또는 정류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50	열교환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1981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8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010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091	실린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0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11	크림분리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12	의류탈수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11	가정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22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30	병·강통·상자·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40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20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8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90	각종의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20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3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81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8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11	전동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31	전동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41	차고용의 재킹시스템에 내장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42	기타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11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20	타워크레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3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26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91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6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720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790	기타의 작업트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20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32	기타 버켓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33	기타 벨트형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60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및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89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11	무한 궤도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20	그레이더와 레벨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30	스크레이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40	탐핑머신 및 로드롤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9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10	항타기와 항발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2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31	자주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41	자주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50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61	탐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0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1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2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31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41	버켓 · 셔블 · 그랩과 그립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42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43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1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10	플라우(쟁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30	파종기·식부기와 이식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40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11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20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30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4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52	기타의 탈곡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53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60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410	착유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20	낙농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510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5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3621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91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7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7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10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40	양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50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392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93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9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010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0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10	절단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30	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4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230	기계류·장치 및 장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240	상기한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250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1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4312	오프셋 인쇄기계(쉬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이트를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3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7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91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11	카드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12	코밍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13	연조기 또는 조방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45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20	방적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30	합사기 또는 연사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4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61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6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6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720	횡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7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11	도비기와 자카드기 및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복사·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20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31	침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4832	침포는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33	스핀들 · 스핀들플라이어 ·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42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51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기타의 물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900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포함한다)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12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2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21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40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50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기(직물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10	가정형의 재봉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21	자동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30	재봉기용 바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40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90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310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또는 가공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320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3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3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410	전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42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5430	주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4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510	관 압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521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522	냉간 압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530	압연기용의 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590	기타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6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6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6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710	머시닝센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73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81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8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89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58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1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2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3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40	기타의 보링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5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5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6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6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970	기타의 나사절삭 또는 태핑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1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2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3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60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40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120	쉐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130	부로칭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14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150	톱기계 또는 절단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1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1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2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3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41	수치제어식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91	액압 프레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2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631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파일·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320	나사전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330	선가공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3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410	톱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420	연마기 또는 광택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4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10	다 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1	톱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2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으로 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3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4	굽힘기 또는 조립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5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6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5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61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620	가공용 홀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663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691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692	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693	제8456호 내지 제8461호의 기계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694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1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21	각종의 드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22	톱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81	체인톱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8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91	체인톱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810	수지식 취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6880	기타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8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900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없이 작동되는 것만 해당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30	기타의 계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50	금전 등록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49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70	기억장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8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1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210	등사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봉합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321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3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340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35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20	파쇄기 또는 분쇄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 또는 모르타르 혼합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80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1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기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7521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용의 기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5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62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6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68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76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6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10	사출 성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20	압출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30	취입 성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40	진공성형기와 기타의 열성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의 이너튜브 성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80	기타의 기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810	기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8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9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792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3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4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50	산업용 로봇(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60	증발식 에어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81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8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01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20	주형 베이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30	주형 제조용의 모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804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50	유리 성형용의 주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6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7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110	감압밸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812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40	안전밸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80	기타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210	볼베어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8250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280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291	볼 · 니들 및 롤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2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3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과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50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410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420	메커니컬 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490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71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 85 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3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3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3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34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40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15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5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53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6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6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164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21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21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21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22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231	풍력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240	회전변환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21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22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32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33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34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40	정지형 변환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450	기타의 유도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511	금속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520	전자석 커플링 · 클러치와 브레이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610	이산화망간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630	산화수은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640	산화은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650	리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660	에어징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680	기타의 일차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6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축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720	기타의 연산 축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730	니켈 카드뮴 축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740	니켈-철 축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780	기타의 축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7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811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08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860	기타의 진공청소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87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980	기타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9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010	면도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020	이발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030	모발제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0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110	점화플러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150	기타의 발전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180	기타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190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40	원드스크린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310	전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430	기타의 노와 오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40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11	납땜용의 인두와 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31	헤어드라이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632	기타의 이용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33	손 건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40	전기다리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60	기타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러링·그릴러와 로스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71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72	토스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7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80	전열용 저항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11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718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61	기지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62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7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50	음향증폭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18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920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950	전화응답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981	자기식 · 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9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210	픽업 카트리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기록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3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2340	광학식 매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351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352	스마트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3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38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550	송신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610	레이더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691	항공용 무선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2713	기타의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7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72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7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79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27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4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5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6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28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71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72	기타(천연색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873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91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2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01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0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0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120	액정표시단자(엘시디)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1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1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21	탄탈륨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225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30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321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3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331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3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340	기타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400	인쇄회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510	퓨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521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5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610	퓨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20	자동차단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41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50	기타의 개폐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661	램프홀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70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9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720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381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7호의 물품용만 해당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910	실드빔 램프유닛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21	팅스텐 할로겐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22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2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32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3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41	아크 램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4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11	천연색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12	흑백 또는 단색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의 광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0.4밀리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5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60	기타의 음극선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71	자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72	속도변조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7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81	수신관 또는 증폭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8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91	음극선관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099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21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4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30	사이리스터, 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50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 기·클럭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32	메모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33	증폭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310	입자가속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4320	신호발생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330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37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11	동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2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54460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70	광섬유 케이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511	노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520	브러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610	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620	도자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72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810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60400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 · 기중기차 · 밸러스트탬퍼 · 트랙라이너 · 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5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1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3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606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1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2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60730	흑과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91	기관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8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190	기타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290	기타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10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390	기타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만 해당한다)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490	기타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510	기중기차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52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530	소방차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590	기타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21	안전벨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8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7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8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0911	전기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9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09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000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만 해당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11	안장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20	신체장애이용 차량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92	휠 림과 스포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1493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킷 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95	안장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62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631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6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64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680	기타의 차량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716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211	자중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212	자중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220	자중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230	자중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32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33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521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만 해당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120	탱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13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20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310	인플랫터블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3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510	준설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52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610	군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71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90800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약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10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120	편광재료제의 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130	콘택트렌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0140	유리제의 안경렌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150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220	필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311	플라스틱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319	기타 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410	선글라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0510	쌍안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내부기관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의학용 또는 범죄학용 비교 사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40	즉석인화사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52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0691	카메라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11	폭이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20	영사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91	촬영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0792	영사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10	환등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2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30	기타의 투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40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010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기타의 기기 및 네가토스코우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60	영사용 스크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10	입체현미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20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180	기타의 현미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1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및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3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2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80	기타의 항행용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510	거리측정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2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30	수준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40	사진측량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600	강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20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811	심전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4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2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831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32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50	안과용의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189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및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92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スマ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11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121	의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131	인조관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1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3	기타(치과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9	기타 용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2229	기타 용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30	엑스선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262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1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30	분광계·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2750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90	마이크로툼 및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10	기체용 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20	액체용 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30	전기용 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910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20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 누화계 · 계인측정계 · 만곡률계 · 잠음전압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82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10	균형시험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20	테스트벤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41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의 것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314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80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10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20	매노우스타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81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032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3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1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121	자동권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1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1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102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221	자동권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2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291	전기구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2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310	전기구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판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511	전기구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521	전기구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591	전기구동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610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0700	타임스윗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8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820	자동권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911	자명종 시계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109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만 해당한다)(무브먼트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19	러프 무브먼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1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2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80	기타의 케이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220	케이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2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32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420	시계용 보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430	문자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440	지판과 브리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10	업라이트 피아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120	그랜드 피아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510	금관악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2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600	타악기(예 :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넷트 · 마라카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온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810	뮤지컬박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20930	악기용의 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992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994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9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 19 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3 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11	자주식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301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200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10	총구장전화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20	기타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3033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400	기타의 무기(예 :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51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521	산탄총의 총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5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30591	제9301호의 군용무기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21	탄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30	기타의 탄약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307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 20 부	잡 품	
제 94 류	가구와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서포트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10	항공기용의 의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20	차량용의 의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4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5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카바등을 댄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71	의자의 속 · 용수철 · 카바등을 댄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7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80	기타의 의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40210	치과용 의자 · 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2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10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20	기타의 금속제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60	기타의 목제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70	플라스틱제의 가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8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8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421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429	기타 재료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430	슬리핑 백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40510	샹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40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91	유리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600	조립식 건축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95 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41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42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430	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440	유희용 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504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11	스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12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21	세일보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31	골프채(완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32	골프공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40	탁구용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51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5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61	로온테니스 공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6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5067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91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710	낚시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72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730	낚시 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7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81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8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96 류	잡품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200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만 해당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21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603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30	화화용의 붓 · 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40	페인트용 · 디스토퍼용 · 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및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50	기타의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4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5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10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21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22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2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30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11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2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10	볼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6082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31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3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40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6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9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2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만 해당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100	일부인·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만 해당한다)과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210	리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220	잉크 패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6132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80	기타의ライタ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90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400	깍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511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519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5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620	화장용 분침과 패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700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8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및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10	회화·데생과 파스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190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2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품목명	원산지 기준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 또는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 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600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만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공정 및 처리의 취급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로 수출되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그곳에서 수행된 공정 및 처리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¹⁾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과 제4장(원산지 절차)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품이 제3.1조부터 제3.14조까지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원산지 절차

3. 상품이 제1항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에 그러한 사항을 언급한다.

4. 제4.8조(검증)에 따라, 각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검토

5.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 목록의 개정 또는 수정을 요청한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고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상품 목록을 개정 또는 수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목록을 개정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에 대해 검토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속서를 개정 또는 수정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부속서의 적용 정지

7.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원산지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특혜관세대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그 상품에 대해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2개월 전에 통지하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된 정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9. 정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해 정지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7항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10.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제7항에 따른 이 부속서의 적용 정지는 제8항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도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는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1. 해당 당사국은 제8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2개월 전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제안된 정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자국의 조치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폐기 선택

12. 이 협정의 발효 다음 날부터 5년 후, 당사국은 검토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재량으로 이 부속서의 적용 결과로 자국의 이익이 손상을 입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 부속서의 적용을 폐기할 수 있다.

분쟁해결

13. 어느 당사국도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상품 목록

번호	HS 6	품목명
1	320649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착색제와 조제품/기타/
2	391590	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기타 플라스틱의 것/
3	392310	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392350	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400599	고무와 그 제품/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기타/기타/
6	401699	고무와 그 제품/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기타

		/기타/
7	410799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유연처리 또는 크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기타(반신의 것을 포함한다)/기타
8	420212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충케이스·권충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9	420219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충케이스·권충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기타/
10	420229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충케이스·권충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기타/
11	420232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충케이스·권충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12	430211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밍크의 것
13	430219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기타/
14	430220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430230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16	430310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17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18	481620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카본지·셀프복사지·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4809호의 것을 제외한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 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셀프복사지/
19	481940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브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20	63079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Ningma/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기타/
21	640620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22	640699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기타/기타 재료제의 것/
23	650590	모자 또는 그 부분품/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24	650700	모자 또는 그 부분품/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헤트파운데이션·헤트프레임·챙 및 턱끈

25	660199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기타/기타/
26	700991	유리와 유리제품/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틀이 붙지 아니한 것/
27	701590	유리와 유리제품/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기타/
28	711719	모조신변장식용품/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29	711790	모조신변장식용품/기타/
30	731700	철강의 제품/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31	731815	철강의 제품/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나선가공한 제품/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	731819	철강의 제품/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나선 가공한 제품/기타/
33	732599	철강의 제품/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기타/기타/
34	820551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핀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기타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가정용공구/
35	821300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36	830210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경첩
37	830590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비(卑)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비(卑)금속제의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에 한한다)/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38	845210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재봉기(제8440호의 재봉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가정형의 재봉기/
39	848390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40	85011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1	85166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기타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러링·그릴러와 로스터/
42	85169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부분품/
43	85189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 세트/부분품
44	851981	자기식·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5	852190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46	852290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47	852329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자기식 매체/기타/
48	85238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기타/
49	852713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기타의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50	85272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자동차용으로로서 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1	852849	기타 음극선관 모니터
52	852859	기타 모니터

53	852869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프로젝터/기타
54	852871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55	852872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56	85367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57	85392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기타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제외한다)/터스텐 할로겐의 것
58	85393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방전램프(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59	853939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방전램프(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기타
60	85399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부분품/
61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천연색의 것/
62	854071	자전관
63	85409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부분품/음극선관의 것/
64	85443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접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65	854720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낸 것에 한한다)/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66	854890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기타
67	880400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68	9001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기타/
69	900211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대물렌즈/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70	9004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기타/
71	900652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기타의 사진기/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72	900659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기타의 사진기/기타/
73	910111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4	910129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75	910211	시계와 그 부분품/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76	910219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77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관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78	910521	벽 시계/전기구동식의 것/
79	910819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전기구동식의 것/기타
80	91091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전기구동식의 것/기타/
81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82	911120	시계와 그 부분품/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3	911190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부분품
84	911290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부분품
85	911320	시계와 그 부분품/휴대용 시계줄·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6	911390	휴대용시계줄·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기타
87	911430	시계와 그 부분품/기타 시계의 부분품/문자판/
88	911490	기타 시계의 부분품/기타/
89	940130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90	940169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기타의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기타/
91	940180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기타의 의자/
92	940310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사무실용 금속제가구/
93	940320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기타의 금속제가구/
94	940490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기타/
95	940510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츠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산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6	940591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츠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부분품/유리제의 것/
97	940599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츠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부분품/기타/
98	950300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99	950430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100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조 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

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5.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제 4.2 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 가.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계획된 것이라고 수입 당사국이 판단하지 않는 한, 수입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제 4.3 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그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수입 당사국의 적용 절차에 따라 같은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되거나 보관된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이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되거나 보관된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관세당국이 그러한 운영을 승인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 4.4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 대해 다음을 요구한다.

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을 통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나. 가호의 진술 작성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다. 적용가능한 경우, 제3.14조(직접 운송)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할 것, 그리고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및 다호에 언급된 문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할 것

2. 수입자가 그 진술 작성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진술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다.

3. 수입자가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된다.

제 4.5 조

특혜관세대우의 수입 이후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는 그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 가. 해당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수입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
- 나.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 다. 해당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

제 4.6 조

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 4.7 조 **형식적 오류**

1.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그 오류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2. 수입자는 통지를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 정정본을 제출한다.

3. 정정본은 수정 사항, 수정한 날 및 적용가능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발급한 인에 의해 서명된다.

4. 수입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정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4.8조에 따른 검증의 수행에 착수할 수 있

다.

제 4.8 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제1항나호 또는 제1항다호에 따른 요청과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응답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3.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제1항가호 또는 제1항나호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에 대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 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가. 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1) 그러한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 2)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그리고
- 3) 그러한 요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입수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문서가 정본인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진술에는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당국은 검증 방문 30일 이전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7.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경우, 상품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관세의 납부 후에 반출될 수 있다. 검증의 결과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확인되면, 보증금 또는 납부된 관세는 환급된다.

8.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어떤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미 결정하였던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동일 상품의 모든 후속 수입에 대해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4.9 조 벌칙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인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

제 4.10 조 비밀유지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개되면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비밀유지에 대한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2. 이 장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사법 절차상 이유로 공개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 4.11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12 조
수정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증빙 논거 및 연구 결과와 함께 수정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에 대해 제안의 제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응답한다.

3. 양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25조(관세 · 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관세 · 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제 4.13 조
이행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부속서 4가는 제 4.1조 및 제4.6조를 대신하여 적용된다.¹⁾

2.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이후에는, 제4.1조 및 제4.6조가 부속서 4가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13조와 제3장(원산지 규정)에 사용된 **원산지 증명서**라는 용어는 부속서 4가의 규칙 1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의 의미를 지닌다.

4. 전자본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다음 날부터 1년 후에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 증명 체계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제 4.14 조

공통 규정

1.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법, 규정 및 행정 정책을 통해,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운용에 관한 공통 규정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내에 공통 규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이행한다.

제 4.15 조

정의

1) 부속서 4가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제4.1조와 제4.6조가 적용되기 시작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양 당사국에 의해서 인정된다. 부속서 4가의 규칙 6에 언급된 인 및 수입기관은 부속서 4가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거기에 언급된 문서를 보관한다.

이 장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동일 상품이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부속서 4가 원산지 증명

규칙 1: 원산지 증명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세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2: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나 그 수출자의 책임하에 있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²⁾에 의해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수입기관이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수출 이전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조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증빙 증거를 요청하고 수출자의 회계에 대한 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규칙 1의 가호에 언급된 양식이 적절히 작성되는 것을 보장한다.

규칙 3: 수입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을 통지한다.

3. 등록부의 어떠한 변경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되며, 그 변경은 통지한 다음 날부터 5일 후 또는 그러한 통지에 적시된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4. 각 당사국의 수입기관은,

가. 명시된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이 수출되는 탁송화물과 상응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다.

규칙 4: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규칙 1의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나. 원산지 상품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다만,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미화 2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되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작성된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
든 적절한 문서를 수출 당사국 또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에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영어로 작성된다. 신고서가 수
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원산지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수출자는 그 원산지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
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수입자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규칙 5: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한
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규칙 6: 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더불어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 정보를 그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원산지 증명을 제공하는 수출자는 문제가 되는 원산지 증명의 사본과 더불어 제1항에 언급된 문서를 그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5.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문서를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6.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부록 4가-1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증명서 번호: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_____ 발급됨 (뒷쪽 설명 참조)		
2.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3.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4. 운송 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 날짜: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			5. 비고:		
6. 물품의 연번(최대 20)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 명세	8. HS 번호 (6단위)	9. 원산지 기준	10. 총중량 및 수량 (수량 단위) 또는 다른 단위 (리터, m ³ 등)	11. 송장 번호 및 날짜
12 수출자 신고: 아래 서명자는 상기의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모든 상품은 _____(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수입국)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증명: 수행한 검사에 근거하여,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기술된 상품이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수입기관의 서명 및 소인)		

뒷쪽 설명

증명서 번호 :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생산자들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도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 이란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이란에 명기될 수 있다.

제6란: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란: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기재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별 3개) 또는 “ \ ” (사선) 을 더한다.

제8란: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9란: 수출자는 제9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9란에 기입
해당 상품이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WP
해당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공정 요건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SR ³⁾
해당 상품이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3) 해당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상품의 생산 시 도달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명기한다. 또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

참조 : 여기의 설명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 제10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 제11란: 송장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명시된다.
- 제12란: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 제13란: 이란은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권한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소인을 찍는다.

부록 4가-2
원산지 신고서4)

그 문안이 아래에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이 문서(인증 번호 _____ 5)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 _____ 6)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기준 _____ 7)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_____(장소 및 날짜)⁸⁾

(수출자의 서명, 또한 이 신고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정자체로 명시되어야 한다.)

_____(비고)⁹⁾

- _____
4) 이 원산지 신고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5) 원산지 신고서가 부속서 4가의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지우고 빈 칸으로 남긴다.
- 6)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대한민국, 페루).
- 7)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부록 4가-1의 제9란에서와 같이 명기된다.
- 8) 동 정보의 표시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될 수 있다.
- 9) 특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상품이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3.15조가 적용되었음”을 표시한다.

부속서 4나
원산지 증명서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2. 포괄확인기간: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_____ / ____ / ____ 부터 _____ / ____ / ____ 까지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선택): 이메일(선택):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5. 물품명세:	6. HS품목번호#	7. 원산지 기준	8. 생산자	9. 가치 평가	10. 원산지 국가	
11. 비고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들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이 상품들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이 상품들에 대해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장으로 구성된다.						
12. 권한있는 서명:				회사:		
이름:				직책:		
연도 월 일 날짜: _____ / ____ / ____				전화번호: 팩스: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제2란: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된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가 요청되는 상품의 선적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선택)를 기재한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명기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이메일 주소(선택)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HS 품목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한 상품의 단일 선적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 및 일련번호와 더불어 가능한 경우 상업적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포함한 측정 단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참조 번호를 명시한다.
- 제6란: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 제7란: 제5란의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아래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택일).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

- A 해당 상품이 제3.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B 해당 상품이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C 해당 상품이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D 해당 상품이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8란 : 제5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

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에 대한 본인의 신뢰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제9란: 제5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참조 :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페루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한다).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 판정 또는 판정의 적용을 받은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비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한다.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이 란에 명시될 수 있다.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참조 : 여기의 설명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제 5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1 절

무역원활화

제 5.1 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의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사이에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나. 양 당사국의 행정 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의 보장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반출 및 운송수단의 이동 보장

라. 양 당사국간 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마.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 증진

제 5.2 조

권한있는 당국

1. 이 장의 운영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이란,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

2. 각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접촉 부서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러한 접촉 부서의 상세 연락처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접촉 부서의 상세 연락처의 변경을 신속히 서로 통지한다.

제 5.3 조 원활화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으며, 투명하고, 무역을 원활하게 할 것을 보장한다.

2. 가능한 경우 그리고 각각의 관세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당사국이 그 당사국인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무역 관련 합의문서에 부합한다. 이 합의문서에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 협약)(개정판)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개정 교토 협약)의 것들도 포함된다.

3. 각 당사국은 최소한의 서류 요건으로 상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통관 사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4.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를 운용함에 있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업자들이 이를 통해 상품의 반출을 포함하여 통관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규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다른 방식의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5.4 조 관세평가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한다.

제 5.5 조 품목분류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당사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한다.

제 5.6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¹⁾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²⁾이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

1) 이 조의 목적상, 페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이 인에게는 재심 또는 불복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양해된다.

다. 이 정보는 양 당사국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

제 5.7 조 사전심사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사안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가. 품목 분류

나. 원산지 규정의 실행,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이러한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한다.

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최대 120일의 기간 또는 당사국이 설정한 더 짧은 발급 기간

나. 사전심사결정서의 확인, 취소 및 공표를 위한 조건, 그리고

다. 제재 조치

3.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관세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특히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규정 등의 통관 사안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4. 특히 기한 등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 사용, 취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다.

5. 페루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201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이행한다.

제 5.8 조

종이없는 무역 환경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진전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가 높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2.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의 도착 전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3. 상품이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양 당사국의 통관 영역에 들어오거나 그로부터 나갈 때에는, 양 당사국은 관련된 국내 당국이 그 상품을 단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검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5.9 조

위험관리

1. 각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고위험 상품 선적에 대한 검사 활동에 집중하고 반출을 포함하여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촉진한다. 추가적으로 관세행정기관은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위험관리 응용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급망을 통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공한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제 5.10 조

공표 및 문의처

1.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신이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행정 절차를 공표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통관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 공개된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관장하는 그 관세법 또는 절차를 현저하게 수정하는 경우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게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5.11 조

특송 화물

각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도 특송 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는 그 무게 또는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필요한 통관 문서가 제출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제공한다.

제 5.12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 관세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도착 이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즉시 상품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실제 도착 이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자국 관세행정기관이 적용하는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3.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최종 지불액을 포괄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보증금,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통관 협력

제 5.13 조 통관 협력

1. 양 당사국은 통관 및 통관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적법한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이 협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특히 관세 법령에 위반되는 작업의 방지, 적발 및 조사에 의해 그 법령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권한 내의 분야에서 이 장에 규정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서로 지원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양국간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수출 및 상품의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및 자료 요소의 국제기준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의 관세 분석소 및 과학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관세 분석 기법을 조화하도록 노력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통관 전문가를 교환하는 것

라.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해 통관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업계 및 재계와의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가능한 범위에서, 수입된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품목 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를 포함한 그 밖의 통관 사안에 있어 서로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 절차 그리고 특히 위조 상품에 대해서 관세당국에 의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아.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수입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서 환적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를 통과하는,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해상 컨테이너 및 그 밖의 선적의 교역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개선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장된 협력의 목적이 다

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통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 그리고
- 2) 가능한 범위에서, 컨테이너 안정성 관련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 협의체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제 5.14 조

통관 협력의 이행

1. 이 절의 이행은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위임된다. 관세행정기관은 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현행 규칙을 고려하여 이 절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세부적 이행 규칙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부서를 교환한다.

제 5.15 조

통관사안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

1.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비특혜 원산지, 품목 분류, 평가, 원산지 결정 및 관세 법령 위반 또는 위반일 수 있는 인지되거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 준수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적절한 경우 상품에 적용된 통관 절차를 구체화하여,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적절히 수입되었는지를 통지한다.

3.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자국법의 범위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관세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나.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보관되는 장소

다. 관세 법령의 실질적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된 상품의 이동, 그리고

라.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4. 당사국이 특히 다음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도적으로 자국 법, 규정 및 그 밖의 법적 수단에 따라 지원을 서로 제공한다.

가. 그러한 법령의 위반이거나 위반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와 관련된 행위

나. 그러한 행위의 수행에 있어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

다. 관세 법령의 실질적 위반인 것으로 알려진 상품

라. 관세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마. 관세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제 5.16 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장에 따른 지원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서면 요청에는 요청 준수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수반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구두 요청도 인정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이 장에 따른 지원의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

가. 신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 및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정 조항 및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조사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적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 및 이미 실시된 질의의 요약

3. 요청은 영어로 제출된다. 요청서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신청 당국에 대해 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요청이 위에서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정이나 완성이 요구될 수 있다.

제 5.17 조

요청의 실행

1. 지원 요청에 따르기 위해, 요청받은 당국은 그 권한 및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그 동일한 당사국의 그 밖의 기관의 요청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한 정보의 제공, 적절한 질의의 실시, 또는 그러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이 항은 요청받은 당국 스스로가 실행할 수 없어 그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지원 요청은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규 조항에 따라 실행되며, 답변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송부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어느 한 쪽 공무원은 신청 당국이 이 장의 목적상 필요로 하고 관세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거나 행위일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당국 또는 그 밖의 관계 당국의 사무소에 있을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국의 공무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조사 또는 검증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18 조

지원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지원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지원이 주권, 공공정책, 안전 또는 그 밖의 핵심적인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그러한 지원이 관세 법령 외의 통화 또는 조세 규정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다. 그러한 지원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직업적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2. 요청 받았다면 신청 당국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신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당국은 그 요청에서 그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요청받은 당국이 결정한다.

3. 지원이 거절된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유가 지체 없이 신청 당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5.19 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비밀 또는 접근제한 정보로 취급된다. 그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의무의 적용을 받으며,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관련법상 유사한 정보에 제공되는 보호를 향유한다.

2. 식별되어 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신원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이 그러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방식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제 5.20 조

정보의 이용

1. 획득된 정보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한다.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이후 그 당국이 정한 제한에 따른다.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그 밖의 당국에 통지될 수 있다.

2. 제1항은 관세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정된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지체 없이 통지를 받는다.

3. 양 당사국은 그 증거,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사법절차에서 이 장에

따라 획득한 정보 및 협의 문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 5.21 조 **전문가 및 증인**

요청받은 당국의 공무원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인 사안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서 출두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물, 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출두 요청서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직함 또는 자격으로 그 공무원이 질의 받게 될 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제 5.22 조 **지원 비용**

적절한 경우, 전문가 및 증인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통역가 및 번역가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배상에 대한 모든 상호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5.23 조 **통관 절차의 검토**

1. 각 관세행정기관은 통관 절차의 추가적 간소화 및 양 당사국간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상호 호혜적 약정의 개발을 위해 그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2. 통관 통제에 대한 위험관리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신의 시스템의 성능,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제 5.24 조

협 의

1. 제5.2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품목 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 부서를 통해 수행되며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25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무역원활화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제 5.25 조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할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권한있는 당국 및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통관 사안을 책임지는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관련 당국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효과적, 통일적, 일관적 운영을 보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을 제고한다.

나. HS가 변경되는 것에 근거하여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를 유지한다.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 1)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 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 4)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의 당사국에 의한 채택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간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을 채택한다.

마. 품목 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위원회가 품목 분류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WCO에서 적절한 협의를 개최하고 그의 권고를 추구한다. WCO의 그러한 권고는 양 당사국에 의해 적용된다.

바. 양 당사국간 총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위원회에 제4.12조(수정)에 따른 수정 제안의 승인을 제안한다.

사. 전자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아. 제2.17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상품무역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원산지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4. 위원회는 공동 목표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에 구성된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제 3 절 정의

제 5.26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신청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하도록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 당국을 말한다.

관세 법령의 위반이란 그 법령의 모든 위반 또는 위반의 시도를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란,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국립 조세행정 감독원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

관세법이란 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해 시행, 적용 또는 집행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관세 법령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그리고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상품을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의해 채택된 모든 법규 조항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처리를 말한다.

상품이란 HS의 제1류에서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운송수단이란 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받은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받도록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 당국을 말한다.

제 6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6.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을 보장하는 것
- 다.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를 규정하는 것
- 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 마.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과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것

제 6.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6.3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6.4 조

동등성

수출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수출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게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 6.5 조

위험평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6.6 조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1.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2. 자국 영역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 당사국은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계속하여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될 것임을 각각 수입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게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내린 결정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국은 시의 적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 6.7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는 것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 및 협의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라.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것

3.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해야 하고, 양자간 기술 협력 및 협의를 통해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상,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

나. 무역에 적용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해 투명성을 추구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기술 협력 활동의 조정을 증진한다.

마.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규제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개선한다.

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한다.

사. 국제 기준, 지침 및 권고의 적용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문제를 다룬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다음 날부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채택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해 조정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6.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연락을 촉진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 후 제5항에 언급된 양국 각각의 조정자들의 상세 연락처를 교환할 것이다.

7.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에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

제 6.8 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7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7.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개선하는 것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간 공동협력을 제고하는 것

제 7.2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7.3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6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16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해 정부기관이 마련한 구매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7.4 조 국제 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목적상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9 문서의 부속서 4)을 적용한다.

제 7.5 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국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납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

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 7.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양 당사국은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특정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자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지정하면서 그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각각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 7.7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지문을 제출할 때, 이와 동시에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다른 쪽 당사국 대표에게 다음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가. 제안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2.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에 부합하며 양 당사국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지는 통지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은 영문으로 된 통지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한다.

4.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의 통지 다음 날부터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을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이 제안된 기술규정의 통지 다음 날부터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경우, 당사국은 이 요청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비효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8.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료이고 공중이 접근가능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항에 유치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을 유치하는 이유를 수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 7.8 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특히 다음을 위해 협력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

- 다. 인적자원 양성을 포함하여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을 강화하는 것
- 라. 국제기구 내에서의 참가 및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표준화, 기술규제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있어 협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 바.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당사국의 특정분야 제안에 대한 검토를 촉진하는 것

2. 다른 쪽 당사국의 유사한 기술규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그 기술규정 개발 시 의존한 관련 정보, 연구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한다.
-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다룬다.
- 다. 제7.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제고한다.
- 라. 상호인정협정 교섭을 위한 절차를 촉진한다.
- 마.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 사안에 대한 양 당

사국 각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한다.

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상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한다.

자.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차.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한다.

카.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타.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한다.

3.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해 조정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

5.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2년에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

제 7.10 조

정보 교환

1 이 장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한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이 기간은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제 8 장

무역구제

제 1 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1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3. 어느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 2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1.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기간 동안에만 한해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¹⁾

3.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의 수입에 대해 그 출처와 관계없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제 8.3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기준

1)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이나 수량제한 중 어느 것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허용 가능한 방식이 아님을 양해한다.

1. 어느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을 제외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하여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국내 산업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8.4조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2.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3.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한 경우, 그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4. 당사국은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부터, 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적용기간이 최소 1년이어야 한다.

제 8.4 조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건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조사 개시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러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제 8.5 조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8.2조에 규정된 방식을 취한 모든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 동안 제8.2조 및 제8.4조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고 판정되지 않은 때에는,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로부터 발생한 보증이나 수령된 기금은 각 경우에 맞게 신속히 해제되거나 환급된다. 모든 그러한 잠정 양자 긴

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8.6 조

통지와 협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을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한다.

가. 이 절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의 개시

나.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그리고

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최종 결정의 채택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 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자국의 상품이 이 절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절차와 관련하여 발표한 모든 공고 또는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통지는 영어로 교환된다.

제 8.7 조

보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조치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그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하기 전에 조치적용 당사국에게 영어로 서면 통지한다.

4.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일에 소멸된다.

제 8.8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8.2조제2항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권한있는 조사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 합계가 그러한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

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8.9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대해 1994년도 GATT 제 6조,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과 관련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를

하는 동안, 모든 통지문, 수출자/생산자 질의서, 그리고 정보요건²⁾을 영어로 교환하는 것을 합의한다.

3.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금액은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조사 당사국은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미만의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신청 접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해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통지에 더하여, 그리고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통지와 별개로,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은 그러한 조사절차의 개시를 수출자/생산자 질의서 사본 및 알려진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지한다.

6. 제5항에 따라 통지를 접수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가. 30일 이내에 조사 중인 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의 목록을 그 주소와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에게 송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관련 당사자는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수출자/생산자 질의서 및 정보요건을 통해 요구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그 권한있는 조사당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권한있는 조사당국은 번역사의 신분증명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러한 자료와 정보의 번역본을 인정한다.

- 나. 조사 중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관련 무역 또는 산업 협회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 다. 질의서에 대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답변을 수집하고, 질의서에 명시된 만기일까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에게 수집된 답변을 송부할 수 있다.

제 8.10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권한있는 조사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국립 경쟁 보호 및 지적재산 보호 협회 또는 그 승계기관

제 4 절 무역구제 협력 체계

제 8.11 조 무역구제 협력 체계

1. 정보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해 무역구제 사안에 대한 양국 각각의 법, 그 법의 적용 및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모든 측면의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설립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양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무역구제 사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통해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

나.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반덤핑 조사에서의 최소부과원칙 및 제로잉 금지에 대한 규율과 같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다자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한 후에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회의 또는 유사한 기회는 반덤핑 조사 개시를 위한 당사국의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9.7조 및 제9.9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모든 투자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해 어느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

3.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비정부 기관¹⁾이 수용(收用)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승인하거나, 쿼터나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을 부과하는 권한과 같이, 그 당사국에 의해 위임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비정부 기관에도 적용된다.

제 9.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의 목적상, “비정부 기관”이라는 용어는 공기업을 포함한다.

1. 이 장과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해야 한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해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범위에서, 그러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조치가 제12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3 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9.4 조 **최혜국대우²⁾**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9.5 조 대우의 최소기준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³⁾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제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4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3) 국제관습법은 법적 의무감에서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서 유래한다. 제9.5조에 대해,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 9.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느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9.7 조 이행요건

1. 어느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또는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⁴⁾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3항에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기술⁵⁾,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가 어떠한 기술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3조와 제9.4조가 그 조치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해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또는
-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

5)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훈련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훈련은 자국 영역에 있는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4. 가.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해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 2) 경쟁법 위반이라고 주장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기 위해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해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⁶⁾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 차별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제1항나호, 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3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6)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조치

5. 제1항 및 제3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가.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1항나호, 다호,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제16.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구성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 민간 당사자 간 그러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9.8 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그 당사국이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은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6
조 또는 제9.7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

2.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는 부속서II에 기재된 자국 유보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I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
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9.3조 및 제9.4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
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9.3조, 제9.4 및 제9.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6.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
금 또는 무상교부

제 9.9 조

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
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함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하거나,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할 것을 제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장려를 회피하기 위해 협의한다.

제 9.10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과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비밀 영업정보를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9.11 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해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해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은 제9.8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9.3조와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12 조 수용⁷⁾

1. 어느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 목적⁸⁾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9.5조에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한다.

7) 제9.12조는 부속서 9나에 따라 해석된다.

8) “공공 목적”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에 따라 해석되는 조약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필요”와 같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과의 어떠한 불합치도 발생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해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수용하는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을 통해, 자신의 사례 및 자신의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할 권리를 갖는다.

6. 이 조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7장(지적재산권)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13 조

송금⁹⁾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그리고 투자에서 비롯되는 그 밖의 금액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9.11조 및 제9.12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제2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투자에서 파생하거나 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이윤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자국 투자자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송금하지 못한 자국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

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서 9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한다.

5. 제4항은 당사국이 제3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이 협정에서 달리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물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14 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지 및 협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제21.2조(통지 및 정보 제공)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기업이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러한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9.15 조

대위변제

1. 당사국이나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식의 보장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대위변제 또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의 이전을 인정한다. 대위변제되거나 이전된 권리 또는 청구는 그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불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해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

제 9.16 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이 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대해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관한 어느 한 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분쟁에 적용된다.

2. 분쟁 당사자들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해야 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협의 및 협상 요청일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가. 분쟁 당사국과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4. 일단,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체계에 분쟁을 회부하였으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고 배타적이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에 따라 분쟁을 제3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동의한다.¹⁰⁾

가. 분쟁 투자자가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대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할 것, 그리고

나. 분쟁 투자자는 그러한 중재에 분쟁을 회부한다는 의사를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¹¹⁾ 그 서면통지는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1) 분쟁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한다.

2) 제3항의 중재판정부들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로 선택한다.

3) 제6항에 언급된 임시 가처분을 위한 절차는 제외하고, 분쟁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제3항에 언급된 그 밖의 어떠한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10) 양 당사국이 분쟁을 제3항다호에 규정된, 그 밖의 중재기관에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5항가호 및 나호에 수립된 조건이 적용된다.

11) 협의 및 협상을 위한 요청과 의사통지는 다음의 분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보내야 할 것이다.

페루에 대해서는: 국제경제, 경쟁민간투자국
경제 재정부
히론 람파 277, 5층
리마 1, 페루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제법무과
법무부
정부종합청사, 과천시
대한민국

4)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이 장에 따른 분쟁 당사국의 의무위반 주장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간단히 요약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투자자는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이나 분쟁 중인 사안의 실질적 쟁점의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임시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류되는 동안 분쟁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7.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8.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문제로서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또는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는 분쟁 당사국의 이의제기, 또는 법률상 문제로서, 제기된 청구가 제9항에 따라 분쟁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분쟁 당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9.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 분쟁 당사국에 의한 제1절에 따른 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그리고

나. 그러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 구제. 구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에 국한한다.

-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불, 그리고
-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비용 또한 적용되는 중재규칙에 따라 판정될 수 있다.

10. 제9항에 따라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11. 중재에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비용은

가. 중재 절차를 위한 절차 규칙에 따라, 분쟁이 회부된 중재기관에 의해 추정되거나,

나. 적용가능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한 중재 절차를 위한 절차 규칙에 따라 추정된다.

12.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해 내려진 판정을 따르고 준수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자국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했거나 회부한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교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9.17 조

양자간 투자조약의 기한

1. 제2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양자간 투자조약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권리 및 의무뿐 아니라 그 조약도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중단될 것임에 동의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양자간 투자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투자는 그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규칙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투자자는 양자간 투자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양자간 투자조약에 규정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지 않는 한, 그 조약에 따른 중재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제 3 절 정의

제 9.1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자간 투자조약이란 1993년 6월 3일에 서울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분쟁 투자자란 제2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분쟁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분쟁 투자자 또는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그와 같이 지정된 통화 및 그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

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 및 대부¹²⁾¹³⁾¹⁴⁾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적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¹⁵⁾¹⁶⁾,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및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¹⁷⁾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12)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서 기인하며 지급기일이 임박한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3)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다른 쪽 당사국에 발행된 대부는 투자가 아니다.

14) 다호는 부속서 9라에 따라 해석된다.

15)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6)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17)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및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란 그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당사국의 투자자 외의 투자자로서, 투자하려고 하거나¹⁸⁾,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하거나¹⁹⁾,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교섭에 의한 재조정이란 1) 채무증서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그러한 채무증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통해, 또는 2) 채무증서의 총 미지급 채무원금의 75퍼센트 이상의 보유자들이 그러한 채무교환 또는 다른 절차에 동의한 포괄적 채무교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그러한 채무증서의 재조정 또는 만기 연장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1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할 때와 같이 그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취했을 때만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로 양해된다.

1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할 때와 같이 그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취했을 때만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로 양해된다.

부속서 9가

최혜국대우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대우는 국제 조약 또는 무역협정에 규정된, 제2절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쟁해결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속서 9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제9.12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해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다. 제9.12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의 결정은 다른 요소 중에서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해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부담하는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

거나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정책 조치(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²⁰⁾

20)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다호2목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9다

임시 세이프가드조치

1.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이동 관련 임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거시경제 관리, 특히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당사국은 연장 제안의 이행에 관해 다른 쪽 당사국과 사전 조율할 것이다.
-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 마. 모든 규제 자산²¹⁾에 관해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
- 바.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 사. 몰수적이지 아니한다.
- 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되어야 한다.
- 자.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에 규정된 유보목록 그리고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금융서비스)의 부속서를

2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우, 마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페루 투자자에 의해 대한민국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조건으로, 제9.3조, 제10.2조(내국민대우) 및 12.2조(내국민대우), 그리고 제9.4조, 제10.3조(최혜국대우) 및 12.3조(최혜국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카.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²²⁾

3.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페루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및 송금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취득된 주식에서 나온 수익, 주식의 판매에서 나온 대금, 원금, 이자, 그리고 해외 지주회사 또는 그 자본투자의 지주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 의해 외국자본투자회사에게 제공된 대부에 대해 지불된 서비스료, 그리고 기술 도입을 위한 계약에 따라 지불된 보상을 지칭한다.

부속서 9라

공채

1.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발행된 채무의 매입이 상업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분쟁 투자자가 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이 제9.12조의 목적상 보상되지 않은 수용이나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당사국에 의해 발행된 채무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에 대한 청구에 대해 분쟁 투자자에게 유리한 어떠한 판정도 내려지지 아니한다.

2. 당사국에 의해 발행된 채무의 재조정이 제9.3조 또는 제9.4조를 위반한다는 청구를 제외하고, 그 재조정이 중재 제기 시 교섭에 의한 재조정이거나 그러한 제기 이후 교섭에 의한 재조정이 된 경우, 그 재조정이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는 어떠한 청구도 이 장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지속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을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발행한 채무의 재조정이 이 장(제9.3조 또는 제9.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는 청구를 이 장에 따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를 발생시킨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27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10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2.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제12.20조(정의)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당사국 영역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4항이 적용된다.

나.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서비스¹⁾ 및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다. 제16.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조달,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²⁾

4.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및 각주 2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³⁾

5. 이 장은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해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해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을 통해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서비스”라는 용어는 운수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2) 제10.1조제3항라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이 각주에서 언급된 “협 의”라는 용어는 제23.4조(협 의)에 따른 “협 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3)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및 각주 2의 적용범위는, 적용되는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장의 제10.1조에 규정된 적용범위로 한정된다. 양 당사국은 제10.1조의 제4항을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9장(투자) 제2절(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양해한다.

제 10.2 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3 조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시장접근

어느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⁴⁾, 또는

4) 이 조의 가호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0.5 조 현지주재

어느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0.6 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그 당사국이 부속서 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
 - 1)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에 기

재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7 조

규정5)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21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자국의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유지하거나 설립한다.⁶⁾

나.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 1) 자국이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2)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해 사전공고와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다.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제 10.8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5)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이란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6) 소규모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체제를 수립할 의무의 이행은 자원 및 예산제약을 고려할 수 있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자국 유보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 협의체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는 경우, 그 결과를 이 협정상에서 발효되도록 하기 위해 양 당사국간 협의 후에 이 조는 적절하게 수정된다.⁷⁾

제 10.9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7)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그 밖의 모든 협의체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제10.3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국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부속서 10가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10.10 조

이행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검토하고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을 고려하기 위해,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협의한다.

제 10.11 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지 및 협의⁸⁾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10.12 조 지불 및 송금⁹⁾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그러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8) 이 조에 언급된 “협의”라는 용어는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서 9다(임시 셰이프가드조치)는 이 조에 적용된다.

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0.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공급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공급은 포함
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그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
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
사국에 의해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¹⁰⁾

10)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각각 GATS 제17조, 제2조 및 제16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10가 전문직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발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에 관한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가. 교육: 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나. 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다. 경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과 내용

라. 행동 및 윤리: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

마.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전문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바. 업무 범위: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 또는

사. 현지 지식: 해당 지역의 법, 규정, 언어, 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3. 제1항에 언급된 권고를 수령하는 때에,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를 검토한다. 이러한 공동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자국의 관련 기관을 장려한다.

임시면허

4. 상호 합의한 개인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검토

5.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공동위원회는 검토 시 각 당사국의 규정에 관한 양 당사국의 다른 시각을 고려할 것이다.

제 11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1.1 조 일반원칙

1. 제11.2조에 더하여, 이 장은 양 당사국간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부속서 11가에 따라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촉진하려는 공동의 목표 및 일시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¹⁾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2 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1.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동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해 자연인이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그 영역으로 자연인이 입국하거나 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항은 부속서 11가의 제3절에 따른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1.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21장(투명성), 제22장(협정의 운영), 제23장(분쟁해결), 제24장(예외) 및 제25장(최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규정된 조항을 포함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해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관련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4 조

일시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 및 부록 11가-3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과 같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불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한한다.

제 11.5 조 정보의 제공

1.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일시입국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이 양 당사국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관련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식으로, 작성·공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한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의 허용에 대한 자료를 자국 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는 각 직업, 직종 또는 활동 별 해당 자료도 포함된다.

제 11.6 조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

다.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라. 상호 관심이 있는 모든 조치

제 11.7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해 제23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해 최종 판정을 하지 않았고,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8 조
신청 절차의 투명성

1.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2.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 상태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1.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무역, 서비스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과 같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자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

다.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던 자. 그 계약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 자

임원이란 그 조직의 경영을 주로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상위급 임원·이사회 그리고/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기업인을 말한다.

독립전문가란 다음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서비스공급 자영업자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인²⁾과 서비스공급 계약에 따라 계약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그 계약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다. 서비스가 공급되는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

노동분쟁이란 고용의 조건과 관련한 노조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을 말한다.

관리자란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 또는 하부조직을 주로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며, 고용·해고 또는 승진 또는 휴가의 허가와 같은 그 밖의 인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전문직 종사자란 다음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방대한 전문지식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적용, 그리고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협정의 발효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연인 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자국 영역에 들어온 독립전문가가 관련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법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국의 독립전문가만을 허가할 권리를 보유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호의적 고려가 부여된다. 이 각주에 언급된 “협의”라는 용어는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 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최소한 4년의 학업을 요구하는 중등과정 후의 학위 또는 그러한 학위에 상당하는 것을 취득³⁾

전문가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국제시장에서의 그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업의 과정과 절차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또는 지식을 보유한 기업인을 말한다. 전문가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³⁾ 관련하여, 부록 11가-2의 제2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려는 페루 국민을 위한 요건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서 정의된 것이다.

부속서 11가
일시입국의 범주

제 1 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1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1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 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현저하게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을 것

나호에 언급된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증명은 합리적이고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

2.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고,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포함하여 그 회사의 설립체로 파견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일시입국의 사전 요건으로서의 노동계약승인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노동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절의 목적상, **설립**이란 경제 활동의 수행을 위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⁴⁾,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4) 법인의 “구성” 및 “인수”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4 절

전문직 종사자

1. 각 당사국은 독립전문가로서든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든 부록 11가-2에 따라 전문적 수준에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발급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적인 자격증명서의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 하려는 기업인에게 직업 또는 활동의 수행을 위한 특정 법령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의 노동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록 11가-1

상용 방문자

부속서 11가의 제1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용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회의 및 협의

회의, 세미나 또는 학회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기업인

연구 및 설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조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마케팅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 컨벤션에 참석하는 당사국의 무역박람회 및 홍보인력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품배달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그 계약을 협상하는 당사국의 판매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구매를 하는 당사국의 구매자

유통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의 원활화와 관련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통관 중개인

판매 이후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일시입국을 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보증이나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훈련하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한 당사국의 설치자, 수리 및 유지 인력, 그리고 감독자

일반 서비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관리 및 감독 인력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가 또는 참여하는 당사국의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가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당사국의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사 대행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

행업자)

요리 행사나 박람회에 참가 또는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 협의하는 당사국의 조리사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번역가 또는 통역가

회의, 세미나 또는 학회에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사국의 가맹점 거래자 및 개발업자

부록 11가-2
전문직 종사자⁵⁾

제 1 절

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5	정보통신 컨설턴트
6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8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9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0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1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5	송·배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6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17	전기안전 기술자 및 연구원
18	전자제품개발 전문가
19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5) 공인회계사, 건축가 및 변호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시험, 국가건축사자격시험 그리고 국가변호사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페루 국민에게도 응시가 허용된다.

20	전자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21	전자의료기기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22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7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9	섬유소재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0	섬유공정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1	염색개발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2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33	건축시공 기술자
34	토목시공 기술자
35	생물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6	생화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7	환경 컨설턴트(계약서비스 공급자만 양허한다)
38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광업 기술자 및 연구원
39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지질학 기술자 및 연구원
40	법률 자문을 제외한 일반 관리 컨설턴트, 금융관리 컨설턴트(계약서비스 공급자만 양허한다),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생산 관리 컨설턴트

제 2 절

1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4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5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7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8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9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10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12	컴퓨터 보안 전문가
13	웹 기획자
14	멀티미디어 기획자
15	웹마스터
16	화장품 및 비누제품 전문가
17	전기제품 개발 전문가
18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19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	번역가 및 통역가
21	컴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22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23	인테리어 디자이너
24	조리사 ⁶⁾
25	호텔 및 관광 업체 관리자
26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

⁶⁾ 페루에 대해서는, 일시입국을 하려는 대한민국 조리사에 대한 요건은 페루의 출입국 법령에 정의된 것이다.

부록 11가-3

체류 기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 부속서 11가의 제1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11가의 제2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투자자 및 무역업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1가의 제3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1가의 제4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전문직 종사자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려는 페루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페루에 대해서는,

범주	이주 조건	체류 기간
상용 방문자	사업	183일까지
무역업자	사업	183일까지
투자자 (투자를 하는 과정의)	사업	183일까지
투자자 (독립)	투자자	1년까지 가능하나, 입국 허용 의 동기가 되었던 조건이 유지 되는 범위에서, 요청된 횟수만 큼 연이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기업 내 전근자	근로자	1년까지 가능하나, 입국 허용 의 동기가 되었던 조건이 유지 되는 범위에서, 요청된 횟수만 큼 연이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독립)	독립전문가	1년까지 가능하나, 입국 허용 의 동기가 되었던 조건이 유지 되는 범위에서, 요청된 횟수만 큼 연이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지정 노동자	6개월까지

제 12 장 금융서비스

제 1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9장(투자) 및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범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제9.9조(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 제9.10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9.12조(수용), 제9.13조(송금), 제9.14조(혜택의 부인) 및 제10.11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나. 제9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9.10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9.12조(수용), 제9.13조(송금) 또는 제9.14조(혜택의 부인)를 당사국이 위반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다. 제9.13조(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2.5조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¹⁾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

동 또는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어떠한 활동 또는 서비스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2 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2.5조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

1) 부속서 12가는 제3항가호에 기술된 특정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기재한다.

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2.3 조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2.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산출량²⁾,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

2) 가호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2.5 조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2나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해서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지 않는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6 조

신금융서비스³⁾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해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 제12.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2.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 12.8 조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그 당사국의 국민, 그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2.9 조 비합치 조치

1.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와 제12.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바와 같은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⁵⁾이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또는 제12.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⁵⁾

2.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와 제12.8조는 부속서 II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당사국이 기재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9.3조(내국민대우), 제9.4조(최혜국대우), 제10.2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에 기재된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기재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2.2조나 제12.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5)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2.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2.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범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제 12.10 조

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및 제11장(기업인의 일시입국),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⁶⁾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장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및 제11장(기업인의 일시입국),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9.7조(이행요건)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9.13조(송금)나 제10.12조(지불 및 송금)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9.13조(송금) 및 제10.12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혜택을 위해, 송

6)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에 있는 국가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12.11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21.1조(공표)를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⁷⁾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당사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⁸⁾

4.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신청은 모

7)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 전자주소이든지 그 밖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응답을 통합할 수 있고 최종 규정 공포 문서와는 별도의 문서로 그 응답을 공표할 수 있다.

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2.12 조 자율규제기구⁹⁾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2.2조 및 제12.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2.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는 그 기구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에서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 12.14 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 또는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12.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2다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2.16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2라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해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12.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17 조

협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부속서 12라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참여하는 금융규제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집행 사안에 개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금융규제당국 간 정보공유에 대한 관련법으로부터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규제기관 간 협정 또는 약정의 요건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2.18 조

분쟁해결

1. 제23장(분쟁해결)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해 이 조에 의해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3.6조(패널 요청)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3.7조(패널위원의 자격)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 2) 피소 당사국이 제12.10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해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4. 제23.17조(불이행 및 보상)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대상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조치의 자국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혜택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12.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9장(투자)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제9장(투자)에 따라 중재에 청구가 제기된 다음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항변으로 제12.10조에 따른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이 그러한 항변을 제출하면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그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한다. 중재판정부는 위원회에 의한 그러한 사안의 결정 또는 이 조에 따른 패널에 의한 그러한 사안의 보고를 접수할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위원회는 제12.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해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 및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 위원회에 구두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 1부를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송부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제

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이후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23.6조(패널 요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2.18조에 따라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 패널에 구두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13조(패널 보고서)에 더하여,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와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송부한다. 보고서는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4. 제3항에 따른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이 제3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를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가 제4항에 따라 문제 결정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제 12.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

그러나 이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점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1) 생명보험
-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2) 외환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4)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를 공

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9.18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해 규제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9.1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9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비당사국 기업의 지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

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제15장(경쟁정책)의 목적상, 지정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해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5장(경쟁 정책)의 목적상, 지정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2가

제12.1조제3항가호에 관한 양해

1.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2.1조3항가호에 기술된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 장이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은 다음의 경우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한다.

가. 당사국이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를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유보하고,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가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러한 조치가 분담금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분담금에 관해 그러한 활동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그렇게 유보된 경우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제12.1조제3항가호에 언급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일부 또는 모든 활동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독점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참여자가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정독점 외의 기관의 운용 하에 관련 분담금의 모두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다.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일부 또는 모든 참여자가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정독점 외의 기관에 의해 공급된 일정 활동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그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의해 일부 또는 모든 활동 또는 서비스가 공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 또는 서비스는 일부 또는 모든 분담금의 운용 또는 연금의 지급 또는

일정 분담금을 이용하는 그 밖의 지급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분담금**이란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계획 또는 제도에 대해 또는 달리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계획 또는 제도를 조건으로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지불된 액수를 말한다.

부속서 12나

국경 간 무역

대한민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2.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¹⁰⁾, 위험평가¹¹⁾,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2.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2. 제12.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0)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3. 제12.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¹²⁾

나.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20조¹³⁾의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¹⁴⁾,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2.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¹⁵⁾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평가의 공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페루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12.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1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3항가호에 언급된 “금융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부속서 12나 제3항에 언급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자료 처리가 개인 자료와 관련된 경우, 그러한 개인 자료의 취급은 그러한 자료 보호를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14)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15)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정의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 그리고

라. 제12.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5. 제12.5조제1항은 제4항에 기재된 서비스에 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6. 제12.5조제1항은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제12.20조¹⁶⁾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제12.20조¹⁷⁾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¹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6) 부속서 12나 제6항에 언급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자료 처리가 개인 자료와 관련된 경우, 그러한 개인 자료의 취급은 그러한 자료 보호를 규제하는 페루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17) 전자적이든 물리적이든, 무역 플랫폼은 이 항에 명시된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18)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는 제12.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그러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부속서 12다

구체적 약속

제 1 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¹⁹⁾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국 영역 내외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에 이 약속을 발효한다.

제 2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각자의 금융규제기관의 노력을 지원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3 절

포트폴리오 운용

19) 요구에 따라, 제12.20조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은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신탁 서비스

나. 보관 서비스, 그리고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실행 서비스

이 항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은 제12.1조 및 제12.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 그리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페루

4. 페루는 자국 영역 내에서 또는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²⁰⁾

가. 투자 자문, 그리고

²⁰⁾ 이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 서비스
- 2) 신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 신탁 보유를 배제하지 않는 신탁 서비스, 그리고
- 3) 실행 서비스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않는 한, 실행 서비스

5. 제4항은 제12.1조 및 제12.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최고 법령 제093-2002-EF호에 의해 승인된 증권시장법 통합문서에 따른 투자 및 유가증권을 위한 뮤추얼 펀드

나. 법령 제862호에 따른 투자 펀드, 그리고

다. 최고 법령 제054-97-EF호에 의해 승인된 통합문서에 따른 연금 펀드

제 4 절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서비스

페루

민영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퇴직연금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²¹⁾의 유지, 수정 또는 도입의 맥락에서,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언급하고 부속서 II 또는 III에 기재된 페루의 유보목록에 있는 모든 비합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가. 제12.2조제1항 및 제12.2조제2항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여 제12.1조제3항가호를 조건으로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페루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급을 유보하지 않은 활동 및

2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는 제1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장의 범위 내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서비스에 대한 금융기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페루는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부속서 12라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금융규제기관과의 조정하에 *경제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제의 구체화

2.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 회의의 개최 이전에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당사국이 제기하기로 선택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금융서비스 문제의 목록을 상대방국에게 제공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및 서비스 조치와 관련한 양해

양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고 이 양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가. 양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해, 그리고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인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나. 제9.6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어느 한 당사국은 지점에 할당된 자본 및 책임준비금이 자국 영역으로 효과적으로 들어오고 현지 통화로 전환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 요건을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 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해 자국의 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라. 제12.6조(신금융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법령, 결의 또는 규정이 자국 법에 구체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당사국은 집행기관, 규제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해 그러한 법령, 결의 또는 규정을 발할 수 있다.

마.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권한 및 기술 설비의 위치 요건과 같은 분야를 다루면서도 국경 간 금융정보 이전을 허용할 접근 방법의 채택을 도출할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페루가 부록 III-가에 포함된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보유하거나 채택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그러한 조치는

- 1)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도 원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2.4조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 2)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12.2조(내국민대우)는 페루가 그러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법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 또한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2장(금융서비스)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제 13 장 통신

제 1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것의 이용과 관련된 조치

나.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¹⁾

2. 제1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송국 그리고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그 기업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다.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1) 이 장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어떤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인지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라.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제 13.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장이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우선한다.

제 1 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

제 13.3 조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²⁾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바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는 당사국이 기업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면허, 양여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사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자국 영역 내의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

다.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라.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중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선택한 운영규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달리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유지를 보장하거나 최종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공중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 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러한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라. 통지, 등록 및 면허

제 2 절

공중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 13.4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대해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자회사,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 13.5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 13.6 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 서비스,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 또는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제공된다.

나.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며,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원가 지향적인 효율로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해 적용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제 3 절 그 밖의 조치

제 13.7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해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3.8 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유형을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유형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3.9 조

면허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면허 또는 승인 기준 및 절차

나.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위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모든 면허나 승인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에 대한 거부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3.10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 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해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0.4조(시장접근)가 제9장(투자)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간에, 제10.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3.11 조 통신 분쟁의 해결³⁾

제21.3조(행정절차) 및 제21.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구제신청

- 가. 1)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은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에 규정된 사안과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망의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3)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상, “기업”이라는 용어는 오직 자연인 또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조건 및 요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⁴⁾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어느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않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3.12 조

투명성

제21.1조(공표)와 제21.2조(통지 및 정보 제공)에 더하여, 그리고 정보의

4)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나호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통신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페루에 대해서는,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망의 공급자는, 페루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21.5조(정의)에서 정의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의 재검토를 청원하지 아니한다.

공표와 관련된 이 장의 다른 규정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 제정과 자국 통신 규제기관에 제출된 요율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될 것
- 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의해 제안된 규범 제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공고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 받을 것, 그리고
- 다.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요건·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4) 통지,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 5)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 개정 및 채택을 책임지는 기관에 관한 정보, 그리고
 - 6)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 진행에 관한 절차

제 4 절 정의

제 13.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비용 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다른 쪽 당사국의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통신이란 그것을 통해 회사가 그 회사 내에서 또는 자신의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와, 또는 이러한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 간에 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상 자회사, 지점,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계열사는 각 당사국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다. 사내통신에는 관련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게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해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 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공중통신망이란 공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구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구에 의해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요율 및 조건을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기업을 통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또는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제 14 장 전자상거래

제 14.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다룸으로써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국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조치, 또는
- 나.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을 그 밖의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에 비해 더 제한적으로 대우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

제 14.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 14.3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되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14.4 조

관세

1. 어느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디지털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4.5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 14.6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4.7 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의 채택 또는 유지, 그리고
 - 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국 경험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제 14.8 조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1. 양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위한 국가 인증 및 디지털 인증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4.9 조 협력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 성격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중소기업¹⁾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 나. 자료의 비밀, 소비자의 신뢰, 전자 통신상 보안, 인증, 지적재산권 및 전자정부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
- 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경 간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라. 민간부문이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체계를 채택하도록 장려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제 14.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이란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통신을 통해 전달되거나 수행됨을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거나

1) 이 조의 목적상, 페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란 페루 국내 법령에 정의된 미소(微小)기업을 포함한다.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이란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무역을 말한다.

제 15 장 경쟁정책

제 15.1 조 목적

무역관계에 있어 자유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 행위의 금지, 경쟁정책의 이행 및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양해한다.

제 15.2 조 이행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합치해야 한다. 특히, 투명성과 관련해서,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적용면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게 한다.

제 15.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통지, 협의, 기술지원 및 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한다.
3.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상호 관심이 있는 경쟁 사안에 대해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5.4 조

통지

1.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영어로 통지한다.
2.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지는 집행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국의 경쟁법에 따른 행위 및 최종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집행 활동을 관장하는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견해를 고려한다.

제 15.5 조

협 의

1. 양 당사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각 당사국이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 15.6 조

비밀유지

1.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 및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

2.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5.7 조

기술지원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과 경쟁 문화의 축진을 위한 경험 교환 및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기술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5.8 조

국경 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이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협의, 기술지원 및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

2. 이 조의 어느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5.9 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느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공기업 또는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각국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반경쟁적 관행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 조항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제 15.10 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5.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1. 반경쟁적 영업 행위란 다음을 말한다.

가.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에 규정된 대로,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한 기업 간 합의 및 기업단체의 결정

나.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에 규정된 대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다.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기업 결합

2.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국립 경쟁 보호 및 지적재산 보호 협회 및 통신 분야 민간투자 감독청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3.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반경쟁적행위 억제법 및 전기 분야의 반독과점

법과 그들의 이행 규정, 그리고

4.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들의 이행 규정,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 및 불공정경쟁 억제법과 그들의 이행 규정

제 16 장 정부조달

제 16.1 조 적용범위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조달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되기 위해 조달하지 않은 것
 - 나.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 구매를 포함한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6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제4항 또는 부속서 16가에 따른 적용범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
3.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하 “BOT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16나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보조금, 지분참여, 보증 및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제

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나. 재무 대리 또는 예약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다음 활동과 관련된 은행, 금융 또는 특화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적부채 발생, 또는

2) 공적부채 관리

다. 국제 무상교부, 융자 또는 그 밖의 지원이 이 장에 불합치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통해 조성된 자금에 의한 구매, 그리고

라. 정부 고용인의 채용 및 관련된 고용 조치

가액산정

5. 적용대상조달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정할 때, 조달기관은

가.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조달을 분할하거나 특정한 조달 가액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수수료, 커미션,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고려하며,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 구매를 포함한 조달의 총 최대가액을 고려한다.

6. 개별적인 조달 요건이 한 건 이상의 계약 낙찰 또는 계약 분할 낙찰을 초래할 경우(이하 “반복조달”이라 한다), 총 추정 최대가액의 계산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가. 가능한 경우 이후 12개월 동안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금액상의 예상되는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된, 이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이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조달 가액, 또는
나. 최초 낙찰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조달 추정가액

7.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총 추정 최대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 장에 합치해야 한다.

제 16.2 조 이 장의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한 정보의 비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당사국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당사국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되는 조치

3. 양 당사국은 제2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 16.3 조 일반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은,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어느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을 근거로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사용

3. 조달기관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접수 시간의 설정 및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4.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한다.

- 가. 이 장과 합치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5.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응구매

6. 조달기관은 모든 조달 단계에 있어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 나.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 다.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제 16.4 조 조달 정보의 공표

각 당사국은,

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일반적인 적용에 관한 모든 조치 및 그 수정사항을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시 공표한다. 그리고

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 16.5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조달기관은 제16.9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 공고는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공표하고, 그러한 각 공고는 해당 조달 입찰을 위해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각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기술

나. 조달 방법

- 다.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조건
- 라. 공고를 발행하는 조달기관의 명칭
- 마. 공급자가 조달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 부서
- 바.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그 조달에의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 사. 입찰서의 제출 주소 및 제출 마감일자
- 아.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반복조달에 대해 가능하다면 예정된 조달의 차기 공고 예상 시기
- 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일 또는 계약기간, 그리고
- 차.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표시

3.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의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광범위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수단은 부속서 16가에 명시한 단일 창구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해야한다.

계획된 조달의 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향후 조달 계획에 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의 대상과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요약공고

5. 이 장의 목적상, 조달기관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예정된 조달의 각 건에 대해 공고의 공표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그리고

다. 조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 부서

제 16.6 조

참가조건

1. 당사국이 공급자에게 조달에의 참가를 위한 등록, 자격 또는 그 밖의 참가요건 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을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조달기관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고를 공표한다.

2. 조달기관은,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과 더불어,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자의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활동을 기초로 공급자가 조달의 요건 및 기술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상업적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참가조건을 한정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결정을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명시한 조건에만 기초한다.

3.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내 공급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조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지지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정직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5. 조달기관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들이 조달에 참여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공급자 등록 및 자격심사 과정과 이에 요구되는 기간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특정 조달에 고려되는 것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조달기관은 자격심사를 신청한 모든 공급자에게 해당 공급자가 자격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을 즉시 통지한다. 조달기관이 자격심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즉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제 16.7 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입찰에 관한 서류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하는데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모든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조달 내용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 등을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서류 목록을 포함한 공급자의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 시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모든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제출과 관련된 그 밖의 요건

마.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바.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사. 지불조건 및 예컨대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이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날짜 또는 계약 기간

3. 조달기관은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기술규격

4. 조달기관은 양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6. 조달기관은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한 경우에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문안이 입찰에 관한 서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언급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7. 조달기관은 특정조달에 대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인으로부터 해당 조달에 대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은 조달기관이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

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수정

9. 조달기관이 적용대상조달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모든 그러한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알려진 경우,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시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 원 정보가 이용가능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수정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된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한다.

제 16.8 조

기간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 가. 공개입찰의 경우,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될 것이라고 통지한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입찰기간을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 나.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 다. 조달기관이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5. 조달기간은 다음의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16.5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러나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지를 후속 공표하는 경우
- 다.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또는
- 라.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 16.9 조

입찰절차

1. 조달기관은 공개, 선택 또는 제한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낙찰한다.

공개입찰

2. 조달기관은 제16.9조제3항부터 제16.9조제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낙찰한다.

선택입찰

3. 당사국의 법이 선택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해,

가.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려는 공급자를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또는 공개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에, 조달기관이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않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 모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제한입찰

4. 조달기관이 공급자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항을 이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관한 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 이유 중의 하나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1) 요건이 예술품에 대한 것인 경우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1) 경제적 이유 또는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최초 조달로 조달된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하는 경우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사용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방법의 사용이 조달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정상적인 공급자로부터 일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와 관련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은 경우

5. 조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낙찰된 각각의 계약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종류 및 제한입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제4항에 기술된 상황 및 조건을 표시하는 문안을 포함한다.

6. 조달기관이 입찰절차에서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의 하나는 영어이어야 한다.

제 16.10 조

전자 경매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정보

제 16.11 조

입찰서 개찰 및 낙찰

입찰서 처리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 그리고 입찰서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한다.

2. 조달기관이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문서 양식상 비의도적인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3.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입찰서가 모든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될 것. 그리고

나. 입찰서가 개찰 시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합치할 것.

4.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참가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만을 근거로 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결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했거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5. 조달기관이 그 밖의 제출된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6.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

약을 해지 또는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12 조 조달 정보의 투명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즉시 통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13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낙찰정보의 공표

2. 조달기관은 낙찰 후 최대 72일 이내에 서면 또는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에 대해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조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다. 낙찰일

라.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마. 계약액, 그리고

바. 조달기관이 공개 또는 선택입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된 입찰절차를 정당화하는 제16.9조제4항에 따른 상황에 대한 기술

기록 보존

3. 조달기관은 제16.9조제5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보고서 및 입찰절차 기록을 보존하며,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그러한 보고서 및 기록을 보유한다.

제 16.13 조 정보 공개

당사국에게 정보 제공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이 장에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그 정보는 낙찰자의 특성과 상대적인 이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 비공개

2. 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 어느 당사국도 정보를 제공하는 인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인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공급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 당사국에게 이 장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나. 정보의 공개가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다. 정보의 공개가 지적재산의 보호를 포함하여 특정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라. 정보의 공개가 달리 공익에 반할 수 있는 경우

제 16.14 조

공급자 이의제기에 대한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온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 혐의와 관련한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공평하고 시의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의 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자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해명을 구하도록 장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하며, 동 절차를 통해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온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 혐의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과 독립적으로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급자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심의하며, 적절한 판정 및 권고를 내리는 최소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

4.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시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에 심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6.15 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조달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리고

나. 수정 전에 존재하는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정 제안을 통지에 포함한다.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 문제의 수정이 사소한 개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인 경우, 또는

나.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다른 쪽 당사국이,

가. 제1항나호에 따라 제안된 조정이 상호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제안된 수정이 제2항가호에 따른 사소한 개정 또는 정정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제안된 수정이 제2항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지의 접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장(분쟁해결)의 목적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부속서 16가를 수정함으로써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 16.16 조

추가 협상

이 협정 발효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신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범위에 대해 비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6.17 조

중소기업¹⁾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 절차에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1) 이 조 제16.18조 및 부속서 16나의 목적상, 페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란 페루 국내 법령에 정의된 미소기업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6.18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각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더불어 각자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 나.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사용
-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해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 라. 공무원 연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 16.19 조 조달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조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 나.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 다.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상을 고려한다.

제 16.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해 비정부구매자에게 상업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고, 비정부구매자에 의해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형태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액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고,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을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란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조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공개입찰이 양국 각각의 법령에 따른 기본협정과 역경매와 같은 양식을 포함한다고 양해한다.

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획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6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요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기술한 것, 또는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6가2)

정부조달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95,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기준가: 95,000 특별인출권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특별인출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동안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기준가는 50,000 특별인출권이다.

페루 양허표

여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페루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모든 부속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국립총장회
2. 페루중앙은행
3. 의회
4. 국립판사협의회

2) 페루 양허표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영문 명칭은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다. 이 명칭은 스페인어와 친숙하지 않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된다. 공식적인 목적상, 페루는 자국의 조달기관의 공식 명칭을 스페인어로 인용하고 공표한다.

5. 감사원
6. 호민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환경부
9. 농업부
10. 통상관광부
11. 국방부(주해1)
12. 경제재정부(주해2)
13. 교육부
14. 에너지광업부
15. 법무부
16. 여성사회발전부
17. 생산부
18. 외교부
19. 보건부
20. 노동고용개발부
21. 교통통신부
22. 주택건설위생부(주해3)
23. 내무부(주해1)
24. 검찰부
25. 중앙선거관리사무소
26. 사법부
27. 각료이사회
28. 국립 신분 및 혼인 등록처
29. 의료보험(주해4)
30. 은행보험연금감독원
31. 헌법재판소
32. 알티플라노 국립대학교
33. 페루 중앙대학교
34.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35. 라몰리나 국립농업대학교
36. 국립산림농업대학교
37. 아마존 마드레 데 디오스 국립대학교
38. 다니엘 알씨데스 카리온 국립대학
39. 카하마르카 국립대학교
40. 엔리케 구즈만 발레 국립대학교
41. 후앙카벨리카 국립대학교
42. 국립공학대학교
43. 페루 아마존 국립대학교
44. 피우라 국립대학교
45. 산 아구스틴 국립대학교
46. 트루히요 국립대학교
47. 툼베스 국립대학교
48. 우카얄리 국립대학교
49. 카야오 국립대학교
50. 델 산타 국립대학교
51. 페데리코 비아레알 국립대학교
52. 헤르밀리오 발디잔 국립대학교
53. 호르헤 바사드레 그로만 국립대학교
54. 호세 F. 산체스 카리온 국립대학교
55. 미카엘라 바스티다스 국립대학교
56. 쿠스코 산 안토니오 데 아바드 국립대학교
57. 산 크리스토팔 데 후아만가 국립대학교
58. 산 마르틴 국립대학교
59. 산 루이스 곤자가 국립대학교
60. 산티아고 안투네즈 데 메이올로 국립대학교
61. 토리비오 로드리게즈 데 멘도사 국립대학교
62. 페드로 루이즈 갈로 국립대학교

페루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국방부 및 내무부: 이 장은 의류(HS 제6205호) 및 신발(HS 제64011000호)에 대한 페루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경찰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경제재정부: 이 장은 허가 부여 또는 증자, 합작투자, 서비스, 리스 및 관리 계약과 같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법적, 재정적, 경제적 또는 이와 유사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청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주택건설위생부: 이 장은 토지권원 공식화 위원회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의료보험 : 이 장은 시트(HS 제6301호) 및 담요(HS 제6302호)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여성가족부
4. 기획재정부
5. 금융위원회
6. 통일부
7. 행정안전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법제처
10. 국가보훈처
11. 외교통상부
12. 법무부

13. 국방부(주해3)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문화재청
16. 농림수산식품부
17. 지식경제부
18. 보건복지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청
20. 고용노동부
21. 국토해양부
22. 환경부
23. 조달청(주해4)
24. 국세청
25. 관세청
26. 통계청
27. 기상청
28. 경찰청(주해5)
29. 대검찰청
30. 병무청
31. 농촌진흥청
32. 산림청
33. 특허청
34. 중소기업청
35. 해양경찰청(주해5)
36. 소방방재청
37. 방위사업청(주해3)
38. 방송통신위원회
39. 공정거래위원회
40. 국가인권위원회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해서,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제5절 및 제6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군급번호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군급번호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군급번호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군급번호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군급번호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군급번호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군급번호 3416	선반

군급번호 3417	절삭기
군급번호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군급번호 4110	냉동장비
군급번호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군급번호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군급번호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군급번호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군급번호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군급번호 5530	합판 및 단판
군급번호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군급번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군급번호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군급번호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군급번호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군급번호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군급번호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군급번호 6840	살충소독제
군급번호 6850	각종 특수화학물
군급번호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군급번호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군급번호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군급번호 7350	식탁용 식기
군급번호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군급번호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군급번호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군급번호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군급번호 8110	드럼 및 깡통
군급번호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군급번호 9310	종이와 판지

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을 위해 조달청에 의해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5.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하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질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절 지방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200,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기준가: 200,000 특별인출권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특별인출권

페루 양허표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만 적용된다.

1. 아마조나스 지역정부
2. 앙카시 지역정부
3. 아레키파 지역정부
4. 아야쿠초 지역정부
5. 아푸리막 지역정부
6. 카하마르카 지역정부
7. 카야오 지역정부
8. 쿠스코 지역정부
9. 이카 지역정부
10. 후앙카벨리카 지역정부
11. 후아누고 지역정부
12. 후닌 지역정부
13. 라 리베르타드 지역정부
14. 람바예케 지역정부

15. 리마 지역정부
16. 로레토 지역정부
17. 마드레 데 디오스 지역정부
18. 모케과 지역정부
19. 파스코 지역정부
20. 피우라 지역정부
21. 푸노 지역정부
22. 산 마르틴 지역정부
23. 타크나 지역정부
24. 툼베스 지역정부
25. 우카얄리 지역정부

대한민국 양허표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그 밖의 대상기관

상품

기준가: 400,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페루의 기준가: 400,000 특별인출권

1. 대한민국이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 에 대한 부속서 3에 서비스 기준가를 포함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 에 대한 부속서 3의 대한민국의 기준가 및 주해가 이 절의 대한민국 양허표에 기재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서비스에 즉시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이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 에 대한 부속서 3에 서비스의 기준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페루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때까지 서비스 조달에 대한 이 절의 적용을 정지한다.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특별인출권

페루 양허표

1. 농업은행
2. 국립은행
3. 원자재은행
4. 부동산 및 동산 협상회사
5. 개발금융공사
6. 페루공항민간항공공사
7. 페루전력공사

8. 남부전력공사
9. 전력인프라 관리 공사
10. 마추픽추 수력발전공사
11. 국립코카공사
12. 페루국립항만공사
13. 페루출판공사
14. 동양지역전력서비스공사
15. 남동지역전력서비스공사
16. 밀레니아 부동산공사
17. 페루페트로
18. 페루석유공사(주해1)
19. 리마상하수도공사
20. 해상산업공사
21. 페루우편공사
22. 서남전력공사

페루 양허표에 대한 주해

페루석유공사: 이 장은 다음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원유
- 나. 휘발유
- 다. 프로판
- 라. 디젤유
- 마. 부탄
- 바. 저황중증류 또는 경유
- 사. 천연가스
- 아. 바이오디젤
- 자. 비환식 포화 탄산수소
- 차. 촉매
- 카. 에탄올
- 타. 첨가제

대한민국 양허표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매는 제외)
5. 대한석탄공사
6. 대한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대한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토지공사
13. 한국농촌공사
14. 농수산물유통공사
15. 한국관광공사
16. 근로복지공단
17. 한국가스공사
18. 한국철도공사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절 상품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7절의 각 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 5 절 서비스

페루 양허표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7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페루 양허표에서 배제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장은 중앙상품분류 1.1버전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중앙상품분류 1.1버전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1=3>을 참조할 것).

중앙상품분류 8221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321	건축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334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335	공사 및 설치 단계동안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2191	중재 및 조정서비스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제16.1조를 저해함이 없이, 제1절 및 제2절의 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일반 목록의 어떠한 서비스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3절의 서비스의 경우, 개정 정부조달협정에 기재된 서비스는 포함된다(그 밖의 서비스는 배제한다).

제 6 절 건설서비스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중앙상품분류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제 7 절

일반주해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페루 양허표

1. 이 장은 미소기업을 위한 조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페루의 한 조달기관에 의한 페루의 다른 한 조달기관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알파카 및 야마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 및 의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대사관, 영사관 및 그 밖의 페루 외교사절에 의한 그들의 활동 및 관리만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절

공표수단

페루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www.osce.gob.pe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www.seace.gob.pe

BOT 계약과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대한 조달 기회: www.proinversion.gob.pe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www.pps.go.kr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www.g2b.go.kr

BOT 계약에 대한 조달 기회: www.pimac.org

부속서 16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적용 범위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가액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2.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는 부속서 16가의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BOT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페루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는 부속서 16가의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4.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해,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이 국내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5.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해,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어느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

약에 대한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에 공개되어, 관심 있는 공급자가 그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낙찰 공표

7.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각각의 낙찰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낙찰이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에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이의 제기 절차

8.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결정의 심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제도의 수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9.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중소기업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정의

10.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공장·건물·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부속서 16다

기준가액

1. 각 당사국은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는 해 전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특별인출권에 대한 각각의 통화의 일일 환산 비율 평균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기준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2. 양 당사국은 새로이 계산된 가액을 각각의 기준가가 유효하기 늦어도 1개월 전에 자국의 통화로 서로에게 통지한다. 양국 각각의 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역년으로 2년 동안 고정된다.

3.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일백만원 아래는 버린다. 이렇게 수정된 건설서비스의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일천만원 아래는 버린다.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 것
- 나. 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
- 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라.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협력을 통해 양 당사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

제 17.2 조 국제협정의 확인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언급된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7.3 조 더 광범위한 보호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양국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 17.4 조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이전이 건전하고 실현가능한 기술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지적재산의 보호¹⁾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이하 “선언”이라 한다) 및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WT/L/540)(이하 “결정”이라 한다)에서 확립된 원칙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은 2008년 5월 24일 제61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발명 및 지적재산에 관한 세계적인 전략 및 실천 방안(WHA 61.21)의 이행과 완전한 이용의 촉진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은

1)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있어 지적재산 보호와 관련된 다자 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예외와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상기 선언 및 결정에서 확립된 원칙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나 무역 또는 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7.5 조

유전(遺傳)자원 및 전통지식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제공을 통해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WIPO 정부간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6. 다자 협정 또는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추후 진전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제 17.6 조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

1.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3절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제공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이 조는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부속서 17가 제1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페루의 지리적 표시이다.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3. 부속서 17가 제2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이다. 페루의 국

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페루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조건으로, 그리고 상호 동의에 의해,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제 17.7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양 당사국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해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한다.

보호기간

2.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 1)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 2)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3. 대한민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송신부터 50년 이후에 만료한다.

5. 어느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재송신²⁾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7. 양 당사국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자국법에 규정할 수 있다.

8.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따른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9. 양 당사국은 사용료가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우수한 영업 관행 체제에서 양 당사국 권리자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2)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에서의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용에 비례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7.8 조

집행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 6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각의 국내 법,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무역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각의 담당 기관 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계획에 대한 정책 대화

다. 불법 복제 활동과 관련된 기관에 장비 및 재료의 공급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법 복제 통제를 위한 계획, 그리고

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해 양 당사국이 결정한 그 밖의 활동 및 계획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담당할 접촉 부서를 지정할 것이다.

제 17.9 조

국경조치에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관세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³⁾으

3) 이 조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

로 의심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을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른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관세당국에 제공하도록, 그리고 관세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보를 제공할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은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3.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私人)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허락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에 의해 정당하게 허락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제 17.10 조

협력과 기술이전

1. 양 당사국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위해,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정보의 이전과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과학·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률 체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체제의 개선 및 강화,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인,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지적재산의 창조와 발전 격려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지적재산 정보 체제를 포함한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

나. 공무원을 위한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연수 및 전문 과정

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그리고 국제특허 절차의 촉진

라. 특허 기술, 라이선싱 및 시장 정보

마. 기술적인 전문성 및 지식의 교환을 포함한 식물 품종 보호, 그리고

바.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사안

4. 각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 준수와 협력 촉진을 담당할 접촉부처를 지

정한다. 접촉 부처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 및 혁신 국가 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부속서 17가

지리적 표시

제 1 절

페루의 지리적 표시

연번	보호되는 명칭	제품
1	Pisco Perú(Pisco Peru)	증류주
2	Cerámica de Chulucanas(Chulucanas Pottery)	도자기
3	Maíz Blanco Gigante Cusco(Cusco Giant White Corn)	옥수수
4	Pallar de Ica(Pallar Bean from Ica)	콩류

제 2 절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

연번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자로의 음역
1	보성녹차(Boseong Green Tea)	녹차	Boseong Nokcha
2	하동녹차(Hadong Green Tea)	녹차	Hadong Nokcha
3	고창복분자주 (Gochang Black Raspberry Wine)	복분자주	Gochang Bokbunjaju
4	서산마늘(Seosan Garlic)	마늘	Seosan Maneul
5	영양고춧가루 (Yeongyang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Yeongyang Gochutgaru
6	의성마늘(Uiseong Garlic)	마늘	Uiseong Maneul
7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고추	Goesan Gochu
8	순창전통고추장 (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9	괴산고춧가루 (Goesan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Goesan Gochutgaru
10	성주참외(Seongju Chamoe)	참외	Seongju Chamoe
11	해남겨울배추 (Haenam Winter Baechu)	배추	Haenam Gyeoul Baechu
12	이천쌀(Icheon Rice)	쌀	Icheon Ssal
13	철원쌀(Cheorwon Rice)	쌀	Cheorwon Ssal
14	고흥유자(Goheung Yuja)	유자	Goheung Yuja
15	홍천찰옥수수 (Hongcheon Waxy Corn)	찰옥수수	Hongcheon Chaloksusu
16	강화약쑥(Ganghwa Mugwort)	약쑥	Ganghwa Yakssuk
17	횡성한우고기 (Hoengseong Hanwoo Beef)	소고기	Hoengseong Hanwoogogi
18	제주돼지고기(Jeju Pork)	돼지고기	Jeju Dwaejigogi

19	고려홍삼 (Korean Red Ginseng)	홍삼	Goryeo Hongsam
20	고려백삼 (Korean White Ginseng)	백삼	Goryeo Baeksam
21	고려태극삼 (Korean Taekuk Ginseng)	태극삼	Goryeo Taekuksam
22	안동포 (Andong Hemp Cloth)	삼베	Andong Po
23	충주사과(Chungju Apple)	사과	Chungju Sagwa
24	밀양얼음골사과 (Miryang Eoreumgol Apple)	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25	한산모시(Hansan Mosi)	모시	Hansan Mosi
26	진도홍주(Jindo Hongju)	증류주	Jindo Hongju
27	정선헌기(Jeongseon Hwanggi)	황기	Jeongseon Hwanggi
28	남해마늘(Namhae Garlic)	마늘	Namhae Maneul
29	단양마늘(Danyang Garlic)	마늘	Danyang Maneul
30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양파	Changnyeong Yangpa
31	무안양파(Muan Onion)	양파	Muan Yangpa
32	여주쌀(Yeaju Rice)	쌀	Yeoju Ssal
33	무안백련차 (Muan White Lotus Tea)	백련차	Muan Baengnyeoncha
34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사과	Cheongsong Sagwa
35	고창복분자 (Gochang Black Raspberry)	복분자	Gochang Bokbunja
36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매실	Gwangyang Maesil
37	정선찰옥수수 (Jeongseon Waxy Corn)	찰옥수수	Jeongseon Chaloksusu
38	진부당귀(Chinbu Dangui)	당귀	Chinbu Dangui
39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수삼	Goryeo Susam
40	청양고추 (Cheongyang Hot Pepper)	고추	Cheongyang Gochu

41	청양고춧가루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고춧가루	Cheongyang Gochutgaru
42	해남고구마 (Haenam Sweet Potato)	고구마	Haenam Goguma
43	영암무화과(Yeongam Fig)	무화과	Yeongam Muhwagwa
44	여주고구마 (Yeoju Sweet Potato)	고구마	Yeoju Goguma
45	보성삼베 (Boseong Hemp Cloth)	삼베	Boseong Sambe
46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수박	Haman Subak
47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Goryeo Insamjepum
48	고려홍삼제품 (Korean Red Ginseng Products)	홍삼제품	Goryeo Hongsamjepum
49	군산찰쌀보리쌀 (Gunsan Glutinous Barley)	보리	Gunsan Chalssalborissal
50	제주녹차(Jeju Green Tea)	녹차	Jeju Nokcha
51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소고기	Hongcheon Hanwoo
52	영월고추 (Yeongwol Red Pepper)	고추	Yeongwol Gochu
53	영천포도(Yeongcheon Grape)	포도	Yeongcheon Podo
54	영주사과(Yeongju Apple)	사과	Yeongju Sagwa
55	서생간절곶배 (Seosaengganjeolgot Pear)	배	Seosaengganjeolgot Bae
56	무주사과(Muju Apple)	사과	Muju Sagwa
57	양양송이 (Yangyang Pine-mushroom)	송이버섯	Yangyang Songi
58	장흥표고버섯 (Jangheung Oak-mushroom)	표고버섯	Jangheung Pyogobeoseot
59	산청곶감 (Sancheong Persimmon Dried)	곶감	Sancheong Gotgam
60	정안밤(Jeongan Chestnut)	밤	Jeongan Bam
61	울릉도삼나물 (Ulleungdo Samnamul)	삼나물	Ulleungdo Samnamul
62	울릉도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63	울릉도참고비 (Ulleungdo Chamgobi)	참고비	Ulleungdo Chamgobi
64	울릉도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65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대추	Gyeongsan Daechu
66	봉화송이 (Bonghwa Pine-mushroom)	송이버섯	Bonghwa Songi
67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구기자	Cheongyang Gugija
68	상주곶감 (Sangju Persimmon Dried)	곶감	Sangju Gotgam
69	남해창선고사리 (Namhae Changsun Fern)	고사리	Namhae Changsun Gosari
70	영덕송이 (Yeongdeok Pine-mushroom)	송이버섯	Yeongdeok Songi
71	구례산수유 (Gurye Corni Fructus)	산수유	Gurye Sansuyu
72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Gorosoe Suaek
73	영암대봉감 (Yeongam Daebong Persimmon)	감	Yeongam Daebonggam
74	천안호두(Cheonan Walnut)	호두	Cheonan Hodu
75	문경오미자(Mungyeong Omija)	오미자	Mungyeong Omija
76	무주머루(Muju Wild Grape)	머루	Muju Meoru
77	울진송이(Uljin Pine-mushroom)	송이	Uljin Songi
78	이천한우(Icheon Hanwoo)	소고기	Icheon Hanwoo
79	순창고추장 (Sunchang Kochujang)	고추장	Sunchang Kochujang
80	이천도자기(Icheon Ceramic)	도자기	Icheon Dojagi
81	강진청자(Gangjin Celadon)	청자	Gangjin Cheongja
82	남원목기 (Namwon Wooden Vessel)	목기	Namwon Mokgi

제 18 장 노동

제 18.1 조 기본 노동권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국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이하 “ILO선언”이라 한다)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그에 따른 관행에서 ILO선언에 기술된 바와 같은 원칙들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8.2 조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1.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8.1조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과 규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2. 면제 또는 이탈이 ILO선언에 기술된 원칙과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8.1조를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하거나,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할 것을 제의하지 아니한다.

제 18.3 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의 노동법 또는 규정상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그 당사국의 노동법 및 규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제 18.4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노동부 및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를 설치한다.

2. 노동협의회는 제18.5조에 따른 노동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회합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 부서 역할을 하고 제18.5조에 따른 노동 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하여 노동협회의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부서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하고 유지한다.

제 18.5 조

노동 협력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가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제 18.6 조

노동 협의

1.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그러한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사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협의회가 소집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8.7 조

분쟁 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8가

협력

1. 노동부 및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가. 노동 사안에 대한 협력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 개발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규정 및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관행 및 ILO선언에 반영된 원칙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보 교환

2. 양 당사국간 협력 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상호 관심 정책이슈 및 그것의 효과적인 적용: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고용의 비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직업상 보건 및 안전, 작업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고용기준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규정·관행 및 이행

나. 노사관계: 노·사·정 간 협력 및 분쟁해결의 형태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및 실업지원 프로그램

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관련 강사의 양성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 기술적·직업적 훈련, 노동 행정기관 및 재판소의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양 당사국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훈련 교육과정의 개발

마. 이주노동자: 각 당사국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의 보급

바. 기술적 사안: 생산성 향상, 최적 노동관행의 장려 및 기술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 방법론 및 경험

사. 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통계와 노동시장 정보의 교환, 그리고

아. 노동에 대한 협력 발의의 추가적 추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3. 제2항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 가. 학습 방문을 포함한 대표단, 전문가, 학자, 교사 및 강사의 교류
- 나. 발간물 및 연구 논문을 포함한 정보, 표준, 규정, 절차 및 최적 관행의 교환
- 다. 양 당사국 각각의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간 대화의 장려
- 라.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 마. 합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 바.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 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
- 사. ILO와 같은 국제 협의체 내에서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 교류 또는 협력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제 19 장 환경

제 19.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지지적인 무역 및 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따라 자국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한다.
3. 각 당사국은 기소 재량을 행사하고, 자국의 환경정책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있는 환경 문제의 개발에 있어 양국 각각의 환경당국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19.2 조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

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 등을 통해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계속하여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19.3 조

다자간 환경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 및 협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의 협상에 대해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는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당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19.4 조

환경에 유익한 무역

1. 양 당사국은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있는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것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한 목록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다.

제 19.5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하거나,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자국 법 및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제 19.6 조

생물 다양성

1.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과 식물·동물 및 서식지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의 모든 구성요소 및 수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약속한다.

4. 양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기여하는 자

국의 토착 및 그 밖의 공동체의 전통지식 및 관행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또는 전통지식에 관련된 관행 및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19.7 조

환경과 기업

1. 양 당사국은 기업을 위한 각 당사국의 환경 지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자국 환경 지침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9.8 조

기후변화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공동 관심사안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제적 약속에 따라,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증진하는 것에 합의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한다.

가. 에너지 효율의 향상

나. 식량 안보 또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생

및 재생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및 최신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연구, 홍보, 개발 및 사용, 그리고
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적응성 평가 수단

제 19.9 조 **환경에 유익한 기술**

양 당사국은, 독성 화학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포함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 보급, 접근, 사용, 적정 관리 및 유지를 증진하는 것
에 합의한다.

제 19.10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된 환경협의회를 설치한
다.

2. 환경협의회는 부속서 19가에 따라 수행될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상
호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회합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 접촉
부서 역할을 하는 부서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제 19.11 조 **환경 협력**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협력 활동을 개시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제 19.12 조 **환경 협의**

1.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그러한 요청서를 전달한 후 양 당사국은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협의회가 회합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환경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되며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9.13 조 **환경 영향 검토**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9.14 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9가

협력

1.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협력 분야의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 가. 양 당사국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강화, 방지 또는 완화시킬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하여,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협약에서의 협력
- 다. 환경 표지를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링 제도와 녹색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 라.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의 무역 효과에 대한 견해의 교환
- 마. 생물 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
- 바.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
- 사.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 관계에 대한 견해의 교환
- 아. 환경재해의 예방 및 관리
- 자. 우수 환경 관행
- 차. 환경 교육, 그리고
- 카.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협정의 발효 후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제 20 장 협력

제 20.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긴밀한 협력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 가. 이 협정에 따른 기회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 나. 양자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
- 다.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는 것
- 라.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새로운 무역 및 투자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 마. 양 당사국간 협력 관계를 고려해 협력활동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 바. 국제 시장에서 양 당사국과 그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 확대를 장려하는 것

제 20.2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경제적, 통상적, 기술적 협력에 주의하여, 모든 형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간 협력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그 밖의 양자 협력 체계에 규정된 양 당사국간 협력 및 협력활동을 보완할 것이다.

제 20.3 조

경제 협력

1. 양 당사국은 경제통합 과정을 강화하고 상업적 교역을 증대하기 위해 양 당사국간 협력 수단 및 체계의 활용을 장려할 것이다.

2. 경제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위해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 또는 약정에 대한 양 당사국간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진전시키고 강화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정책 대화, 그리고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견해의 정기적 교환

나. 양 당사국에 의해 확인된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경제적 관심이 있는 연구와 기술 사업의 공동 추진

다. 중요한 경제 및 무역 문제 그리고 경제적 협력 증진의 모든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정보제공

라. 관련 기관의 지식 및 보조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을 방문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기업인과 통상사절단에게 지원 및 편의 제공

마. 양 당사국 각 업계 간 대화 및 경험 교환 지원

바.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협력,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의 기회를 확인하는 체계의 수립 및 개발, 그리고

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 공공 그리고/또는 민간 부문의 역할 활성화 및 촉진

제 20.4 조 중소기업¹⁾ 협력

양 당사국은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할 것이다. 협력은 그 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 가. 제휴관계를 조성하고 생산망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를 고안하고 개발하는 것
- 나. 상호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무역, 투자 및 중소기업의 가능한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경제 행위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다. 의무적 절차, 무역 진흥 네트워크에의 향상된 접근, 사업 협의체, 사업 협력 수단에 대한 정보 및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대화를 촉진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는 것
- 마. 중소기업에 특히 초점을 둔 기업 일반의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바. 환경 관리, 정보 및 통신 기술, 나노공학, 생명공학, 재생가능 에너지와 같은 측면에서, 그리고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제 20.5 조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이 조의 목적상, 페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페루의 국내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은 미소(微小)기업을 포함한다.

2.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간의 직접 소비를 증대할 목적으로 종자의 개발 및 수생생물종의 가공을 위한 연구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 나.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교환 및 천연자원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수산업 및 양식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 가.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것
 - 나. 식량안보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수생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는 것
 - 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것
 - 라. 양식업 분야에서 호혜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
 - 마. 수산업, 양식업 및 수산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 목적상, 양 당사국의 해당 기관은 적절한 접촉 부서를 구성할 것이다.
 - 바. 이 협정 발효 후 협상이 시작될 수산협력약정²⁾을 통해,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 당사국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하는 것³⁾
 - 사. 양 당사국간 수산업 개발 증진을 위해 공무원, 과학자, 기술자 및 연수생을 교환하는 것
 - 아. 공동으로 조직된 과정, 방문, 세미나 및 워크숍에의 참여를 통해 양 당사국의 국가공무원과 수산업계 구성원의 훈련을 증진하는 것
 - 자.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간 제휴관계 및 교류 구축,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2) 수산협력약정은 특히, 무역원활화에 대한 양 당사국간 협력과, 수산자원, 수생생물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의 연구 증진에 대한 양 당사국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20.6 조

관광 협력

관광이 양 당사국간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 가.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해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 나. 양 당사국의 인터넷 사이트 간 연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 다.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관광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 라. 양 당사국의 관광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운동에 있어 협력할 것이다.
- 마.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 바.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그리고
- 사.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제 20.7 조

임업 협력

- 1.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것이다.
-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 가. 관련 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

- 나. 산림자원의 관리, 개발 및 이용
- 다. 산불 및 병충해 방지 및 통제를 포함한 산림보호
-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공동조치 증진
- 마. 조림 및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
- 바. 임산물의 가공, 공급 및 무역
- 사. 친환경임업 기술 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전
- 아.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 20.8 조

에너지 · 광물 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제휴관계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라 협력을 증진한다.

2. 에너지 · 광물 자원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원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상류부분 활동
- 나. 원유 정제, 석유화학 공정, 가스의 액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하류부분 활동
- 다.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생산, 제련, 정제, 가공,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활동
- 라. 광업 활동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측량, 채굴 및 환경 · 지질학적 활동에 적용되는 지도 제작 활동(측지학, 위성사진, 원격 감지 및 지리정보 시스템)
- 마.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구를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
- 바. 광업의 환경적 문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 사. 양 당사국간 에너지 · 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사업 관계를 장려하

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에서 다음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 가.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 현황 자료
- 나.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
- 다. 지질 자료/정보
- 라.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그리고
- 마. 광해방지기술 및 광산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안

4. 각 당사국은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에너지·광물 자원에 관한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정을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규정에 대해 이전에 통지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질의에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7.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와 무관하다.

8. 양 당사국은

- 가.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조직,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해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해,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의 투자를 포함한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공동위원회와 같이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협정에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

9. 양 당사국은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며 또한 공동 포럼, 세미나, 학술 토론회,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

제 20.9 조

과학·기술 협력

1. 양국 각각의 경제에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 비밀이 아닌 과학·기술자료 교환 및 제공과 더불어 과학 표본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해, 세미나, 학술토론회, 학회 및 그 밖의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개최

라.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할 경우,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정책에 따른 공동 과학·기술 연구 활동 증진

마. 과학·기술 관련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바.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를 위한

협력,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 협력

3. 특히 첨단 과학 또는 핵심 기술 영역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명공학

나. 나노공학

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라. 신소재

마. 전자정부

바. 제조기술

사. 환경기술, 그리고

아.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

제 20.10 조

정보·통신기술 협력

1. 국내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이라 한다) 및 I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책 사안에 대한 대화 증진

나.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

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 제고, 그리고

라.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 가. 전자정부에 관한 사이버 기반시설 및 정책 사안
- 나. 공개 키 기반 구조의 상호 운용성
- 다.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처리, 관리, 유통 및 무역
- 라.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기술 협력
- 마. 정보기술단지의 연구, 개발 및 관리
- 바.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 사.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네트워크와 통신의 연구, 개발 및 배치
- 아. 국제시장에서의 사업기회,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 20.11 조 해상 운송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 가. 해상 운송이나 물류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부서의 구성
- 나. 항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적 협력 마련
- 다. 상업선박의 선원 학생들의 훈련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 라. 선박 통항관리 서비스를 포함, 선박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원조와 역량 강화 활동 마련

제 20.12 조 문화 협력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문화 협력을 위한 기존의 유효한 협정 및 약정의 존중,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문화 교류 증진

2.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간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을 고려하고 협상하는데 동의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협상될 것이며,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며, 페루에 대해서는 *교육부*이다

4. 제3항에서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 내의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 받는다.

5.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법령과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환경 및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최적 관행의 교환을 장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국 외교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약속한다.

제 20.13 조

농업 협력

농업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플랜테이션 작물을 포함한 농업연구, 소규모 농업 개발, 농업용 수자원의 보존 및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우수농업관행의 적용 등을 포함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한 제휴 관계의 구축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간 농산물 교역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다. 축산물과 농업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도 생산자, 기술자 및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제 20.14 조

협력위원회 및 접촉 부서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2. 협력위원회는
 -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한 협력 사업의 이행에 있어, 그 경과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 나. 그 과업의 수행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 다.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장에 따른 협력활동에 대해 권고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으로부터의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이 장의 운용과 그 목적의 적용 및 달성을 검토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교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활동에 관한 연락을 원활하게 할 접촉 부서

를 지정할 것이다. 그 접촉 부서는 이 장의 운용을 위해 정부기관, 기업부문의 대표자,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과 협업할 것이다.

제 20.15 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21 장

투명성

제 21.1 조

공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제 21.2 조

통지 및 정보 제공

1.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그 조치를 사전에 통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조치에 대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지 또는 정보는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와 무관하다.

4. 이 조에 언급된 정보는, 그것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적절한 통지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되었거나 무료로 대중이 접근가능한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경우에는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1.3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및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제 21.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 및 기록의 제출,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근거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2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 22 장 협정의 운영

제 22.1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페루의 통상관광부장관 또는 그들 각각의 승계자 또는 그들 각각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감독한다.
- 나. 이 협정의 적용을 통해 달성된 사항을 평가한다.
-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정교화를 감독한다.
- 라. 제23장(분쟁해결)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마.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의 작업을 감독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 바. 자신의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한다.
- 사. 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의 금액을 설정한다.
- 아. 패널위원의 행동규범을 준비하고 승인한다. 그리고
- 자.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 가.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 나.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다.
- 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가적으로 심화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속서 23가(모범절차규칙)에 언급된 모범절차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또는

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5. 공동위원회는 정규회의로서 최소 1년에 1회,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의로 회합한다. 회의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의해 개최된다.

제 22.2 조

협정조정자 - 접촉 부서

1. 각 당사국은 협정조정자를 지정하고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지정을 통지한다.

2.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협정조정자는 이러한 취지의 접촉 부서 역할을 수행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정보, 요청 또는 통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접촉 부서를 통해 통지된다.

4. 협정조정자는

가. 공동위원회 회의의 의제 개발 및 그 밖의 준비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적절하게 공동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나.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그 밖의 사안을 다룬다. 그리고

다. 제23장(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지정한 협정조정자의 운영 및 비용을 책임진다.

제 23 장 분쟁해결

제 23.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해 협력 또는 협의를 통한 모든 노력을 한다.

제 23.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양 당사국간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 23.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단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패널의 설치 또는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하였으면, 그 사안에 대해 그 밖의 절차를 배제하고 선택된 분쟁절차가 이용된다.

제 23.4 조 협의

1. 당사국은 제23.2조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3. 요청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가. 긴급한 사안¹⁾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5. 양 당사국은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협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¹⁾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한 사안”이란 다음과 관련된 사안을 말한다.

가. 농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짧은 기간 내에 그 품질 또는 현재 상태를 상실하는 부패성 상품, 또는
나. 가까운 미래의 특정일 이후에는 그 교역 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하는 상품(부패성 상품은 제외한다) 또는 서비스

통해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8. 각 당사국은 협의 시,

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다.

9.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 기간은 협의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60일을,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2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23.5 조

공동위원회의 개입

1. 양 당사국이 제23.4조제9항에 설정된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23.4조제2항에 따른 요청 당사국에 한정하여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합하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가.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거나, 작업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주선, 조정, 중개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다. 권고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회합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1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3.6 조

패널 요청

1. 협의 기간 또는 공동위원회의 개입이 요청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위한 기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사안을 검토하도록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3가를 포함한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선정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4. 패널은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 23.7 조 **패널위원의 자격**

1.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무역, 그 밖의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해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진다.

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어느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2. 제23.4조에 따른 협의에 참여했던 개인은 그 분쟁의 패널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 23.8 조 **패널 선정**

1.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1명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선정된다.

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패널위원이 선정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4명의 지명 후보자로 구성된 양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 의장은 이 명부가 교환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직접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명부에 있는 지명 후보자 중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4명의 지명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부에 있는 지명 후보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임명된다.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의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지 않고 고용된 적이 없으며, 분쟁의 대상을 어떠한 자격으로도 다루어 본 적이 없어야 한다.

마. 양 당사국은 분쟁의 대상과 관련된 전문성 또는 경험을 지닌 패널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패널위원은 이 조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으로 대체된다.

제 23.9 조 패널의 역할

패널의 역할은 검토 중인 분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23.10조제3항에 언급된 위임사항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사결과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 23.10 조 모범절차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3가에 규정된 다음을 보장하는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 입장을 제출할 기회, 그리고

다. 패널에서의 심리 및 심의와 더불어 심리 중에 교환된 모든 입장 및 의사소통은 비밀이다.

2.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부속서 23가에 규정된 모범절차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 이후 1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

4. 패널위원 보수 및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은 분쟁의 양 당사국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5.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최초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될 것이다.

6. 서면진술서, 심리에서의 구두주장 또는 발표, 패널 보고서 뿐만 아니라 패널 절차와 관련된 양 당사국과 패널 사이의 그 밖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은 영어로 수행된다.

제 23.11 조 전문가의 역할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패널이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양 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가 수립된다. 패널은,

가. 양 당사국에 제1항에 따라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의사를 통지하고, 양 당사국에 자신의 의견 또는 견해를 제출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과 양 당사국이 자신의 의견 또는 견해를 제출할 기간을 제공한다.

3. 패널이 제1항에 따라 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에 대해 양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또는 견해도 또한 고려한다.

제 23.12 조

절차의 병합

패널은 동일한 조치 또는 사안에 관련된 둘 이상의 절차를 병합할 수 있다.

제 23.13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그 보고서를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부속서 23가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세 번째 패널위원이 선정된 이후 120일,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8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3.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결과 및 그 사실적·법적 근거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또는 양 당사국이 위임사항에서 패널이 다루도록 요청하였던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판정, 그리고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라도 요청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 및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4. 패널 보고서는 패널위원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패널은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23.14 조
보고서의 명료화 요청

1. 보고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추가적인 설명 또는 정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항목의 명료화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그러한 요청서 제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해 답변한다.

2.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명료화 요청의 제출로 인해 패널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최종기한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23.15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패널의 작업을 정지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으며, 그 정지기간은 그렇게 합의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작업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패널의 권한은 소멸한다. 패널의 권한이 소멸하고 양 당사국이 분쟁해결의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 장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점에 관하여 패널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라도 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23.16 조
보고서의 이행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2.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고서가 판정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제거한다.

3. 양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및 그 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하며, 그 수단 및 기간은 일반적으로 패널의 권고에 합치한다. 양 당사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패널의 권고를 준수한다. 양 당사국이 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보고서에 설정된 기간을 준수한다.

제 23.17 조 **불이행 및 보상**

1. 피소 당사국이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패널보고서에 설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패널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설정하기 위해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양 당사국은 협상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보상은 양 당사국이 그에 합의한 시점부터 피소 당사국이 패널보고서를 준수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 23.18 조 **이행의 검토**

1. 제23.17조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일단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패널 보고서에 설정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되었고, 패널의 판정 및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합치성에 대해 양 당사국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도 제22.2조(협정조정자 - 접촉 부서)에 언급된 협정조정자에게 그 사안을 회부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패널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회합하며, 그 최초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3. 가능한 경우, 패널은 최초의 패널과 동일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능한 경우, 제23.8조에 수립된 절차가 적용되며, 그 경우 거기에 규정된 각각의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제 23.19 조

혜택의 정지

1.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설정하기 위한 기간이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거나,

나.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그렇게 합의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라도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2. 제소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과 패널이 제23.18조에 따라 보고서를 발표한 날 중 더 늦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정지될 혜택의 수준은 피소 당사국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무역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4. 제1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정지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에는,

가. 제소 당사국은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우선 혜택을 정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한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어떠한 혜택의 정지도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혜택에 한정한다.

6.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정된 조치가 제거되거나, 또는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른 때까지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제23.1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 23.20 조

혜택정지 수준의 검토

1. 피소 당사국이 정지되었거나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협정조정자에게 혜택정지 수준을 검

토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혜택정지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패널은 최초의 패널과 동일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능한 경우, 제23.8조에 수립된 절차가 적용되며, 그 경우에는 그 조에 규정된 각각의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패널은 요청을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15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회합하며, 회합 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발표한다.

4. 패널이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또는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라고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부속서 23가 모범절차규칙

적용

1. 다음 절차규칙은 제23.10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도록 당사국에 의해 고용된 인을 말한다.

법정 서기란 지정된 기록원을 말한다.

법정 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이 공식 휴일로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대표란 당사국의 정부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고용인을 말한다.

서면진술서 및 그 밖의 문서

3. 각 당사국은 서면진술서의 원본 및 최소 4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진술서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전송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당사국이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의 인쇄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

사국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본도 동시에 전달한다.

4. 서면진술서 및 그 밖의 문서는 패널이 유효하게 접수한 때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기한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문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제소 당사국은 세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패널 및 피소 당사국에 완성된 최초 서면진술서를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 또한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진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진술서를 전달한다.

5.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 서면진술서 및 패널 및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서면진술서의 전달을 위한 날짜를 설정한다.

6. 당사국은 변경 내용을 분명히 표시한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상 경미한 오기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7.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당사국에 의해 준수되는 법정 휴일 또는 그 당사국의 정부 부서가 정부 명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휴업인 그 밖의 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근무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책임

8.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9.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예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패널의 운영

10.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11.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 만큼의 보조원, 통역가 또는 번역가, 또는 법정 서기를 고용하고 그들이 패널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3.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4.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어느 패널위원이라도 활동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그 승계인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5.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16. 제소 당사국이 자국의 패널요청서에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야기된 부정적 무역효과의 수준에 대해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패널에 요청하는 경우, 패널의 위임사항은 그렇게 표시한다. 요청된 경우, 패널 보고서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야기된 부정적 무역효과의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다.

심리

17.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그 밖의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최초 및 후속 심리의 일자 및 시간을 정하고, 그 일자 및 시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

로 통지한다.

18.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을 대표하여 심리에 참석할 인 및 그 밖에 심리에 참여할 대표 또는 자문인의 명단을 다른 쪽 당사국 및 패널에 전달한다.

19. 각각의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해 수행된다.

20. 패널은 심리 속기록을 준비하며,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사본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일방 접촉

21.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지 않고 어느 한 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아니한다.

22. 어느 패널위원도 그 밖의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패널절차의 실제적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양 당사국과 논의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23.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심리·심의·보고서와 패널에 제출한 모든 서면진술서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언제라도 자국의 서면진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서면진술서에 포함되거나 또는 패널 심리에 제출한 특정 정보를 비밀유

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
한, 다른 쪽 당사국이 패널에게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가, 번역가, 법정 서기 및 패널절
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비용, 패널위원 및 그 보조
원의 보수, 그들의 교통비·숙박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양 당사국
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25. 각 패널위원은 본인 및 그 보조원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
보고를 한다.

제 24 장 예외

제 24.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제5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8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해석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통신) 및 제14장(전자상거래)¹⁾의 목적상, 그 각주를 포함한 GATS 제14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 24.2 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1) 이 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제 24.3 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
하게 될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4.4 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 불합치가 있
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양 당사국간 조세협약
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1조(수출세)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10.2조(내국민대우) 및 제12.2조(내국민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9.3조(내국민대우) · 제9.4조(최혜국대우), 제10.2조(내국민대우) · 제10.3조(최혜국대우) 및 제12.2조(내국민대우) · 제12.3조(최혜국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4항은

가.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혜택에 대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4항에 언급된 어떠한 조들과의 합치성을 개정시점에서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마. GATS 제14조라호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9.7조(이행요건)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7. 가. 제9.12조(수용) 및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제9.12조(수용)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²⁾ 과세조치에 대해 제9.12조(수용)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서면 의사 통지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과 관련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권한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해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하기로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부터 6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의 승계인, 그리고
- 2) 페루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부* 또는 그의 승계기관

8. 이 조의 목적상,

가. **세금 및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1)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관세, 또는
- 2) 제1.4조(일반 정의)에 규정된 관세의 정의 중 나호 및 다호에 열거된 조치, 그리고

2)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제9.12조(수용)와 관련하여, 다음의 고려는 적절하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투자에 대해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 회피 또는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개인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 과세조치가 투자자 이루어질 때에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표되었거나 달리 공개된 경우, 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제 24.5 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협에 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고,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과 부합해야 한다.

3. 제한조치 또는 그것의 변경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하고, 그것의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시한다.

4. 제한조치가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특히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당사국의 국제수지 상황 및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들을 평가한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의 성격 및 범위

나.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 또는

다. 이용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 시정 조치

협이는 모든 제한조치가 제2항 및 제3항에 합치하는지를 다룬다. 외환,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는 수락되며, 결론은 관련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

제 25 장

최종규정

제 25.1 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5.2 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교환한 다음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25.3 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2. 개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교환한 다음 날부터 45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에서 법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은 그것의 개정 및 대체도 포함한다.

제 25.4 조 종료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지한 다음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관세양허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제 25.5 조 정본

이 협정의 영어본, 스페인어본 및 한국어본은 동등하게 유효하고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원본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9.8 조(비합치 조치) 및 제 10.6 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 9.3 조(내국민대우) 또는 제 10.2 조(내국민대우)
 - 나. 제 9.4 조(최혜국대우) 또는 제 10.3 조(최혜국대우)
 - 다. 제 10.5 조(현지주재)
 - 라. 제 9.6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마. 제 9.7 조(이행요건), 또는
 - 바. 제 10.4 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 의무는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 제 9.8 조제 1 항가호 및 제 10.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¹⁾은 유보된 조치(들)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1)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닌 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 9.8 조 제 1 항 가호 및 제 10.6 조 제 1 항 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9.8 조 제 1 항 다호 및 제 10.6 조 제 1 항 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10.2 조(내국민대우), 제 10.3 조(최혜국대우) 또는 제 10.5 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9.3 조(내국민대우), 제 9.4 조(최혜국대우) 또는 제 9.7 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현지주재(제 10.5 조)와 내국민 대우(제 10.2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10.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10.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7. 대한민국의 ~~주세법~~(법률 제 8837 호, 2008. 1. 9.)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 9.7 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 분 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971호, 2008. 3. 21.)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3호, 2008. 12. 31.) 제13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제2
 조 및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9553호, 2009. 3. 25.) 제14조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9198호, 2008. 12. 26.)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81호, 2008. 12. 18.) 제2조의
 별표 1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 12. 18.) 제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2. 분 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채(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8980호, 2008. 3. 21.) 제21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63 호, 2009. 1. 14.)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5호, 2007. 4. 7.)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3.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동차관리법*(법률 제 9109 호, 2008. 6. 13.) 제 20 조, 제 44 조,
제 45 조 및 제 5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6호, 2009. 4. 8.) 제7조, 제8
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
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4. 분 야	제조 및 유통 서비스
하위분야	담배 및 주류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담배사업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48 호 2008. 12. 3.) 제 4 조 및 제 5 조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600 호, 2008. 1. 14.)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7 조 주세법(법률 제 8837 호, 2008. 1. 9.)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40 조 및 제 4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95 호, 2009. 2. 4.) 제 9 조, 제 45 조, 제 51 조 및 제 56 조 국세청 고시 제2005-5호 및 제2006-24호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담배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주류 도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 야 농축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5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1호, 2009. 3. 4.)
부록 1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재배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없으며,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6.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2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9호, 2009. 1. 16.) 제1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와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와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7. 분 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약사법(법률 제 9123 호, 2008. 6. 13.) 제 42 조 및 제 45 조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 20679 호, 2008. 2. 29.) 제 6 조 및 제 7 조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 142 호, 2008. 11. 28.) 제 4 조 및 제 13 조 의료기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4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84 호, 2008. 12. 31.) 제 19 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41 호, 2008. 9. 22.) 제 6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88 호, 2009. 1. 13.) 제 2 조 및 제 5 조 식품위생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8 조, 제 21 조 및 제 22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71 호, 2009. 3. 25.)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02 호, 2009. 4. 3.) 제 16 조 및 제 20 조 별표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4호, 2008. 3. 28.) 제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 나. 의료기기, 또는
-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 나. 식품공급 서비스
-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분 야 의약품 소매유통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약사법*(법률 제 9123 호, 2008. 6. 13.) 제 20 조, 제 21 조,
 제 23 조 제 44 조 및 제 50 조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 20679 호, 2008. 2. 29.) 제 1 조, 제 2 조
 및 제 3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 2008. 12. 1.) 제7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의 유통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9.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해운법(법률 제 9615 호, 2009. 4. 1.) 제 24 조 및 제 3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10 호, 2009. 3. 26.) 제 17 조,
제 19 조, 제 29 조 및 제 30 조
도선법(법률 제 9443 호, 2009. 2. 6.) 제 6 조
선박투자회사법(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3조 및 제3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와 해운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3 조, 제 6 조,
제 112 조, 제 113 조, 제 114 조 및 제 132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9. 2. 10.) 제278조, 제
278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나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고위경영진의

2 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는 인은 당해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
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에게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

11.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기 사용 사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3 조, 제 6 조 및
제 134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9. 2. 10.) 제298조 및
제299조의2

유보내용 투자

항공기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별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고위경영진의
2 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12. 분 야 쿠리어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139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9. 2. 10.) 제3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3.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9702 호, 2009. 5. 21.)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6 조, 제 19 조 및 제 59 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5385 호, 1997. 8. 28.) 부칙 제 4 조
전파법(법률 제9482호, 2009. 3. 13.) 제13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9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9 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 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 9702 호, 2009. 5. 21)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9702 호, 2009. 5. 21)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해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9481호, 2009. 3. 1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라 함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분 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 9127 호, 2008. 6. 13.) 제 9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59 호, 2008. 12. 9.) 제 1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50 호, 2008. 9. 12.) 제 4 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55 호, 2008. 3. 28.) 제 27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89 호, 2008. 12. 24.) 제 65 조, 제 66 조 및 제 68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81호, 2008. 12. 26.) 제25조 및 제2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5. 분 야 소매·리스·임대 그리고 수리 서비스

하위분야 의료기기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의료기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5 조 및 제 16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4. 18.) 제22조
및 제2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
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6. 분 야 대여서비스

하위분야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채(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 9070 호, 2008. 3. 28.) 제 29 조
및 제 30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02호, 2009. 2. 24.) 제5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7. 분야 과학조사 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양과학조사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
영해및접속수역법(법률 제4986호, 1995. 12. 6.) 제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18.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변호사법(법률 제 9416 호, 2009. 2. 26.) 제 4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34 조, 제 45 조, 제 58 조의 6, 제 58 조의 22 및
제 109 조
법무사법(법률 제 8920 호, 2008. 3. 21.) 제 2 조, 제 3 조 및
제 14 조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2009. 2. 6.) 제10조, 제16조 및 제
17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
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19.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노무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공인노무사법(법률 제 9255 호, 2008. 12. 26.) 제 5 조,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대한민국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변리사법(법률 제 7870 호, 2006. 3. 3.)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6 조의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변리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21.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공인회계사법(법률 제 8863 호, 2008. 2. 29.)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8호, 2009. 2. 3.)
제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2.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세무사법*(법률 제 9348 호, 2009. 1. 30.)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및 제 20 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02 호, 2009. 2. 4.) 제 97 조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3.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관세사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3조, 제7조 및 제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해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해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4.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9319 호, 2008. 12. 31.) 제 15 조 및
제 52 조의 4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63 호, 2009. 1. 14.) 제 15 조의 3
및 제 19 조의 3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65호, 2007. 1. 12.) 제18조, 제
21조 및 제136조의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5.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건축사법(법률 제 9187 호, 2008. 12. 26.) 제 2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22 조 및
제 2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4 호, 2008. 3. 14.) 제 13 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 9502 호, 2009. 3. 18.) 제 4 조
기술사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6 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8967 호, 2008. 3.
21.) 제 9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020 호, 2008. 9. 18.) 제 11 조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9056 호, 2008. 3. 28.) 제 25 조 및
제 2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402 호, 2009. 3. 31.) 제 49 조 및
제 54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13 호, 2009. 4. 6.) 제 28 조
환경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 9037 호, 2008. 3. 28.) 제 35 조
측량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39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025 호, 2008. 9. 22.)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18 조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57 호, 2008. 3.
21.) 제 16 조
온천법(법률 제 9202 호, 2008. 12. 26.) 제 7 조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 9198 호, 2008. 12. 26.) 제 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6.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방송법(법률 제 9280 호, 2008. 12. 31.) 제 13 조 및 제 73 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 8974 호, 2008. 3. 21.) 제 11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제31조 및 제41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 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 하여야 한다.

27.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직업안정법(법률 제 9040 호, 2008. 3. 28.) 제 19 조 및 제 3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506 호, 2007. 12. 31.)
제 21 조 및 제 33 조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 316 호, 2009. 3. 10.)
제 17 조 및 제 36 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64 호, 2008. 3. 2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0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094 호, 2007. 6. 18.) 제 3 조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 318 호, 2009. 3. 10.)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9216 호,
2008. 12. 26.) 제 17 조
선원법(법률 제 8381 호, 2007. 4. 11.) 제 100 조, 제 101 조,
제 103 조, 제 104 조, 제 106 조, 제 107 조, 제 122 조의 2 및
제 122 조의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 제6457호, 2001. 3. 28.) 제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09년 4월 17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해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항만청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28. 분 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구제(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경비업법(법률 제 7671 호, 2005. 8. 4.) 제 3 조 및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312 호, 2004. 3. 17.) 제 3 조 및
제 4 조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5호, 2006. 9. 7.) 제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 가. 시설경비
- 나. 호송경비
- 다. 신분보호
- 라. 기계경비, 그리고
- 마. 특수경비

29. 분 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2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676 호, 2008. 2. 29.) 제 7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제7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또는

나.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국내간행물 배포자는 배포 후에 필요시 사후 심의를 받는다.

30.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채(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137 조 및 제 138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7. 2. 10.) 제16조, 제
304조 및 제3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
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1.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고등교육법(법률 제 9356 호, 2009. 1. 30.) 제 3 조, 제 4 조,
제 21 조, 제 32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65 호, 2009. 1. 16.) 제 13 조 및
제 28 조
사립학교법(법률 제 8888 호, 2008. 3. 14.) 제 3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21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74 호, 2009. 1. 28.) 제 9 조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 21337 호, 2009. 2. 27.)
제 1 조 및 제 2 조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10219 호, 2010. 3. 3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2075호, 2010. 3. 15.)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2 분의 1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2 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 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잉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Ⅱ에 기술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사내대학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설립, 증설, 또는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공인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획득한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할 수 있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32. 분 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 (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 8483 호, 2007. 5. 25.) 제 2 조, 제 2 조의 2 및 제 1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740 호, 2008. 2. 29.) 제 12 조
평생교육법(법률 제 9641 호, 2009. 5. 8.) 제 30 조,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및 제 38 조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 10219 호, 2010. 3. 3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2075 호, 2010. 3. 15.) 제 3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호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10339 호, 2010. 6. 4.) 제 4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83 호, 2010. 3. 8.)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평생 및 직업
교육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제공이나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그리고

2) 지식 및 인력 개발 관련 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라 함은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의 설립, 증설, 그리고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33. 분 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법률 제 9316 호, 2008. 12. 31.) 제 28 조,
제 32 조 및 제 3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98 호, 2009. 3. 31.) 제 24 조
및 제 26 조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20호, 2009. 4. 1.) 제12조
및 제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
소를 설치해야 한다.

34. 분 야 수의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채(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수의사법(법률 제 10310 호, 2010. 11. 26.) 제 17 조
기르는 어업육성법(법률 제9627호, 2010. 4. 23.) 제2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수의 서비스 또는 수산질병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
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35. 분 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62 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7820 호, 2005. 12. 30.) 제 17 조 및 제 18 조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23 조의 7 지하수법(법률 제 7924 호, 2006. 3. 24.) 제 29 조의 2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40 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 7573 호, 2005. 5. 31.) 제 8 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 7849 호, 2006. 2. 21.) 제 20 조 폐기물관리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2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471호, 2004. 7. 13.) 제 6 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하위분야란에 기재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36. 분 야 공연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공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6 조 및 제 7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4 조 및
제 6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 18 호, 2008. 11. 14.)
제 4 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61호, 2009. 4. 3.) 별표 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7.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214 호, 2008. 12. 26.)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5, 제 16 조 및 제 2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836 호, 2008. 6. 20.) 제 4 조 및
제 10 조
전파법(법률 제9482호, 2009. 3. 13.) 제20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대한민국 내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38. 분 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9.7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약사법(법률 제 9123 호, 2008. 6. 13.) 제 42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 2008. 12. 1.) 제21조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민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39. 분 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은 제외한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8 호, 2008.
6. 5.) 제 20 조 및 제 29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48호, 2008.12.6.)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100 분의 50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부터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
할 수 있다.

40. 분 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양곡관리법(법률 제 9662 호, 2009. 5. 1.) 제 12 조
축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30 조 및 제 34 조
종자산업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42 조
사료관리법(법률 제 8931 호, 2009. 3. 22.) 제 6 조
인삼산업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20 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5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1 호, 2009. 3. 4.), 부록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43 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 식품부고시 제2008-153호, 2008. 12. 31.) 제14조 및 제20조의2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0.2조 및 제10.4조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1.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방송법(법률 제 9280 호, 2008. 12. 31.)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3 조부터 제 18 조까지, 제 48 조, 그리고
제 69 조부터 제 71 조까지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36 호, 2008. 12. 31.) 제 57 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9280호, 2008. 12. 31.) 제11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전송

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해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해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해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각 채널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상
100 분의 80 이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각 채널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100 분의
70 이하,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각 채널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40 이하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30 이상 100 분의 50 이하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 분의 60 까지 1 개 국가의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 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보도·오락·드라마·영화·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2. 분야 에너지산업

하위분야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¹⁾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4.) 제 16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4.) 제 187 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및 제 5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5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1 호, 2009. 3. 4.) 부록 1
기획재정부 고시(제 2000-17 호, 2000. 9. 28.)
금융투자업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7호, 2009. 2. 4.)제6-2편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해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대한민국 영역내 전체 발전설비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속서 II에 기재된 대한민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호는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43. 분 야 에너지 산업

하위분야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²⁾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19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4.) 제 168 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및 제 5 조
한국가스공사정관 (2007. 3. 26.) 제11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 부속서Ⅱ에 기재된 대한민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호는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4.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9.7 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6 호, 2008. 6.
5.) 제 2 조, 제 27 조 및 제 40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64 호, 2009. 3. 25.) 제 19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
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부속서 I

페루의 유보목록

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페루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1993) 제 71 조

법령 제757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1. 11. 13.) *민간투자 성장을 위한 기본법(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제13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외국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된 기업은 페루의 국경선에서 50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나 물(광산, 산림, 또는 에너지를 포함한다)을 어떠한 명의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예외는 공적 필요성이 명시적으로 선언된 경우, 법에 따라 각료 이사회가 승인한 최고 법령에 의해 허락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지역 내에서의 취득이나 소유의 각 경우에, 투자자는 현행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해당 요청을 제출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종류의 허가는 광업 분야에서 주어지고 있다.

2. 분야 어업과 어업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12-2001-PE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1. 3. 14.) 수산법 규정(*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제 67 조, 제 68 조, 제 69 조 및 제 70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외국국적 어선의 선주는 무조건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공동책임과 자동실행이 수반된 보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 보증서는 조업허가 만료 후 30 일 이내만 유효하다. 그 보증서는 “금융보험연금감독원”에 의해 인정된 금융, 은행, 또는 보험 기관에 의해서 생산부에 이익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발급된다. 그 보증서는 조업권을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의 25 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된다.

각료 결의에 의해 의무가 면제되는 고도회유성어업에 활동하는 선주를 제외하고, 페루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활동하고 크지 않은 규모(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의 외국국적 어선을 소유한 선주는 그 선박에 위성추적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수산업 허가권을 보유한 외국국적 어선은 페루 해양연구소(Instituto del Mar del Perú - IMARPE)로 부터 임명된 과학 기술 참관인이 승선해야 한다. 선주는 그 대표자에게 선박 내에 숙소와 일급을 제공해야 하며, 그 일급은

페루 해양연구소에 의해 관리되는 특별 계좌에 공탁되어야 한다.

페루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 어선의 선주는 적용되는 국내법령에 따라 최소 30퍼센트의 페루 선원을 고용해야 한다.

3. 분 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278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4. 7. 16.) *라디오와 텔레비전법(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24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 국민 또는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고 페루에 주소지가 있는 법인만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민은 직접 또는 단독소유기업을 통해 승인 또는 면허를 보유할 수 없다.

4. 분 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28278 호 (관보 “엘 페루아노” 2004. 7. 16.) *라디오와 텔레비전법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8 차 보완 최종 규정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상과 텔레비전 방송사에 의한 전체 주간 프로그램의
평균적으로 최소 30퍼센트는 페루 내에서 제작되고 5:00에
서 24:00의 시간대에 방영되어야 한다.

5. 분 야 라디오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9.4조,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05-2005-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5. 2. 15.) 라디오와 텔레비전법 규칙(*Reglamento de la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20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주주, 동업자, 또는 제휴자일 경우, 그 법인은 각료 이사회가 승인한 공적 필요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국민의 출신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 방송 허가를 보유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둘 이상의 현행 허가를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이 포함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허가가 동일 주파수대인 한, 적용되지 않는다.

6.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령 제 689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1. 11. 5.)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법 제 26196 호에 의해 수정된) 및 제 6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의 모든 고용주들은 그들의 업종이나 국적과는 별개로, 종업원을 고용할 때 페루 국민에게 특혜대우를 제공한다.

서비스공급자이며 서비스공급 기업에 의해 고용된 외국의 자연인은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정된 기간의 서면 고용 계약에 따라 페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은 이후에 동일기간 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공급 기업은 같은 직업에 페루 인력을 훈련시킨다는 약속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외국 자연인은 기업의 총 고용인원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고, 그들의 급여는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지불총액의 30 퍼센트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비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국민이 페루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 나. 외국 국적과 등록에 따라 국제 육상, 항공, 수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인력일 경우
- 다.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다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은행이나 기업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경우
- 라. 계약 기간 동안 적어도 5 개 의 “과세단위” (“UITs”)¹⁾ 를 페루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의 외국투자자인 경우
- 마. 페루 영역 내 예술가, 운동선수 또는 대중 공연에 종사하는 그 밖의 서비스공급자인 경우 (1 년에 최장 3 개월까지)
- 바. 외국 국민이 이민비자가 있는 경우
- 사. 출생국이 페루와 노동 호혜협정이나 이중국적협정이 있는 외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 아. 외국 인력이 페루 정부에 의해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페루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국 고용인의 숫자 및 회사의 급여 지불 비중과 관련된 비율에 관하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특수 전문직 또는 기술 인력
- 나. 새로운 사업 활동이나 재전환한 사업 활동을 위한 임원이나 관리자
- 다. 중등과정 후의 교육, 또는 외국 사립초등학교 · 중 · 고등학교, 또는 지역 사립학교에서 언어교육, 또는 전문화된 언어교육원에 고용된 교사
- 라. 공공 단체, 협회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일하는 인력
- 마. 전문성, 자격 또는 경력 기준에 따라서 최고 법령에 정해진 그 밖의 경우

1) “과세단위(Unidad Impositiva Tributaria, UIT)”는 과세표준, 공제, 부과 한도, 그리고 입법자가 편리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세금의 다른 측면을 불변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세 원칙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액이다.

7.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령 제 1049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8. 6. 26.)
공증인법(*Ley del Notariado*) 제 10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페루 국민만이 공증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8.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14085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62. 6. 30.) 페루 건축사 협회 설립법(*Ley de Creación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l Perú*)

법 제 16053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66. 2. 14.) 페루 엔지니어 및 건축사 협회가 국가 엔지니어와 건축 전문가를 감독하도록 승인하는 전문가 업무법(*Ley del Ejercicio Profesional, Autoriza a los Colegios de Arquitectos e Ingenieros del Perú para supervisar a los profesionales de Ingeniería y Arquitectura de la República*) 제 1 조

회기 제 04-2009호(2009. 12. 15.)에 승인된 국가 건축사 협의회 협정(*Acuerdo del Consejo Nacional de Arquitectos*)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서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은 “건축사 협회(Colegio de Arquitectos)”에 가입해야 한다. 페루인과 외국인간에 등록비용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차이의 비율은 5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다 높은 투명성을 위해, 현재 등록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페루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페루 국민은 775 솔

나.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페루 국민은 1,240 술
다. 페루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1,240 술, 또는
라.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3,100 술

또한 페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건축가는 일시적 등록을 하
기 위해 페루에 거주하는 페루인 건축가와 제휴 계약을 해야 한
다.

9.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회계감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리마 공인회계사 협회 규칙(*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Lima*) 제 145 및 제 146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회계감사 기업은 “리마 공인회계사 협회(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Lima)”에 의해 정당하게 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허가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파트너는 페루의 다른 회계감사 기업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0. 분야 경비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 005-94-IN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4. 5. 12.) *사설 경비 서비스 규정(Reglamento de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제 81 조 및 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경비 요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획득한 페루인이어야 한다.

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고위 관리자는 출생에 의해 국적을 획득한 페루인이어야 하며 페루에 거주해야 한다.

11.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국가 예술 시청각제작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3 조 및 2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모든 국내 예술 시청각 제작은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은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페루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급여 지불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수령한다.

전 항들에서 설정된 동일한 비율이 예술 활동에 관여된 기술인력의 작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비율은 페루 밖에서 고용된 외국 출연진에 의해 제공되고, 그들의 공연이 작품 또는 엔터테인먼트의 전체를 구성하며, 적절하게 문화 공연으로 인정되는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서커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6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서커스단은 최대 90일 동안 원래의 출연진으로 페루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되는 경우, 외국 서커스단은 최소한 예술가 중 30퍼센트, 기술자 중 15퍼센트의 페루 국민을 포함할 것이다. 동일한 비율이 임금과 급여의 지불총액에 적용된다.

13. 분 야 상업 광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5 조 및 제 27.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서 제작된 상업 광고는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국인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여 지불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수령한다.

전 항들에서 설정된 동일한 비율이 상업 광고에 관여된 기술인력의 작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14.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투우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최소한 한 명의 페루 국적을 가진 투우사가 투우 대회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한 한 명의 페루 국적을 가진 견습 투우사가 어린 황소가 포함된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15. 분 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5 조 및 제 45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회사는 그들의 일일 프로그램편성에서 최소한 10 퍼센트를 다음의 비율로 예술가를 고용하여 전통문화와 국내음악 그리고 페루의 역사, 문학, 문화 또는 최근 이슈에 대해 페루에서 제작한 연속물이나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

가.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

나. 내국인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급여의 지불총액에서 60 퍼센트 이상을 수령한다, 그리고

다. 전 항들에서 설정된 동일한 비율이 예술 활동에 관련된 기술인력의 작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6. 분 야 보세 창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8-95-EF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5. 2. 5.)
보세 창고 규정 승인(*Aprueban el Reglamento de Almacenes Aduaneros*), 제 7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보세 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7. 분 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27-2004-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4. 7. 15.) 통신법의 일반 규칙에 관한 통합 문서(*Texto Único Ordenado del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de Telecomunicaciones*) 제 269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국 영역 밖에 위치한 기본통신망으로부터, 전화를 걸라고 요청하는 회신전화를 받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발신되는 전화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해되는 콜백은 금지된다.

18. 분 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726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5. 10.) *민간 항공법(Ley de Aeronáutica Civil)* 제 75 조 및 제 79 조

최고 법령 제050-2001-MTC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1. 12. 26.) *민간 항공법의 규정(Reglamento de la Ley de Aeronáutica Civil)* 제 147조, 제 159조, 제 160조 및 보완 규정 VI

유보내용 투자

국적 상업 항공은 페루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유보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페루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 가.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 목적으로 상업 항공을 명시하며, 페루에 소재하고, 페루 내에서 그 주된 활동과 관리를 한다.
- 나. 이사, 관리자, 그리고 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의 최소한 과반수는 페루 국민이거나 페루에 영구적인 주소지를 갖거나 통상 페루에 거주한다, 그리고
- 다. 주식 총액의 최소 51 퍼센트는 페루 국민에 의해 소유되며 페루에 영구히 거주하는 페루 주주나 동업자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이 제한은 법 제 24882 호에 따라 설립되고,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소유권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상업 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인가일로부터 6 개월 후, 외국인은 지분의 70 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다.

페루 서비스 공급자(“explotadores nacionales”)에 의해 수행되는 운영 중에, 기내에서 비행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은 페루 국민이어야 한다. 민간항공총국은, 기술적 이유로써, 인가가 부여된 날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러한 기능을 외국 인력에게 수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민간항공총국은, 페루 항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명을 제공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인력이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하고 페루 항공 인력을 훈련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페루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19.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현지주재(제 10.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583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5. 7. 22.) 국적 상선의
재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법(*Ley de Reactivación y Promoción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제 4.1 조, 제 6.1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4 조 및 제 13.6 조

법 제 29475 호, 제 28583 호를 수정한 법(관보 “엘 페루아노”
2009. 12. 17.) 국적 상선의 재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법(*Ley de
Reactivación y Promoción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제 13.6 조 및 제 10 차 잠정 최종 규정

최고 법령 제028 DE/MGP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5. 25.)
법 제 26620호의 규정(*Reglamento de la Ley N° 26620*) 제 I -
010106 (a)항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 기업”은 페루 국적의
자연인 또는 주소재지와 실질적이고 유효한 본사가 페루 내에
있고 페루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은 국내수송 또는 연안운송²⁾ 그리고/또는 국제수송에서 수상 운송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며, 수상운송총국으로부터 관련 운용허가를 획득하고, 적어도 한 척 이상의 페루 국적 상선을 소유하거나 또는 의무적 매입옵션이 부가된 금융리스나 나용선 계약을 통해 그러한 선박을 임차한 인으로 이해된다.

2. 미납입자본과 납입자본 총액의 최소 51 퍼센트는 페루 시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3. 이사회 의장, 이사의 과반수, 총 관리자는 페루 국민이면서 페루 거주자여야 한다.

4. 페루 국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전부

“해안경비대총국(*Dirección General de Capitanías y Guardacostas*)”이 인가한 페루 국민이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해당 종류의 선박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페루 인력이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한 후에 제한된 기간 동안 외국인은 전체 승무원의 최대 15 퍼센트까지 고용될 수 있다. 후자의 예외는 그 선박의 선장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페루 국민만이 면허를 받은 항내 도선사가 될 수 있다.

6. 연안운송은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의무적 구매선택권이 부과된 금융임대계약 또는 나용선계약에 따라 임대된 페루 국적의 상업 선박에 전적으로 유보된다. 단, 다음은 제외된다.

가. 국가수역 내 탄화수소 수송의 25 퍼센트까지는 페루 해군의 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그리고

나.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이 앞서 언급된 방식에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상운송은 호수와 강에서의 운송을 포함한다.

따라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
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은 외국국적의 선박을, 페
루의 항구 간 또는 연안운송의 수상운송에만, 6개월 이하
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독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0.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56-2000-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12. 31.) 만과 항구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상운송 서비스와 그 관련된 서비스는 국적기의 인공물과 선박을 보유한, 인가된 자연인과 법인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 (*Disponen que servicios de transporte marítimo y conexos realizados en bahías y áreas portuarias deberán ser prestados por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autorizadas, con embarcaciones y artefactos de bandera nacional*) 제 1 조

각료 결의(Resolución Ministerial) 제259-2003-MTC/02호 (관보 "엘 페루아노" 2003. 4. 4.) 만교통과 항구지역에서 제공되는 수상운송 서비스와 그 관련 서비스 규정 승인(*Aprueban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Transporte Acuático y Conexos Prestados en Tráfico de Bahía y Áreas Portuarias*) 제5조 및 제7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만과 항구 지역에서 제공되는 다음의 수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는 페루 국적의 선박과 장비로 적절하게 인가되고 페루에 거주하는 자연인과 페루에 설립되고 소재한 법인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가. 연료 보급 서비스
나. 계류 및 출항 서비스
다. 잠수서비스
라. 식료품 적재 서비스
마. 준설서비스
바. 항만 도선 서비스
사. 폐기물 수거 서비스
아. 예인선 서비스, 그리고
자. 여객 운송

21.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결의안 제 011-78-TC-DS 호(1978. 2. 6.) *관광 운송 기업 관련 규정(Reglamento de Empresas de Transporte Turístico)*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페루에 설립되고 주소를 둔 법인만이 관광용 수상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22.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7866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2. 11. 16.) *항만 노동법(Ley del Trabajo Portuario)* 제 3 조 및 제 7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 시민만이 항만노동자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다.

항만노동자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각 항구에 마련된 작업 가운데, 하역인부 · "검수인(tarjador)" · "원치운전수(winchero)" · "기중기운전수(gruero)" · "기중기운전수 조수(portaloner)" · "하역잡부(levantador de costado de nave)"와 같은 항만 작업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특정한 서비스를 항만고용주의 수하에서 수행하는 자연인이다.

23.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육상 여객 운송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06-2010-MTC 호(2010.1.22.)에 의해 수정된
최고 법령 제 017-2009-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9. 4.
22.) 국가 운송관리 규정(*Reglamento Nacional de
Administración de Transportes*)제 3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운송 서비스 공급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야만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물적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적절한 경우, 사무실, 사람과 상품을 위한
버스 터미널, 노선 상의 역, 버스 정거장, 상품의 하역 및 보관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모든 기반시설, 정비소,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24.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육상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칠레공화국 정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페루공화국 정부 및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에 몬테비데오에서 1990 년 1 월 1 일 서명된 “국제육상운송 협정”(Acuerdo sobre Transporte Internacional Terrestre - ATIT)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육상운송 협정(ATIT)과 합치되고 페루에 의해 허용된, 육로로 국제 수송을 수행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은 페루 영역 내에서 현지 운송(연안운송)을 제공할 수 없다.

25. 분 야 연구 및 개발 서비스

하위분야 고고학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결의안 제 004-2000-ED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1. 25.) *고고학연구 규정(Reglamento de Investigaciones Arqueológicas)* 제 30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인 고고학자가 이끄는 고고학 연구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의 과학적인 공동지휘 또는 보조지휘를 위해 고고학자 국가등록소에 등록된 페루 고고학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동지휘자 및 보조지휘자는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수행(현장 및 사무실 작업을 말한다)에 참여한다.

26. 분 야 에너지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6221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3. 8. 19.)
탄화수소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Hidrocarburos*)
제 1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서 탐사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의 자연인은 공공
등록소에 등록하고 페루공화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페루 국민에게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업 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페루공화국의 수도
에 소재하며, 페루 국민을 간부로 임명해야 한다.

부속서 I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9.8 조(비합치 조치) 및 제 10.6 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9.3 조(내국민대우) 또는 제 10.2 조(내국민대우)

나. 제 9.4 조(최혜국대우) 또는 제 10.3 조(최혜국대우)

다. 제 9.6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 9.7 조(이행요건)

마. 제 10.4 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 10.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한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 9.8 조제 2 항 및 제 10.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마.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 9.8 조제 2 항 및 제 10.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현지주재(제 10.5 조)와 내국민대우(제 10.2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10.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대우(제 10.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제 9.1 조(적용범위) 또는 제 10.1 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국경 간 도박 및 베팅 서비스¹⁾무역은 제 10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 9 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베팅 및 도박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6. 다음에 관한 조치는 제 9.7 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가.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나.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다. 적용되는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라.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마.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그러한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2008) 제 4 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8) 제 5 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즉시 페루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8) 및 그 밖의 적용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 9.17 조제 3 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 9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제 1 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 9 장(투자) 제 2 절이 준용되며,
제 9 장(투자) 제 1 절에 따른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 9 장(투자) 제 2 절에 따른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 9 장(투자) 제 1 절에 따른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 1 항가호부터 마호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12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범
위 내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5조

2.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 21 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9.3조 또는 제10.2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4.)
제 168 조

3. 분 야 토지취득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법률 제 9186 호, 2008. 12. 26.) 제 2 조부터 제 6 조까지
농지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6조

4. 분 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총포·도검 또는 화약류의 제조·사용·판매·보관
· 운반·수입·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 및 화
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 분 야 취약집단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6.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7. 분 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소득 보장 또는 보험

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다. 사회 복지

라. 공공훈련

마. 보건, 그리고

바. 보육

기존의 조치

8.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 (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대한

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0.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9.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10.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분 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2. 분 야 원자력 에너지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3. 분 야 에너지 서비스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9.7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4. 분 야 에너지서비스

하위분야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 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곡물, 곡분, 인삼, 홍삼의 중개서비스 및 곡물, 곡분, 홍삼의 도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6.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및 관련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육상 운송 서비스(여객/화물) 및 관련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7.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8.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곡물, 곡분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과
관련한 다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병역의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제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음의 상업 서류와 관련하여 민간 쿠리어에 의한 서비스는 이
유보항목에서 제외된다.

가.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첩장 또는 송장

나. 무역 관련 서류

다. 외국 자본 또는 기술 관련 서류

라.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그리고

마.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회사의 지점 간에 배달되는
상업 서류로서 발송 후 12 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서류

우편 서비스는 외국인의 투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 9240 호, 2008. 12. 26.)
 병역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 21077 호, 2008. 10. 8.)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4조제4항에 따
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

20.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
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방송법(법률 제 9280 호, 2008. 12. 31.) 제 8 조, 제 9 조,
제 69 조부터 제 72 조까지, 제 78 조 및 제 78 조의 2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6호, 2008. 12. 31.) 제14조, 제50
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의3

21.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그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법률 제 9700 호, 2009. 5. 21.) 제 4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8 조 및 제 21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68호, 2008. 8. 12.) 제20조

22.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676 호, 2009. 5. 21.) 제 25 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8-135호, 2008. 12. 31.)

23.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 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696 호, 2009. 5. 21.) 제 27 조 및 제 40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64 호, 2009. 3. 25.) 제 10 조 및 제 19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 29 호, 2009. 3. 4.) 제 5 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8-135호, 2008. 12. 31.)

24.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
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5.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채(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보항목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26. 분 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 21 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제 10.7 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한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Ⅱ에 기재된 대

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법률 제 9932 호, 2010. 1. 18.)
제 16 조의 3

27.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8.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9.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0. 분 야 어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
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31. 분 야 신문 발행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9 호, 2008. 6. 5.) 제 13 조, 제 14 조 및 제 2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47호, 2008. 12. 3.)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32. 분 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유아·초등·중등·고등·성인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3. 분 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216호, 2008. 12. 2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577호, 2009. 4. 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34.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6 호, 2008. 6. 5.)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4호, 2009. 3. 25.)

35.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17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2009. 2. 3.) 제12조 및 제52조의2

36. 분 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7. 분 야 법률서비스

하위분야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¹⁾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 승인 · 등록 ·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변호사 · 법무회사(로펌)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 상사연합 ·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일시 입국을 위해서 상업적 주체가 요구된다.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페루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페루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다음 날부터 2 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페루 법무회사(로펌)**란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페루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기존의 조치

38.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공인회계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치 공인회계사법(법률 제 8863 호, 2008. 2. 29.)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8호, 2009. 2. 3.) 제3조

39.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채(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치 *세무사법*(법률 제 9348 호, 2009. 1. 30.)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제 20 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02 호, 2009. 2. 4.) 제 97 조
세무 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및 제22조

40.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오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 7949 호, 2006. 4. 28.)
 원자력법(법률 제 9016 호, 2008. 3. 28.)
 대외무역법(법률 제 8356 호, 2007.4.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7-3 호(2007. 4.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7-51 호(2007. 4. 12.)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4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제 10.1 조제 6 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 또는

나. 제 12 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기존의 조치

42.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1 인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4.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기존의 조치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기재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개발 서비스 :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다.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기재된 GATS 제 16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 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여행 대행 서비스 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부속서 II

페루의 유보목록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페루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¹⁾

기존의 조치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해상 사안은 호수와 강에서의 운송을 포함한다.

2. 분야 토착 공동체, 소작농민, 원주민 및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10.5 조)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과 민족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민족 집단”이란 토착민, 원주민 및 소작농민 공동체를 말한다.

기존의 조치

3. 분야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소규모·전통방식의 어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 분야 문화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가.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된 신문 또는 전자 신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
-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 라. 극장 예술²⁾의 제작 및 상연
- 마. 시각 예술의 제작 및 전시
- 바. 인쇄된 악보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판독 가능한 악보의 제작, 배포, 또는 판매
- 사. 수공예품의 디자인, 제작, 배포 및 판매, 또는
- 아.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래밍 서비스, 그리고 방송망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페루는 시청각 협력 협정을 포함하여 문화 산업에 관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인에게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3조(내국민대우), 제9.4조(최혜국대우),

2) “극장 예술”이란 용어는 연극, 무용 또는 음악과 같은 실황 공연 또는 상연을 말한다.

그리고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존의 조치

5. 분야 수공예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페루의 수공예품으로 인정되는 수공예품의 디자인, 유통, 소매, 또는 전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행요건은 모든 경우에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과 합치한다.

기존의 조치

6. 분야 시청각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연간 기준으로 페루 내에 있는 영화상영관 또는 전시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특정 비율(20퍼센트까지)이 페루 영화로 구성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비율을 설정할 때 페루는 국내 영화 제작, 페루 내에 현존하는 전시 기반시설 및 관객수 등을 포함하는 요소를 고려한다.

기준의 조치

7. 분야 보석 디자인
 극장 예술
 시각 예술
 음악
 출판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보석 디자인, 극장 예술, 시각 예술, 음악 및 출판의 발전 및 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수령인이 국내 창작 콘텐츠의 특정 수준 또는 비율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8. 분야 시청각 산업
출판
음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시청각, 출판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페루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그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9.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 10.5 조)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련되거나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기존의 조치

10. 분야 음용수의 공공 공급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음용수의 공공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분야 공공하수처리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공공하수처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2.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10.3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공중통신서비스의 설치,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양여의 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3.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10.3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기술적이고 생산적인 훈련(educación técnico-productiva)”을 포함하는 기초 및 고등교육에 있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교육 체계의 모든 수준이나 단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자를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4.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페루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만 페루의 영역 내에서 인
또는 물품의 육상운송(“카보타지”)을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어떠
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를 위해, 기업
은 페루에 등록된 차량을 사용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야 운송

하위분야 국제 도로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국경 지역의 화물 또는 여객 국제육상운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추가적으로, 페루는 페루로부터의 국제육상운송 공급에 대해 다음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는 페루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나. 서비스 공급자는 페루 내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다. 법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페루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주식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페루 국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페루 국민에 의해 효과적으로 지배되어야 한다.

기준의 조치

16.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제 10.4 조(시장접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제한과 조건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분야 및 하위분야는 제외된다.

법률서비스

가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이 공증인 직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제외

- 1) 수도에 대해 200
- 2) 각 주 수도에 대해 40, 그리고
- 3) 각 도 수도에 대해 20(헌법도인 까야오를 포함한다)

나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가·나·다 및 라에 대해, 페루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건축서비스와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비거주 외국 건축가가

임시등록을 하기 위해 페루에 거주하는 페루 건축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제외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수의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조산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소유되거나 임차된 자산 관련 또는 수수료나 계약 기준의

부동산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승무원/운영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모든 운수장비 및 그 밖의 기계와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은 페루 국적의 자연인 또는 주소재지와 실질적이고 유효한 본사가 페루 내에 있고 페루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은 국내수송 또는 연안운송³⁾ 그리고/또는 국제수송에서 수상 운송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며, 수상운송총국으로부터 관련 운용허가를 획득하고, 적어도 한 척 이상의 페루 국적 상선을 소유하거나 또는 의무적 매입옵션이 부가된 금융리스나 나용선 계약을 통해 그러한 선박을 임차한 인으로 이해된다.

연안운송은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의무적 매입옵션이 부가된 금융리스 또는 나용선계약에 의해 임차된 페루국적 상선에 전적으로 유보된다. 다만, 다음은 제외된다.

- 1) 국가수역 내 탄화수소 운송의 25 퍼센트까지는 페루 해군의 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그리고
- 2)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이 앞서 언급된 방식에 따라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만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페루의 항구 간 또는 연안운송의 수상운송에만, 6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한해서 운용할 수 있다.

3)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상운송은 호수와 강에서의 운송을 포함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광고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페루에서 제작된 상업 광고는 최소한 80 퍼센트의 페루 예술가를 고용해야 한다. 페루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급여 지불총액의 60 퍼센트 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다. 상기에서 설정된 것과 동일한 비율이 상업 광고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작업에도 적용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예술가 및 공연자에 관한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경영컨설팅서비스,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광업 관련 서비스, 직업 소개 및 파견 서비스, 조사 및 경비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제조업 부수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과학 및 기술 관련 컨설팅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빌딩 청소서비스, 사진서비스, 포장서비스 및 국제회의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인쇄 및 출판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국내 또는 국제 장거리 통신서비스

가·나·다 및 라에 대해, 페루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전송 통신서비스, 사설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⁴⁾

가·나·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양여·승인·등록 또는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페루가 판단하는 그 밖의 자격을 취득할 의무는 제외.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양여 자격이 있다.

자국 영토 밖에 위치한 기본통신망으로부터, 전화를 걸라고 요청하는 회신전화를 받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발신되는 전화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해되는 콜백은 금지된다.

국제트래픽은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 y Comunicaciones)에 의해 부여된 양여 또는 그 밖의 운영 허가를 보유한 기업의 설비를 통해야 한다.

민간 서비스 간 상호접속은 금지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위탁중개인서비스(탄화수소는 제외한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4) 부가서비스는 페루 법에 따라 정의된다.

소매서비스(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도매서비스(탄화수소는 제외한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프랜차이즈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가정 및 개인 소유물의 보수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호텔 및 레스토랑(케이터링을 포함한다), 여행알선대행서비스
그리고 관광객안내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엔터테인먼트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뉴스제공서비스,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스포츠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모든 국내 극장⁵⁾ 및 시각 예술 제작 그리고 모든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은 최소한 80 퍼센트의 페루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페루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불되는 급여 및 임금 지불총액의 60 퍼센트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다. 앞 문장들에서 설정된 것과 동일한 비율이 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술 인력의 작업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비율은 페루 밖에서 그와 같이 고용된 외국 출연진에 의해 제공되고, 그들의 공연이 전체 작품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구성하며, 적절하게 문화 공연 자격이 부여되는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외국 서커스는 원래의 출연진으로 최대 90 일 동안 페루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되는 경우, 외국 서커스단은 최소한 예술가 중 30 퍼센트, 기술자 중 15 퍼센트의 페루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 동일한 비율이 임금과 급여의 지불총액에 적용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예술가 및 공연자에 관한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경기 및 레크레이션 스포츠 시설 개발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5) “극장 예술”이란 용어는 연극, 무용 또는 음악 같은 실황 공연 또는 상연을 말한다.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레크레이션파크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해상운송 및 내수운송 서비스

가·나·다 및 라에 대해, 페루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도로 운송: 운영자가 있는 상업 차량의 대여, 도로 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도로·다리·터널 서비스의 개발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모든 운송 부수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가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서비스, 그리고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자연과학 연구 및 개발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운영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참여하여 연구와 그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페루의 해당 활동을 대표하는 한 명 이상을 연구과정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외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의 개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운영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은 제외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보상의 어떠한 조항도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약속과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비합치 조치의 목적상,

1. “가”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2. “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3. “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그리고
4. “라”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기준의 조치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합치 조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부속서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2.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2.2조(내국민대우)
 - 2) 제12.3조(최혜국대우)
 - 3)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2.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2.2조(내국민대우)·제12.3조(최혜국대우)·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 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2.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2.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2.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2다(구체적 약속)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2.2조(내국민대우)·제12.3조(최혜국대우)·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2.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

도에서 제9.3조(내국민대우)·제9.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7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는 양 당사국이 제12.2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2.10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 10.2 조(내국민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제 12.5 조제 1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록 III-가

제 12.4 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12.10 조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수정 및 변경도 본래 조치의
정신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할 것이다.

- 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업무
만 영위할 수 있다[보험업법(법률 제 7971 호, 2006. 8. 29.) 제 10 조와 제
11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93 호, 2006. 5. 30.) 제 15 조
와 제 16 조].
- 나.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보험
업감독규정 제 5-9 조(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43 호, 2009. 7. 22.)].
- 다.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
규정 제 5-11 조 및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 라. 대한민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
록 요구된다[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 2 조(금융통화위원회,
1999. 8. 19.),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법률 제 8143 호, 2006. 12.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대통령령 19464 호, 2006. 5. 3.)].
- 마.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
(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
자본의 50 퍼센트로 제한된다[외국환거래법 제 11 조 제 2 항 (법률 제
9351 호, 2009. 1. 30.)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2-9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 바. 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2 조(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3.)].

사.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 24 조(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아. 대한민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 27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 40 조 및 제 41 조(법률 제 9407 호, 2009. 2. 3.), 그리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3.)).

자. 금융기관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은행
법 제 38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보험업법 제 105 조(법률 제
8902 호, 2008. 3. 14.)].

차.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
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까지, 그리고 제 7-36 조부터 제 7-39 조까지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카. 대한민국은 예금 이자율 · 대출 이자율 · 그 밖의 이자율 ·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은행법 제 30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 12.
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및 제 15 조
(법률 7523 호, 2005. 5. 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및 제 9 조(대통령령 19019 호, 2005. 8. 31.)].

다음의 조치는 제 12.10 조제 1 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 12.2 조(내국민대우)는
대한민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
에 대한 모든 개정 · 수정 또는 변경은 제 12.10 조제 1 항의 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
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 9
조제 3 항(법률 제 8902 호, 2008. 3. 14.)]. 그리고

나. 외국보험사의 대한민국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 75 조(법률 제 8902 호, 2008. 3. 14.)].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 12.2 조(내국민대우) 및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대한민국은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2.9 조(비합치 조치) 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12.9 조제 1 항다호는 제 12.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 12.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1 절

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i>보험업법</i> (법률 제 7971 호, 2006. 8. 29.) 제 91 조 <i>보험업법 시행령</i> (대통령령 제 19493 호, 2006. 5. 30.) 제 40 조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2 명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하여 제한함을 밝힌다.

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2.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7100 호, 2004. 1. 2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 7186 호,
2004. 3.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 7504 호, 2005. 5.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 7505 호, 2005. 5. 26.)
선원법(법률 제 8041 호, 2006. 10.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7913 호, 2006. 3. 24.)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 7985 호, 2006. 9. 2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7279 호, 2004.
12. 31.)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 8016 호, 2006. 9. 27.)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 8014 호, 2006. 9.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7002 호, 2003. 12. 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 6621 호, 2002. 1. 19.)
도로교통법(법률 제 7969 호, 2006. 7.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 8045 호, 2006. 10.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8138 호, 2006.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7796 호, 2005. 12. 2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7305 호, 2004. 12. 31.)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 7188 호, 2004. 3. 11.)

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 8014 호, 2006. 9. 27.)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7918 호, 2006. 3. 24.)

뉴시어선업법(법률 제 7642 호, 2005. 7. 29.)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전자서명법(법률 제 7813 호, 2005. 12. 30.)

변호사법(법률 제 7894 호, 2006. 3. 24.)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7425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
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도 법적 의무의 충족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은행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2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 3. 29.) 제 5
조 및 별표
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 7529 호, 2005. 3. 31.) 제 8 조 및
제 8 조의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 3. 29.) 제 6 조
의 3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
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²⁾ 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
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 목적상

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
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
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나.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
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2)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은행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제 58 조 은행업인가지침(2004. 7. 23.) 제 17 항나호 은행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7호, 2006. 12. 28.) 제10조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에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373 조, 제 375 조, 제 379 조 및 제 386 조

유보내용 한국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6.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294 조부터 제 323 조 및 제 166 조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예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
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7.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298 조, 제 378 조 및 제 166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제178조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2.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166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제184조

유보내용 일반 투자자(일부 전문투자자³⁾를 포함한다)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
래한다.

3)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2 호, 2009. 2. 3)에 의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9.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은행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제 62 조 및 제 63 조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 3. 29.) 제 25 조 및 제 26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65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91호, 2009. 2. 3.) 제 65 조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현지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10.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 8145 호, 2006. 12. 30.) 제 7 조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 8143 호, 2006. 12. 30.) 제 6 조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제 5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355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7883 호, 2006. 3.
24.) 제 5 조
외국환거래법(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9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7호, 2009. 2. 3.)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사업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 가. 신용협동조합
- 나. 상호저축은행
-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 마. 신용정보회사
-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제 30 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에서 특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 9703 호, 2009. 5. 21.)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 9741 호, 2009. 5. 27.)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 9460 호, 2009. 2.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7882 호, 2006. 3. 24.)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38 호, 2005. 7. 29.)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11호, 2005. 7. 2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이라 한다)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 1)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정책금융공사
- 3)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주택금융공사
- 5)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 6) 수산업협동조합

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
여할 수 있다.

-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
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또는

- 4) 공공자산 및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
조세의 면제

1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과 이사회(제 12.8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7882 호, 2006. 3. 24.) 제 16 조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38 호, 2005. 7. 29.) 제 49 조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11호, 2005. 7. 21.) 제 51조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
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 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
야 한다.

1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주택법(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75 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 18.) 제5조
제2항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5.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외국환거래법*(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9 조

유보내용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2절

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2.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없음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없음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가.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나.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페루 금융 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합치 조치

페루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부속서의 페루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1 목부터 나호 5 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페루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페루의 기존의 조치
 - 1) 제12.2조(내국민대우)
 - 2) 제12.3조(최혜국대우)
 - 3)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 12.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페루가 제12.2조(내국민대우), 제12.3조(최혜국대우),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 의무는 제 4 항에 규정된 대로, 제 12.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 12.9 조제 2 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2.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2다(구체적 약속)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페루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2.2조(내국민대우)·제12.3조(최혜국대우)·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2.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대우)·제9.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7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제 10.2 조(내국민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제 12.5 조제 1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두주

1. 이 유보목록에 나열된 하위분야에 대한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페루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페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 12.9 조(비합치조치)제 1 항다호는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예를 들면, 유한책임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을 지는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페루에서 금융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지점 및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제1절

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i>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유보내용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페루 내에 지점으로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은 그 지점에 일정 자본을 배정하여야 하며, 그 자본은 페루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페루가 부과할 수 있는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합치하는 조치에 더하여, 그 지점의 운영은 페루 내에 위치한 그 지점의 자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i>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유보내용	보험 또는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루 내에 지점으로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은 그 지점에 일정 자본을 배정하여야 하며, 그 자본은 페루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페루가 부과할 수 있는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합치하는 조치에 더하여, 그 지점의 운영은 페루 내에 위치한 그 지점의 자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093-2002-EF호에 의해 승인된 증권시장법(<i>Ley del Mercado de Valores</i>)의 통합문서: 제280조, 제333조, 제337조 및 제17차 최종 조항 <i>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제136조 및 제296조
유보내용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페루 영역 내에서 일차 또는 이차 공모된 채무증권은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금융기관 및 채무증권은 기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 평가에 추가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2.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i>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농축산은행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l Banco Agropecuario</i>), 법 제27603호 개발금융공사(COFIDE)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 la Corporación Financiera de Desarrollo (COFIDE)</i>), 법령 제208호 및 법 제25382호 국립은행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l Banco de la Nación</i>), 법 제16000호 법 제28579호, 내 집 자금 최고 법령 제157-90-EF호 최고 법령 제07-94-EF호 및 그 법령의 개정
유보내용	페루는 하나 이상의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 제한 없이 특혜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융기관이 정

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소유된 경우에 한한다:
개발금융공사(COFIDE), 국립은행, 농축산은행, 내 집 자금, 지역저축 및 대출은행 및 국민저축은행

그러한 특혜의 예는 다음과 같다²⁾:

국립은행 및 농축산은행은 위험분산을 요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저축 및 대출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사전에 설립된 절차에 따라 압류한 담보물을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비합치 조치가 이 유보목록의 제 1 절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페루가 명시된 기관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특혜 또는 배타적 권리가 인용된 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양해한다.

5.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093-2002-EF호에 의해 승인된 <i>증권시장법(Ley del Mercado de Valores)</i>의 통합문서: 제130조, 제167조, 제185조, 제204조, 제223조, 제259조, 제269조, 제270조, 제302조, 제324조 및 제17차 최종 조항 법령 제862호, <i>투자기금 및 그 관리회사에 대한 법(Ley de Fondos de Inversión y sus Sociedades Administradoras)</i> 제12조 법 제27635호에 의해 수정된 <i>상품거래소법(Ley sobre Bolsas de Productos)</i>, 법 제26361호: 제2조, 제9조 및 제15조 법령 제22014호 제1조 최고 법령 제054-97-EF호에 의해 승인된 <i>개인연금기금법 통합문서(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del Sistema Privado de Administración de Fondos de Pensiones)</i>, 제13조 그리고 최고 법령 제004-98-EF호에 의해 승인된 <i>개인연금기금법 통합문서 규정(Reglamento del 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del Sistema Privado de Administración de Fondos de Pensiones)</i>, 제18조
유보내용	증권 또는 상품 시장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금

기금 운용자를 포함하여 자산 운용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루 내에서 설립된 금융 기관은 페루 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루 내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은 지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6.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금융 및 보험 체제의 일반법과 은행 및 보험의 감독권의 기본법(<i>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i>), 법 제26702호 및 그 법의 개정
유보내용	페루 내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기관의 지점이 파산할 경우, 페루에 주소를 둔 채권자가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의 페루 내 자산과 관련하여 법적 우선권을 지닌다.

제2절

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2.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서비스 공급 관련, 페루는 제12.4조가호2목 및 3목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024-2002-MTC호에 의해 승인된 법 제27181호 및 그 규정 최고 법령 제03-98-SA호에 의해 승인된 법 제26790호, <i>보건 분야 사회보장의 현대화에 관한 법(Ley de la Modernización de la Seguridad Social en Salud)</i> 및 그 규정
유보내용	페루는 "교통사고 의무보험" 및 "위험직종 보충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의 페루 국외 취득을 제한하거나 그 의무 보험을 페루 내 설립된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제한은 부속서 12나(국경 간 무역)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